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22호

2026. 1. 22.(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6-199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고 시

제2026-34호 배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2
제2026-35호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경미한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22
제2026-3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33
제2026-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34
제2026-39호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36
제2026-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50
제2026-41호 향림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1
제2026-42호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 71
제2026-43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74
제2026-45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114
제2026-4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7
제2026-47호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20
제2026-48호 북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46
제2026-49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6
제2026-50호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 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224
제2026-51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 결정 및 도면 고시 ····· 320

제2026-53호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26

◈ 공 고

제2026-13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352
제2026-13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54
제2026-14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55
제2026-14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56
제2026-14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57
제2026-14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고 ····· 358
제2026-149호 2026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고 ····· 359
제2026-15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60
제2026-15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61
제2026-15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62
제2026-15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63
제2026-161호 소송비용액 납부(최고)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65
제2026-163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366
제2026-165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370
제2026-166호 2026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 371
제2026-167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 376
제2026-171호 도시공원(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최초)을 위한 열람공고 ·· 410
제2026-172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 414
제2026-17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415
제2026-175호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 416
제2026-177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418
제2026-178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419
제2026-190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20
제2026-191호 마곡지구 16단지 아파트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 421
제2026-194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423
제2026-195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424
제2026-202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 426
제2026-20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29
제2026-211호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공고 ····· 430
제2026-212호 여의도 한강공원 내 국가하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431
제2026-213호 여의도 한강공원 내 국가하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434

제2026-589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37

◈ 서울특별시의회

[예 규]

제187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 438

[공 고]

제2026-1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 440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고]

제2026-59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판결 공시 ····· 441

[입법예고]

제2026-6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42

◈ 구 고 시

제2026-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 450
제2026-10호 도시관리계획(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 453
제2026-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 457
제202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은평구) ····· 461
제2026-87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완료 공고(서대문구) ····· 464
제2026-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근린공원, 공공공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동작구) ····· 466
제2026-2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변경 고시(동작구) ····· 474
제2026-20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송파구) ····· 490
제2026-18호 염주골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2차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 491

◈ 구 공 고

제2026-8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중구) ····· 499

제2026-9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 대상지 열람공고(성동구) ····· 504
제2026-104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광진구) ····· 510
제2026-9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성신여자대학교)(성북구) ····· 554
제2026-9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노원구) ····· 556
제2026-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근린공원 조성) 완료 공고(노원구) ····· 558
제2026-9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근린공원 조성) 완료 공고(노원구) ····· 560
제2026-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조성) 완료 공고(노원구) ····· 562
제2026-1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신사근린공원) 사업 완료공고(은평구) ····· 564
제2026-1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신사근린공원) 사업 완료공고(은평구) ····· 566
제2026-153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사업 완료 공고(은평구) ····· 568
제2026-1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구로구) ····· 571
제2026-126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 공고(동작구) ····· 573
제2026-139호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명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서초구) ····· 622
제2026-153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초구) ····· 632

◈ 사업소고시

제202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1
제2026-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1
제2026-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2
제2026-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2
제2026-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3
제2026-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3
제2026-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4
제2026-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4
제2026-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5
제2026-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6
제2026-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47

◈ 사업소공고

제2026-20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48
제2026-21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49
제2026-2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50
제2026-2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51
제2026-27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52
제2026-2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53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99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내 구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법률 개정사항 신설 및 용어 통일 등 개정 (안 제10조제1항제1호~제5호)

○ 구도로 가로수에 관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권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경과(전화: 02-2133-2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3780-1082

(2) 이메일: hc4586@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2026-199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가로수기본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로수계획”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려는 경우

③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둔 자치구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구도에 한해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9. (현행과 같음)
제4조(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은 제4조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조(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 수립 등) ① ------ 제3조-----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가로수 심의위원회)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가로수 심의위원회) ① -- ---------- ---------- ---------- ---------- ---------- ---------- --------. 1. 가로수기본계획의 -------- ---------- 2. -----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신 설>	3.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 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려는 경우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둔 자치구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구도에 한해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조성·관리 협의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조성·관리 협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청은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 ---------- ---------- ---------- 없으면 ---------- ----------. ---------- ---------- -----.

제2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 필요한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4호

배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39호(2007.12.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93호(2018.04.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종)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된 배말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기념비를 건립하고 주민 친화적인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호국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휴식과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19번지 일대(배말근린공원)
3.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02-2094-2356)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말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랑구 신내동 81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9,887.90	1,719.66	-	-	-	146	19,887.90	1,944.98				147	시설면적 증가 225.32㎡
기반시설	소 계	818.98	818.98	-	-	-	-	1,044.30	1,044.30				-	증 225.32㎡
	도 로	818.98	818.98	-	-	-	-	703.98	703.98				-	감 115.00㎡
	광 장	-	-	-	-	-	-	340.32	340.32				-	증 340.32㎡
조경시설		-	-	-	-	-	-	-	-				-	
유희시설		345.00	345.00	-	-	-	3	345.00	345.00				3	
휴양시설		445.08	445.08	-	-	-	12	445.08	445.08				12	
교양시설		-	-	-	-	-	-	-	-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62.20	62.20	-	-	-	17	62.20	62.20				17	
편익시설	-	-	-	-	-	4	-	-				4	
관리시설	48.40	48.40	-	-	-	110	48.40	48.40				110	
녹지 및 기타	18,168.24	-	-	-	-	-	17,942.92	-				-	감 225.32㎡
시설율 (법정 40%)	(1,719.66 / 19,887.9) × 100 = 8.65%						(1,944.98/ 19,887.9) × 100 = 9.78%						
건폐율 (법정 10%)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9,887.90	1,719.66		518.0m	-	-	146			19,887.90	1,944.98		518.0m	-	-	147	
기반시설	소 계			818.98	818.98		-	-	-	-			1,044.30	1,044.30		-	-	-	-	증 225.32㎡
	도 로		신내동 819	818.98	818.98		-	-	-	-		신내동 819	703.98	703.98		-	-	-	-	감 115㎡
	광 장		신내동 819	-	-		-	-	-	-		신내동 819	340.32	340.32		-	-	-	-	증 340.32㎡
휴양시설	소 계			445.08	445.08		-	-	-	12			445.08	445.08		-	-	-	12	
	휴게소	1	신내동 819	248.00	248.00		-	-	-	-	1	신내동 819	248.00	248.00		-	-	-	-	
		2	신내동 819	182.47	182.47		-	-	-	-	2	신내동 819	182.47	182.47		-	-	-	-	
		3	신내동 819	14.61	14.61		-	-	-	-	3	신내동 819	14.61	14.61		-	-	-	-	
	벤치	A	신내동 819	-	-		-	-	-	12	A	신내동 819	-	-		-	-	-	1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체육시설	소계			345.00	345.00		-	-	-	3			345.00	345.00		-	-	-	3	
	어린이 놀이터		선내동 819	345.00	345.00		-	-	-	-		선내동 819	345.00	345.00		-	-	-	-	
	조합 놀이대	B	선내동 819	-	-		-	-	-	1		선내동 819	-	-		-	-	-	1	
	흔들놀이	C	선내동 819	-	-		-	-	-	2		선내동 819	-	-		-	-	-	2	
	놀이데크		선내동 819	-	-		-	-	-	-		선내동 819	-	-		-	-	-	-	
체육단련장	소계			62.20	62.20		-	-	-	17			62.20	62.20		-	-	-	17	
	체육단련장1	①	선내동 819	9.50	9.50		-	-	-	-	①	선내동 819	9.50	9.50		-	-	-	-	
	체육단련장2	②	선내동 819	42.70	42.70		-	-	-	-	②	선내동 819	42.70	42.70		-	-	-	-	
	체육단련장3	③	선내동 819	10.00	10.00		-	-	-	-	③	선내동 819	10.00	10.00		-	-	-	-	
	체육단련시설	D	선내동 819	-	-		-	-	-	17	D	선내동 819	-	-		-	-	-	1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교육시설	소계			-	-		-	-	-	-			-	-		-	-	-	1	
	참전 기념비		신내동 819	-	-		-	-	-	-	④	신내동 819	-	-		-	-	-	1	신설
편의시설	소계			-	-		-	-	-	4						-	-	-	4	
	안내판	E	신내동 819	-	-		-	-	-	4	E	신내동 819	-	-		-	-	-	4	
관리시설	소계			48.40	48.40		518.0m	-	-	110			48.40	48.40		518.0m	-	-	110	
	안전로프	F	신내동 819	-	-		518.0m	-	-	-	F	신내동 819	-	-		518.0m	-	-	-	
	계단	G	신내동 819	48.40	48.40		-	-	-	18	G	신내동 819	48.40	48.40		-	-	-	18	
	트렐리스	H	신내동 819	-	-		-	-	-	92	H	신내동 819	-	-		-	-	-	9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계			18,168.24	-		-	-	-	-			17,942.92	-		-	-	-	-	
	녹지		신내동 819	18,168.24	-		-	-	-	-		신내동 819	17,942.92	-		-	-	-	-	감 225.32㎡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422.1	818.98				
변경					386.1	703.98				
당초	소로	소 계			422.1	818.98				
변경					386.1	703.98				
당초		3류	1	2.0	296.0	592.00	진입로	5호완충녹지	도로	
변경		3류	2	2.0	260.0	477.00	진입로	5호완충녹지	광장	
당초		3류	1	1.8	64.2	115.56	연결로	휴게소1	소로3류-2	
당초		3류	2	1.8	48.7	87.66	연결로	소로3류-1	휴게소2	
당초		3류	3	1.8	13.2	23.76	연결로	휴게소2	소로3류-1	

조성계획도(당초)

배말근린공원

N 0 10 20 40 60 100 150(m) 1:1200

당초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개)
합계			19,887.9	1,719.66		518.0m			146
기반시설	소계		818.98	818.98					
	도로(소계)		818.98	818.98					
	광장(소계)		-	-					
휴양시설	소계		445.08	445.08					12
	휴게소1	1	248.00	248.00					
	휴게소2	2	182.47	182.47					
	휴게소3	3	14.61	14.61					
	휴게소4								
	휴게소5								
	초정								
	정자								
	벤치	A							12
유희시설	소계		345.00	345.00					3
	어린이 놀이터		345.00	345.00					
	조합 놀이대	B							1
	흔들놀이	C							2
	놀이데크								
운동시설	소계		62.20	62.20					17
	체력 단련장1	①	9.50	9.50					
	체력 단련장2	②	42.70	42.70					
	체력 단련장3	③	10.00	10.00					
	체력 단련시설	D							17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개)
편익시설	소계								4
	안내판	E							4
관리시설	소계		48.40	48.40		518.0m			110
	완전로프	F				518.0m			
	목책벽	G	48.40	48.40					18
	돌담	H							92
	계단								
녹지 및 기타	소계		18,168.24						
	녹지		18,168.24						

조성계획도(변경)

배말근린공원

N

0 10 20 40 60 100 150(m)

1:1200

변경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19,887.9**	**1,944.98**		**518.0m**			**147**
기반시설	**소계**		**1,027.3**	1,027.3					
기반시설	도로		703.98	703.98					
기반시설	광장		340.32	340.32					
휴양시설	**소계**		**445.08**	**445.08**					**12**
휴양시설	휴게소1	1	248.00	248.00					
휴양시설	휴게소2	2	182.47	182.47					
휴양시설	휴게소3	3	14.61	14.61					
휴양시설	휴게소4								
휴양시설	휴게소5								
휴양시설	조정								
휴양시설	정자								
휴양시설	벤치	A							12
유희시설	**소계**		**345.00**	**345.00**					**3**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345.00	345.00					
유희시설	조합 놀이대	B							1
유희시설	흔들놀이	C							2
유희시설	놀이데크								
운동시설	**소계**		**62.20**	**62.20**					**17**
운동시설	체력단련장1	①	9.50	9.50					
운동시설	체력단련장2	②	42.70	42.70					
운동시설	체력단련장3	③	10.00	10.00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D							17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교양시설	소계								1
교양시설	기념비	④							1
편익시설	**소계**								**4**
편익시설	안내판	E							4
관리시설	**소계**		**48.40**	**48.40**		**518.0m**			**110**
관리시설	완전로프	F				518.0m			
관리시설	목책벽	G	48.40	48.40					18
관리시설	돌담	H							92
관리시설	계단								
녹지 및 기타	**소계**		**1,794.92**						
녹지 및 기타	녹지		1,794.9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5호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경미한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99호(2025.12.11.)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된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어르신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구로구 고척동 62-1일원 어르신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 밀리언골프클럽
   ○ 대표자 성명 : 양재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 62-1, 62-2, 62-229
   ○ 법인등록번호 : 110111-0848907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644.0	-	5,644.0	100.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644.0	감) 5,644.0	-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644.0	5,644.0	100.0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644.0	-	5,644.0	100.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606.3	감) 5,606.3	-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7.7	-	37.7	0.7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606.3	5,606.3	99.3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8)와 구로구 주택과(02-860-29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수용인구 : 266인
   2) 주택건설계획 : 230세대

(기정)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 주택	24TYPE	42	18.26	1	42.00	15.79	-
	37TYPE	44	19.13	1	44.00	16.54	-
	51ATYPE	6	2.61	1.75	10.50	3.95	-
	소계	92	40.00	-	0.00	36.28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4TYPE	6	2.61	1	6.00	2.26	-
	33TYPE	10	4.35	1	10.00	3.76	-
	37TYPE	80	34.78	1	80.00	30.08	-
	51ATYPE	26	11.30	1.75	45.50	17.11	-
	51BTYPE	16	6.96	1.75	28.00	10.53	-
	소계	138	60.00	6.5	169.50	63.72	-
합 계		230	100.00	-	266.00	100.00	-

※ 대상지의 인구수 산정 시 2인 이상 세대(전용면적 44㎡는 이상)는 국토교통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변경)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 주택	24TYPE	38	16.52	1	38.00	14.29	-
	37TYPE	49	21.30	1	49.00	18.42	-
	51ATYPE	4	1.74	1.75	7.00	2.63	-
	소계	91	39.57	-	94.00	35.34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4TYPE	10	4.35	1	10.00	3.76	-
	33TYPE	10	4.35	1	10.00	3.76	-
	37TYPE	75	32.61	1	75.00	28.20	-
	51ATYPE	28	12.17	1.75	49.00	18.42	-
	51BTYPE	16	6.96	1.75	28.00	10.53	-
	소계	139	60.43	-	172.00	64.66	-
합 계		230	100.00	-	266.00	100.00	-

※ 대상지의 인구수 산정 시 2인 이상 세대(전용면적 44㎡는 이상)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붙임]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644.0	-	5,644.0	100.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644.0	감) 5,644.0	-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644.0	5,644.0	100.0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644.0	-	5,644.0	100.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606.3	감) 5,606.3	-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7.7	-	37.7	0.7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606.3	5,606.3	99.3	-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공공기여계획(변경)

(기정)

구 분		용적률	적용기준	적용내용	비 고
공공임대주택	기본 용적률 (부지 면적)	200% 이하	부지면적의 30% 이상 - 기준 : 1,693.2㎡이상	• 부지면적 기준 : 1,695.32㎡(30.04%) - 공공임대주택 : 1,695.32㎡(30.04%, 70세대)	총 23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92세대 계획 • 세대수 - 기본 70세대(30.43%)/ 상한 22세대(9.57%) - 총 공공기여 세대수 : 92세대(40.00%) • 부속토지 - 기본 : 1,695.32㎡(30.04%) - 상한 : 565.11㎡(10.01%) - 총 부속토지 면적 : 2,260.43㎡(40.05%)
	상한 용적률 (연면적)	250% 이하	완화용적률의 50%이상 = 50% / 2 = 25.0% 이상 - 기준 : 1,411.0㎡이상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412.21㎡(25.02%, 22세대)	

(변경)

구 분		용적률	적용기준	적용내용	비 고
공공임대주택	기본 용적률 (부지 면적)	200% 이하	부지면적의 30% 이상 - 기준 : 1,681.89㎡이상	• 부지면적 기준 : 1,685.58㎡(30.06%) - 공공임대주택 : 1,685.58㎡(30.06%, 69세대)	총 23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91세대 계획 • 세대수 - 기본 69세대(30.43%)/ 상한 22세대(9.57%) - 총 공공기여 세대수 : 92세대(40.00%) • 부속토지 - 기본 : 1,685.58㎡(30.06%) - 상한 : 562.05㎡(10.02%) - 총 부속토지 면적 : 2,247.64㎡(40.09%)
	상한 용적률 (연면적)	250% 이하	완화용적률의 50%이상 = 50% / 2 = 25.0% 이상 - 기준 : 1,401.1㎡이상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404.57㎡(25.05%, 22세대)	

5) 용적률 적용[의무사항](변경)

(기정)

구 분		기 준	적용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30%이상 □ - 대지환산면적 = 부지면적 × 기본공공기여율 : 5,644.0㎡ x 30.00% = 1,693.20㎡이상(부지면적기준)	• 기본공공기여 : 30.04%(1,695.32㎡) 〉 1,693.20㎡ 이상 - 공공임대주택 : 1,695.32㎡(30.04%) [70세대]	기본용적률 200% 상한용적률 25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 증가용적률(50%)의 50% 이상 추가 공공기여 - 용적률 : (250%-200%)/2=25% 이상 - 연면적 : 25% x 5,644.0㎡ = 1,411.0㎡ 이상	• 추가공공기여 : 1,412.21㎡〉 1,411.0㎡이상 - 공공임대주택 : 1,412.21㎡(25.02%) [22세대]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3㎡ ~ 60㎡ - 1인 세대 : 전용면적 23㎡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면적 44㎡ 이상(2룸 이상) 권장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세대수기준: 40.00% : 60.00% - 주택 연면적 기준 : 34.64% : 65.36% • 공공임대 : 92세대 - 24TYPE(42세대), 37TYPE(44세대), 51ATYPE(6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38세대 - 24TYPE(6세대), 33TYPE(10세대), 37TYPE(80세대), 51ATYPE(26세대), 51BTYPE(16세대)	
건축물 형태	미래형 지향적 주거환경 조성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상생형 임차시설 설치 - 공공시설물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 상생형 임차시설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4 - 100호 이상 300호 미만 : 150㎡ 이상	• 462.29㎡ 계획(전체 230세대)	

구 분	기 준	적용내용	비 고
건축계획	• 무장애 설계 :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 첨단 특화설계 : 스마트기기와 연결한 IoT서비스, 침실 및 화장실 등 비상벨 • 필요 시설 설치 : 5,000㎡이상 보건지소 또는 복지시설 등 우선검토, 150호 이상 식사지원을 위한 식당 설치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첨단 특화설계 •지하 1층 식당 설치	

※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변경)

구 분		기 준	적용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30%이상 □ - 대지환산면적 = 부지면적 × 기본공공기여율 : 5,606.3㎡ x 30.00% = 1,681.89㎡이상(부지면적기준)	• 기본공공기여 : 30.06%(1,685.58㎡) 〉 1,681.89㎡ 이상 - 공공임대주택 : 1,685.58㎡(30.06%) [69세대]	기본용적률 200% 상한용적률 25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 증가용적률(50%)의 50% 이상 추가 공공기여 - 용적률 : (250%-200%)/2=25% 이상 - 연면적 : 25% x 5,606.3㎡ = 1,401.1㎡ 이상	• 추가공공기여 : 1,404.57㎡〉 1,401.1㎡이상 - 공공임대주택 : 1,404.57㎡(25.05%) [22세대]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3㎡ ~ 60㎡ - 1인 세대 : 전용면적 23㎡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면적 44㎡ 이상(2룸 이상) 권장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세대수기준: 39.57% : 60.43% - 주택 연면적 기준 : 33.56% : 63.88% • 공공임대 : 91세대 - 24TYPE(38세대), 37TYPE(49세대), 51ATYPE(4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39세대 - 24TYPE(10세대), 33TYPE(10세대), 37TYPE(75세대), 51ATYPE(28세대), 51BTYPE(16세대)	
건축물 형태	미래형 지향적 주거환경 조성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상생형 임차시설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구 분		기 준	적용내용	비 고
		- 상생형 임차시설 설치 - 공공시설물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4 - 100호 이상 300호 미만 : 150㎡ 이상	• 462.29㎡ 계획(전체 230세대)	
건축계획		• 무장애 설계 :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 첨단 특화설계 : 스마트기기와 연결한 IoT서비스, 침실 및 화장실 등 비상벨 • 필요 시설 설치 : 5,000㎡이상 보건지소 또는 복지시설 등 우선검토, 150호 이상 식사지원을 위한 식당 설치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첨단 특화설계 •지하 1층 식당 설치	

※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Ⅲ. 방재계획(변경없음)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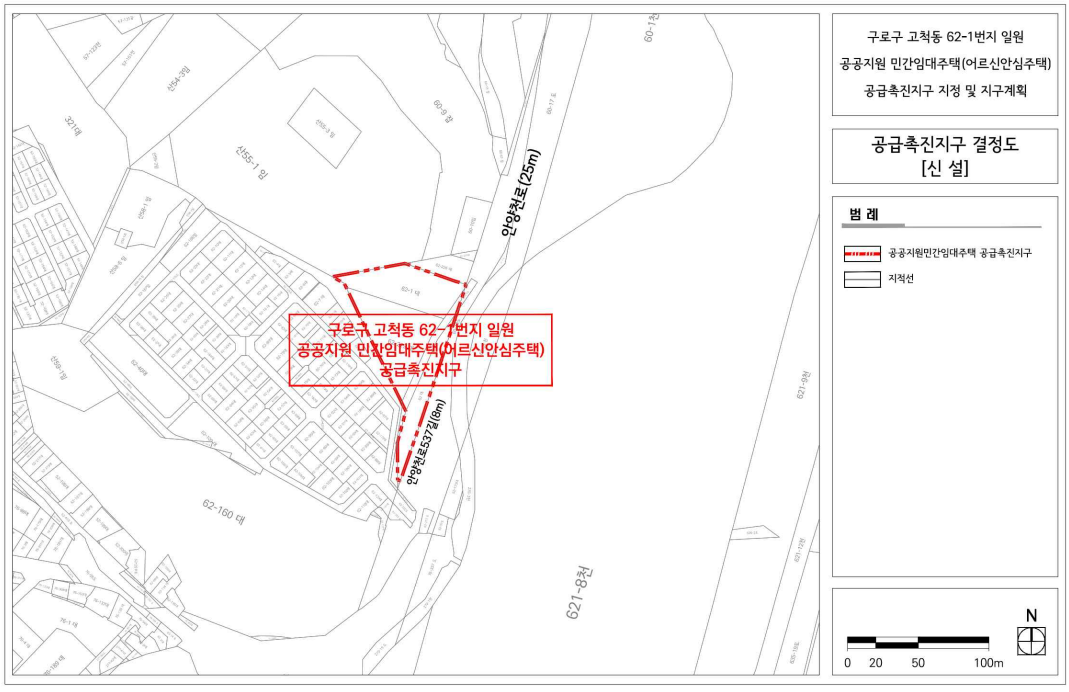
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Ⅵ.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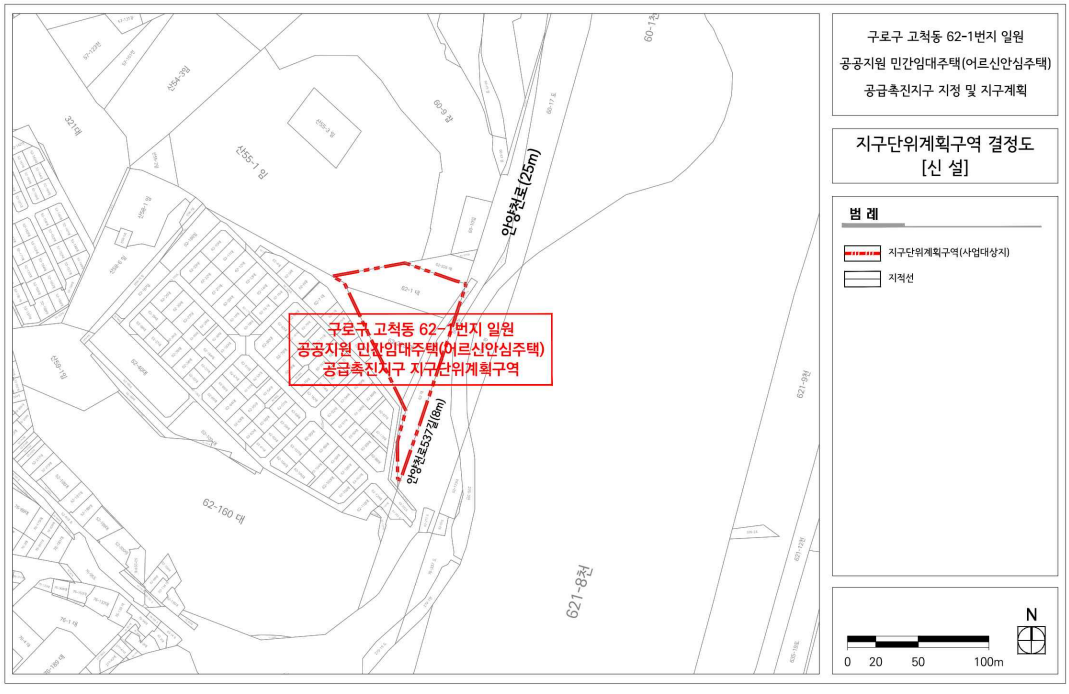
Ⅶ.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계획(변경없음)

Ⅶ. 관계도면

■ 공급촉진지구 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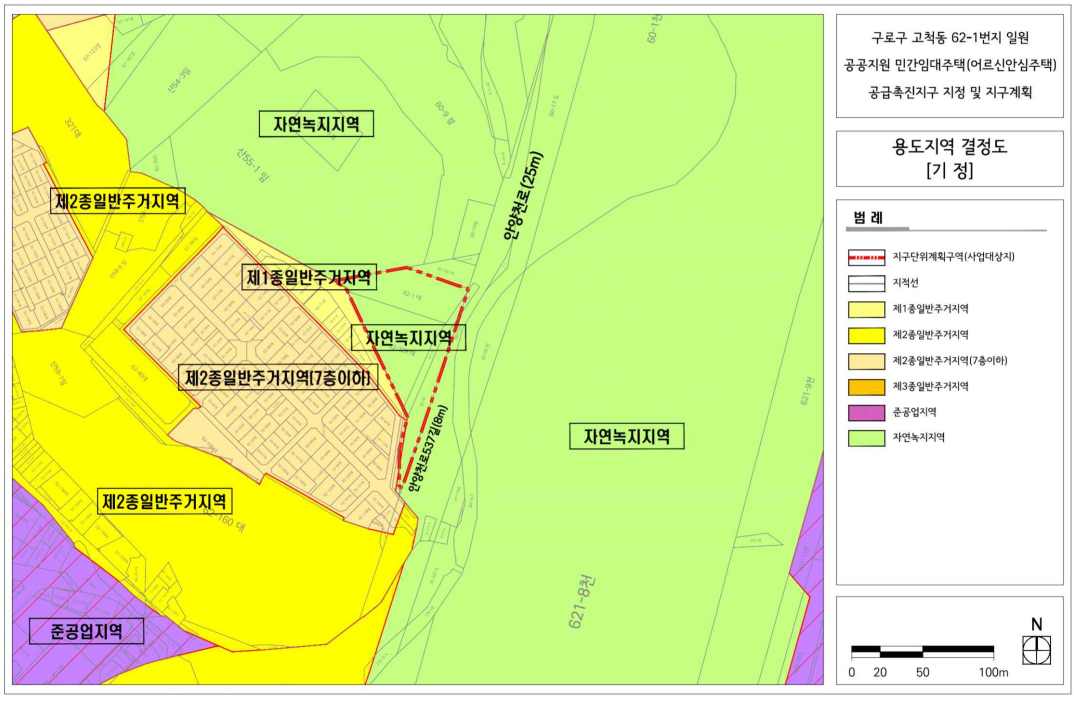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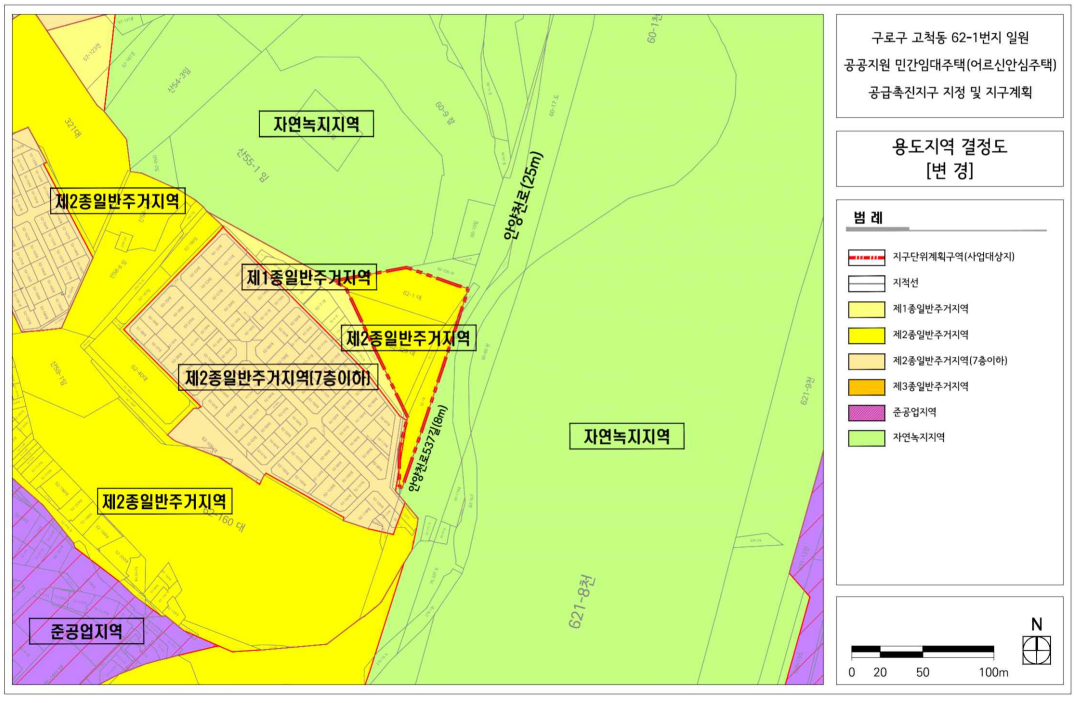


Ⅶ.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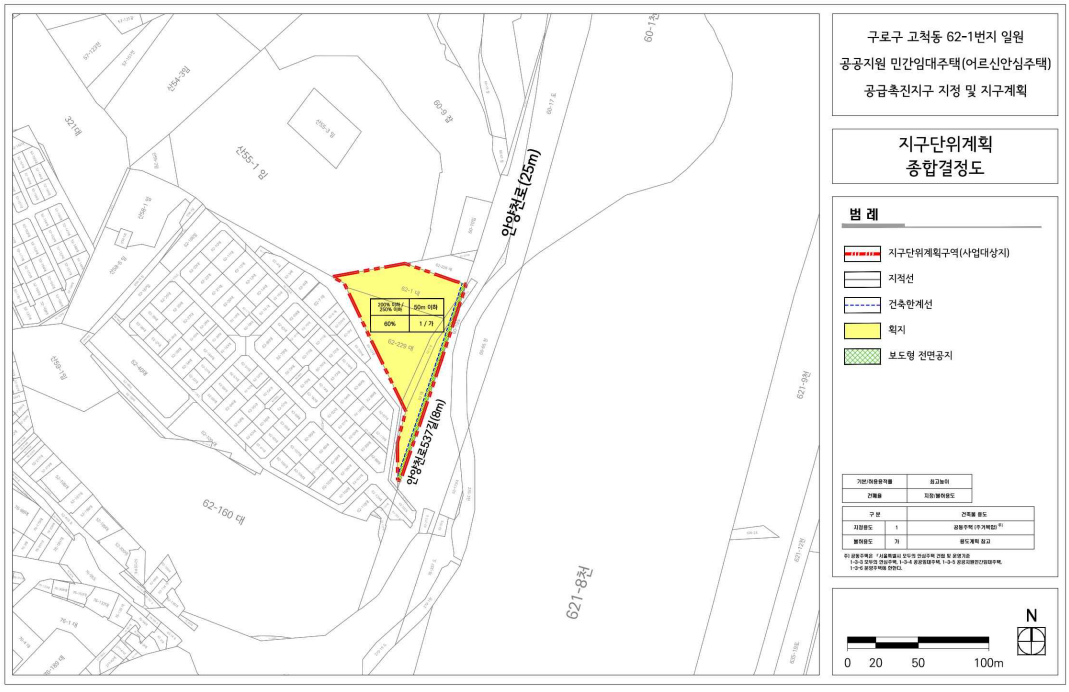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00호(2025.12.1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안심주택) 주택건설사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8조, 제33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 밀리언골프클럽	양재양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 62-1, 62-2, 62-229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8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5,644.0㎡
 다. 건 폐 율 : 43.77% (건축면적 : 2,470.35㎡)
 라. 용 적 률 : 249.9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4,104.36㎡)
 마. 용 도 :
  - (기정) 공동주택(공공임대 92세대/민간임대 138세대), 근린생활시설
  - (변경) 공동주택(공공임대 91세대/민간임대 139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규 모 : 1개동, 지하3층/지상13층, 연면적 22,855.97㎡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 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내무부고시 제449호(1958.11.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8호(1971.04.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147호(1986.04.10.)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강동구고시 제2015-65호(2015.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호(2016.01.14.)로 실시계획인가되고 강동구 고시제2017-29호(2017.03.09.)로, 및 강동구고시 제2022-154호(2022.09.2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4호(2017.06.01.)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6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40호(2019.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2호(2024.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2호(2025.02.0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및 열람 공고를 완료(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590호,2025.12.26.)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광장)사업
- ○ 명 칭 :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 폭원50~93m, 연장 1,940m(변경없음)
면적 : 29,238㎡(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25(영동스마트타워3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 사업기간(변경)

당초 :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일 ~ 2025. 12. 30.
변경 :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일 ~ 2026. 03. 30.

- 변경사유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행기간 변경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2팀(☎031-790-7311)

아.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변경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2팀(☎031-790-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9호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 면 적 : 1,620.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6년 1월 22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신중앙
   ○ 대표자 성명 : 김 현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0, 상가동 제비101호-8X
   ○ 법인등록번호 : 124411-0360470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본번	부번						
1	방화동	555	10	대	1,345.0	1,345.0	대지권설정	-	-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본번	부번						
2	방화동	555	19	대	271.0	271.0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
3	방화동	555	25	답	4.0	4.0	서울특별시	-	-
합계					1,620.0	1,620.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사용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본번	부번							
1	방화동	555	10	대	1982.02.03	1,069.88	3	1	대지권설정	가동
2	방화동	555	10	대	1982.02.03	660.5	3	1	대지권설정	나동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20.0	-	1,620.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20.0	감) 1,620.0	-	-	-
	준주거지역	-	증) 1,620.0	1,620.0	100.0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	증) 1,620.0	1,620.0	-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8)와 강서구 건축과(02-2600-68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 면 적 : 1,620.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을 제안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식회사 신중앙

○ 대표자 성명 : 김 현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0, 상가동 제비101호-8X

○ 법인등록번호 : 124411-0360470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촉진지구 지정일 ~ 2029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금융기관 조달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유형	주택유형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1,620.0	100.0	-
	소계	1,620.0	100.0	-
합계		1,620.0	100.0	-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144인

2) 주택건설계획 : 72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	46.99	10	13.9	2.65	26.5	13.9	-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주택	51.74	5	6.9	2.65	13.25	6.9	-
	소계	15	20.8	-	39.75	20.8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51.74	4	5.6	2.65	10.6	5.6	-
	52.06	2	2.8	2.65	5.3	2.8	-
	52.17	2	2.8	2.65	5.3	2.8	-
	52.31	10	13.9	2.65	26.5	13.9	-
	53.13	14	19.4	2.65	37.1	19.4	-
	56.58	4	5.5	2.65	10.6	5.5	
	소계	36	50.0	-	95.4	50	-
민간분양	56.58	2	2.8	2.65	5.3	2.8	
	57.66	9	12.5	2.65	23.85	12.5	
	59.92	10	13.9	2.65	26.5	13.9	
	소계	21	29.2	-	55.65	29.2	
합 계		72	100.00	-	190.8	100.00	-

※ 대상지의 인구수 산정 시 2인 이상 세대(전용면적 44㎡는 이상)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비오톱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 및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실시하여 생태환경 향상 도모
- 대상지내 건축물은 골프연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마련 및 녹지체계 구축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획 및 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 이행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대상지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 기대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통해 보행동선을 확뽀하고 자건거 등을 통한 녹색교콩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
- 자전거 보관소, 나눔카, PM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충분한 녹지조성, 투수성포장재료의 사용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실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조성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붙임]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	증) 1,620.0	1,62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사유
신설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20.0	-	1,620.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20.0	감) 1,620.0	-	-	-
	준주거지역	-	증) 1,620.0	1,620.0	100.0	-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620.0	• 신혼부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1,620.0	-

■ 획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내용	결정사유
-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1,620.0	• 획지 지정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 지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계획내용	비 고
용도	지정용도	1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불허용도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 관련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1-3-6 공공임대주택 1-3-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3-8 분양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 신혼부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제6호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이하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이하] -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높 이	• 40m 이하	-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사유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 신혼부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최고높이	• 40m 이하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 기준에 따른 계획높이 산정

3)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구 분		기 준	적용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5%이상 - 대지환산면적 = 부지면적 X 기본공공기여율 : 1,620.0㎡ x 15.00% = 243㎡이상(부지면적기준)	• 기본공공기여 : 16.3%(264.36㎡) > 243㎡ 이상 - 공공임대주택 : 264.36㎡(16.3%) [15세대]	용적률 398.75% 적용 (기본용적률 이내)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비주거비율		•5% 이상(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 = 86.04% : 13.96%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규모	• 전용면적 44㎡ ~ 60㎡이상(2룸 이상) 권장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민간분양 - 세대수기준 : 20.8% : 50.0% : 29.2% - 주택 연면적 기준 : 18.9% : 49.1% : 32% • 공공임대 : 15세대 - 46TYPE(10세대), 51TYPE(5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36세대 - 51TYPE(4세대), 52TYPE(2세대), 52TYPE(2세대), 52TYPE(10세대), 53TYPE(14세대), 56TYPE(4세대) • 민간분양 : 21세대 - 56TYPE(2세대), 57TYPE(9세대), 59TYPE(10세대)	
건축물 형태	미래형 지향적 주거환경 조성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상생형 임차시설 설치 - 공공시설물 설치	• 친환경 건축물 • 상생형 임차시설 설치 - 스터디카페 : 192.1㎡	

구 분		기 준	적용내용	비 고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5-14 - 100호 미만 : 100㎡ 이상	• 128.85㎡ 계획(전체 72세대) - 지상 3층 : 주민카페, 어린이놀이방	

※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4-1 준용

4)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양천로10길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참고
	• 금낭화로13길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 양천로14길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한계선 지정	• 원활한 보행을 위하여 북측 금낭화로13길로변 1.5m, 서측 양천로10길로 및 동측 양천로14길로변 1m 건축한계선 지정

5) 공공기여계획

구 분		용적률	적용기준	적용내용	비 고
공공임대주택	기본 용적률 (부지 면적)	400% 이하	• 부지면적의 15% 이상 - 기준 : 243㎡이상	• 부지면적 기준 : 264.36㎡(16.3%) - 공공임대주택 : 264.36㎡(16.3%)[15세대]	총 72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5세대 계획 • 세대수 - 기본 15세대(20.8%) - 총 공공기여 세대수 : 15세대(20.8%) • 부속토지 - 기본 : 264.36㎡(16.3%) - 총 부속토지 면적 : 264.36㎡(16.3%)
	상한 용적률 (연면적)	500% 이하	-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양천로10길로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1m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참조
	금낭화로13길로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1.5m	
	양천로14길로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1m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양천로10길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금낭화로13길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 양천로14길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대상지가 접한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지정 부분의 보도형 전면공지 확보

5.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받는 사항

구분	완화내용	대상지 적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최고높이 계획기준 완화	해당없음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최고높이	• 최고높이 계획기준 완화	해당없음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해당없음
비주거용도 위치 및 비율	•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비주거 비율은 기존 건물을 존치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비주거 용도 비율 완화	해당없음

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Ⅲ. 방재계획

1. 하천재해 : 해당없음
2. 사면재해 : 해당없음
3. 토사재해 : 해당없음
4. 바람재해 : 「국가건설기준 KSD 41 10 05 : 2019, 국토교통부의 내풍설계기준적용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본번	부번						
1	방화동	555	10	대	1,345.0	1,345.0	대지권설정	-	-
2	방화동	555	19	대	271.0	271.0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
3	방화동	555	25	답	4.0	4.0	서울특별시	-	-
합계					1,620.0	1,620.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본번	부번									
1	방화동	555	10	대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연립주택	1982.02.03	1,069.88	3	1	대지권설정	가동
2	방화동	555	10	대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연립주택	1982.02.03	660.5	3	1	대지권설정	나동

3. 토지취득방법 : 사업대상지 전체(3필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시행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Ⅵ.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요건에 적합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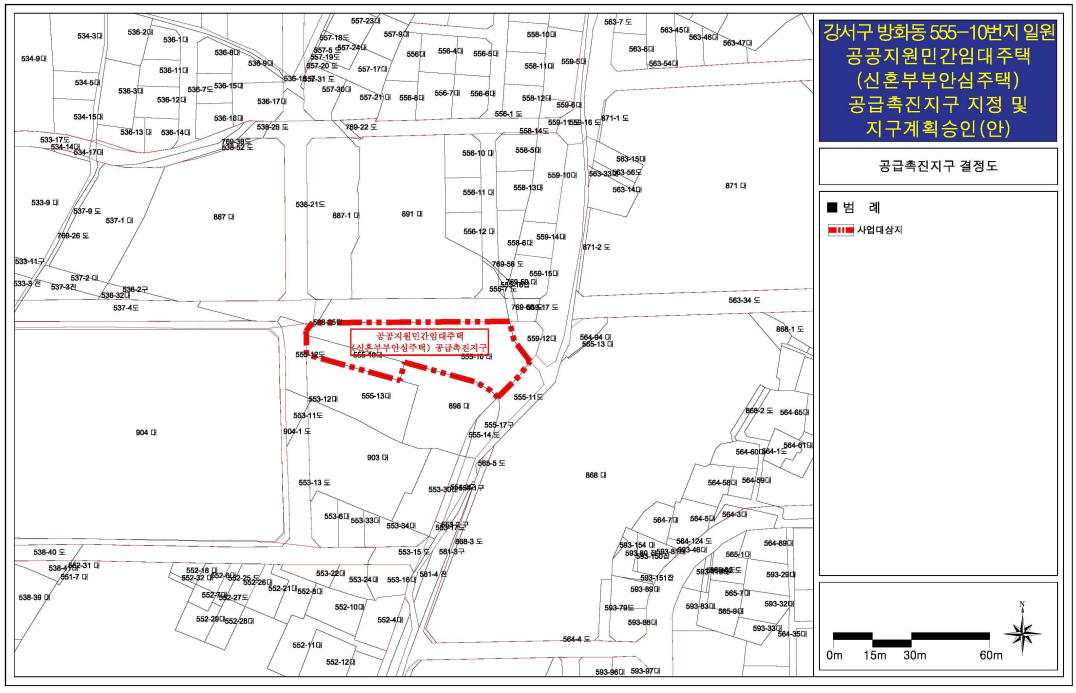
Ⅶ.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계획

■ 조성토지 공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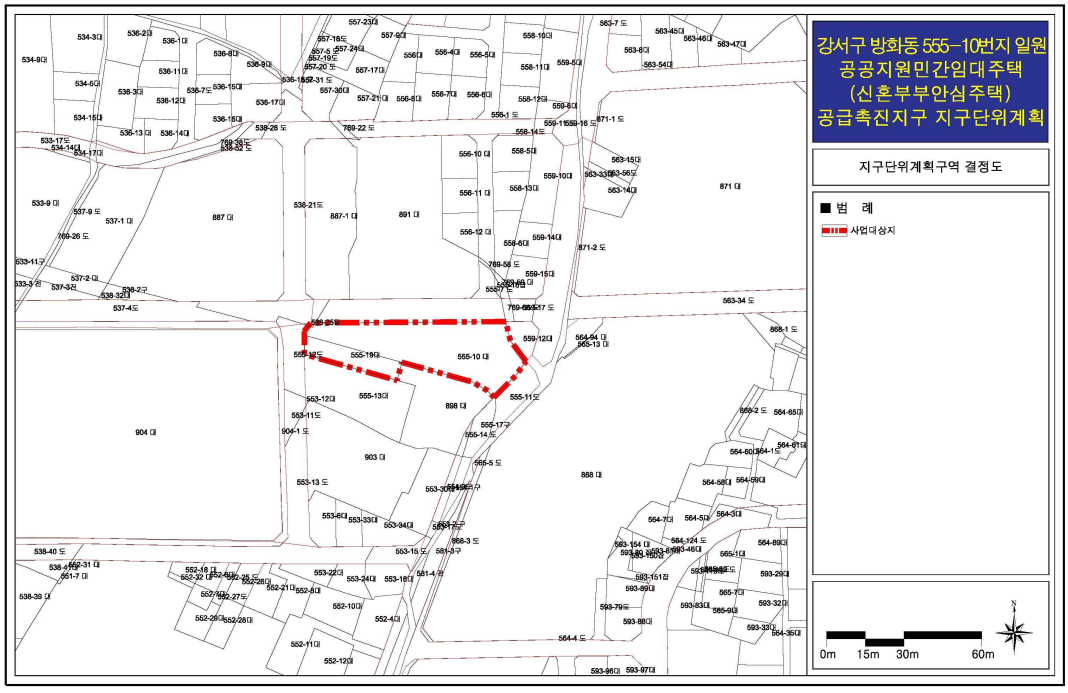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조성토지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 면적 : 1,620㎡
조성토지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 공공임대주택 : 구분지상권 및 부속토지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기타시설 : 사업시행자 자체 사용
공급시기 및 방법	• 준공 후 사업시행자 및 관계시설 인수자에게 공급
공급가격 결정방법	• 공공임대주택 : 조성원가 • 근린생활시설 : 준공 후 일반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조성원가 100% 기준으로 공급가격 결정

Ⅶ.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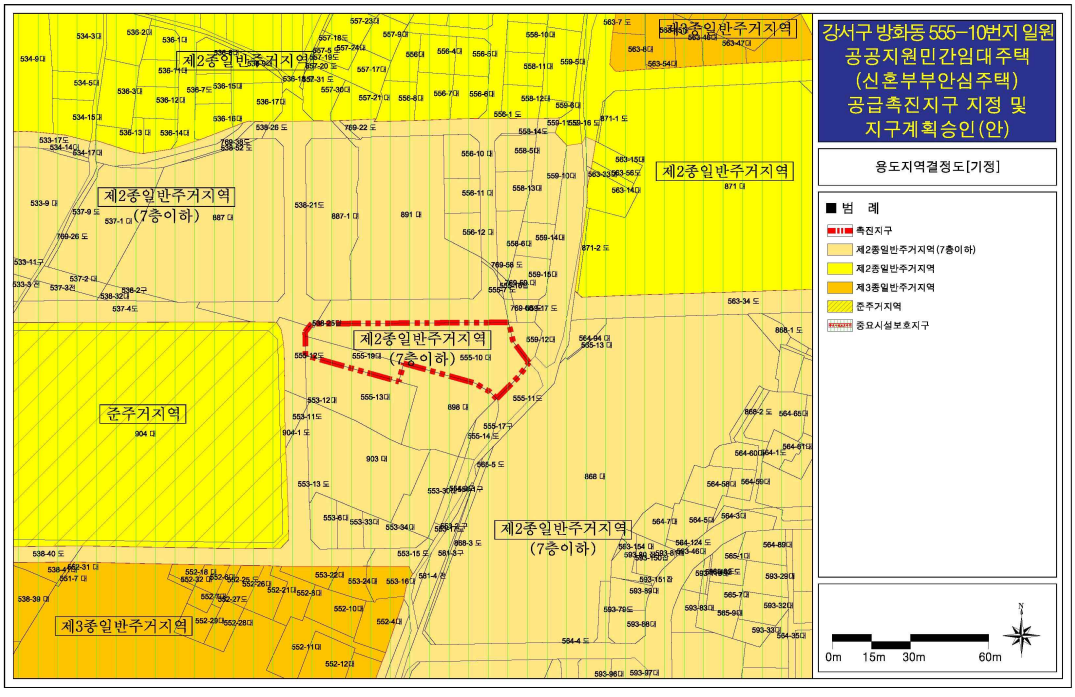
■ 공급촉진지구 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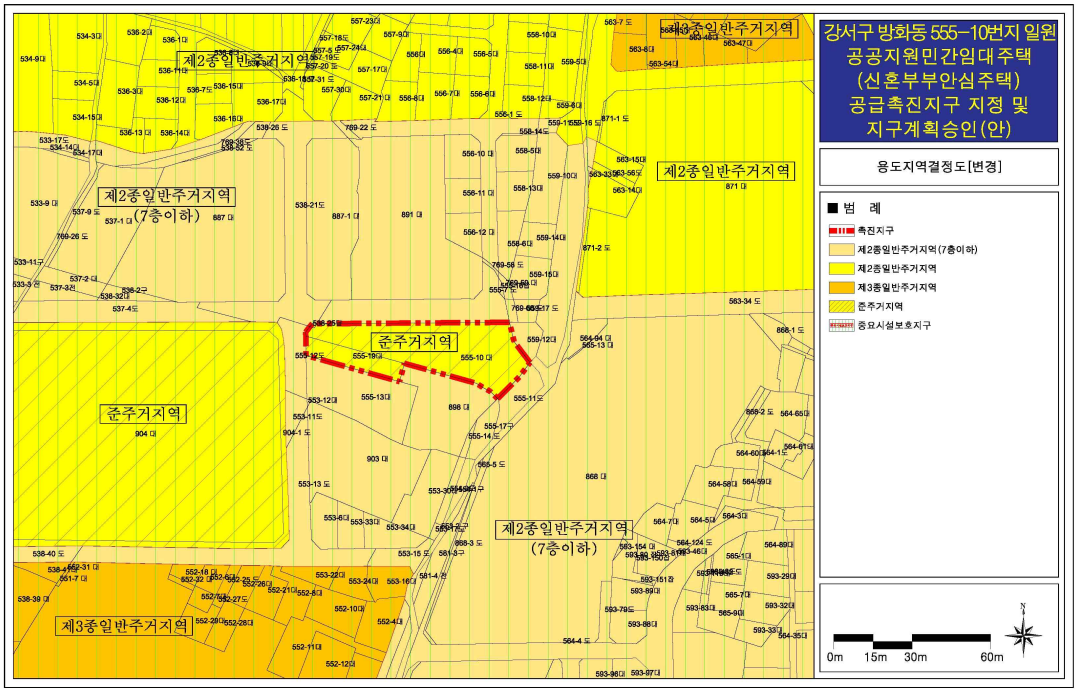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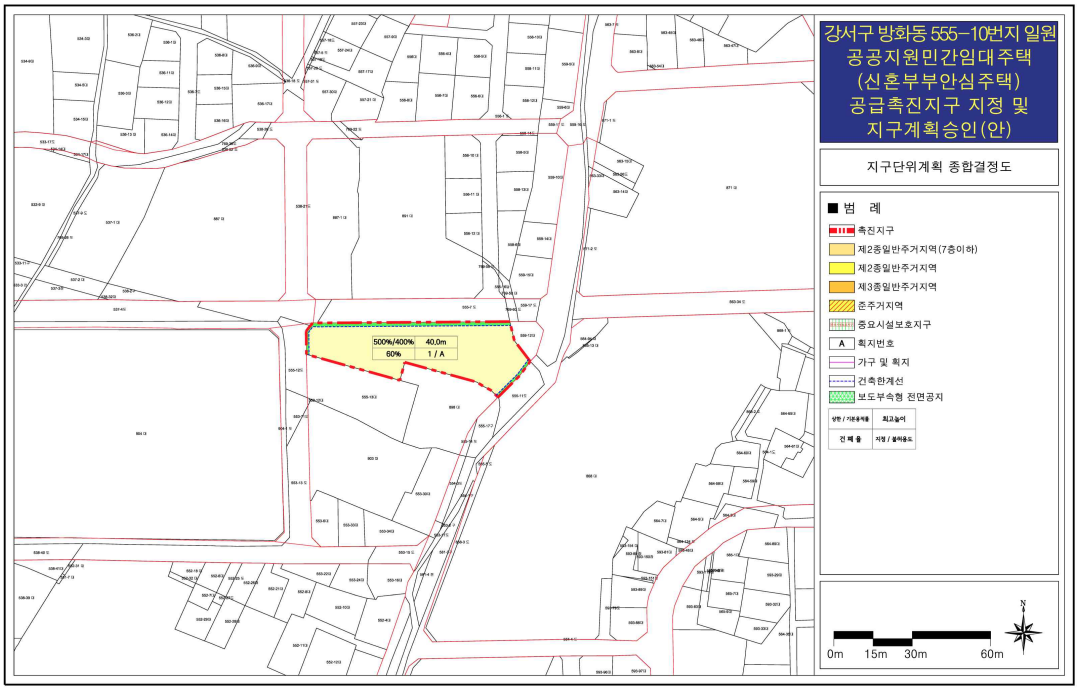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391호(1991.12.3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7호(2019.07.0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36호(2021.07.08.)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및 변경한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를 완료(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61호(2025.12.26.))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사업
 ○ 명칭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신내동
다.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 화랑로 진입램프 : 폭 5.0m, 연장 640.8m
 ○ 신내로 진출램프 : 폭 5.0m, 연장 791.2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2019년 05월 08일 ~ 2024년 12월 31일
 ○ 변경 : 2019년 05월 08일 ~ 2026년 05월 31일
바. 변경사유 : 광역 상수도이설 및 강제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준공기한 연기
사.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8)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6438-2125)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 열람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1호

향림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22호(1997.2.13.)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73호(2022.02.24.)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향림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향림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관리실 증축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52 일대
3. 공원면적 : 202,993.0㎡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1-8017)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향림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은평구 진관동 산52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02,993.0	37,530.0	7	3,088.1	12,440.8	74	202,993.0	37,530.0	7	3,150.5	12,632.6	74	
기반시설	소 계	9,343.0	9,343.0	-	-	-	-	9,257.0	9,257.0	-	-	-	-	
	도 로	8,051.0	8,051.0	-	-	-	-	7,965.0	7,965.0	-	-	-	-	도로 감 86㎡
	광 장	1,292.0	1,292.0	-	-	-	-	1,292.0	1,292.0	-	-	-	-	
조경시설		2,035.0	2,035.0	-	-	-	15	2,035.0	2,035.0	-	-	-	15	
유희시설		1,241.0	1,241.0	-	-	-	25	1,241.0	1,241.0	-	-	-	25	
휴양시설		131.0	131.0	-	-	-	-	131.0	131.0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15,452.0	15,452.0	1	2,488.5	8,044.5	19	15,452.0	15,452.0	1	2,488.5	8,044.5	19	
교양시설	6,380.0	6,380.0	-	-	-	-	6,380.0	6,380.0	-	-	-	-	
편익시설	2,330.0	2,330.0	3	97.4	3,894.1	2	2,330.0	2,330.0	3	97.4	3,894.1	2	
관리시설	793.0	618.0	3	502.2	502.2	13	879.0	704.0	3	564.6	694.0	13	관리시설 증 86㎡ 관리실 2-3 증 62.4㎡ (건축면적)
녹지 및 기타	165,288.0	-	-	-	-	-	165,288.0	-	-	-	-	-	
시설율 (법정 40%)	(37,530㎡ / 202,993㎡) × 100% = 18.49%						(37,530㎡ / 202,993㎡) × 100% = 18.49%						
건폐율 (법정 10%)	(3,088.1㎡ / 202,993㎡) × 100% = 1.52%						(3,150.5㎡ / 202,993㎡) × 100% = 1.55%						
특정 시설율 (법정 20%)	(15,452㎡ / 37,530㎡) × 100% = 41.17%						(4,610.0㎡ / 37,530㎡) × 100% = 12.28%						

나.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02,993	37,530		7	3,088.1	12,440.8	74			202,993	37,530		7	3,150.5	12,632.6	74	
기반시설	소 계			9,343	9,343								9,257	9,257						
	도 로		전지역	8,051	8,051							전지역	7,965	7,965						도로 감 86㎡
	광 장	가	7개소	1,292	1,292						가	7개소	1,292	1,292						
		가-1	진관외동 산19	424	424						가-1	진관외동 산19	424	424						
		가-2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515	515						가-2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515	515						
		가-3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21	21						가-3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21	21						
		가-4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16	16						가-4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16	16						
		가-5	불광동 458-2	243	243						가-5	불광동 458-2	243	243						
		가-6	불광동 467-1	34	34						가-6	불광동 467-1	34	34						
		가-7	불광동 457	39	39						가-7	불광동 457	39	39						

구분		변전								정						변						정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계			2,035	2,035					15			2,035	2,035					15	
파고라		①	10개소							13	①	10개소							13	
		①-1	진관외동 240-20 외 1			목재				2	①-1	진관외동 240-20 외 1			목재				2	
		①-3	진관외동 189-3							1	①-3	진관외동 189-3							1	
		①-4	불광동 산156-1							1	①-4	불광동 산156-1							1	
		①-6	진관외동 산19-5							1	①-6	진관외동 산19-5							1	
		①-8	진관동 산109-25 일원							2	①-8	진관동 산109-25 일원							2	
		①-9	진관동 산109-25 일원							1	①-9	진관동 산109-25 일원							1	
		①-10	불광동 463-2							2	①-10	불광동 463-2							2	
		①-11	불광동 산152							1	①-11	불광동 산152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①-12	불광동 458-2							1	①-12	불광동 458-2							1	
		①-13	불광동 458-2							1	①-13	불광동 458-2							1	
	쉘터	②	진관동 산109-25							1	②	진관동 산109-25 일원							1	
	돌담	④	진관동 산109-25							1	④	진관동 산109-25							1	
	연못	거	4개소	986	986						거	4개소	986	986						
		거-1	불광동 459-5	188	188						거-1	불광동 459-5	188	188						
		거-2	불광동 464	28	28						거-2	불광동 464	28	28						
		거-3	불광동 458-1	253	253						거-3	불광동 458-1	253	253						
		거-4	불광동 457	517	517						거-4	불광동 457	517	517						
	습지원	너	불광동 457	749	749						너	불광동 457	749	749						
	계류	더	불광동 458-1 일원	300	300						더	불광동 458-1 일원	300	300						
휴양	소 계			1,241	1,241					25			1,241	1,241					2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휴게소	나	6개소	1,039	1,039						나	6개소	1,039	1,039						
		나-4	불광동 산152	73	73						나-4	불광동 산152	73	73						
		나-5	〃	93	93						나-5	〃	93	93						
		나-6	불광동 458-2	194	194						나-6	불광동 458-2	194	194						
		나-7	불광동 산463-2	100	100						나-7	불광동 산463-2	100	100						
		나-8	불광동 산458-2	72	72						나-8	불광동 산458-2	72	72						
		나-9		507	507						나-9		507	507						
	쉼터	러	2개소	202	202						러	2개소	202	202						
		러-1	진관동 367	95	95						러-1	진관동 367	95	95						
		러-2	진관동 367-6	107	107						러-2	진관동 367-6	107	107						
	평의자	⑥	3개소			목재				13	⑥	3개소			목재				13	
		⑥-1	진관동 산109-25 일원							4	⑥-1	진관동 산109-25 일원							4	

구분		변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⑥-2	〃							3	⑥-2	〃							3	
		⑥-3	불광동 458-1 일원							6	⑥-3	불광동 458-1 일원							6	
	앉음벽	⑦	3개소							12	⑦	3개소							12	
		⑦-1	진관동 산109-25 일원		조적					1	⑦-1	진관동 산109-25 일원		조적					1	
		⑦-2	불광동 458-1 일원							10	⑦-2	불광동 458-1 일원							10	
	스탠드	⑦-3	불광동 458-2							1	⑦-3	불광동 458-2							1	
하수시설	소계			131	131								131	131						
	전통놀이장	카	불광동 463-2전	131	131						카	불광동 463-2전	131	131						
하수시설	소계			15,452	15,452		1	2,488.5	8,044.5	19			15,452	15,452		1	2,488.5	8,044.5	1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테니스장	라	진관외동 산245-4 외 3	1,600	1,600						라	진관외동 산245-4 외 3	1,600	1,600						
축구장	마	진관외동 242-6 외	7,600	7,600						마	진관외동 242-6 외	7,600	7,600						
배드민턴장	아	불광동 21-1 외	480	480						아	불광동 21-1 외	480	480						
배드민턴지주	⑧	불광동 21-1 외							8	⑧	불광동 21-1 외							8	
체력단련장	자	3개소	558	558						자	3개소	558	558						
	자-7	불광동 산19-3	343	343						자-7	불광동 산19-3	343	343						
	자-9	진관동 산109-25 일원	131	131						자-9	진관동 산109-25 일원	131	131						
	자-11	진관외동 242-6 외	84	84						자-11	진관외동 242-6 외	84	84						
체력단련시설	⑨	2개소							11	⑨	2개소							11	
	⑨-1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6	⑨-1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6	

구분		변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⑨-2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5									5	
구민체육센터		1	진관외동 산242-23	4,610	4,610	철근콘크리트	1	2,488.5	8,044.5											
다목적 운동장		차	불광동 458-2전	604	604															
소계				6,380	6,380								6,380	6,380						
야생초 화루원		타	진관외동 산19-5	957	957								957	957						
체험장	교육시설	파	9개소	5,423	5,423								5,423	5,423						
		파-1	불광동 466-3	3,593	3,593								3,593	3,593						
		파-2	불광동 464	187	187								187	187						
		파-3	불광동 467-1	143	143								143	143						
		파-4	불광동 460-1	127	127								127	127						
		파-5	불광동 458-1	406	406								406	406						
		파-6	불광동 458-1	602	602								602	602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파-7	불광동 463-2	158	158						파-7	불광동 463-2	158	158						
		파-8	불광동 466	84	84						파-8	불광동 466	84	84						
		파-9	불광동 463-3	123	123						파-9	불광동 463-3	123	123						
편의시설	소 계			2,330	2,330		3	97.4	3,894.1	2			2,330	2,330		3	97.4	3,894.1	2	
	주차장	하	5개소	2,232	2,232		2		3,796.7	2	하	5개소	2,232	2,232		2		3,796.7	2	
		하-1	진관외동 242-9	1,450	1,450						하-1	242-9	1,450	1,450						
		하-2	테니스장 지하		(803)		1		802.7	1	하-2	테니스장 지하		(803)		1		802.7	1	
		하-3	축구장 지하		(2,994)		1		2,994.0	1	하-3	축구장 지하		(2,994)		1		2,994.0	1	
		하-4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349	349						하-4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349	349						
		하-6	불광동 457	433	433						하-6	불광동 457	433	433						
	화장실	3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98	98		1	97.4	97.4		3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98	98		1	97.4	97.4		
관리시설	소 계			793	618		3	502.2	502.2	13			879	704		3	564.6	694.0	13	
	관리실	2	3개소	760	585		3	502.2	502.2	1	2	3개소	846	671		3	564.6	694.0	1	

구분		변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녹지 및 기타		2-1	진관외동 산184-3	158	158	철근콘크리트	1	99.0	99.0	1	2-1	진관외동 산184-3	158	158	철근콘크리트	1	99.0	99.0	1	
		2-2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263	263		1	262.8	262.8		2-2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263	263		1	262.8	262.8		
		2-3	불광동 462-2전	339	164	철근콘크리트	1	140.4	140.4		2-3	불광동 462-1대	425	250	철근콘크리트	1	202.8	332.2		관리시설 등 86㎡
	휴지통	⑩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2	⑩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2	
	공원 안내판	⑪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2	⑪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2	
	시설 안내판	⑫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3	⑫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3	
	공원등	⑬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4	⑬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4	
	농기구 관리실	4	불광동 466-1	33	33					1	4	불광동 466-1	33	33					1	
	소 계			165,288									165,288							
	녹지 및 기타			165,288									165,288							

다.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857.0	8,051.0				
변경					3,789.0	7,965.0				
당초	소로	소 계			71.0	359.0				
변경					71.0	359.0				
당초		3	1	5	71.0	359.0	연결로	불광동 43-1	불광동 산6-1	
변경		3	1	5	71.0	359.0	연결로	불광동 43-1	불광동 산6-1	
당초	산책로	소 계			3,786.0	7,692.0				
변경					3,718.0	7,606.0				
당초			4	2	401.0	803.0	산책로	진관동 364	산책로 5	
당초			5	2	452.0	904.0	산책로	불광동 473	진관동 산52	
당초			9	2	65.0	130.0	산책로	진관동 125-1	진관동 125-1	
당초			11	2	7.0	15.0	부진입로	진관동 산21-1	진관동 산52	
당초			13	2	67.0	114.0	연결로	산책로 5	진관동 산52-3	
당초			15	2	433.0	867.0	산책로	광장(가-1)	소로3-1	
당초			17	2	77.0	135.0	산책로	불광동 산4-5	불광동 산109-42	
당초			20	2	173.0	347.0	산책로	구민체육센터(1)	진관동 산54-10	
당초			25	2	12.0	25.0	산책로	광장(가-2)	산책로26	
당초			26	2	136.0	273.0	산책로	산책로25	진관동 산125-1	
당초			28	2	15.0	31.0	산책로	산책로15	불광동 산6-10	
당초			29	2	59.0	119.0	산책로	휴게소(나-9)	불광동 산109-22	
당초			30	2	63.0	127.0	산책로	휴게소(나-9)	산책로32	
당초			31	2	37.0	75.0	산책로	휴게소(나-9)	산책로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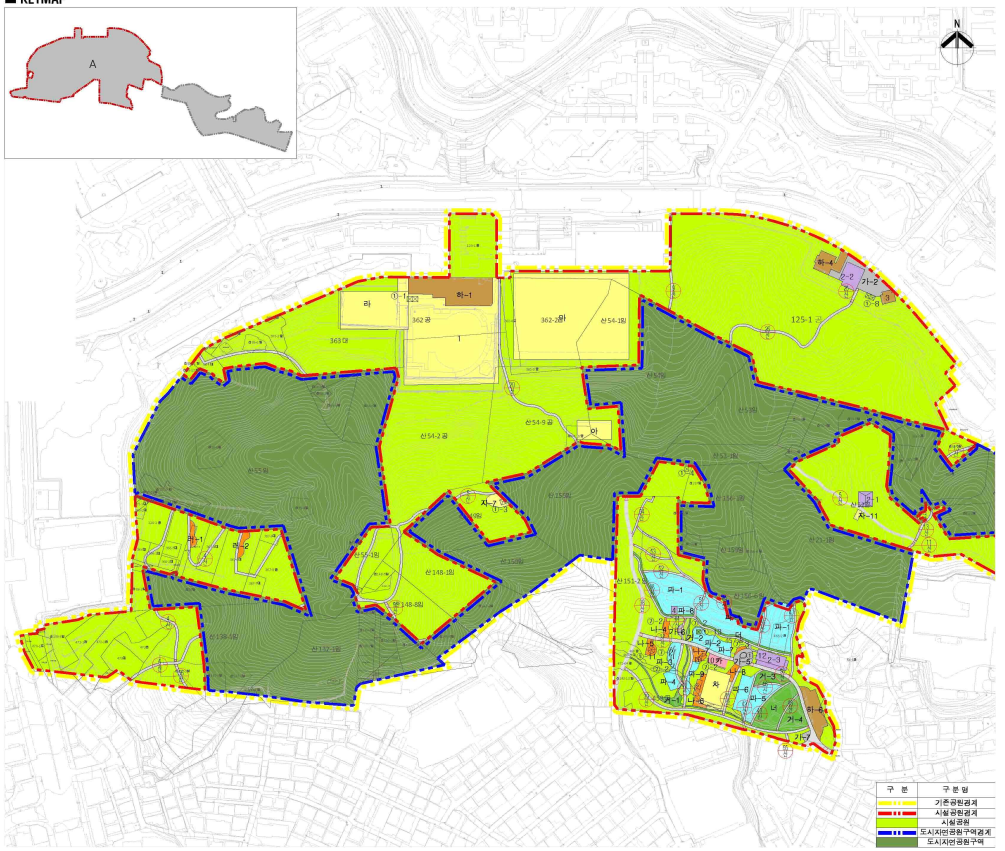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2	2	122.0	345.0	산책로	불광동 산109-47	산책로15	
당초			34	2	223.0	446.0	산책로	소로3-1	불광동 산109-42	
당초			36	3	140.0	420.0	산책로	불광동 457	광장(가-5)	
당초			37	3	84.0	252.0	산책로	광장(가-5)	산책로38	
당초			38	3	178.0	534.0	산책로	불광동 산143-13	불광동 산155	
당초	산책로		39	2	177.5	355.0	산책로	산책로36	산책로38	
당초			40	2	55.0	110.0	산책로	산책로39	산책로37	
당초			41	2	44.5	89.0	산책로	산책로39	광장(가-5)	
당초			42	1.5	51.0	76.0	산책로	산책로39	산책로36	
당초			43	1.5	52.0	78.0	산책로	산책로39	산책로36	
당초			44	1.5	20.0	30.0	산책로	산책로37	산책로48	
당초			45	1.5	38.0	57.0	산책로	산책로39	산책로36	
당초			46	1.5	25.0	38.0	산책로	산책로43	산책로42	
당초			47	1.5	63.0	95.0	산책로	산책로36	불광동 산21-1	
변경			47	1.5	63.0	113.0	산책로	산책로36	불광동 산21-1	증 18㎡
당초			48	1.5	177.0	266.0	산책로	산책로47	산책로38	
변경			48	1.5	143.0	213.0	산책로	산책로47	산책로38	감 53㎡
당초			49	1.5	104.0	156.0	산책로	산책로47	산책로54	
당초			50	1.5	34.0	51.0	산책로	산책로48	산책로49	
폐지			50	-	-	-	-	-	-	감 51㎡
당초			51	1.5	26.0	39.0	산책로	산책로48	산책로49	
당초			52	1.5	45.0	68.0	산책로	산책로49	산책로48	
당초			53	1.5	35.0	53.0	산책로	산책로49	산책로38	
당초			54	1.5	43.0	64.0	산책로	산책로38	불광동 산151-2	
당초			55	2	7.0	14.0	산책로	산책로39	불광동 459	
당초			56	2	22.0	45.0	산책로	산책로5	불광동 산137-3	
당초			57	2	23.0	46.0	산책로	산책로5	불광동 산148-8	

조성계획도(변경전)

향림근린공원

SCALE=1/1,500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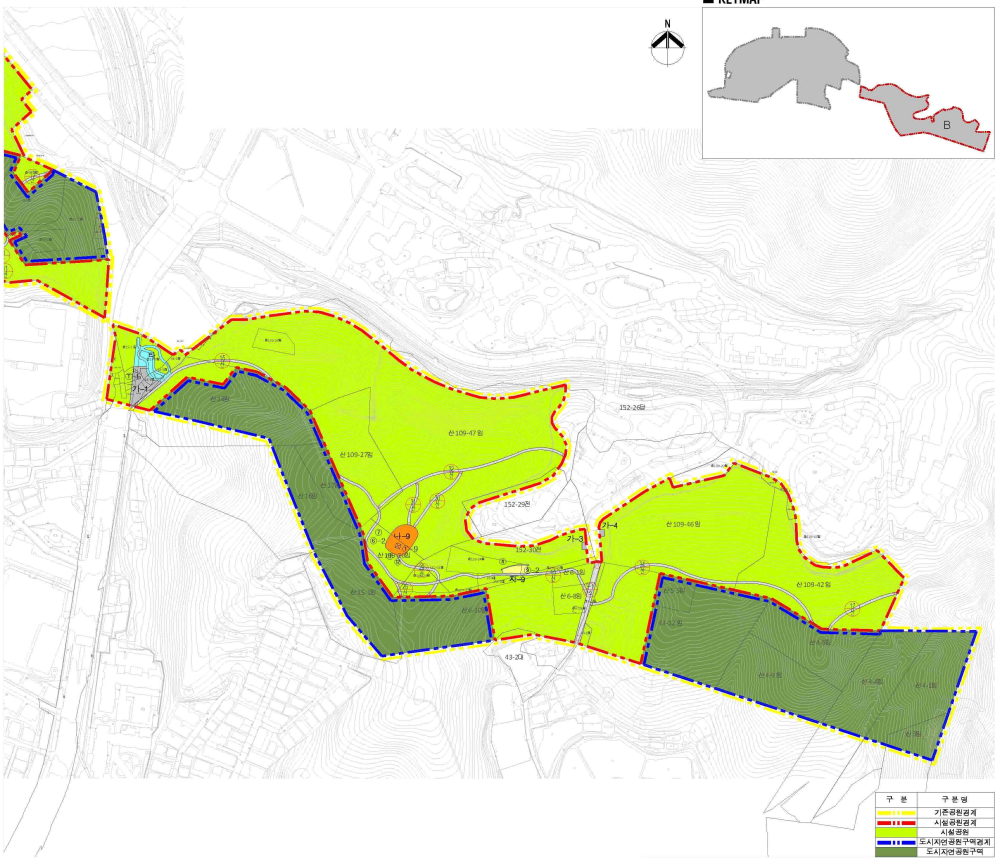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향림근린공원

SCALE=1/1,500

■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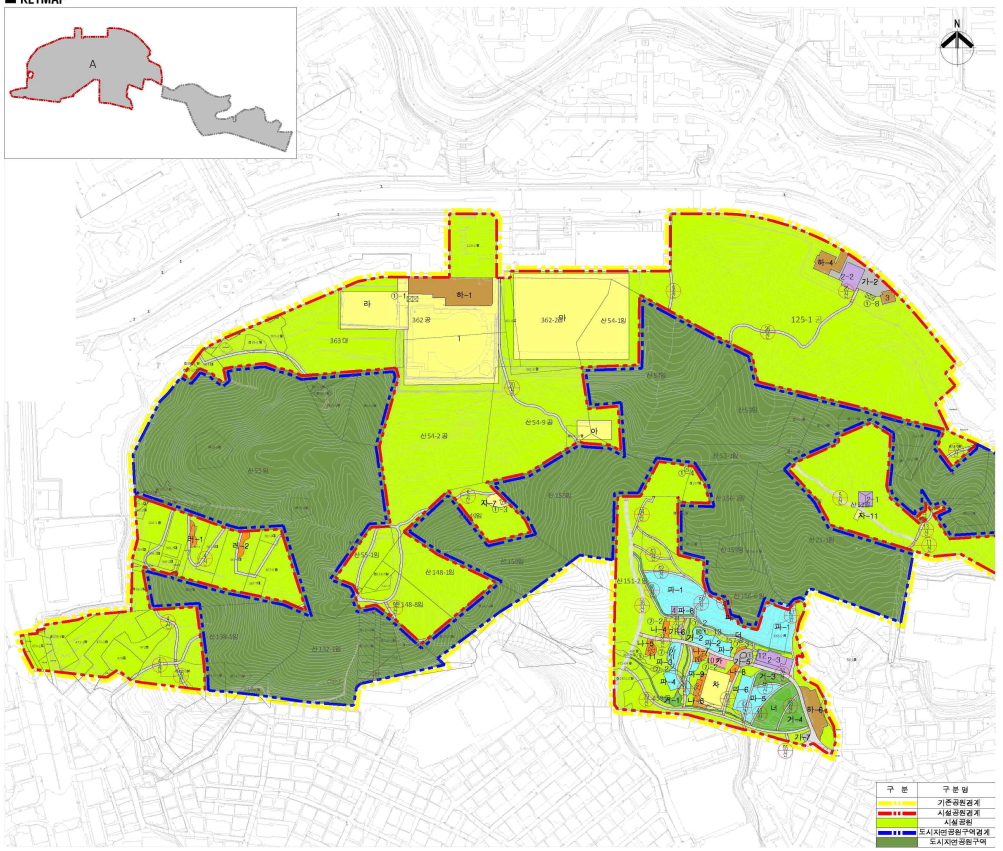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향림근린공원

SCALE=1/1,500

■ KEYMAP



■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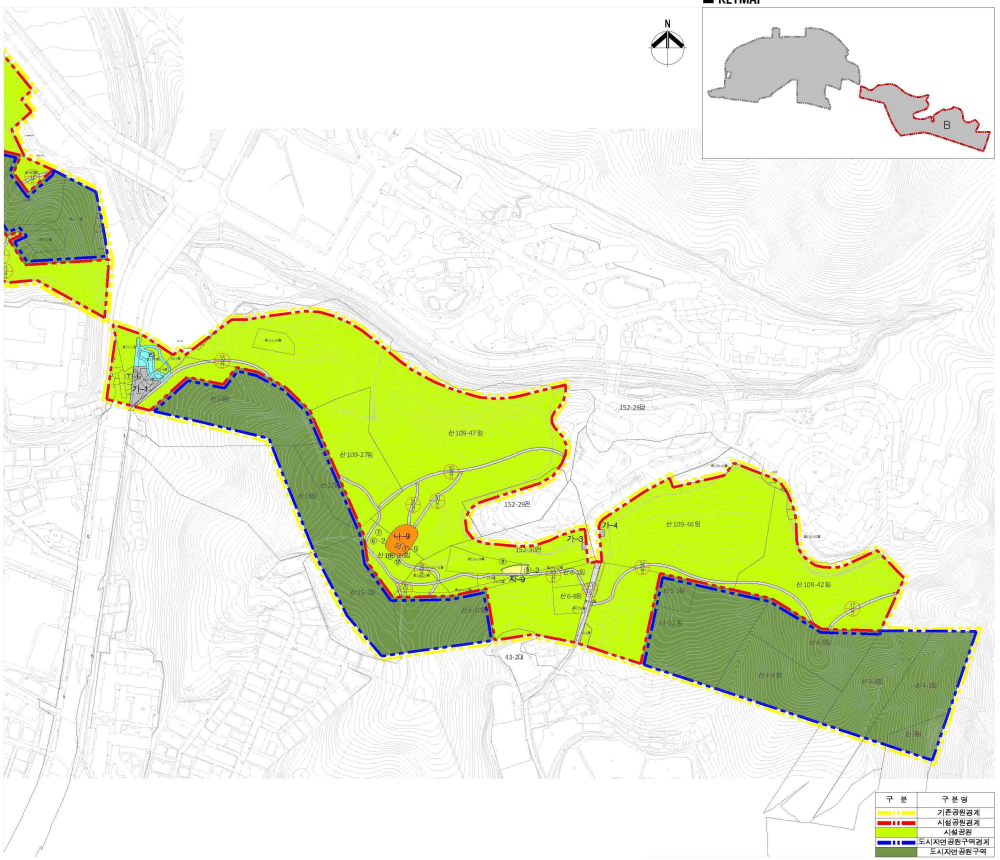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262,993	37,530	74	
기반시설	소계		9,257	8,257		
	도로	(공)	7,965	7,965		
	광장	가	1,292	1,292		
		가-1	424	424		
		가-2	515	515		
		가-3	21	21		
		가-4	16	16		
		가-5	243	243		
		가-6	34	34		
		가-7	39	39		
조경시설	소계		2,035	2,035	15	
	파고라	①			13	
		①-1			2	
		①-3			1	
		①-4			1	
		①-6			1	
		①-8			2	
		①-9			1	
		①-10			2	
		①-11			1	
		①-12			1	
		①-13			1	
	헬덕	②			1	
	돌담	④			1	
	연못	거	986	986		
		거-1	188	188		
		거-2	28	28		
		거-3	253	253		
		거-4	517	517		
	습지원	너	749	749		
	저류	더	300	300		
유희시설	소계		131	131		
	전통놀이장	카	131	131		
휴양시설	소계		1,241	1,241	25	
	장의자				1	
	휴게소	나	1,039	1,039		
		나-4	73	73		
		나-5	93	93		
		나-6	194	194		
		나-7	100	100		
		나-8	72	72		
		나-9	507	507		
	쉼터	러	202	202		
		러-1	95	95		
		러-2	107	107		
	장의자	⑥			13	
		⑥-1			4	
		⑥-2			3	
		⑥-3			6	
	음용벽	⑦			11	
		⑦-1			1	
		⑦-2			9	
	스탠드	⑦-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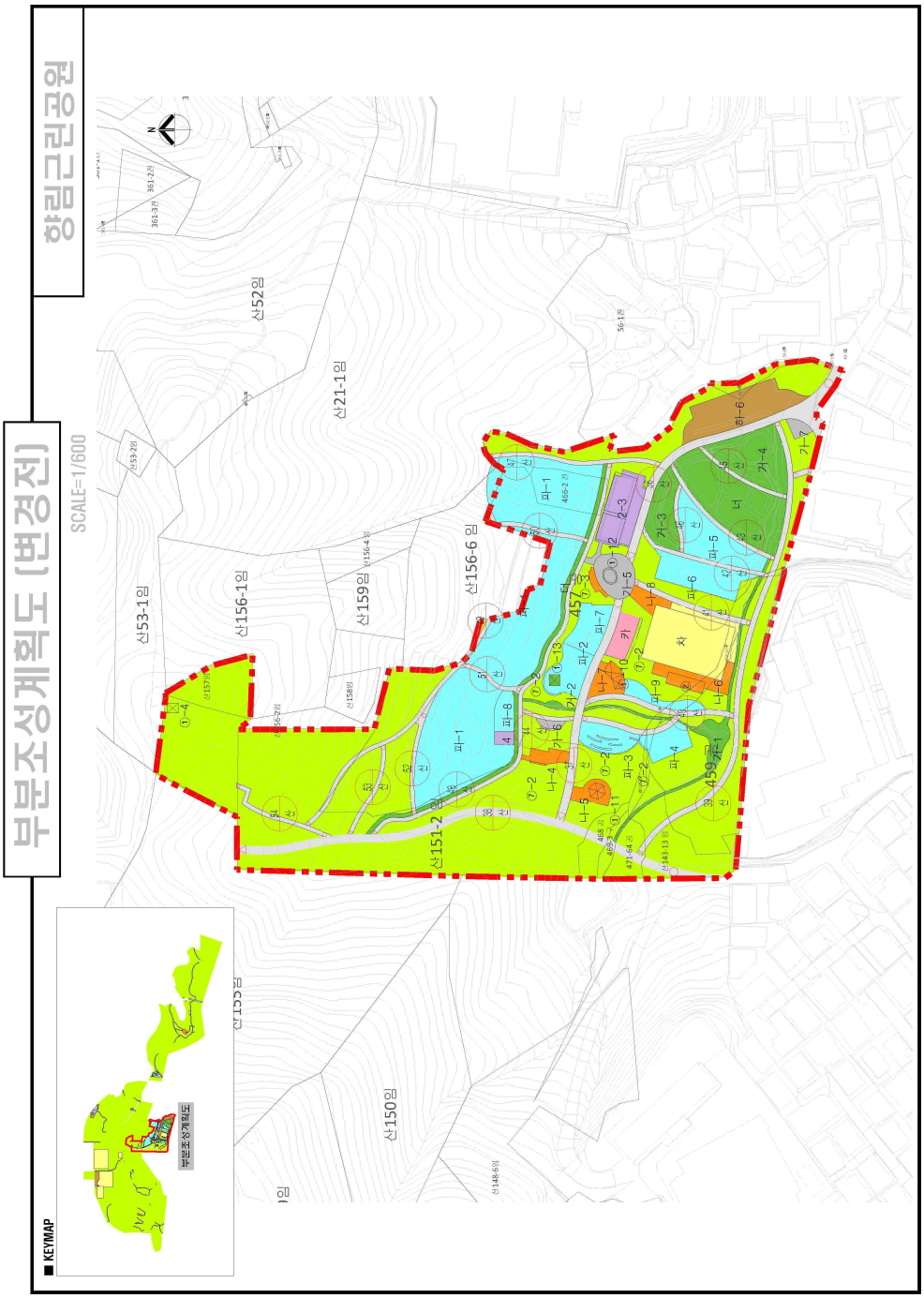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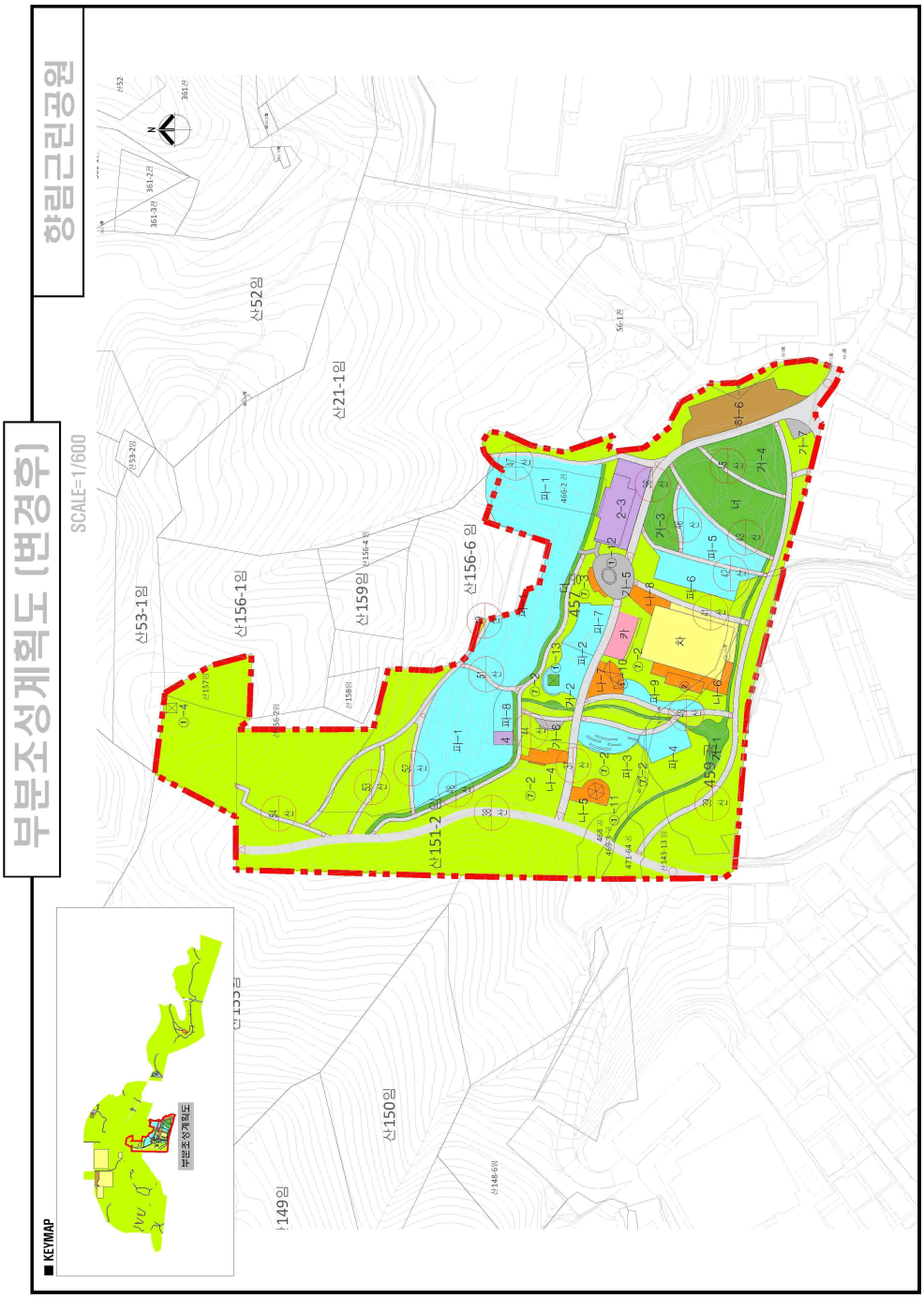
향림근린공원

SCALE=1/1,500

■ KEYMAP




부분조성계획도 (변경전)
SCALE=1/600
향림근린공원
KEYMAP
부분조성계획도
산53-1임
산156-1임
산159임
산156-6임
산21-1임
산52임
산151-2
산150임
457-3
459
N


부분조성계획도 (변경후)
SCALE=1/600
향림근린공원
KEYMAP
부분조성계획도
산53-1임
산156-1임
산159임
산156-6 임
산52임
산21-1임
산151-2
산150임
산149임
N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2호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6호(2024.12.19.)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오세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없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8,119.40	층 수	지하 2층, 지상 25층
건축면적(㎡)	24,561.07	건폐율(%)	64.43
연면적(㎡)	135,951.45	용적률(%)	259.64
주 용 도	공공주택,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대수	689
동 수	12(주 6 / 부 6)	세 대 수	658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05. ~ 2028.10.

5.「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변경)
 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없음)
 나.「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변경없음)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 생략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1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30,477.6	
	공영차고지2	송파구 장지동 599-2 일원	7,642.0	
도로	중로3-5	송파구 장지동 861-5 일원	(116.5)	자동차정류장과 중복결정
	중로3-14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52.8)	자동차정류장과 중복결정
녹지	연결녹지1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3,408.6)	자동차정류장과 중복결정
	연결녹지8	송파구 거여동 599-2 일원	(6,636.5)	자동차정류장과 중복결정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대표자의 성명 : 오세훈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일 ~2028년 10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1	송파구 장지동	862	차	15,045.6	15,045.6	서울특별시	
2	송파구 장지동	862-1	차	8,443.4	8,443.4	서울특별시	
3	송파구 장지동	862-2	차	1,954.0	1,954.0	서울특별시	
4	송파구 장지동	861-5	공	5,034.4	5,034.4	송파구	
5	송파구 거여동	599-2	공	10,292.6	7,642.0	서울주택도시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합계		5필지		40,770.0	38,119.4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설계부(☏3410-769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8호(2024.11.28.)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라.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1) 사업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직무대행 심우섭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2)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변경없음)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바. 지구분할(변경없음)

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3,668,801.7	778,603.8	92,764.0	232,217.2	1,382,130.4	247,525.1	236,723.4	384,291.9	14,984.9	299,561.0	100.0	
소 계		1,819,774.0	513,428.3	-	117,078.4	837,164.5	186,889.8	165,213.0	-	-	-	49.6	
주거용지	계	620,167.3	503,088.9	-	117,078.4	-	-	-	-	-	-	16.9	
	단독주택용지	4,247.7	4,247.7	-	-	-	-	-	-	-	-	0.1	
	공동주택용지	615,919.6	498,841.2	-	117,078.4	-	-	-	-	-	-	16.8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82,806.3	10,339.4	-	-	72,466.9	-	-	-	-	-	2.3	
업무용지	업 무 용 지	305,302.1	-	-	-	183,528.7	121,773.4	-	-	-	-	8.3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603,779.0	-	-	-	539,202.3	54,946.7	9,630.0	-	-	-	16.5	
복합용지	복합용지	125,227.0	-	-	-	-	-	125,227.0	-	-	-	3.4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2,492.3	-	-	-	41,966.6	10,169.7	30,356.0	-	-	-	2.2	
소 계		1,815,319.1	260,666.0	82,900.8	103,152.8	539,366.1	60,635.3	70,561.4	384,291.9	14,183.8	299,561.0	49.5	
도시기반시설용지	도 로	647,801.9 (8,851.0)	75,183.5	23,219.4	64,614.1	367,091.0	17,934.5	70,141.4	-	-	29,618.0 (8,851.0)	17.7	
	보행자도로	1,627.3 (647.0)	652.7	-	-	554.6	-	420.0	-	-	- (647.0)	0.0	
	철 도 용 지	16,733.0	-	-	-	-	7,333.0	-	-	-	9,400.0	0.5	
	의 료 시 설	33,363.8	-	-	-	33,363.8	-	-	-	-	-	0.9	
	공 공 청 사	47,092.8	21,669.0	23,948.8	1,475.0	-	-	-	-	-	-	1.3	
	학 교	110,009.4	47,749.8	16,752.0	24,311.0	21,196.6	-	-	-	-	-	3.0	
	보 육 시 설	991.6	-	-	-	991.6	-	-	-	-	-	0.0	
	사회복지시설	1,700.0	-	1,700.0	-	-	-	-	-	-	-	0.0	
	문 화 시 설	11,823.5	-	-	-	-	-	-	-	11,823.5	-	0.3	
	광 장	12,985.4	-	-	-	12,985.4	-	-	-	-	-	0.4	
	근 린 공 원	547,226.1 (35,884.0)	24,594.6	17,280.6	-	-	-	-	384,291.9	-	121,059.0 (35,884.0)	14.9	
	어린이공원/소공원	16,612.5	13,957.1	-	2,655.4	-	-	-	-	-	-	0.4	
	문 화 공 원	20,379.3	-	-	-	12,082.5	8,296.8	-	-	-	-	0.6	
	가 로 공 원	2,618.5	-	-	-	2,618.5	-	-	-	-	-	0.1	
	경 관 녹 지	2,826.2	1,579.5	-	369.9	559.1	-	-	-	317.7	-	0.1	
	연 결 녹 지	171,844.2 (898.0)	69,768.4	-	7,231.4	67,773.4 (898.0)	27,071.0	-	-	-	-	4.7	
	주 차 장	25,661.0 (8,114.0)	5,511.4	-	-	20,149.6	-	-	-	-	- (8,114.0)	0.7	
	열공급설비	26,354.0	-	-	-	-	-	-	-	-	26,354.0	0.7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전기공급설비	2,042.6	-	-	-	-	-	-	-	2,042.6	-	0.1	
	방 수 설 비	8,743.0 (7,885.0)	-	-	2,496.0	-	-	-	-	-	6,247.0 (7,885.0)	0.2	
	유 수 지	106,883.0	-	-	-	-	-	-	-	-	106,883.0	2.9	
	저 류 지	(50,000.0)	-	-	-	-	-	-	-	-	(50,000.0)	0.0	
소 계		33,708.6	4,509.5	9,863.2	11,986.0	5,599.8	-	949.0	-	801.1	-	0.9	
기타시설용지	주 유 소	3,202.2	-	799.8	-	1,601.3	-	-	-	801.1	-	0.1	
	가스충전소	3,998.5	-	-	-	3,998.5	-	-	-	-	-	0.1	
	종 교 시 설	2,994.4	2,994.4	-	-	-	-	-	-	-	-	0.1	
	편 익 시 설	23,513.5	1,515.1	9,063.4	11,986.0	-	-	949.0	-	-	-	0.6	
	택시차고지	-	-	-	-	-	-	-	-	-	-	0.0	

※ 근린공원1 중복결정 : 저류지 및 공동구관리사무소(공동구), 중로2-37[( )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임]
※ 유수지 중복결정 : 중로2-38, 소로3-4, 근린공원4, 방수설비2(면적:7,885㎡)[( )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을 포함]
※ 입체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결정 : 산업시설용지(산DP3)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 598㎡), 산업시설용지(산D22·25)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 300㎡를) [( ) 면적 : 지상부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포함 면적]
※ 근린공원 점용 : 가스정압기(근린공원2), 변전소(근린공원3)
※ 토지이용계획 내 지하도로 면적(16,226.9㎡) 별도 미명기
※ 변경사유 : 잔여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3)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없음)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차.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해당없음)

카. 관계 도서의 공람방법

1) 시민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 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1568)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02) 2600-1737)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마곡위례사업부 (☎ 02) 3410-7682)

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변경없음)

파. 기타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포함) 사항은「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을 따른다.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라. 시행자(변경)
1) 사업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직무대행 심우섭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2)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변경없음)

마. 시행기간(변경없음)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사. 지구분할(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5)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획지계획은 필지계획으로 대체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상업용지(변경없음)
(4) 업무용지(변경없음)
(5) 산업시설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	-			
2지구	1공구	D3	15,641.1	D3-1	15,641.1	D3-1, D3-2, D3-3 합필
		D4	13,075.3	D4-1	4,298.2	D4-1, D4-4 합필
				D4-2	2,164.2	
				D4-3	2,225.0	
				D4-5	2,162.6	
				D4-6	2,225.3	
		D5	17,104.9	D5-1	17,104.9	D5-1, D5-2, D5-3, D5-4 합필
		D7	16,212.1	D7-1	3,910.0	
				D7-2	3,483.3	
				D7-3	8,818.8	
		D9	30,508.2	D9-1	7,853.9	
				D9-2	7,486.3	
				D9-3	7,484.6	
				D9-4	4,078.6	
				D9-5	3,604.8	
		D10	16,089.0	D10-1	1,196.7	
				D10-2	1,071.9	
				D10-3	1,072.8	
				D10-4	1,073.7	
				D10-5	1,074.5	
				D10-6	1,075.4	
				D10-7	1,076.0	
				D10-8	1,129.9	
				D10-9	1,040.4	
				D10-10	1,039.6	
				D10-11	1,038.8	
				D10-12	1,038.0	
				D10-13	1,037.3	
				D10-14	1,036.7	
				D10-15	1,087.3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1공구	D11	14,515.8	D11-1	14,515.8	D11-1, D11-2, D11-3, D11-4 합필
		D12	10,530.0	D12-1	10,530.0	D12-1, D12-2 합필
		D14	7,666.3	D14-1	7,666.3	D14-1, D14-2, D14-3, D14-4, D14-5 합필
		D16	49,726.1	D16-1	8,795.3	
				D16-2	8,491.5	
				D16-3	17,622.1	D16-3, D16-7, D16-8 합필
				D16-4	4,916.2	
				D16-5	4,948.3	
				D16-6	4,952.7	
		D17	15,034.7	D17-1	1,235.4	
				D17-2	1,251.3	
				D17-3	1,249.9	
				D17-4	1,195.4	
				D17-5	1,070.0	
				D17-6	1,184.2	
				D17-7	950.2	
				D17-8	1,044.8	
				D17-9	1,060.7	
				D17-10	1,060.9	
				D17-11	929.3	
				D17-12	798.9	
				D17-13	1,053.0	
				D17-14	950.7	D19-1, DP1 합필
		D19	29,953.0	D19-1	18,474.8	D19-2, D19-3, D19-4 합필
				D19-2	11,478.2	
		D20	8,723.9	D20-1	1,044.7	
				D20-2	1,045.3	
				D20-3	1,046.9	
				D20-4	1,225.6	
				D20-5	1,045.3	
				D20-6	1,045.1	
				D20-7	1,045.6	
				D20-8	1,225.4	
		D21	22,310.1	D21-1	2,965.9	
				D21-2	2,982.1	
				D21-3	5,949.1	D21-3, D21-4 합필
				D21-5	2,978.5	
				D21-6	2,745.9	
				D21-7	2,486.8	
				D21-8	2,201.8	
		D22	21,762.2	D22-1	21,762.2	D22-1, D22-2, D22-3, D22-4 합필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1공구	D23	7,850.0	D23-1	1,388.0	
				D23-2	1,269.7	
				D23-3	1,270.4	
				D23-4	1,386.8	
				D23-5	1,267.1	
				D23-6	1,268.0	
		D24	13,289.5	D24-1	2,028.5	
				D24-2	4,429.2	D24-2, D24-5 합필
				D24-3	2,064.9	
				D24-4	2,597.8	
				D24-6	2,169.1	
		D25	21,043.6	D25-1	21,043.6	D25-1, D25-2, D25-3, D25-4 합필
		D26	4,543.4	D26-1	1,147.0	
				D26-2	1,122.1	
				D26-3	1,145.4	
				D26-4	1,128.9	
		D27	10,239.0	D27-1	1,661.6	
				D27-2	1,661.6	
				D27-3	1,719.8	
				D27-4	1,936.2	
				D27-5	1,732.6	
				D27-6	1,527.2	
		D28	17,006.0	D28-1	9,897.6	
				D28-2	3,529.5	
				D28-3	3,578.9	
		D29	3,023.8	D29-1	3,023.8	
		D30	4,912.2	D30-1	4,912.2	D30-1, D30-2 합필
		D31	5,592.9	D31-1	2,990.3	
				D31-2	2,602.6	
		D32	16,210.4	D32-1	2,508.2	
				D32-2	1,241.4	
				D32-3	1,378.1	
				D32-4	1,371.7	
				D32-5	1,365.1	
				D32-6	1,454.7	
				D32-7	1,478.9	
				D32-8	1,387.3	
				D32-9	1,387.2	
				D32-10	1,387.2	
				D32-11	1,250.6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1공구	D33		12,477.5	D33-1	1,334.8	
					D33-2	1,372.8	
					D33-3	1,366.5	
					D33-4	1,359.8	
					D33-5	1,397.3	
					D33-6	1,423.5	
					D33-7	1,423.1	
					D33-8	1,422.9	
					D33-9	1,376.8	
		DP2		68,208.1	DP2	68,208.1	
		DP3		65,953.2	DP3	65,953.2	
		계		539,202.3	-	539,202.3	
2지구	2공구	D13		15,006.4	D13-1	6,507.1	
					D13-2	8,499.3	
		D18		21,761.8	D18-1	2,257.1	
					D18-2	2,761.9	
					D18-3	2,931.5	
					D18-4	2,930.6	
					D18-5	2,270.3	
					D18-6	2,796.7	
					D18-7	2,898.9	
					D18-8	2,914.8	
		D29		4,493.0	D29-2	2,231.6	
					D29-3	2,261.4	
		D38		5,897.3	D38	5,897.3	
		D39		4,687.5	D39-1	1,878.8	
					D39-2	1,868.5	
					D39-3	940.2	
		D40		3,100.7	D40-1	768.3	
					D40-2	2,332.4	
		계		54,946.7	-	54,946.7	
2지구	3공구	D1	기정	15,385.0	D1-1	1,663.0	
					D1-2	4,401.0	
					D1-3	4,503.0	
					D1-4	4,818.0	
			변경	-	-	-	폐지
		D2	기정	11,868.0	D2-1	3,010.0	
					D2-2	2,924.0	
					D2-3	3,010.0	
					D2-4	2,924.0	
			변경	550.0	D2	550.0	
		D6	기정	13,005.0	D6-1	5,321.0	
					D6-2	5,638.0	
					D6-3	2,046.0	
			변경	-	-	-	폐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3공구	D15		9,080.0	D15-1	2,206.0	
					D15-2	2,349.0	
					D15-3	2,083.0	
					D15-4	2,442.0	
		D34	기정	28,933.0	D34-1	3,508.0	
					D34-2	3,510.0	
					D34-3	3,510.0	
					D34-4	3,378.0	
					D34-5	3,260.0	
					D34-6	3,459.0	
					D34-7	3,948.0	
					D34-8	4,360.0	
			변경	-	-	-	폐지
		D35	기정	21,147.0	D35-1	2,684.0	
					D35-2	2,706.0	
					D35-3	2,703.0	
					D35-4	2,643.0	
					D35-5	2,569.0	
					D35-6	2,615.0	
					D35-7	2,618.0	
					D35-8	2,609.0	
			변경	-			폐지
		D36	기정	20,539.0	D36-1	3,600.0	
					D36-2	3,879.0	
					D36-3	6,665.0	
					D36-4	6,395.0	
			변경	-	-	-	폐지
		D37	기정	14,900.0	D37-1	5,105.0	
					D37-2	4,840.0	
					D37-3	4,955.0	
			변경	-	-	-	폐지
		계	기정	134,857.0		134,857.0	
			변경	9,630.0		9,630.0	
3지구		-		-	-	-	

※ 산업시설용지(연DP3)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6-1, 6-2)로 결정(각각 299㎡ 합계 면적 : 598㎡)
※ 산업시설용지(산D22)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17-1)로 결정(150㎡)
※ 산업시설용지(산D25)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17-2)로 결정(150㎡)

(6) 복합용지(신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	-	-	-	
2지구	3공구	L1	15,385.0	L1-1	1,663.0	신설
				L1-2	4,401.0	
				L1-3	4,503.0	
				L1-4	4,818.0	
		L2	11,318.0	L2-1	5,470.0	신설
				L2-2	2,924.0	
				L2-3	2,924.0	
		L3	13,005.0	L3-1	5,321.0	신설
				L3-2	5,638.0	
				L3-3	2,046.0	
		L4	28,933.0	L4-1	3,508.0	신설
				L4-2	3,510.0	
				L4-3	3,510.0	
				L4-4	3,378.0	
				L4-5	3,260.0	
				L4-6	3,459.0	
				L4-7	3,948.0	
				L4-8	4,360.0	
		L5	21,147	L5-1	2,684.0	신설
				L5-2	2,706.0	
				L5-3	2,703.0	
				L5-4	2,643.0	
				L5-5	2,569.0	
				L5-6	2,615.0	
				L5-7	2,618.0	
				L5-8	2,609.0	
		L6	20,539.0	L6-1	3,600.0	신설
				L6-2	3,879.0	
				L6-3	6,665.0	
				L6-4	6,395.0	
		L7	14,900.0	L7-1	5,105.0	신설
				L7-2	4,840.0	
				L7-3	4,955.0	
		계 기정				
		계 신설	125,227.0	-	125,227.0	
3지구	-	-	-	-	-	

(7)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8)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9) 공공청사(변경없음)
(10) 학교(변경없음)
(11)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2) 주차장(변경없음)
(13) 열공급설비(변경없음)
(14)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15) 방수설비(변경없음)
(16) 종교시설(변경없음)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18) 편익시설(변경없음)
(19) 보육시설(변경없음)
(20) 문화시설(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산업시설용지(변경)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12">D

DP</td><td rowspan="12">D1~D7,
D9~D40

DP2~
DP3</td><td rowspan="3">1지구</td><td>1공구</td><td colspan="2">-</td><td></td></tr>
<tr><td>2공구</td><td colspan="2">-</td><td></td></tr>
<tr><td>3공구</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3">2지구</td><td>1공구</td><td colspan="2">D3~D5, D7, D9~D12, D14, D16, D17, D19~D29-1, D30~D33, DP2~DP3</td><td></td></tr>
<tr><td>2공구</td><td colspan="2">D13, D18, D29-2, D29-3, D38, D39, D40</td><td></td></tr>
<tr><td>3공구</td><td colspan="2">D1〈삭제〉, D2, D6,〈삭제〉 D15, D34~37〈삭제〉</td><td></td></tr>
<tr><td rowspan="2">3지구</td><td>1공구</td><td colspan="2">-</td><td></td></tr>
<tr><td>2공구</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지정용도</td><td>D1〈삭제〉, D2~D5, D6〈삭제〉, D7,D9~D33, D34~D37〈삭제〉, D38
DP2~DP3</td><td>•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td><td></td></tr>
<tr><td>D39, D40</td><td>•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층 가로활성화 용도(시행지침 “제1편 제3장 제8조 제4항 제5호”)</td><td></td></tr>
</table>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D39, D40	300%이하	
			D1<삭제>, D2~D5, D6<삭제>, D7,D9~D33, D34~D37<삭제>, D38, DP2~DP3	350%이하	
		높이	D39, D40	5층이하	
			D1<삭제>, D2~D5, D6<삭제>, D7,D9~D33, D34~D37<삭제>, D38, DP2~DP3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배치	• 저층배치구간(D2-2, D2-4<삭제>, D3-2, D4-1, D4-4, D5-1, D7-3, D9-1, D10-1, D13-2, D22-2, D22-4, D23-3, D23-6, D24-3, D24-6, D25-1, D25-3, D27-1, D27-4, D31, DP2, DP3): 10m • 부속시설은 가로변·연결녹지 변 및 공공보행통로 변에 배치한다.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 • 산업시설용지 내 보행활성화 용도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8조"를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대1-1, 대3-2, 대2-41, 대3-1, 중2-16, 중2-21, 중2-22, 중3-43<삭제>, 중3-44<삭제>: 5m - 도로변(중1-1, 중1-16, 중1-30, 중1-31, 중2-25, 중2-26, 중2-28, 중2-30, 중2-31, 중2-32, 중2-33, 중3-10, 중3-11, 중3-12, 중3-13, 중3-14, 중3-15, 중3-16, 중3-17, 중3-19, 중3-20, 중3-21, 중3-22, 중3-23, 중3-24, 중3-25, 중3-27, 중3-28, 중3-29, 중3-30, 중3-31, 중3-32, 중3-33, 중3-39, 중3-40, 중3-42)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6, 연결녹지7~연결녹지9, 연결녹지16~연결녹지19, 연결녹지24~연결녹지26, 연결녹지42, 연결녹지43, 연결녹지45, 연결녹지 49~52) : 3m - 공원변(문화공원1~5) : 3m - 공공보행통로변(D7-3, D9-1, DP2, DP3) : 3m - 공공보행통로변(D9-2, D9-3, D10-4, D10-5, D10-11, D10-12, D32-2, D32-3, D32-10, D32-11) - 인접대지경계(V1, V2, V3) : 3m • 공공조경 - D12, D35-4, D35-5, D37-3<삭제> : 5m • 공공보행통로 - D7-3 : 12m - D9-2, D9-3, D10-4, D10-5, D10-11, D10-12, D32-2, D32-3, D32-10, D32-11 : 3m - DP2, DP3 : 6m • 공개공지 - D3-3, D5-4, D7-3, D9-1, D9-2, D9-3, D12-1, D16-3, D19-1, D22-1, D22-2, D25-1, D25-2, D28-1, D36-4, D37-1<삭제>, DP2, DP3 • 저층부 건축지정선 - D3-3, D5-4, D6-1, D7-1, D7-3, D9-1, D9-2, D9-3, D9-4, D11-1 : 5m •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 - D39, D40 : 3m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형태 및 외관	•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 를 따른다.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 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 을 따른다. • DP2 · DP3의 건축물 배치 시 중로2-26과 연접한 연결녹지축에서 서울식물원으로의 통경축 확보를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단, 연결녹지6의 위치이동 등 변경 시 서울식물원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및 보행연계성을 고려한 건축물을 배치한다.	

(4) 복합용지(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L	L1~L7	1지구	1공구	-		
			2공구	-		
			3공구	-		
		2지구	1공구	-		
			2공구	-		
			3공구	L1~L7		
		3지구	1공구	-		
			2공구	-		
		지정용도		L1~L7 (산업시설)	•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건축 연면적의 50%이상
		허용용도		L1~L7 (산업시설 외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건축 연면적의 50%미만
		불허용도		L1~L7 (산업시설 외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L1~L7	350%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높이	L1~L7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배치	• 저층배치구간(L2-2, L2-3): 10m • 부속시설은 가로변·연결녹지 변 및 공공보행통로 변에 배치한다.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 를 따른다. • 산업시설용지 내 보행활성화 용도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8조” 를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대2-41, 대3-1, 중2-16, 중2-21, 중2-22, 중3-14, 중3-43, 중3-44) : 5m - 도로변(중1-1, 중3-10, 중3-11, 중3-12, 중3-42)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42) : 3m • 공공조경 - L5-4, L5-5, L7-3 : 5m • 공개공지 - L6-4, L7-1		
형태 및 외관			•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 를 따른다.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 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 을 따른다.		

(5) 상업용지(변경없음)
(6) 업무용지(변경없음)
(7)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 용지(변경없음)
(9) 기타시설 용지(변경없음)
(10) 건축심의(자문) 시 자문의견 제시(변경없음)
(11)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준수(변경없음)
(12)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13) 기타사항(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Ⅰ(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Ⅱ(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Ⅲ(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Ⅳ(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Ⅴ(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Ⅵ(변경없음)
(7)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변경없음)
(8) 건축심의(자문) 시 자문의견 제시(변경없음)

(9)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준수(변경없음)
(10)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없음)
(11) 기타사항(변경없음)

자.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변경)
1) 사업의 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없음)
3)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직무대행 심우섭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나)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변경없음)
4)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5) 무상귀속 조서(변경없음)

차.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1568)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02) 2600-1737)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마곡위례사업부 (☎ 02) 3410-7682)

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 (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가) 일반산업단지 변경지정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직무대행 심우섭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5)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구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2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23,790.3	1,123,790.3	880,539.4	880,539.4	73,413.2	73,413.2	169,837.7	169,837.7	100.0	
산업시설용지		729,006.0	603,779.0	539,202.3	539,202.3	54,946.7	54,946.7	134,857.0	9,630.0	53.7	
복합용지		-	125,227.0	-	-	-	-	-	125,227.0	11.2	
지원시설용지		82,492.3	82,492.3	41,966.6	41,966.6	10,169.7	10,169.7	30,356.0	30,356.0	7.2	
녹지시설용지	소계	75,609.4	75,609.4	67,312.6	67,312.6	8,296.8	8,296.8	-	-	6.8	
	문화공원	20,379.3	20,379.3	12,082.5	12,082.5	8,296.8	8,296.8	-	-	1.8	
	녹지	55,230.1 (898.0)	55,230.1 (898.0)	55,230.1 (898.0)	55,230.1 (898.0)	-	-	-	-	5.0	
공공시설용지	소계	224,917.0	224,917.0	220,292.3	220,292.3	-	-	4,624.7	4,624.7	20.0	
	도로	211,931.6	211,931.6	207,306.9	207,306.9	-	-	4,624.7	4,624.7	18.8	
	광장	12,985.4	12,985.4	12,985.4	12,985.4	-	-	-	-	1.2	
기타시설용지	소계	11,765.6	11,765.6	11,765.6	11,765.6	-	-	-	-	1.1	
	주차장	6,775.5	6,775.5	6,775.5	6,775.5	-	-	-	-	0.6	
	가스충전소	3,998.5	3,998.5	3,998.5	3,998.5	-	-	-	-	0.4	
	보육시설	991.6	991.6	991.6	991.6	-	-	-	-	0.1	

(다)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라)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나)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마곡 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가) 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직무대행 심우섭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의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획지계획은 필지계획으로 대체

① 산업시설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	–			
2지구	1공구	D3	15,641.1	D3-1	15,641.1	D3-1, D3-2, D3-3 합필
		D4	13,075.3	D4-1	4,298.2	D4-1, D4-4 합필
				D4-2	2,164.2	
				D4-3	2,225.0	
				D4-5	2,162.6	
				D4-6	2,225.3	
		D5	17,104.9	D5-1	17,104.9	D5-1, D5-2, D5-3, D5-4 합필
		D7	16,212.1	D7-1	3,910.0	
				D7-2	3,483.3	
				D7-3	8,818.8	
		D9	30,508.2	D9-1	7,853.9	
				D9-2	7,486.3	
				D9-3	7,484.6	
				D9-4	4,078.6	
				D9-5	3,604.8	
		D10	16,089.0	D10-1	1,196.7	
				D10-2	1,071.9	
				D10-3	1,072.8	
				D10-4	1,073.7	
				D10-5	1,074.5	
				D10-6	1,075.4	
				D10-7	1,076.0	
				D10-8	1,129.9	
				D10-9	1,040.4	
				D10-10	1,039.6	
				D10-11	1,038.8	
				D10-12	1,038.0	
				D10-13	1,037.3	
				D10-14	1,036.7	
				D10-15	1,087.3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1공구	D11	14,515.8	D11-1	14,515.8	D11-1, D11-2, D11-3, D11-4 합필
		D12	10,530.0	D12-1	10,530.0	D12-1, D12-2 합필
		D14	7,666.3	D14-1	7,666.3	D14-1, D14-2, D14-3, D14-4, D14-5 합필
		D16	49,726.1	D16-1	8,795.3	
				D16-2	8,491.5	
				D16-3	17,622.1	D16-3, D16-7, D16-8 합필
				D16-4	4,916.2	
				D16-5	4,948.3	
				D16-6	4,952.7	
		D17	15,034.7	D17-1	1,235.4	
				D17-2	1,251.3	
				D17-3	1,249.9	
				D17-4	1,195.4	
				D17-5	1,070.0	
				D17-6	1,184.2	
				D17-7	950.2	
				D17-8	1,044.8	
				D17-9	1,060.7	
				D17-10	1,060.9	
				D17-11	929.3	
				D17-12	798.9	
				D17-13	1,053.0	
				D17-14	950.7	D19-1, DP1 합필
		D19	29,953.0	D19-1	18,474.8	D19-2, D19-3, D19-4 합필
				D19-2	11,478.2	
		D20	8,723.9	D20-1	1,044.7	
				D20-2	1,045.3	
				D20-3	1,046.9	
				D20-4	1,225.6	
				D20-5	1,045.3	
				D20-6	1,045.1	
				D20-7	1,045.6	
				D20-8	1,225.4	
		D21	22,310.1	D21-1	2,965.9	
				D21-2	2,982.1	
				D21-3	5,949.1	D21-3, D21-4 합필
				D21-5	2,978.5	
				D21-6	2,745.9	
				D21-7	2,486.8	
				D21-8	2,201.8	
		D22	21,762.2	D22-1	21,762.2	D22-1, D22-2, D22-3, D22-4 합필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1공구	D23	7,850.0	D23-1	1,388.0	
				D23-2	1,269.7	
				D23-3	1,270.4	
				D23-4	1,386.8	
				D23-5	1,267.1	
				D23-6	1,268.0	
		D24	13,289.5	D24-1	2,028.5	
				D24-2	4,429.2	D24-2, D24-5 합필
				D24-3	2,064.9	
				D24-4	2,597.8	
				D24-6	2,169.1	
		D25	21,043.6	D25-1	21,043.6	D25-1, D25-2, D25-3, D25-4 합필
		D26	4,543.4	D26-1	1,147.0	
				D26-2	1,122.1	
				D26-3	1,145.4	
				D26-4	1,128.9	
		D27	10,239.0	D27-1	1,661.6	
				D27-2	1,661.6	
				D27-3	1,719.8	
				D27-4	1,936.2	
				D27-5	1,732.6	
				D27-6	1,527.2	
		D28	17,006.0	D28-1	9,897.6	
				D28-2	3,529.5	
				D28-3	3,578.9	
		D29	3,023.8	D29-1	3,023.8	
		D30	4,912.2	D30-1	4,912.2	D30-1, D30-2 합필
		D31	5,592.9	D31-1	2,990.3	
				D31-2	2,602.6	
		D32	16,210.4	D32-1	2,508.2	
				D32-2	1,241.4	
				D32-3	1,378.1	
				D32-4	1,371.7	
				D32-5	1,365.1	
				D32-6	1,454.7	
				D32-7	1,478.9	
				D32-8	1,387.3	
				D32-9	1,387.2	
				D32-10	1,387.2	
				D32-11	1,250.6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1공구	D33		12,477.5	D33-1	1,334.8	
					D33-2	1,372.8	
					D33-3	1,366.5	
					D33-4	1,359.8	
					D33-5	1,397.3	
					D33-6	1,423.5	
					D33-7	1,423.1	
					D33-8	1,422.9	
					D33-9	1,376.8	
		DP2		68,208.1	DP2	68,208.1	
		DP3		65,953.2	DP3	65,953.2	
		계		539,202.3	-	539,202.3	
2지구	2공구	D13		15,006.4	D13-1	6,507.1	
					D13-2	8,499.3	
		D18		21,761.8	D18-1	2,257.1	
					D18-2	2,761.9	
					D18-3	2,931.5	
					D18-4	2,930.6	
					D18-5	2,270.3	
					D18-6	2,796.7	
					D18-7	2,898.9	
					D18-8	2,914.8	
		D29		4,493.0	D29-2	2,231.6	
					D29-3	2,261.4	
		D38		5,897.3	D38	5,897.3	
		D39		4,687.5	D39-1	1,878.8	
					D39-2	1,868.5	
					D39-3	940.2	
		D40		3,100.7	D40-1	768.3	
					D40-2	2,332.4	
		계		54,946.7	-	54,946.7	
2지구	3공구	D1	기정	15,385.0	D1-1	1,663.0	
					D1-2	4,401.0	
					D1-3	4,503.0	
					D1-4	4,818.0	
			변경	-	-	-	폐지
		D2	기정	11,868.0	D2-1	3,010.0	
					D2-2	2,924.0	
					D2-3	3,010.0	
					D2-4	2,924.0	
			변경	550.0	D2	550.0	
		D6	기정	13,005.0	D6-1	5,321.0	
					D6-2	5,638.0	
					D6-3	2,046.0	
			변경	-	-	-	폐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3공구	D15		9,080.0	D15-1	2,206.0	
					D15-2	2,349.0	
					D15-3	2,083.0	
					D15-4	2,442.0	
		D34	기정	28,933.0	D34-1	3,508.0	
					D34-2	3,510.0	
					D34-3	3,510.0	
					D34-4	3,378.0	
					D34-5	3,260.0	
					D34-6	3,459.0	
					D34-7	3,948.0	
					D34-8	4,360.0	
			변경	-	-	-	폐지
		D35	기정	21,147.0	D35-1	2,684.0	
					D35-2	2,706.0	
					D35-3	2,703.0	
					D35-4	2,643.0	
					D35-5	2,569.0	
					D35-6	2,615.0	
					D35-7	2,618.0	
					D35-8	2,609.0	
			변경	-			폐지
		D36	기정	20,539.0	D36-1	3,600.0	
					D36-2	3,879.0	
					D36-3	6,665.0	
					D36-4	6,395.0	
			변경	-	-	-	폐지
		D37	기정	14,900.0	D37-1	5,105.0	
					D37-2	4,840.0	
					D37-3	4,955.0	
			변경	-	-	-	폐지
		계	기정	134,857.0		134,857.0	
			변경	9,630.0		9,630.0	
3지구		-		-	-	-	

※ 산업시설용지(연DP3)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6-1, 6-2)로 결정(각각 299㎡ 합계 면적 : 598㎡)
※ 산업시설용지(산D22)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17-1)로 결정(150㎡)
※ 산업시설용지(산D25)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17-2)로 결정(150㎡)

② 복합용지(신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	-	-	-	
2지구	3공구	L1	15,385.0	L1-1	1,663.0	신설
				L1-2	4,401.0	
				L1-3	4,503.0	
				L1-4	4,818.0	
		L2	11,318.0	L2-1	5,470.0	신설
				L2-2	2,924.0	
				L2-3	2,924.0	
		L3	13,005.0	L3-1	5,321.0	신설
				L3-2	5,638.0	
				L3-3	2,046.0	
		L4	28,933.0	L4-1	3,508.0	신설
				L4-2	3,510.0	
				L4-3	3,510.0	
				L4-4	3,378.0	
				L4-5	3,260.0	
				L4-6	3,459.0	
				L4-7	3,948.0	
				L4-8	4,360.0	
		L5	21,147	L5-1	2,684.0	신설
				L5-2	2,706.0	
				L5-3	2,703.0	
				L5-4	2,643.0	
				L5-5	2,569.0	
				L5-6	2,615.0	
				L5-7	2,618.0	
				L5-8	2,609.0	
		L6	20,539.0	L6-1	3,600.0	신설
				L6-2	3,879.0	
				L6-3	6,665.0	
				L6-4	6,395.0	
		L7	14,900.0	L7-1	5,105.0	신설
				L7-2	4,840.0	
				L7-3	4,955.0	
		계 기정				
		계 신설	125,227.0	-	125,227.0	
3지구	-	-	-	-	-	

③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④ 주차장(변경없음)
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⑥ 보육시설(변경없음)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①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D DP	D1~D7, D9~D40 DP2~DP3	1지구	1공구	-		
			2공구	-		
			3공구	-		
		2지구	1공구	D3~D5, D7, D9~D12, D14, D16, D17, D19~D29-1, D30~D33, DP2~DP3		
			2공구	D13, D18, D29-2, D29-3, D38, D39, D40		
			3공구	D1〈삭제〉, D2, D6,〈삭제〉 D15, D34~37〈삭제〉		
		3지구	1공구	-		
			2공구	-		
		지정용도		D1〈삭제〉, D2~D5, D6〈삭제〉, D7,D9~D33, D34~D37〈삭제〉, D38 DP2~DP3	•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D39, D40	•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층 가로활성화 용도(시행지침 "제1편 제3장 제8조 제4항 제5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D39, D40	300%이하	
				D1〈삭제〉, D2~D5, D6〈삭제〉, D7,D9~D33, D34~D37〈삭제〉, D38, DP2~DP3	350%이하	
		높이		D39, D40	5층이하	
				D1〈삭제〉, D2~D5, D6〈삭제〉, D7,D9~D33, D34~D37〈삭제〉, D38, DP2~DP3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배치		• 저층배치구간(D2-2, D2-4〈삭제〉, D3-2, D4-1, D4-4, D5-1, D7-3, D9-1, D10-1, D13-2, D22-2, D22-4, D23-3, D23-6, D24-3, D24-6, D25-1, D25-3, D27-1, D27-4, D31, DP2, DP3): 10m • 부속시설은 가로변·연결녹지 변 및 공공보행통로 변에 배치한다.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산업시설용지 내 보행활성화 용도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8조”를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대1-1, 대3-2, 대2-41, 대3-1, 중2-16, 중2-21, 중2-22, 중3-43〈삭제〉, 중3-44〈삭제〉: 5m – 도로변(중1-1, 중1-16, 중1-30, 중1-31, 중2-25, 중2-26, 중2-28, 중2-30, 중2-31, 중2-32, 중2-33, 중3-10, 중3-11, 중3-12, 중3-13, 중3-14, 중3-15, 중3-16, 중3-17, 중3-19, 중3-20, 중3-21, 중3-22, 중3-23, 중3-24, 중3-25, 중3-27, 중3-28, 중3-29, 중3-30, 중3-31, 중3-32, 중3-33, 중3-39, 중3-40, 중3-42)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6, 연결녹지7~연결녹지9, 연결녹지16~연결녹지19, 연결녹지24~연결녹지26, 연결녹지42, 연결녹지43, 연결녹지45, 연결녹지 49~52) : 3m – 공원변(문화공원1~5) : 3m – 공공보행통로변(D7-3, D9-1, DP2, DP3) : 3m – 공공보행통로변(D9-2, D9-3, D10-4, D10-5, D10-11, D10-12, D32-2, D32-3, D32-10, D32-11) – 인접대지경계(V1, V2, V3) : 3m • 공공조경 – D12, D35-4, D35-5, D37-3〈삭제〉 : 5m • 공공보행통로 – D7-3 : 12m – D9-2, D9-3, D10-4, D10-5, D10-11, D10-12, D32-2, D32-3, D32-10, D32-11 : 3m – DP2, DP3 : 6m • 공개공지 – D3-3, D5-4, D7-3, D9-1, D9-2, D9-3, D12-1, D16-3, D19-1, D22-1, D22-2, D25-1, D25-2, D28-1, D36-4, D37-1〈삭제〉, DP2, DP3 • 저층부 건축지정선 – D3-3, D5-4, D6-1, D7-1, D7-3, D9-1, D9-2, D9-3, D9-4, D11-1 : 5m •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 – D39, D40 : 3m	
	형태 및 외관		•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 DP2 · DP3의 건축물 배치 시 중로2-26과 연접한 연결녹지축에서 서울식물원으로의 통경축 확보를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단, 연결녹지6의 위치이동 등 변경 시 서울식물원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및 보행연계성을 고려한 건축물을 배치한다.	

② 복합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L	L1~L7	1지구	1공구	-		
			2공구	-		
			3공구	-		
		2지구	1공구	-		
			2공구	-		
			3공구	L1~L7		
		3지구	1공구	-		
			2공구	-		
		지정용도		L1~L7 (산업시설)	•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건축 연면적의 50%이상
		허용용도		L1~L7 (산업시설 외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건축 연면적의 50%미만
		불허용도		L1~L7 (산업시설 외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L1~L7	350%이하	
		높이		L1~L7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배치		• 저층배치구간(L2-2, L2-3): 10m • 부속시설은 가로변·연결녹지 변 및 공공보행통로 변에 배치한다.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 • 산업시설용지 내 보행활성화 용도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8조"를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대2-41, 대3-1, 중2-16, 중2-21, 중2-22, 중3-14, 중3-43, 중3-44) : 5m - 도로변(중1-1, 중3-10, 중3-11, 중3-12, 중3-42)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42) : 3m • 공공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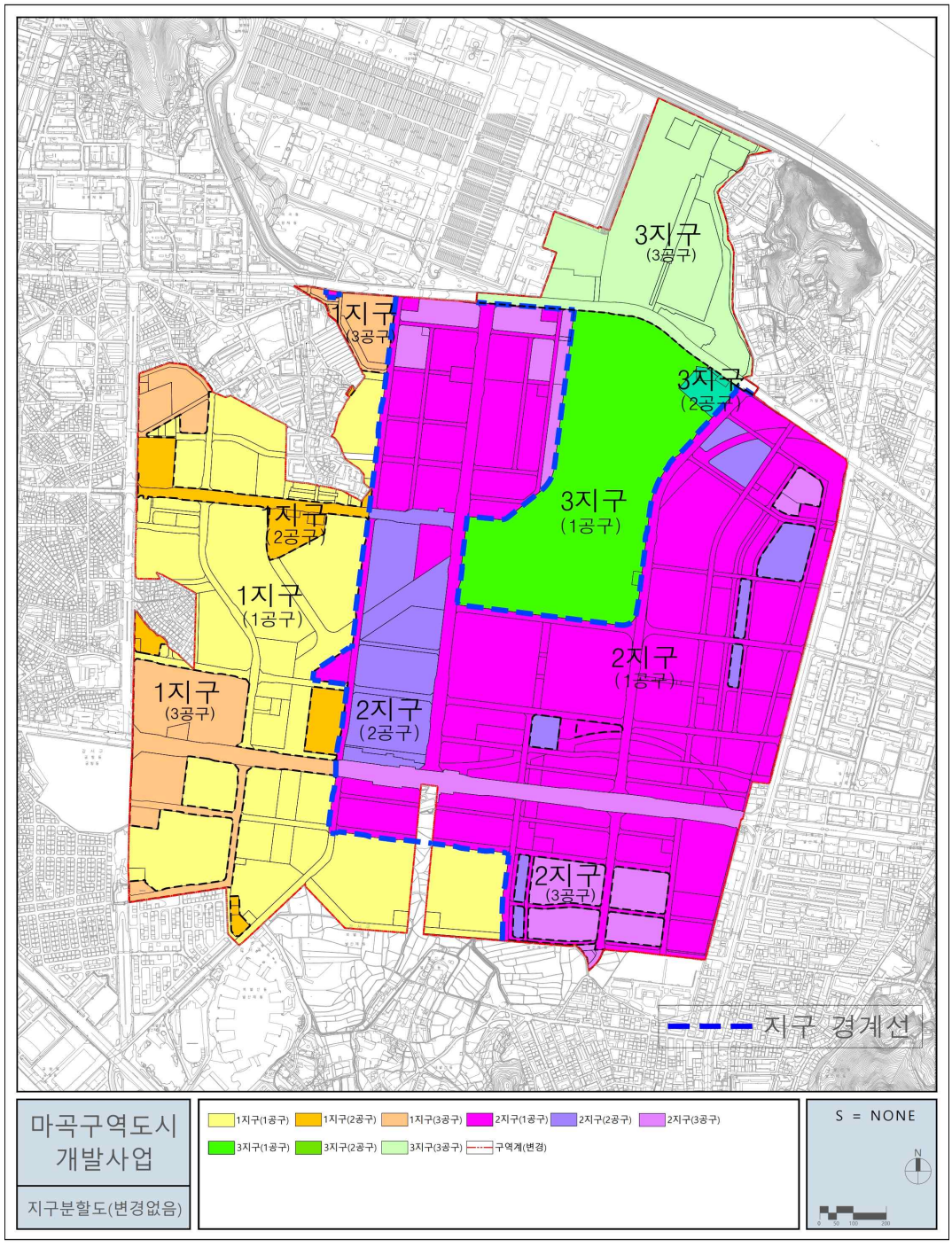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L5-4, L5-5, L7-3 : 5m • 공개공지 - L6-4, L7-1	
형태 및 외관			•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③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④ 주차장(변경없음)
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⑥ 보육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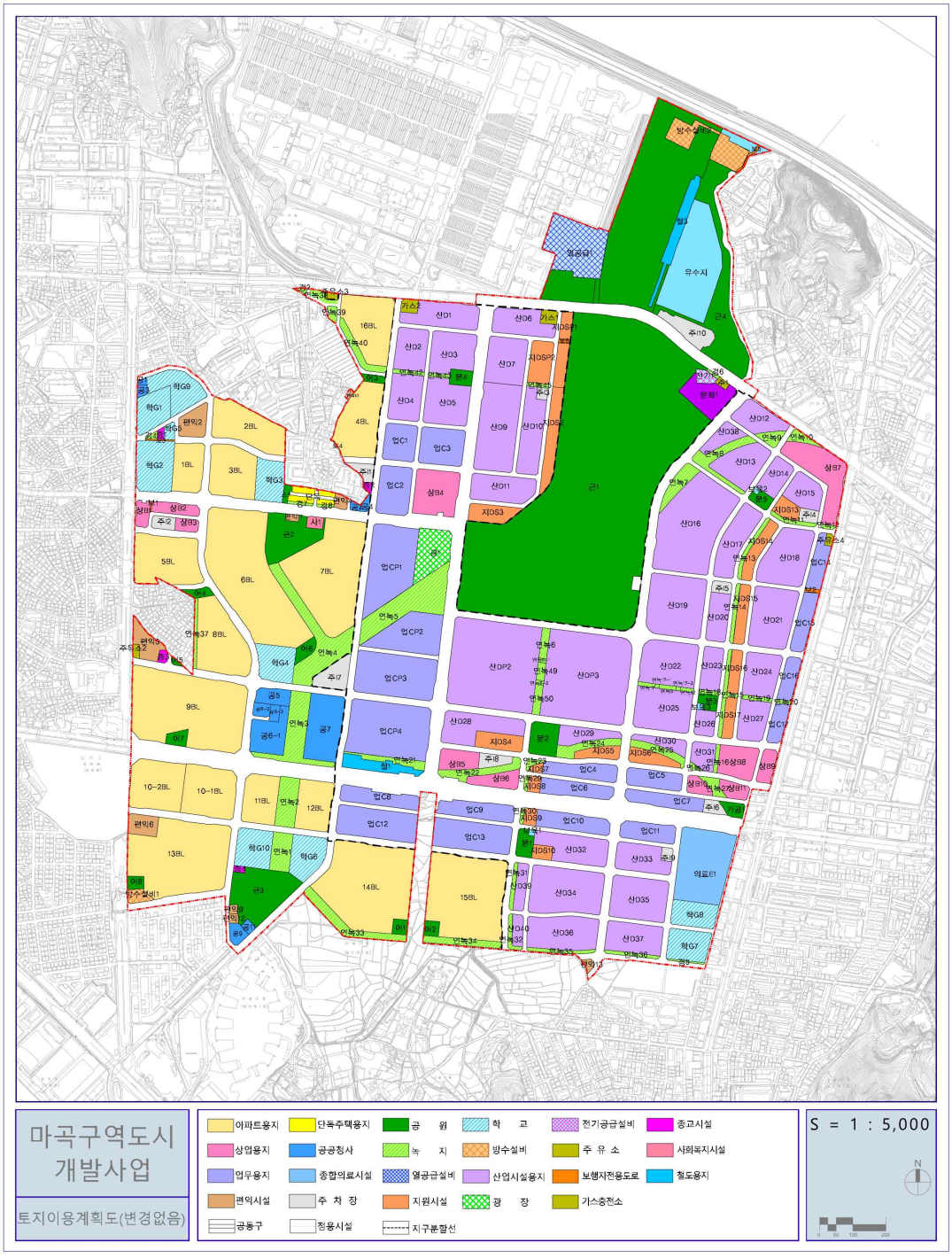
2)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변경없음)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변경없음)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변경없음)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변경없음)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없음)

■별첨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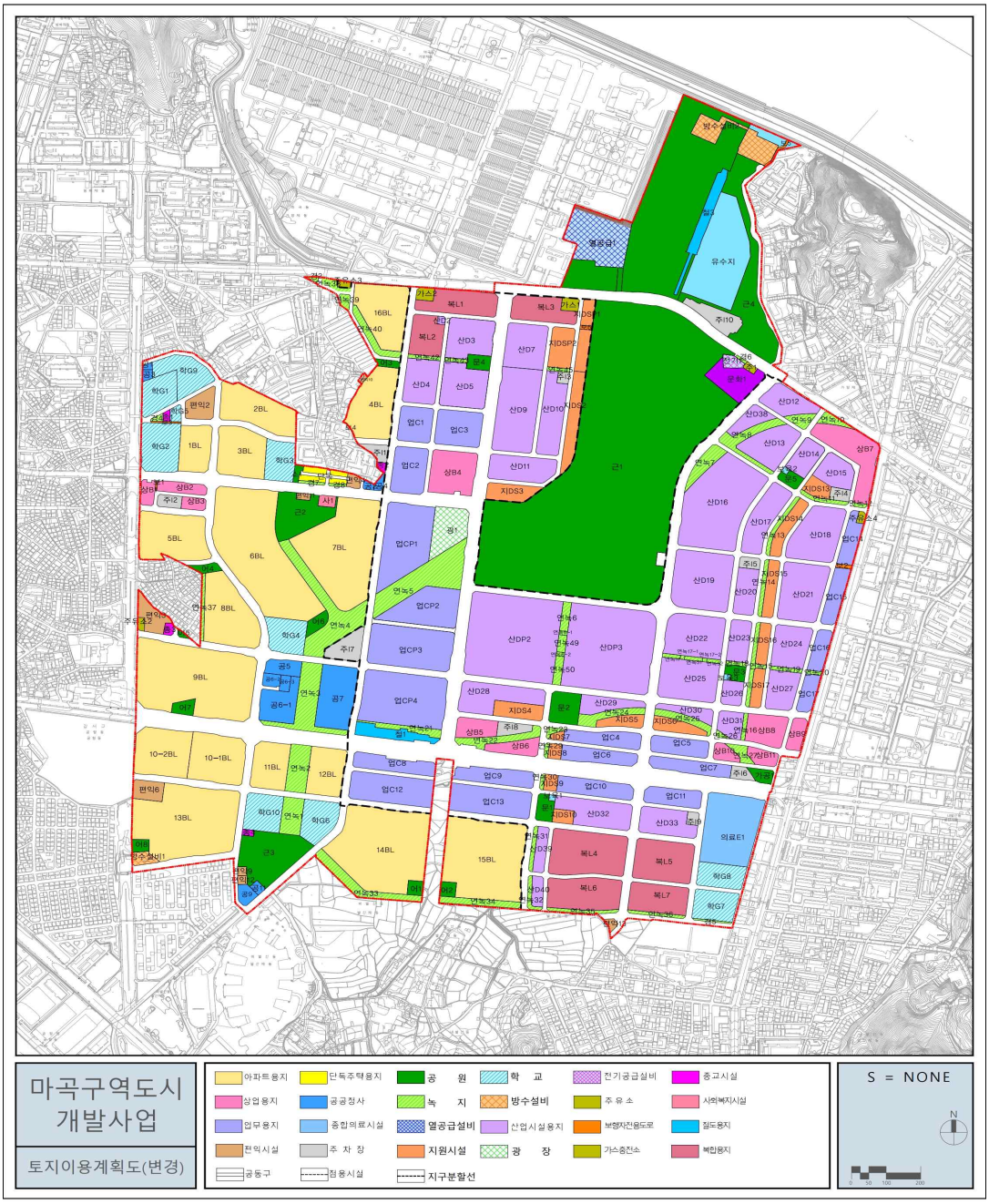
1. 지구분할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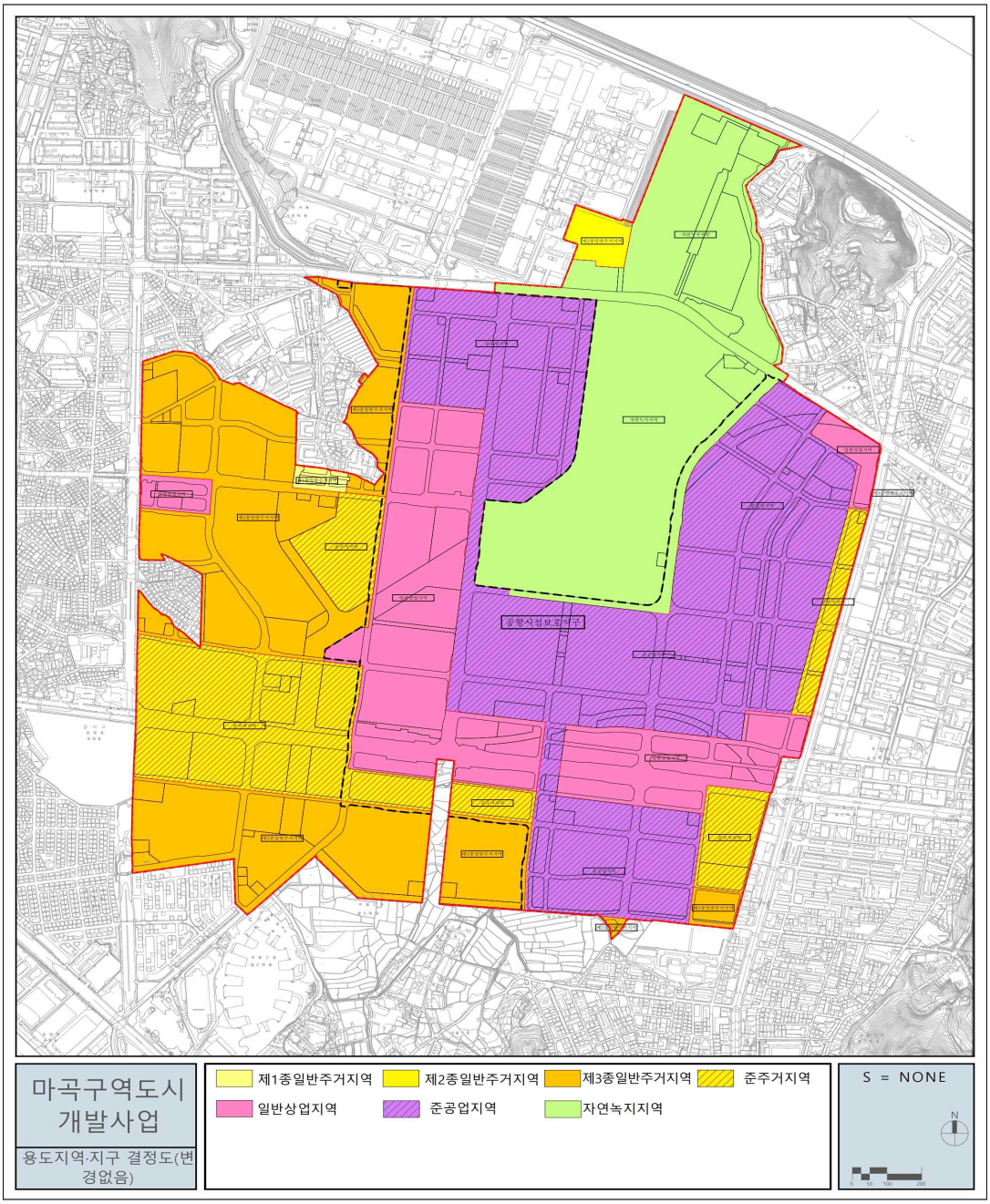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마곡구역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공 원
학 교
전기공급설비
종교시설
상업용지
공공청사
녹 지
방수설비
주 유 소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지
종합의료시설
열공급설비
산업시설용지
보행자전용도로
철도용지
편익시설
주 차 장
지원시설
광 장
가스충전소
공동구
정용시설
지구분할선
S = 1 :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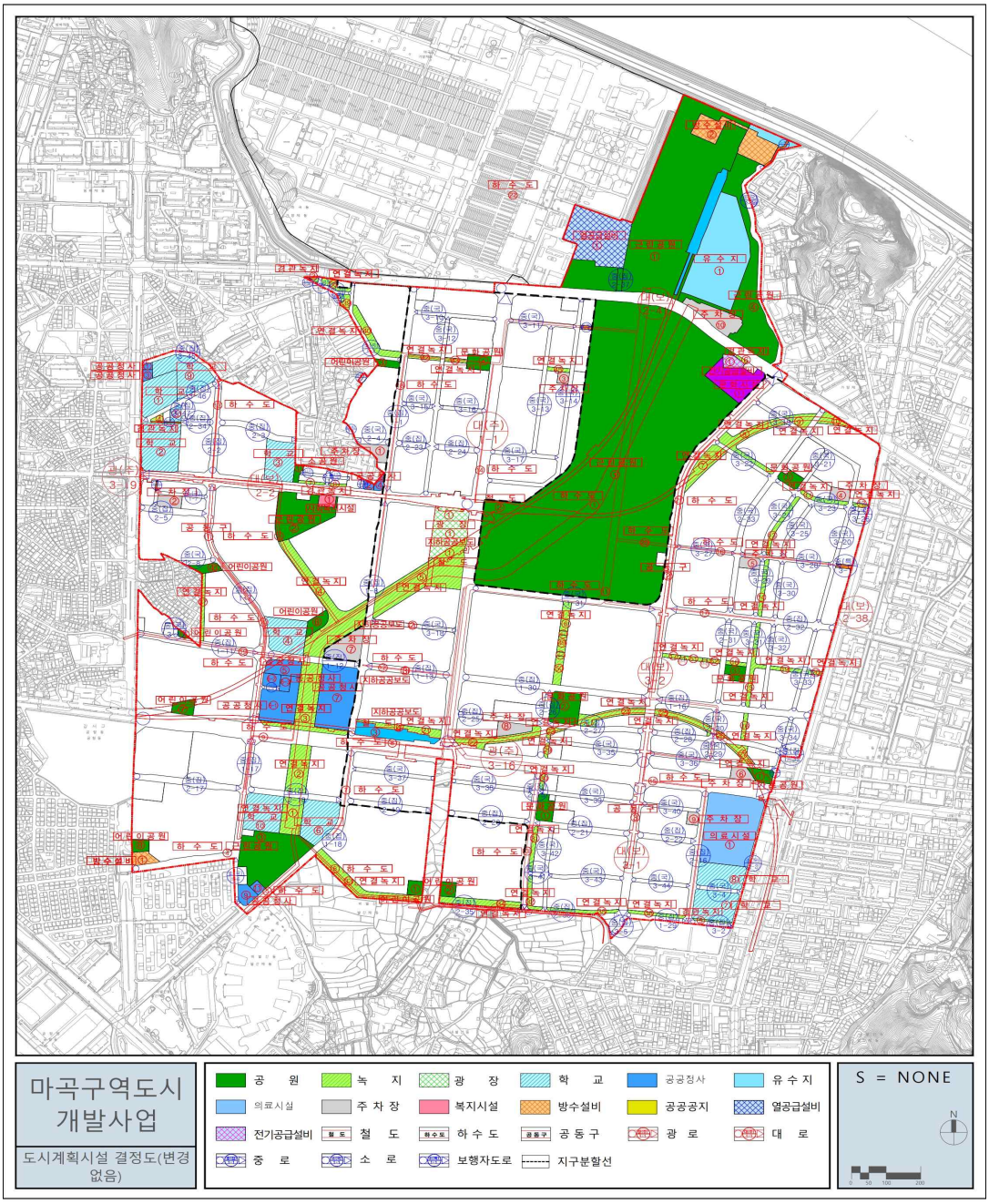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공 원
학 교
전기공급설비
중고시설
상업용지
공공청사
녹 지
방수설비
주 유 소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지
종합의료시설
열공급설비
산업시설용지
보행자전용도로
철도용지
판익시설
주 차 장
지원시설
광 장
가스충전소
복합용지
공동구
점용시설
지구분할선
S = NONE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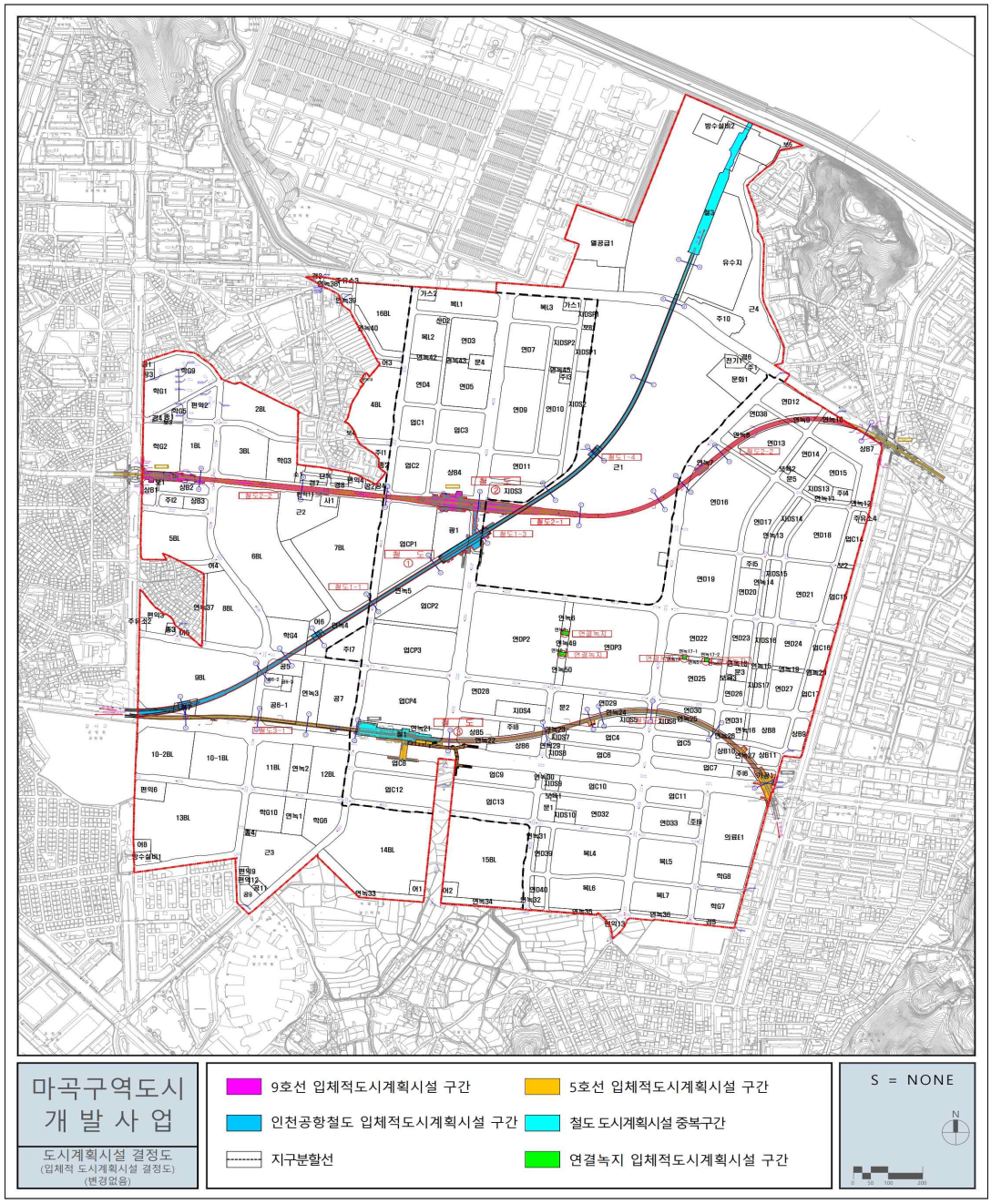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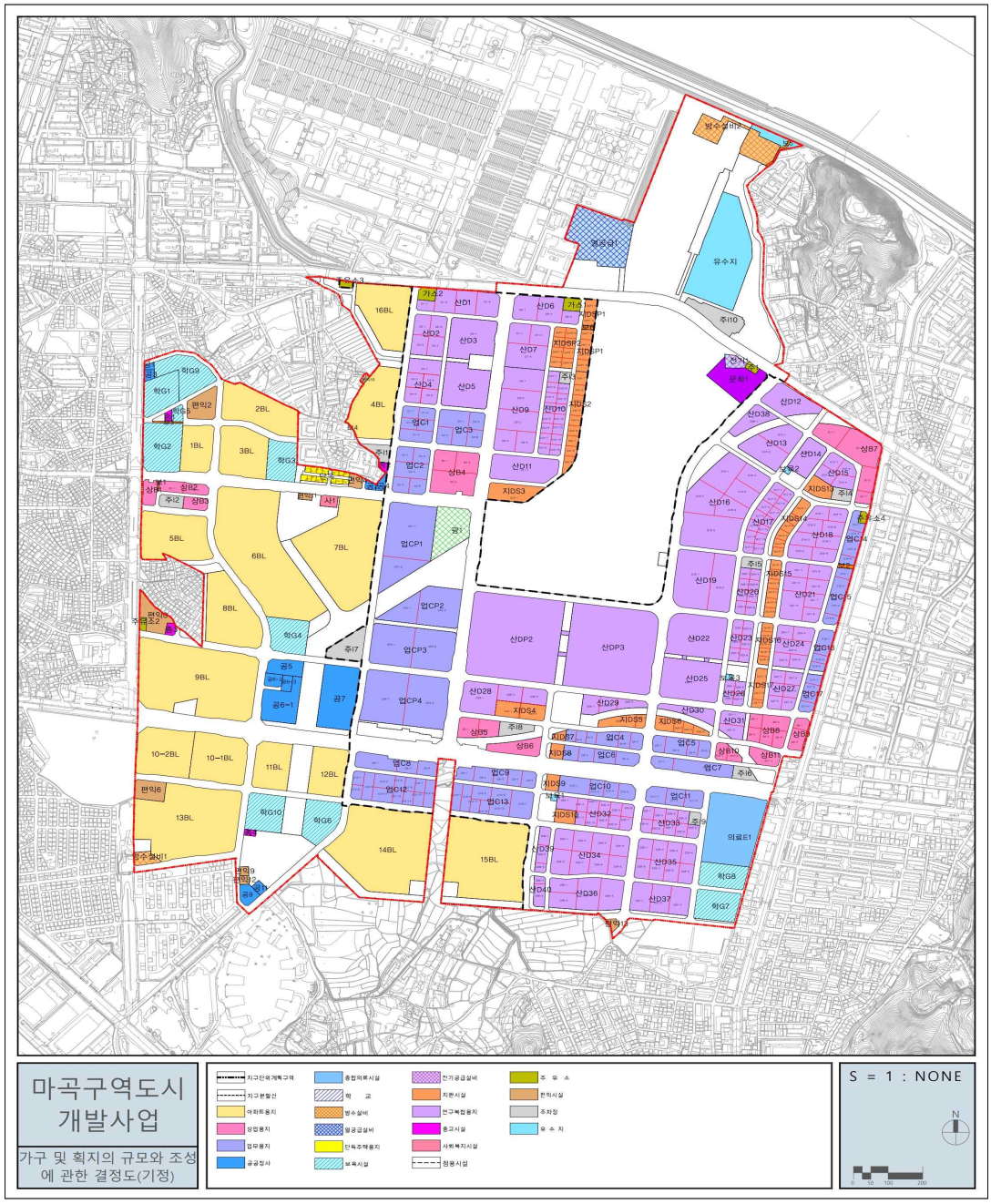
4.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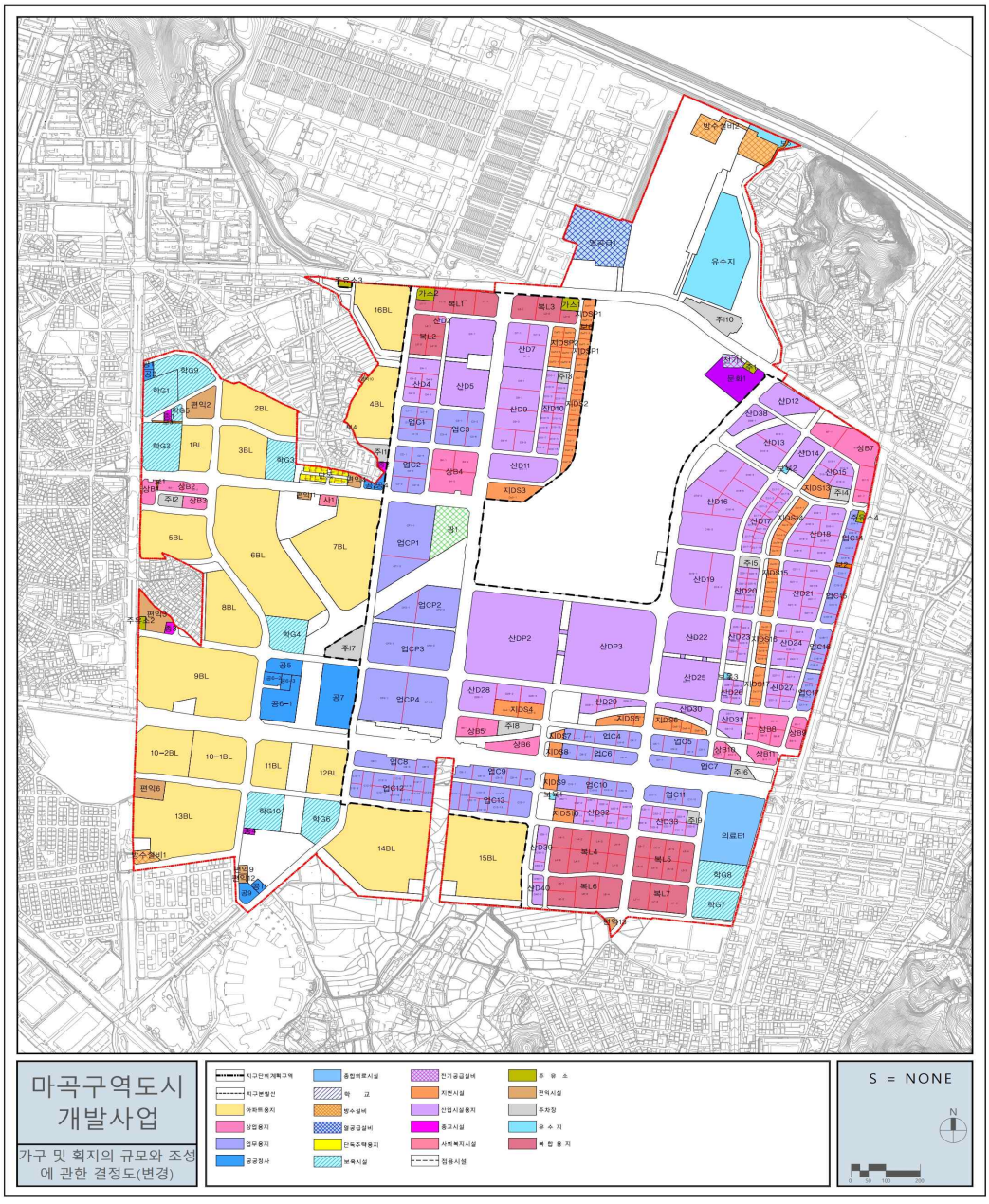
5.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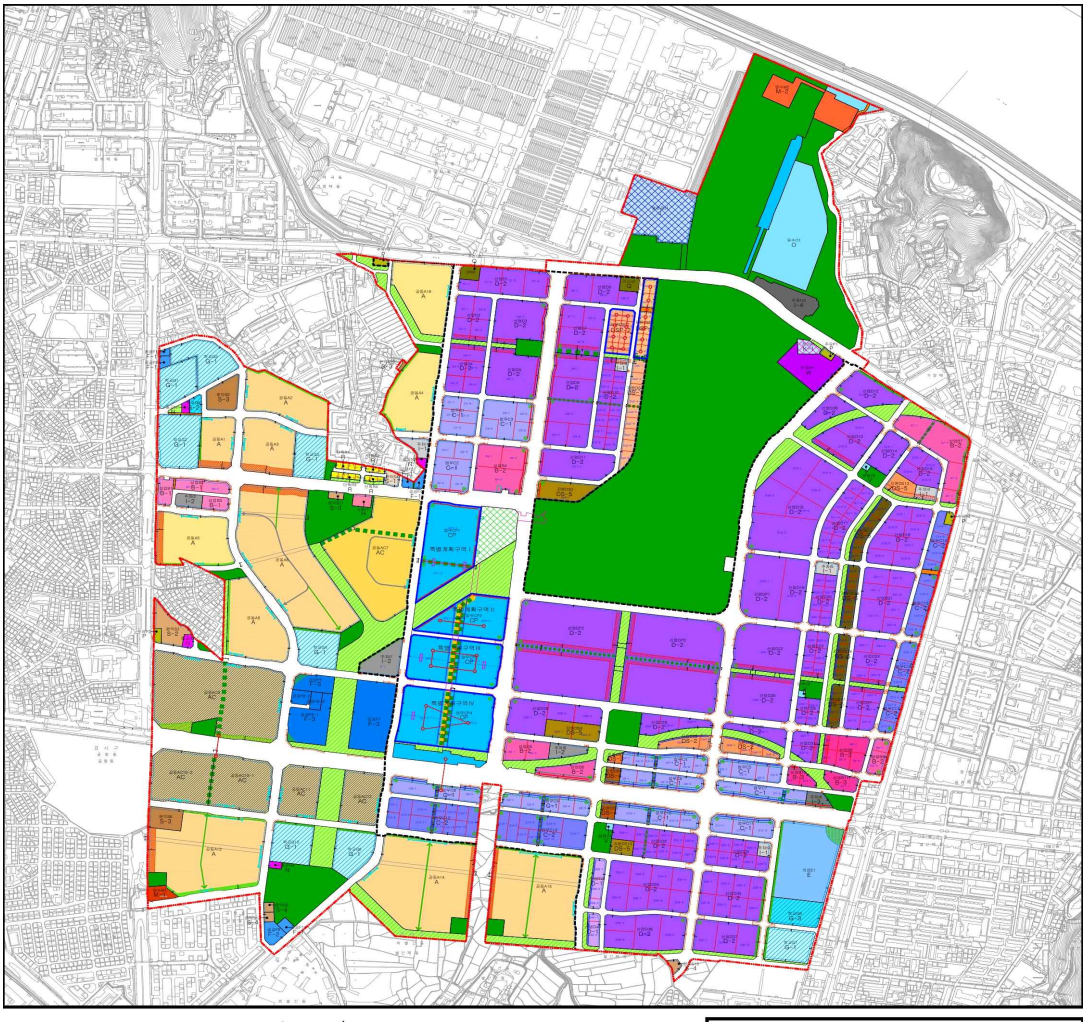
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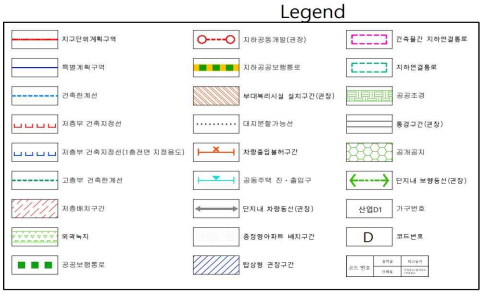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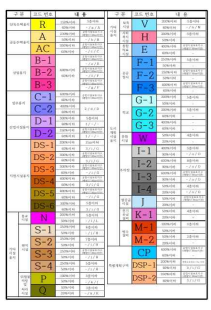
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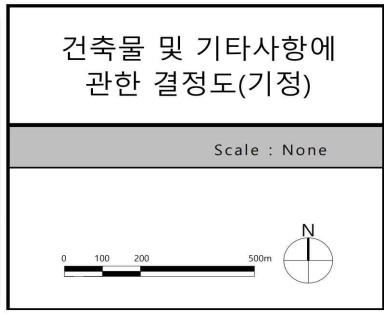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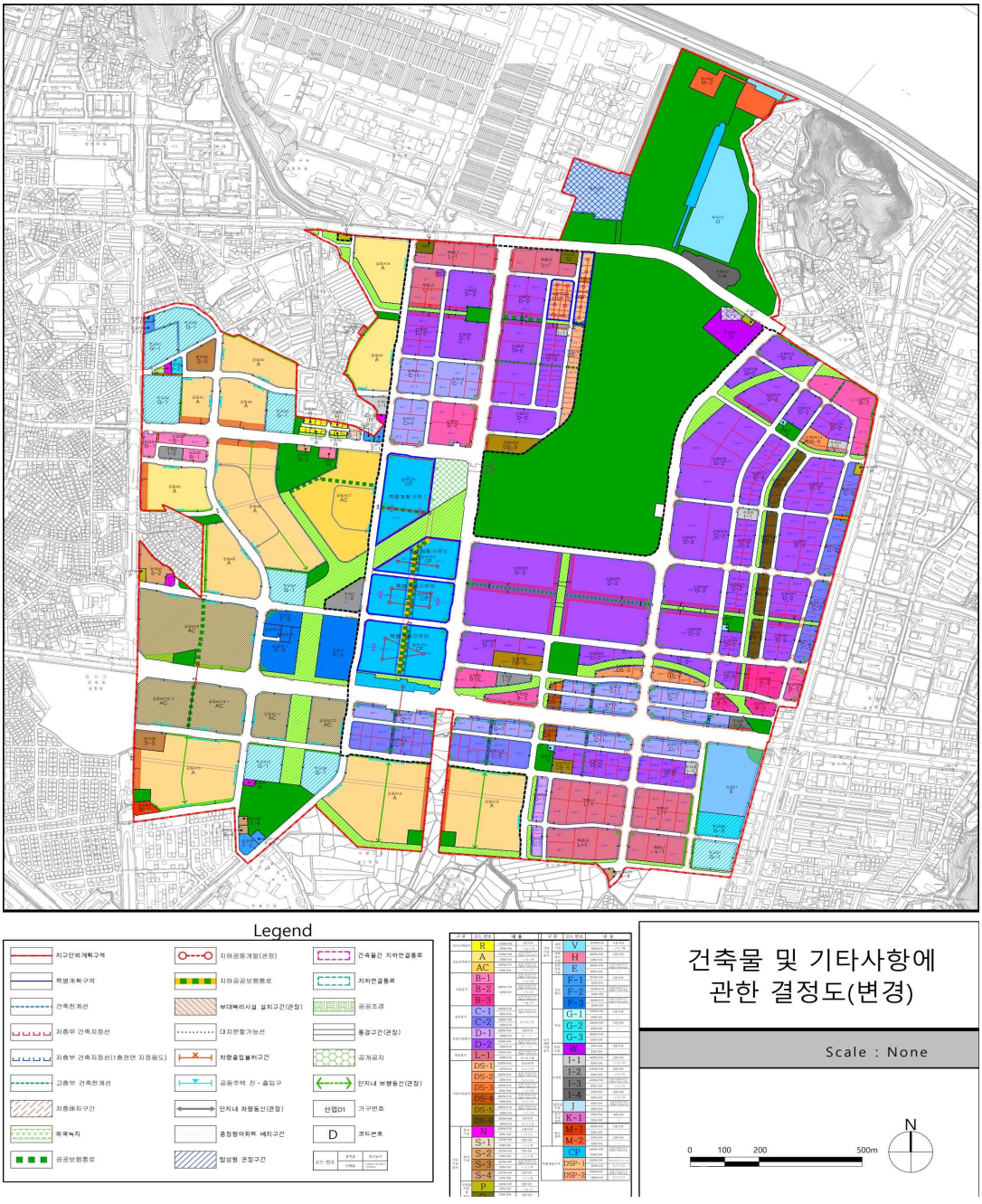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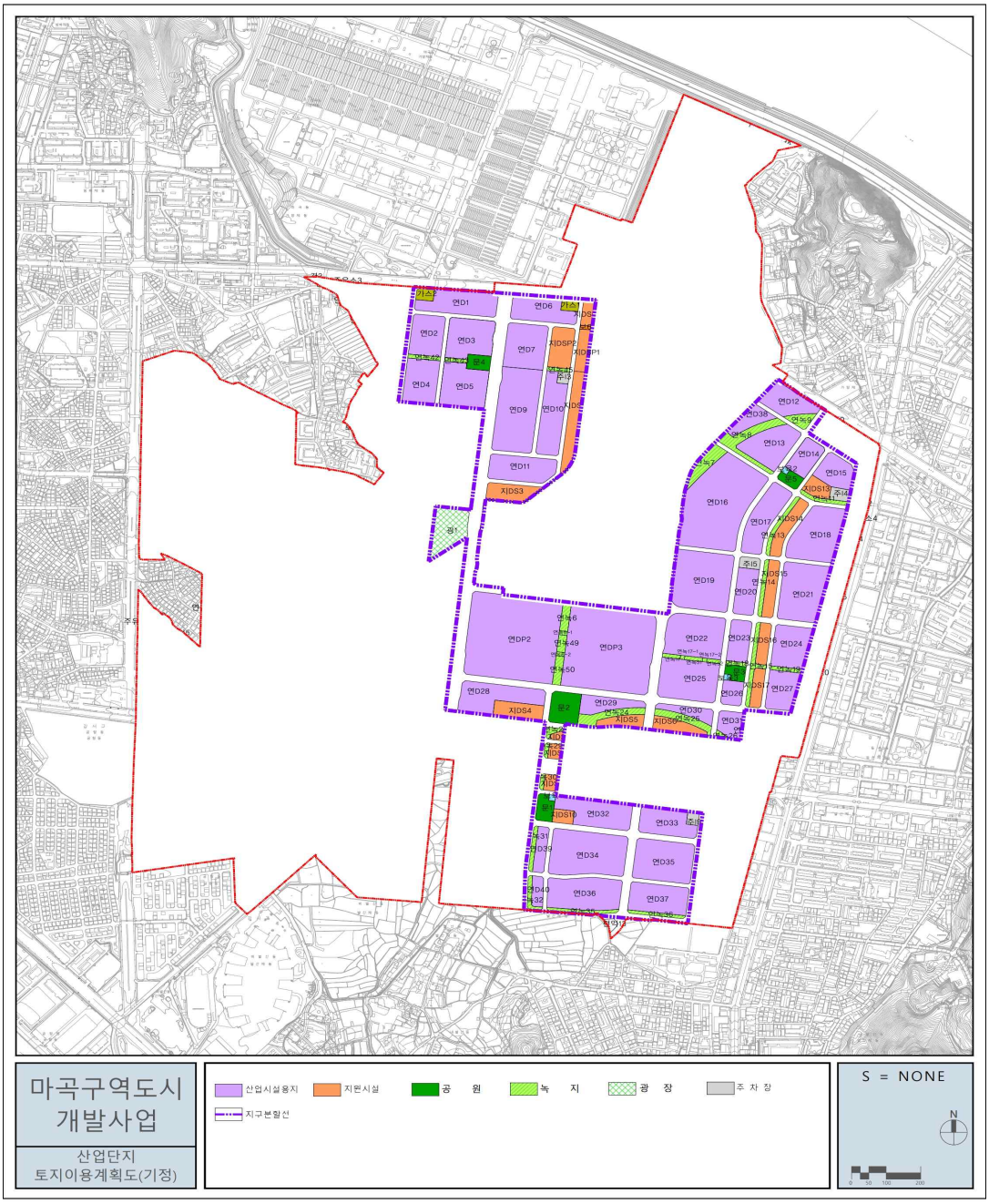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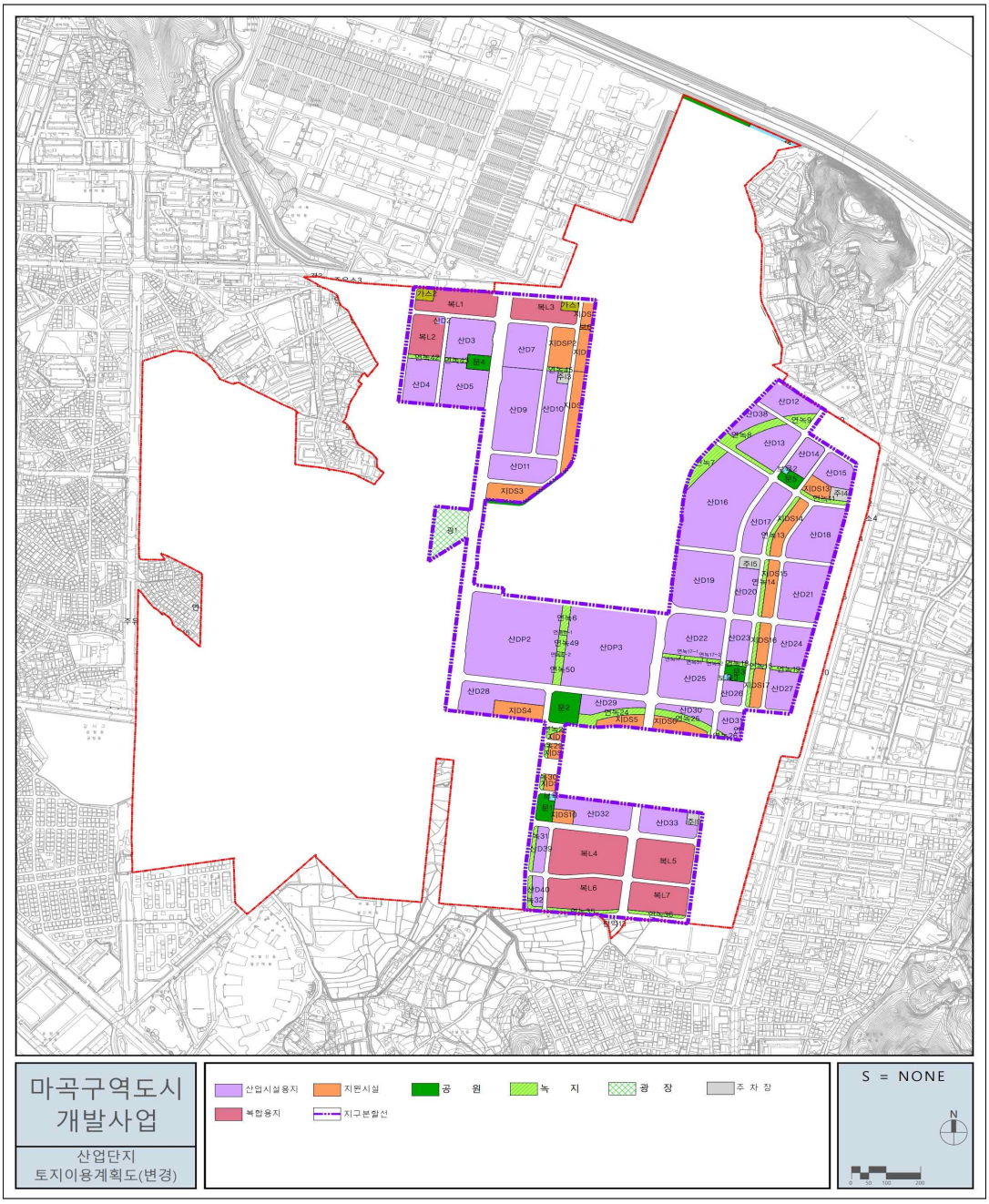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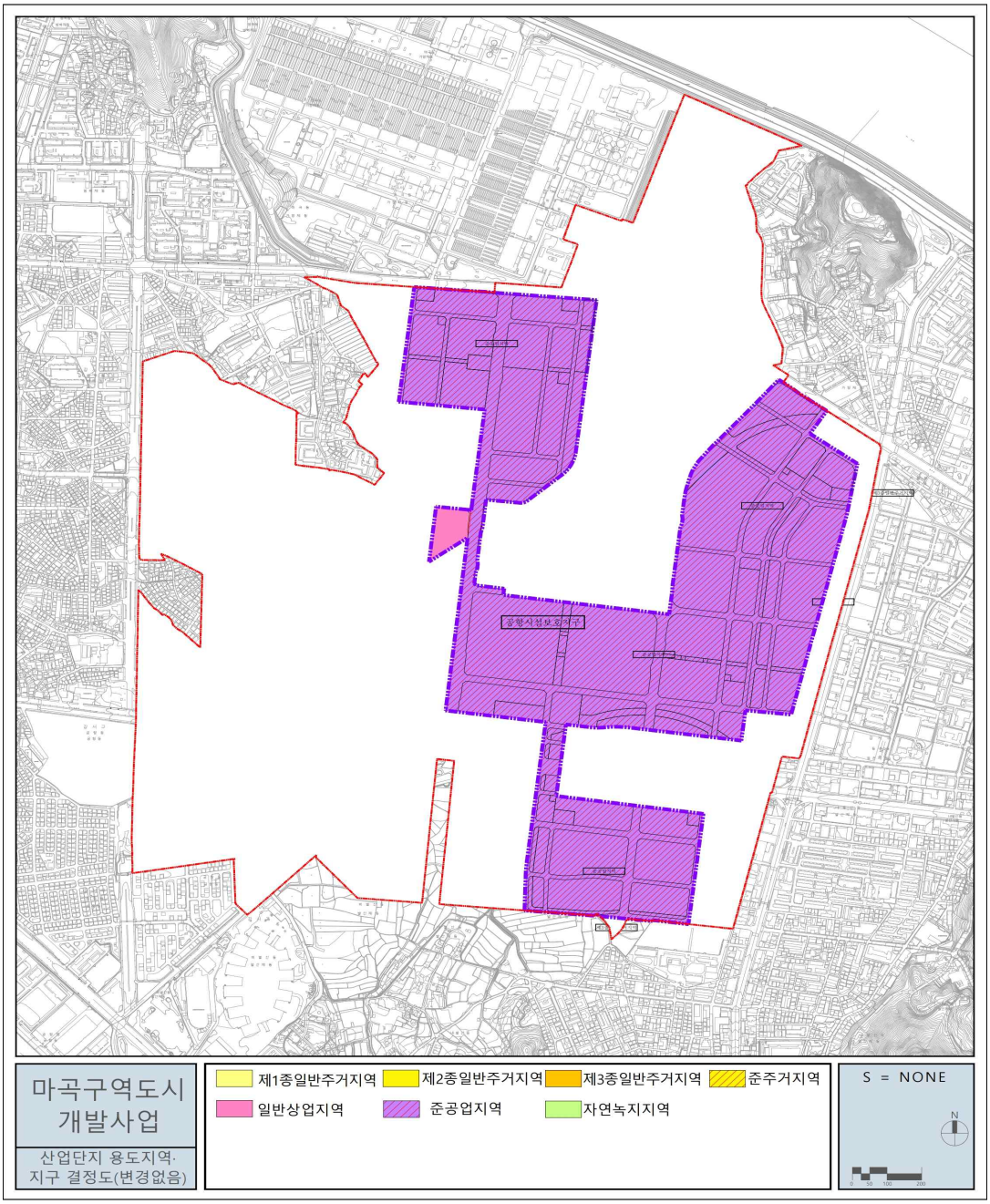
8.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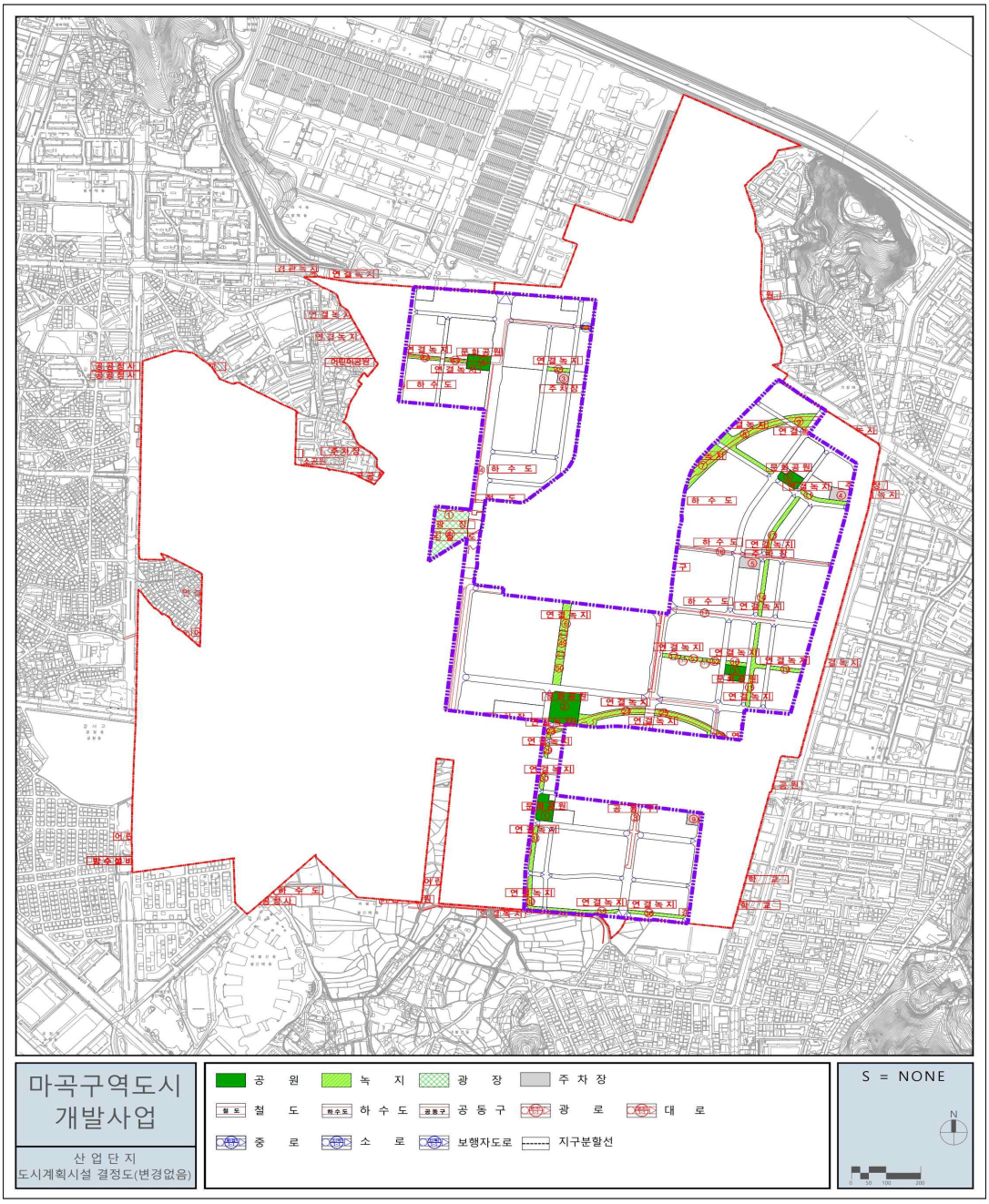
8.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9. 산업단지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10. 산업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5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고척동 24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구로구	고척동 241번지 일대	35,000	' 22.06.23.	' 22년 공모 선정
		43,700	' 22.09.22.	구역 확대 ※ 전문가 자문(' 22. 9. 6.) : 의견 적정
		18,532	' 23.11.30.	구역 확대 ※ 전문가 자문(' 23.11.15.) : 의견 적정
		1,503.6	' 24.02.22.	구역 확대 ※ 전문가 자문(' 24.02.15.) : 의견 적정

※ 기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26호)한 권리산정기준일 일부 오류 수정

위 치	당초		정정		관련 고시문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고척동 241번지 일대	78,700	' 23.09.22.	35,000	' 22.06.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26호
			43,700	' 22.09.22.	

2. 권리산정기준일: 2022. 6.23.(구역 35,000㎡ 부분), 2022. 9.22.(구역 43,700㎡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22년 공모 선정(35,000㎡) 및 `22. 9. 6. 전문가 자문에서 구역 확대(43,700㎡)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4년 내, `23.11.15. 전문가 자문에서 구역 확대(18,532㎡) 및 `24. 2.15. 전문가 자문에서 구역 확대부분(1,503.6㎡)에 대하여는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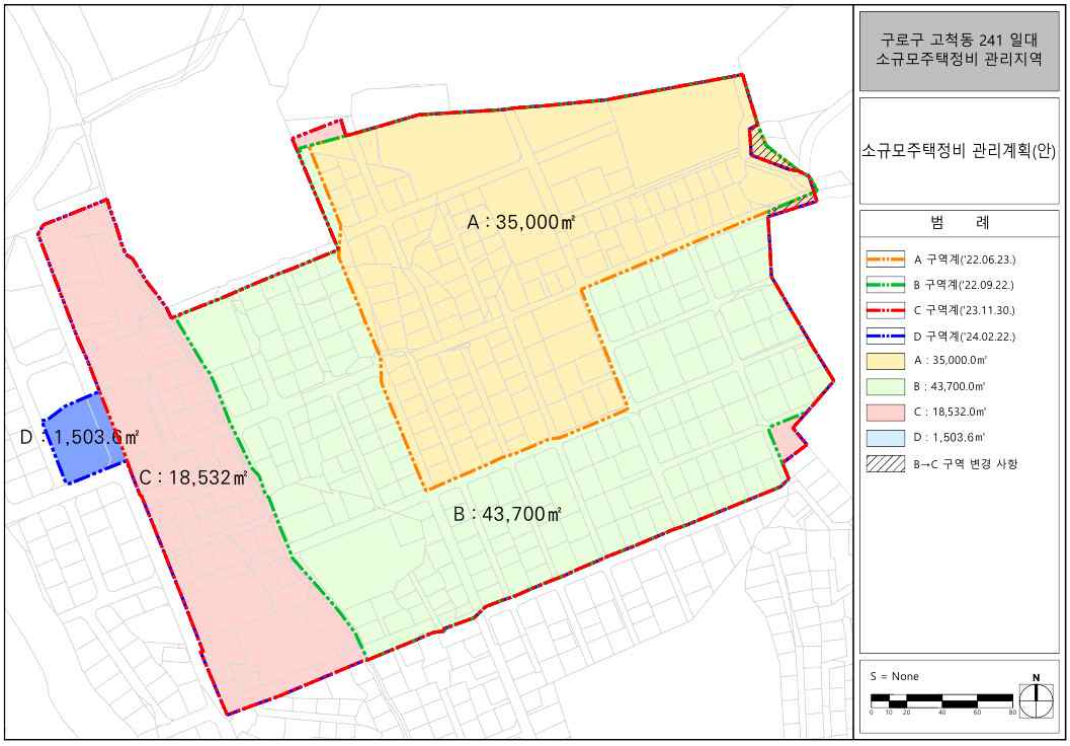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또는 변경) 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고척동 241번지 일대 모아타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77-94호(1977.04.02.)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79-278호(1979.06.26.) 및 관악구고시 제1999-73호(1999.11.24.)로 변경 결정된 관악구 신림동 131-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과 관련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12.1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용중인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을 폐지하고, 장래 공공목적 전환(가칭: 서울창업허브(관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철도)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①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신림동 131-6번지일대	2,702	감) 2,702	-	1977.04.02. (서고 제1977-94호)	-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폐지	①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폐지 - 면적 : 2,702㎡	• 신림공영차고지 신설 예정에 따라 기존 신림3차고지 기능 이전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 서울창업허브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기존 시설 부지의 효율적 토지 활용 도모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신림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9호선 샛강역)	관악구 신림동 211번지 (서울대 입구)	대방역 신림역 보라매역 샛강역	7,760	75,405.9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중복결정 (자동차정류장)
변경	철도	도시철도 (신림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9호선 샛강역)	관악구 신림동 211번지 (서울대 입구)	대방역 신림역 보라매역 샛강역	7,760	75,405.9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 사항 변경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폐지에 따른 중복결정 사항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	6~8	국지도로	71	신림동 815-10	신림동 128-8	일반 도로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3-	도로 신설	서울창업허브 관악 계획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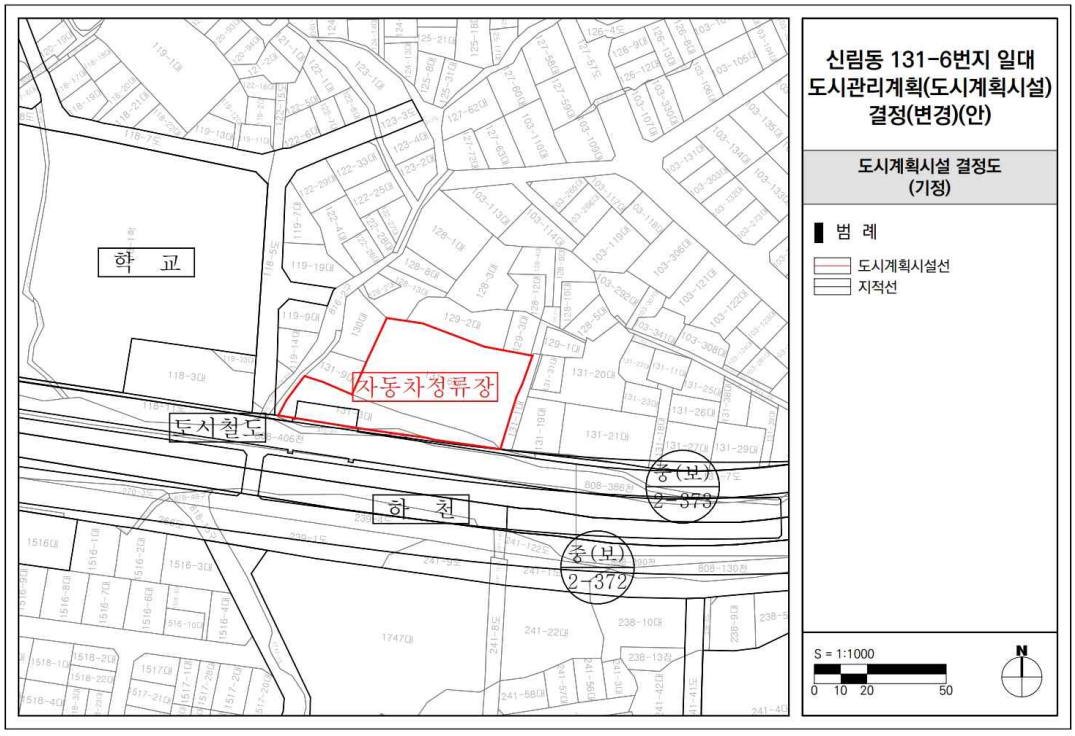
다. 관계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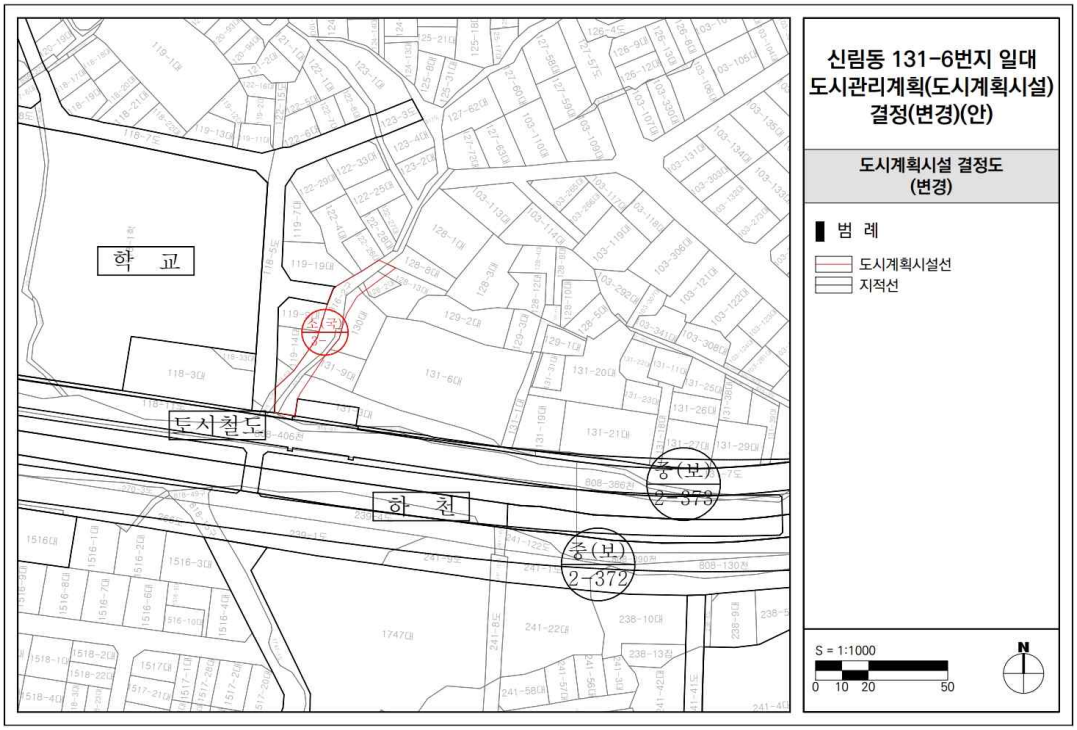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관악구 도시계획과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7호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이하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	-	증) 44,072.7	44,072.7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44,072.7	44,072.7	100.0	-
정비 기반시설 등	소계	-	증) 9,798.1	9,798.1	22.3	-
	도로	-	증) 9,680.8	9,680.8	22.0	입체적결정 미포함
	보행자 전용도로	-	증) 117.3	117.3	0.3	-
획지	소계	-	증) 34,274.6	34,274.6	77.7	-
	획지1	-	증) 33,994.2	33,994.2	77.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증) 280.4	280.4	0.6	종교용지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4,072.7	-	44,072.7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35.4	감) 16,275.5	3,759.9	8.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672.8	감) 17,354.2	6,318.6	1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3,994.2	33,994.2	77.1	-
	제3종일반주거지역	364.5	감) 364.5	-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공동주택(획지1)	사당동 63-1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628.4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365.8	
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88.6	정비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하향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4.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0.2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 해당없음

4.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천원)
수입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496,991,152
		일반분양	403,994,721
	임대주택	법정 용적률	55,951,159
		상한 용적률	3,860,300
	근린생활시설		11,340,000
	매출부가세		520,251
	소계		971,617,081
지출	공사비		395,771,350
	보상비		60,715,420
	관리비		6,530,947
	설계비		6,083,095
	감리비		7,925,625
	부대경비		72,564,429
	예비비		32,700,000
	소계		582,290,866
종전자산(출자금) 평가금액			358,076,988
추정비례율	108.72% = {총수입(971,617,081천원) - 총지출(582,290,866천원)} ÷ 종전자산(358,076,988천원)×10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에 따른 비례율 추산 비교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전체 사업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가 (천원/3.3㎡)	7,650	8,075	8,500	8,925	9,350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10%	50,600	145.62%	139.71%	133.88%	128.17%	122.26%
	5%	48,300	133.04%	127.13%	121.30%	115.59%	109.68%
	0%(기준)	46,000	120.46%	114.55%	108.72%	103.01%	97.10%
	-5%	43,700	107.87%	101.97%	96.14%	90.43%	84.52%
	-10%	41,400	95.29%	89.38%	83.56%	77.85%	71.94%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7~12	국지 도로	216 (113)	사당동 42-4	사당동 67-8	일반 도로	-	서고 제248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216 (113)	사당동 1161-5	사당동 43-7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2	7~25	국지 도로	210	동작동 산4-2	사당동 43-2	일반 도로	-	서고 제54호 (1973.04.25.)	-
변경	중로	3	2	12~25	국지 도로	228	동작동 335	사당동 708-120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	6	구획 도로	117	사당동 59-10	사당동 64-59	일반 도로	-	서고 제146호 (1994.05.09.)	-
변경	중로	3	A	12	국지 도로	167	사당동 64-125	사당동 1137-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447	사당동 67-7	사당동 95-7	일반 도로	-	서고 제54호 (1973.04.25.)	-
변경	중로	3	B	12	국지 도로	218	사당동 43-19	사당동 59-20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C	10~12	국지 도로	115	사당동 59	사당동 1137-6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기정	소로	3	-	6	-	594	사당동 73-6	사당동 1155	일반 도로	-	서고 제54호 (1973.04.25.)	-
변경	소로	3	-	6	-	257	사당동 73-6	사당동 68-18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D	8	국지 도로	164	사당동 708-1123	사당동 64-176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신설	소로	3	E	8	국지 도로	45	사당동 64-76	사당동 64-214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신설	소로	3	F	8	국지 도로	14	사당동 64-113	사당동 64-124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신설	소로	3	G	8	국지 도로	92	사당동 산10-43	사당동 56-31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폐지	소로	3	13	6	-	78	사당동 57-56	사당동 57-6	일반 도로	-	서고 제54호 (1973.04.25.)	-
폐지	소로	3	14	6	-	108	사당동 66-2	사당동 67-2	일반 도로	-	서고 제54호 (1973.04.25.)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중로3-1	중로2-1	•도로 확폭 - B=7~12m→15m •기종점 위치 변경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확보를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변경	중로3-2	중로3-2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 B=7~25m→12~25m •연장 확대 - L=210m→228m •기종점 위치 변경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변경	소로3-1	중로3-A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 B=6m→12m •연장 확대 - L=117m→167m •기종점 위치 변경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및 선형 조정
변경	소로3-11	중로3-B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 B=6m→12m •연장 축소 - L=447m→218m •기종점 위치 변경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도로 확폭을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변경	소로3류	소로3류	•연장 축소 - L=594m→257m •기종점 위치 변경	사업구역을 관통하는 기존도로 선형 조정
신설	-	중로3-C	•일반도로 신설 - B=10~12m, L=115m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을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신설	-	소로3-D	•일반도로 신설 - B=8m, L=164m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을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신설	-	소로3-E	•일반도로(입체적 결정) 신설 - B=8m, L=45m	일반도로의 입체적 결정을 통한 지형적 단차 극복
신설	-	소로3-F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8m, L=14m	지형적 단차를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을 통해 보행안전 확보
신설	-	소로3-G	•일반도로 신설 (구역외) - B=8m, L=92m	사업구역을 관통하는 기존도로(소로3류) 선형 조정에 따른 구역외 도로 신설
폐지	소로3-13	-	•폐지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도로 폐지
폐지	소로3-14	-	•폐지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도로 폐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동이용시설	소계	-	-	증) 2,890	2,890	-
		경로당	사당동 63-1번지 일대	-	증) 340	340	-
		어린이집		-	증) 340	340	-
		작은도서관		-	증) 160	160	-
		다함께 돌봄센터		-	증) 250	250	-
		주민휴게시설(개방형)		-	증) 500	500	-
		주민운동시설(옥외)		-	증) 240	240	-
		어린이놀이터(옥외)		-	증) 1,060	1,060	-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	증) 100	100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설치해야 함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44,072.7	획지1	33,994.2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	211	-	-	-	211	-
			획지2	280.4	동작구 사당동 55-100번지 일대	1	1	-	-	-	-
합 계				34,274.6	-	212	1	-	-	211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44,072.7	획지1	33,994.2	사당동 63-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기준 190.4 허용 221.8 상한 238.25 법적상한 250.0	해발고도 103m이하 / 최고23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세대수 : 856세대 (분양 715세대, 임대 141세대)

•규모별 주택건설 비율

구분	계획		비고
	세대수	비율(%)	
계	856	100.0	임대주택 141
60㎡ 이하	499	58.3	임대주택 131
60㎡ 초과 85㎡ 이하	312	36.4	임대주택 10
85㎡ 초과	45	5.3	-

구분	건립규모	분양주택	임대주택		
			소 계	40㎡ 이하	40㎡ 초과
초과용적률 전 세대수	809	687	122	41	81
구성비(%)	100.0	84.9	15.0	5.1	10.0
임대주택 구성비(%)	-	-	100.0	33.6	66.4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94.7% 계획

•임대주택 건설비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08% 계획

•전용면적 40㎡ 이하 비율 : 임대주택 33.6% 계획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47세대) 세대수 제외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초과용적률 50% 이상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건설 : 용적률 5.88% 계획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초과용적률	초과용적률 50%	임대주택공급계획 (의무공급면적)
238.25%	250.00%	11.75%	5.88%	계획 1,998.5㎡ (기준 1,997.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동작대로35길(획지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동작대로35길(획지2)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내외

•그 외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공공보행통로 1개소 (폭원 7m 이상)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10">산 정 내 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2">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1
(공동주택)</td><td colspan="4">신설 정비기반시설 등</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 · 공유지 면적</td><td rowspan="2">유상매입
국 · 공유지</td></tr>
<tr><td>계</td><td>도로</td><td>보행자
전용도로</td><td>건축물 기부채납
건축물
대지
지분</td><td>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td></tr>
<tr><td></td><td>44,072.7㎡</td><td>33,994.2㎡</td><td>9,798.1㎡</td><td>9,680.8㎡</td><td>117.3㎡</td><td>-</td><td>-</td><td>4,017.2㎡</td><td>3,514.5㎡</td><td>66.5㎡</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9">•순부담률 : 6.7%
•순부담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 · 공유지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 · 공유지
= 9,798.1㎡ - 4,017.2㎡ - 3,514.5㎡ = 2,266.4㎡</td><td></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9">•기준 : 190.4%
-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가중평균값 적용
- 1종일반주거지역(48.9%) 150%,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51.1%) 190%
= 170.4% + 20.0%(소형주택 공급) = 190.4%
※ 「2030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소형주택 공급으로 기준용적률 20% 완화</td><td></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9">•허용 : 221.8%
- 2024년 서울시 대지 평균 공시지가 5,969,319원/㎡, 2024년 대상지 내 대지 평균 공시지가 3,820,737원/㎡로 (5,969,319÷3,820,737) = 보정계수 1.57
- 허용용적률 20% X 1.57 = 31.4% = 기준용적률 190.4% + 31.4% = 221.8%
<table>
<tr><td rowspan="7">인센티브
항목</td><td>공공보행통로</td><td>8.2%</td><td>▹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8.2%</td></tr>
<tr><td>열린단지</td><td>5.0%</td><td>▹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td></tr>
<tr><td>BF인증</td><td>3.0%</td><td>▹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인증 예정 (일반등급 적용)</td></tr>
<tr><td>돌봄시설</td><td>5.0%</td><td>▹ 기준용적률×(조성면적/주민공동시설면적)×a = 6.3%</td></tr>
<tr><td>층간소음 해소</td><td>3.0%</td><td>▹ 바닥충격음 2등급 이상 인증</td></tr>
<tr><td>소 계</td><td>20%</td><td>최대 20% 적용</td></tr>
</table></td><td></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9">•상한 : 238.25% ※상한용적률 계산시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 완화, 보정계수 적용 전 용적률
= 보정계수 적용 허용용적률 + 상한계산용 허용용적률 X {1 + (1.3 X α토지 X 가중치) + (0.7 X β건축물)}
= 221.8% + 190.4% X {(1.3 X 0.0667 X 0.9968) + (0.7 X 0)} = 238.25%
= 상한용적률 : 238.25%</td><td></td></tr>
<tr><td>α
[토지]</td><td colspan="9">•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2,266.4㎡) ÷ (33,994.2㎡)
= 0.0667</td><td></td></tr>
</table>

구분	산 정 내 용	
β [건축물]	•건축물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해당없음	
법적상한 용적률	•250% 이하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임대 건설 계획

계획기준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전체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809세대 = 856세대 - 47세대(법적상한 증가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122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이상 : 809세대 x 15% = 121.35세대 ∴ 122세대 계획 〉 121.35세대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41세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 122세대의 30% 이상 : 122 x 30% = 36.6세대 ∴ 41세대 계획 〉 36.6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122	15.1	100.0
전용 39㎡	41	5.1	33.6
전용 49㎡	41	5.1	33.6
전용 59㎡	40	4.9	32.8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6">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3">재개발
국민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6">•11.75%(250.0% - 238.25%)</td></tr>
<tr><td>증가 연면적</td><td colspan="6">•11.75% x 33,994.2㎡(대지면적) = 3,994.4㎡</td></tr>
<tr><td>의무면적</td><td colspan="6">•1,997.2㎡ 이상(3,994.4㎡ x 0.5)
•국민주택 공급면적 : 1,998.5㎡ 〉 1,997.2㎡</td></tr>
<tr><td colspan="2" rowspan="4">재개발 국민주택 확보계획</td><td>건립위치</td><td>부지면적(㎡)</td><td colspan="2">세대수</td><td>세대규모
(공급㎡)</td><td>연면적
(㎡)</td></tr>
<tr><td rowspan="3">사당동
63-1번지
일대</td><td rowspan="3">33,994.2</td><td>계</td><td>19</td><td>-</td><td>1,998.5</td></tr>
<tr><td>59㎡</td><td>9</td><td>59형(89.08)</td><td>801.7</td></tr>
<tr><td>84㎡</td><td>10</td><td>84형(119.68)</td><td>1,196.8</td></tr>
</table>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보전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재난방지	•공동주택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자연토양유지 및 조경시설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의 합리적인 설계 반영 •수해방지시설 설치 및 옹벽높이 최소화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생태면적률	30% 이상	○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상 법적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	•조경녹지 및 식재조성계획을 마련하여 녹지확보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으로 보호할만한 동·식물은 분포하지 않음.	•조경녹지 등을 계획하여 주변 생태 네트워크와의 연계강화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 비오톱 평가제외 범례로 조사됨.	•녹지조성을 통한 비오톱 기능 향상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사업대상지는 시가화지역으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조사됨.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	•사업대상지는 시가화 지역 및 평탄한 지대에 위치하여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수립	
물순환	급수 및 오수·우수 적정처리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급수량, 오수량, 우수처리 계획이 필요	•기존 상수·하수관로를 통한 관로계획 수립	
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배치 필요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예상됨	•동작구 폐기물 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적정처리	
대기질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에너지 절감 설비시설 설치	
경관	Skyline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계획 수립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사업대상지 내 휴식 및 여가 공간 마련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사업대상지 인근 저층 주거·상가시설 및 공동주택 분포	•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계획	
소음·진동	규제기준만족	○	•공사 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가설방음판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저감대책계획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현황세대수 : 394세대 •계획세대수 : 856세대 •증가세대수 : 462세대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 학교 주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음 •조망 및 일조는 조망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하겠으며, 일조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일조기준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교육환경평가 대상일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겠음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자연감시	•건축물 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보행자를 위한 조명 설치 •가급적 보행공간을 직선으로 계획하고 적절한 보행폭을 확보 •조경수목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식재하고 조명시설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	-
영역성 강화	•보행공간, 가로시설 및 조경 식재공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 공개공지나 화단 등을 조성 •가로시설물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계획 •건축물의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하도록 유도	-
활동의 활성화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도시설의 배치와 디자인을 권장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배치하여 활성화를 유도	-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의 설치	•범죄 취약공간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감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비상벨은 가로등, 전신주, CCTV 주변, 방범시설이 부족한 취약한 공간 등에 설치하되 경광기능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	-	증) 44,072.7	44,072.7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4,072.7	-	44,072.7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35.4	감) 16,275.5	3,759.9	8.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672.8	감) 17,354.2	6,318.6	1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3,994.2	33,994.2	77.1	-
	제3종일반주거지역	364.5	감) 364.5	-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공동주택 (획지1)	사당동 63-1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628.4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365.8	
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88.6	정비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하향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4.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0.2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7~12	국지 도로	216 (113)	사당동 42-4	사당동 67-8	일반 도로	-	서고 제248호 (2012.09.13.)	-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216 (113)	사당동 1161-5	사당동 43-7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2	7~25	국지 도로	210	동작동 산4-2	사당동 43-2	일반 도로	-	서고 제54호 (1973.04.25.)	-
변경	중로	3	2	12~25	국지 도로	228	동작동 335	사당동 708-120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	6	구획 도로	117	사당동 59-10	사당동 64-59	일반 도로	-	서고 제146호 (1994.05.09.)	-
변경	중로	3	A	12	국지 도로	167	사당동 64-125	사당동 1137-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447	사당동 67-7	사당동 95-7	일반 도로	-	서고 제54호 (1973.04.25.)	-
변경	중로	3	B	12	국지 도로	218	사당동 43-19	사당동 59-20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C	10~12	국지 도로	115	사당동 59	사당동 1137-6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기정	소로	3	-	6	-	594	사당동 73-6	사당동 1155	일반 도로	-	서고 제54호 (1973.04.25.)	-
변경	소로	3	-	6	-	257	사당동 73-6	사당동 68-18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D	8	국지 도로	164	사당동 708-1123	사당동 64-176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신설	소로	3	E	8	국지 도로	45	사당동 64-76	사당동 64-214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신설	소로	3	F	8	국지 도로	14	사당동 64-113	사당동 64-124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신설	소로	3	G	8	국지 도로	92	사당동 산10-43	사당동 56-31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폐지	소로	3	13	6	-	78	사당동 57-56	사당동 57-6	일반 도로	-	서고 제54호 (1973.04.25.)	-
폐지	소로	3	14	6	-	108	사당동 66-2	사당동 67-2	일반 도로	-	서고 제54호 (1973.04.25.)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중로3-1	중로2-1	•도로 확폭 - B=7~12m→15m •기종점 위치 변경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확보를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변경	중로3-2	중로3-2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 B=7~25m→12~25m •연장 확대 - L=210m→228m •기종점 위치 변경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변경	소로3-1	중로3-A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 B=6m→12m •연장 확대 - L=117m→167m •기종점 위치 변경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및 선형 조정
변경	소로3-11	중로3-B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 B=6m→12m •연장 축소 - L=447m→218m •기종점 위치 변경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도로 확폭을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변경	소로3류	소로3류	•연장 축소 - L=594m→257m •기종점 위치 변경	사업구역을 관통하는 기존도로 선형 조정
신설	-	중로3-C	•일반도로 신설 - B=10~12m, L=115m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을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신설	-	소로3-D	•일반도로 신설 - B=8m, L=164m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을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신설	-	소로3-E	•일반도로(입체적 결정) 신설 - B=8m, L=45m	일반도로의 입체적 결정을 통한 지형적 단차 극복
신설	-	소로3-F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8m, L=14m	지형적 단차를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을 통해 보행안전 확보
신설	-	소로3-G	•일반도로 신설 (구역외) - B=8m, L=92m	사업구역을 관통하는 기존도로(소로3류) 선형 조정에 따른 구역외 도로 신설
폐지	소로3-13	-	•폐지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도로 폐지
폐지	소로3-14	-	•폐지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도로 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획지1	33,994.2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	33,994.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설	획지2	280.4	동작구 사당동 55-100번지 일대	280.4	종교시설(존치)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용 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획지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종교시설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60% 이하	공동주택 사업부지
	획지2	60% 이하	종교부지

○ 용적률 계획

구분	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상한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190.4%이하	221.8%이하	238.25% 이하	250.0% 이하	-
	획지2	150%이하	-	-	-	1종일반 용적률 적용

○ 기준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기준용적률 완화	비고
신설	20.0% ※ 소형주택(60㎡ 이하)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

○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고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BF인증	돌봄시설	층간소음 해소	
신설	8.2%	5%	3%	5%	3%	20% 적용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고
신설	16.45%	-

○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 기준	비고
신설	획지1	해발고도 103m 이하 (최고 23층 이하)	-
	획지2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준용	-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동작대로35길(획지1)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
	동작대로35길(획지2)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내외	-
	그 외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4) 경관계획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공동주택 사업부지	•공공보행통로 및 도로변의 건축물 입면이 정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을 특화하여 계획
건축물의 진출입구	공동주택 사업부지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사로 계획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외부형태	공동주택 사업부지	•저층부는 지형에 순응하고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으로 저경계획과 조화롭게 계획 •돌출형 발코니 등 입면형태에 변화를 주어 시각적 리듬감 부여 •보행자 시각에서 옥탑부가 돌출되어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과 함께 디자인하여 계획
재료 및 색채	공동주택 사업부지	•저채도 위주의 색채 계획으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공동주택 사업부지	•공공보행통로 등 단지 주변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동선 및 건축물 주동 배치계획 수립
조명계획	공동주택 사업부지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사업부지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역을 고려하여 단지 외곽에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중심부로 점차 높아지는 층수 계획 수립으로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부분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도로와 연접한 보행공간은 공공도로의 재질과 패턴을 유사하게 조성하여 공공의 사용에 이질감이 없도록 함
공공보행통로	대상지 중앙 1개소	•동작초등학교로의 통학로 및 보행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동-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 6m 이상 확보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 획 내 용
차량진출입구	동작대로35길 및 동작대로35나길 2개소	•동작대로35길 및 동작대로35나길에 차량 출입을 위한 진출입구 설치

3) 환경관리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생태 면적률	30% 이상	○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상 법적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	•조경녹지 및 식재조성계획을 마련하여 녹지확보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으로 보호할만한 동·식물은 분포하지 않음.	•조경녹지 등을 계획하여 주변 생태 네트워크와의 연계강화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 비오톱 평가제외 범례로 조사됨.	•녹지조성을 통한 비오톱 기능 향상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사업대상지는 시가화지역으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조사됨.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사업대상지는 시가화 지역 및 평탄한 지대에 위치하여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수립	
물순환	급수 및 오수·우수 적정처리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급수량, 오수량, 우수처리 계획이 필요	•기존 상수·하수관로를 통한 관로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배치 필요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예상됨	•동작구 폐기물 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적정처리	
대기질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에너지 절감 설비시설 설치	
경관	Skyline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계획 수립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사업대상지 내 휴식 및 여가 공간 마련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사업대상지 인근 저층 주거·상가시설 및 공동주택 분포	•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계획	
소음·진동	규제기준만족	○	•공사 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가설방음판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저감대책계획	

4) 정비계획 임대주택 계획

계획기준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전체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809세대 = 856세대 - 47세대(법적상한 증가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122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이상 : 809세대 x 15% = 121.35세대 ∴ 122세대 계획 〉 121.35세대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41세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 122세대의 30% 이상 : 122 x 30% = 36.6세대 ∴ 41세대 계획 〉 36.6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122	15.1	100.0
전용 39㎡	41	5.1	33.6
전용 49㎡	41	5.1	33.6
전용 59㎡	40	4.9	32.8

5)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재개발 국민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11.75%(250.0% - 238.25%)					
	증가 연면적	•11.75% x 33,994.2㎡(대지면적) = 3,994.4㎡					
	의무면적	•1,997.2㎡ 이상(3,994.4㎡ x 0.5) •국민주택 공급면적 : 1,998.5㎡ 〉 1,997.2㎡					
재개발 국민주택 확보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공급㎡)	연면적 (㎡)
		사당동 63-1번지 일대	33,994.2	계	19	-	1,998.5
				59㎡	9	59형(89.08)	801.7
				84㎡	10	84형(119.68)	1,196.8

Ⅲ. 2025년 제14차(’ 25.12.24.)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수정가결	-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을 반영하겠음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용적률 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사업성 보정계수 [기정] 1.49 → [변경] 1.57	- 사업성 보정계수는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안)을 반영하여 1.57을 적용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용적률 및 주택공급 계획 수립하겠음	
		- 현충원 조망 시 본 대상지가 돌출 경관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계획에 관한 계획지침을 마련할 것	- 현충원 조망 시 본 대상지가 돌출 경관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시행 시 건축물 높이계획에 관한 계획지침을 마련하겠음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향후 사업 시행 시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하겠음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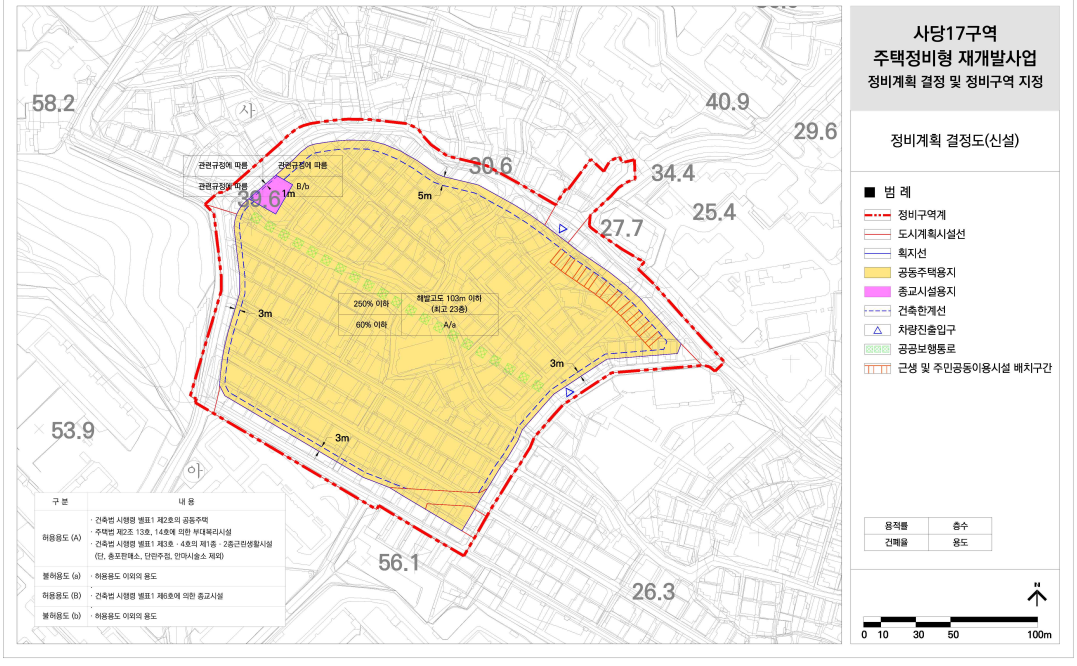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92), 동작구 도시정비과(☎02-820-197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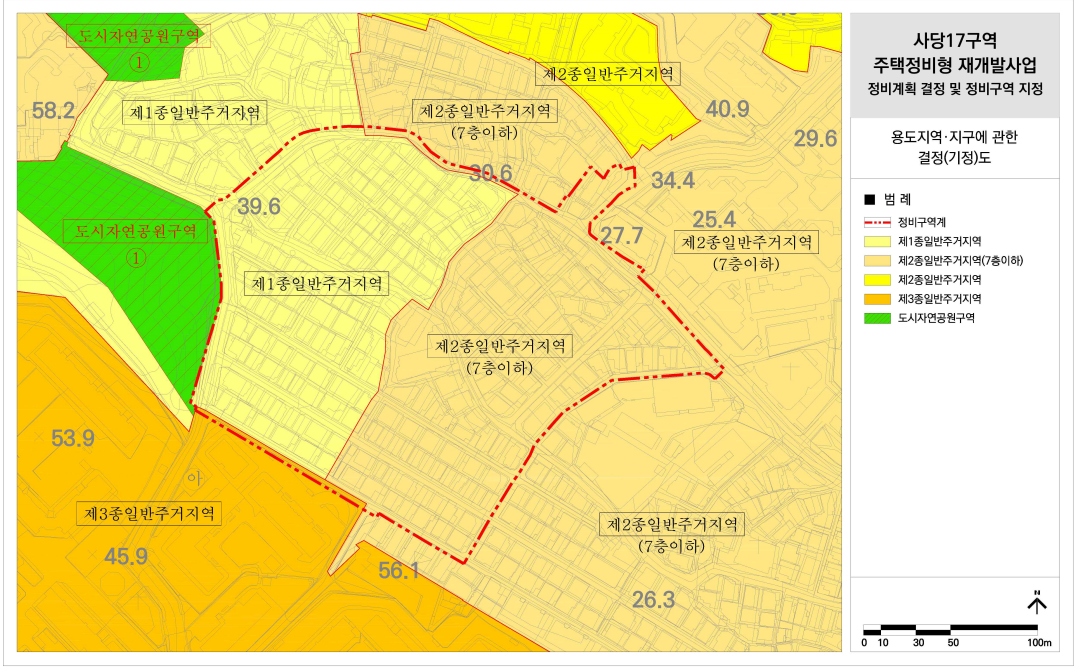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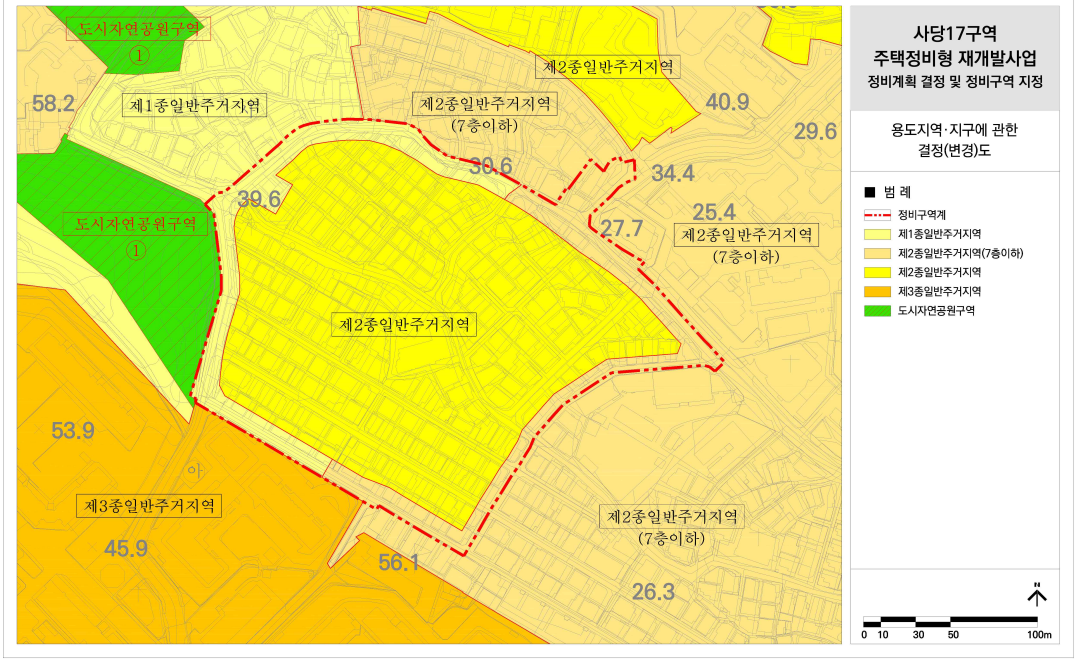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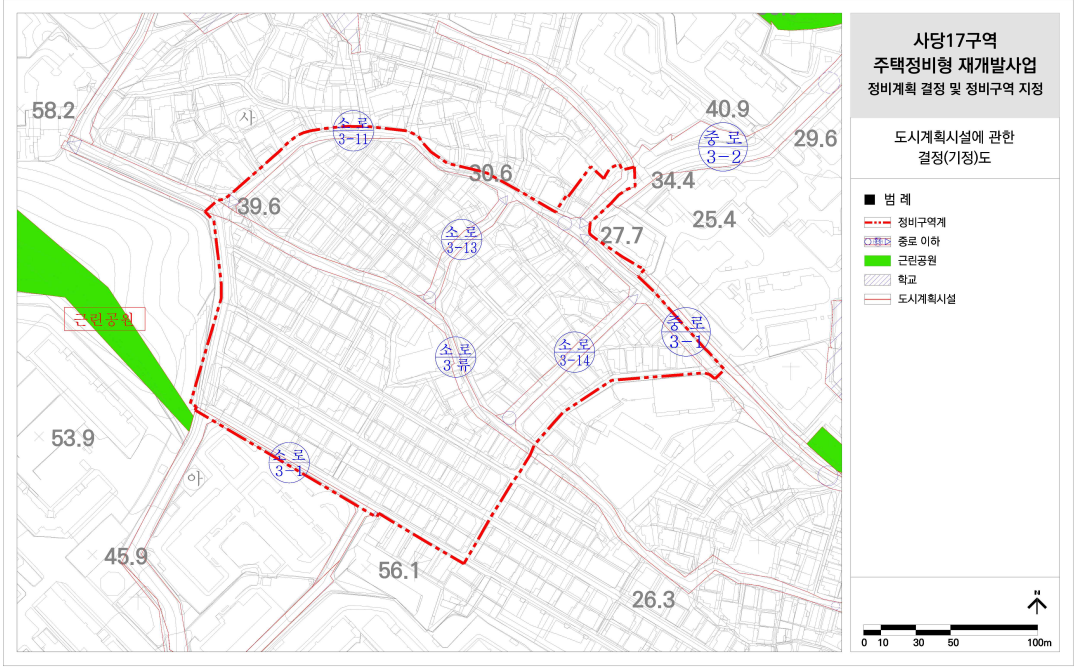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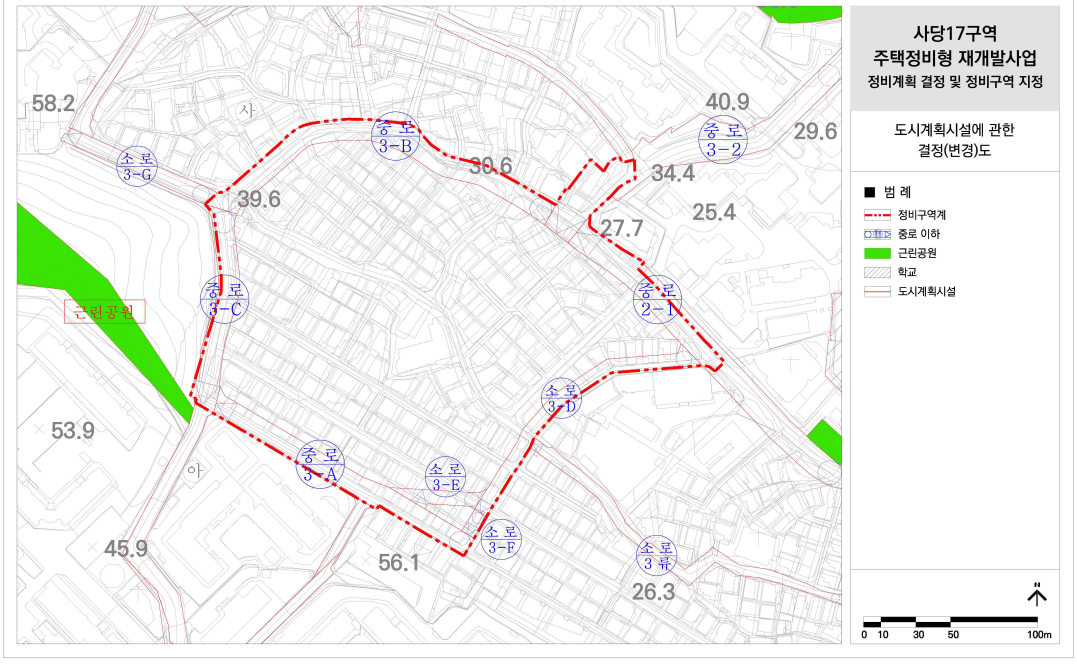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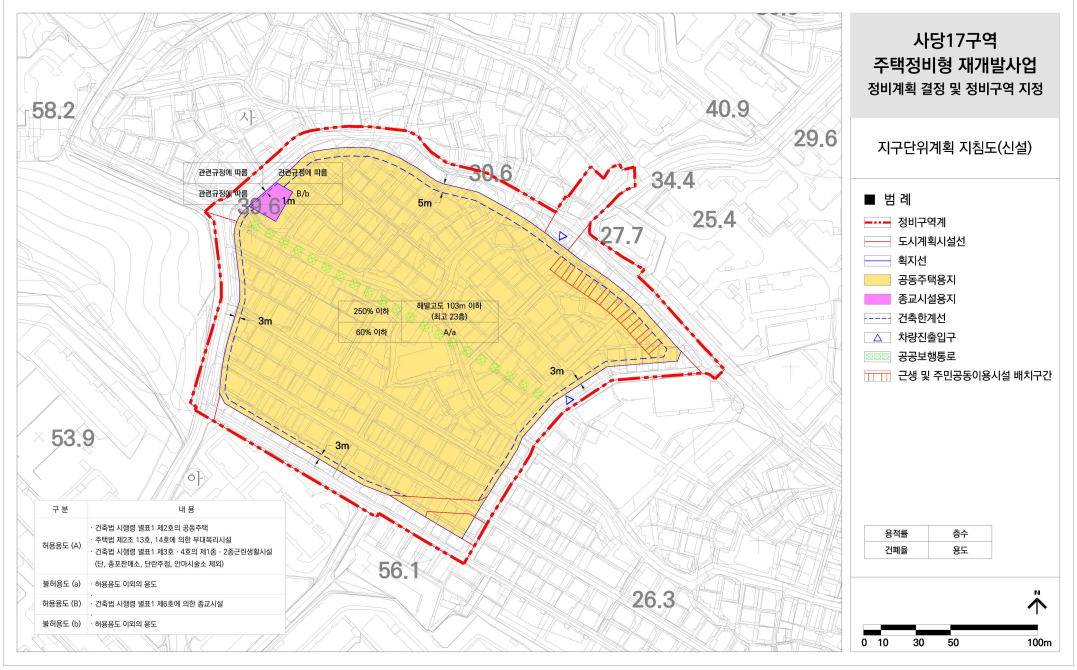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8호

북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739호(1963.12.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48호(2004.1.5.)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54호(2024.3.28.)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북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북악산근린공원(가구박물관지구) 데크산책로 선형 조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12 일대

3. 면 적 : 88,480.9㎡
   - 팔각정지구: 1,252.7㎡(성북구) - 가구박물관지구: 10,114.6㎡(성북구)
   - 옛돌박물관지구: 13,868.4㎡(성북구)
   - 청소년체험의숲지구: 62,380.8㎡(성북구) - 창의문지구: 864.4㎡(종로구)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별도첨부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0)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02-2241-3664)

북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북악산 근린공원 총괄표 (위치: 성북구 성북동 산25-112일대)

구 분		기 정(북악산근린공원)						구분	변 경(북악산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88,480.90	17,126.34	4	1,143.02	2,827.02	80		88,480.90	17,129.96	4	1,143.02	2,827.02	74	증) 3.62 ㎡
시설지구	소계	88,480.90	17,126.34	4	1,143.02	2,827.02	80	소 계	88,480.90	17,129.96	4	1,143.02	2,827.02	74	증) 3.62 ㎡
	팔각정 지구	1,252.70	651.52	-	-	-	1	팔각정 지구	1,252.70	651.52	-	-	-	1	변동없음
	가구 박물관 지구	10,114.60	1,759.06 (1,519.15㎡)	-	-	-	22	가구 박물관 지구	10,114.60	1,762.68 (1,519.15㎡)	-	-	-	16	증) 3.62 ㎡
	옛돌 박물관 지구	13,868.40	4,426.00	1	746.00	2,430.00	3	옛돌 박물관 지구	13,868.40	4,426.00	1	746.00	2,430.00	3	변동없음
	청소년 체험의숲지구	62,380.80	10,289.76 (2,344.24㎡)	3	397.02	397.02	54	청소년 체험의숲 지구	62,380.80	10,289.76 (2,344.24㎡)	3	397.02	397.02	54	변동없음

구 분		기 정(북악산근린공원)						구분	변 경(북악산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창의문 지구	864.40	-	-	-	-	-	창의문 지구	864.40	-	-	-	-	-	변동없음
시설지구 외		-	-	-	-	-	-	시설 지구 외	-	-	-	-	-	-	
시설율 (법정40%)		(17,126.34 / 88,480.90) × 100 = 19.36%							(17,129.96 / 88,480.90) × 100 = 19.36%						
건폐율 (법정15%)		(1,143.02 / 88,480.90) × 100 = 1.29%							(1,143.02 / 88,480.90) x 100 = 1.29%						

나. 시설별 총괄표

구 분		기 정(북악산근린공원)						변 경(북악산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88,480.90	17,126.34	4	1,143.02	2,827.02	80	88,480.90	17,129.96	4	1,143.02	2,827.02	74	
기반시설	소계	11,628.18	7,764.79	-	-	-	-	11,657.18	7,793.79	-	-	-	-	증) 29.0 ㎡
	도로	9,931.78	6,068.39	-	-	-	-	10,022.78	6,159.39	-	-	-	-	증) 91.0 ㎡
	광장	1,696.40	1,696.40	-	-	-	-	1,634.40	1,634.40	-	-	-	-	감) 62.0 ㎡
조경시설		1,269.16	1,269.16	-	-	-	7	1,196.78	1,196.78	-	-	-	6	감) 72.38 ㎡
휴양시설		1,003.57	1,003.57	1	87.02	87.02	56	1,050.57	1,050.57	1	87.02	87.02	43	증) 47.0 ㎡
운동시설		1,605.00	1,605.00	-	-	-	9	1,605.00	1,605.00	-	-	-	9	

구 분	기 정(북악산근린공원)						변 경(북악산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3,866.07	3,866.07	1	746.00	2,430.00	-	3,866.07	3,866.07	1	746.00	2430.00	-	
관리시설	588.00	588.00	2	310.00	310.00	8	588.00	588.00	2	310.00	310.00	8	
편익시설	1,029.75	1,029.75	-	-	-	-	1,029.75	1,029.75	-	-	-	-	
녹지및기타	67,491.17		-	-	-	-	67,487.55	-	-	-	-	8	감) 3.62 ㎡

다. 지구별 세부조서

1-1. 북악산근린공원(팔각정지구) 시설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252.70	651.52	-	-	-	-	1			1,252.70	651.52					1	
기반시설	소 계			437.78	437.78	-	-	-	-	-			437.78	437.78						
	도 로			236.72	236.72	-	-	-	-	-			236.72	236.72						
	진입광장	가		52.98	52.98	-	-	-	-	-	가		52.98	52.98						
		가-1	성북동 산25-112	28.89	28.89	-	-	-	-	-	가-1	성북동 산25-112	28.89	28.89						
		가-2	성북동 산25-112	24.09	24.09	-	-	-	-	-	가-2	성북동 산25-112	24.09	24.09						
	중앙광장	나	성북동 산25-112	148.08	148.08	-	-	-	-	-	나	성북동 산25-112	148.08	148.08						
휴양시설	소 계			16.49	16.49	-	-	-	-	1			16.49	16.49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게소	다	성북동 산25-112	16.49	16.49	-	-	-	-	-	다	성북동 산25-112	16.49	16.49						
	정자	①	휴게소	-	-	-	-	-	-	1	①	휴게소	-	-					1	
편익시설	소계			197.25	197.25	-	-	-	-	-			197.25	197.25						
	팔각정	1	성북동 산25-112	197.25	197.25	-	-	-	-	-	1	성북동 산25-112	197.25	197.25						
녹지 및 기타	소계			601.18		-	-	-	-	-			601.18							
	녹지			601.18		-	-	-	-	-			601.18							

1-2. 북악산근린공원(팔각정지구) 도로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140.80	236.72				
당 초	중 로	계			4.5	1.52				
당 초		3	1	12.0	4.5	1.52	도시계획도로			
당 초	소로	계			2.5	3.81				
당 초		3	1	4.0	2.5	3.81	진입로	공원경계	진입광장 가-1	
당 초	산책로	계			133.80	231.39				
당 초			1	2.5	6.4	17.09	진입로	산책로 2	공원경계	
당 초			2	2.0	115.4	196.2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3	1.5	12.0	18.05	진입로	산책로 2	공원경계	

2-1. 북악산근린공원(가구박물관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총 계				10,114.60	1,759.06					22			10,114.60	1,762.68					16	증) 3.62㎡
기반시설	소 계			2,325.33	806.18 (1,519.15)					-			2,354.33	835.18 (1,519.15)					-	증) 29.0㎡
	도 로			2,220.33	701.18 (1,519.15)					-			2,311.33	792.18 (1,519.15)					-	증) 91.0㎡
	광 장	가	성북동 산23-12	105.00	105.00					-	가	성북동 산23-6	43.00	43.00					-	감) 62.0㎡
조경시설	소 계			72.38	72.38					1			0.00	0.00						감) 72.38㎡
	잔디광장	라	성북동 산23-12	72.38	72.38						라	성북동 산23-12	삭제	삭제						감) 72.38㎡
	수목보호판	①	광장 내	-	-					(1)		광장 내	삭제	삭제						감) 1EA
휴양시설	소 계			48.00	48.00					21			95.00	95.00					8	증) 47.0㎡
	휴게쉼터	나	2개소	48.00	48.00					-	나	4개소	95.00	95.00					-	증) 47.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게쉼터1	나-1	성북동 산23-12	(34.00)	(34.00)					-	나-1	성북동 산23-12	(58.00)	(58.00)					-	주) 24.0㎡
	휴게쉼터2	나-2	성북동 산23-12	(14.00)	(14.00)					-	나-2	성북동 산23-6	(4.00)	(4.00)					-	감) 10.0㎡
	휴게쉼터3									-	나-3	성북동 산23-6	(4.00)	(4.00)					-	주) 4.0㎡
	휴게쉼터4										나-4	성북동 산23-12	(29.00)	(29.00)						주) 29.0㎡
	등의자	②	부지 내	-	-					(17)	①	부지 내	-	-					(2)	감) 15EA
	파고라	③	휴게쉼터 내	-	-					(1)	②	휴게쉼터 내	-	-					(3)	주) 2EA
	야외탁자	④	휴게쉼터 내	-	-					(3)	③	휴게쉼터 내	-	-					(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편의시설	소계			832.50	832.50					-			832.50	832.50					-	-
	주차장	다	성북동 산24-26	832.50	832.50					-	다	성북동 산24-26	832.50	832.50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6,836.39	-					-			6,832.77	-					8	감) 3.62㎡
	녹지		부지내	6,836.39	-					-		부지내	6,832.77	-						감) 3.62㎡
	안내판										④	부지내							(2)	증) 2EA
	등의자										⑤	부지내							(6)	증) 6EA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2-2. 북악산근린공원(가구박물관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49.38	701.18				
변경					409.88	792.18 (1,519.15)				
당초	소로	소 계			37.15 (152.87)	193.72 (1,519.15)				
변경	소로	소 계			30.15 (152.87)	158.72 (1,519.15)				
당초	소로	1	1	10.0	(124.49)	(1,236.10)	도시계획도로			
당초		2	1	8.0	(28.38)	(283.05)	도시계획도로			
당초		3	1	5.5~8.0	12.47	75.02	산책로	소로 1-1	소로 3-2	
당초		3	2	5.0	17.68	83.70	진입로	공원경계	주차장 다	
당초		3	3	5.0	7.00	35.0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폐지					-	-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현행화
당초	산책로	소 계			312.23	507.46				
변경	산책로	소 계			379.73	633.46				
당초	산책로	-	1	2.0	12.23	24.46	진입로	서북측 공원경계	주차장 다	
당초		-	2	2.0	69.00	138.00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변경		-		2.0	102.00	204.00	산책로	나-1	나-1	순환로
당초		-	3	1.5	131.00	196.50	산책로	나-2	소로 3-3	
변경		-		1.5	178.00	267.00	산책로	다	나-1	
당초		-	4	1.5	97.00	145.50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2	
변경		-		1.5	33.00	50.00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2	
당초		-	5	1.0	3.00	3.00	산책로	가	라	
변경		-		1.5	16.0	24.00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4	
신설		-	6	1.7	38.5	64.00	산책로	가	나-4	

3-1. 북악산근린공원(옛돌박물관지구) 시설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3,868.40	4,426.00	-	1	746.0	2,430.0	3			13,868.40	4,426.00	-	1	746.0	2,430.0	3	
기반시설	소계			1,007.00	1,007.00	-	-	-	-	-			1,007.00	1,007.00	-	-	-	-	-	
	도로			1,007.00	1,007.00	-	-	-	-	-			1,007.00	1,007.00	-	-	-	-	-	
휴양시설	소계			158.00	158.00	-	-	-	-	2			158.00	158.00	-	-	-	-	2	
	휴게소	가	성북동 330-1	158.00	158.00	-	-	-	-	-	가	성북동 330-1	158.00	158.00	-	-	-	-	-	
	의자	①	휴게소	-	-	-	-	-	-	2	①	휴게소	-	-	-	-	-	-	2	
교양시설	소계			3,261.00	3,261.00	-	1	746.0	2,430.0	-			3,261.00	3,261.00	-	1	746.0	2,430.0	-	
	돌박물관(전시동)	1	성북동 330-1	1,547.00	1,547.00	철근콘	1	746.0	2,430.0	-	1	성북동 330-1	1,547.00	1,547.00	철근콘	1	746.0	2,430.0	-	
	장승관	나		301.00	301.00	-	-	-	-	-	나		301.00	301.0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1	성북동 330-605	103.00	103.00	-	-	-	-	-	나-1	성북동 330-605	103.00	103.00	-	-	-	-	-	
		나-2	성북동 330-605	82.00	82.00	-	-	-	-	-	나-2	성북동 330-605	82.00	82.00	-	-	-	-	-	
		나-3	성북동 330-1	54.00	54.00	-	-	-	-	-	나-3	성북동 330-1	54.00	54.00	-	-	-	-	-	
		나-4	성북동 330-1	62.00	62.00	-	-	-	-	-	나-4	성북동 330-1	62.00	62.00	-	-	-	-	-	
	석인관	다		248.00	248.00	-	-	-	-	-	다		248.00	248.00	-	-	-	-	-	
		다-1	성북동 330-1	154.00	154.00	-	-	-	-	-	다-1	성북동 330-1	154.00	154.00	-	-	-	-	-	
		다-2	성북동 330-1	94.00	94.00	-	-	-	-	-	다-2	성북동 330-1	94.00	94.0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교앙시설	생활물류관	라		273.00	273.00	-	-	-	-	-	라		273.00	273.00	-	-	-	-	-	
		라-1	성북동 330-1	145.00	145.00	-	-	-	-	-	라-1	성북동 330-1	145.00	145.00	-	-	-	-	-	
		라-2	성북동 330-1	128.00	128.00	-	-	-	-	-	라-2	성북동 330-1	128.00	128.00	-	-	-	-	-	
	동지관	마		291.00	291.00	-	-	-	-	-	마		291.00	291.00	-	-	-	-	-	
		마-1	성북동 330-1	140.00	140.00	-	-	-	-	-	마-1	성북동 330-1	140.00	140.00	-	-	-	-	-	
		마-2	성북동 330-605	57.00	57.00	-	-	-	-	-	마-2	성북동 330-605	57.00	57.00	-	-	-	-	-	
		마-3	성북동 330-605	94.00	94.00	-	-	-	-	-	마-3	성북동 330-605	94.00	94.00	-	-	-	-	-	
	법수1관	바	성북동 330-1	87.00	87.00	-	-	-	-	-	바	성북동 330-1	87.00	87.00	-	-	-	-	-	
	지방관	사	성북동 330-605	118.00	118.00	-	-	-	-	-	사	성북동 330-605	118.00	118.0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관리시설	전통종교관	아	성북동 330-1	149.00	149.00	-	-	-	-	-	아	성북동 330-1	149.00	149.00	-	-	-	-	-	
	동물관	자	성북동 330-1	92.00	92.00	-	-	-	-	-	자	성북동 330-1	92.00	92.00	-	-	-	-	-	
	풍물관	차	성북동 330-605	75.00	75.00	-	-	-	-	-	차	성북동 330-605	75.00	75.00	-	-	-	-	-	
	석등관	카	성북동 330-1	80.00	80.00	-	-	-	-	-	카	성북동 330-1	80.00	80.00	-	-	-	-	-	
	소 계				-	-	-	-	-	1				-	-	-	-	-	1	
	안내판	②	녹지대		-	-	-	-	-	1	②	녹지대		-	-	-	-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	-	-	-	-	-			9,442.40	-	-	-	-	-	-	
	녹 지			9,442.40	-	-							9,442.40	-	-					

3-2. 북악산근린공원(옛돌박물관지구) 도로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249.00	1,007.0				
당 초	소 로	계			249.00	1,007.0				
당 초		3	1	3.0	194.0	761.0	진입로	전시동	전시동	
당 초		3	2	5.0~ 6.0	15.0	101.0	진입로	공원경계	전시동	
당 초		3	3	3.5	40.0	145.0	진입로	공원경계	전시동	

4-1. 북악산근린공원(청소년체험의숲지구) 시설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62,380.80	10,289.76	-	3	397.02	397.02	54			62,380.80	10,289.76	-	3	397.02	397.02	54	
기반시설	소계			7,858.07	5,513.83 (2,344.24)	-	-	-	-	-			7,858.07	5,513.83 (2,344.24)	-	-	-	-	-	
	도로		전지역	6,467.73	4,123.49 (2,344.24)	-	-	-	-	-		전지역	6,467.73	4,123.49 (2,344.24)	-	-	-	-	-	
	광장	가		1,390.34	1,390.34	-	-	-	-	-	가		1,390.34	1,390.34	-	-	-	-	-	
		가-1	성북동 226-32	26.85	26.85	-	-	-	-	-	가-1	성북동 226-32	26.85	26.85	-	-	-	-	-	
		가-2	성북동 226-32	43.07	43.07	-	-	-	-	-	가-2	성북동 226-32	43.07	43.07	-	-	-	-	-	
		가-3	성북동 226-106외	92.00	92.00	-	-	-	-	-	가-3	성북동 226-106외	92.00	92.00	-	-	-	-	-	
		가-4	성북동 226-109	183.82	183.82	-	-	-	-	-	가-4	성북동 226-109	183.82	183.82	-	-	-	-	-	
		가-5	성북동 226-32	23.36	23.36	-	-	-	-	-	가-5	성북동 226-32	23.36	23.36	-	-	-	-	-	
		가-6	성북동 226-65	31.15	31.15	-	-	-	-	-	가-6	성북동 226-65	31.15	31.15	-	-	-	-	-	
		가-7	성북동 285 외	92.00	92.00	-	-	-	-	-	가-7	성북동 285 외	92.00	92.0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가-8	성북동 226-93	23.00	23.00	-	-	-	-	-	가-8	성북동 226-93	23.00	23.00	-	-	-	-	-	
		가-9	성북동 226-99	360.00	360.00	-	-	-	-	-	가-9	성북동 226-99	360.00	360.00	-	-	-	-	-	
		가-10	성북동 59 외	378.00	378.00	-	-	-	-	-	가-10	성북동 59 외	378.00	378.00	-	-	-	-	-	
		가-11	성북동 산25-52	11.44	11.44	-	-	-	-	-	가-11	성북동 산25-52	11.44	11.44	-	-	-	-	-	
		가-12	성북동 산25-1	48.66	48.66	-	-	-	-	-	가-12	성북동 산25-1	48.66	48.66	-	-	-	-	-	
		가-13	성북동 산25-1	22.26	22.26	-	-	-	-	-	가-13	성북동 산25-1	22.26	22.26	-	-	-	-	-	
		가-14	성북동 산25-1	28.54	28.54	-	-	-	-	-	가-14	성북동 산25-1	28.54	28.54	-	-	-	-	-	
		가-15	성북동 산25-14	26.19	26.19	-	-	-	-	-	가-15	성북동 산25-14	26.19	26.19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 계			1,196.78	1,196.78					6			1,196.78	1,196.78					6	
	스탠드	나	성북동 226-32	40.94	40.94	-	-	-	-	-	나	성북동 226-32	40.94	40.94	-	-	-	-	-	
	장식벽	다	성북동 284-2	35.95	35.95	-	-	-	-	-	다	성북동 284-2	35.95	35.95	-	-	-	-	-	
	소폭포	라	성북동 284-21	30.22	30.22	-	-	-	-	-	라	성북동 284-21	30.22	30.22	-	-	-	-	-	
	연못	마	성북동 226-1	195.06	195.06	-	-	-	-	-	마	성북동 226-1	195.06	195.06	-	-	-	-	-	
	잔디 광장	바	성북동 226-32	748.39	748.39	-	-	-	-	-	바	성북동 226-32	748.39	748.39	-	-	-	-	-	
	잔디밭	사	성북동 226-65	99.71	99.71	-	-	-	-	-	사	성북동 226-65	99.71	99.71	-	-	-	-	-	
	관상용 식수대	아	성북동 226-109	16.48	16.48	-	-	-	-	-	아	성북동 226-109	16.48	16.48	-	-	-	-	-	
	화단	자	성북동 226-251	13.87	13.87	-	-	-	-	-	자	성북동 226-251	13.87	13.87	-	-	-	-	-	
	플랜터	차	성북동 226-69	16.16	16.16	-	-	-	-	-	차	성북동 226-69	16.16	16.16	-	-	-	-	-	
	파고라	①	전지역	-	-	-	-	-	-	(4)	①	전지역	-	-	-	-	-	-	(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그늘시렁	②	전지역	-	-	-	-	-	-	2	②	전지역	-	-	-	-	-	-	2	
	소계			781.08	781.08	-	1	87.02	87.02	32			781.08	781.08	-	1	87.02	87.02	32	
	야외 야유장	카	성북동 산25-52	230.00	230.00	-	-	-	-	-	카	성북동 산25-52	230.00	230.00	-	-	-	-	-	
		카-1	성북동 41	25.00	25.00	-	-	-	-	-	카-1	성북동 41	25.00	25.00	-	-	-	-	-	
		카-2	성북동 51	36.00	36.00	-	-	-	-	-	카-2	성북동 51	36.00	36.00	-	-	-	-	-	
		카-3	성북동 산25-52	45.00	45.00	-	-	-	-	-	카-3	성북동 산25-52	45.00	45.00	-	-	-	-	-	
		카-4	성북동 산25-1외	36.00	36.00	-	-	-	-	-	카-4	성북동 산25-1외	36.00	36.00	-	-	-	-	-	
		카-5	성북동 57 외	88.00	88.00	-	-	-	-	-	카-5	성북동 57 외	88.00	88.0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양시설	데크 쉼터	타		209.70	209.70	-	-	-	-	-	타		209.70	209.70	-	-	-	-	-	
		타-1	성북동 226-32	63.98	63.98	-	-	-	-	-	타-1	성북동 226-32	63.98	63.98	-	-	-	-	-	
		타-2	성북동 226-32	145.72	145.72	-	-	-	-	-	타-2	성북동 226-32	145.72	145.72	-	-	-	-	-	
	쉼터	파		176.13	176.13	-	-	-	-	-	파		176.13	176.13	-	-	-	-	-	
		파-1	성북동 226-68	101.96	101.96	-	-	-	-	-	파-1	성북동 226-68	101.96	101.96	-	-	-	-	-	
		파-2	성북동 226-32	42.47	42.47	-	-	-	-	-	파-2	성북동 226-32	42.47	42.47	-	-	-	-	-	
		파-3	성북동 226-69	31.70	31.70	-	-	-	-	-	파-3	성북동 226-69	31.70	31.70	-	-	-	-	-	
	평상	하	성북동 226-274	15.16	15.16	-	-	-	-	-	하	성북동 226-274	15.16	15.16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영시설	등의자	③		-	-	-	-	-	-	32	③		-	-	-	-	-	-	32	
	전망정자	④	성북동 226-32	63.07	63.07	-	-	-	-	-	④	성북동 226-32	63.07	63.07	-	-	-	-	-	
	휴게소	⑤	성북동 226-32	87.02	87.02	-	1	87.02	87.02	-	⑤	성북동 226-32	87.02	87.02	-	1	87.02	87.02	-	
	소계			1,605.00	1,605.00	-	-	-	-	9			1,605.00	1,605.00	-	-	-	-	9	
	베드민턴장	거		845.00	845.00	-	-	-	-	-	거		845.00	845.00	-	-	-	-	-	
		거-1	성북동 226-57외	420.00	420.00	-	-	-	-	-	거-1	성북동 226-57외	420.00	420.00	-	-	-	-	-	
		거-2	성북동 산25-52외	425.00	425.00	-	-	-	-	-	거-2	성북동 산25-52외	425.00	425.0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동시설	자연체험장	너		760.00	760.00	-	-	-	-	-	너		760.00	760.00	-	-	-	-	-	
		너-1	성북동 41 외	40.00	40.00	-	-	-	-	-	너-1	성북동 41 외	40.00	40.00	-	-	-	-	-	
		너-2	성북동 51 외	122.00	122.00	-	-	-	-	-	너-2	성북동 51 외	122.00	122.00	-	-	-	-	-	
		너-3	성북동 53 외	324.00	324.00	-	-	-	-	-	너-3	성북동 53 외	324.00	324.00	-	-	-	-	-	
		너-4	성북동 산25-52	23.00	23.00	-	-	-	-	-	너-4	성북동 산25-52	23.00	23.00	-	-	-	-	-	
		너-5	성북동 259	148.00	148.00	-	-	-	-	-	너-5	성북동 259	148.00	148.00	-	-	-	-	-	
		너-6	성북동 52 외	103.00	103.00	-	-	-	-	-	너-6	성북동 52 외	103.00	103.00	-	-	-	-	-	
	그물오르기	⑥	성북동 259	-	-	-	-	-	-	1	⑥	성북동 259	-	-	-	-	-	-	1	
	경사오르기	⑦	성북동 259	-	-	-	-	-	-	1	⑦	성북동 259	-	-	-	-	-	-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타잔 그네	⑧	성북동 259	-	-	-	-	-	-	1	⑧	성북동 259	-	-	-	-	-	-	1	
	밧줄 타기	⑨	성북동 41 외	-	-	-	-	-	-	1	⑨	성북동 41 외	-	-	-	-	-	-	1	
	마법의 다리	⑩	성북동 51 외	-	-	-	-	-	-	1	⑩	성북동 51 외	-	-	-	-	-	-	1	
	짚라이딩	⑪	성북동 51 외	-	-	-	-	-	-	1	⑪	성북동 51 외	-	-	-	-	-	-	1	
	버마 브릿지	⑫	성북동 52 외	-	-	-	-	-	-	1	⑫	성북동 52 외	-	-	-	-	-	-	1	
	숲속 공방	⑬	성북동 52 외	-	-	-	-	-	-	1	⑬	성북동 52 외	-	-	-	-	-	-	1	
	벽타기	⑭	성북동 산25-52	-	-	-	-	-	-	1	⑭	성북동 산25-52	-	-	-	-	-	-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양묘시설	소 계			605.07	605.07	-	-	-	-	-			605.07	605.07	-	-	-	-	-	
	야생초화원	더	성북동 226-32	288.93	288.93	-	-	-	-	-	더	성북동 226-32	288.93	288.93	-	-	-	-	-	
	야외무대	러	성북동 226-32	54.71	54.71	-	-	-	-	-	러	성북동 226-32	54.71	54.71	-	-	-	-	-	
	정원	머		261.43	261.43	-	-	-	-	-	머		261.43	261.43	-	-	-	-	-	
		머-1	성북동 226-33	59.75	59.75	-	-	-	-	-	머-1	성북동 226-33	59.75	59.75	-	-	-	-	-	
		머-2	성북동 226-274	130.41	130.41	-	-	-	-	-	머-2	성북동 226-274	130.41	130.41	-	-	-	-	-	
		머-3	성북동 226-65	71.27	71.27	-	-	-	-	-	머-3	성북동 226-65	71.27	71.27	-	-	-	-	-	
관리시설	소 계			588.00	588.00	-	2	310.00	310.00	7	소 계		588.00	588.00	-	2	310.00	310.00	7	
	안내판	⑮		-	-	-	-	-	-	2	⑮		-	-	-	-	-	-	2	
	주차장	버		197.00	197.00	-	-	-	-	-	버		197.00	197.0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사무소	서		391.00	391.00	-	2	310.00	310.00		서		391.00	391.00	-	2	310.00	310.00		
		서-1		288.00	288.00	-	1	(172.00)	(172.00)	-	서-1		288.00	288.00	-	1	(172.00)	(172.00)	-	
		서-2		103.00	103.00	-	1	(138.00)	(138.00)	-	서-2		103.00	103.00	-	1	(138.00)	(138.00)	-	
	안전휀스	⑯	전지역	-	-	-	-	-	-	1	⑯	전지역	-	-	-	-	-	-	1	
	조명시설	⑰	전지역	-	-	-	-	-	-	3	⑰	전지역	-	-	-	-	-	-	3	
	CCTV	⑱	전지역	-	-	-	-	-	-	1	⑱	전지역	-	-	-	-	-	-	1	
녹지및기타	소 계			49,746.80	-	-	-	-	-	-			49,746.80	-	-	-	-	-	-	
	녹 지			49,746.80	-	-	-	-	-	-			49,746.80	-	-	-	-	-	-	

4-2. 북악산근린공원(청소년체험의숲지구) 도로조서 -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2,261.03 (288.15)	4,123.49 (2,344.24)				
당초	소로	계			(288.15)	(2,344.24)				
당초		1	1	7.0~ 11.0	(237.35)	(2,218.71)	도시계획도로			
당초		3	1	2.5	(50.80)	(125.53)	도시계획도로			
당초	산책로	계			2,261.03	4,123.49				
당초			1	1.8	81.62	142.73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	1.8~ 3.0	45.05	95.52	연결로	산책로 1	배드민턴장 거-2	
당초			3	2.0	25.24	40.91	연결로	배드민턴장 거-2	산책로 4	
당초			4	1.5~ 5.8	252.39	445.08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7	
당초			5	1.5~ 3.5	26.44	58.98	연결로	배드민턴장 거-2	산책로 4	
당초			6	1.8	85.35	156.36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6	
당초			7	1.5	36.24	54.4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	
당초			8	1.5~ 4.0	52.98	89.63	연결로	자연체험장 너-5	산책로 6	
당초			9	1.5	9.60	14.42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10	1.5	32.84	50.45	연결로	산책로 4	자연체험장 너-6	
당초			11	1.5	94.50	161.75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2	
당초			12	1.5	68.62	108.14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1-1	
당초			13	1.5	32.48	50.63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11	
당초			14	1.5~ 3.5	43.40	93.07	산책로	공원경계	녹지대	
당초			15	1.5	7.26	10.9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4	
당초			16	2.0	3.00	6.05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14	
당초			17	2.0~ 3.0	117.11	287.67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대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18	1.5~ 3.0	143.08	222.12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13	
당 초			19	1.5	32.48	48.89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7	
당 초			20	1.5~ 5.8	27.06	45.62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22	
당 초			21	1.5	31.49	47.07	산책로	산책로 20	산책로 26	
당 초			22	1.5	196.07	294.89	연결로	산책로 18	광장 가-2	
당 초			23	2.0~ 2.5	59.93	127.50	연결로	산책로 24	광장 가-3	
당 초			24	1.5~ 2.5	78.55	154.74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8	
당 초			25	1.2	44.86	56.56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1	
당 초			26	1.5	104.12	156.46	연결로	광장 가-3	산책로 18	
당 초			27	2.0~ 3.5	92.67	187.59	연결로	녹지대	광장 가-4	
당 초			28	1.5	35.32	61.33	연결로	산책로 29	광장 가-10	
당 초			29	1.5	43.75	65.7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8	
당 초			30	2.0~ 4.8	172.59	413.93	연결로	산책로 29	배드민턴장 거-2	
당 초			31	1.5	143.99	244.0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32	3.0~ 4.0	22.89	82.70	산책로	산책로 31	산책로 30	
당 초			33	3.0	12.40	39.73	산책로	산책로 31	산책로 32	
당 초			34	1.2	5.66	7.88	연결로	산책로 30	배드민턴장 거-1	

5-1. 북악산근린공원(창의문지구) 시설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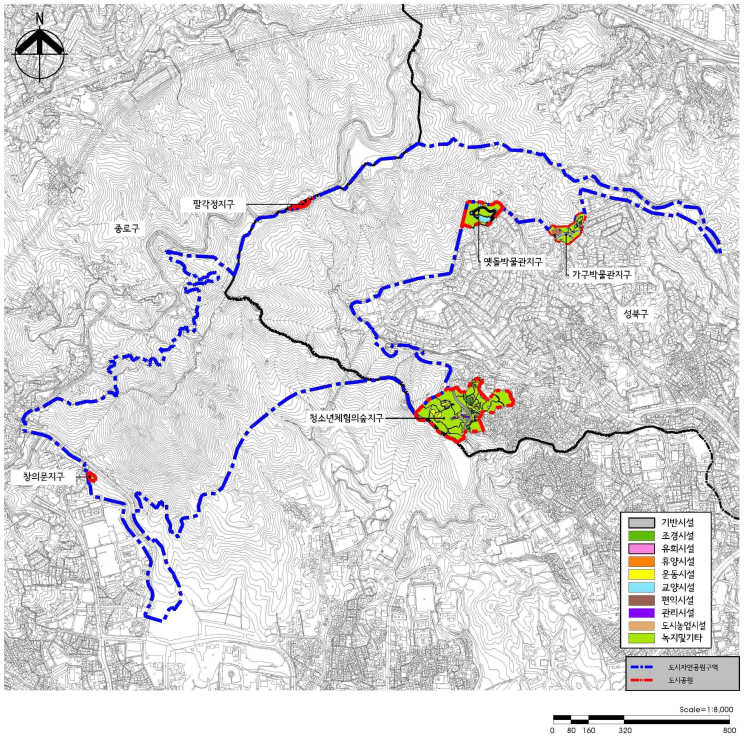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864.40	-	-	-	-	-	-			864.40	-	-	-	-	-	-	
녹지 및 기타	소 계			864.40	-	-	-	-	-	-			864.40	-	-	-	-	-	-	
	녹 지		청운동 15-47	864.40	-	-	-	-	-	-		청운동 15-47	864.40	-	-	-	-	-	-	

5-2. 북악산근린공원(창의문지구) 도로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해당사항 없음										

조성계획도 [변경전]

북악산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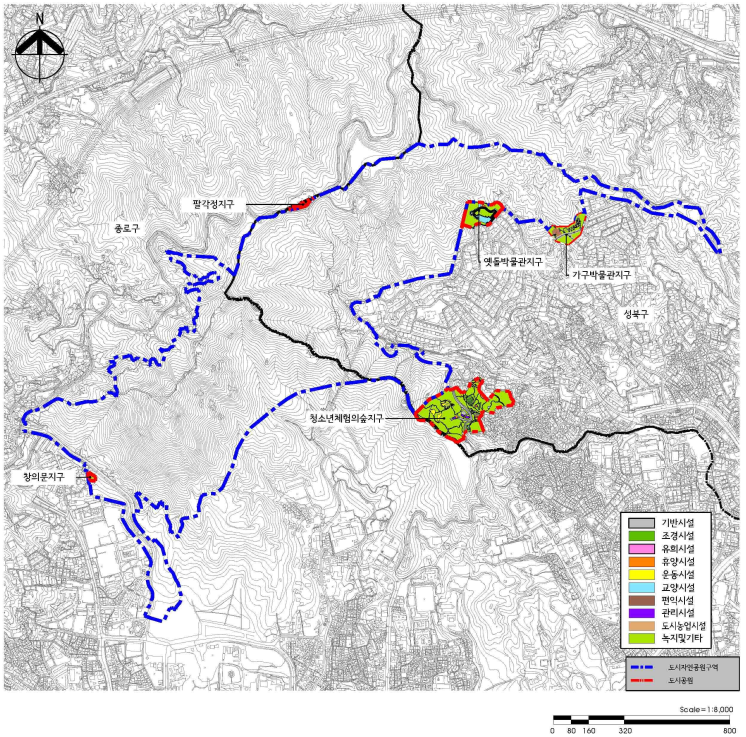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총계	팔각정지구	가구박물관지구	맹동박물관지구	청소년체험의숲지구	창의문지구
부지 총 면적		88,480.90	1,252.70	10,114.60	13,888.40	62,380.80	864.40
시설 총 면적		17,126.34	651.52	1,759.06	4,426.00	10,289.76	-
기반시설	소계	7,764.79	437.78	806.18	1,007.00	5,513.83	-
	도로	6,068.39	236.72	701.18	1,007.00	4,123.49	-
	광장	1,696.40	201.06	105.00	-	1,390.34	-
조경시설		1,269.16	-	72.38	-	1,196.78	-
유양시설		1,003.57	16.49	48.00	158.00	781.08	-
운동시설		1,605.00	-	-	-	1,605.00	-
교양시설		3,866.07	-	-	3,261.00	605.07	-
편익시설		1,029.75	197.25	832.50	-	-	-
관리시설		588.00	-	-	-	588.00	-
도시농업시설		-	-	-	-	-	-
녹지 및 기타		67,491.17	601.18	6,836.39	9,442.40	49,746.80	864.40
건축물	동수(동)	4	-	-	1	3	-
	바닥면적	1,143.02	-	-	746.00	397.02	-
	연면적	2,827.02	-	-	2,430.00	397.02	-
공작물(기)		80	1	22	3	54	-
비고		도시계획도로 3,863.39		도시계획도로 1,519.15		도시계획도로 2,344.24	

* 공원시설율 : 17,126.34 / 88,480.90 = 19.36%
*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율 : 1,605.00 / 17,126.34 = 9.37%
* 건폐율 : 1,143.02 / 88,480.90 = 1.29%

조성계획도 [변경후]

북악산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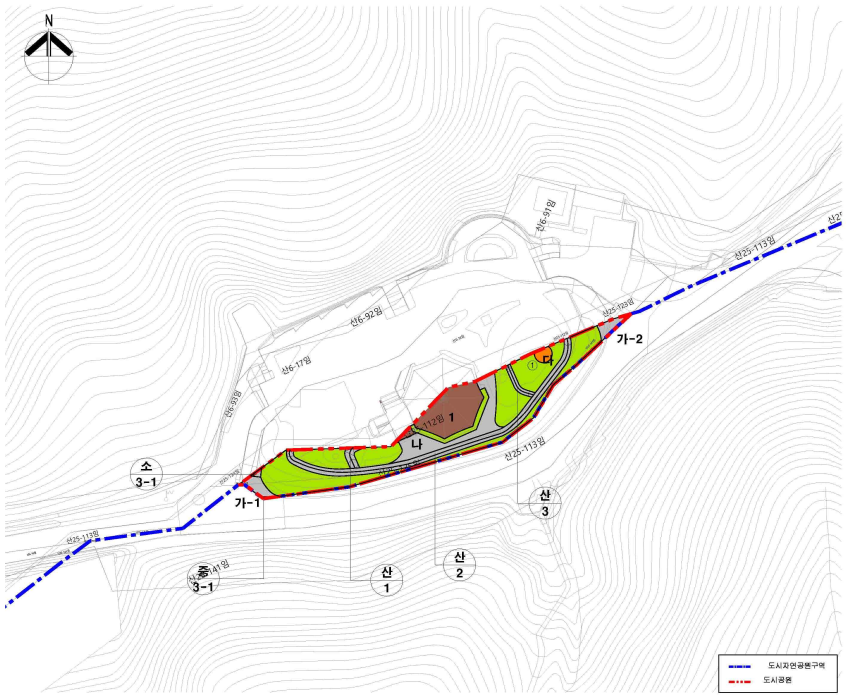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총계	팔각정지구	가구박물관지구	옛돌박물관지구	청소년체험의숲지구	창의문지구
부지 총 면적		88,480.90	1,252.70	10,114.60	13,868.40	62,380.80	864.40
시설 총 면적		17,129.96	651.52	1,762.68	4,426.00	10,289.76	-
기반시설	소계	7,793.79	437.78	835.18	1,007.00	5,513.83	-
	도로	6,159.39	238.72	792.18	1,007.00	4,123.49	-
	광장	1,634.40	201.06	43.00	-	1,390.34	-
조경시설		1,196.78	-	-	-	1,196.78	-
유양시설		1,050.57	16.49	95.00	158.00	781.08	-
운동시설		1,605.00	-	-	-	1,605.00	-
교양시설		3,866.07	-	-	3,261.00	605.07	-
편익시설		1,029.75	197.25	832.50	-	-	-
관리시설		588.00	-	-	-	588.00	-
도시농업시설		-	-	-	-	-	-
녹지 및 기타		67,487.55	601.18	6,832.77	9,442.40	49,746.80	864.40
건축물	동수(동)	4	-	-	1	3	-
	바닥면적	1,143.02	-	-	746.00	397.02	-
	연면적	2,827.02	-	-	2,430.00	397.02	-
공작물(기)		74	1	16	3	54	-
비고		도시계획도로 3,863.39		도시계획도로 1,519.15		도시계획도로 2,344.24	

* 공원시설율 : 17,129.96 / 88,480.90 = 19.36%
*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율 : 1,605.00 / 17,189.96 = 9.33%
* 건폐율 : 1,143.02 / 88,480.90 = 1.29%

조성계획도 [변경없음]

팔각정지구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252.70	651.52	-	-	-	-	1	
기반시설	소계		437.78	437.78	-	-	-	-	-	
	도로		236.72	236.72	-	-	-	-	-	
	진입광장	가	52.98	52.98	-	-	-	-	-	
		가-1	28.89	28.89	-	-	-	-	-	
		가-2	24.09	24.09	-	-	-	-	-	
	중앙광장	나	148.08	148.08	-	-	-	-	-	
휴양시설	소계		16.49	16.49	-	-	-	-	1	
	휴게소	다	16.49	16.49	-	-	-	-	-	
	정자	①	-	-	-	-	-	-	1	
편익시설	소계		197.25	197.25	-	-	-	-	-	
	팔각정	1	197.25	197.25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601.18	-	-	-	-	-	-	
	녹지		601.18	-	-	-	-	-	-	

Scale=1:500
0 5 10 20 30 50

조성계획도 [변경전]

가구박물관지구



■ 시설조서 (변경)

구분	시 설 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0,114.60	1,759.08	22	
기반시설	소계		2,325.33	806.18		
	도로		2,220.33	701.18		
	광장	가	105.00	105.00		
조경시설	소계		72.38	72.38	1	
	잔디광장	라	72.38	72.38		
	수목보호판	①	-	-	[1]	
유양시설	소계		48.00	48.00	21	
	휴게쉼터	나	48.00	48.00		
	휴게쉼터1	나-1	(34.00)	(34.00)		
	휴게쉼터2	나-2	(14.00)	(14.00)		
	동의자	②	-	-	(17)	
	탁고라	③	-	-	(1)	
	어의탁사	④	-	-	(3)	
편의시설	소계		832.50	832.50		
	주차장	다	832.50	832.50		
녹지 및 기타	소계		6,836.39	-		
	녹지		6,836.39	-		

조성계획도 [변경후]

가구박물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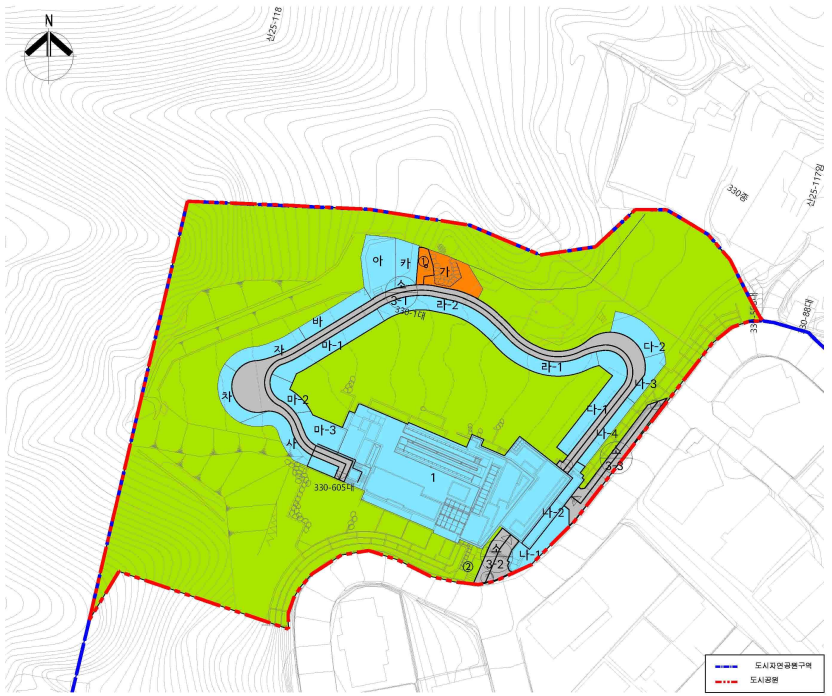


■ 시설조서 (변경)

구분	시 설 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0,114.60	1,762.68	16	㎥ 3.62㎥
기반시설	소계		2,354.33	835.18		㎥ 29.8㎥
	도로		2,311.33	792.18		㎥ 91.8㎥
	광장	가	43.00	43.00		㎡ 92.8㎡
휴양시설	소계		95.00	95.00	8	㎥ 47.8㎥
	휴게쉼터	나	95.00	95.00		㎥ 47.8㎥
	휴게쉼터1	나-1	(58.00)	(58.00)		㎥ 24.8㎥
	휴게쉼터2	나-2	(4.00)	(4.00)		㎥ 10.8㎥
	휴게쉼터3	나-3	(4.00)	(4.00)		㎥ 4.0㎥
	휴게쉼터4	나-4	(29.00)	(29.00)		㎥ 29.8㎥
	등의자	①	-	-	(2)	㎥ 1EA
	파고라	②	-	-	(3)	㎥ 2EA
	야외탁자	③	-	-	(3)	
편익시설	소계		832.50	832.50		-
	주차장	다	832.50	832.50		-
녹지 및 기타	소계		6,832.77	-	8	㎡ 3.62㎥
	녹지		6,832.77	-	(8)	㎡ 3.62㎥
	안내판	④	-	-	(2)	㎥ 2EA
	등의자	⑤	-	-	(6)	㎥ 6EA

조성계획도 [변경없음]

옛돌박물관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3,868.40	4,426.00	-	1	746.0	2,430.0	3	
기반시설	소계		1,007.00	1,007.00	-	-	-	-	-	
	도로		1,007.00	1,007.00	-	-	-	-	-	
휴양시설	소계		158.00	158.00	-	-	-	-	2	
	휴게소	가	158.00	158.00	-	-	-	-	-	
	의자	①	-	-	-	-	-	-	2	
교양시설	소계		3,261.00	3,261.00	-	1	746.0	2,430.0	-	
	돌박물관(전시동)	1	1,547.00	1,547.00	철근콘	1	746.0	2,430.0	-	
	창승관	나	301.00	301.00	-	-	-	-	-	
		나-1	(103.00)	(103.00)	-	-	-	-	-	
		나-2	(82.00)	(82.00)	-	-	-	-	-	
		나-3	(54.00)	(54.00)	-	-	-	-	-	
		나-4	(62.00)	(62.00)	-	-	-	-	-	
	석인관	다	248.00	248.00	-	-	-	-	-	
		다-1	(154.00)	(154.00)	-	-	-	-	-	
		다-2	(94.00)	(94.00)	-	-	-	-	-	
	생활유물관	라	273.00	273.00	-	-	-	-	-	
		라-1	(145.00)	(145.00)	-	-	-	-	-	
		라-2	(128.00)	(128.00)	-	-	-	-	-	
	동자관	마	291.00	291.00	-	-	-	-	-	
		마-1	(140.00)	(140.00)	-	-	-	-	-	
		마-2	(57.00)	(57.00)	-	-	-	-	-	
		마-3	(94.00)	(94.00)	-	-	-	-	-	
	벅수1관	바	87.00	87.00	-	-	-	-	-	
	지방관	사	118.00	118.00	-	-	-	-	-	
	전통종교관	아	149.00	149.00	-	-	-	-	-	
	동물관	자	92.00	92.00	-	-	-	-	-	
	풍물관	차	75.00	75.00	-	-	-	-	-	
	석등관	카	80.00	80.00	-	-	-	-	-	
관리시설	소계		-	-	-	-	-	-	1	
	안내판	②	-	-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9,442.40	-	-	-	-	-	-	
	녹지		9,442.40	-	-	-	-	-	-	

Scale=1:500
0 5 10 20 50

조성계획도 [변경없음]

청소년체험의숲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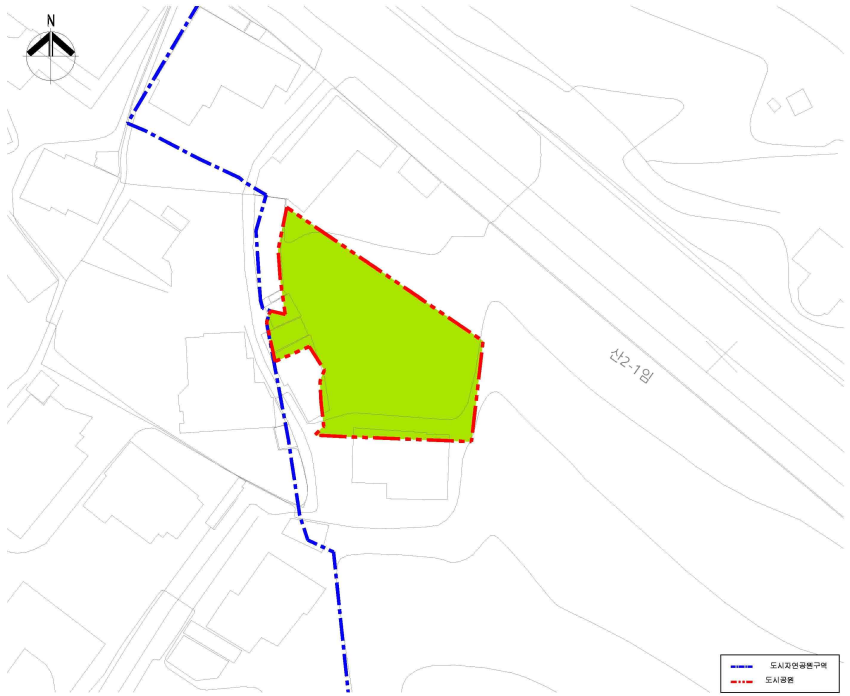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62,380.80	10,289.76	-	3	397.02	397.02	54	
기반시설	소계		7,858.07	5,513.83	-	-	-	-	-	
	도로		6,467.73	4,123.49	-	-	-	-	-	
	광장	가	1,390.34	1,390.34	-	-	-	-	-	
		가-1	(26.85)	(26.85)	-	-	-	-	-	
		가-2	(43.07)	(43.07)	-	-	-	-	-	
		가-3	(92.00)	(92.00)	-	-	-	-	-	
		가-4	(183.82)	(183.82)	-	-	-	-	-	
		가-5	(23.36)	(23.36)	-	-	-	-	-	
		가-6	(31.15)	(31.15)	-	-	-	-	-	
		가-7	(92.00)	(92.00)	-	-	-	-	-	
		가-8	(23.00)	(23.00)	-	-	-	-	-	
		가-9	(360.00)	(360.00)	-	-	-	-	-	
		가-10	(378.00)	(378.00)	-	-	-	-	-	
		가-11	(11.44)	(11.44)	-	-	-	-	-	
		가-12	(48.66)	(48.66)	-	-	-	-	-	
		가-13	(22.26)	(22.26)	-	-	-	-	-	
		가-14	(28.54)	(28.54)	-	-	-	-	-	
		가-15	(26.19)	(26.19)	-	-	-	-	-	
조경시설	소계		1,196.78	1,196.78	-	-	-	-	6	
	스탠드	나	40.94	40.94	-	-	-	-	-	
	장식벽	다	35.95	35.95	-	-	-	-	-	
	소목포	라	30.22	30.22	-	-	-	-	-	
	연못	마	195.06	195.06	-	-	-	-	-	
	잔디광장	바	748.39	748.39	-	-	-	-	-	
	잔디밭	사	99.71	99.71	-	-	-	-	-	
	관상용식수대	아	16.48	16.48	-	-	-	-	-	
	화단	자	13.87	13.87	-	-	-	-	-	
	플랜터	차	16.16	16.16	-	-	-	-	-	
	파고라	①	-	-	-	-	-	-	4	
	그늘시렁	②	-	-	-	-	-	-	2	
휴양시설	소계		781.08	781.08	-	1	87.02	87.02	32	
	야유회장	카	230.00	230.00	-	-	-	-	-	
		카-1	(25.00)	(25.00)	-	-	-	-	-	
		카-2	(36.00)	(36.00)	-	-	-	-	-	
		카-3	(45.00)	(45.00)	-	-	-	-	-	
		카-4	(36.00)	(36.00)	-	-	-	-	-	
		카-5	(88.00)	(88.00)	-	-	-	-	-	
	데크쉼터	타	209.70	209.70	-	-	-	-	-	
		타-1	(63.98)	(63.98)	-	-	-	-	-	
		타-2	(145.72)	(145.72)	-	-	-	-	-	
	쉼터	파	176.13	176.13	-	-	-	-	-	
		파-1	(101.96)	(101.96)	-	-	-	-	-	
		파-2	(42.47)	(42.47)	-	-	-	-	-	
		파-3	(31.70)	(31.70)	-	-	-	-	-	
	평상	하	15.16	15.16	-	-	-	-	-	
	등의자	③	-	-	-	-	-	-	32	
	전망정자	④	63.07	63.07	-	-	-	-	-	
	휴게소	⑤	87.02	87.02	-	1	87.02	87.02	-	
운동시설	소계		1,605.00	1,605.00	-	-	-	-	9	
	배드민턴장	거	845.00	845.00	-	-	-	-	-	
		거-1	(420.00)	(420.00)	-	-	-	-	-	
		거-2	(425.00)	(425.00)	-	-	-	-	-	
	자연체험장	너	760.00	760.00	-	-	-	-	-	
		너-1	(40.00)	(40.00)	-	-	-	-	-	
		너-2	(122.00)	(122.00)	-	-	-	-	-	
		너-3	(324.00)	(324.00)	-	-	-	-	-	
		너-4	(23.00)	(23.00)	-	-	-	-	-	
		너-5	(148.00)	(148.00)	-	-	-	-	-	
		너-6	(103.00)	(103.00)	-	-	-	-	-	
	그물오르기	⑥	-	-	-	-	-	-	1	
	경사오르기	⑦	-	-	-	-	-	-	1	
	타잔그네	⑧	-	-	-	-	-	-	1	
	밧줄타기	⑨	-	-	-	-	-	-	1	
	마법의 다리	⑩	-	-	-	-	-	-	1	
	짚라이딩	⑪	-	-	-	-	-	-	1	
	비마브릿지	⑫	-	-	-	-	-	-	1	
	숲속공방	⑬	-	-	-	-	-	-	1	
	벽타기	⑭	-	-	-	-	-	-	1	
교양시설	소계		605.07	605.07	-	-	-	-	-	
	야생초화원	더	288.93	288.93	-	-	-	-	-	
	야외무대	러	54.71	54.71	-	-	-	-	-	
	정원	머	261.43	261.43	-	-	-	-	-	
		머-1	(59.75)	(59.75)	-	-	-	-	-	
		머-2	(130.41)	(130.41)	-	-	-	-	-	
		머-3	(71.27)	(71.27)	-	-	-	-	-	
관리시설	소계		588.00	588.00	-	2	310.00	310.00	7	
	안내판	⑮	-	-	-	-	-	-	2	
	주차장	버	197.00	197.00	-	-	-	-	-	
	관리사무소	서	391.00	391.00	-	2	310.00	310.00	-	
		서-1	(288.00)	(288.00)	-	1	(172.00)	(172.00)	-	
		서-2	(103.00)	(103.00)	-	1	(138.00)	(138.00)	-	
	안전펜스	⑯	-	-	-	-	-	-	1	
	조명시설	⑰	-	-	-	-	-	-	3	
	CCTV	⑱	-	-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49,746.80	-	-	-	-	-	-	
	녹지		49,746.80	-	-	-	-	-	-	

Scale=1:1,200
0 10 50 100

조성계획도 [변경없음]

창의문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864.40	-	-	-	-	-	-	
기반시설	소계		-	-	-	-	-	-	-	
	도로		-	-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864.40	-	-	-	-	-	-	
	녹지		864.40	-	-	-	-	-	-	

Scale=1:300

0 5 10 3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9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3호(2009.7.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2016.9.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호(2018.1.1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22호(2024.8.2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국종합무역센타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2025.11.1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GBC, 잠실 마이스 등 대규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외부공간의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종합무역센터 일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국제교류복합지구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1,774,479	-	1,774,479	서고 제1994-189호 (1994.06.07.)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가구			획지					비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번호	위치	필지면적(㎡)	대지면적(㎡)	
기정	D1	190,386.3	기정	-	159대	87,534.3	148,784.0	특별계획구역 (한국종합무역센타)
					159-1대	7,614.0		
					159-9대	53,635.7		
				③	159-6대	13,000.5	41,602.3	특별계획구역 (한국종합무역센타남측)
				②	159-7대	10,198.4		
				①	159-8대	18,403.4		
			변경	①	삼성동 159	87,634.3	148,784.0	특별계획구역 (한국종합무역센타)
					삼성동 159-1	7,614.0		
					삼성동 159-9	53,635.7		
				②	삼성동 159-6	13,000.5	13,000.5	
				②	159-7대	10,198.4	10,198.4	특별계획구역 (한국종합무역센타남측)
				①	159-8대	18,403.4	18,403.4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 획지 2개소 지정(신설) - 획지① : 삼성동 159, -1, -9 (148,784.0㎡) - 획지② : 삼성동 159-6 (13,000.5㎡) (기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③)	•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동대로 지상광장과 연계한 동서 보행축(잠실MICE~GBC~영동대로 지상광장~무역센터~선릉)을 실현하는 등 무역센터 일대의 통합적 계획 및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를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에 편입 • 코엑스 부지와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의 특성 및 개발 주체를 고려하여 개별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획지 구분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없음
- A1~13, B1~11, C1~13, E1~14, F1~2, G1~6

2)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 ·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외 2번지	148,784.0	-	148,784.0	-
변경	①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외 3번지	148,784.0	증) 13,000.5	161,784.5	삼성동 159-6 구역편입
기정	②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8외 2번지	41,602.3	-	41,602.3	-
변경	②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8외 2번지	41,602.3	감) 13,000.5	28,601.8	삼성동 159-6 구역제척
기정	③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67번지	79,341.8	-	79,341.8	-
기정	④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71-1외 1번지	31,543.9	-	31,543.9	-
기정	⑤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71-2번지	10,988.5	-	10,988.5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 구역 확대 - 삼성동 159-6번지 편입(획지②)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③ →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획지② 변경)	•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동대로 지상광장과 연계한 동서 보행축(잠실MICE~GBC~영동대로 지상광장~무역센터~선릉)을 실현하는 등 무역센터 일대의 통합적 계획 및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를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에 편입
②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 구역 축소 - 삼성동 159-6번지 제척(획지③)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③ →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획지② 변경)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

가)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변경)

□ 획지①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기정</th><th>변경</th><th>비고</th></tr>
<tr><td colspan="3">위치</td><td>• 삼성동 159외 2번지</td><td>• 삼성동 159외 2번지</td><td></td></tr>
<tr><td colspan="3">면적</td><td>• 148,784.0㎡</td><td>• 161,784.5㎡</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 / 용도지구</td><td>• 일반상업지역
• 중심미관지구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변폭 12m)</td><td>• 일반상업지역</td><td></td></tr>
<tr><td colspan="3">가구 및 획지계획</td><td>• 가구 D1</td><td>• 가구 D1
• 획지
<table><tr><th>획지번호</th><th>위치</th><th>면적(㎡)</th></tr><tr><td>①</td><td>삼성동 159
삼성동 159-1
삼성동 159-9</td><td>148,784.0</td></tr><tr><td>②</td><td>삼성동 159-6</td><td>13,000.5</td></tr></table></td><td></td></tr>
<tr><td rowspan="3">건축물에 관한 계획</td><td rowspan="3">용도</td><td>불허용도</td><td>◦ 전층 불허용도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특정층 불허용도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td><td>◦ 전층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특정층 불허용도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td><td></td></tr>
<tr><td>권장용도</td><td>◦전층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 노유자시설</td><td>◦ 전층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관광호텔
• 노유자시설
◦ 저층부 권장용도(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 : 4층 이하
*가로활성화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판매
시설 중 상점 등</td><td></td></tr>
<tr><td>지정용도</td><td>-</td><td>◦ 지정용도
• 탑승자의 공항서비스1)를 지원하는 기능에 부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제4호</td><td></td></tr>
</table>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 제18호 창고시설 등 - 세부용도2) : 탑승수속, 수하물 위탁, 출입국 사무소 등 - 위치 : 지하2층 - 범위 : 영동대로 하부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 연결통로 기준 남북측 80m 이내/ 서측 50m 이내 - 면적 : 660㎡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기준 용적률	• 500% 이하	• 500% 이하	
		허용 용적률	• 500% 이하	• 500% 이하3)	
		상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높이	• 기준/최고높이 : 200m이하/250m이하	• 기준/최고높이 : 200m이하/250m이하	
	배치	건축 한계선	• 영동대로변 30m • 봉은사로변 20m • 서측도로 대지경계선(아셈길변) 3m	• 영동대로변 20m • 봉은사로변 20m • 서측도로 대지경계선(아셈길변) 3m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가로광장	-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 가로광장 지정 - 폭 20m	
		공개공지	• 북동측 공개공지는 남동측의 밀레니엄광장 면적이상으로 설치하며, 향후 지하철9호선과의 연계를 고려 침상형으로 계획 • 대상지 면적의 13%이상 확보	• 대상지 면적의 13% 이상 확보 • 공개공지 위치 및 형태 - 북동측 및 봉은사로변 : 지하철 9호선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침상형 및 영동대로변·봉은사로변과 연계하여 가로휴게형으로 계획 - 남동측 : 지하철 2호선 및 영동대로변과 연계를 고려하여 가로휴게형으로 계획 - 서측 : 가로휴게형으로 계획 ※ 건축심의를 통해 공개공지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심의 결과 반영(면적, 위치 제외)	
		조경면적	•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대지 내 녹지	-	• 커뮤니티숲① 위치지정 - 별마당 남측 공지 • 커뮤니티숲① 조성 - 자연생태 공간 조성 : 도심 내 다양한 식생이 생육할 수 있는 녹지 조성 - 여가 및 소통 공간 조성 :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과 다양한 이벤트 활동할 수 있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활성화 공간 조성	
		개방·활성화 공간	-	• 코엑스 전면부 및 영동대로변(30M),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및 개방공간으로 조성·운영 - 코엑스 전면부 : 건축물 테라스, 옥상정원, 통합홀 등 무료 개방 ※ 개방·활성화 공간은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 이행	
		공공 보행통로	• 2개소 -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를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 -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 ※ 실내형의 경우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일정시간 폐쇄할 수 있음	• 무역센터 동서보행축 중앙부 1개소(신설) - 영동대로~도심공항타워 차량 진출입로 전 - 폭10m(보도폭 6m 이상) ※ 동서보행축 중앙부 공공보행통로는 시종점 및 폭원 유지하되 선형변경 가능 • 실내 1개소 -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 • 지하 1개소 -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를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 ※ 이벤트 진행 시 보행공간 최소 6M 이상 확보 ※ 실내 및 지하 개방시간 : 지하철 이용시간 연계	
		보차 혼용통로	• 1개소 -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폭 10m)	• 1개소 - 아셈길~도심공항타워 차량 진출입로 구간(폭 10m) ※ 향후 도심공항타워, 오크우드 재건축 시 공공보행통로 결정 검토	
		지하연결통로	• 영동대로변 1개소(폭6m 이상)	• 영동대로변 지하 연결가능구간 내 설치	
	교통처리계획	보행동선계획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폭 20m의 가로광장 설치 • 영동대로 지하 연결 보행자 출입구 개설 • 보차혼용통로 및 보행전용도로의 보도와 차도 사이에 단차를 두어 보행의 안전 도모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폭 20m의 가로광장 설치 - 가로광장 내 영동대로변 차량 진출입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구 이전배치(영동대로변 차폐시설 포함) 등 예외적 허용 • 영동대로 지하 연결 보행자 출입구 개설 • 삼성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위해 환기구 이전배치 단, 기존 환기구 위치에 보행에 지장되는 시설물 등 설치 불가	

구분			기정	변경	비고
				※ 환기구 이전 설치 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규모와 형태로 조성 (건축심의를 통해 적정성 검토) ※ 단, 영동대로변 건축선(3m), 공개공지 내 환기구 이전배치 불가 •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개방·활성화 공간에 지하~지상 연결 수직동선 설치(3개소 이상) ※ 건축심의를 통해 개소 조정 가능	
		차량출입불허구간	• 폭30m이상 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폭30m이상 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영동대로 지상광장 계획을 반영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사항 반영	
		서비스 차량 출입구	• 서측도로에 서비스 및 주차장 진출입 통로를 차량출입동선과 별도로 설치하고 폭 20m 이하로 함	• 서측도로에 서비스 및 주차장 진출입 통로를 차량출입동선과 별도로 설치하고 폭 20m 이하로 함	
		도로조성지침	• 영동대로변 - 미관지구 후퇴선(3m) 포함하여 폭20m 가로 광장 조성 - 삼성역 부근 버스베이와 우회전 포켓을 포함하여 폭3m, 길이 425m의 완화차선 설치 • 봉은사로변 - 미관지구 후퇴선(3m) 포함하여 폭20m 가로 광장 조성 - 전구간 폭3m, 길이 300m의 완화차선 설치 • 서측도로변(아셈길) - 서측도로로부터 3m후퇴하여 폭9m 보도설치 - 폭3m, 길이 260m의 완화차선 설치 • 내부통과도로 - 폭10m의 대상지 내부 통과도로 조성 • 내부순환도로 - 폭6m이상 대상지 내부순환통과도로 조성	• 봉은사로변 - 전구간 폭3m, 길이 300m의 완화차선 설치 • 서측도로변(아셈길) - 폭3m, 길이 260m의 완화차선 설치 • 내부통과도로 - 폭6m이상 대상지 내부 소방도로 조성	
	주민 참여 계획	지역 매니지먼트	-	• 역할 - 외부공간(대지 안의 공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 - 상시적·주기적 이벤트 및 사업 등을 위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외부공간 활성화계획 • 범위 - 외부공간 : 대지 내 녹지공간, 공공보행통로 등 - 개방·활성화 공간 : 코엑스 전면부, 영동대로변(30M),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 조직 - (가칭) Coex Green MICE Alliance 협의체 (예 : (사)한국무역협회,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코엑스 등) -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 구성 · 운영조직 : 협의체, 사무국, 자문단 · 운영내용 : 지역활성화, 공공공간 관리, 재원마련 및 운영 · 재원마련 : 협의체 회비, 지역매니지먼트 운영수익 (임대수익, 공간임대료, 프로그램 운영수익) · 프로그램 기획, 시설유지관리 방안, 공공성 강화 방안 등 ※ 연간 운영계획서 수립하여 강남구에 제출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한 완화사항		• 적용대상 - 특별가로구역 (' 17.8.25. 강남구 공고 제2017-1564호) 내 옥외광고물 ※ 지주형 광고물 (①, ⑥) 은 제외 • 완화내용 ③ K-POP 광장 배기구 미디어 : 환기구에 부착 (공개공지 내 허용) ④ SM타운 입구 LED 전광판 : 필로티 상부에 설치 (공개공지 내 허용) ⑧ 현대백화점 정면 LED 전광판 : 건축물 벽면에 부착 (건축한계선 밖 허용) ⑦ 인터컨티넨탈 벽면 L/B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 적용대상 - 특별가로구역 (' 17.8.25. 강남구 공고 제2017-1564호) 내 옥외광고물 ※ 지주형 광고물 (①, ⑥) 은 제외 • 완화내용 ③ K-POP 광장 배기구 미디어 : 환기구에 부착 (공개공지 내 허용) ④ SM타운 입구 LED 전광판 : 필로티 상부에 설치 (공개공지 내 허용) ⑧ 현대백화점 정면 LED 전광판 : 건축물 벽면에 부착 (건축한계선 밖 허용) ⑦ 인터컨티넨탈 벽면 L/B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구분		기정	변경	비고
		⑨ 현대백화점 동측 LED 전광판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 면적은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 • 설치 지침(유의사항) - 설치 위치 ·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 인근의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전면공지와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 설치 형태 · 옥외광고물의 부속 기자재 등은 주변 가로와 유사한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 전체의 통일감 구현 · 미디어 형태는 건축물의 입면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과 일체감 유도	⑨ 현대백화점 동측 LED 전광판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 면적은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 • 설치 지침(유의사항) - 설치 위치 ·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 인근의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전면공지와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 설치 형태 · 옥외광고물의 부속 기자재 등은 주변 가로와 유사한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 전체의 통일감 구현 · 미디어 형태는 건축물의 입면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과 일체감 유도	

주1) 공항서비스란 탑승자의 탑승수속·수하물 위탁 및 출입국관리 등에 수반되는 기능을 말 함
-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 발권 및 수하물 위탁 서비스 등
- 출입국관리 : 사전 출국심사를 위한 사무소(출입국사무소) 등

주2) 건축물 대장에 아래의 내용 기재

① 지정용도 도입(변경포함) 시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② 세부용도 : 탑승수속, 수하물 위탁, 출입국사무소, 휴게공간 등

주3) 허용용적률은 주 도입기능(전시·집회시설) 및 주변지역의 부영향 최소화를 위해 500% 이하로 하며, 세부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재검토

□ 변경사유서

항목	구분	변경(결정)내용	변경사유
가구 및 획지	변경	• 획지 2개소 지정 신설 - 획지① : 삼성동 159,-1,-9(148,784.0㎡) - 획지② : 삼성동 159-6(13,000.5㎡) (기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 ③)	•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동대로 지상광장과 연계한 동서 보행축(잠실MICE~GBC~영동대로 지상광장~무역센터~선릉)을 실현하는 등 무역센터 일대의 통합적 계획 및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를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에 편입 • 코엑스 부지와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의 특성 및 개발 주체를 고려하여 개별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획지 구분
불허용도	변경	• 미관지구 불허용도 삭제	• 미관지구는 국토계획법(2017.4.18.개정)에서 폐지됨에 따라 삭제
권장용도	변경	• 저층부 권장용도(가로활성화용도) 신설 - 위치 : 공공보행통로변	• 공공보행통로(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 보행축) 연계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해 가로활성화용도 신설
지정용도	신설	• 지정용도 신설 - 용도 : 공항서비스 (탑승수속, 수화물 위탁, 출입국 사무소 등)	• 국제교류복합지구 방문 외국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공항서비스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공항서비스 기능을 광역복합환승센터 연결 구간으로 지정
허용 용적률	변경	• 허용용적률 500% 이하 기준의 사유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재검토 규정을 세부개발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으로 이동	•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재검토하여 기능에 맞는 적정 허용용적률 기준 마련 필요
건축 한계선	변경	• 건축한계선(영동대로변) 축소 - 30m → 20m	• 코엑스 전면부의 상징성과 전면성을 강화하고, 입체적 공공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축소 (30m → 20m)
가로광장	신설	• 가로광장 지정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 폭 20m	• 건축한계선 내 다양한 활동(보행, 휴게, 이벤트 등)이 가능하도록 가로광장 지정
공개공지	변경	• 공개공지(남동측 및 북동측)의 위치 및 형태 변경(명시) - 테헤란로변, 삼성역 선큰광장 삭제 후 변경 · 남동측 공개공지 * 위치 : 영동대로변 공개공지 폭원 축소 및 삼성역 연결부 공개공지 선형 조정 * 형태 : 보행 및 휴게 등 위한 가로휴게형으로 조성 · 북동측 공개공지 * 위치 : 영동대로변 공개공지 폭원 축소 및 영동대로변 공개공지 확대 * 형태 : 보행 및 휴게 등 위한 가로휴게형으로 조성 · 서측 공개공지 * 형태 : 보행 및 휴게 등 위한 가로휴게형으로 조성	• 영동대로변 건축한계선 변경사항 반영 • 남동측 공개공지는 공간활성화를 위한 삼성역 연계 선큰부 공개공지 제외 및 지상부 공개공지 형태 변경 • 북동측 공개공지는 영동대로 상부 지상광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공지 확장 및 형태 변경 • 서측 공개공지는 아셈로와 연계하여 가로휴게형 공개공지 조성
대지 내 녹지	신설	• 대지 내 녹지 조성 - 위치 : 별마당 남측 공지	• 영동대로 지상광장(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보행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활동 및 생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녹지 신설

항목	구분	변경(결정)내용	변경사유
개방·활성화 공간	신설	• 개방·활성화 공간 조성 신설 - 코엑스 전면부 및 영동대로변(30M),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 코엑스 전면부 : 건축물 테라스, 옥상정원, 통합홀 등 무료 개방 ※ 개방·활성화 공간은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 이행	•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활동할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개방형 명소 공간 조성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능(MICE 등)을 강화하고자 신설
공공보행통로	신설	• 기존 보차혼용통로 일부를 공공보행통로로 전환 - 무역센터 동서보행축 중앙부 1개소 신설 (영동대로~공항타워 차량 진출입로 전) - 폭10m(보도폭 6m 이상) • 지하공공보행통로 지침 추가 - 이벤트 진행 시 최소 6M 이상 확보	• 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보행 연결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신설 • 삼성역 선큰광장 내 이벤트 진행 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 6M 이상 확보 신설
보차혼용통로	변경	• 보차혼용통로 일부 해제 - 해제구간 : 영동대로~도심공항타워 차량 진출입로 구간	• 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 보행 연결 실현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에 따라 차량출입(도심공항타워, 오크우드호텔 등)에 필요한 구간을 제외하고 보차혼용통로 해제
지하연결통로	변경	• 영동대로변 지하연결통로 개소 및 폭 삭제 - 영동대로변 1개소(폭 6m 이상) → 영동대로변 연결가능구간	• 향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및 코엑스 지하부 연계를 고려하여 지하 연결가능구간으로 포괄적 결정

항목	구분	변경(결정)내용	변경사유
보행동선계획	변경	• 보도와 차도 사이 단차 조성 지침 삭제 • 환기구 이전배치 지침 신설 - 삼성역 주변 지상부 •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지침 신설 - 수직동선 설치	• 공공보행통로 신설 및 보차혼용통로 변경에 따라 보행 전용도로 관련 내용 삭제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삼성역 주변 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구 이전 배치 지침 신설 • 환기구 이전배치와 연계하여 이전이 불가한 위치 및 이전 후 공간 활용에 대한 세부지침 제시 •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직동선 설치 신설
도로조성지침	변경	• 영동대로변 및 봉은사로변 - 가로광장 지침 삭제 - 삼성역 부근 버스베이, 완화차선(폭3m, 길이 425m, 우회전 포켓 포함) 삭제 • 서측도로변(아셈길) - 보도설치 삭제 (서측도로로부터 3m 후퇴하여 폭9m 보도설치) • 내부통과도로 변경 - 내부순환통과도로 → 소방도로 • 내부순환도로 삭제 - 폭6m 이상	• 대지내 공지 중 가로광장 규정 신설에 따른 도로조성 지침 가로광장 관련 내용 삭제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따른 영동대로 일대 지상광장으로 전환, 폐지가 예상되는 버스베이, 완화차선(우회전 포켓) 삭제 • 서측도로변(아셈길) 9m 보도설치는 현 건축물 및 가로 특성상 적용하기 불가한 기준으로 삭제 • 영동대로 지상광장 및 연계된 무역센터 일대 중앙부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라 내부순환도로 삭제하고, 내부통과도로는 비상 시 소방도로로 활용 하도록 변경
지역 매니지먼트	신설	• 지역매니지먼트 신설 - 대상 :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등) - 조직 :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 구성	• 무역센터 일대 외부공간의 전면 재편으로 조성되는 가로숲(공공보행통로), 개방·활성화 공간, 커뮤니티숲, 휴게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매니지먼트 신설

– 이하여백 –

□ 획지②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기정</th><th>변경</th><th>비고</th></tr>
<tr><td colspan="3">위치</td><td>• 삼성동 159-8외 2번지</td><td>• 삼성동 159-6번지</td><td></td></tr>
<tr><td colspan="3">면적</td><td>• 41,602.3㎡</td><td>• 13,000.5㎡</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 / 용도지구</td><td>• 일반상업지역</td><td>• 일반상업지역</td><td></td></tr>
<tr><td colspan="3">도시기반시설</td><td>• 자동차정류장 (159-6번지, 13,000.5㎡)</td><td>• 자동차정류장 (159-6번지, 13,000.5㎡)</td><td></td></tr>
<tr><td colspan="3">가구 및 획지계획</td><td>• 가구 D1
• 획지(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table><tr><th>획지번호</th><th>위치</th><th>면적(㎡)</th></tr><tr><td>①</td><td>삼성동 159-8</td><td>18,403.4</td></tr><tr><td>②</td><td>삼성동 159-7</td><td>10,198.4</td></tr><tr><td>③</td><td>삼성동 159-6</td><td>13,000.5</td></tr></table></td><td>• 가구 D1
• 획지(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table><tr><th>획지번호</th><th>위치</th><th>면적(㎡)</th></tr><tr><td>①</td><td>삼성동 159외 2번지</td><td>148,784.0</td></tr><tr><td>②</td><td>삼성동 159-6</td><td>13,000.5</td></tr></table></td><td></td></tr>
<tr><td rowspan="5">건축물에 관한 계획</td><td rowspan="3">용도</td><td>불허 용도</td><td>◦ 전층 불허용도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특정층 불허용도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td><td>◦ 전층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특정층 불허용도
• 숙박시설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td><td></td></tr>
<tr><td>권장 용도</td><td>◦ 전층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 노유자시설</td><td>◦ 저층부 권장용도(공공보행통로변)
• 가로활성화 용도
*저층부 : 4층 이하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중 상점 등</td><td></td></tr>
<tr><td>지정 용도</td><td>◦ 최상층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단, 관광호텔은 최상층 및 지상3~4층)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단, 관광호텔에 한함)</td><td>◦ 저층부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저층부 : 4층 이하
* 2~4층 조성 시 지상에서 연결되는 수직동선 조성</td><td></td></tr>
<tr><td rowspan="3">밀도</td><td>건폐율</td><td>• 60%이하</td><td>• 60%이하</td><td></td></tr>
<tr><td>기준 용적률</td><td>• 600% 이하</td><td>• 800% 이하</td><td></td></tr>
<tr><td>허용 용적률</td><td>• 800% 이하</td><td>• 880% 이하</td><td></td></tr>
</table>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상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 공공시설등 제공 시 - 허용용적률 X (1+1.3X가중치Xa토지+1.0X a현금·건축물)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다른 법률에 따른 항목 적용 시 - 공개공지등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등	
	밀도	높이	• 기준/최고높이 : 200m이하/250m이하	• 기준/최고높이 : 200m이하/250m이하	
	배치	건축 한계선	• 인터콘티넨탈 호텔, 현대백화점 테헤란로변 폭 20m • 현대백화점, 공항터미널 아셈길변 폭 5m • 특별계획구역 내 주요 시설변 폭 5m	• 서측 아셈길변 폭 5m • 북측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남측 현대백화점 연접부 폭 5m	
	외관·형태 등	1층 바닥높이	• 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의 차이를 10cm미만으로 조성 •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의 차이를 10cm미만으로 조성 •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	외관·형태 등	기존 건축물과 조화	• 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해야함 • 좌우 양측 건물의 층고, 1층 개구부의 높이, 난간벽 높이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두 건물 중 전면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 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해야함 • 좌우 양측 건물의 층고, 1층 개구부의 높이, 난간벽 높이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두 건물 중 전면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외벽	• 폭 20m이상의 가로 및 폭 12m이상 가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노출 금지	• 폭 20m이상의 가로 및 폭 12m이상 가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노출 금지 • 저층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인지될 수 있는 입면계획 권장	
		투시벽	• 테헤란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벽 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설치	• 테헤란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벽 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설치	
		측면 이격공지 차폐	•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	•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 • 차량이 통행하는 보차혼용통로 구간은 조경 등으로 차폐 권장	
		셔터	• 12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 12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지하층 출입구	•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 구조를 설치할 수 없음	•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 구조를 설치할 수 없음	
		탑상형	• 건폐율 50%이하의 탑상형 건축물 입지 권장	• 건폐율 50%이하의 탑상형 건축물 입지 권장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물			
		피로티	• 공공보행통로 옆 : 폭 5m이상, 높이 6m이상 확보 • 건축물 입구 : 폭 8m이상, 높이 6m이상 확보	-	삭제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공개 공지	• 인터콘티넨탈 : 테헤란로변 폭11~15m 공개공지 설치 • 현대백화점 : 테헤란로변 폭10m 공개공지 설치 • 공개공지 안에 있는 기존 지하비상출입구는 건축물 내부 이전. 단, 선큰형태의 침상형공지로 조성시 제외 • 공개공지내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부지내 공개공지로 추가확보. 단, 차량출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대체 조성되는 공개공지는 공개공지 대체조성 위치에 기존공개공지 지정위치와 연계하여 조성	• 공개공지 위치 지정 - 대상지 북측의 아셈로변 및 공공보행통로변	
		공공 보행통로	• 인터콘티넨탈호텔 : 부지 우측 공공보행통로 설치 (폭5m) • 현대백화점 : 부지 우측 공공보행통로 설치 (폭5m) • 도심공항터미널 : 부지 남측 공공보행통로 설치 (폭5m)	• 대상지 및 인터컨티넨털호텔(한국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①) 연접구간 공공보행통로 설치(폭5m)	
		대지 내 녹지	-	• 커뮤니티숲② 위치지정 - 동서보행축 중앙부 통로변 • 커뮤니티숲② 조성 - 자연생태 공간 조성 : 도심 내 다양한 식생이 생육할 수 있는 녹지 조성 - 여가 및 소통 공간 조성 :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과 다양한 이벤트 활동할 수 있는 활성화 공간 조성	
	교통 처리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 테헤란로 및 아셈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기존 인터콘티넨탈호텔부지, 현대백화점부지, 도심공항터미널 기존 차량진출입구 유지. 단, 인터콘티넨탈호텔과 현대백화점 사이의 출입구는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위해 최소폭 3m로 존치하고, 바닥재의 재질 및 패턴 등 변화를 통해 보행의 연속성 유지)	• 아셈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경관 및 환경 친화 요소	생태 면적률	• 생태면적률 20% 이상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준수	• 생태면적률 20% 이상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준수	

□ 변경사유서

항목	구분	변경(결정)내용	변경사유
가구 및 획지	변경	• 획지 2개소 지정 신설 - 획지① : 삼성동 159,-1,-9(148,784.0㎡) - 획지② : 삼성동 159-6(13,000.5㎡) (기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③)	•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동대로 지상광장과 연계한 동서 보행축(잠실MICE~GBC~영동대로 지상광장~무역센터~선릉)을 실현하는 등 무역센터 일대의 통합적 계획 및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를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에 편입 • 코엑스 부지와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의 특성 및 개발 주체를 고려하여 개별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획지 구분
불허용도	변경	• 미관지구 불허용도 삭제 • 주차장 및 관광호텔 제외사항 삭제	• 미관지구는 국토계획법(2017.4.18.개정)에서 폐지됨에 따라 삭제 • 도시계획시설과의 정합성 고려
권장용도	변경	• 전층 권장용도 삭제 • 저층부 권장용도(가로활성화용도) 신설 - 위치 : 저층부	• 공공보행통로(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보행축) 연계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가로활성화 용도 신설
지정용도	신설	• 최상층 지정용도 위치(층수) 변경 - 최상층 → 저층부 • 최상층 지정용도 중 관망탑 삭제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 내 녹지공간(커뮤니티숲, 공개공지), 가로활성화 용도, 공공보행통로(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보행축)의 연계를 통한 외부공간 활성화 등을 위해 지정용도 위치 변경 및 관망탑 삭제
용적률 (기준/상한)	변경	• 기준 : 600% → 800% • 상한 :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완화적용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개정(2024.8.19.) 등에 따른 용적률 체계 변경사항 반영
건축 한계선	변경	• 인터콘티넨탈 호텔, 현대백화점 테헤란로변 건축한계선 규정 삭제	•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①, ②」에 해당하는 건축한계선 규정 삭제
외관·형태 등	변경	• 피로티 규정 삭제 • 외벽 지침에 문화 및 집회시설 인지성 규정 신설 • 측면 이격공지 차폐 지침에 차량이 통행하는 보차혼용통로 구간을 시각적으로 차폐하는 규정 신설	•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①, ②」에 해당하는 필로티 규정 삭제 • 저층부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인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벽 지침 신설 • 북측 공개공지에 연접한 차량이 통행하는 보차혼용통로 구간을 시각적으로 차폐하여 공개공지를 활성화하고자 함
공개공지	변경	• 인터콘티넨탈 호텔, 현대백화점 공개공지 규정 삭제 • 대상지 공개공지 신설	•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①, ②」에 해당하는 공개공지 규정 삭제 •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변 및 아셈로변에

항목	구분	변경(결정)내용	변경사유
		- 위치 : 대상지 북측의 아셈로변 및 공공보행통로변	공개공지 지정
공공보행통로	변경	• 인터콘티넨탈 호텔, 현대백화점 공공보행통로 규정 삭제 • 대상지 공공보행통로 구간 조정 - 당초 : 현대백화점 및 대상지 사이 공공보행통로 - 변경 : 인터컨티넨탈 호텔 및 대상지 연접구간 공공보행통로 설치	•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①, ②」에 해당하는 공개공지 규정 삭제 • 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보행 연결을 실현하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 중앙부에 공공보행통로변에 공개공지 및 커뮤니티숲을 지정 등에 따라 현대백화점 연접 구간의 공공보행통로 일부 삭제
대지 내 녹지	신설	• 커뮤니티숲 신설 - 동서보행축 중앙부 통로변	• 영동대로 지상광장(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보행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활동 및 생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녹지 신설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테헤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규정 삭제 • 아셈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①, ②」에 해당하는 차량출입불허구간 규정 삭제

나)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다)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라)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마) 舊한국감정원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①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외 3번지	148,784.0	-
변경	①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외 4번지	161,784.5	삼성동 159-6 구역 편입 (기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③)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①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 구역 확대 - 삼성동 159-6번지 편입(획지②)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획지③ →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획지② 변경)	•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동대로 지상광장과 연계한 동서 보행축(잠실MICE~GBC~영동대로 지상광장~무역센터~선릉)을 실현하는 등 무역센터 일대의 통합적 계획 및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를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에 편입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161,784.5	-	161,784.5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1,784.5	-	161,784.5	100.0	-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자동차 정류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기정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자동차 정류장	여 객 자동차 터미널	강남구 삼성동 159-6	13,000.5	-	13,000.5	서고 204호 (1985.03.26)	-

2.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 획지①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

가) 불허용도(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전층 불허용도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특정층 불허용도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 전층 불허용도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특정층 불허용도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
변경	◦ 전층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전층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공장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특정층 불허용도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 공장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특정층 불허용도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미관지구 불허용도 삭제	• 미관지구는 국토계획법 (2017.4.18.개정)에서 폐지됨에 따라 삭제

나) 권장용도(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전층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 노유자시설	◦ 전층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 노유자시설	-
변경	◦ 전층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관광호텔 • 노유자시설 ◦ 저층부 권장용도(공공보행통로변) • 가로활성화 용도 *저층부 : 4층 이하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중 상점 등	◦ 전층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관광호텔 • 노유자시설 ◦ 저층부 권장용도(공공보행통로변) • 가로활성화 용도 *저층부 : 4층 이하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중 상점 등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저층부 권장용도(가로활성화용도) 신설 - 위치 : 공공보행통로변	• 공공보행통로(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보행축)연계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해 가로활성화용도 신설

다) 지정용도(신설)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신설	◦ 지정용도 • 탑승자의 공항서비스1)를 지원하는 기능에 부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 제18호 창고시설 등 - 세부용도2) : 탑승수속, 수하물 위탁, 출입국 사무소 등 - 위치 : 지하 2층 - 범위 : 영동대로 하부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 연결통로 기준 남북측 80m 이내/ 서측 50m 이내 - 면적 : 660㎡	◦ 지정용도 • 탑승자의 공항서비스1)를 지원하는 기능에 부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 제18호 창고시설 등 - 세부용도2) : 탑승수속, 수하물 위탁, 출입국 사무소 등 - 위치 : 지하 2층 - 범위 : 영동대로 하부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 연결통로 기준 남북측 80m 이내/ 서측 50m 이내 - 면적 : 660㎡	주)

주1) 공항서비스란 탑승자의 탑승수속·수하물 위탁 및 출입국관리 등에 수반되는 기능을 말함
-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 발권 및 수하물 위탁 서비스 등
- 출입국관리 : 사전 출국심사를 위한 사무소(출입국사무소) 등

주2) 건축물 대장에 아래의 내용 기재

① 지정용도 도입(변경포함) 시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② 세부용도 : 탑승수속, 수하물 위탁, 출입국사무소, 휴게공간 등

□ 결정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지정용도 신설 - 용도 : 공항서비스(탑승수속, 수하물 위탁, 출입국 사무소 등)	• 국제교류복합지구 방문 외국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공항서비스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공항서비스 기능을 광역복합환승센터 연결 구간으로 지정

2) 건축물의 개발밀도

가) 건폐율(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일반상업지역	60%이하	60%이하	-

나) 용적률(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준용적률		• 500% 이하	• 500% 이하	-
허용 용적률	기정	• 500% 이하	• 500% 이하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재검토	-
	변경	• 500% 이하1)	• 500% 이하	주)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

주1) 허용용적률은 주 도입기능(전시·집회시설) 및 주변지역의 부영향 최소화를 위해 500% 이하로 하며, 세부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재검토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허용용적률 500% 이하 기준의 사유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재검토 규정을 세부개발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으로 이동	• 추후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시 재검토하여 기능에 맞는 적정 허용용적률 기준 마련 필요

다)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일반상업지역	기정	• 기준/최고높이 : 200m이하/250m이하	• 기준/최고높이 : 100~200m이하/120~250m이하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 배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	-
	변경	• 기준/최고높이 : 200m이하/250m이하	• 기준/최고높이 : 200m이하/250m이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삭제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기준/최고높이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반영에 따른 변경

– 이하여백 –

3)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 ·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건축한계선(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영동대로변 30m • 봉은사로변 20m • 서측도로 대지경계선(아셈길변) 3m	• 영동대로변 30m • 봉은사로변 20m • 서측도로 대지경계선(아셈길변) 3m	-
변경	• 영동대로변 20m • 봉은사로변 20m • 서측도로 대지경계선(아셈길변) 3m	• 영동대로변 20m • 봉은사로변 20m • 서측도로 대지경계선(아셈길변) 3m	결정도 참조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건축한계선(영동대로변) 축소 - 30m → 20m	• 코엑스 전면부의 상징적 열린공간을 조성하여 상징성과 전면성을 강화하고, 입체적 공공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축소 (30m → 20m)

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가로광장(신설)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신설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 가로광장 지정 - 폭 20m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 가로광장 지정 - 폭 20m	

□ 결정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가로광장 지정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 폭 20m	• 건축한계선 내 다양한 활동(보행, 휴게, 이벤트 등)이 가능하도록 가로광장 지정

나) 전면공지(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조성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변경	-	-	삭제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전면공지 삭제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반영에 따른 변경

다) 공개공지(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북동측 공개공지는 남동측의 밀레니엄광장 면적이상으로 설치하며, 향후 지하철9호선과의 연계를 고려 침상형으로 계획 • 대상지 면적의 13%이상 확보	• 테헤란로변 공개공지 위치지정 (폭 10~15m) • 삼성역 선큰광장과 연계한 공개공지 위치지정	-
변경	• 대상지 면적의 13% 이상 확보 • 공개공지 위치 및 형태 - 북동측 및 봉은사로변 : 지하철 9호선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침상형 및 영동대로변·봉은사로변과 연계하여 가로휴게형으로 계획 - 남동측 : 지하철 2호선 및 영동대로변과 연계를 고려하여 가로휴게형으로 계획 - 서측 : 가로휴게형으로 계획 ※ 건축심의를 통해 공개공지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심의 결과 반영(면적, 위치 제외)	• 대상지 면적의 13% 이상 확보 • 공개공지 위치 및 형태 - 북동측 및 봉은사로변 : 지하철 9호선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침상형 및 영동대로변·봉은사로변과 연계하여 가로휴게형으로 계획 - 남동측 : 지하철 2호선 및 영동대로변과 연계를 고려하여 가로휴게형으로 계획 - 서측 : 가로휴게형으로 계획 ※ 건축심의를 통해 공개공지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심의 결과 반영(면적, 위치 제외)	결정도 참조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공개공지(남동측 및 북동측)의 위치 및 형태 변경(명시) - 테헤란로변, 삼성역 선큰광장 삭제 후 변경 · 남동측 공개공지 * 위치 : 영동대로변 공개공지 폭원 축소 및 삼성역 연결부 공개공지 선형 조정 * 형태 : 보행 및 휴게 등 위한 가로휴게형으로 조성 · 북동측 공개공지 * 위치 : 공개공지 확대 * 형태 : 보행 및 휴게 등 위한 가로휴게형으로 조성 · 서측 공개공지 * 형태 : 보행 및 휴게 등 위한 가로휴게형으로 조성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반영에 따른 변경 • 영동대로변 건축한계선 변경사항 반영 • 남동측 공개공지는 공간활성화를 위한 삼성역 연계 선큰부 공개공지 제외 및 지상부 공개공지 형태 변경 • 북동측 공개공지는 영동대로 상부 지상광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공지 확장 및 형태 변경 • 서측 공개공지는 아셈로와 연계하여 가로휴게형 공개공지 조성

라) 조경면적(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조경면적	•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

마) 대지 내 녹지(신설)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신설	• 커뮤니티숲① 위치지정 - 별마당 남측 공지 • 커뮤니티숲① 조성 - 자연생태 공간 조성 : 도심 내 다양한 식생이 생육할 수 있는 녹지 조성 - 여가 및 소통 공간 조성 :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과 다양한 이벤트 활동할 수 있는 활성화 공간 조성	• 커뮤니티숲① 위치지정 - 별마당 남측 공지 • 커뮤니티숲① 조성 - 자연생태 공간 조성 : 도심 내 다양한 식생이 생육할 수 있는 녹지 조성 - 여가 및 소통 공간 조성 :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과 다양한 이벤트 활동할 수 있는 활성화 공간 조성	결정도 및 시행지침 참조

□ 결정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대지 내 녹지 조성 - 위치 : 별마당 남측 공지	• 영동대로 지상광장(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보행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활동 및 생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녹지 신설

바) 개방·활성화 공간(신설)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신설	• 코엑스 전면부 및 영동대로변(30M),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및 개방공간으로 조성·운영 - 코엑스 전면부 : 건축물 테라스, 옥상정원, 통합홀 등 무료 개방 ※ 개방·활성화 공간은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 이행	• 코엑스 전면부 및 영동대로변(30M),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및 개방공간으로 조성·운영 - 코엑스 전면부 : 건축물 테라스, 옥상정원, 통합홀 등 무료 개방 ※ 개방·활성화 공간은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 이행	결정도 및 시행지침 참조

□ 결정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코엑스 전면부 및 영동대로변(30M),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및 개방공간으로 조성·운영 - 코엑스 전면부 : 건축물 테라스, 옥상정원, 통합홀 등 무료 개방 ※ 개방·활성화 공간은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 이행	•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활동할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개방형 명소 공간 조성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능(MICE 등)을 강화하고자 신설

사) 공공보행통로(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2개소 -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를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 -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 ※ 실내형의 경우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일정시간 폐쇄할 수 있음	• 2개소 -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를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 ※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가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보행자통로 확보 -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 ※ 24시간 개방연결통로 개설	-
변경	• 무역센터 동서보행축 중앙부 1개소(신설) - 영동대로~도심공항타워 차량 진출입로 전 - 폭10m(보도폭 6m 이상) ※ 동서보행축 중앙부 공공보행통로는 시종점 및 폭원 유지하되 선형변경 가능 • 실내 1개소 -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 • 지하 1개소 -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를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 ※ 이벤트 진행 시 보행공간 최소 6M 이상 확보 ※ 실내 및 지하 개방시간 : 지하철 이용시간 연계	• 무역센터 동서보행축 중앙부 1개소(신설) - 영동대로~도심공항타워 차량 진출입로 전 - 폭10m(보도폭 6m 이상) ※ 동서보행축 중앙부 공공보행통로는 시종점 및 폭원 유지하되 선형변경 가능 • 실내 1개소 -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 • 지하 1개소 -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를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 ※ 이벤트 진행 시 보행공간 최소 6M 이상 확보 ※ 실내 및 지하 개방시간 : 지하철 이용시간 연계	결정도 참조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기존 보차혼용통로 일부를 공공보행통로로 전환 - 무역센터 동서보행축 중앙부 1개소 신설 (영동대로~공항타워 차량 진출입로 전) - 폭10m(보도폭 6m 이상) • 지하공공보행통로 지침 추가 - 이벤트 진행 시 최소 6M 이상 확보	• 특별계획 계획지침 반영에 따른 변경 • 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보행 연결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신설 • 삼성역 선큰광장 내 이벤트 진행 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 6M 이상 확보 신설

아) 보차혼용통로(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1개소 -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폭 10m)	-	-
변경	• 1개소 - 아셈길 ~ 도심공항타워 차량 진출입로 구간 ※ 향후 도심공항타워, 오크우드 재건축 시 공공보행통로 결정 검토	• 1개소 - 아셈길 ~ 도심공항타워 차량 진출입로 구간 ※ 향후 도심공항타워, 오크우드 재건축 시 공공보행통로 결정 검토	결정도 참조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보차혼용통로 일부 해제 - 해제구간 : 영동대로~도심공항타워 차량 진출입로 구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반영에 따른 변경 • 국제교류복합지구 동서 보행 연결 실현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에 따라 차량출입(도심공항타워, 오크우드호텔 등)에 필요한 구간을 제외하고 보차혼용통로 해제

자) 지하연결통로(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영동대로변 1개소(폭6m 이상)	-	-
변경	• 영동대로변 지하 연결가능구간 내 설치	• 영동대로변 지하 연결가능구간 내 설치	결정도 시행지침 참조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영동대로변 지하연결통로 개소 및 폭 삭제 - 영동대로변 1개소(폭 6m 이상) → 영동대로변 연결가능구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반영에 따른 변경 • 향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및 코엑스 지하부 연계를 고려하여 지하 연결가능구간으로 포괄적 결정

– 이하여백 –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가) 보행동선계획(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폭 20m의 가로광장 설치 • 영동대로 지하 연결 보행자 출입구 개설 • 보차혼용통로 및 보행전용도로의 보도와 차도 사이에 단차를 두어 보행의 안전 도모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폭 20m의 가로광장 설치 •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가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보행자통로 확보 •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하는 24시간 개방 연결통로개설 • 영동대로 관통 지하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 개설 • 보차혼용통로 및 보행전용도로의 보도와 차도 사이에 단차를 두어 보행의 안전 도모	-
변경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폭 20m의 가로광장 설치 - 가로광장 내 영동대로변 차량 진출입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구 이전배치(영동대로변 차폐시설 포함) 등 예외적 허용 • 영동대로 지하 연결 보행자 출입구 개설 • 삼성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위해 환기구 이전배치 단, 기존 환기구 위치에 보행에 지장되는 시설물 등 설치 불가 ※ 환기구 이전 설치 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규모와 형태로 조성 (건축심의를 통해 적정성 검토) ※ 단, 영동대로변 건축선(3m), 공개공지 내 환기구 이전배치 불가 •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개방·활성화 공간에 지하~지상 연결 수직동선 설치(3개소 이상) ※ 건축심의를 통해 개소 조정 가능	• 봉은사로, 영동대로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폭 20m의 가로광장 설치 - 가로광장 내 영동대로변 차량 진출입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구 이전배치(영동대로변 차폐시설 포함) 등 예외적 허용 • 영동대로 지하 연결 보행자 출입구 개설 • 삼성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위해 환기구 이전배치 단, 기존 환기구 위치에 보행에 지장되는 시설물 등 설치 불가 ※ 환기구 이전 설치 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규모와 형태로 조성 (건축심의를 통해 적정성 검토) ※ 단, 영동대로변 건축선(3m), 공개공지 내 환기구 이전배치 불가 •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개방·활성화 공간에 지하~지상 연결 수직동선 설치(3개소 이상) ※ 건축심의를 통해 개소 조정 가능	시행지침 참조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보도와 차도 사이 단차 조성 지침 삭제 • 환기구 이전배치 지침 신설 - 삼성역 주변 지상부 •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지침 신설 - 수직동선 설치	• 공공보행통로 신설 및 보차혼용통로 변경에 따라 보행전용도로 관련 내용 삭제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삼성역 주변 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구 이전 배치 지침 신설 • 환기구 이전배치와 연계하여 이전이 불가한 위치 및 이전 후 공간 활용에 대한 세부지침 제시 •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수직동선 설치 신설

나) 차량출입불허구간(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폭30m이상 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도로의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는 차량진출입 금지	-
변경	• 폭30m이상 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영동대로 지상광장 계획을 반영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사항 반영	• 폭30m이상 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영동대로 지상광장 계획을 반영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사항 반영	결정도 참조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 - 차량진출입 금지 (50m 이내) → 차량출입불허구간 (30m 이상)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반영에 따른 변경

다) 서비스차량출입구(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서측도로에 서비스 및 주차장 진출입 통로를 차량출입동선과 별도로 설치하고 폭 20m 이하로 함	• 서측도로에 서비스 및 주차장 진출입 통로를 차량출입 동선과 별도로 설치하고 폭 20m 이하로 함	-

- 이하여백 -

라) 도로조성지침(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영동대로변 - 미관지구 후퇴선(3m) 포함하여 폭20m 가로 광장 조성 - 삼성역 부근 버스베이와 우회전 포켓을 포함하여 폭3m, 길이 425m의 완화차선 설치 • 봉은사로변 - 미관지구 후퇴선(3m) 포함하여 폭20m 가로광장 조성 - 전구간 폭3m, 길이 300m의 완화차선 설치 • 서측도로변(아셈길) - 서측도로로부터 3m후퇴하여 폭9m 보도설치 - 폭3m, 길이 260m의 완화차선 설치 • 내부통과도로 - 폭10m의 대상지 내부 통과도로 조성 • 내부순환도로 - 폭6m이상 대상지 내부순환통과도로 조성	• 영동대로변 - 미관지구 후퇴선(3m) 포함하여 폭20m 가로 광장 조성 - 삼성역 부근 버스베이와 우회전 포켓을 포함하여 폭3m, 길이 425m의 완화차선 설치 • 봉은사로변 - 미관지구 후퇴선(3m) 포함하여 폭20m 가로광장 조성 - 전구간 폭3m, 길이 300m의 완화차선 설치 • 서측도로변(아셈길) - 서측도로로부터 3m후퇴하여 폭9m 보도설치 - 폭3m, 길이 260m의 완화차선 설치 • 내부통과도로 - 폭10m의 대상지 내부 통과도로 조성 • 내부순환도로 - 폭6m이상 대상지 내부순환통과도로 조성	-
변경	• 봉은사로변 - 전구간 폭3m, 길이 300m의 완화차선 설치 • 서측도로변(아셈길) - 폭3m, 길이 260m의 완화차선 설치 • 내부통과도로 - 폭6m이상 대상지 내부 소방도로 조성	• 봉은사로변 - 전구간 폭3m, 길이 300m의 완화차선 설치 • 서측도로변(아셈길) - 폭3m, 길이 260m의 완화차선 설치 • 내부통과도로 - 폭6m의 대상지 내부 소방도로 조성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영동대로변 및 봉은사로변 - 가로광장 지침 삭제 - 삼성역 부근 버스베이, 완화차선(폭3m, 길이 425m, 우회전 포켓 포함) 삭제	• 대지내 공지 중 가로광장 규정 신설에 따른 도로조성 지침 가로광장 관련 내용 삭제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따른 영동대로 일대 지상광장으로 전환, 폐지가 예상되는 버스베이, 완화차선 (우회전 포켓) 삭제
	• 서측도로변(아셈길) - 보도설치 삭제 (서측도로로부터 3m 후퇴하여 폭9m 보도설치)	• 서측도로변(아셈길) 9m 보도설치는 현 건축물 및 가로 특성 상 적용하기 불가한 기준으로 삭제
	• 내부통과도로 변경 - 내부통과도로 → 소방도로 • 내부순환도로 삭제 - 폭6m 이상	• 영동대로 지상광장 및 연계된 무역센터 일대 중앙부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라 내부순환도로 삭제하고, 내부통과도로는 비상 시 소방도로로 활용 하도록 변경

– 이하여백 –

3) 주민참여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가) 지역매니지먼트(신설)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신설	• 역할 - 외부공간(대지 안의 공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 - 상시적·주기적 이벤트 및 사업 등을 위한 외부공간 활성화계획 • 범위 - 외부공간 : 대지 내 녹지공간, 공공보행통로 등 - 개방·활성화 공간 : 코엑스 전면부, 영동대로변(30M),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 조직 - (가칭) Coex Green MICE Alliance 협의체 (예 : (사)한국무역협회,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코엑스 등) -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 구성 · 운영조직 : 협의체, 사무국, 자문단 · 운영내용 : 지역활성화, 공공공간 관리, 재원마련 및 운영 · 재원마련 : 협의체 회비, 지역매니지먼트 운영수익 (임대수익, 공간임대료, 프로그램 운영수익) · 프로그램 기획, 시설유지관리 방안, 공공성 강화 방안 등 ※ 연간 운영계획서 수립하여 강남구에 제출	• 역할 - 외부공간(대지 안의 공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 - 상시적·주기적 이벤트 및 사업 등을 위한 외부공간 활성화계획 • 범위 - 외부공간 : 대지 내 녹지공간, 공공보행통로 등 - 개방·활성화 공간 : 코엑스 전면부, 영동대로변(30M), 삼성역 사거리 주변 일대 • 조직 - (가칭) Coex Green MICE Alliance 협의체 (예 : (사)한국무역협회,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코엑스 등) -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 구성 · 운영조직 : 협의체, 사무국, 자문단 · 운영내용 : 지역활성화, 공공공간 관리, 재원마련 및 운영 · 재원마련 : 협의체 회비, 지역매니지먼트 운영수익 (임대수익, 공간임대료, 프로그램 운영수익) · 프로그램 기획, 시설유지관리 방안, 공공성 강화 방안 등 ※ 연간 운영계획서 수립하여 강남구에 제출	시행지침 참조

□ 결정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지역매니지먼트 신설 - 대상 :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등) - 조직 :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 구성	• 무역센터 일대 외부공간의 전면 재편으로 조성되는 가로숲(공공보행통로), 개방·활성화 공간, 커뮤니티숲, 휴게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매니지먼트 신설

– 이하여백 –

4)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한 완화사항(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 적용대상 - 특별가로구역 (' 17.8.25. 강남구 공고 제2017-1564호) 내 옥외광고물 ※ 지주형 광고물 (①, ⑥) 은 제외 • 완화내용 ③ K-POP 광장 배기구 미디어 : 환기구에 부착 (공개공지 내 허용) ④ SM타운 입구 LED 전광판 : 필로티 상부에 설치 (공개공지 내 허용) ⑧ 현대백화점 정면 LED 전광판 : 건축물 벽면에 부착 (건축한계선 밖 허용) ⑦ 인터컨티넨탈 벽면 L/B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⑨ 현대백화점 동측 LED 전광판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 면적은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 • 설치 지침(유의사항) - 설치 위치 ·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 인근의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전면공지와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 설치 형태 · 옥외광고물의 부속 기자재 등은 주변 가로와 유사한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 전체의 통일감 구현 · 미디어 형태는 건축물의 입면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과 일체감 유도	• 적용대상 - 특별가로구역 (' 17.8.25. 강남구 공고 제2017-1564호) 내 옥외광고물 ※ 지주형 광고물 (①, ⑥) 은 제외 • 완화내용 ③ K-POP 광장 배기구 미디어 : 환기구에 부착 (공개공지 내 허용) ④ SM타운 입구 LED 전광판 : 필로티 상부에 설치 (공개공지 내 허용) ⑧ 현대백화점 정면 LED 전광판 : 건축물 벽면에 부착 (건축한계선 밖 허용) ⑦ 인터컨티넨탈 벽면 L/B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⑨ 현대백화점 동측 LED 전광판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 면적은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 • 설치 지침(유의사항) - 설치 위치 ·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 인근의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전면공지와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 설치 형태 · 옥외광고물의 부속 기자재 등은 주변 가로와 유사한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 전체의 통일감 구현 · 미디어 형태는 건축물의 입면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과 일체감 유도	시행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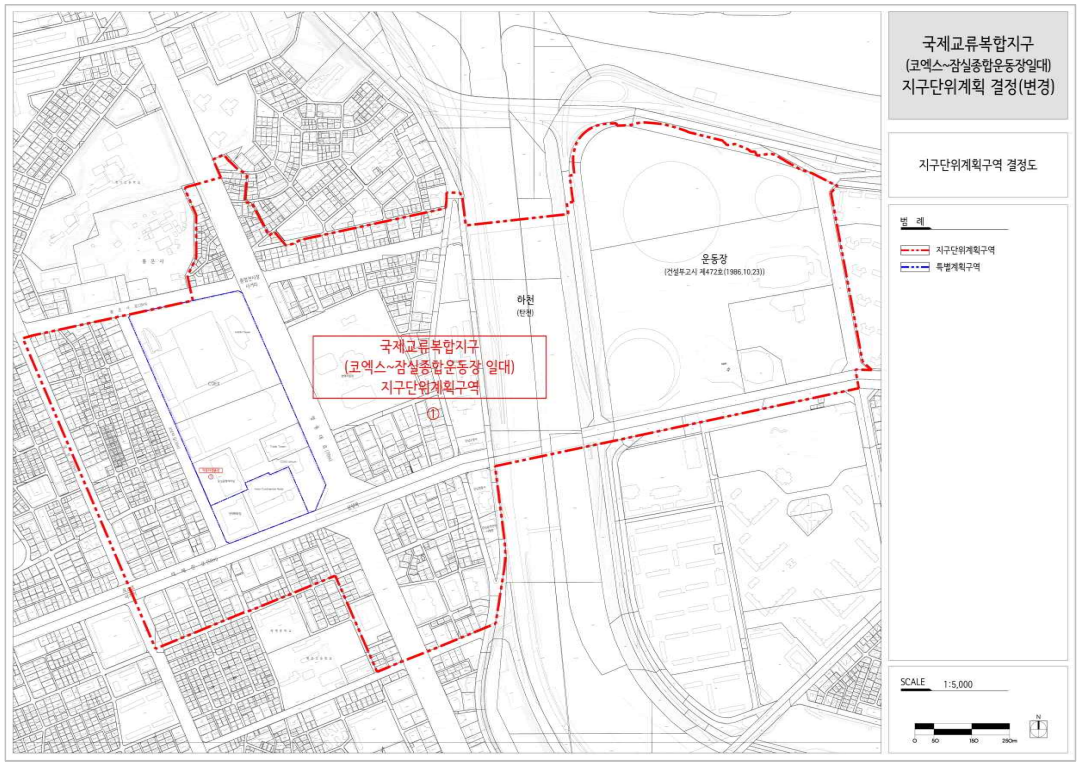
□ 획지②(변경없음)

Ⅳ. 관련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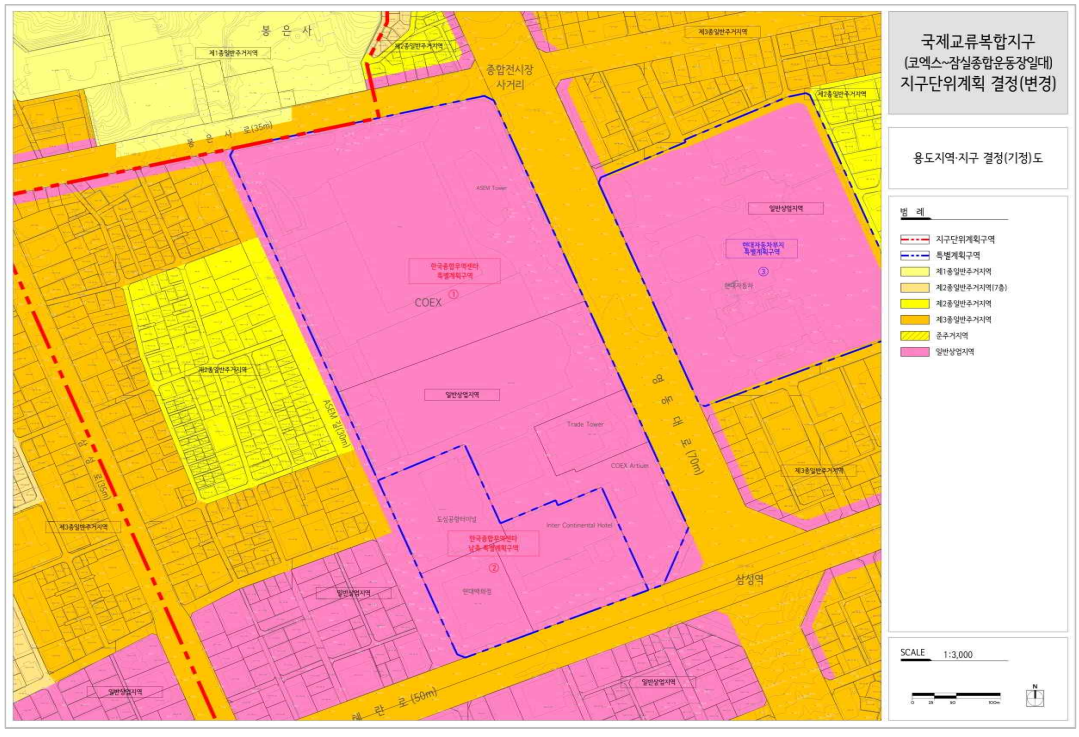
Ⅴ.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02-2133-8254) 및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2)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관련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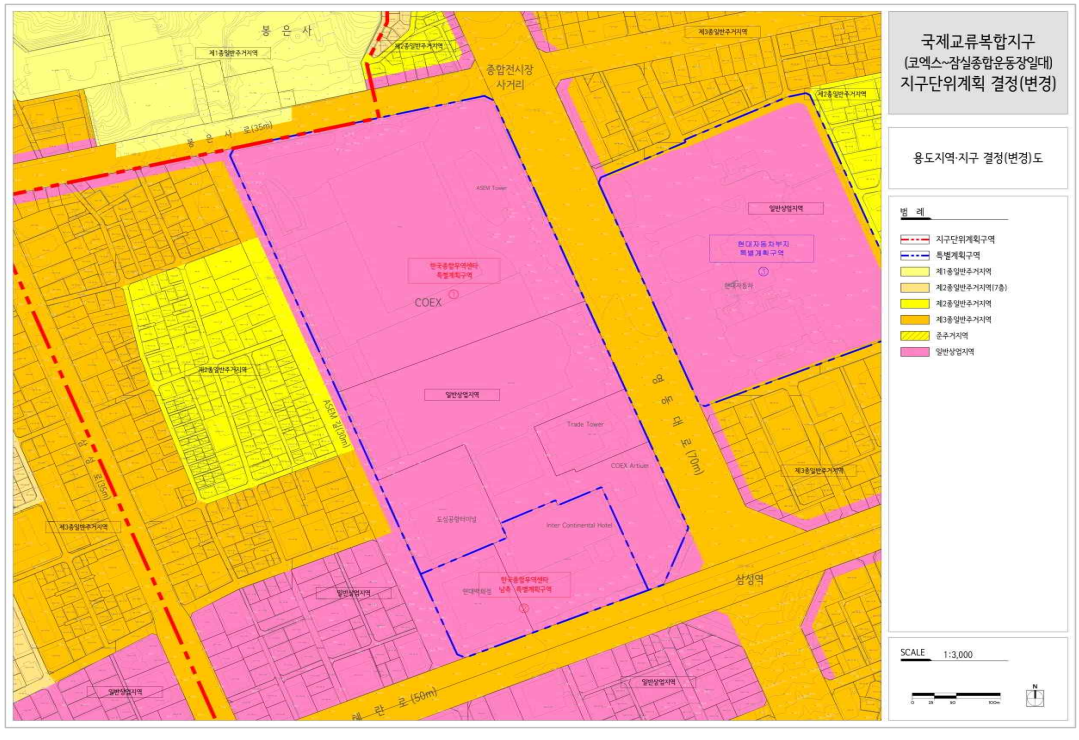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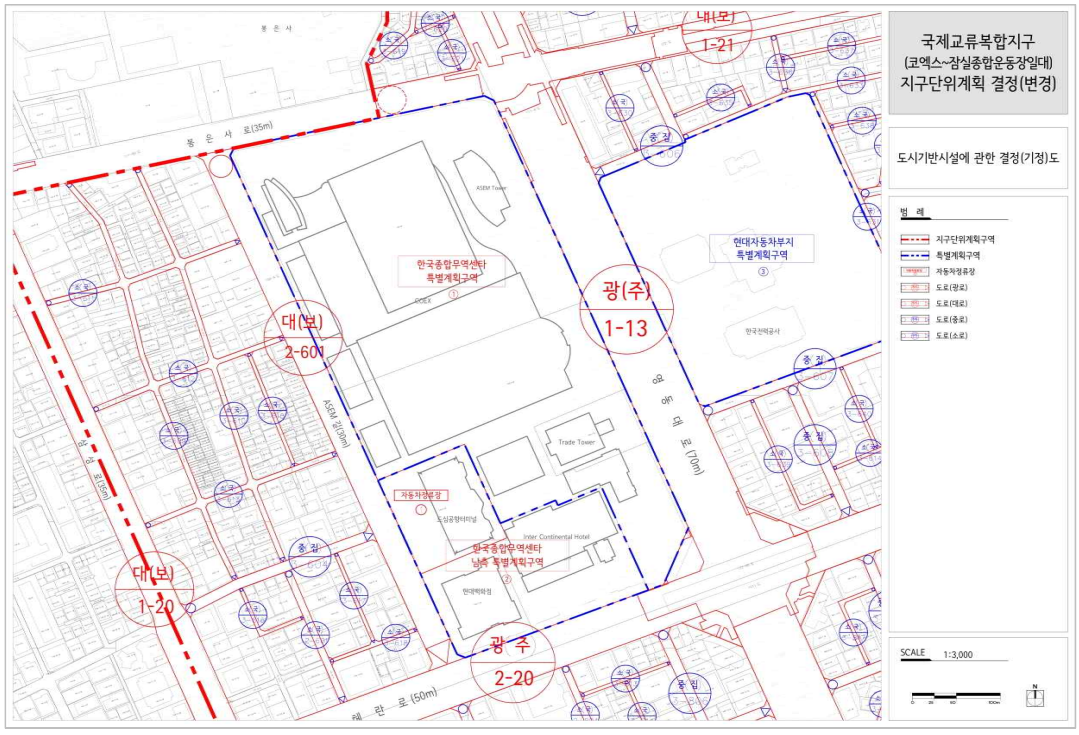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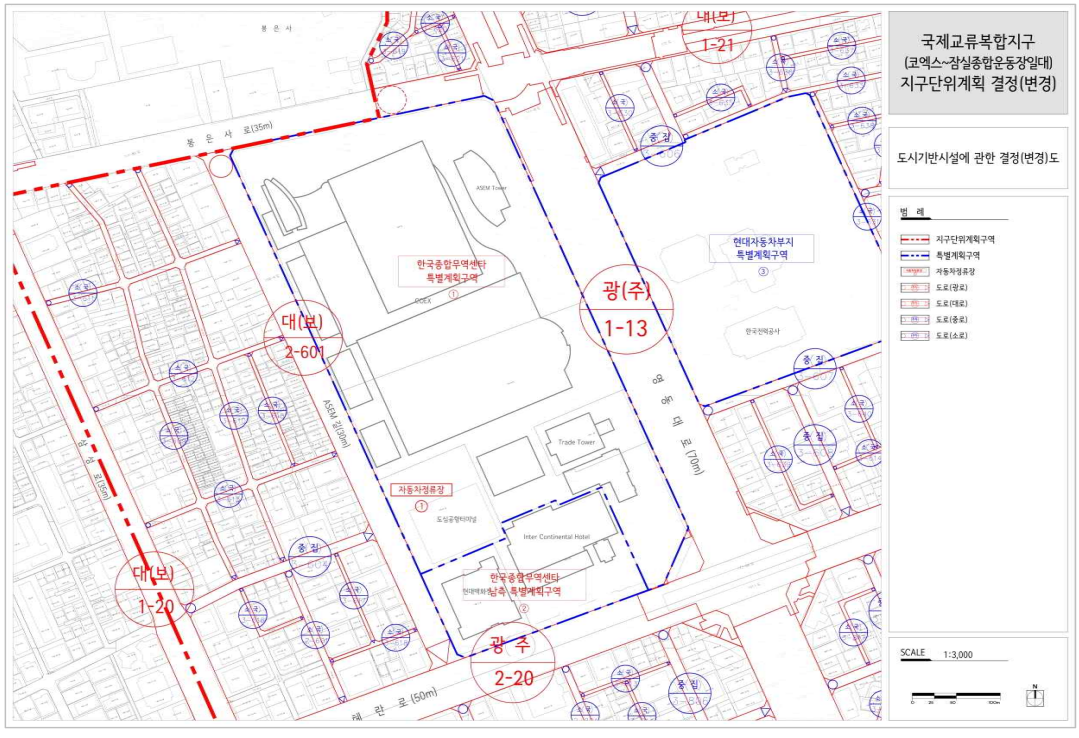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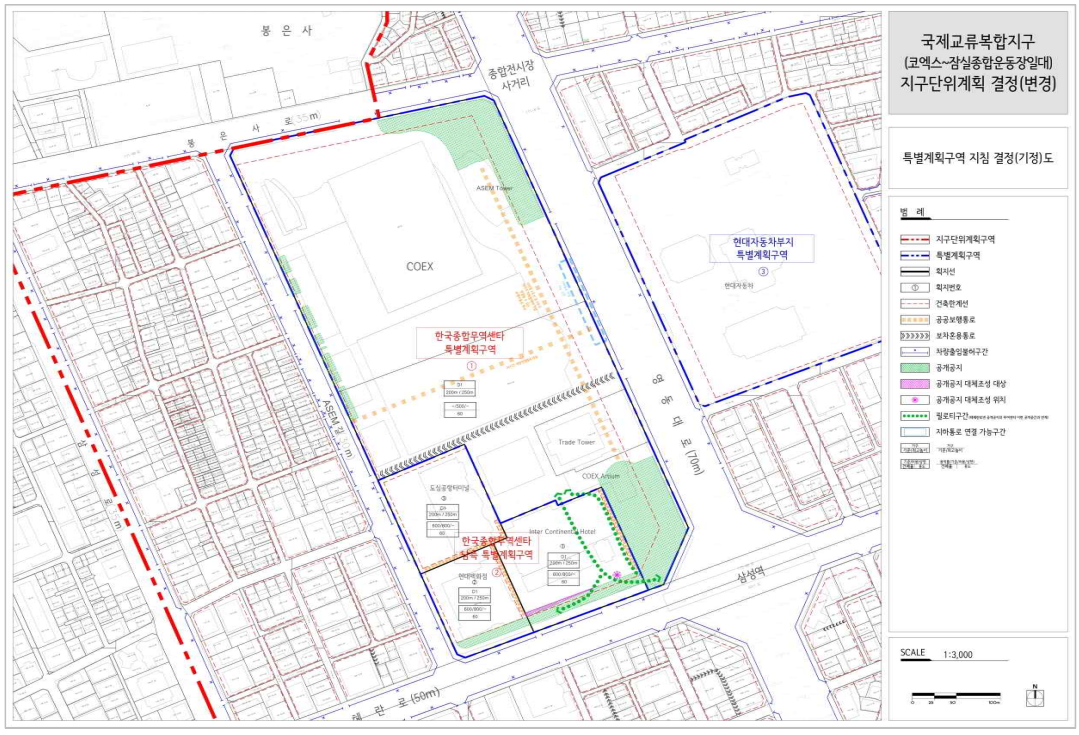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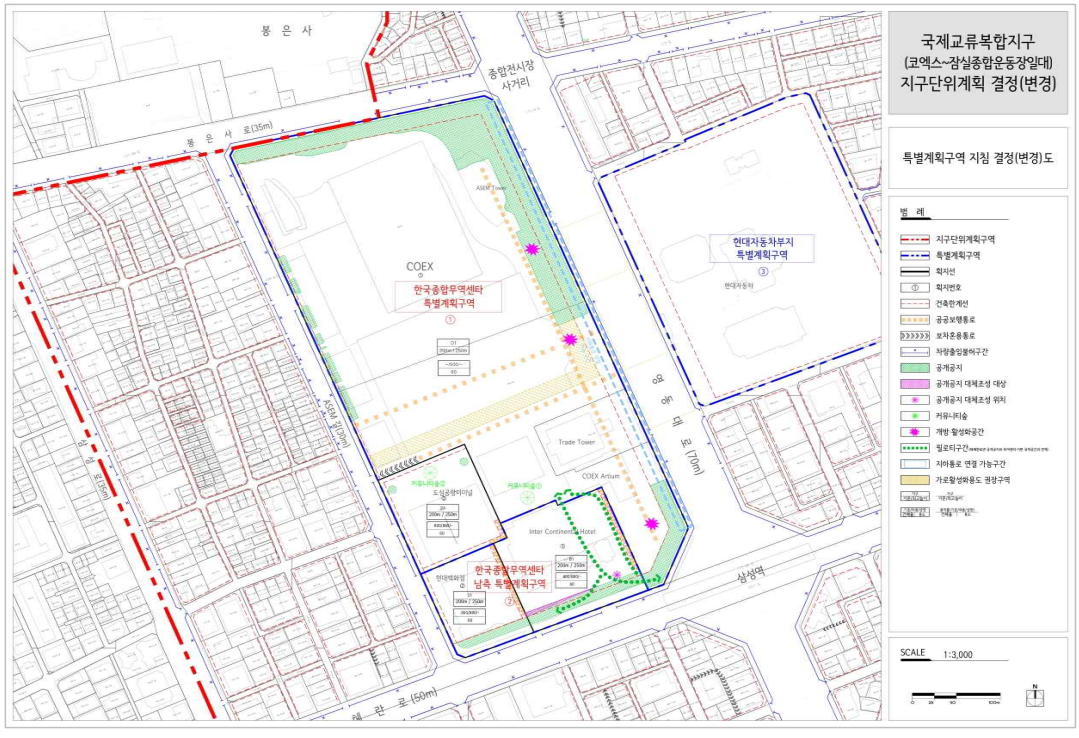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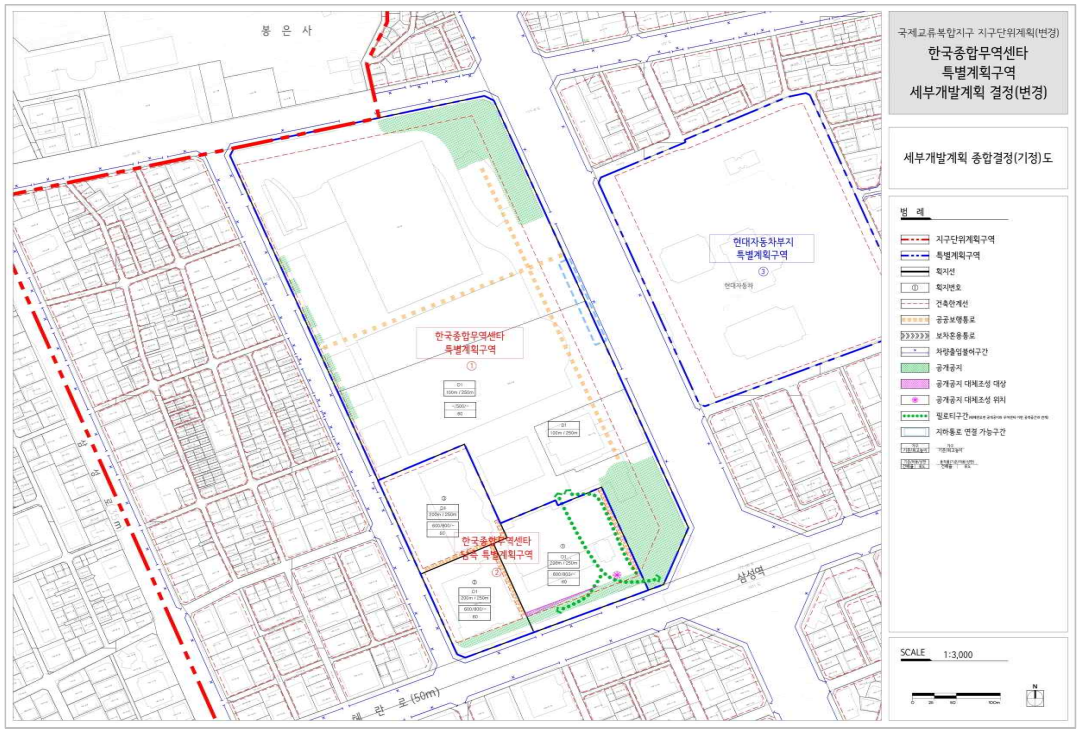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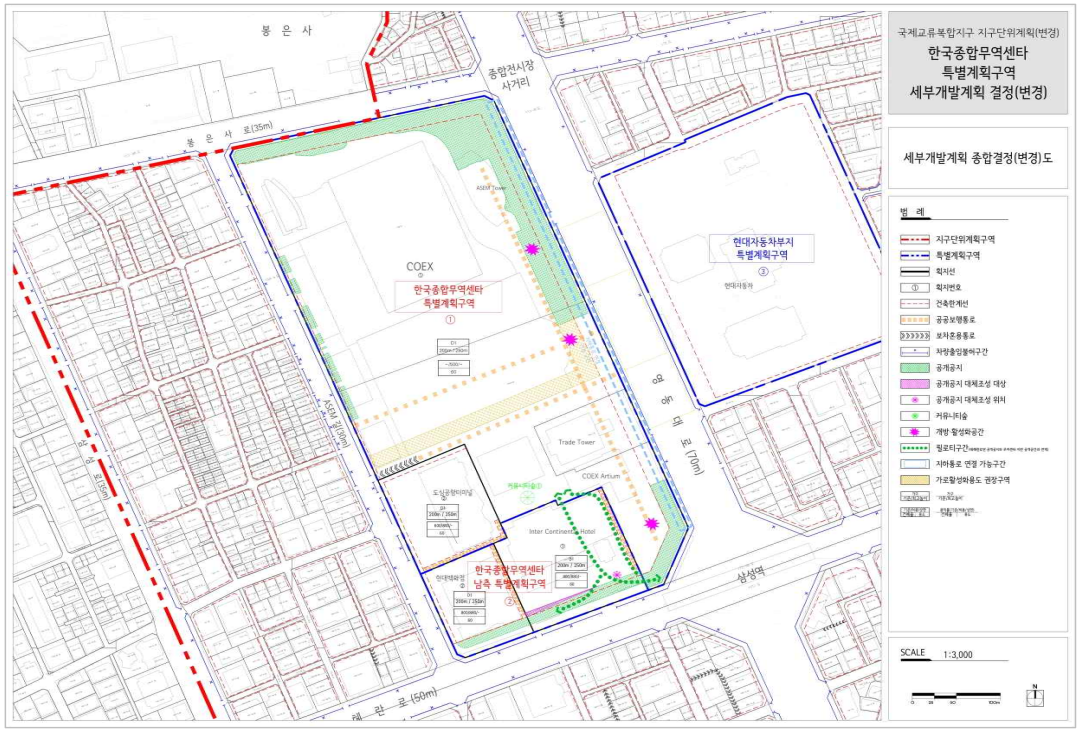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도



□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기정)도



□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0호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 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압구정3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10.01.)"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1. 압구정아파트지구 용도지구(아파트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압구정 아파트지구	강남구 압구정동	836,456.5	-	836,456.5	1976.8.21. (건고 131호)

2.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기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836,456.5	100.0	836,456.5	100.00	-

구분		기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주거용지	소계	703,998.0	84.2	678,983.6	81.2	감) 25,014.4
	주택용지	703,998.0	84.2	678,983.6	81.2	감) 25,014.4
중심시설용지	소계	17,169.0	2.0	3,899.1	0.5	감) 13,269.9
	주구중심	12,264.2	1.4	3,899.1	0.5	감) 8,365.1
	분구중심	4,904.8	0.6	-	-	감) 4,904.8
도시계획시설용지	소계	115,289.5	13.8	152,476.5	18.2	증) 37,187.0
	학교용지	14,135.6	1.7	14,135.6	1.7	-
	공원용지	20,623.9	2.5	41,942.1	5.0	증) 21,318.2
	도로용지	70,039.5	8.4	83,625.5	10.0	증) 13,586.0
	공공청사	480.0	0.1	2,762.8	0.4	증) 2,282.8
	공공공지	1,145.8	0.1	1,145.8	0.1	-
	녹지	4,413.4	0.5	4,413.4	0.5	-
	공공청사·문화시설	4,451.3	0.5	4,451.3	0.5	-
기타	소계	-	-	1,097.3	0.1	증) 1,097.3
	종교용지	-	-	1,097.3	0.1	증) 1,097.3

※ 공원 41,942.1㎡은 2-2주구의 공원·도로 중복면적(19,181.4㎡) 제외 면적임 (중복면적 도로 면적에 산입)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2-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360,187.8	100.0	360,187.8	100.0	-
주거용지	소계	292,517.5	81.2	267,503.1	74.3	감) 25,014.4
	주택용지	292,517.5	81.2	267,503.1	74.3	감) 25,014.4
중심시설용지	소계	13,269.9	3.7	-	-	감) 13,269.9
	주구중심	8,365.1	2.3	-	-	감) 8,365.1
	분구중심	4,904.8	1.4	-	-	감) 4,904.8
도시계획시설용지	소계	54,400.4	15.1	91,587.4	25.4	증) 37,187.0
	학교용지	14,135.6	3.9	14,135.6	3.9	-
	공원용지	5,007.0	1.4	26,325.2	7.3	증) 21,318.2
	도로용지	35,257.8	9.8	48,843.8	13.6	증) 13,586.0
	녹지	-	-	-	-	-
	공공청사	-	-	2,282.8	0.6	증) 2,282.8
기타	소계	-	-	1,097.3	0.3	증) 1,097.3
	종교용지	-	-	1,097.3	0.3	증) 1,097.3

※ 공원 26,325.2㎡은 공원·도로 중복면적(19,181.4㎡) 제외 면적임 (중복면적 도로 면적에 산입)

■ 2-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4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36,456.5	-	836,456.5	100.0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주거지역	소계	835,822.9	-	835,822.9	99.9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12.5	증) 7,253.3	28,265.8	3.4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10.0	감) 29,110.0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40,569.8	감) 26,434.2	14,135.6	1.7	
	제3종일반주거지역	745,130.6	증) 21,233.8	766,364.4	91.6	
	준주거지역	-	증) 27,057.1	27,057.1	3.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33.6	-	633.6	0.1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IC~청담사거리	50,016 (15,479.0)	편측 18	서고 제2019-129호 (2019.04.17.)	

※ ( ) 안은 지구 내 면적임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금회 2-2주구 내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청담동	잠원동	일반도로	-	건고 제503호 (1969.8.27.)	압구정로
변경	대로	2	28	30~45 (38~45)	보조간선 도로	4,300 (368)	청담동	잠원동	일반도로	-	건고 제503호 (1969.8.27.)	
기정	대로	2	63	30~65	주간선 도로	4,100	장충체육관 (중로2-109)	압구정동 (대로2-28)	일반도로	-	건고 제426호 (1978.12.29)	논현로 (동호대교)
변경	대로	2	63	30~65 (50~62)	주간선 도로	4,100 (588)	장충체육관 (중로2-109)	압구정동 (대로2-28)	일반도로	-	건고 제426호 (1978.12.29)	
폐지	중로	1	6	23.5	국지도로	486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B	21	국지도로	196	대로2-28	중로2-A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1	C	20~22	국지도로	117.3	압구정동 481	광로2-18	지하도로	-	서고 제2025-503호 (2023.9.11.)	(압구정4구역)
변경	중로	1	C	20~22 (22)	국지도로	301.3 (140)	압구정동 481	문화공원①	지하도로	-	서고 제2025-503호 (2023.9.11.)	중복결정 : 문화공원①, 중로2-109, 광로2-18
기정	중로	1	136	20~25	주간선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	건고 제198호 (1971.4.7)	올림픽대로
변경	중로	1	136	20~25	주간선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	건고 제198호 (1971.4.7)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문화공원② (덮개공원)
기정	중로	2	289	17.4	주간선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제635호 (1983.11.25)	올림픽대로
변경	중로	2	289	17.4	주간선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제635호 (1983.11.25)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 문화공원② (덮개공원)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도로	4,100 (859)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	서고 제198호 (1971.04.07)	-
변경	중로	2	109	11~35	국지도로	4,227 (986)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	서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문화공원①, 중로1-C, 소로1-A
신설	중로	2	A	18~20	국지도로	740	대로2-63 (논현로)	중로2-109	일반도로	-	-	일부 구간 입체적 결정 (연장 192m / 연장 10m)
신설	중로	2	B	15	국지도로	290	중로1-B	중로2-A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8	16.5	국지도로	420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3	A	12	국지도로	224	대로2-28	중로2-A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폐지	중로	3	5	12~15	국지도로	206	압구정 449	중로1-6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폐지	중로	3	7	12	국지도로	246	중로1-6	중로2-8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소로	1	A	11.5	국지도로	160	압구정동 392일대	압구정동 390일대	지하도로	-	서고 제2025-136호 (2025.03.13.)	(압구정2구역)
변경	소로	1	A	11.5	국지도로	409 (200)	압구정동 392일대	문화공원①	지하도로	-	서고 제2025-136호 (2025.03.13.)	중복결정 : 문화공원①, 중로2-109, 대로2-63
신설	소로	2	A	9	국지도로	45	중로1-B	근린공원①	일반도로	-	-	-

※ 연장 내 ( )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내 수치임
※ 중로1-C, 소로1-A 비고(중복결정) 내용은 압구정3구역 내 중복결정 항목임
※ 지하도로(중로1-C)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4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할 것. (설치비용은 압구정4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 지하도로(소로1-A)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2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할 것. (설치비용은 압구정2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28	대로2-28	•도로 확폭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압구정로) 확폭
대로2-63	대로2-63	•도로 확폭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논현로) 확폭
중로1-6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	중로1-B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1-C	중로1-C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3~4구역) •문화공원①, 중로2-109와 중복결정
중로1-136	중로1-136	•도로 중복결정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문화공원②(덮개공원)와 중복결정
중로2-289	중로2-289	•도로 중복결정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문화공원②(덮개공원)와 중복결정
중로2-109	중로2-109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도로 상부 공원 및 녹지 중복결정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발생교통량 및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도로계획 변경(확폭 및 연장 확대) (문화공원②(덮개공원), 중로1-C, 소로1-A와 중복결정) •획지1에서 문화공원②(덮개공원)으로 직접적인 보행 연결을 위해 도로 상부 공원 및 녹지와 중복결정
-	중로2-A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2-A 구간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획지1 및 획지1~2간 일부 구간 입체적 결정
-	중로2-B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2-8	중로3-A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축소)
중로3-5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중로3-7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소로1-A	소로1-A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2~3구역) •대로2-63, 중로2-109,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	소로2-A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신설	-	중로 2-A	압구정동 456 일대	연장	192m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폭	18m	
				높이	해발 18.5m ~ 27.0m	
				면적	3,525.4㎡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신설	-	중로 2-A	압구정동 456 일대	연장	10m	획지1~2간 지하연결을 위해 도로 입체적 결정
				폭	18m	
				높이	해발 18.5m ~ 27.0m	
				면적	183.0㎡	

※ 입체적 결정 범위 규모(연장, 높이 등)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입체적 결정 도로는 향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강남구청과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 입체적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 2-A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18m / 192m - 높이 : 해발 18.5m ~ 27.0m - 면적 : 3,525.4㎡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1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	중로 2-A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18m / 10m - 높이 : 해발 18.5m ~ 27.0m - 면적 : 183.0㎡	•획지1~2간 지상부는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보행연결 구간으로 조성하고, 지하부는 차량 통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공영주차장	압구정동 369-1	-	증) 3,880.0	3,880.0 (수평투영면적)	-	문화공원① 중복결정

※ 주차장 규모는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공원조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적 : 3,880.0㎡	•문화공원②등 한강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차량이용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주차장을 신설하고, 문화공원①과 중복결정

다)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대		-	-	5,800.0 (2,506.0)	서고287호 (1981.07.30.)	중복결정: 대로2-63, 대로2-30
변경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대		-	-	6,904.0 (3,610.0)	서고287호 (1981.07.30.)	중복결정: 대로2-28, 대로2-30, 대로2-63

※ ( )는 아파트지구 내 면적임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철도	•철도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5,800.0㎡ → 6,904.0㎡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압구정역 1번 출입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철도 선형 및 면적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신설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연장	38.2m	획지2 내 철도 입체적 결정
				폭	7.4m ~ 19.2m	
				높이	해발 17.49m ~ 27.0m	
				면적	633.2㎡	

※ 입체적 결정 범위 규모(연장, 높이 등)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철도	•획지1 내 철도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7.4~19.2m / 38.2m - 높이 : 해발 17.49m ~ 27.0m - 면적 : 633.2㎡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압구정역 1번 출입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획지2 내 포함되는 지하철 출입구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철도 입체적 결정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479 일대	5,696.0	증) 255.4	5,951.4 (256)	-	중복결정: 일반철도①

※ ( )는 아파트지구 내 면적임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녹지	•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5,696㎡ → 5,951.4㎡	•존치시설인 완충녹지에 대하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신설도로 경계부에 따라 완충녹지 선형 조정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문화공원	압구정동 369-1 일대	-	증) 33,411.0	33,411.0	-	중복결정 : 중로2-109 (중복면적 : 19,181.4㎡), 중로1-C, 소로1-A, 중복결정 : 주차장① (중복면적 : 3,880.0㎡)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압구정동 458 일대	-	증) 12,095.6	12,095.6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원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33,411.0㎡	•한강 접근성 향상 및 수변특화를 위해 문화공원 신설하되, 획지1에서 문화공원으로의 직접적인 보행 연결을 위해 도로(중로2-109, 중복면적 : 19,181.4㎡)와 중복결정 •압구정아파트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로1-C, 소로1-A과 중복결정 •덮개공원 등 한강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차량이용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신설하는 주차장①과 중복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2,095.6㎡	•여가·휴식 기능을 위한 학교 및 공공청사변 근린공원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학교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학교	초교	초교·유치원	압구정초교	압구정동 461	압구정동 459 일대	14,135.6	-	14,135.6	서고 (1975.12.08.)	-

※ 이전하는 압구정 초등학교 내 병설 유치원 신설 계획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압구정 초교	•학교 이전 - 압구정동 461 → 압구정동 459 일대 •시설의 세분 : 초교 → 초교·유치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압구정초등학교 이전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 청사	주민센터	압구정동 458 일대	-	증) 2,282.8	2,282.8	-	-

■ 건축범위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압구정동 458 일대	50%	250%	5층 이하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2,282.8㎡	•기존 압구정동 주민센터 및 치안센터의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마. 건축물 규제사항(변경없음)

바. 주구중심의 건축계획(변경없음)

사.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은 관련법 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

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존치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내 기존 주택용지, 중심시설 용지, 개발잔여지 등의 개발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시행

Ⅱ. 압구정3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 재건축 정비구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 재건축 정비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	360,187.8	증) 40,445.4	400,633.2	

※ 정비구역 기정 면적 360,187.8㎡은 압구정 아파트지구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으로 봄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정비사업 명칭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 재건축 정비구역	•면적 변경 - 360,187.8㎡→400,633.2㎡ (증 40,445.4㎡)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a)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61.05% = (21조 1,080억원 - 5조 8,875억원) / 24조 9,304억원) × 100% = 61.05% - 총 수입 추정 : 21조 1,080억 - 총 지출 추정 : 5조 8,875억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24조 9,304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b)

•아파트 종전자산

구분		세대수	세대당 평균 금액(천원)	종전자산 추산액(천원)	비고
1,2차	43	216	5,063,000	1,093,626,000	-
	53	180	7,088,000	1,275,828,000	-
	54	264	6,928,000	1,829,110,000	-
	65	300	8,328,000	2,498,504,000	-
3차	33	432	4,091,000	1,767,524,000	-
4차	44	170	5,989,000	1,018,164,000	-
5차	35	224	4,259,000	954,048,000	-
6,7차	48	560	5,798,000	3,246,702,000	-
	53	420	6,373,000	2,676,504,000	-
	65	252	7,979,000	2,010,816,000	-
	80	56	9,995,000	559,692,000	-
10차	36	96	4,337,000	416,320,000	-
	50	48	6,145,000	294,956,000	-
13차	36A	104	4,660,000	484,680,000	-
	36B	130	4,660,000	599,660,000	-
14차	32	388	4,348,000	1,686,952,000	-
대림아크로빌	81	4	6,467,000	25,868,000	-
	85	52	7,449,000	387,372,000	-
대림빌라트	75	17	5,499,000	93,484,000	-
	93	2	6,602,000	13,204,000	-
현대빌라트	73	17	5,490,000	93,337,000	-
	87	2	6,403,000	12,806,000	-
합 계		3,934	-	23,039,157,000	-

※ 조사시점 최근 공시된 공동주택공시가격(2024.01.01.)을 기준으로 시세보정률 180%를 적용하여 추정함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은 향후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수립시 2개의 감정평가사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확정됨

•상가 종전자산 = 본건 및 인근 상가 실거래가 등을 참작하고, 아파트와의 가격 균형, 층별, 위치별 효용 차이를 반영하여 추정

동	층	호(동)수	층(동)별 종전자산가액 추정(천원)	공급면적당 단가(천원/3.3㎡)
구분상가 각 동	지1	64	294,106,500	93,000 ~ 157,000
	1	86	693,831,500	306,000 ~ 394,000
	2	34	275,603,200	184,000 ~ 248,000
	3층 이상	36	215,916,200	112,000 ~ 179,000
단독건물		4	411,800,000	90,000 ~ 199,000
합계		224	1,891,257,400	-

추정 분담금 산출

•아파트, 상가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③ 추정분담금

=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① 추정 권리가액[추정비례율(a)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b)]

① 추정 권리가액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③ 추정분담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61.05%)	전용 59㎡형	2,040,000천원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84㎡형	2,860,000천원	
	전용 99㎡형	3,350,000천원	
	전용 118㎡형	3,990,000천원	
	전용 134㎡형	4,530,000천원	
	전용 152㎡형	5,130,000천원	
	전용 167㎡형	5,660,000천원	
	전용 187㎡형	6,300,000천원	
	전용 214㎡형	7,240,000천원	
	전용 248㎡형	8,380,000천원	
	전용 187㎡PH형	11,370,000천원	
	전용 214㎡PH형	13,040,000천원	
	전용 248㎡PH형	15,090,000천원	
	상가 전체 일괄	1,332,639,000천원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8,300만원, 일반분양가 공급면적 3.3㎡당 8,500만원으로 추정했으며, 상가 분양가는 3.3㎡당 47,292천원(상가분양수입 1,332,639,000천원 ÷ 상가신축 연면적 93,154.08㎡/0.3025)으로 추정됨

주) 해당 분담금은 추정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400,633.2	100.0	-
정비기반시설(토지)	113,700.9	28.4	-
도로	53,260.2	13.3	중복결정(문화공원) 및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공원	54,489.3	13.6	중복결정(하천, 철도, 도로, 주차장)
녹지	5,951.4	1.5	-
기반시설(토지)	16,418.4	4.1	-
공공청사	2,282.8	0.6	압구정동 주민센터 등 이전
학교	14,135.6	3.5	압구정 초등학교 이전
획지	270,513.9	67.5	-
획지1(3종)	240,446.0	60.0	-
획지2(준주거)	28,970.6	7.2	-
획지3	1,097.3	0.3	압구정 교회 이전

※ 총 공원 면적은 문화공원①(33,411.0㎡)과 도로(중로2-109)의 중복결정 면적(19,181.4㎡) 제외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0,187.8	증) 40,445.4	400,633.2	100.0	-
주거지역	소계	360,187.8	증) 6,452.3	366,640.1	91.5	
	제1종일반주거지역	4,842.3	증) 7,764.2	12,606.5	3.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0,569.8	감) 26,434.2	14,135.6	3.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10.0	감) 29,11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85,665.7	증) 25,261.7	310,927.4	77.6	-
	준주거지역	-	증) 28,970.6	28,970.6	7.2	-
녹지지역	소계	-	증) 33,993.1	33,993.1	8.5	-
	자연녹지지역	-	증) 33,993.1	33,993.1	8.5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변경 - 4,842.3㎡ → 12,606.5㎡	•재건축사업을 위해 이전하는 압구정 초등학교와 근린공원을 제외, 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근린공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압구정 초등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위치 및 면적 변경 - 40,569.8㎡ → 14,135.6㎡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및 면적 변경 - 29,11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및 면적 변경 - 285,665.7㎡ → 310,927.4㎡	
준주거지역	•신설 (28,970.6㎡)	•역세권 활성화 및 복합기능을 고려한 준주거지역 신설(획지2)
자연녹지지역	•구역내 편입	•재건축사업을 통해 한강변 덮개공원 조성을 위한 자연녹지지역 구역 내 편입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아파트지구	-	압구정동	836,456.5	-	건고 제1976-131호 (1976.08.21.)	압구정지구
기정	②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IC~청담사거리	50,016.0	편측 18	서고 제2019-129호 (2019.4.17.)	압구정로

다.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18	40	주간선도로	6,500 (184)	압구정동	포이동	일반도로	-	건고 제46호 (1976.4.7.)	언주로(성수대교) 중복결정: (3구역,4구역) 중로1-C, 중로2-109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도로	4,300	청담동	잠원동	일반도로	-	건고 제503호 (1969.8.27.)	압구정로
변경	대로	2	28	30~45 (38~45)	보조간선도로	4,300 (368)	청담동	잠원동	일반도로	-	건고 제503호 (1969.8.27.)	
기정	대로	2	63	30~65	주간선도로	4,100	장충체육관(중로2-109)	압구정동(대로2-28)	일반도로	-	건고 제426호 (1978.12.29)	논현로(동호대교)
변경	대로	2	63	30~65 (50~62)	주간선도로	4,100 (588)	장충체육관(중로2-109)	압구정동(대로2-28)	일반도로	-	건고 제426호 (1978.12.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1	6	23.5	국지도로	486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신설	중로	1	B	21	국지도로	196	대로2-28	중로2-A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1	C	20~22	국지도로	117.3	압구정동 481	광로2-18	지하도로	-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4구역)
변경	중로	1	C	20~22 (22)	국지도로	301.3 (184)	문화공원①	중로2-109	지하도로	-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중복결정 : 문화공원①, 중로 2-109, 광로 2-18
기정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	건고 제198호 (1971.4.7)	올림픽대로
변경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	건고 제198호 (1971.4.7)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 문화공원② (덮개공원)
기정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제635호 (1983.11.25)	올림픽대로
변경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제635호 (1983.11.25)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 문화공원② (덮개공원)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도로	4,100 (859)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	서고 제198호 (1971.04.07)	-
변경	중로	2	109	11~35	국지도로	4,227 (986)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	서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문화공원①, 중로1-C, 소로1-A
신설	중로	2	A	18~20	국지도로	740	대로2-63 (논현로)	중로 2-109	일반도로	-	-	일부 구간 입체적 결정 (연장 192m / 연장 10m)
신설	중로	2	B	15	국지도로	290	중로1-B	중로2-A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8	16.5	국지도로	420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3	A	12	국지도로	224	대로2-28	중로2-A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폐지	중로	3	5	12~15	국지도로	206	압구정 449	중로1-6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폐지	중로	3	7	12	국지도로	246	중로1-6	중로2-8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소로	1	A	11.5	국지도로	160	압구정동 392 일대	압구정동 390 일대	지하도로	-	서고 제2025-136호 (2025.03.13.)	(2구역)
변경	소로	1	A	11.5	국지도로	409 (249)	압구정동 392 일대	문화공원①	지하도로	-	서고 제2025-136호 (2025.03.13.)	중복결정 : 문화공원①, 중로2-109, 대로2-6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A	9	국지도로	45	중로1-B	근린공원①	일반도로	-	-	-

※ 연장 내 ( )는 압구정3구역 정비구역 내 수치임
※ 중로1-C, 소로1-A 비고(중복결정) 내용은 압구정3구역 내 중복결정 항목임
※ 지하도로(중로1-C)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4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할 것. (설치비용은 압구정4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 지하도로(소로1-A)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2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할 것. (설치비용은 압구정2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28	대로2-28	•도로 확폭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압구정로) 확폭
대로2-63	대로2-63	•도로 확폭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논현로) 확폭
중로1-6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	중로1-B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1-C	중로1-C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3~4구역) •문화공원①, 중로2-109와 중복결정
중로1-136	중로1-136	•도로 중복결정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문화공원②(덮개공원)와 중복결정
중로2-289	중로2-289	•도로 중복결정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문화공원②(덮개공원)와 중복결정
중로2-109	중로2-109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도로 상부 공원 및 녹지 중복결정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발생교통량 및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도로계획 변경(확폭 및 연장 확대) (문화공원②(덮개공원), 중로1-C, 소로1-A와 중복결정) •획지1에서 문화공원②(덮개공원)으로 직접적인 보행연결을 위해 도로 상부 공원 및 녹지와 중복결정
-	중로2-A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2-A 구간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획지1 및 획지1~2간 일부 구간 입체적 결정
-	중로2-B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2-8	중로3-A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축소)
중로3-5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중로3-7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소로1-A	소로1-A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신설(압구정2~3구역) •대로2-63, 중로2-109,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	소로2-A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신설	-	중로 2-A	압구정동 456 일대	연장	192m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폭	18m	
				높이	해발 18.5m ~ 27.0m	
				면적	3,525.4㎡	
신설	-	중로 2-A	압구정동 456 일대	연장	10m	획지1~2간 지하연결을 위해 도로 입체적 결정
				폭	18m	
				높이	해발 18.5m ~ 27.0m	
				면적	183.0㎡	

※ 입체적 결정 범위 규모(연장, 높이 등)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입체적 결정 도로는 향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강남구청과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 2-A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18m / 192m - 높이 : 해발 18.5m ~ 27.0m - 면적 : 3,525.4㎡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1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	중로 2-A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18m / 10m - 높이 : 해발 18.5m ~ 27.0m - 면적 : 183.0㎡	•획지1~2간 지상부는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보행연결 구간으로 조성하고, 지하부는 차량통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공영주차장	압구정동 369-1	-	증) 3,880.0	3,880.0 (수평투영면적)	-	문화공원① 중복결정

※ 주차장 규모는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공원조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적 : 3,880.0㎡	•문화공원②등 한강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차량이용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주차장을 신설하고, 문화공원①과 중복결정

다)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대			-	5,800.0 (2,506.0)	서고287호 (1981.07.30.)	중복결정 : 대로2-63, 대로2-30
변경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대			-	6,904.0 (3,610.0)	서고287호 (1981.07.30.)	중복결정: 대로2-28, 대로2-30, 대로2-63
기정	①	철도	일반철도 (GTX A호선)	은평구 갈현동 산131-1	강남구 삼성동 111-8	연신내역 서울역	20,515	320,453.6	국토부고시 제2018-932호 (2018.12.31.)	중복결정:완충녹지② (환기구)

※ ( )는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구역 내 일반철도①(GTX A호선, 환기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과 관계 없음 (완충녹지와 함께 존치시설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철도	•철도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5,800.0㎡ → 6,904.0㎡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압구정역 1번 출입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철도 선형 및 면적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신설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연장	38.2m	획지2 내 철도 입체적 결정
				폭	7.4m ~ 19.2m	
				높이	해발 17.49m ~ 27.0m	
				면적	633.2㎡	

※ 입체적 결정 범위 규모(연장, 높이 등)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철도	•획지2 내 철도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7.4~19.2m / 38.2m - 높이 : 해발 17.49m ~ 27.0m - 면적 : 633.2㎡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압구정역 1번 출입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획지2 내 포함되는 지하철 출입구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철도 입체적 결정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479 일대	5,696.0	증) 255.4	5,951.4	-	중복결정: 일반철도①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녹지	•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5,696㎡ → 5,951.4㎡	•존치시설인 완충녹지에 대하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신설도로 경계부를 따라 완충녹지 선형 조정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문화공원	압구정동 369-1 일대	-	증) 33,411.0	33,411.0	-	중복결정 : 중로2-109 (중복면적 : 19,181.4㎡), 중로1-C, 소로1-A, 중복결정 : 주차장① (중복면적 : 3,880㎡)
신설	②	공원	문화공원	압구정동 372-2	-	증) 28,164.1	28,164.1	-	(덮개공원)중복결정 : 중로1-136, 중로2-289, 방재시설(하천)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압구정동 458 일대	-	증) 12,095.6	12,095.6	-	-

※ 문화공원②(덮개공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예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원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33,411.0㎡	•한강 접근성 향상 및 수변특화를 위해 문화공원 신설하되, 획지1에서 문화공원으로의 보행 직접연결을 위해 도로(중로2-109, 중복면적 : 19,181.4㎡)와 중복결정 •압구정아파트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로1-C, 소로1-A과 중복결정 •덮개공원 등 한강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차량이용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신설하는 주차장①과 중복결정
②	공원	•문화공원(덮개공원) 신설 - 면적 28,164.1㎡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신설 (올림픽대로 중로1-136, 중로 2-289, 방재시설(하천)과 중복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2,095.6㎡	•여가·휴식 기능을 위한 학교 및 공공청사변 근린공원 신설

3) 공간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학교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학교	초교	초교·유치원	압구정초교	압구정동 461	압구정동 459 일대	14,135.6	-	14,135.6	서고 (1975.12.08.)	-

※ 이전하는 압구정 초등학교 내 병설 유치원 신설 계획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압구정초교	•학교 이전 - 압구정동 461 → 압구정동 459 일대 •시설의 세분 : 초교 → 초교·유치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압구정초등학교 이전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압구정동 458 일대	-	증) 2,282.8	2,282.8	-	-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압구정동 458 일대	50%	250%	5층 이하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2,282.8㎡	•기존 압구정동 주민센터 및 치안센터의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4) 방재시설

가) 하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하천	국가하천	경기도 김포군 시계	경기도 하남시 시계	-	40,747,864 (28,164.1)	-	중복결정:문화공원② (덮개공원)

※ ( )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구역 내 수치임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기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관리사무소	획지1	227.10	-	증) 467.76	467.76	지상
	근린생활시설	〃	-	-	증) 17,045.00	17,045.00	지하
	소 계	〃	12,997.60	-	증) 39,431.46	39,431.46	서울시 기준대비 약 303%
	경로당	〃	1,203.4	-	증) 1,853.97	1,853.97	지상, 개방
	어린이놀이터	〃	3,574.4	-	증) 3,601.70	3,601.70	옥외
	어린이집	〃	1,203.4	-	증) 1,249.49	1,249.49	지상, 개방
	작은도서관	〃	537.2	-	증) 618.66	618.66	지상, 개방
	게스트하우스, 압구정갤러리	〃	-	-	증) 330.00	330.00	지상
	다함께돌봄센터 (개방형커뮤니티)	〃	66.00	-	증) 2,939.30	2,939.30	지상, 개방
	개방형 커뮤니티	〃	-	-	증) 7,922.69	7,922.69	지상, 지하, 개방
	주민공동시설1	〃	-	-	증) 3,840.65	3,840.65	지하
	주민공동시설2	〃	-	-	증) 4,585.55	4,585.55	지하
	주민공동시설3	〃	-	-	증) 2,694.45	2,694.45	지하
	주민공동시설4	〃	-	-	증) 7,365.00	7,365.00	지하
	주민공동시설5	〃	-	-	증) 2,430.00	2,430.00	지하

※ 개방형 커뮤니티 : 수변커뮤니티,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보차혼용통로커뮤니티, 웰컴센터

※ 주민공동시설1 : 시니어라운지, 체력증진실, 기초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체형측정실, 건강체크실, 정원, 스마트팜

※ 주민공동시설2 : 연회장, VR스포츠(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스포츠클리닉, 컨벤션, 이벤트라운지

※ 주민공동시설3 : 동호회실, 공방, 라이브센터(유튜브), 공동회의실, 취미실, 개인스튜디오, 음악연습실

※ 주민공동시설4 : 수영장, 체육관,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 주민공동시설5 : 어린이공연장, 소공연장, 실내놀이터, 취미실, 모형실, 키즈카페

2) 획지2(준주거지역)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기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관리사무소	획지2	46.65	-	증) 250.09	250.09	지상
	판매시설	〃	-	-	증) 48,759.14	48,759.14	지상, 지하
	소 계	〃	2,740.50	-	증) 7,270.56	7,270.56	서울시 기준대비 약 265%
	경로당	〃	330.00	-	증) 359.85	359.85	지상, 개방
	어린이놀이터	〃	983.00	-	증) 1,049.58	1,049.58	옥외
	어린이집	〃	330.00	-	증) 411.24	411.24	지상, 개방
	작은도서관	〃	158.00	-	증) 270.46	270.46	지상, 개방
	다함께돌봄센터 (개방형 커뮤니티)	〃	66.00	-	증) 702.10	702.10	지상, 개방
	개방형 커뮤니티	〃	-	-	증) 921.01	921.01	지상
	주민공동시설1	〃	-	-	증) 765.00	765.00	지상
	주민공동시설2	〃	-	-	증) 2,791.32	2,791.32	지하

※ 주민공동시설1 : 올데이다이닝, 카페
※ 주민공동시설2 : 피트니스, 실내골프, 사우나, 컨시어지센터, 커뮤니티실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 재건축 정비구역	400,633.2	획지1	240,446.0	압구정동 369-1 일대	74	-	-	74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획지2	28,970.6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획지3	1,097.3							종교시설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율(%)</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정비계획</th><th>법적상한</th></tr>
<tr><td rowspan="3">신설</td><td rowspan="3">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
구역 3
재건축
정비구역</td><td rowspan="3">400,633.2</td><td>획지1
(제3종)</td><td>240,446.0</td><td>압구정동
369-1
일대</td><td>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td><td>50%
이하</td><td>269.8%
이하</td><td>300.0%
이하</td><td rowspan="2">250m 이하</td></tr>
<tr><td>획지2
(준주거)</td><td>28,970.6</td><td>압구정동
450
일대</td><td>공동주택 및
판매시설</td><td>60%
이하</td><td>300.4%
이하</td><td>436.9%
이하</td></tr>
<tr><td>획지3</td><td>1,097.3</td><td>압구정동
458</td><td>종교시설</td><td colspan="4">관계 법령에 따름</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7">•총 세대수 : 5,175세대 (분양 4,534세대 / 임대 641세대)
•건립규모 및 비율
<table><tr><th>구분</th><th>계</th><th>분양</th><th>임대</th></tr><tr><td>합계</td><td>5,175 (100.0%)</td><td>4,534 (87.6%)</td><td>641 (12.4%)</td></tr><tr><td>60㎡ 이하</td><td>1,033 (20.0%)</td><td>522</td><td>511</td></tr><tr><td>60㎡ 초과 ~ 85㎡ 이하</td><td>616 (11.9%)</td><td>486</td><td>130</td></tr><tr><td>85㎡ 초과</td><td>3,526 (68.1%)</td><td>3,526</td><td>-</td></tr></table>•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31.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 제2항 적용)</td></tr>
<tr><td colspan="3">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7">•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획지1(제3종)] : 법적상한용적률 300.0% 이하
- [획지2(준주거)] : 법적상한용적률 436.9% 이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동거리 등 완화 적용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7">•남북간도로 연계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계획 (폭원 21~25m, 구분지상권 설정)
•한강으로의 보행 접근성, 가로활성화를 고려해 가로별 건축한계선 계획
- 서측 논현로(광역통경축) : 10m 이상 확보
- 동측 언주로(광역통경축) : 10m 이상 확보
- 기타 : 6m 이상 확보</td></tr>
<tr><td colspan="3">기타사항</td><td colspan="7">•한강변 개방된 시야 확보를 위한 통경축 계획 (2개소)
- 압구정역~대상지 중앙~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보행통경축 확보 : 폭원 30m
- 압구정로에서 대상지 중앙 남북관통도로 선형을 따라 보행통경축 확보 : 폭원 30m
•차량출입불허구간 : 압구정로, 논현로 등 간선부에서 직접 진출입 불허
(※추후 학교 기본설계 시 출입구 계획에 따라 압구정 초등학교변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가능)</td></tr>
</table>

※ 랜드마크타워는 최고높이 250m 이하, 65층 2개동으로 계획하고, 그 외 동은 50층이하, 200m 이하로 계획(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로 계획)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 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산정내용</th></tr>
<tr><td colspan="2"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계
(㎡)</td><td>대지면적
(㎡)</td><td>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소계</td><td>토지
(A)</td><td>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B)</td><td>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td><td>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400,633.2</td><td>240,446.0</td><td>80,964.5</td><td>75,575.2</td><td>5,389.3</td><td>18,811.0</td><td>19,469.3</td></tr>
<tr><td rowspan="5">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td><td colspan="2">소계(A1+B)</td><td colspan="6">•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A+B)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총 순부담) 80,964.5㎡ - 18,811.0㎡ - 19,469.3㎡ = 42,684.2㎡ (14.0%)
⇒ (용적률산정용 순부담) 42,684.2㎡ - 1,245.0㎡ = 41,439.2㎡ (13.6%)
※ 용적률 산정 시 주거용도 전환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1,245.0㎡은 토지면적에서 제외</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
토지면적
(A1)</td><td colspan="6">•공공시설 토지면적 합계 : 74,330.2㎡ (A1)
•주거용도 전환 의무 공공기여 1,245.0㎡ 제외
<table>
<tr><th>구분</th><th>토지 제공면적(①)</th><th>제외되는 면적(준주거 적용)(②)</th><th>산정값(①-②)</th><th>공공시설 토지제공(A1)</th></tr>
<tr><td>합계</td><td>86,781.5㎡</td><td>11,206.3㎡</td><td>75,575.2㎡</td><td rowspan="5">74,330.2㎡
(주거용도 전환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1,245.0㎡
제외)</td></tr>
<tr><td>도로</td><td>52,222.1㎡</td><td>11,206.3㎡</td><td>41,015.8㎡</td></tr>
<tr><td>공원</td><td>26,325.2㎡</td><td>-</td><td>26,325.2㎡</td></tr>
<tr><td>완충녹지</td><td>5,951.4㎡</td><td>-</td><td>5,951.4㎡</td></tr>
<tr><td>공공청사</td><td>2,282.8㎡</td><td>-</td><td>2,282.8㎡</td></tr>
</table></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B)</td><td colspan="6">•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합계 : 5,389.3㎡ (B)
- 건축물 총 제공면적(6,099.0㎡) - 준주거 순부담 적용면적(709.7㎡) = 5,389.3㎡</td></tr>
<tr><td>공공청사</td><td colspan="6">① 공공청사 환산부지 면적(별도부지)
= 공공건축물 공사비(원/㎡) × 공공청사 연면적(㎡) ÷ 부지가액(원/㎡)
= 3,612,727.3원/㎡ × 3,424.2㎡ ÷ 44,554,109.2원/㎡ = 277.7㎡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r><td>①</td><td>공시지가</td><td>22,277,054.6원/㎡</td><td>2023년 사유지 공시지가 평균</td></tr>
<tr><td>②</td><td>공공건축물 공사비</td><td>3,612,727.3원/㎡</td><td>2024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동청사) 적용(※ 부가세 제외)</td></tr>
<tr><td>③</td><td>건축물 연면적</td><td>3,424.2㎡</td><td>계약연면적</td></tr>
<tr><td>④</td><td>설치비용</td><td>12,370,700,820.7원</td><td>② X ③</td></tr>
<tr><td>⑤</td><td>부지가액</td><td>44,554,109.2원/㎡</td><td>공시지가의 2배 적용</td></tr>
<tr><td colspan="2">건축물 환산면적</td><td>277.7㎡</td><td>④ / ⑤</td></tr>
</table></td></tr>
<tr><td>덮개공원</td><td colspan="6">② 덮개공원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 × 덮개공원 연면적(㎡) ÷ 부지가액(원/㎡)
= 9,966,000.0원/㎡ × 20,000.0㎡ ÷ 44,554,109.2원 = 4,473.6㎡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r><td>①</td><td>공시지가</td><td>22,277,054.6원/㎡</td><td>2023년 사유지 공시지가 평균</td></tr>
<tr><td>②</td><td>표준건축비</td><td>9,966,000.0원/㎡</td><td>한강사업본부 시설부, “망원초록길 조성” 사업비 적용</td></tr>
<tr><td>③</td><td>건축물 연면적</td><td>20,000.0㎡</td><td>수평투영면적</td></tr>
<tr><td>④</td><td>설치비용</td><td>199,320,000,000.0원</td><td>② X ③</td></tr>
<tr><td>⑤</td><td>부지가액</td><td>44,554,109.2원/㎡</td><td>공시지가의 2배 적용</td></tr>
<tr><td colspan="2">건축물 환산면적</td><td>4,473.6㎡</td><td>④ / ⑤</td></tr>
</table></td></tr>
<tr><td>덮개공원
주차장</td><td colspan="6">③ 덮개공원 주차장 환산부지 면적
= 공공건축물 공사비(원/㎡) × 공공청사·문화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3,612,727.3원/㎡ × 3,880.0㎡ ÷ 44,554,109.2원/㎡ = 228.8㎡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r><td>①</td><td>공시지가</td><td>22,277,054.6원/㎡</td><td>2023년 사유지 공시지가 평균</td></tr>
<tr><td>②</td><td>공공건축물 공사비</td><td>2,627,272.7원/㎡</td><td>2024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공영주차장) 적용(※ 부가세 제외)</td></tr>
<tr><td>③</td><td>건축물 연면적</td><td>3,880.0㎡</td><td>수평투영면적</td></tr>
<tr><td>④</td><td>설치비용</td><td>10,193,818,076.0원</td><td>② X ③</td></tr>
<tr><td>⑤</td><td>부지가액</td><td>44,554,109.2원/㎡</td><td>공시지가의 2배 적용</td></tr>
<tr><td colspan="2">건축물 환산면적</td><td>228.8㎡</td><td>④ / ⑤</td></tr>
</table></td></tr>
<tr><td>지하차도</td><td colspan="6">④ 지하차도 환산부지 면적
= [('18년 교통영향평가 동호대교 남단 지하차도(2~3구역) 조성 금액(434억) ÷ 2)
+ ('18년 교통영향평가 성수대교 남단 지하차도(3~4구역) 조성 금액(563억) ÷ 2)] ÷ 부지가액(원/㎡)
= (21,700,000,000원 + 28,150,000,000원) ÷ 44,554,109.2원 = 1,118.9㎡</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산정내용</th></tr>
<tr><td>기준(허용)
용적률</td><td>•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 = 224.5% (허용용적률 20%에 상응하는 계획유도 포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인센티브</th><th>적용</th></tr>
<tr><td>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및 입체결정한 도로 포함)</td><td>•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등 설정)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a=1 이하)
*지역권 : 통행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td><td>10%p 이내</td><td>입체적 결정도로
·보차혼용통로
(*적용 10.0%)</td></tr>
<tr><td>열린단지</td><td>•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td><td>5%p</td><td>담장 미설치,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등
(*적용 5.0%)</td></tr>
<tr><td>돌봄시설</td><td>•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허용)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a (※a=0.1 이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td><td>5%p이내</td><td>(다함께돌봄센터)
(*적용 2.0%)</td></tr>
<tr><td>층간소음 해소</td><td>•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제26조 및 제27조 결과에 따른 등급 요구</td><td>5%p이내</td><td>2등급
(*적용 3.0%)</td></tr>
<tr><td colspan="3">합계 (20% 이하)</td><td>20.0%</td></tr>
</table></td></tr>
<tr><td>정비계획
(상한)
용적률</td><td>•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224.5% × (1 + 1.3 × 0.9566 × 0.1499 + 0.7 × 0.0224) = 269.8%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214.76% / 224.5% = 0.9566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36,049.9㎡ / 240,446.0㎡ = 0.1499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5,389.3㎡ /240,446.0㎡ = 0.0224</td></tr>
<tr><td>법적
상한용적률</td><td>•법적상한용적률 = 300.0% 이하 (건축계획 299.99%)</td></tr>
</table>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 획지2(준주거지역)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6">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계
(㎡)</td><td rowspan="2">대지면적
(㎡)</td><td colspan="3">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td><td rowspan="2">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td></tr>
<tr><td>소계</td><td>토지
(A)</td><td>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B)</td></tr>
<tr><td></td><td>400,633.2</td><td>28,970.6</td><td>11,916.0</td><td>11,206.3</td><td>709.7</td><td>-</td><td>5,284.9</td></tr>
<tr><td rowspan="3">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td><td>소계(A+B)</td><td colspan="6">•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A+B)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순부담) 11,916.0㎡ - 5,284.9㎡ = 6,631.1㎡ (28.0%)</td></tr>
<tr><td>공공시설
토지면적(A)</td><td colspan="6">•공공시설 토지면적 합계 : 11,206.3㎡ (A)
- (도로) = 11,206.3㎡</td></tr>
<tr><td>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B)</td><td colspan="6">•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합계 : 709.7㎡ (B)
- 건축물 총 제공면적(6,099.0㎡) - 제3종 순부담 적용면적(5,389.3㎡) = 709.7㎡
•건축물 총 환산면적 세부내역 = 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td></tr>
</table>

<table>
<tr><td>기준(허용)
용적률</td><td>•획지2(준주거지역) = 230.0% (허용용적률 20%에 상응하는 계획유도 포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인센티브</th><th>적용</th></tr>
<tr><td>열린단지</td><td>•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td><td>5%p</td><td>담장 미설치,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등
(*적용 5.0%)</td></tr>
<tr><td>BF인증</td><td>•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td><td>5%p이내</td><td>우수등급
(*적용 4.0%)</td></tr>
<tr><td>돌봄시설</td><td>•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허용)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a
(※a=0.1 이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td><td>5%p이내</td><td>(다함께돌봄센터)
(*적용 5.0%)</td></tr>
<tr><td>층간소음 해소</td><td>•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6조 및 제27조 결과에 따른 등급 요구</td><td>5%p이내</td><td>2등급
(*적용 3.0%)</td></tr>
<tr><td>방재안전</td><td>•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 안전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td><td>5%p이내</td><td>적용
(3.0%)</td></tr>
<tr><td colspan="3">합계 (20% 이하)</td><td>20.0%</td></tr>
</table></td></tr>
<tr><td>정비계획
(상한)
용적률</td><td>① 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230.0% × (1 + 1.3 × 1 × 0.2044 + 0.7 × 0.0245) = 295.05%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230%/230% = 1
※ α(토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1,206.3㎡−5,284.9㎡)/28,970.6㎡ = 0.2044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부지(건축물환산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709.7㎡/28,970.6㎡ = 0.0245

② 지하철출입구 대지 내 설치에 따른 상한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제2항)
= 기준용적률 x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 230% x (677.6㎡ / 28,970.6㎡) = 5.37%
※ 추후 실시계획인가 시 공사비 내역 검증을 통해, 정비구역 외 설치구간에 대한 공사비(환산면적)는 상한용적률 반영 검토

•상한용적률 소계(①+②) = 295.05% + 5.37% = 300.4%</td></tr>
<tr><td>법적
상한용적률</td><td>•법적상한용적률 = 436.9% 이하 (건축계획 436.89%)</td></tr>
</table>

사.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table>
<tr><th>구 분</th><th>지점</th><th>개 선 방 안</th></tr>
<tr><td rowspan="5">사업지구의
외부</td><td>Ⓐ</td><td>•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18.1』 반영
– 중로2-109호선 시·종점부 지하차도 설치(동호대교 남단 및 성수대교 남단)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반영</td></tr>
<tr><td>-</td><td>•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 신속통합기획, 2023.7.11.』 반영</td></tr>
<tr><td>Ⓑ</td><td>•압구정로 차로운영계획 수립
– 압구정역 교차로 ~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 : B=38~45m, L=368m, 8차로</td></tr>
<tr><td>Ⓒ</td><td>•압구정로 상 진출입 교차로 이동(압구정로34길 → 압구정로36길)</td></tr>
<tr><td>-</td><td>•분석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12개소)</td></tr>
<tr><td rowspan="3">사업지구의
내부</td><td>-</td><td>•사업지구 내부도로 차로운영계획 수립
– 중로1-B호선 : B=21m, L=196m, 4차로
– 중로2-109호선 : B=11~35m, L=986m, 2~4차로
– 중로2-A호선 : B=18~20m, L=740m, 4차로
– 중로2-B호선 : B=15m, L=290m, 3차로
– 중로3-A호선 : B=12m, L=224m, 2차로
– 소로2-A호선 : B=9m, L=45m, 2차로</td></tr>
<tr><td>Ⓓ
Ⓔ</td><td>•남북간 보차혼용통로(지하) 설치(B=21~25m, L=407m)
– 중로2-109호선 접속지점 회전교차로 설치</td></tr>
<tr><td>Ⓕ</td><td>•사업지구 내 차량진출입구 설치(8개소)</td></tr>
<tr><td rowspan="3">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td><td>-</td><td>•건축한계선(B=6~10m) 지정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td></tr>
<tr><td>Ⓖ</td><td>•구역 내 전면공지(B=10m) 설치</td></tr>
<tr><td>-</td><td>•사업지구 내 자전거전용도로(B=1.5m) 설치</td></tr>
<tr><td rowspan="5">주차
시설</td><td>-</td><td>
<table>
<tr><th>구분</th><th>법정주차(대)</th><th>주차수요(대)</th><th>계획주차(대)</th><th>법정대비</th><th>수요대비</th></tr>
<tr><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8,182</td><td>6,923</td><td>8,936</td><td>109.2%</td><td>129.1%</td></tr>
<tr><td>준주거지역</td><td>1,616</td><td>1,825</td><td>1,982</td><td>122.7%</td><td>108.6%</td></tr>
<tr><td>합계</td><td>9,798</td><td>8,748</td><td>10,918</td><td>111.4%</td><td>124.8%</td></tr>
</table>
</td></tr>
<tr><td>-</td><td>•장애인주차 법정주차대수의 3% 이상 확보</td></tr>
<tr><td>-</td><td>•확장형주차 계획주차대수의 30% 이상 확보</td></tr>
<tr><td>-</td><td>•가족배려주차 계획주차대수의 10% 이상 확보</td></tr>
<tr><td>-</td><td>•전기차주차 및 전기충전시설 계획주차대수의 5% 이상 확보</td></tr>
<tr><td rowspan="3">교통안전
및 기타</td><td>-</td><td>•차량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8개소)</td></tr>
<tr><td>-</td><td>•사업지 내·외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td></tr>
<tr><td>-</td><td>•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td></tr>
</table>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반경 200m이내 대상지 남서측 학교 3개소 (압구정 초등학교, 압구정 중학교, 압구정 고등학교)	•대상지 내 일부지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함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차.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74	54	20	74	74	-

■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3,934	2,573	1,361	9,049	5,918	3,131	-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3,934	2,573	1,361	9,049	5,918	3,131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 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합 계		3,934	-	-	-	3,934	3,934	-	-
85㎡이하		1,045	-	-	-	1,045	1,045	-	-
85㎡ 초과	소 계	1,275	-	-	-	1,275	1,275	-	-
	85㎡~135㎡	716	-	-	-	716	716	-	-
	135㎡~150㎡	559	-	-	-	559	559	-	-
150㎡ 초과	소 계	1,498	-	-	-	1,498	1,498	-	-
	150㎡~185㎡	929	-	-	-	929	929	-	-
	185㎡~200㎡	569	-	-	-	569	569	-	-
200㎡ 초과	소 계	116	-	-	-	116	116	-	-
	200㎡ 초과	116	-	-	-	116	116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고
합 계	5,175	4,534	641	-
60㎡미만	1,033	522	511	-
60㎡~85㎡미만	616	486	130	-
85㎡~120㎡미만	1,399	1,399	-	-
120㎡~150㎡미만	703	703	-	-
150㎡~200㎡미만	1,120	1,120	-	-
200㎡이상	304	304	-	-

※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의 주택규모는 분양신청 단계에서 확정되는 사항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음

타.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임시 보안등 설치	•시행계획 :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법령에 따름 •정비구역 내 공가가 집중된 구역, 야간 안전사각지대 파악 •기존 가로등의 위치와 광량, 광효율 등 파악 •노후된 가로등 및 사각지대에 임시 보안등 설치 •공가 밀집지역에는 임시 보안등 추가 설치 •가로등이 철거된 지역은 보안등 설치의 필요성을 파악 검토 •보안등 체계를 도면화하여 상시 관리 •이주 및 철거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 방안 모색	-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관제시스템 설치	•정비구역 내 범죄 발생 가능 예상지역 파악 •주요 거리 및 공가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도면을 비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제실의 관측상황을 지속적으로 순찰요원과 공유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업무 협조 •이주 및 철거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 방안 모색	
정비구역 내 전문 순찰요원 투입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통한 전문 순찰요원들을 주·야간으로 투입 •공가 발생에 따라 요원의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배치 •경찰서/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 업무협조 및 능동적인 대처법 연구 •정비구역 상황 도면을 작성하여 공가세대 표시 및 중점 관리 •관리공가는 일 1회 이상, 방치공가는 일 5회 이상 순찰 및 점검 •방법순찰일지 작성, 주·야간 교대 시 합동순찰 일 2회 이상 실시	-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	240,446.0	①	압구정동 369-1 일대	240,446.0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	-	28,970.6	②	압구정동 450 일대	28,970.6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3	-	1,097.3	③	압구정동 458	1,097.3	종교시설

거.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연면적)
소계	269,416.6	-	641세대	전용 59㎡ 전용 84㎡	56,237.43㎡
획지1	240,446.0	-	415세대		36,371.43㎡
획지2	28,970.6	-	226세대		19,866.00㎡

■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적상한용적률	300%	-
정비계획용적률	269.8%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기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300.0% - 269.8%) × 50% = 30.2 × 50% = 15.1%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대지면적×15.1% = 240,446.0㎡×15.1% = 36,307.3㎡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	•국민주택규모 주택규모 - 공급 81.10㎡(전용 59㎡) : 332세대 - 공급 113.81㎡(전용 84㎡) : 83세대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 (기준) 36,307.3㎡ 이상 < (계획) 36,371.4㎡ (기준 이상)	-

■ 획지2: 준주거지역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적상한용적률	436.9%	-
정비계획용적률	300.4%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기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436.9% - 300.42%) × 50% = 136.5% × 50% = 68.25%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대지면적 × 68.25% = 28,970.6㎡ × 68.25% = 19,772.4㎡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	•국민주택규모 주택규모 - 공급 81.10㎡(전용 59㎡) : 179세대 - 공급 113.81㎡(전용 84㎡) : 47세대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 (기준) 19,772.4㎡ 이상 < (계획) 19,866.0㎡ (기준 이상)	-

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더.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 평가도 1~4등급 및 도로, 개별비오톱 평가도 2~3등급, 평가제외구역 및 도로	•대상지 내 투수성 포장의 조성으로 인해 비오톱의 기능이 향상될 것임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대상지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및 주변 자연자원과 주거지 간의 연계성 강화	-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해당 사항 없음	-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도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7	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표고 5.0m~29.7m, 평균 경사도 2.3°의 평탄지형	•평지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 변화 발생	-
8	물순환, 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이 불투수성 포장지역	•생태면적률 획지 1 : 30.00%, 획지 2 : 30.00% •획지 내 조경녹지 확보	-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지표 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공사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저감	-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녹지면은 바람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을 조성할 계획임	-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주거지 및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등으로 구성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
12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해당 사항 없음	-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16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65층 이하로 계획 •한강변 고층 배치로 상징적인 경관을 형성하며, 인접 저층 주거지역으로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대상지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 부족	•공원·녹지 및 옥상정원 등 설치계획 수립	-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시간 검토	•높이 65층 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도로 확폭 및 차로 운영계획 수립	•주변 가로체계와 연계되는 동선 및 보행로 계획	-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해당 사항 없음	-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

러.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정비구역 내 녹지 및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없으며, 사업시행 시 재활용 가능한 수목·수형,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반하겠음

○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북측 근린공원 및 대상지 내 완충녹지로 이식하도록 하겠음

머.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1) 현황 가구수 및 인구수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3,934	2,573	1,361	9,049	5,918	3,131	-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3,934	2,573	1,361	9,049	5,918	3,131	-

2) 계획 가구수 및 인구수

구 분	현 황		계 획		비고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계	3,934	9,049	5,175	11,903	-
60㎡ 이하	-	-	1,033	2,376	-
60㎡ ~ 85㎡	1,045	2,404	616	1,417	-
85㎡ 초과	2,889	6,645	3,526	8,110	-

※ 계획 인구수는 세대당 2.30인 적용 (2021 강남통계연보)

버.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Ⅲ.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1,167,719.5 (397,815.7)	증) 29,030.7	1,196,750.2 (400,633.2)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 )은 특별계획구역3 해당 사항임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1,167,719.5㎡→1,196,750.2㎡ (증 29,030.7㎡)	•재건축사업을 통해 한강변 덮개공원 조성 및 압구정역 지하철출입구 이전 설치계획을 위한 구역 확장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67,719.5	증) 29,030.7	1,196,750.2	100.0	-
주거지역	소계	1,101,508.8	증) 866.6	1,102,375.4	92.2	-
	제1종일반주거지역	43,334.7	증) 7,253.3	50,588.0	4.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1,844.1	감) 29,179.4	152,664.7	12.8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709.6	감) 29,110.0	599.6	0.1	-
	제3종일반주거지역	846,620.4	증) 22,932.1	869,552.5	72.7	-
	준주거지역	-	증) 28,970.6	28,970.6	2.4	-
녹지지역	소계	66,210.7	증) 28,164.1	94,374.8	7.8	-
	자연녹지지역	66,210.7	증) 28,164.1	94,374.8	7.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변경 - 43,334.7㎡ → 50,588.0㎡	•재건축사업을 위해 이전하는 압구정 초등학교와 근린공원을 제외, 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근린공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압구정 초등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위치 및 면적 변경 - 181,844.1㎡ → 152,664.7㎡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및 면적 변경 - 29,709.6㎡ → 599.6㎡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및 면적 변경 - 846,620.4㎡ → 869,552.5㎡	
준주거지역	•신설 (28,970.6㎡)	•역세권 활성화 및 복합기능을 고려한 준주거지역 신설(획지2)
자연녹지지역	•구역내 편입	•재건축사업을 통해 한강변 덮개공원 조성을 위한 자연녹지지역 구역 내 편입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아파트지구	-	압구정동	836,456.5	-	건고 제1976-131호 (1976.08.21.)	압구정지구
기정	②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IC~청담사거리	50,016.0	편측 18	서고 제2019-129호 (2019.4.17.)	압구정로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18	40 (41~43)	주간선도로	6,500	압구정동	포이동	일반도로	-	건고제46호 (1976.04.07.)	언주로(성수대교) 중복결정: (3구역,4구역) 중로1-C, 중로2-109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도로	4,300	청담동(광로14)	잠원동	일반도로	-	건고제503호 (1969.08.27.)	압구정로
변경	대로	2	28	30~45 (38~45)	보조간선도로	4,300 (368)	청담동(광로14)	잠원동	일반도로	-	건고제503호 (1969.08.27.)	
기정	대로	2	30	30	주간선도로	6,717	압구정동	포이동(광로27)	일반도로	-	건고 제503호 (1969.8.27.)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63	30~65	주간선 도로	4,100	장충체육관 (중로2-109)	압구정동 (대로2-28)	일반도로	-	건고 제426호 (1978.12.29)	논현로 (동호대교)
변경	대로	2	63	30~65 (50~62)	주간선 도로	4,100 (588)	장충체육관 (중로2-109)	압구정동 (대로2-28)	일반도로	-	건고 제426호 (1978.12.29)	
기정	대로	3	71	25~27	보조간선 도로	4,900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2-28)	일반도로	-	건고 제198호 (1971.4.7)	중복결정 : 철도②,③
기정	대로	3	A	10~30	특수 도로	280	압구정동 434	압구정동 378-1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 제2025-136호 (2025.3.1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2구역)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
기정	중로	1	2	16	국지 도로	310	압구정동 434	중로2-109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중복결정 : (2구역) 유수지①
기정	중로	1	4	21	국지 도로	122	대로2-28	중로2-3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폐지	중로	1	6	23.5	국지 도로	486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1	10	20	집산 도로	280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4구역) 도로 일부 입체결정 (지상권 설정)
신설	중로	1	B	21	국지 도로	196	대로2-28	중로2-A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1	C	20~22	국지 도로	117.3	압구정동 481	광로2-18	지하도로	-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중복결정: (4구역) 소공원B, 광로2-18, 중로2-109
변경	중로	1	C	20~22 (22)	국지 도로	301.3 (184)	문화공원①	중로2-109	지하도로	-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중복결정 : (4구역) 소공원B, 광로2-18, 중로2-109 (3구역) 문화공원①, 중로2-109, 광로2-18
기정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	건고 제198호 (1971.04.07.)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2구역) 대로3-A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	건고 제198호 (1971.04.07.)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 (2구역) 대로3-A (3구역) 문화공원② (덮개공원)
기정	중로	2	1	18.5	국지 도로	143	대로2-28	압구정 408	일반 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제635호 (1983.11.25)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2구역) 대로3-A
변경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제635호 (1983.11.25)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2구역) 대로3-A (3구역) 문화공원② (덮개공원)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859)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	서고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5구역) 소공원B,C
변경	중로	2	109	11~35	국지 도로	4,100 (986)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	서고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3구역) 문화공원①, 중로1-C.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5구역) 소공원B,C
신설	중로	2	A	18~20	국지 도로	740	대로2-63 (논현로)	중로2-109	일반도로	-	-	(3구역) 일부 구간 입체적 결정 (연장 192m / 연장 10m)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456	중로1-4	현대백화점	일반 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5	15	국지도로	50	중로2-109	압구정 414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신설	중로	2	B	15	국지도로	290	중로1-B	중로2-A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8	16.5	국지도로	420	대로2-28	중로2-10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3	A	12	국지도로	224	대로2-28	중로2-A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폐지	중로	3	5	12~15	국지도로	206	압구정 449	중로1-6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폐지	중로	3	7	12	국지도로	246	중로1-6	중로2-8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7	대로2-28	중로3-11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141	대로3-71	청담고등학교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소로	1	A	11.5	국지도로	160	압구정동 392 일대	압구정동 392 일대	지하도로	-	서고 제2025-136호 (2025.3.13.)	중복결정 : (2구역) 중로2-109, 연결녹지①
변경	소로	1	A	11.5	국지도로	409 (249)	압구정동 392 일대	문화공원①	지하도로	-	서고 제2025-136호 (2025.3.13.)	중복결정 : (2구역) 중로2-109, 연결녹지① (3구역) 문화공원①, 중로2-109, 대로2-63
기정	소로	1	14	10~12	국지도로	207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신설	소로	2	A	9	국지도로	45	중로1-B	근린공원①	일반도로	-	-	-

※ 연장 내 ( )는 압구정3구역 정비구역 내 수치임

※ 중로1-C, 소로1-A 비고(중복결정) 내용은 압구정3구역 내 중복결정 항목임

※ 지하도로(중로1-C)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4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할 것. (설치비용은 압구정4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 지하도로(소로1-A)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2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할 것. (설치비용은 압구정2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28	대로2-28	•도로 확폭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압구정로) 확폭
대로2-63	대로2-63	•도로 확폭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논현로) 확폭
중로1-6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	중로1-B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1-C	중로1-C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3~4구역) •문화공원①, 중로2-109와 중복결정
중로1-136	중로1-136	•도로 중복결정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문화공원②(덮개공원)와 중복결정
중로2-289	중로2-289	•도로 중복결정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문화공원②(덮개공원)와 중복결정
중로2-109	중로2-109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도로 상부 공원 및 녹지 중복결정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발생교통량 및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도로계획 변경(확폭 및 연장 확대) (문화공원②(덮개공원), 중로1-C, 소로1-A와 중복결정) •획지1에서 문화공원②(덮개공원)으로 직접적인 보행연결을 위해 도로 상부 공원 및 녹지와 중복결정
-	중로2-A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2-A 구간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획지1 및 획지1~2간 일부 구간 입체적 결정
-	중로2-B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2-8	중로3-A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축소)
중로3-5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중로3-7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소로1-A	소로1-A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신설(압구정2~3구역) •대로2-63, 중로2-109,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	소로2-A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기정	대로3-A	도로	압구정동 378-1 일대	연장	64m(280m)	중복결정 :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
				폭	10m(10~30m)	
				높이	해발 17.0~28.0m (해발 13.0~28.0m)	
				면적	674.4㎡(4,709.6㎡)	
기정	중로1-10	도로	압구정동 487 일대	연장	119.5m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폭	20.0m	
				높이	해발 12.5m ~ 지상부 (현황레벨 해발 18.5m)	
				면적	2,390.0㎡	
신설	중로2-A	도로	압구정동 456 일대	연장	192m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폭	18m	
				높이	해발 18.5~27.0m	
				면적	3,525.4㎡	
신설	중로2-A	도로	압구정동 456 일대	연장	10m	획지1~2간 지하연결을 위해 도로 입체적 결정
				폭	18m	
				높이	해발 18.5~27.0m	
				면적	183.0㎡	

※ ( ) 안은 도시계획시설(대로3-A)의 전체 연장, 폭, 높이, 수평투영면적임
※ 대로3-A(입체보행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한강유역청과 입체보행교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
※ 입체적 결정 범위 규모(연장, 높이 등)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입체적 결정 도로는 향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강남구청과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 2-A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18m / 192m - 높이 : 해발 18.5m ~ 27.0m - 면적 : 3,525.4㎡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1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	중로 2-A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18m / 10m - 높이 : 해발 18.5m ~ 27.0m - 면적 : 183.0㎡	•획지1~2간 지상부는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보행연결 구간으로 조성하고, 지하부는 차량통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공영주차장	압구정동 428	13,381.0	-	13,381.0	-	중복결정: 공원②(지상)
신설	①	주차장	공영주차장	압구정동 369-1	-	증) 3,880.0	3,880.0 (수평투영면적)	-	(3구역) 중복결정: 문화공원①

※ 주차장 규모는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공원조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적 : 3,880.0㎡	•문화공원②등 한강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차량이용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주차장을 신설하고, 문화공원①과 중복결정

3)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대			-	5,800.0 (2,506.0)	서고287호 (1981.07.30.)	중복결정 : 대로2-63, 대로2-30
변경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대			-	6,904.0 (3,610.0)	서고287호 (1981.07.30.)	중복결정: 대로2-28, 대로2-30, 대로2-63
기정	②	철도	지하철 역사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	청담동 84 일대			-	6,488.0 (2,489.0)	건고 87호 (2005.4.16.)	중복결정: 대로 3-71
기정	①③	철도	일반철도 (분당선)	왕십리역	삼성동 172-20		6,830 (251)	190,795 (4,227)	건고 6호 (2007.1.18.)	중복결정: 대로 3-71
기정	①	철도	일반철도 (GTX A호선)	은평구 갈현동 산131-1	강남구 삼성동 111-8	연신내역 서울역	20,515	320,453.6	국토부고시 제2018-932호 (2018.12.31.)	중복결정:완충녹지② (환기구)

※ ( )는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구역 내 일반철도①(GTX A호선, 환기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과 관계 없음 (완충녹지와 함께 존치시설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철도	•철도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5,800.0㎡ → 6,904.0㎡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압구정역 1번 출입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철도 선형 및 면적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신설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연장	38.2m	획지2 내 철도 입체적 결정
				폭	7.4m ~ 19.2m	
				높이	해발 17.49m ~ 27.0m	
				면적	633.2㎡	

※ 입체적 결정 범위 규모(연장, 높이 등)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철도	•획지2 내 철도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7.4~19.2m / 38.2m - 높이 : 해발 17.49m ~ 27.0m - 면적 : 633.2㎡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압구정역 1번 출입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획지2 내 포함되는 지하철 출입구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철도 입체적 결정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390 일대	24,224.3	-	24,224.3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유수지①, 교통광장①, 대로3-A, 소로1-A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479	5,696.0	증) 255.4	5,951.4	-	(3구역) 중복결정: 일반철도①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505,506, 507,147	13,260.0	-	13,260.0	-	-
기정	A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498	3,056.2	-	3,056.2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4구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B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480	2,478.5	-	2,478.5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4구역)
기정	C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480	1,301.3	-	1,301.3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4구역)
기정	A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497	3,780.0	-	3,780.0	서고 2025-556호 (2025.10.2.)	(5구역)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녹지	•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5,696㎡ → 5,951.4㎡	•존치시설인 완충녹지에 대하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신설도로 경계부를 따라 완충녹지 선형 조정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문화공원	압구정동 369-1 일대	-	증) 33,411.0	33,411.0	-	(3구역) 중복결정: 중로2-109 (중복면적:19,181.4㎡) 중로1-C, 소로1-A, 주차장① (중복면적 : 3,880㎡)
신설	②	공원	문화공원	압구정동 372-2	-	증) 28,164.1	28,164.1	-	(3구역) (덮개공원)중복결정: 중로1-136, 중로2-289, 하천
기정	A	공원	문화공원	압구정동 482 일대	4,462.9	-	4,462.9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4구역)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압구정동 422 일대	6,987.0	-	6,987.0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2구역) 중복결정: 유수지①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압구정동 458 일대	-	증) 12,095.6	12,095.6	-	(3구역)
기정	②	공원	근린공원	압구정동 428 일대	13,381.0	-	13,381.0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주차장①
기정	⑥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397 일대	4,400.0	-	4,400.0	서고 제504호 (1983.01.25)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⑦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510 일대	5,030.0	-	5,030.0	서고 제1994-1호 (1994.01.08.)	-
기정	B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8 일대	1,721.8 (1,366.9)	-	1,721.8 (1,366.9)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중복결정: (4구역) 중로1-C, 중로2-109
기정	C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8 일대	4,480.6 (1,895.7)	-	4,480.6 (1,895.7)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중복결정: (4구역) 중로2-109
기정	A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3 일대	4,167.0	-	4,167.0	서고 제2025-556호 (2025.10.2.)	(5구역)
기정	B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7 일대	3,571.7	-	3,571.7	서고 제2025-556호 (2025.10.2.)	중복결정: (5구역) 중로2-109
기정	C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7 일대	3,689.3	-	3,689.3	서고 제2025-556호 (2025.10.2.)	

※ ( )는 도로 중복결정 데크공원 조성 면적임
※ 문화공원②(덮개공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예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원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33,411.0㎡	•한강 접근성 향상 및 수변특화를 위해 문화공원 신설하되, 획지1에서 문화공원으로의 보행 직접연결을 위해 도로(중로 2-109, 중복면적 : 19,181.4㎡)와 중복결정 •압구정아파트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로1-C, 소로1-A과 중복결정 •덮개공원 등 한강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차량이용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신설하는 주차장①과 중복결정
②	공원	•문화공원(덮개공원) 신설 - 면적 28,164.1㎡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신설 (올림픽대로 중로1-136, 중로 2-289, 방재시설(하천)과 중복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2,095.6㎡	•여가·휴식 기능을 위한 학교 및 공공청사변 근린공원 신설

3) 광장

■ 광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광장 157호	교통광장	한남대교남단 (한강둔치일대)	216,218.0 (8,376.0)	서고 제1997-200호 (1997.06.17)	중복결정:녹지① (중복면적:2,348㎡)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사항임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공지	-	압구정동 433-1 일대	1,145.8	-	1,145.8	서고 제2025-136호 (2025.03.13.)	(2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학교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중교		신사중교	압구정동 410		15,000.0	-	15,000.0	서고 제256호 (1981.07.07.)	-
기정	②	학교	고교		현대고교	압구정동 423,424,425		18,500.0	-	18,500.0	서고 제162호 (1978.04.17)	-
변경	③	학교	초교	초교·유치원	압구정초교	압구정동 469	압구정동 459일대	14,135.6	-	14,135.6	서고 (1975.12.08)	(3구역)
기정	④	학교	중교		압구정중교	압구정동 471		15,000.0	-	15,000.0	서고 (1991.12.31.)	-
기정	⑤	학교	고교		압구정고교	압구정동 470		17,422.0	-	17,422.0	서고 (1991.12.31.)	-
기정	⑥	학교	초교		청담초교	청담동 142		14,774.0	-	14,774.0	서고 (1991.12.31.)	-
기정	⑦	학교	중교		청담중교	청담동 143		14,754.0	-	14,754.0	서고 (1991.12.31.)	-
기정	⑧	학교	고교		청담고교	청담동 514,526		13,884.0	-	13,884.0	서고 (1991.12.31.)	-
기정	⑨	학교	-		-	압구정동 423,424		14,999.8	-	14,999.8	서고 (1991.12.31.)	-

※ 이전하는 압구정 초등학교 내 병설 유치원 신설 계획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압구정초교	•학교 이전 - 압구정동 461 → 압구정동 459 일대 •시설의 세분 : 초교 → 초교·유치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압구정초등학교 이전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	압구정동 426 일대	480.0	-	480.0	서고 제2025-136호 (2025.3.13.)	(2구역) (서울시 귀속)
기정	A	공공청사	-	압구정동 489	4,451.3	-	4,451.3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4구역)
신설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압구정동 458 일대	-	증) 2,282.8	2,282.8	-	(3구역)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관리청)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기정	A	공공청사	공공업무 사무소	압구정동 489	50% 이하	250% 이하	지하1층~1층	1,262.9	강남구청
신설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압구정동 458 일대	50%	250%	5층 이하	-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은 강남구로 귀속되며, 강남구청장(공공업무사무소)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2,282.8㎡	•기존 압구정동 주민센터 및 치안센터의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3)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공연장 및 도서관	압구정동 414 일대	3,000.0	-	3,000.0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A	문화시설	-	압구정동 489	4,451.3	-	4,451.3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4구역)

■ 문화시설 건축범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관리청)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기정	A	문화시설	공공팝업스토어	압구정동 489	50% 이하	250% 이하	지하1층~5층	9,784.2	서울시청 k-콘텐츠(창조산업과) k-뷰티(뷰티패션산업과) k-관광(관광산업과)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공공팝업스토어)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공공기여 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유수시설	압구정동 422 일대 (신사공원 일대)		6,732.2	-	6,732.2	서고 제2013-315호 (2013.09.26.)	중복결정 공원①,연결녹지① 중로1-2, 중로2-109

2) 하천

■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하천	국가하천	경기도 김포군 시계	경기도 하남시 시계	-	40,747,864 (28,164.1)	-	중복결정:문화공원② (덮개공원)

※ ( )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구역 내 수치임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변경없음)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가구	-	•6m 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 설정	10개소
계획단위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 추진단지(추진위원회 승인 ~ 준공전) •미추진 단지 중 부지면적 1만㎡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9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적으로 통합개발을 통해 도시기능 도입이 필요하나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주민의 동의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지역	-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이나 기 건축이 완료된 지역(과소필지)	-
	공동개발(권장)	•기 건축된 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필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이나 기 건축이 완료된 지역 ※ 도로에 의해 단절되지 않은 연접된 필지간 통합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	•2필지 이상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권장함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생활주택 150세대) 개발, 인근 단지와 통합 재건축시 RA-3코드 기준 적용 가능 •연접된 아파트단지와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공동개발을 권장함	기존 개발잔여지

나. 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A	압구정동 414일대		93,576.5	-	93,576.5	특별계획구역 1
B	압구정동 434일대		218,850.2	-	218,850.2	특별계획구역 2, 7
C	압구정동 369-1일대		82,445.6	증) 158,000.4	240,446.0	특별계획구역 3 (F가구 변경 후 면적은 존치시설인 압구정중,고등학교 면적(32,151.6㎡)임)
D	압구정동 447일대	압구정동 450일대	100,258.8	감) 71,288.2	28,970.6	
E	압구정동 458일대		123,404.2	감) 93,793.4	29,610.8	
F	압구정동 464일대		58,295.4	감) 26,143.8	32,151.6	
G	압구정동 481일대		178,686.6	-	178,686.6	특별계획구역 4, 5, 8
I	압구정동 513일대		75,781.7	-	75,781.7	특별계획구역 6, 8, 9
J	압구정동 143일대		29,526.1	-	29,526.1	-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C	•가구 위치 및 면적 변경 - 면적 : 82,445.6㎡ → 240,446.0㎡ (증 158,000.4㎡)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가구계획 변경
D	•가구 위치 및 면적 변경 - 면적 : 100,258.8㎡ → 28,970.6㎡ (감 71,288.2㎡)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가구계획 변경
E	•가구 위치 및 면적 변경 - 면적 : 123,404.2㎡ → 29,610.8㎡ (감 93,793.4㎡)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가구계획 변경
F	•가구 면적 변경 - 면적 : 58,295.4㎡ → 32,151.6㎡ (감 26,143.8㎡)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가구계획 변경

다.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					비고
	획지번호(도면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A	A1	압구정동 414일대	60,580.0	-	60,580.0	특별계획구역 1 (미성1차,2차 APT)
	A2	압구정동 408일대	5,982.8	-	5,982.8	
B	B1	압구정동 434일대	14,685.4	-	14,685.4	특별계획구역 2 (현대9,11,12차 APT)
	B3	압구정동 429일대	10,473.1	-	10,473.1	특별계획구역 7 (현대백화점)
C	C1	압구정동 369-1일대	76,750.0	증) 163,696.0	240,446.0	특별계획구역 3 (현대1,2,3,4,5,6,7,10,13,14차 APT,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D	D1	압구정동 447일대	97,526.4	감) 68,555.8	28,970.6	
E	E1	압구정동 455일대	96,148.0	감) 95,050.7	1,097.3	
	E2	압구정동 458일대	10,035.6	감) 10,035.6	-	
F	F1	압구정동 465일대	26,201.6	감) 26,201.6	-	
G	G1	압구정동 481일대	88,457.2	-	88,457.2	특별계획구역 4 (현대8차, 한양4,6차 APT)
	G2	압구정동 490일대	58,951.9	-	58,951.9	특별계획구역 5 (한양1,2차 APT)
	G3	압구정동 494일대	10,203.4	-	10,203.4	특별계획구역 8 (갤러리아백화점)
I	I1	압구정동 513일대	41,590.0	-	41,590.0	특별계획구역 9 (한양5,7,8차 APT)
	I2	압구정동 515 일대	8,549.8	-	8,549.8	특별계획구역 8 (갤러리아백화점)
	I3	압구정동 518일대	2,986.1	-	2,986.1	특별계획구역 9 (기아자동차)
	I4	압구정동 521일대	1,579.6	-	1,579.6	기존 개발잔여지
J	-	-	-	-	-	-

※ 기존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기반시설은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상기면적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획지번호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변경후	
C1	76,750.0	증) 163,696.0	240,446.0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획지계획 변경
D1	97,526.4	감) 68,555.8	28,970.6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획지계획 변경
E1	96,148.0	감) 95,050.7	1,097.3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획지계획 변경
E2	10,035.6	감) 10,035.6	-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획지계획 변경
F1	26,201.6	감) 26,201.6	-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획지계획 변경

5.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권장용도

구분	도면 표시	전 층	저층부(1~2층)	비고
권장 용도	a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	-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 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나. 허용용도

구분	도면 표시	전 층	비고
허용 용도	1	•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RA-3, RA-(3)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다. 불허용도

구분	도면 표시	전 층	비고
불허 용도	A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A-3, RA-(3)
	B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RG-3, CG-3
	C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의 가이드라인 적용	CG-3 [별표1]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라. 용도완화

-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비주거시설로서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 완화
- 현 건축물 용도의 특성(대규모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운영 중)을 고려 건축물 용도완화

구분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한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완화계획수립	비고
용도 완화	•판매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미만(너비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업무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미만	•용도완화계획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바닥면적 제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완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규모로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면적제한 완화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6.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용도지역	건폐율	코드구분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RA-3, RA-(3)
		RG-3
		CG-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코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3종일반 주거지역	170%이하	170%이하	3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 적용	RA-(3)
	200%이하	200%이하	300%이하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 적용	RA-(3)
	230%이하	230%이하	300%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정법정상한용적률 300% 이하로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	RA-3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세대 이상 (공동)개발 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 시 코드 RA-3을 적용	RG-3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CG-3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필지는 관련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따름
※ 기준(허용) 용적률 170%, 200% 23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20%[기준(허용)용적률 200%인 경우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 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용적률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시 용적률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름
※ 용도지역 상향부지는 재건축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에 따름
※ 본 지구단위계획 차기 재정비 시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아파트지구 외의 일반지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예정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다. 허용용적률 의무사항

- 대지규모가 5,000㎡ 이상 또는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총 20%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 아래의 항목 이외 입지적 특성 및 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성 등을 확보하여 시(市)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적용 가능

■ 허용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사항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적용기준</th><th></th></tr>
<tr><td>1</td><td>우수디자인</td><td colspan="2">15%p</td></tr>
<tr><td>2</td><td>장수명주택</td><td>우수등급 이상</td><td>10%p</td></tr>
<tr><td>3</td><td>녹색건축물 인증</td><td colspan="2"><table><tr><th>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th><th>녹색건축물 우수 등급</th></tr><tr><td>6%p</td><td>3%p</td></tr></table></td></tr>
<tr><td>4</td><td>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td><td>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td><td>3%p</td></tr>
<tr><td>5</td><td>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td><td colspan="2"><table><tr><th>20% 초과</th><th>20% 이하 15% 초과</th><th>15% 이하 10% 초과</th></tr><tr><td>3%p</td><td>2%p</td><td>1%p</td></tr></table></td></tr>
<tr><td>6</td><td>지능형 건축물</td><td colspan="2"><table><tr><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r><tr><td>15%p</td><td>12%p</td><td>9%p</td><td>6%p</td></tr></table></td></tr>
<tr><td>7</td><td>공공보행통로</td><td>•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설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 a ※ a=0.1이하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td><td>10%p 이내</td></tr>
<tr><td>8</td><td>열린단지</td><td>•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 (지형도면고시)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td><td>5%p</td></tr>
<tr><td>9</td><td>공개공지</td><td>•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대지면적) × a
※ a=0.1이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실내형 공개공지 포함</td><td>5%p 이내</td></tr>
<tr><td>10</td><td>돌봄시설</td><td>•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td><td>5%p</td></tr>
<tr><td>11</td><td>방재안전</td><td>•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 성능 개선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td><td>5%p</td></tr>
<tr><td>12</td><td>지역기반시설 정비</td><td>•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등/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기준용적률×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 a ※a=0.1이하
※ 환산부지면적 :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서울시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td><td>5%p 이내</td></tr>
<tr><td>13</td><td>지역특화</td><td>•감정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td><td>10%p 이내</td></tr>
</table>

※ 기준(허용) 용적률 170%, 200% 23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20%[기준(허용) 용적률 200%인 경우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 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기준		비고	코드구분
	기준	최고		
재건축단지 (아파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RA-3, RA-(3)
기존 개발잔여지	-	5층 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세대 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RG-3
기존 중심시설	-	5층 이하		CG-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높이는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7.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결정(변경) 조서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분</th><th colspan="2" rowspan="2">적용지역</th><th colspan="2">계획내용</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정</th><th>변경</th></tr>
<tr><td rowspan="12">건축선</td><td rowspan="11">건축
한계선</td><td colspan="2">올림픽대로
(한강변 굴곡부)</td><td colspan="2">•올림픽대로 경계선 등으로부터 20m</td><td rowspan="11">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td></tr>
<tr><td rowspan="4">광역
통경축</td><td>강남대로
(한남대교)</td><td colspan="2">•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td></tr>
<tr><td>논현로
(동호대교)</td><td colspan="2">•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td></tr>
<tr><td>언주로
(성수대교)</td><td colspan="2">•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td></tr>
<tr><td rowspan="4">지구
통경축</td><td>압구정로
11길,39길</td><td colspan="2">•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td></tr>
<tr><td>선릉로</td><td colspan="2">•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td></tr>
<tr><td>압구정로~
한강 연계도로</td><td colspan="2">•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td></tr>
<tr><td>압구정로
61길</td><td colspan="2">•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5m</td></tr>
<tr><td colspan="2">압구정로</td><td colspan="2">•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6m
※ 획지14(압구정동 520~524)는 획지의 크기를
고려하여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3m 지정</td></tr>
<tr><td colspan="2">한강변 연접부
(중로2-109, 완충녹지)</td><td colspan="2">•도로·녹지경계선 등으로부터 6m</td></tr>
<tr><td colspan="2">이면부</td><td>•도로·공원 경계선
등으로부터 1~5m</td><td>•도로·공원 경계선 등으로 부터
1~6m</td></tr>
<tr><td>벽면
한계선</td><td colspan="2">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압구정로 61길</td><td colspan="2">•통경축변 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td><td>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td></tr>
<tr><td rowspan="4">대지내
공지</td><td>전면
공지</td><td colspan="2">건축한계선
지정구간</td><td colspan="2">•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대지경계로부터 폭 3m 구간)
•한강변 굴곡부에 계획된 건축한계선 20m 구간 내 10m는
방음식재구간으로 조성
•압구정로변으로 계획된 건축한계선 6m 구간에 대하여 대지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생기는 전면공지는
보행공간(4m)과 조경공간으로 조성
•조경공간 내에는 가로수, 벤치 등을 일체형으로 조화롭게
조성하여 가로정원으로 계획, 단 판매를 위한 시설물 설치
불허
•가로활성화특화구간 내 전면공지는 가로형 조경으로 조성</td><td>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td></tr>
<tr><td>공공
보행
통로</td><td colspan="2">공동주택용지</td><td colspan="2">•폭 6m 이상 및 24시간 개방
•공공보행통로 주변 부대복리시설 배치로 커뮤니티가로 조성</td><td>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td></tr>
<tr><td>근린
광장
(권장)</td><td colspan="2">공동주택용지</td><td colspan="2">•단지 중심부 보행동선이 교차되는 곳에 어린이놀이터,
근린광장 등 주민휴게시설 조성</td><td>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되
계획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td></tr>
<tr><td colspan="2">생태녹지조성구간</td><td colspan="2">•소음 및 공해 방지, 녹지네트워크를 위해 선형 녹지 공간
계획</td><td>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td></tr>
</table>

※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에 해당하는 도로변의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은 공원 및 녹지시설 확보 시 해당시설 폭원만큼 이격한 것으로 봄

■ 건축선 및 대지 내 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 한계선	이면부	도로·공원경계선 등으로부터 1~5m → 1~6m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건축한계선 계획 변경

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RA-3, RA-(3)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 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첫 주동은 중저층(15층~20층 이하)로 배치하고, 주변여건 및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범위 결정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RA-3, RA-(3)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및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우선 배치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3층이하, 1층부 층고는 4m이상으로 계획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정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확보	-
	특화구간	수변부건축물 디자인 특화구간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한강변 조망을 최대화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수변주거로서 상징성을 나타내수 있는 주동배치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등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배치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근생시설 등 배치 •저층부(2층 이하) 가로외의 개방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외벽면 투시형 재료 사용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논현로변 특화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가로활성화 도모(권장) •압구정로변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로활성화 유도(권장)	-
		중저층 배치구간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위압적 경관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저층 배치(권장)	-
		수변커뮤니티 배치구간	•남·북방향의 공공보행통로와 한강변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와 만나는 접점부에 수변 커뮤니티시설(개방형) 조성 (개방형 수변커뮤니티 배치구간 상부 주동계획 불허)	-
		디자인타워 배치구간	•도심부 진입경관거점으로서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주동계획하되, 고층 타워형 주동 배치	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타 외관 요소	옥외설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책 또는 식재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건물 신축시 건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배치 및 형태	디자인타워 배치구간	•디자인타워 배치구간 변경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타워 배치구간 계획내용 변경 (고층 타워형 주동 배치 하도록 내용 추가)

8.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1	압구정동 414일대	86,671.8	-	86,671.8	미성1차,2차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2	압구정동 434일대	192,910.5	-	192,910.5	현대6,11,12차
변경	특별계획구역 3	압구정동 369-1일대	397,815.7	증) 2,817.5	400,633.2	현대1,2,3,4,5,6,7,10,13,14차APT,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기정	특별계획구역 4	압구정동 481일대	118,859.6	-	118,859.6	현대8차, 한양3,4,6차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5	압구정동 490일대	78,989.6	-	78,989.6	한양1,2차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6	압구정동 513일대	60,179.6	-	60,179.6	한양5,7,8차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7	압구정동 429일대	10,473.1	-	10,473.1	현대백화점
기정	특별계획구역 8	압구정동 494일대	20,362.9	-	20,362.9	갤러리아백화점
기정	특별계획구역 9	압구정동 518일대	2,986.2	-	2,986.2	기아자동차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3	397,815.7	증) 2,817.5	400,633.2	•2023.07.11.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구역계 일부 변경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1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2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3 (변경) (※특별계획구역 3 외 변경사항 없음)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기정</th><th colspan="2">변경</th><th>비고</th></tr>
<tr><td colspan="2">위 치</td><td colspan="2">•압구정동 369-1일대</td><td colspan="2">•압구정동 369-1일대</td><td>현대1,2,3,4,5,6,7,10,13,14차 APT,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td></tr>
<tr><td colspan="2">구역면적</td><td colspan="2">•397,815.7㎡</td><td colspan="2">•400,633.2㎡</td><td></td></tr>
<tr><td colspan="2">용도지역·지구</td><td colspan="2">•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특화경관지구 / 아파트지구
※ 향후 정비계획 결정 시 아파트지구 폐지</td><td colspan="2">•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아파트지구</td><td></td></tr>
<tr><td colspan="2">획지계획</td><td colspan="2">•획지 C1, D1, E1, E2, F1</td><td colspan="2">•획지(C1) : 240,446.0㎡
•획지(D1) : 28,970.6㎡
•획지(E1) : 1,097.3㎡</td><td></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 등 계획</td><td colspan="2">•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도로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도로 설치
•공원 및 녹지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원 및 녹지 설치
- 기정 녹지② 유지
•지역필요시설 등 기반시설은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 수립 시 결정(변경 및 신설)하고 합리적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기반시설 면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굴곡부 건축한계선 20m 구간 내에 올림픽대로변으로 폭 10m 방음식재구간을 계획하여 소음 및 공해 차단
•용도지역 상향부지는 재건축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td><td colspan="2">•기반시설 계획 : 130,119.3㎡
- 도로 : 53,260.2㎡
- 공원 : 54,489.3㎡
(도로 중복면적 제외)
- 녹지 : 5,951.4㎡
- 공공청사 : 2,282.8㎡
- 학교 : 14,135.6㎡

•순부담 기준
①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②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
③주거용도 전환에 따른 순부담 : 10%
(※ 중심시설용지 12,449.9㎡)</td><td>지침도에 따름</td></tr>
<tr><td rowspan="2">용도계획</td><td>불허용도</td><td>획지 C1,D1, E1,F1</td><td>•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d>획지 C1,D1, E1</td><td>•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d></td></tr>
<tr><td>획지 E2</td><td>•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td><td colspan="2">-</td><td></td></tr>
</table>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의 운영기준 적용			
	허용 용도	획지 C1,D1, E1,F1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획지 C1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획지 D1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획지 E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 용도	획지 E2	전층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저층부 (1~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			
밀도계획	건폐율	•50% 이하			획지 C1	•50% 이하	
					획지 D1	•60% 이하	
					획지 E1	•관계 법령에 따름	
	용적률	획지 C1,D1, E1,F1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본 지구단위계획 "3-3.-다. 허용용적률 의무사항" 준수 ※ 현재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지역은 본 지구단위계획 "3-3.-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에서 정한 기준(허용)용적률 적용 ※ 본 지구단위계획 "3-3.-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별도 협의하여 진행	획지 C1	•기준(허용) 용적률 (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 230% 이하 •상한 용적률 : 300% 이하	
					획지 D1	•기준(허용) 용적률 (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 23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획지 E1	•관계 법령에 따름	
		획지 E2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높이	획지 C1,D1, E1,F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획지 C1	•최고높이 250m 이하 ※ 랜드마크타워는 최고높이 250m 이하, 65층 2개동으로 계획하고, 그 외 동은 50층이하, 200m 이하로 계획(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로 계획)	지침도에 따름
					획지 D1		
					획지 E1	•관련법령에 따름	
		획지 E2		•5층 이하 - 공동주택 통합개발 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 C1		•건축한계선 - 올림픽대로(한강변 굴곡부) 20m, 논현로(동호대교) 10m, 한강변 연접부(중로 2-109) 6m, 한강변 연접부(녹지②) 6m •벽면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 광역통경축변 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벽면 후퇴 (11	획지 C1	•건축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10m, 언주로변(성수대교) 10m, 그 외 도로변 6m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층이상부터 적용)			
		획지 D1	•건축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10m,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 1-6) 10m, 한강변 연접부(중로 2-109) 6m, 압구정로 6m, 이면부(이면도로) 3m •벽면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 광역통경축변 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벽면 후퇴 (11층이상부터 적용)	획지 D1	•건축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10m, 압구정로변 6m, 그 외 도로변 6m	
		획지 E1	•건축한계선 -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 1-6) 10m,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 2-8) 10m, 한강변 연접부(중로 2-109) 6m, 이면부(이면도로) 3m	-		
		획지 E2	•건축한계선 -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 1-6) 10m, 압구정로 6m,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 2-8) 3m, 이면부(이면도로) 1m	-		
		획지 F1	•건축한계선 - 언주로(성수대교) 10m,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 2-8) 10m, 한강변 연접부(중로 2-109) 6m •벽면한계선 - 언주로(성수대교) : 광역통경축변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벽면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근린광장(권장)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전면 공지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형 공지 조성 - 논현로변 : 폭원 10m - 언주로변 : 폭원 10m - 압구정로 및 그 외 도로변 : 폭원 6m	지침도에 따름
				통로	•남북간도로 연계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계획 (폭원 21~25m, 구분시상권 설정)	
				입체 보행 시설물	•중로 2-A : 추후 학교 기본설계 등을 고려하여 단지와 초등학교 사이 단차를 고려한 입체보행 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길 조성 권장	
건축물 배치 및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수변부건축물 디자인 특화구간,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수변 디자인 특화	•한강변 : 폭 24m •한강변 첫 주동 : 20층 내외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형태 기타 외관 요소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구간	•한강 조망하는 주민공동시설, 플로팅 주거, 복층형, 테라스형 등 특화 주동 권장	
			가로 활성화 특화 구간	•논현로변 : 폭 20m •가로변 저층 연도형 상가 및 보행 친화적 디자인 계획 권장	
			디자인 타워 배치 구간	•한강변 경관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디자인 형태의 고층 타워형 주동 권장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 노출 금지		
	기타 외관 요소	•옥외설비, 담장의 설치, 광고물 설치제한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통경축	•압구정역에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보행통경축 2개소 확보(폭원 30m)	
			스카이라인	•한강, 압구정로 등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시 초고층 허용 및 한강변 첫주동 층수계획 유연하게 적용 •광역통경축(동호대교 및 성수대교변)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V'자형 스카이라인 등 다채로운 경관 형성 •압구정로변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 •보행통경축, 가로활성화구간 개방된 시야확보 권장	
			저층부 외관	•주가로에 면한 1층 벽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1층 개구부 높이 통일	
			재료 및 색채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진입구 처리	•건축물의 주 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접근로는 유효 폭 1.8m 이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재료 및 형태로 함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 보행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열린 단지 •수변디자인 특화구간 및 논현로, 압구정로 등 일부구간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열린단지 조성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 본 지구단위계획 "4-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차량출입구 - 획지 C1 : 6개소 - 획지 D1 : 이면도로 2개소 - 그 외 : 지침도에 따름 •차량출입불허구간 : 압구정로, 논현로 등 간선부에서 직접 진출입 불허 (지침도에 따름) ※ 추후, 학교 기본설계 시 출입구 계획에 따라 압구정 초등학교변 차량출입불허 구간 변경 가능 •지하철출입구 : 획지 내 압구정역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통로 조성 •학교 가는 길 - 압구정 초·중·고등학교~청담초·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학교 가는 길) 조성 - 24시간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지침도에 따름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3.03)」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1~2인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공공주택은 내·외부 마감재 품질 등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시 동일수준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동일조건으로 동호수 추첨 배정하여 계층 혼합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지역여건, 상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획지E2 주거용도 허용여부 및 비율 결정 •기존 중심시설 용지의 높이 및 건폐율 관련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 창의적인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완화 가능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3.03)」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1~2인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공공주택은 내·외부 마감재 품질 등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시 동일수준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동일조건으로 동호수추첨 배정하여 계층 혼합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기존 중심시설용지의 높이 및 건폐율 관련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 창의적인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완화 가능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서울시 정비지원 신속통합기획(서울특별시)」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용도완화 계획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제한 완화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 4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5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6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7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8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9 (변경없음)

9.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철거 후 신축 시 적용)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택 (RA-3, RA-(3))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공동주택 (RA-3, RA-(3))	• 학교·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 차량진출입을 허용하며, 신축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지침 적용

10.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획지는 제외)
2. 자율적 공동개발, 단, 일반필지 공동개발에 따라 대지규모가 3,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구역과 공동개발에 따라 재건축구역(공동개발하려는 필지 중 가장 큰 필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
3.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4.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 변경
5. 대지 내 통로(공공보행통로)의 성격, 설계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에 한함)의 변경
6. 법령이나 지침의 재·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7.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 차량 출입구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 상기 경미한 변경 사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며, 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만 적용

Ⅳ. 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 수립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3	압구정동 369-1 일대	397,815.7	증) 2,817.5	400,633.2	현대1,2,3,4,5,6,7,10,13, 14차APT,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특별계획구역 3	•면적 변경 - 397,815.7㎡→400,633.2㎡ (증 2,817.5㎡)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0,187.8	증) 40,445.4	400,633.2	100.0	-
주거지역	소계	360,187.8	증) 6,452.3	366,640.1	91.5	
	제1종일반주거지역	4,842.3	증) 7,764.2	12,606.5	3.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0,569.8	감) 26,434.2	14,135.6	3.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10.0	감) 29,11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85,665.7	증) 25,261.7	310,927.4	77.6	-
	준주거지역	-	증) 28,970.6	28,970.6	7.2	-
녹지지역	소계	-	증) 33,993.1	33,993.1	8.5	-
	자연녹지지역	-	증) 33,993.1	33,993.1	8.5	-

■ 결정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변경 - 4,842.3㎡ → 12,606.5㎡	•재건축사업을 위해 이전하는 압구정 초등학교와 근린공원을 제외, 획지1(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근린공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압구정 초등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위치 및 면적 변경 - 40,569.8㎡ → 14,135.6㎡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및 면적 변경 - 29,11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및 면적 변경 - 285,665.7㎡ → 310,927.4㎡	
준주거지역	•신설 (28,970.6㎡)	•역세권 활성화 및 복합기능을 고려한 준주거지역 신설(획지2)
자연녹지지역	•구역내 편입	•재건축사업을 통해 한강변 덮개공원 조성을 위한 자연녹지지역 구역 내 편입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아파트지구	-	압구정동	836,456.5	-	건고 제1976-131호 (1976.08.21.)	압구정지구
기정	②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IC~청담사거리	50,016.0	편측 18	서고 제2019-129호 (2019.4.17.)	압구정로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18	40	주간선도로	6,500 (184)	압구정동	포이동	일반도로	-	건고 제46호 (1976.4.7.)	언주로(성수대교) 중복결정: (3구역,4구역) 중로1-C, 중로2-109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도로	4,300	청담동	잠원동	일반도로	-	건고 제503호 (1969.8.27.)	압구정로
변경	대로	2	28	30~45 (38~45)	보조간선도로	4,300 (368)	청담동	잠원동	일반도로	-	건고 제503호 (1969.8.27.)	
기정	대로	2	63	30~65	주간선도로	4,100	장충체육관 (중로2-109)	압구정동 (대로2-28)	일반도로	-	건고 제426호 (1978.12.29)	논현로(동호대교)
변경	대로	2	63	30~65 (50~62)	주간선도로	4,100 (588)	장충체육관 (중로2-109)	압구정동 (대로2-28)	일반도로	-	건고 제426호 (1978.12.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1	6	23.5	국지도로	486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신설	중로	1	B	21	국지도로	196	대로2-28	중로2-A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1	C	20~22	국지도로	117.3	압구정동 481	광로2-18	지하도로	-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4구역)
변경	중로	1	C	20~22 (22)	국지도로	301.3 (184)	문화공원①	중로2-109	지하도로	-	서고 제2025-503호 (2025.9.11.)	중복결정 : 문화공원①, 중로 2-109, 광로 2-18
기정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	건고 제198호 (1971.4.7)	올림픽대로
변경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	건고 제198호 (1971.4.7)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 문화공원② (덮개공원)
기정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제635호 (1983.11.25)	올림픽대로
변경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 제635호 (1983.11.25)	올림픽대로, 중복결정 : 문화공원② (덮개공원)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도로	4,100 (859)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	서고 제198호 (1971.04.07)	-
변경	중로	2	109	11~35	국지도로	4,227 (986)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	서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문화공원①, 중로1-C, 소로1-A
신설	중로	2	A	18~20	국지도로	740	대로2-63 (논현로)	중로 2-109	일반도로	-	-	일부 구간 입체적 결정 (연장 192m / 연장 10m)
신설	중로	2	B	15	국지도로	290	중로1-B	중로2-A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8	16.5	국지도로	420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3	A	12	국지도로	224	대로2-28	중로2-A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폐지	중로	3	5	12~15	국지도로	206	압구정 449	중로1-6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폐지	중로	3	7	12	국지도로	246	중로1-6	중로2-8	일반도로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소로	1	A	11.5	국지도로	160	압구정동 392 일대	압구정동 390 일대	지하도로	-	서고 제2025-136호 (2025.03.13.)	(2구역)
변경	소로	1	A	11.5	국지도로	409 (249)	압구정동 392 일대	문화공원①	지하도로	-	서고 제2025-136호 (2025.03.13.)	중복결정 : 문화공원①, 중로2-109, 대로2-6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A	9	국지도로	45	중로1-B	근린공원①	일반도로	-	-	-

※ 연장 내 ( )는 압구정3구역 정비구역 내 수치임
※ 중로1-C, 소로1-A 비고(중복결정) 내용은 압구정3구역 내 중복결정 항목임
※ 지하도로(중로1-C)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4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할 것 (설치비용은 압구정4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 지하도로(소로1-A)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압구정2구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검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할 것 (설치비용은 압구정2구역과 1/2씩 부담하고, 시행주체는 추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강남구에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28	대로2-28	•도로 확폭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압구정로) 확폭
대로2-63	대로2-63	•도로 확폭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논현로) 확폭
중로1-6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	중로1-B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1-C	중로1-C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3~4구역) •문화공원①, 중로2-109와 중복결정
중로1-136	중로1-136	•도로 중복결정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문화공원②(덮개공원)와 중복결정
중로2-289	중로2-289	•도로 중복결정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문화공원②(덮개공원)와 중복결정
중로2-109	중로2-109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도로 상부 공원 및 녹지 중복결정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발생교통량 및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도로계획 변경(확폭 및 연장 확대) (문화공원②(덮개공원), 중로1-C, 소로1-A와 중복결정) •획지1에서 문화공원②(덮개공원)으로 직접적인 보행연결을 위해 도로 상부 공원 및 녹지와 중복결정
-	중로2-A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2-A 구간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획지1 및 획지1~2간 일부 구간 입체적 결정
-	중로2-B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중로2-8	중로3-A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축소)
중로3-5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중로3-7	-	•도로 폐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로 폐지
소로1-A	소로1-A	•지하도로 확장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신설(압구정2~3구역) •대로2-63, 중로2-109,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	소로2-A	•도로 신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교통량·보행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신설	-	중로 2-A	압구정동 456 일대	연장	192m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폭	18m	
				높이	해발 18.5m ~ 27.0m	
				면적	3,525.4㎡	
신설	-	중로 2-A	압구정동 456 일대	연장	10m	획지1~2간 지하연결을 위해 도로 입체적 결정
				폭	18m	
				높이	해발 18.5m ~ 27.0m	
				면적	183.0㎡	

※ 입체적 결정 범위 규모(연장, 높이 등)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입체적 결정 도로는 향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강남구청과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 2-A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18m / 192m - 높이 : 해발 18.5m ~ 27.0m - 면적 : 3,525.4㎡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1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	중로 2-A	•획지1 내 도로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18m / 10m - 높이 : 해발 18.5m ~ 27.0m - 면적 : 183.0㎡	•획지1~2간 지상부는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보행연결 구간으로 조성하고, 지하부는 차량통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공영주차장	압구정동 369-1	-	증) 3,880.0	3,880.0 (수평투영면적)	-	문화공원① 중복결정

※ 주차장 규모는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공원조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적 : 3,880.0㎡	•문화공원②등 한강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차량이용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주차장을 신설하고, 문화공원①과 중복결정

다.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대			-	5,800.0 (2,506.0)	서고287호 (1981.07.30.)	중복결정 : 대로2-63, 대로2-30
변경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대			-	6,904.0 (3,610.0)	서고287호 (1981.07.30.)	중복결정: 대로2-28, 대로2-30, 대로2-63
기정	①	철도	일반철도 (GTX A호선)	은평구 갈현동 산131-1	강남구 삼성동 111-8	연신내역 서울역	20,515	320,453.6	국토부고시 제2018-932호 (2018.12.31.)	중복결정:완충녹지② (환기구)

※ ( )는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구역 내 일반철도①(GTX A호선, 환기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과 관계 없음 (완충녹지와 함께 존치시설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철도	•철도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5,800.0㎡ → 6,904.0㎡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압구정역 1번 출입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철도 선형 및 면적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신설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연장	38.2m	획지2 내 철도 입체적 결정
				폭	7.4m ~ 19.2m	
				높이	해발 17.49m ~ 27.0m	
				면적	633.2㎡	

※ 입체적 결정 범위 규모(연장, 높이 등)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현황측량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철도	•획지2 내 철도 입체적 결정 - 폭원 및 연장 : 7.4~19.2m / 38.2m - 높이 : 해발 17.49m ~ 27.0m - 면적 : 633.2㎡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압구정역 1번 출입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획지2 내 포함되는 지하철 출입구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철도 입체적 결정

라.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479 일대	5,696.0	증) 255.4	5,951.4	-	중복결정: 일반철도①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녹지	•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5,696㎡ → 5,951.4㎡	•존치시설인 완충녹지에 대하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신설도로 경계부를 따라 완충녹지 선형 조정

마.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문화공원	압구정동 369-1 일대	-	증) 33,411.0	33,411.0	-	중복결정 : 중로2-109 (중복면적 : 19,181.4㎡), 중로1-C, 소로1-A, 중복결정 : 주차장① (중복면적 : 3,880㎡)
신설	②	공원	문화공원	압구정동 372-2	-	증) 28,164.1	28,164.1	-	(덮개공원)중복결정 : 중로1-136, 중로2-289, 방재시설(하천)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압구정동 458 일대	-	증) 12,095.6	12,095.6	-	-

※ 문화공원②(덮개공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예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원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33,411.0㎡	•한강 접근성 향상 및 수변특화를 위해 문화공원 신설하되, 획지1에서 문화공원으로의 보행 직접연결을 위해 도로(중로2-109, 중복면적 : 19,181.4㎡)와 중복결정 •압구정아파트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로1-C, 소로1-A과 중복결정 •덮개공원 등 한강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차량이용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신설하는 주차장①과 중복결정
②	공원	•문화공원(덮개공원) 신설 - 면적 28,164.1㎡	•한강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신설 (올림픽대로 중로1-136, 중로 2-289, 방재시설(하천)과 중복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2,095.6㎡	•여가·휴식 기능을 위한 학교 및 공공청사변 근린공원 신설

바.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학교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학교	초교	초교·유치원	압구정초교	압구정동 461	압구정동 459 일대	14,135.6	-	14,135.6	서고(1975.12.08.)	-

※ 이전하는 압구정 초등학교 내 병설 유치원 신설 계획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압구정초교	•학교 이전 - 압구정동 461 → 압구정동 459 일대 •시설의 세분 : 초교 → 초교·유치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압구정초등학교 이전

사.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압구정동 458 일대	-	증) 2,282.8	2,282.8	-	-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압구정동 458 일대	50%	250%	5층 이하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2,282.8㎡	•기존 압구정동 주민센터 및 치안센터의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아. 하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하천	국가하천	경기도 김포군 시계	경기도 하남시 시계	-	40,747,864 (28,164.1)	-	증복결정:문화공원② (덮개공원)

※ ( )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구역 내 수치임

4.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C	압구정동 369-1일대		82,445.6	증) 158,000.4	240,446.0	특별계획구역 3 (F가구 변경 후 면적은 존치시설인 압구정중,고등학교 면적(32,151.6㎡)임)
D	압구정동 447일대	압구정동 450일대	100,258.8	감) 71,288.2	28,970.6	
E	압구정동 458일대		123,404.2	감) 93,793.4	29,610.8	
F	압구정동 464일대		58,295.4	감) 26,143.8	32,151.6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C	•가구 위치 및 면적 변경 - 면적 : 82,445.6㎡ → 240,446.0㎡ (증 158,000.4㎡)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가구계획 변경
D	•가구 위치 및 면적 변경 - 면적 : 100,258.8㎡ → 28,970.6㎡ (감 71,288.2㎡)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가구계획 변경
E	•가구 위치 및 면적 변경 - 면적 : 123,404.2㎡ → 29,610.8㎡ (감 93,793.4㎡)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가구계획 변경
F	•가구 면적 변경 - 면적 : 58,295.4㎡ → 32,151.6㎡ (감 26,143.8㎡)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가구계획 변경

2)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획지					비고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C	C1	압구정동 369-1일대	76,750.0	증) 163,696.0	240,446.0	특별계획구역 3 (현대1,2,3,4,5,6,7,10,13,14차 APT,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D	D1	압구정동 447일대	97,526.4	감) 68,555.8	28,970.6	
E	E1	압구정동 455일대	96,148.0	감) 95,050.7	1,097.3	
	E2	압구정동 458일대	10,035.6	감) 10,035.6	-	
F	F1	압구정동 465일대	26,201.6	감) 26,201.6	-	

※ 상기면적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획지번호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변경후	
C1	76,750.0	증) 163,696.0	240,446.0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획지계획 변경
D1	97,526.4	감) 68,555.8	28,970.6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획지계획 변경
E1	96,148.0	감) 95,050.7	1,097.3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획지계획 변경
E2	10,035.6	감) 10,035.6	-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획지계획 변경
F1	26,201.6	감) 26,201.6	-	•정비계획(3구역) 수립에 따라 획지계획 변경

나.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허용용도	획지 C1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좌동	
		획지 D1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좌동	
		획지 E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좌동	

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밀도 계획	건폐율	획지C1	•50% 이하	좌동	
		획지D1	•60% 이하		
		획지E1	•관계 법령에 따름		
	용적률	획지C1	•기준(허용) 용적률 (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 230% 이하 •상한 용적률 : 300% 이하	•기준용적률 : 224.5% 이하 (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상한용적률 : 269.8%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300.0% 이하	
		획지D1	•기준(허용) 용적률 (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 23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기준용적률 : 230.0% 이하 (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상한용적률 : 300.4%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436.9% 이하	
		획지 E1	•관계 법령에 따름	좌동	
	높이	획지 C1	•최고높이 250m 이하 ※ 랜드마크타워는 최고높이 250m이하, 65층 2개동으로 계획하고, 그 외 동은 50층이하, 200m이하로 계획(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 계획)	좌동	
		획지 D1			
		획지 E1	•관련법령에 따름	좌동	

라. 건축선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 C1	•건축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 10m - 언주로변(성수대교) : 10m - 그 외 도로변 : 6m	좌동	지침도에 따름
		획지 D1	•건축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 10m - 압구정로변 : 6m - 그 외 도로변 : 6m		
	대지내공지 및 통로	전면 공지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형 공지 조성 - 논현로변 : 폭원 10m - 언주로변 : 폭원 10m - 압구정로 및 그 외 도로변 : 폭원 6m	좌동	지침도에 따름
		통로	•남북간도로 연계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계획 (폭원 21~25m, 구분지상권 설정)		
		입체보행 시설물	•중로2-A: 추후 학교 기본설계등을 고려하여 단지와 초등학교 사이 단차를 고려한 입체보행 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길 조성 권장		

마.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수변 디자인 특화구간	•한강변 : 폭 24m - 한강변 첫 주동 : 20층 내외 •한강 조망하는 주민공동시설, 플로팅 주거, 복층형, 테라스형 등 특화주동 권장	좌동	지침도에 따름
	가로 활성화 특화구간	•논현로변 : 폭 20m •가로변 저층 연도형 상가 및 보행친화적 디자인 계획 권장	좌동	
	디자인 타워 배치구간	•한강변 경관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디자인 형태의 고층 타워형 주동 권장	좌동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금지		좌동	
기타 외관요소	통경축	•압구정역에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보행통경축 2개소 확보(폭원 30m)	좌동	지침도에 따름
	스카이라인	•한강, 압구정로 등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시 초고층 허용 및 한강변 첫주동 층수계획 유연하게 적용 •광역통경축(동호대교 및 성수대교변)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V'자형 스카이라인 등 다채로운 경관 형성 •압구정로변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 •보행통경축, 가로활성화구간 개방된 시야확보 권장	좌동	
	저층부 외관	•주가로에 면한 1층 벽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1층 개구부 높이 통일	좌동	
	재료 및 색채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좌동	
	진입구 처리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접근로는 유효 폭 1.8m 이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함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 보행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좌동	
	열린단지	•수변디자인 특화구간 및 논현로, 압구정로 등 일부구간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열린단지 조성	좌동	

바.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구 - 획지 C1 : 6개소 - 획지 D1 : 이면도로 2개소 - 그 외 : 지침도에 따름 •차량출입불허구간 : 압구정로, 논현로 등 간선부에서 직접 진출입 불허 (지침도에 따름) ※ 추후, 학교 기본설계 시 출입구 계획에 따라 압구정 초등학교변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가능 •지하철출입구 : 획지 내 압구정역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통로 조성 •학교가는길 - 압구정 초·중·고등학교 ~ 청담초·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동선(학교가는길) 조성 - 24시간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좌동	지침도에 따름

사.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3.03)」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1~2인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공공주택은 내·외부 마감재 품질 등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시 동일수준 건축기준을 적용 하고, 동일조건으로 동호수추첨 배정하여 계층 혼합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기존 중심시설 용지의 높이 및 건폐율 관련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 창의적인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완화 가능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좌동	지침도에 따름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 조서(종합)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2">특별계획구역 3 계획지침</th><th>세부개발계획</th><th>비고</th></tr>
<tr><td colspan="3">위치</td><td colspan="2">•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td><td>좌동</td><td></td></tr>
<tr><td colspan="3">구역면적</td><td colspan="2">•400,633.2㎡</td><td>좌동</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지구</td><td colspan="2">•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아파트지구</td><td>좌동</td><td></td></tr>
<tr><td colspan="3">획지계획</td><td colspan="2">•획지(C1) : 240,446.0㎡
•획지(D1) : 28,970.6㎡
•획지(E1) : 1,097.3㎡</td><td>좌동</td><td></td></tr>
<tr><td colspan="3">기반시설계획</td><td colspan="2">•기반시설 계획 : 130,119.3㎡
- 도로 : 53,260.2㎡
- 공원 : 54,489.3㎡ (도로 중복면적 제외)
- 녹지 : 5,951.4㎡
- 공공청사 : 2,282.8㎡
- 학교 : 14,135.6㎡</td><td>좌동</td><td></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 등 계획</td><td colspan="2">•순부담 기준
①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10% 내외 원칙
②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
③주거용도 전환에 따른 순부담 : 10%
(※ 증심시설용지 12,449.9㎡)</td><td>•순부담 기준 : 13.0%
•순부담 계획 : 15.0%</td><td></td></tr>
<tr><td rowspan="5">용도</td><td colspan="2">불허용도</td><td colspan="2">•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d>좌동</td><td></td></tr>
<tr><td rowspan="4">허용용도</td><td>획지 C1</td><td>•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td><td>좌동</td><td rowspan="4"></td></tr>
<tr><td>획지 D1</td><td>•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td><td>좌동</td></tr>
<tr><td>획지 E1</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td><td>좌동</td></tr>
<tr><td rowspan="2">밀도 계획</td><td rowspan="2">건폐율</td><td>획지C1</td><td>•50% 이하</td><td rowspan="2">좌동</td><td rowspan="2"></td></tr>
<tr><td>획지D1</td><td>•60% 이하</td></tr>
</table>

구분			특별계획구역 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획지E1	•관계 법령에 따름		
	용적률	획지C1	•기준(허용) 용적률 (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 230% 이하 •상한 용적률 : 300% 이하	•기준용적률 : 224.5% 이하 (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상한용적률 : 269.8%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300.0% 이하	
		획지D1	•기준(허용) 용적률 (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 23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기준용적률 : 230.0% 이하 (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상한용적률 : 300.4%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436.9% 이하	
		획지 E1	•관계 법령에 따름	좌동	
	높이	획지 C1 획지 D1	•최고높이 250m 이하 ※ 랜드마크타워는 최고높이 250m 이하, 65층 2개 동으로 계획하고, 그 외 동은 50층이하, 200m 이하로 계획(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로 계획)	좌동	
		획지 E1	•관련법령에 따름	좌동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 C1	•건축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 10m - 언주로변(성수대교) : 10m - 그 외 도로변 : 6m	좌동	지침도에 따름
		획지 D1	•건축한계선 - 논현로(동호대교) : 10m - 압구정로변 : 6m - 그 외 도로변 : 6m		
	대지내 공지 및 통로	전면 공지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형 공지 조성 - 논현로변 : 폭원 10m - 언주로변 : 폭원 10m - 압구정로 및 그 외 도로변 : 폭원 6m	좌동	지침도에 따름
		통로	•남북간도로 연계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계획 (폭원 21~25m, 구분지상권 설정)		
		입체보행 시설물	•종로2-A: 추후 학교 기본설계등을 고려하여 단지와 초등학교 사이 단차를 고려한 입체보행 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길 조성 권장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수변 디자인 특화구간	•한강변 : 폭 24m - 한강변 첫 주동 : 20층 내외 •한강 조망하는 주민공동시설, 플로팅 주거, 복층형, 테라스형 등 특화주동 권장	좌동	지침도에 따름

구분	특별계획구역 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가로 활성화 특화구간	•논현로변 : 폭 20m •가로변 저층 연도형 상가 및 보행친화적 디자인 계획 권장	좌동	
	디자인 타워 배치구간	•한강변 경관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디자인 형태의 고층 타워형 주동 권장	좌동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금지		좌동	
기타 외관요소	통경축	•압구정역에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보행통경축 2개소 확보(폭원 30m)	좌동	지침도에 따름
	스카이라인	•한강, 압구정로 등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시 초고층 허용 및 한강변 첫주동 층수계획 유연하게 적용 •광역통경축(동호대교 및 성수대교변)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V'자형 스카이라인 등 다채로운 경관 형성 •압구정로변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 •보행통경축, 가로활성화구간 개방된 시야확보 권장	좌동	
	저층부 외관	•주가로에 면한 1층 벽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1층 개구부 높이 통일	좌동	
	재료 및 색채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좌동	
	진입구 처리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접근로는 유효 폭 1.8m 이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함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 보행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좌동	
	열린단지	•수변디자인 특화구간 및 논현로, 압구정로 등 일부구간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열린단지 조성	좌동	

구분	특별계획구역 3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구 - 획지 C1 : 6개소 - 획지 D1 : 이면도로 2개소 - 그 외 : 지침도에 따름 •차량출입불허구간 : 압구정로, 논현로 등 간선부에서 직접 진출입 불허 (지침도에 따름) ※ 추후, 학교 기본설계 시 출입구 계획에 따라 압구정초등학교변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가능 •지하철출입구 : 획지 내 압구정역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통로 조성 •학교가는길 - 압구정 초·중·고등학교 ~ 청담초·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동선(학교가는길) 조성 - 24시간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좌동	지침도에 따름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3.03)」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1~2인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공공주택은 내·외부 마감재 품질 등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시 동일수준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동일조건으로 동호수추첨 배정하여 계층 혼합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기존 증심시설 용지의 높이 및 건폐율 관련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 창의적인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완화 가능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좌동	지침도에 따름

Ⅴ. 2025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table>
<tr><th>연번</th><th>심의의견</th><th>조치계획</th><th>비고</th></tr>
<tr><td rowspan="2">1</td><td>[수정사항]</td><td></td><td></td></tr>
<tr><td>•구역면적, 획지면적, 용적률 계획, 공공기여 계획, 높이 계획, 비주거비율, 주택공급계획 및 건축한계선 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td><td>-</td><td>-</td></tr>
<tr><td>2</td><td>•랜드마크타워 높이는 특화설계를 전제로 250m 이하 2개동으로 결정하고, 그 외 동은 50층 이하, 200m 이하로 할 것(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td><td>•랜드마크타워는 최고높이 250m 이하, 65층 2개동으로 계획하고, 그 외 동은 50층 이하, 200m 이하로 계획함 (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로 계획함)</td><td>반영</td></tr>
<tr><td>3</td><td>•보행통경축(20m)은 30m 이상 확보하고, 통경축 1개소 이상 추가 확보</td><td>•보행통경축은 30m로 확폭하고, 단지 내 통경축 추가 확보함</td><td>반영</td></tr>
<tr><td>4</td><td>•한강변 개방감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컨셉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건축물 배치계획, 평면계획 조정</td><td>•한강변 텐트형 스카이라인 및 광역통경축 v자형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높이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컨셉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조성</td><td>반영</td></tr>
<tr><td>5</td><td>•중심시설용지에 대한 주거용도 전환 시 공공기여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td><td>•중심시설 용지 중 실제 주거용도로 전환되는 구간에 대하여 공공기여 기준 및 계획 면적 조정함
- 현대백화점 컬쳐파크(1,462.8㎡) 부지 주거용도 전환 면적 포함
- 이전하는 압구정교회(1,097.3㎡), 압구정동 주민센터·치안센터(2,282.8㎡) 제외
<table>
<tr><th>구분</th><th>심의(안)</th><th>조치(안)</th></tr>
<tr><td>주거용도 전환면적</td><td>13,269.9㎡ (분구중심, 주구중심:금강쇼핑센터, 압구정동 주민센터)</td><td>12,449.9㎡ (감 820.0㎡) (분구중심, 주구중심:금강쇼핑센터, 현대백화점 컬쳐파크)</td></tr>
</table></td><td>반영</td></tr>
<tr><td>6</td><td>•보차혼용통로는 구분지상권으로 설정하여 지상 및 지하 외부 통행을 담보할 것</td><td>•보차혼용통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음</td><td>반영</td></tr>
<tr><td>7</td><td>•보차혼용통로 지상부 병목구간은 유효 보도폭 확대</td><td>•보차혼용통로 지상부 병목이 예상되는 입구부분의 유효 보도폭을 21m → 25m로 확대 (양측 보도폭 2m→ 4m)</td><td>반영</td></tr>
<tr><td rowspan="2">1</td><td>[조건사항]</td><td></td><td></td></tr>
<tr><td>•2열 주동 사이에 배치한 한강변 첫 주동 배치계획은 초고층 허용 취지 및 한강변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2열 주동 앞 배치</td><td>•한강변 첫 주동은 2열 주동 앞에 배치하여 한강변 개방감을 높임</td><td>반영</td></tr>
<tr><td>2</td><td>•4호 조합의 장방형 주호 형태는 5호 조합(소형주택 혼합 시 6호 가능)으로 변경을 통해 주동 개수를 최소화하고, 통경축 확보 및 차폐감 완화할 수 있는 주동 형태 면밀히 검토할 것</td><td>•4호+5호 배치로 주동 개수를 2개동 축소하고, 주동배치를 조정하여 통경축 및 한강변 개방감 확보로 차폐감을 완화</td><td>반영</td></tr>
</table>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3	•대상지 북측 데크조성계획은 압구정 4,5구역 데크조성 계획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폭원을 최대한 줄이고, 조성형태 및 접근동선 등에 대한 면밀히 검토할 것	•데크A의 폭원을 축소하고, 데크B를 삭제하여 전체 데크면적을 축소하고, 자연스러운 보행흐름을 위한 형태로 계획함	반영
4	•획지1 일부분을 +25m로 대지조성 계획한 것은, 주변과 동일하도록 +19m로 조정할 것	•데크B(획지1 일부분 +25로 대지조성한 부분) 삭제하고, 주변과 동일한 레벨인 +19로 조정함	반영
5	•보행통경축 외 통경축을 추가 확보하여 단지 내에서 한강변으로의 광역통경축 2개소 이상 확보할 것	•기존 보행 통경축 외에 통경축을 추가 확보(약 20m)하여 단지 내에서 한강변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증가	반영
6	•덮개공원에 일반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 조성	•한강 전망, 수변문화, 휴식, 놀이기능의 시설을 조성하여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덮개공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	반영
7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열린단지는 계획을 보다 적극적·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학교 가는 길, 수변디자인 및 가로활성화 특화 구간에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담장불허 구간을 설정하여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계획	반영
8	•남측 완화차로 조성 시 버스 정류장 위치 조정 방안 등 검토	•향후 통합심의 시, 버스정류장 위치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9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건축위원회(정비사업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전,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향후 통합심의 절차 전, 정비계획(안) 보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 문화공원②(덮개공원)에 의하여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심의 시 조정 가능

Ⅵ.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관련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Ⅶ.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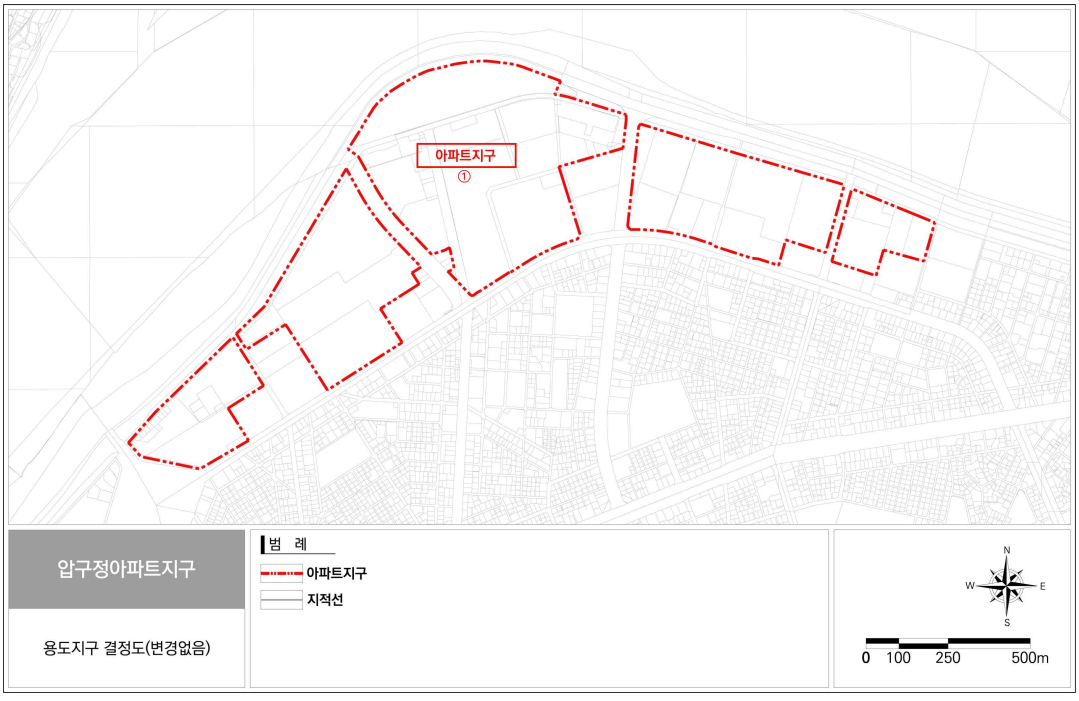
Ⅷ.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7)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6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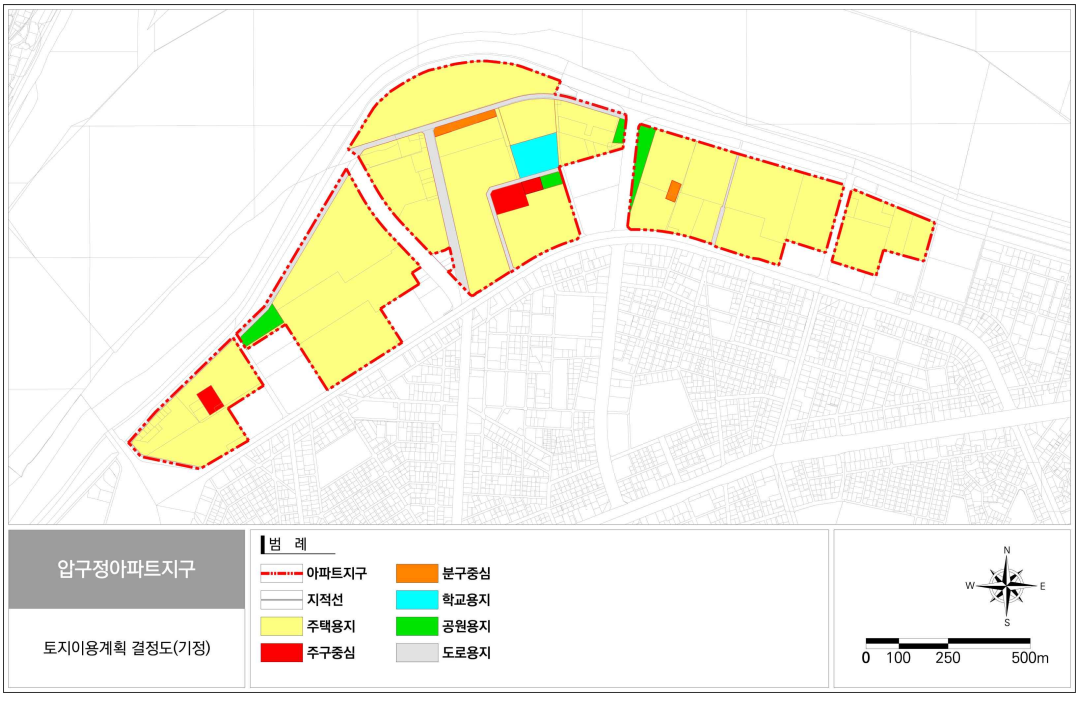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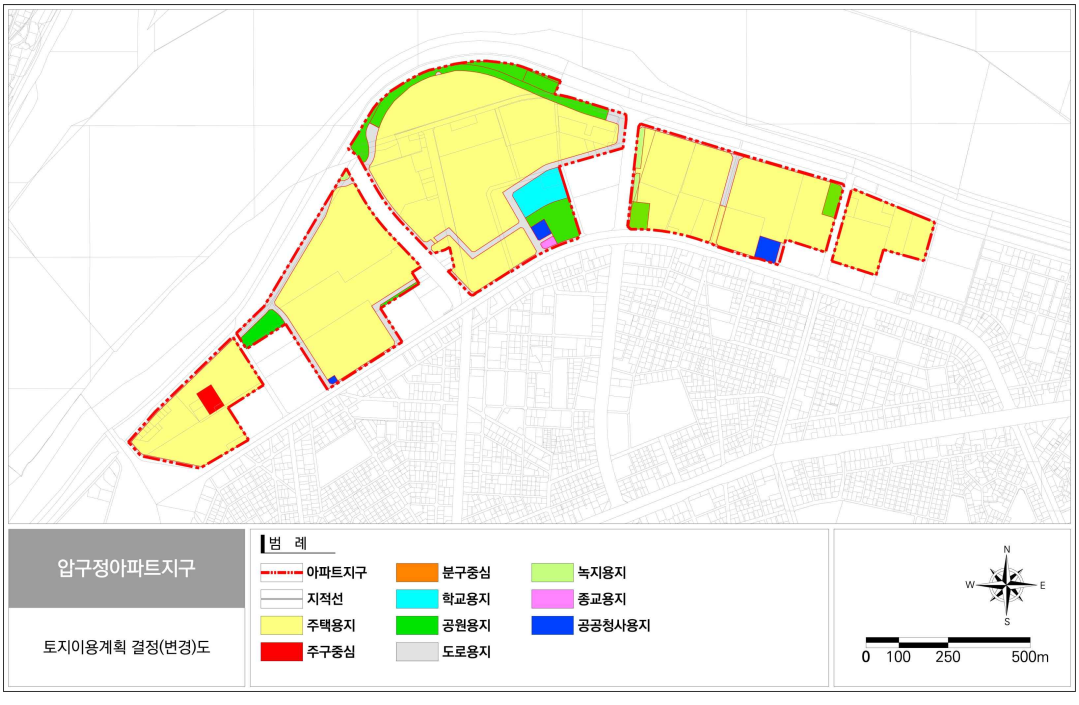
■ 압구정아파트지구 용도지구(아파트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압구정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기정)



■ 압구정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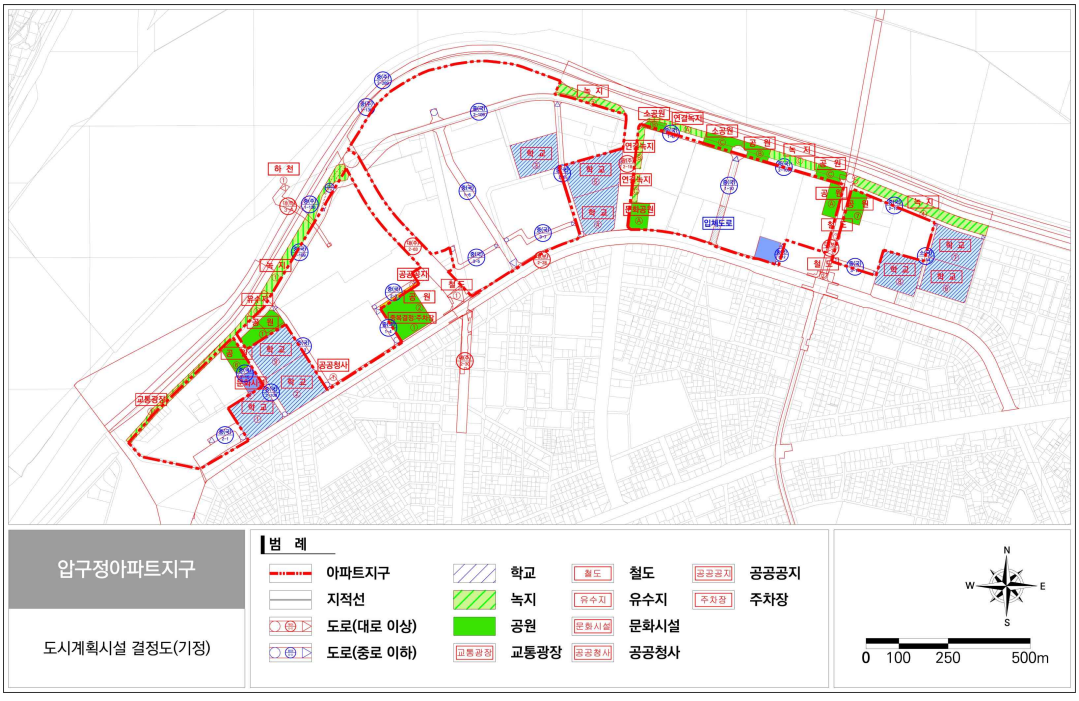
■ 압구정아파트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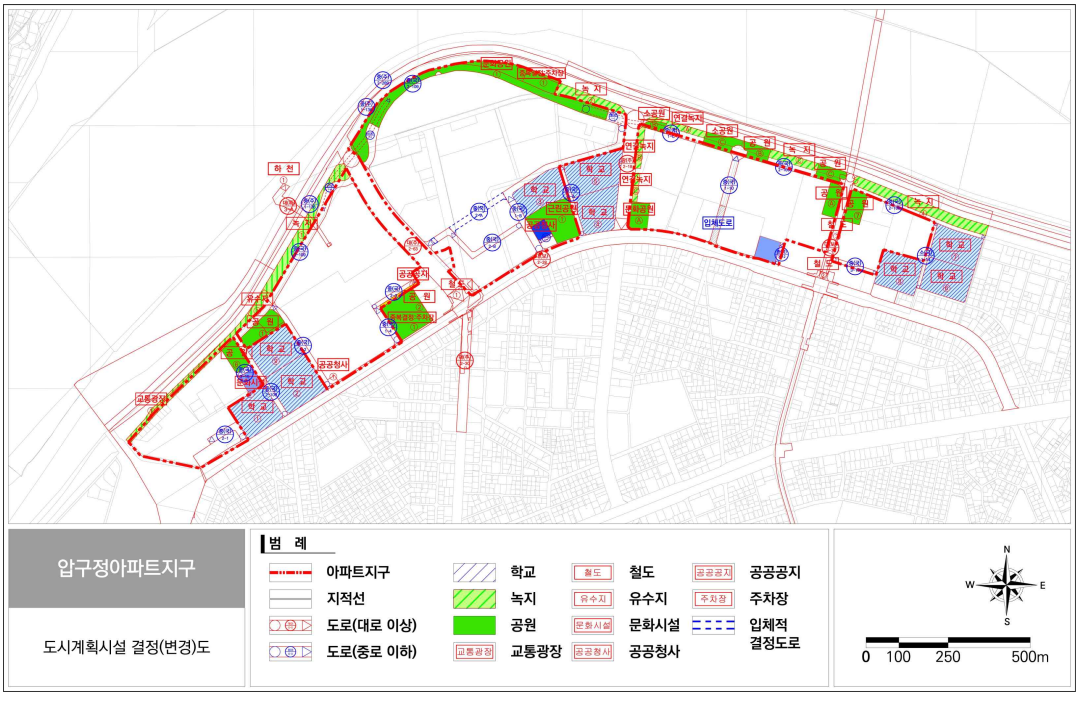
■ 압구정아파트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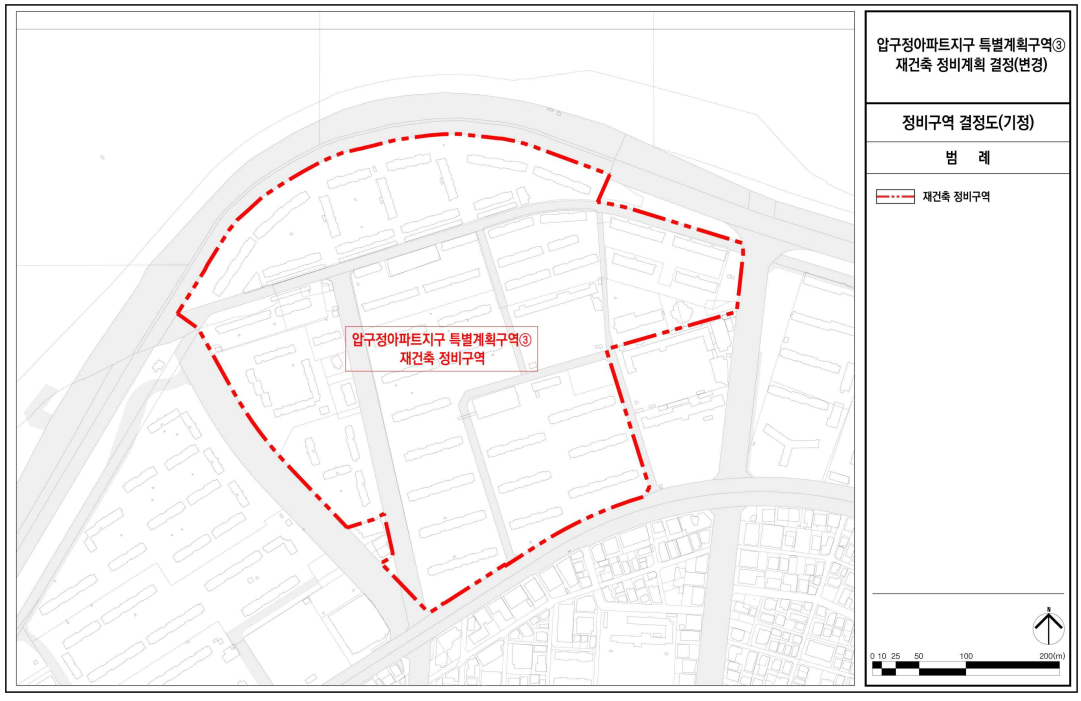
■ 압구정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압구정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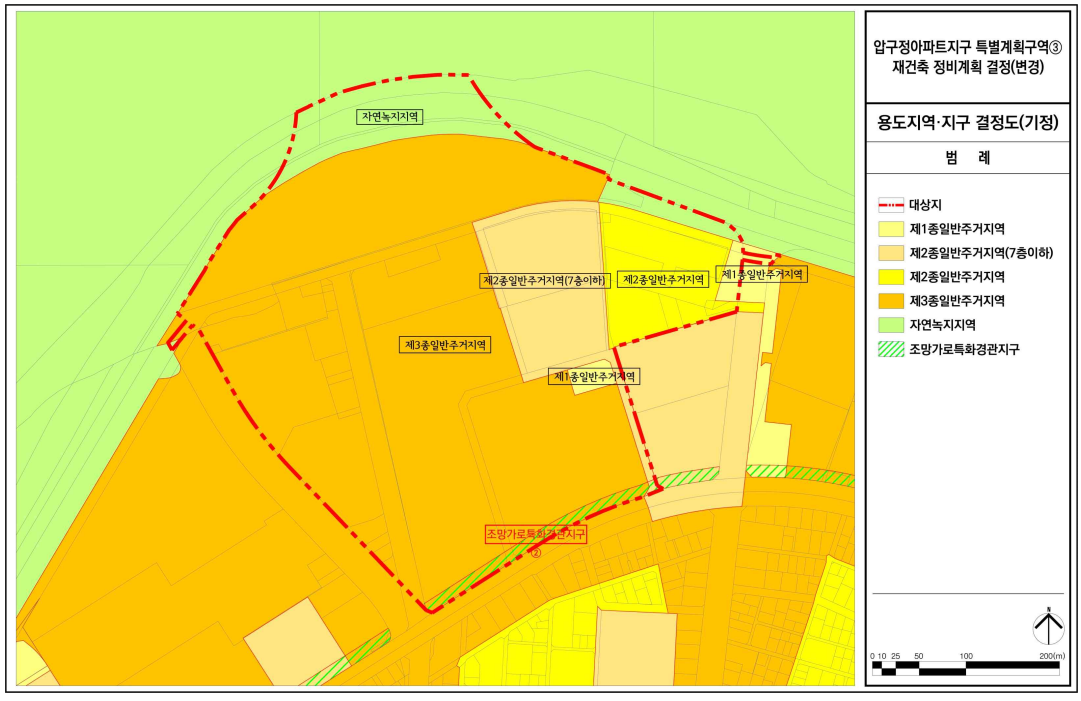
■ 압구정3구역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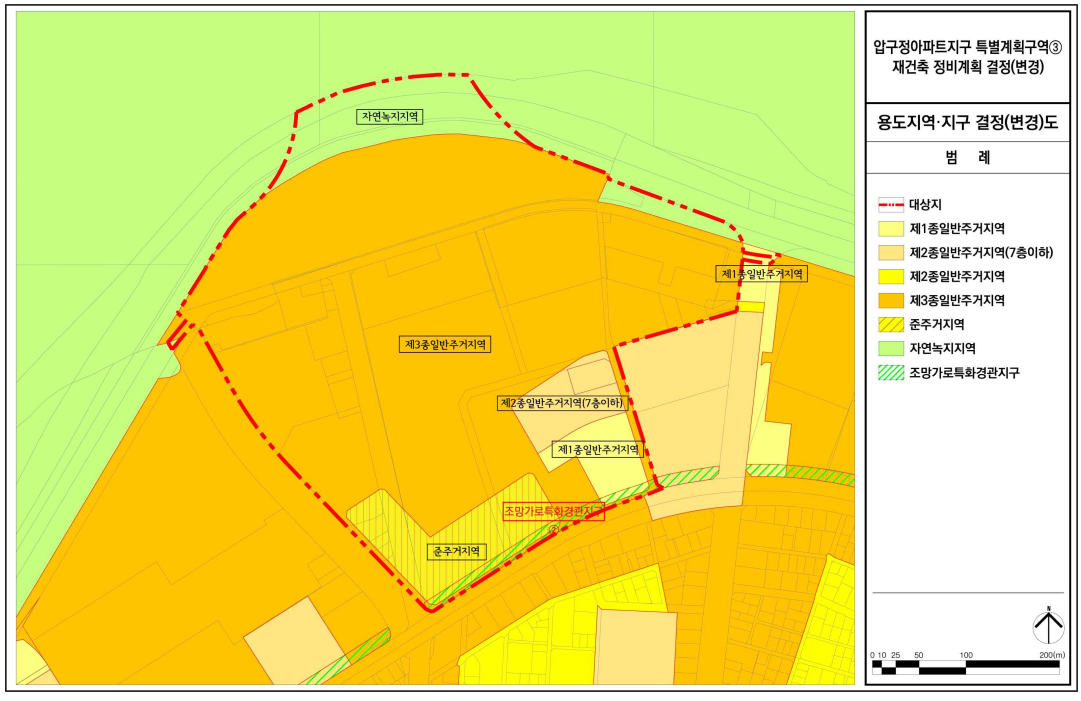
■ 압구정3구역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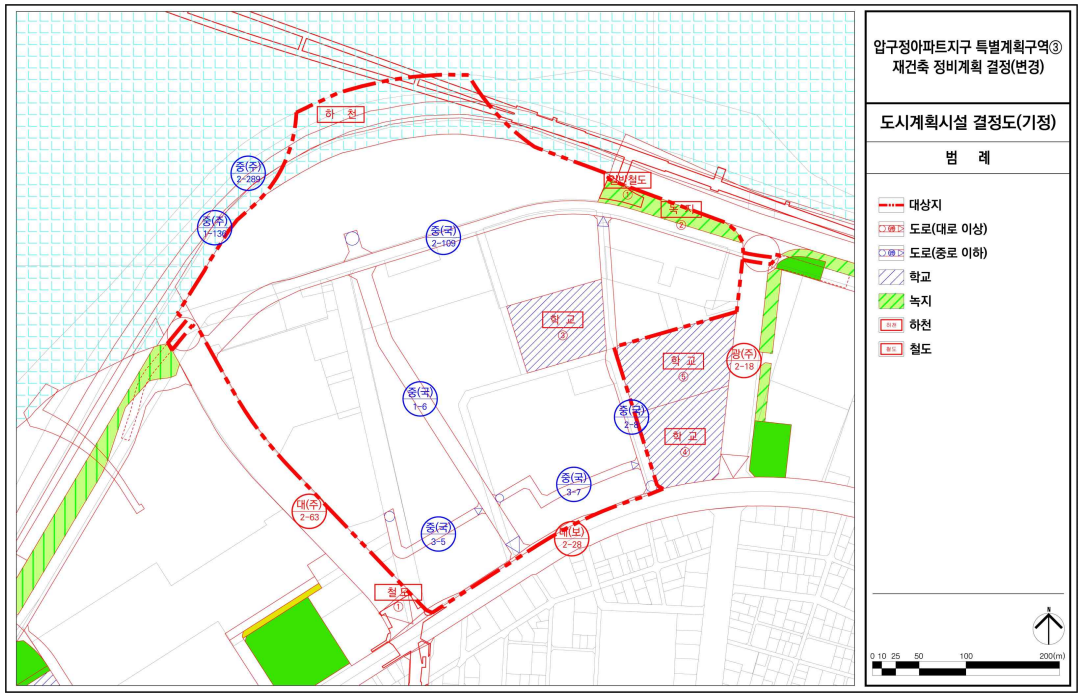
■ 압구정3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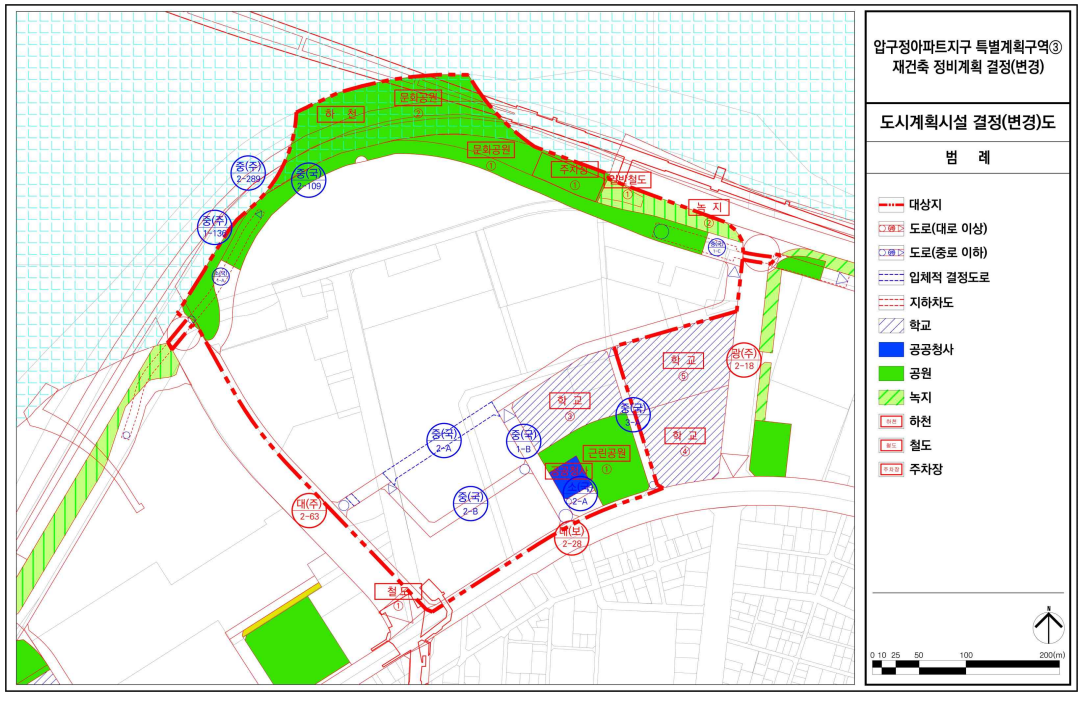
■ 압구정3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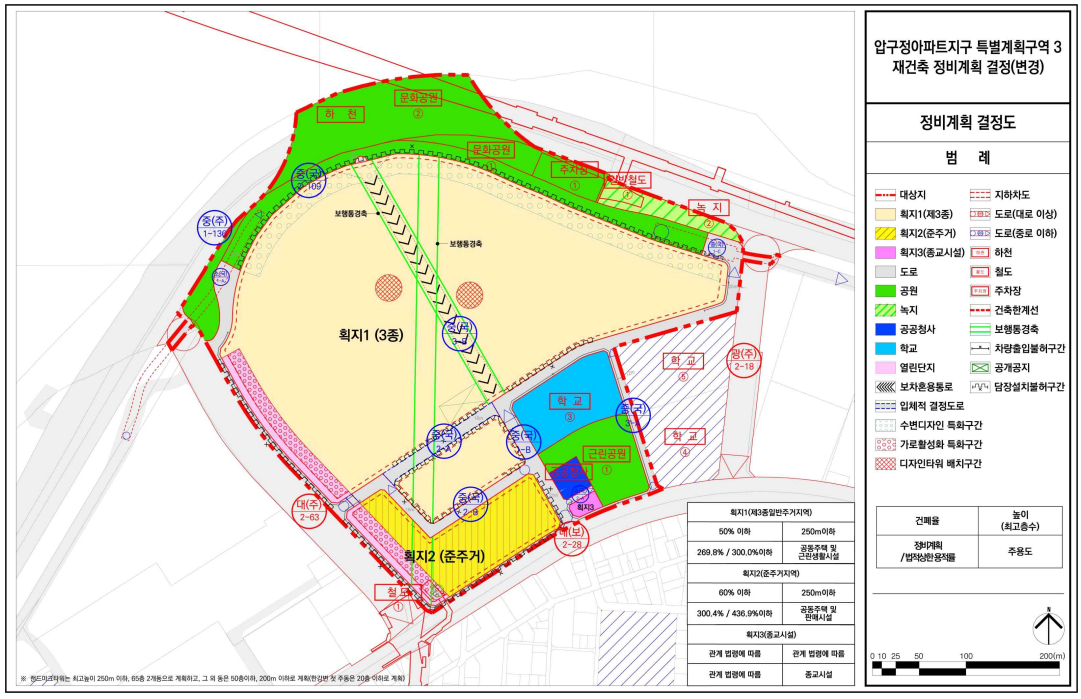
■ 압구정3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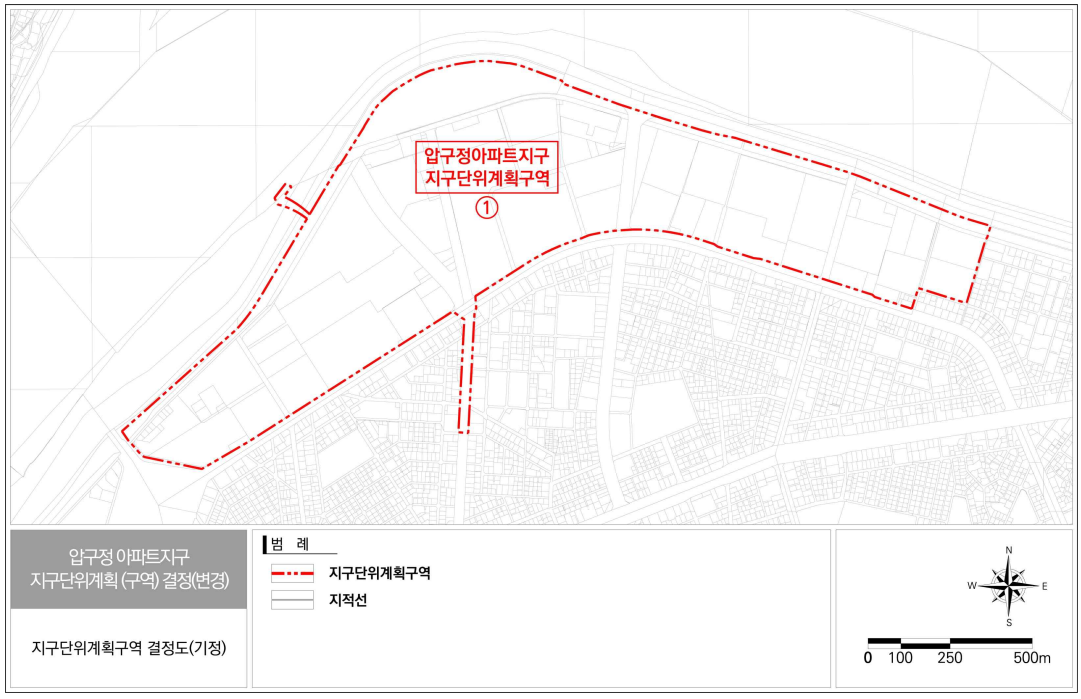
■ 압구정3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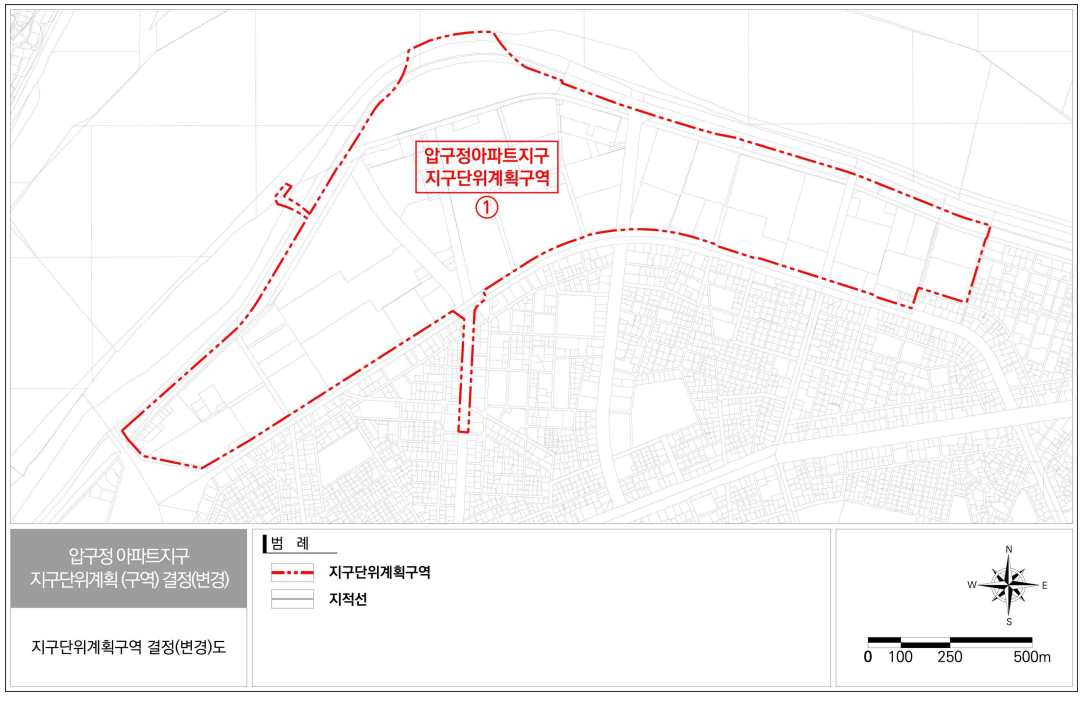
■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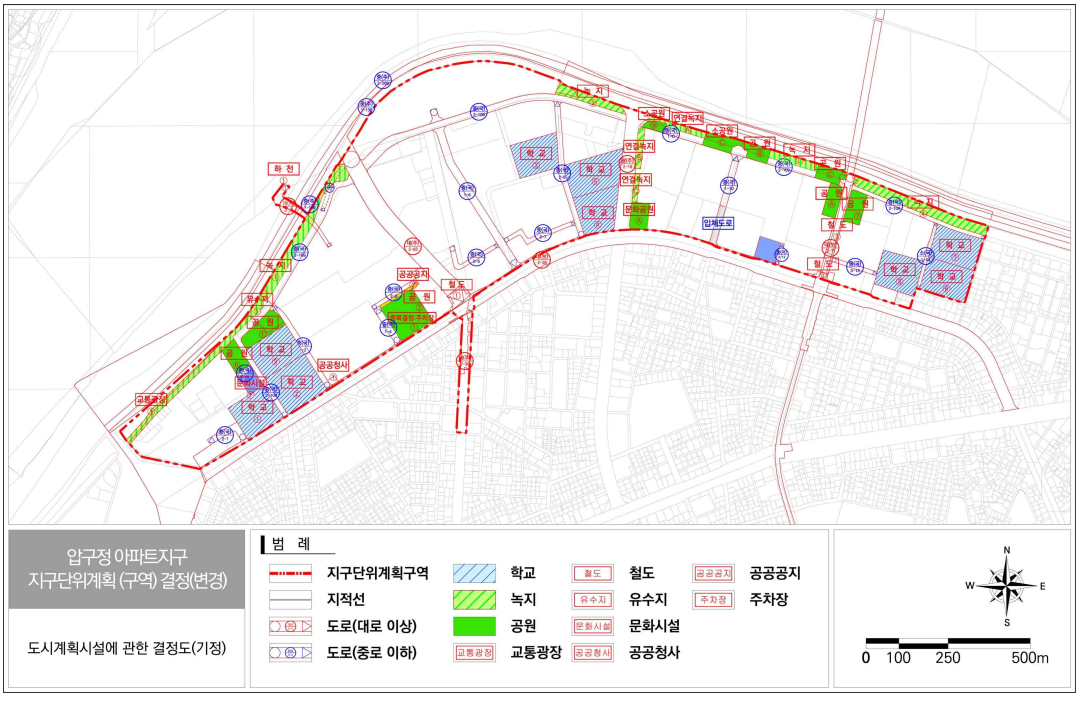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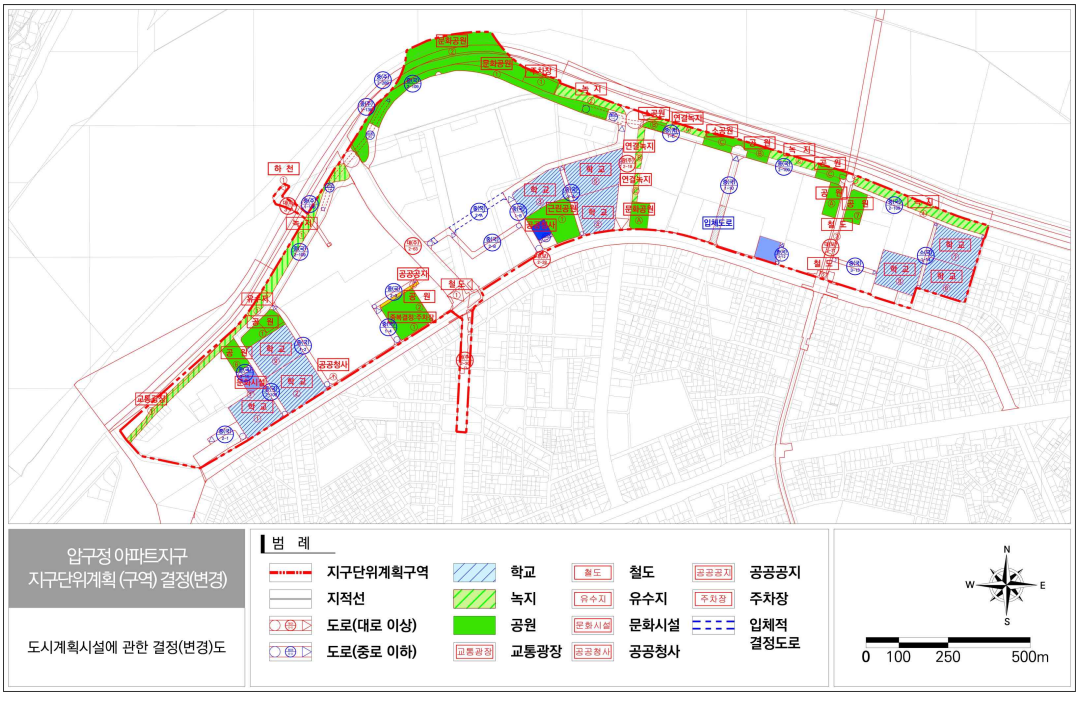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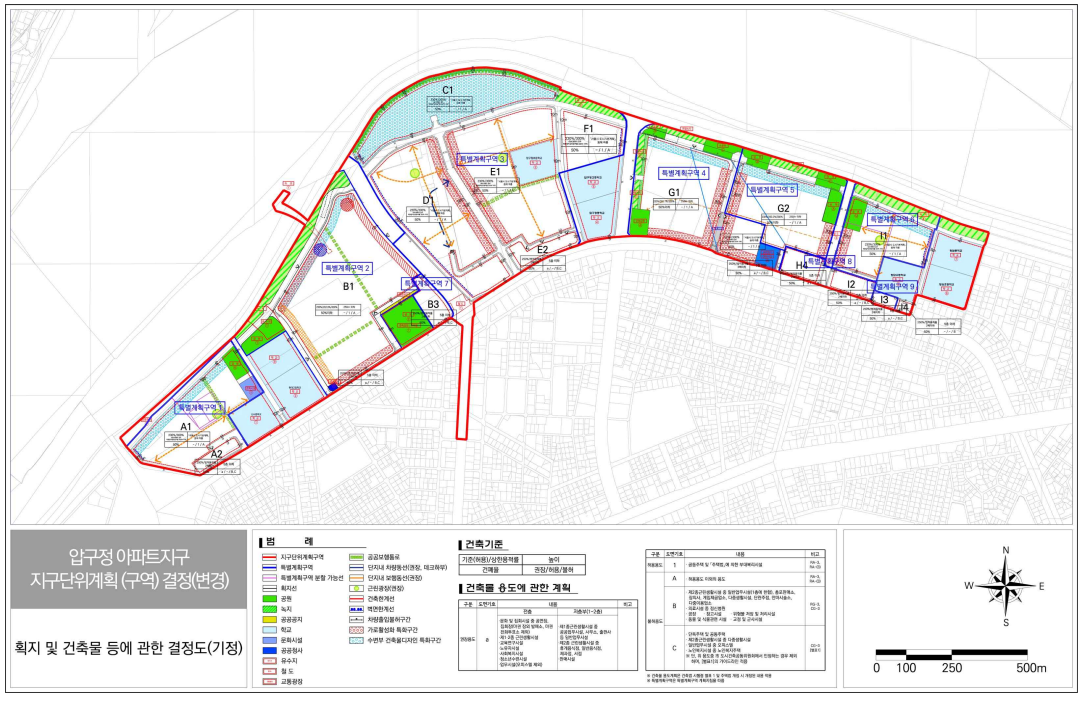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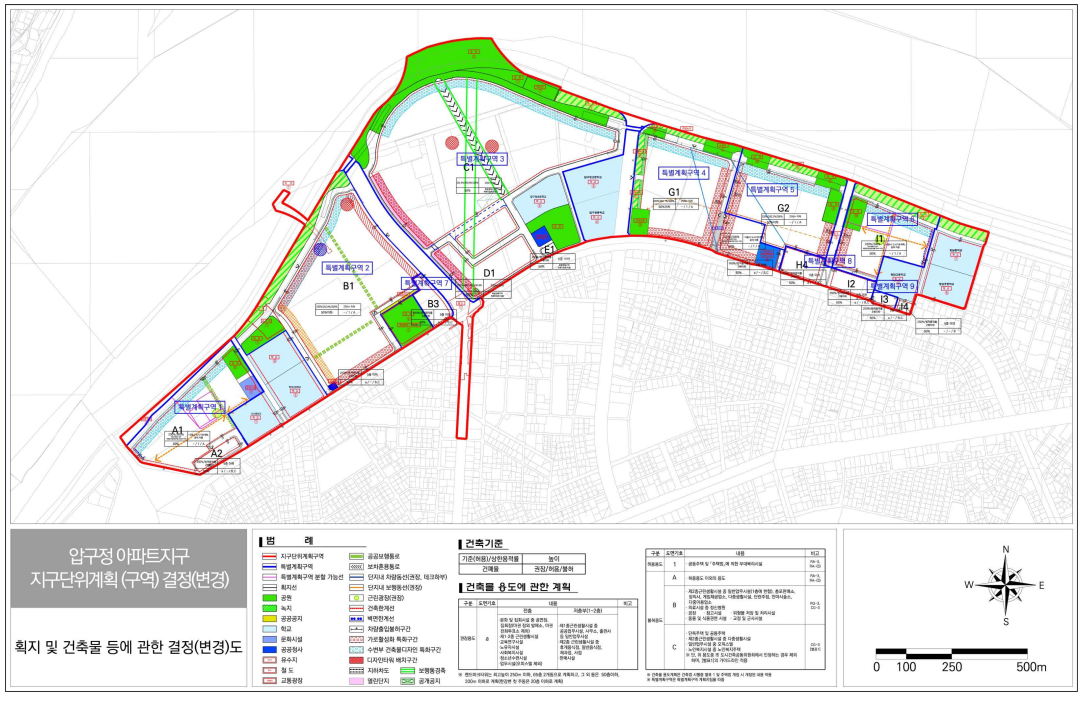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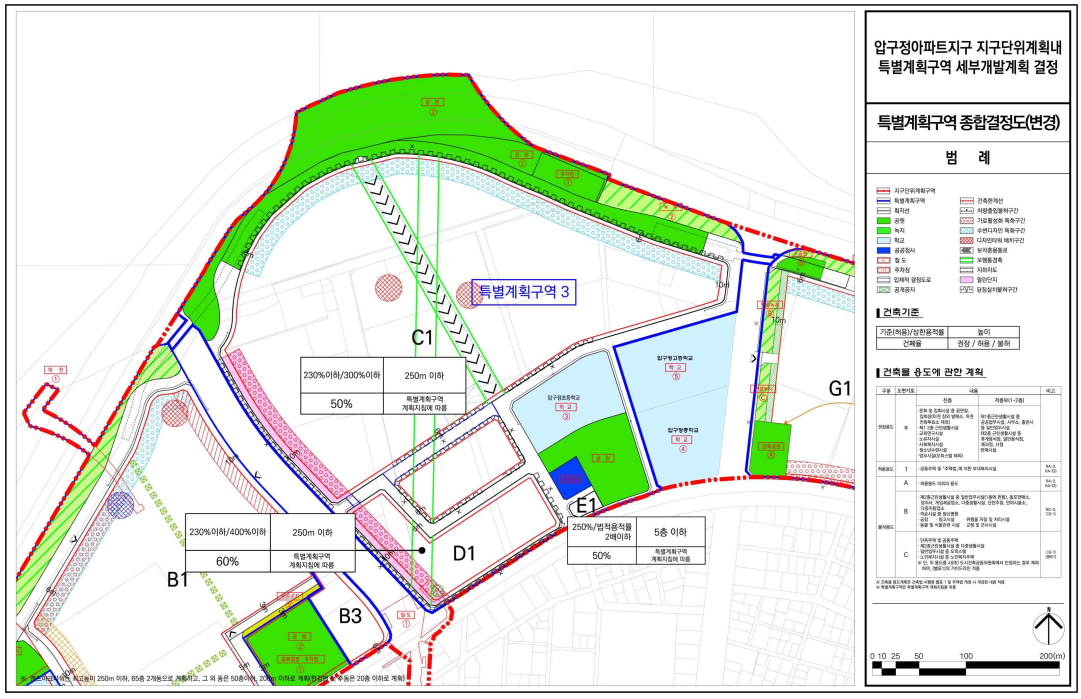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1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 결정 및 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를 정비하고 변경결정 내용과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고시내용 :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 결정

연번	도면번호	지 번	지목	비고
1	2026-1-01	광진구 광장동 381-52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전체 제외
2	2026-1-02	서초구 원지동 산13-1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감소(경계 변경)
3	2026-1-03	서초구 방배동 산101-1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감소(경계 변경)
4	2026-1-04	은평구 진관동 405-1	종교용지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전체 제외
5	2026-1-05	서초구 방배동 산82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증가(경계 변경)
		서초구 방배동 산81-35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전체 제외

2. 관계도면 : 첨부 #1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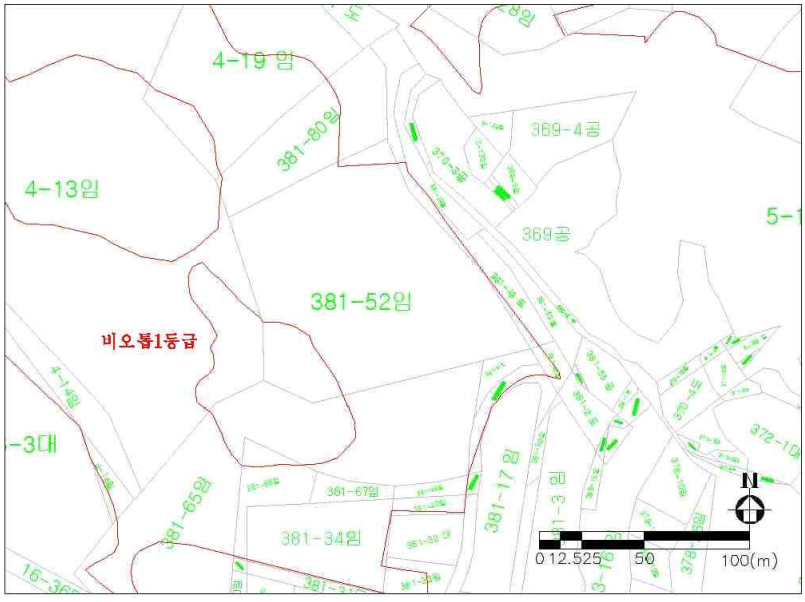
3. 문의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02-2133-8420)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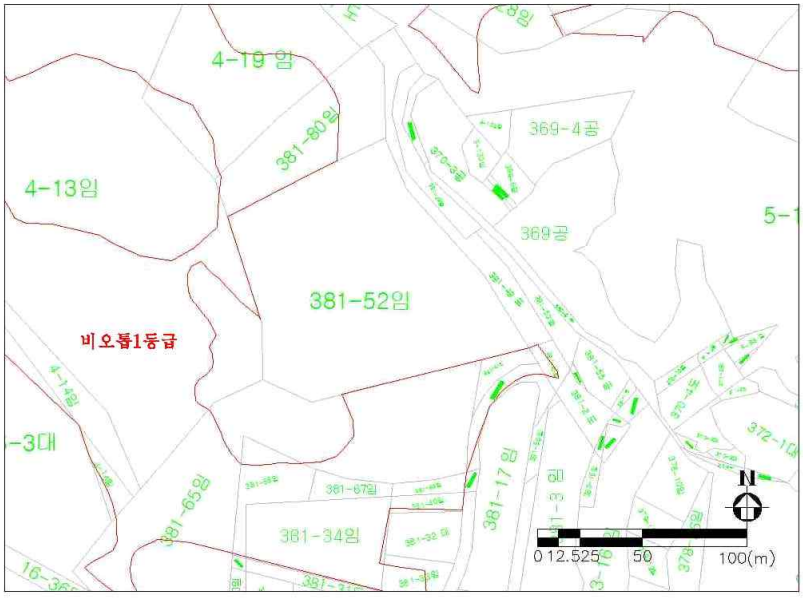
비오톱1등급 토지 경계 변경에 따른 도면

도면 2026-1-01. 광진구 광장동 381-52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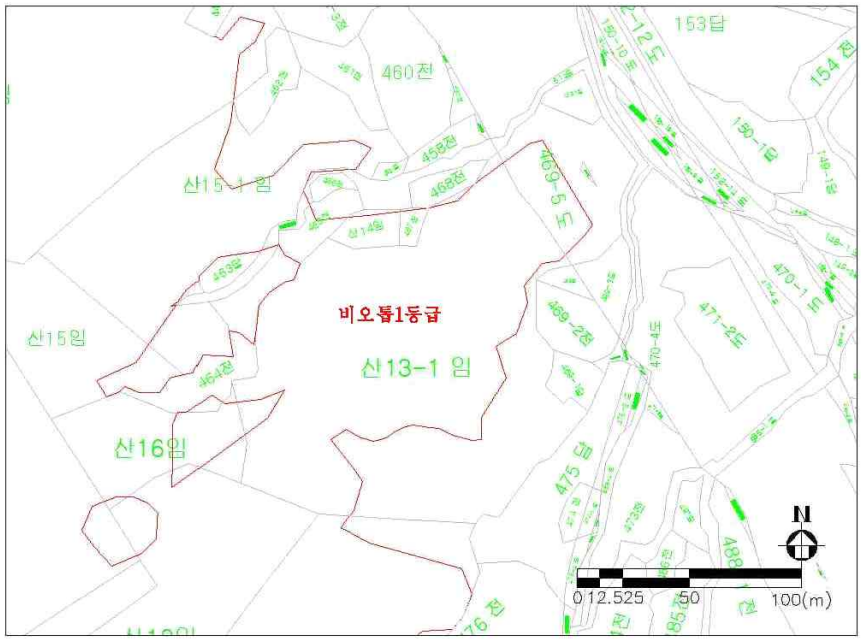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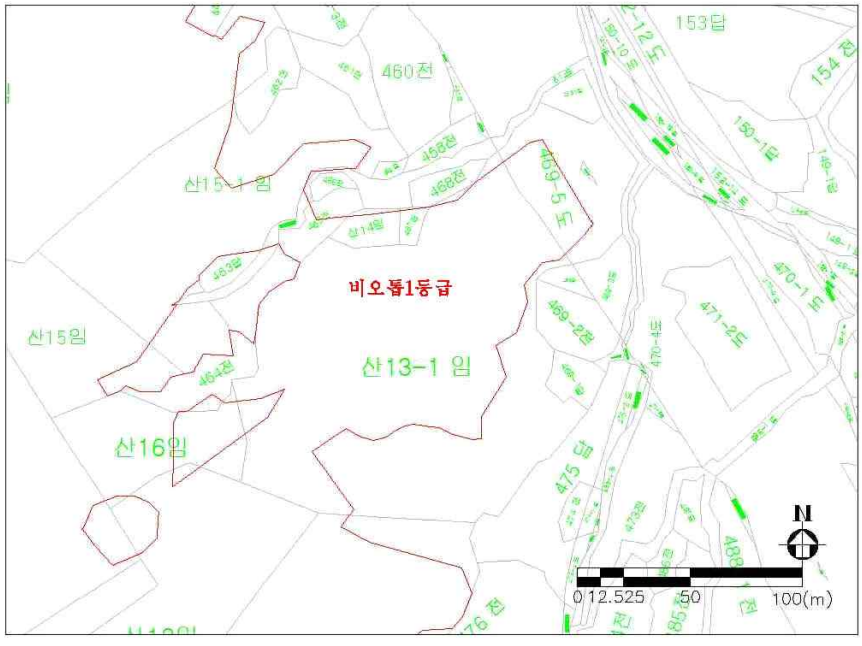


도면 2026-1-02. 서초구 원지동 산13-1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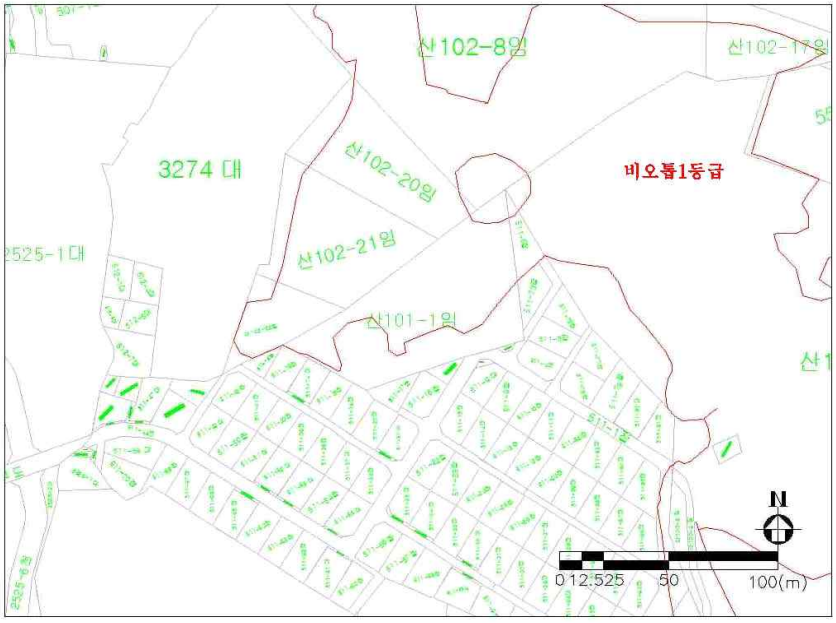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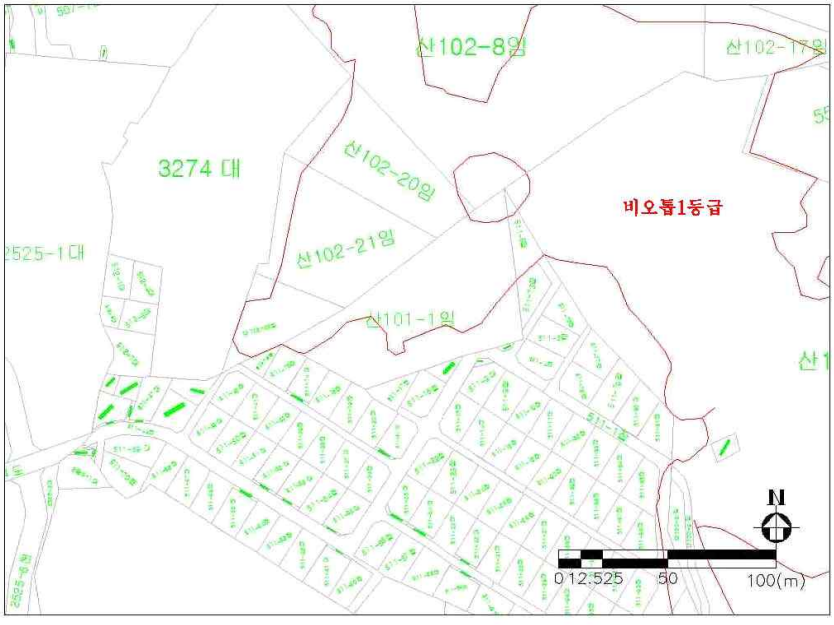


도면 2026-1-03. 서초구 방배동 산101-1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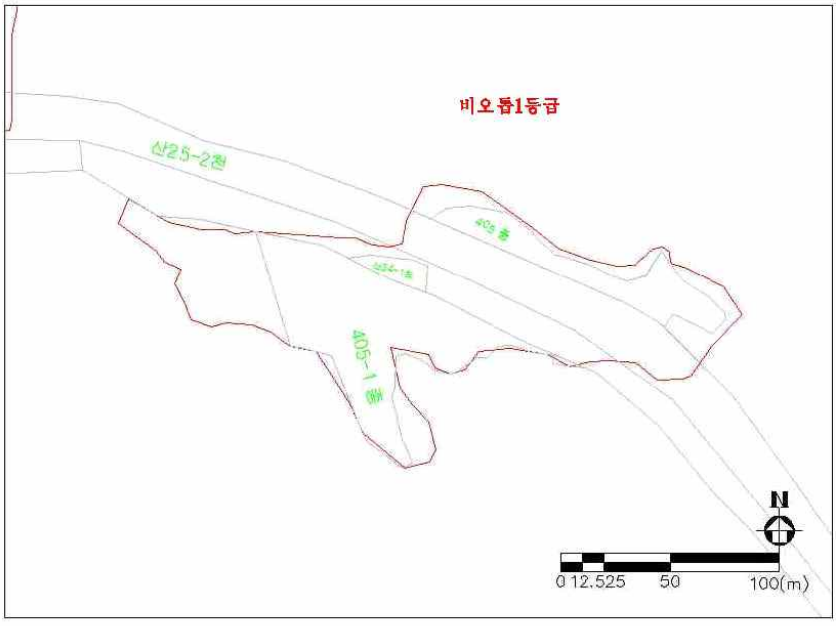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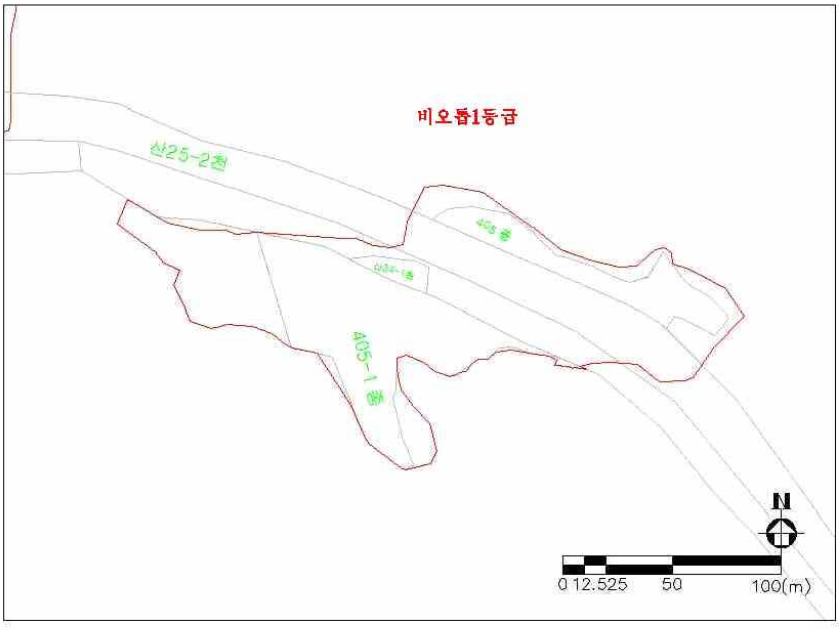


도면 2026-1-04. 은평구 진관동 405-1

〔기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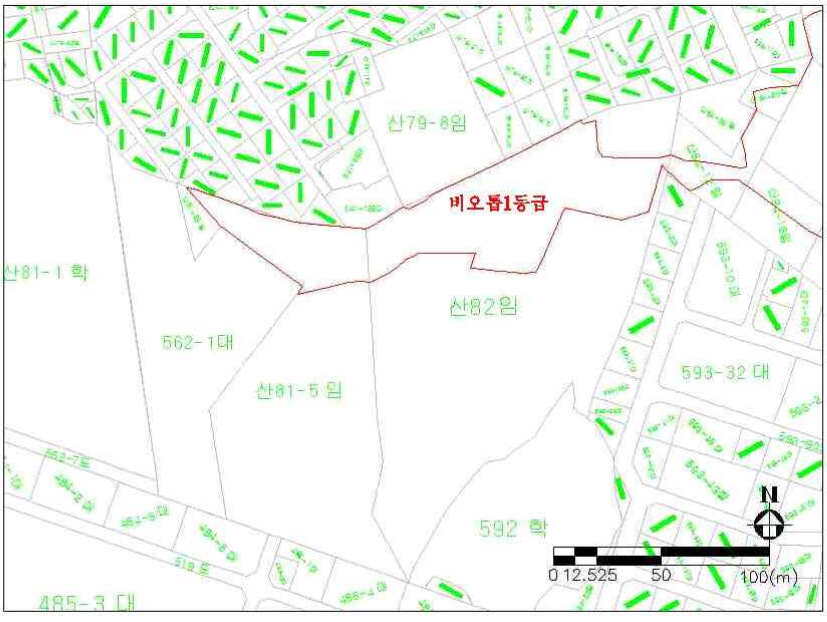


도면 2026-1-05. 서초구 방배동 산82 및 방배동 산81-35

〔기정〕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3호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0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5호 (2002.06.24.), 제2009-270호 (2009.07.09.), 제2016-220호(2016.07.28.)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된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 11. 12.)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성동구공고 제2025-1641호(2025.12.26.)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22.03.22.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행당동, 도선동, 홍익동, 하왕십리동 일대 (왕십리역 주변)	218,000.0	감)4,994.0	213,006.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 사유
변경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면적 감소 -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일원 제척 - 면적 : 218,000.0 → 213,006.0 감)4,994.0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제척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8,000	-	213,006	100.0	
주거지역	소 계	110,270	-	105,276	49.4	
	제2종일반주거지역	7,865		7,865	3.7	
	제3종일반주거지역	46,067		46,067	21.6	
	준주거지역	56,338	감)4,994	51,344	24.1	
상업지역	소 계	107,730	-	107,730	50.6	
	일반상업지역	107,730	-	107,730	50.6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비 고
		기 정	변 경			
	행당동 293-1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	감) 4,994	-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감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2) 공간시설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기 정	변 경	
준주거지역	27	27	일부 필지 제척
	28	28	일부 필지 제척
	29	29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폐지 및 제척

(2)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면적 (㎡)	기 정		변 경		비 고
		위 치	계획내용	위 치	계획내용	
27	3,101.0	행당동 293-4, 293-5	공동개발권장	행당동 293-4	-	293-5 제척
		행당동 293-8, 293-54	공동개발권장	행당동 293-8, 293-64, 293-65, 293-66	공동개발권장	293-54 제척
28	2,503.3	행당동 278, 279-2,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79-13, 284, 284-2, 284-19, 284-32, 284-33, 284-35, 284-37, 284-46, 284-50, 284-51, 284-52, 284-54, 284-55, 284-57, 284-58, 285, 287-10, 287-11, 287-12, 287-13, 287-14, 287-19, 287-32, 293-18, 293-55, 294-8	왕십리역세권1 특별계획가능구역	행당동 278, 279-2,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79-13, 284, 284-2, 284-19, 284-32, 284-33, 284-35, 284-37, 284-46, 284-50, 284-51, 284-52, 284-54, 284-55, 284-57, 284-58, 285, 287-10, 287-11, 287-12, 287-13, 287-14, 287-19, 287-32,	-	293-18, 293-55, 294-8 제척
29	3,558.7	행당동 293-11, 293-56, 293-59, 294-1, 294-9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	-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제척

(3) 자율적 공동개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공공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변경) 조서
(1) 특별계획구역 대상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유지	왕십리 종합시장		성동구 도선동 69 일대	9,125.3		
유지	대영학원 (특별계획가능구역)		성동구 도선동 39-1 일대	1,471.4		
유지	제일은행		성동구 도선동 39-2 일대	1,652.9		
유지	성동경찰서		성동구 행당동 192-8 일대	5,867.1		
축소	왕십리역세권1 (특별계획가능구역)		성동구 행당동 284 일대	3,477.2	2,503.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 필지 제척
폐지	왕십리역세권2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4,166.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유지	왕십리역세권3 (특별계획가능구역)		성동구 행당동 295 일대	4,632.0		
유지	왕십리역세권4		성동구 행당동 267-9 일대	11,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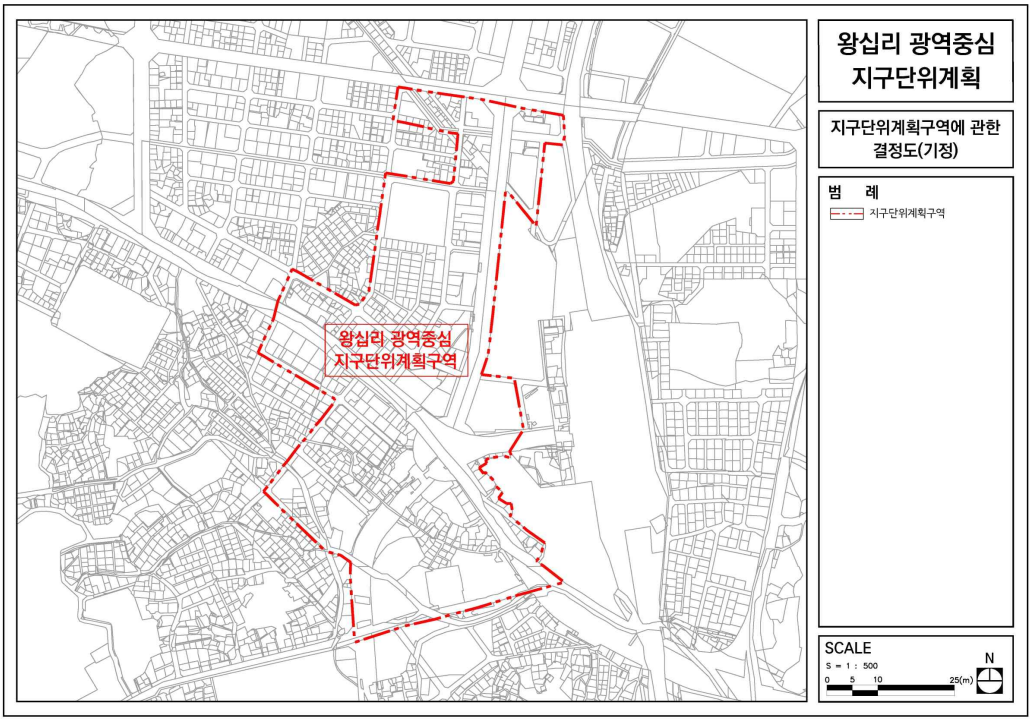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축소	왕십리역세권1 (특별계획가능구역)	성동구 행당동 284 일대	구역 축소 (3,477.2㎡→2,503.3㎡)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부 필지가 제척됨에 따라 구역 축소
폐지	왕십리역세권2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구역 폐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됨에 따라 구역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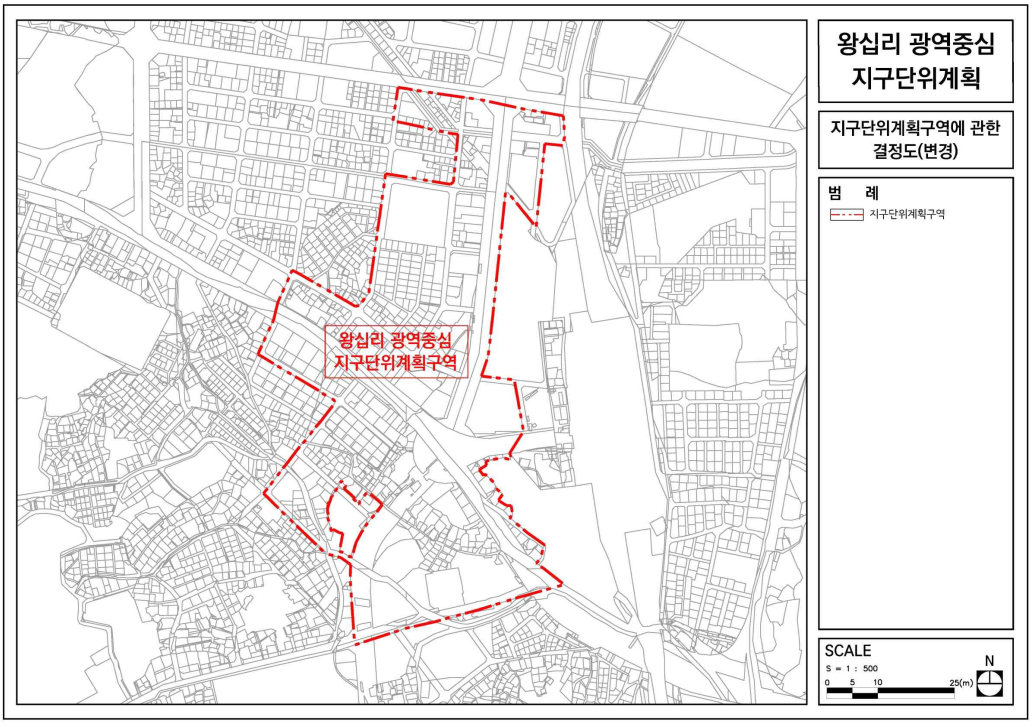
나. 특별계획구역별 계획 : 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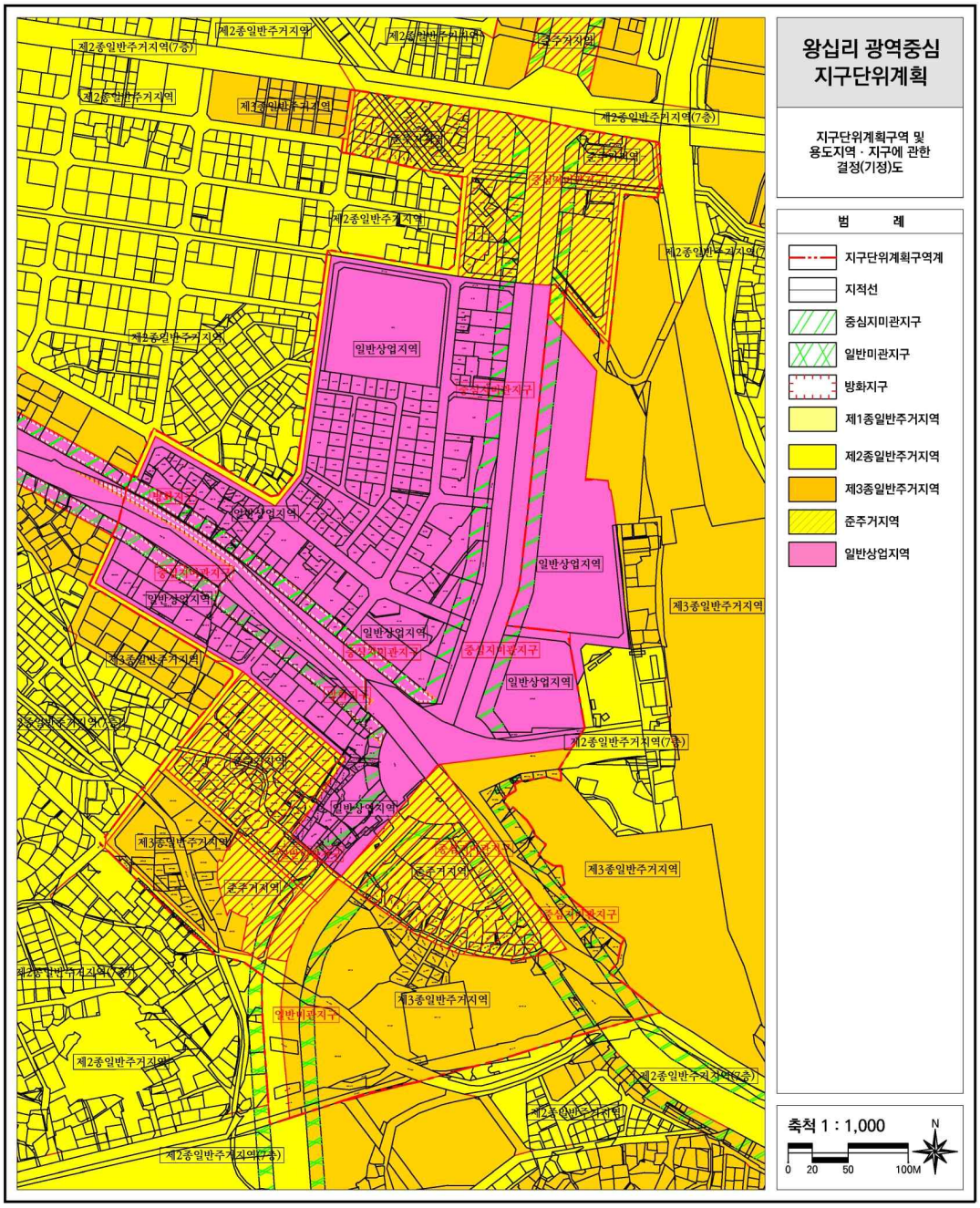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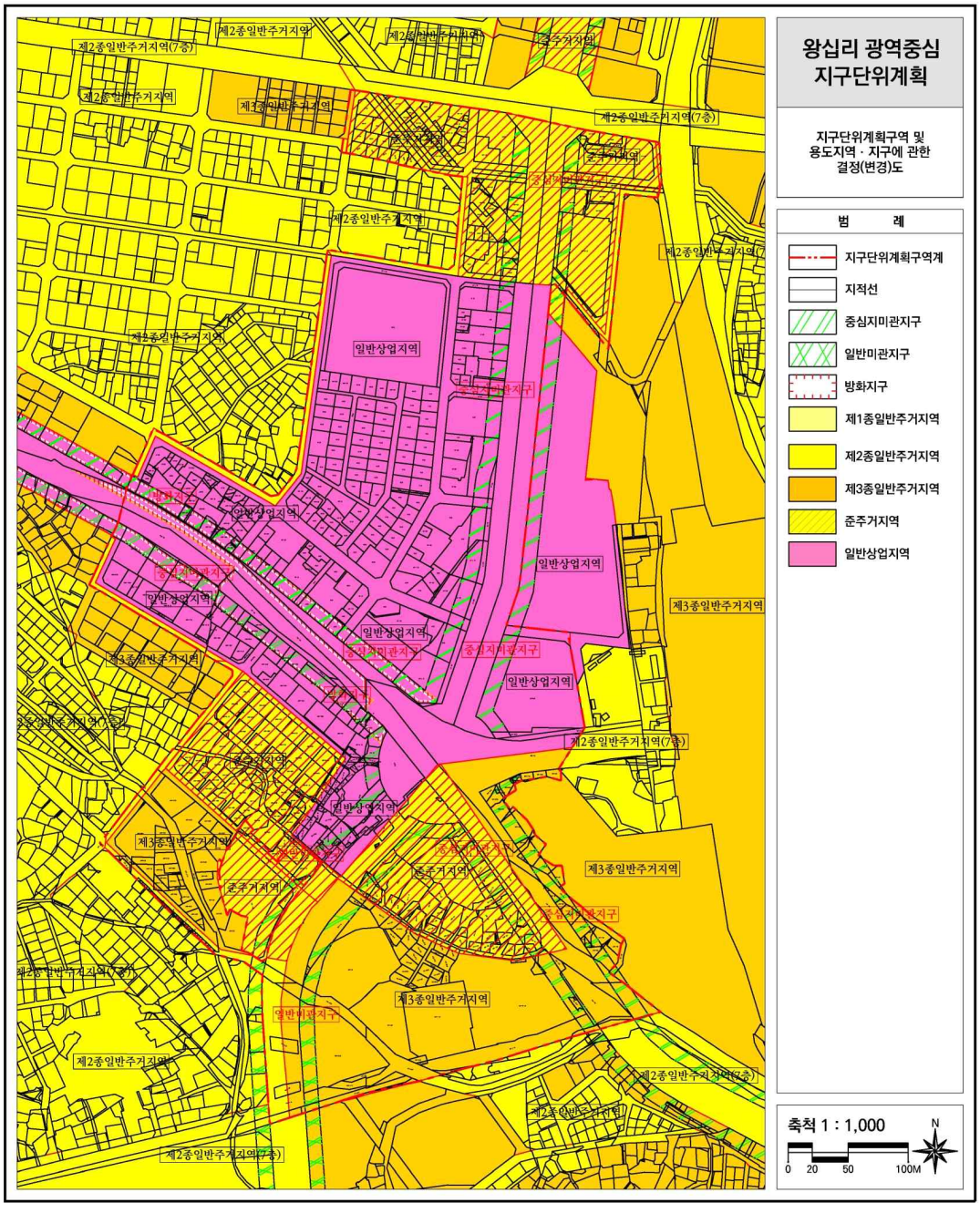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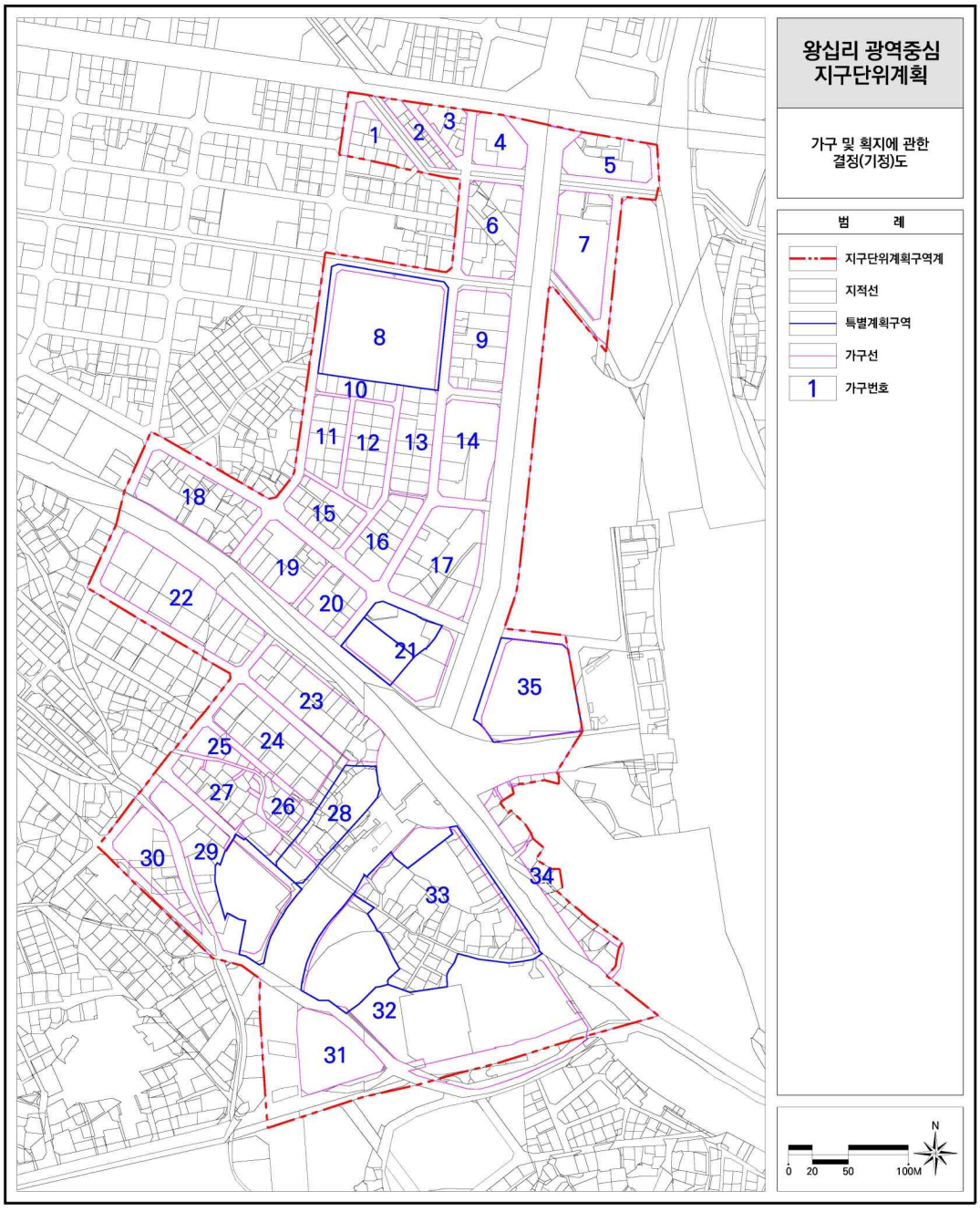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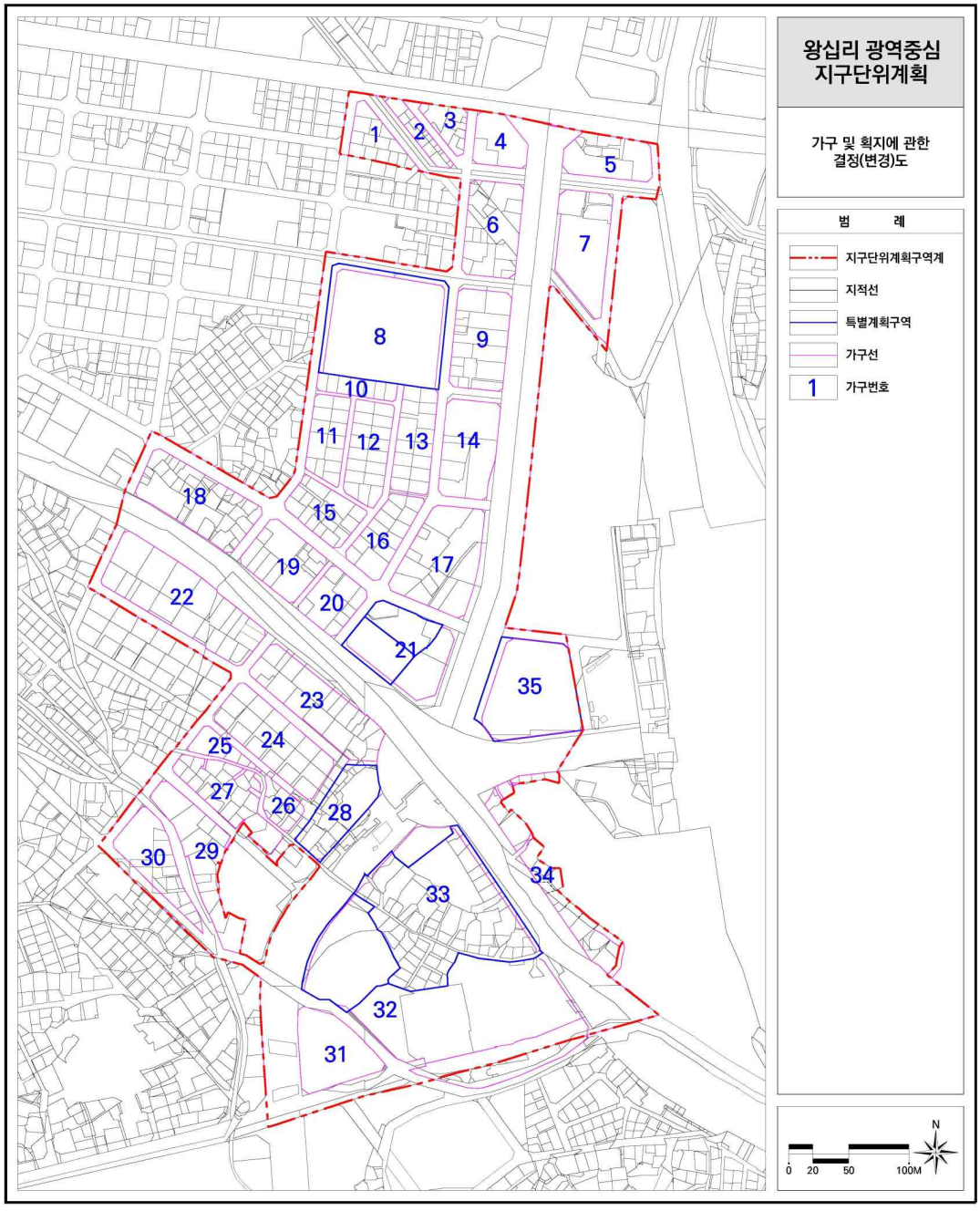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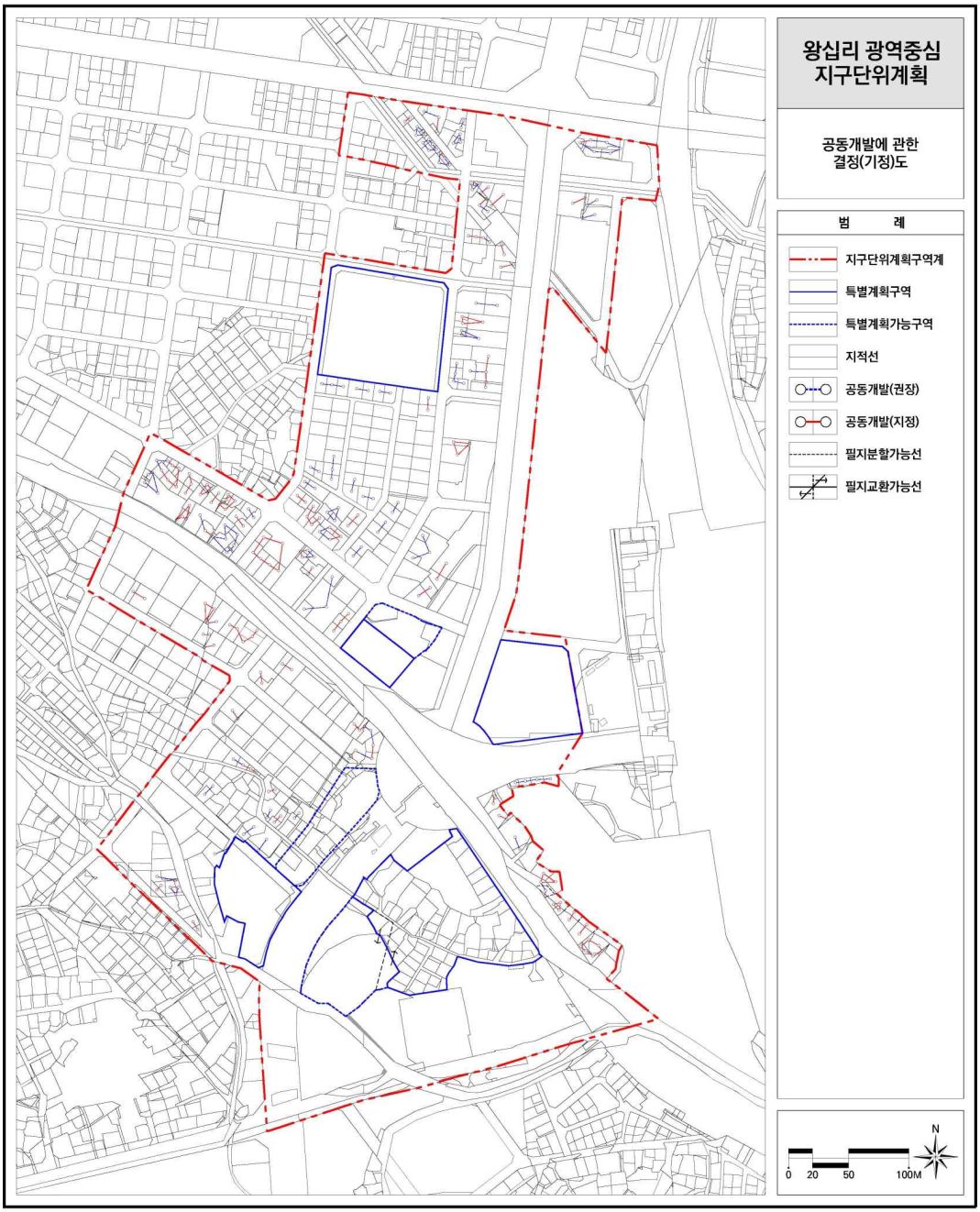
■ 가구 결정(기정)도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지적선
특별계획구역
가구선
1 가구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N
0 20 5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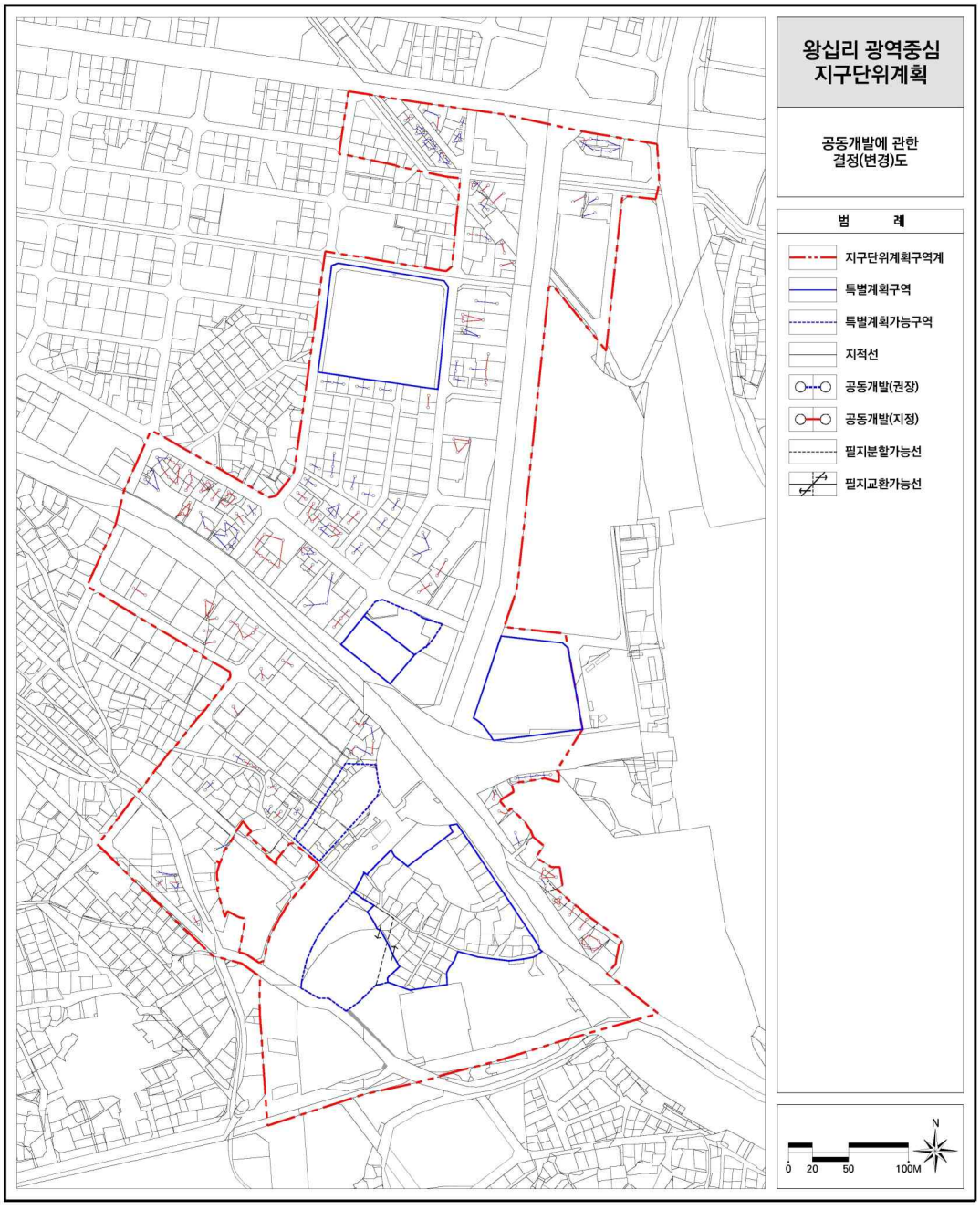
■ 가구 결정(변경)도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지적선
특별계획구역
가구선
1 가구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N
0 20 5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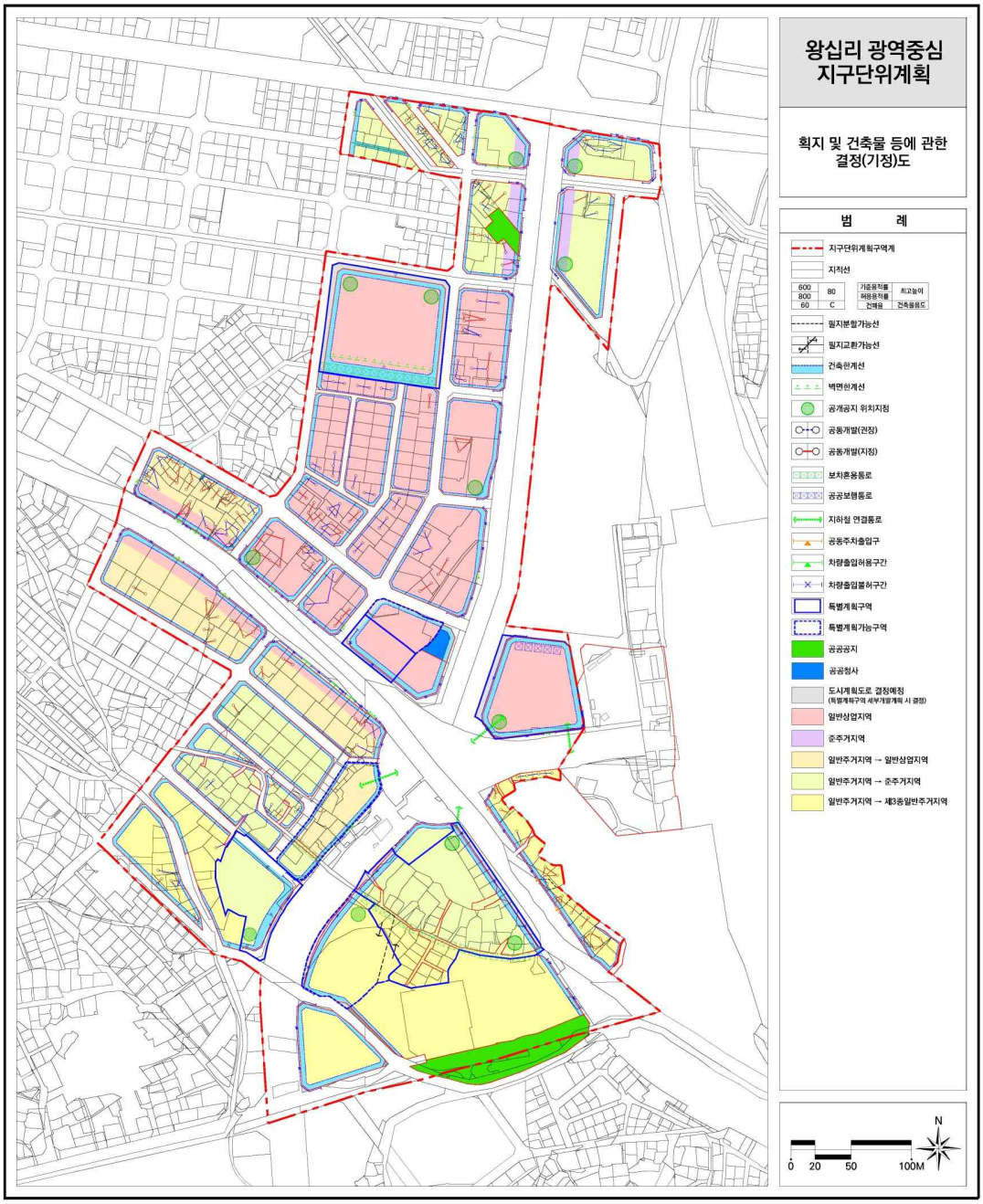
■ 공동개발 결정(기정)도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계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적선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N
0 20 5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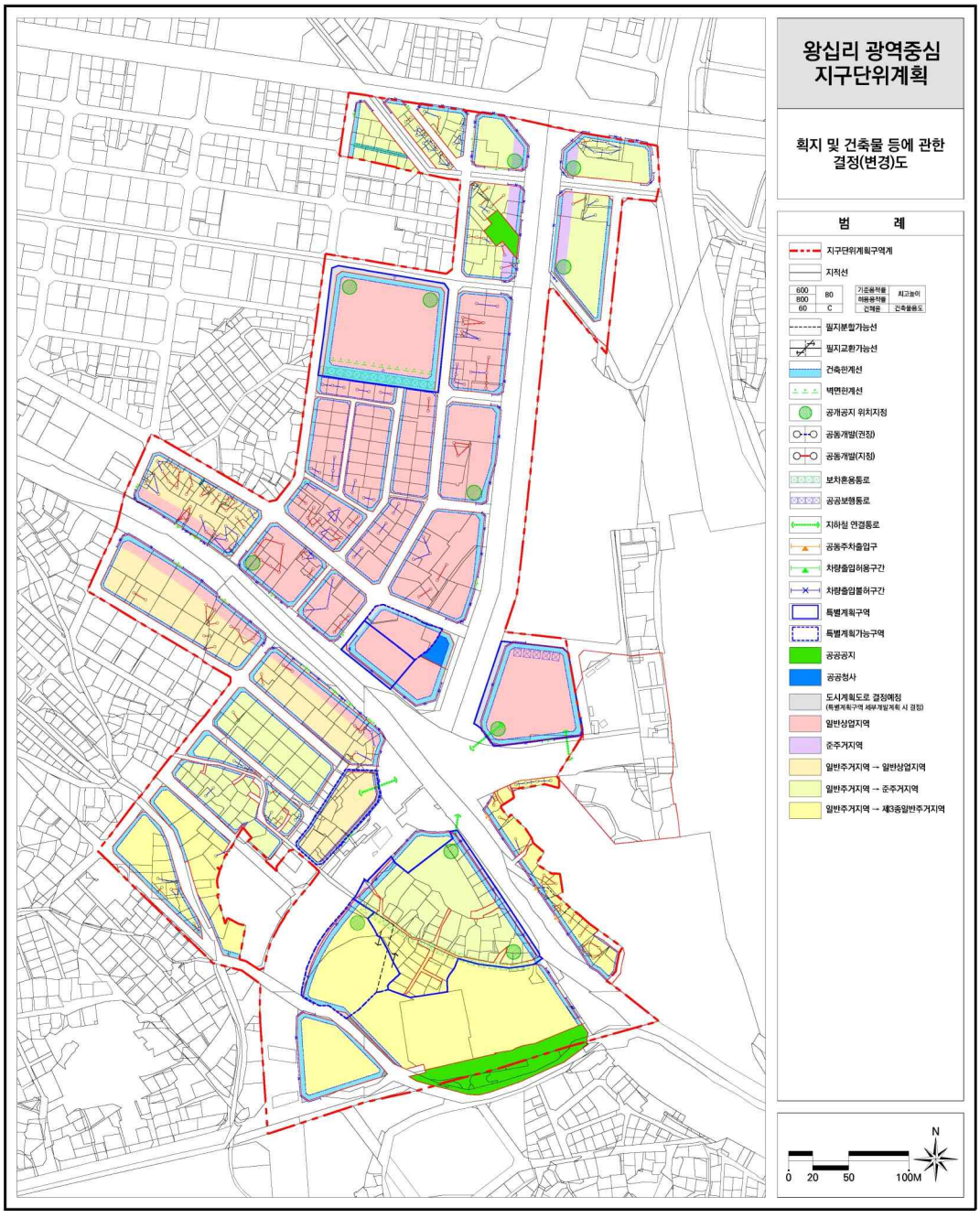
■ 공동개발 결정(변경)도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계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적선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N
0 20 50 100M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2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신설)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	증)4,994.0	4,994.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 사유
신 설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 면적 : 4,994.0㎡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994.0	-	4,994.0	100.0	
일반상업지역	-	증)4,780.7	4,780.7	95.7	
준주거지역	4,994.0	감)4,780.7	213.3	4.3	도로(기부채납)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780.7	·왕십리 광역중심 및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의 입지여건을 고려,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 중심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도로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0	30~40	주간선 도로	3,120	왕십리 광장	압구정동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76	행당동 293-56	소로2-12	일반 도로	-	-	도로 연장,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변경	소로	2	10	8	국지도로	153	대로2-50	소로2-1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390	대로2-50	왕십리로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B	4	국지도로	31	행당동 293-58	행당동 293-54	일반 도로	-	-	-

■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위치	입체적 결정 범위				비고
			구분	기정	변경 (지표면 기준,m)	변경후 (지표면 기준,m)	
신설	도로	행당동 293-56 일원	도시계획시설	-	-1.8 ~ +50.0	-1.8 ~ +50.0	도로
			비도시계획시설	-	~ - 1.8	~ - 1.8	주차장 등
				-	+50.0 ~	+50.0 ~	연결브릿지(1개층)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 2-10	소로 2-10	고산자로까지 연결하기 위해 연장 확장(76m→153m) 연장된 도로의 입체적 결정	·배면 주거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실효되었던 도시계획시설 도로 복원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통합적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입체적 결정함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 3-B	소로 신설, 도로 폭원 확장(3m → 4m)	·왕십리역세권1특별계획가능구역 내 보차혼용통로를 도로로 변경하여 신설 ·최소 도로폭 4m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 측으로 0.5m 확장

■ 철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신 설	계	4,780.7	-	-	4,780.7	-
	A	4,780.7	A-1	행당동 293-11 일원	4,780.7	-

■ 획지에 관한 결정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가구 및 획지 신설 - A-1 : 4,780.7㎡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획지 신설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A-1 획지 결정조서(신설)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내용	비고
A	A-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1~2층)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상점 등	-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	·352% 이하	
			상한	·800% 이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2025.0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024.12)」 준용
		최고높이		·150m 이하	-

※ 기준(허용) 용적률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을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

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1)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기준

기준(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2-2. 상한용적률 가산 기준 준수 시

라.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1) 건축선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동측 고산자로변 폭 3m, 남측 무학봉16길변 폭 3m, 관통도로변 남측 3m ·북측 왕십리로21가길변 폭 2m, 관통도로변 북측 2m	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관통도로의 양측 건축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의 연결통로 1개소는 설치 가능

■ 결정 사유서

구 분	적용대상	결정 사유	비고
건축한계선	획지 내 도로변	·획지 주변 및 관통도로변의 가로 환경 개선 및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 계획	

4. 기타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

(1) 대지 안의 공지 계획

구 분		적용위치	비고
대지안의 공지	전면공지	획지 외곽 도로변 (도면참조)	·보도부속형 또는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1개소(도면참조)	·행당시장 진입로 및 고산자로에 접하여 시민 접근이 용이한 주 보행결절점에 지정

※ 대지 안의 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

■ 결정 사유서

구 분	적용대상	결정사유
대지안의 공지	전면공지	·건물의 인지성 강화 및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변의 보행동선에 전면공지 지정
	공개공지	·행당시장 진입로 및 고산자로에 접하여 시민 접근이 용이한 결절점에 공개공지를 지정하여 전통시장 전면부의 진입광장으로 활용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왕십리로21가길 일대	·주간선도로인 고산자로변과 접속구간이 짧은 무학봉16길변으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불허구간	·고산자로변 ·무학봉16길변(가각부)		

다.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1) 공공기여계획 결정 조서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기여기준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51.76%	800%	개발부지면적의 33.9% 이상 (1,619.5㎡)	• 공공기여율 : 총 33.9%(1,619.5㎡) - 도로 5.8% - 주차장 24.0% - 전시장(공공전시시설) 7.2%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63.0%	

※ 공공기여계획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적용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 시행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공공기여 총량이 조정될 수 있음.

(2)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

용도지역 (기정)	용도지역 (변경)	①용도지역 상향면적(㎡)	② 기준용적률	③ 상한용적률	공공기여기준 토지면적 [(③-②)×1/2÷③]×①	공공기여율
계	-	4,994.0	-	-	1,619.5	33.9%
일반 주거지역(A)	준주거지역	142.5	250.0	350.0	20.3	14.3%
	일반상업지역	3,982.8	250.0	800.0	1,369.1	34.4%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0.8	360.0	360.0	-	-
	일반상업지역	655.9	360.0	800.0	180.4	27.5%
	일반상업지역(B)	142.0	360.0	800.0	49.7	35.0%

※ 기존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에서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A' 구역은 용도지역 변경 연혁(사업미시행,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선상향)을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적용
※ 기존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번호 27에 포함되는 'B' 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의한 공공기여량(27.5%)에 7.5%를 가산하여 35.0% 적용
※ 전체 공공기여율은 개발부지면적(4,780.7㎡) 중 공공기여기준 토지면적(1,619.5㎡)의 비율

(3) 공공기여 세부내역

구 분			소계(㎡)	부지제공 면적(㎡)	환산부지 (㎡)	조성면적 (㎡)	비율 (%)	비고
합계			1,619.5	1,394.2	225.4	3,876.9	100.0	-
1. 일반 상업지역	소계		1,599.2	1,373.8	225.4	3,876.9	98.7	-
	공공 시설	도로	94.2	94.2	-	-	5.8	213.3㎡ (조성면적)
		공영주차장	388.2	242.5	145.7	3,365.3	24.0	지하2층 31.3억(공사비)

구 분		소계(㎡)	부지제공 면적(㎡)	환산부지 (㎡)	조성면적 (㎡)	비율 (%)	비고
	전시장 (공공전시시설)	116.5	36.9	79.6	511.6	7.2	지상2층 17.1억(공사비)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1,000.2	1,000.2	-	-	61.7	215.1억
2. 준주거 지역	소계	20.4	20.4	-	-	1.3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0.4	20.4	-	-	1.3	2.8억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을 적용한 관통도로는 공공기여 산정에서 제외(578.0㎡)
※ 도로 면적 산정 : 142.5㎡×350/800% + 70.8㎡×360/800% = 94.2㎡ (기존 특계구역 내 도로 제공면적 : 142.5㎡, 특계구역 외 도로 제공면적 : 70.8㎡)
※ 환산부지 면적,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건축심의 전 공공시설 등 부지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여 계획을 확정하여야 함(일반상업지역: 21,500,000원/㎡, 준주거지역: 13,750,000원/㎡)
※ 전시장의 공사단가는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적용하였으며 전시장의 지하공간 및 공영주차장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적용함

라. 사업계획 기준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및 공공시설 등 설치기준		· 공공기여 기준 : 33.9%이상	· 개발부지면적의 33.9% - 도로 5.8% - 주차장 24.0% - 전시장(공공전시시설) 7.2%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63.0%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용도	· 지상용적률 10% 이상,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전체 연면적의 100%를 비주거용도로 계획	
	복합용도	· 전체 용적률의 5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관광숙박시설로 계획	
	비주거시설	· 지상1층 설치(단, 가로에서 직접 출입 가능 시 지하1층 설치 허용)	· 지상1층 카페테리아 설치	
녹지 조성	공개공지 등	·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는 연면적별 공개공지 등 설치면적 의무 설치 · 연면적 합계 3만㎡이상 대지면적의 10%이상	· 대지면적의 10% 이상 설치	
높이	기준 준수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최고높이(150m) 이하 설계	
건축물	기준 준수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친환경건축물/역사문화 보전(해당하는 경우)	· 친환경건축물 기준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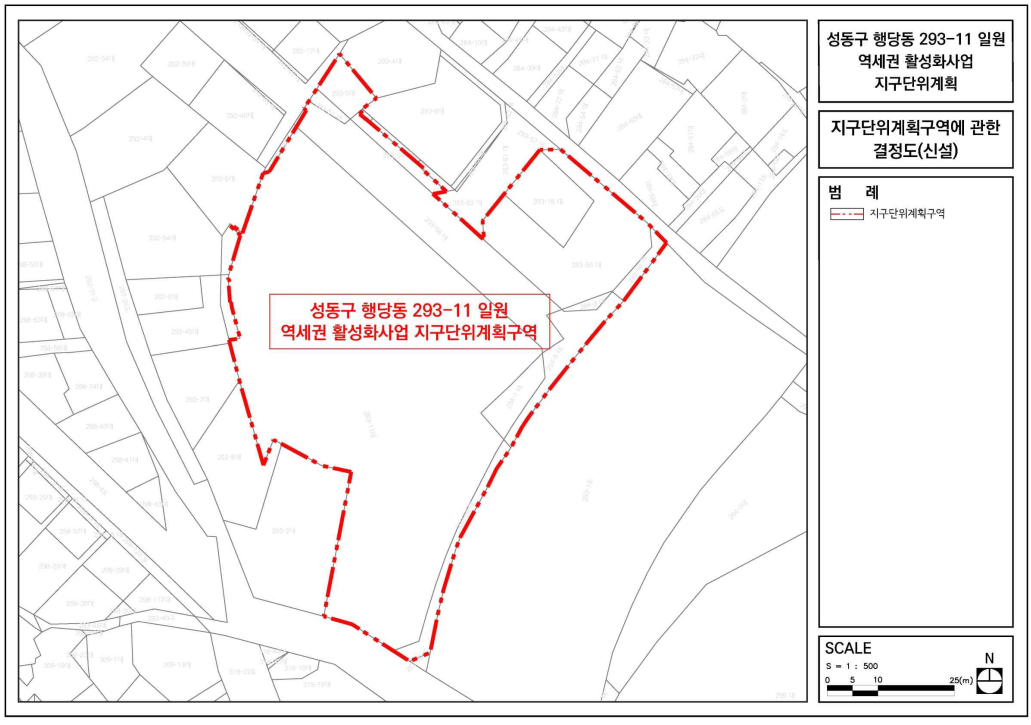
Ⅲ.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도서」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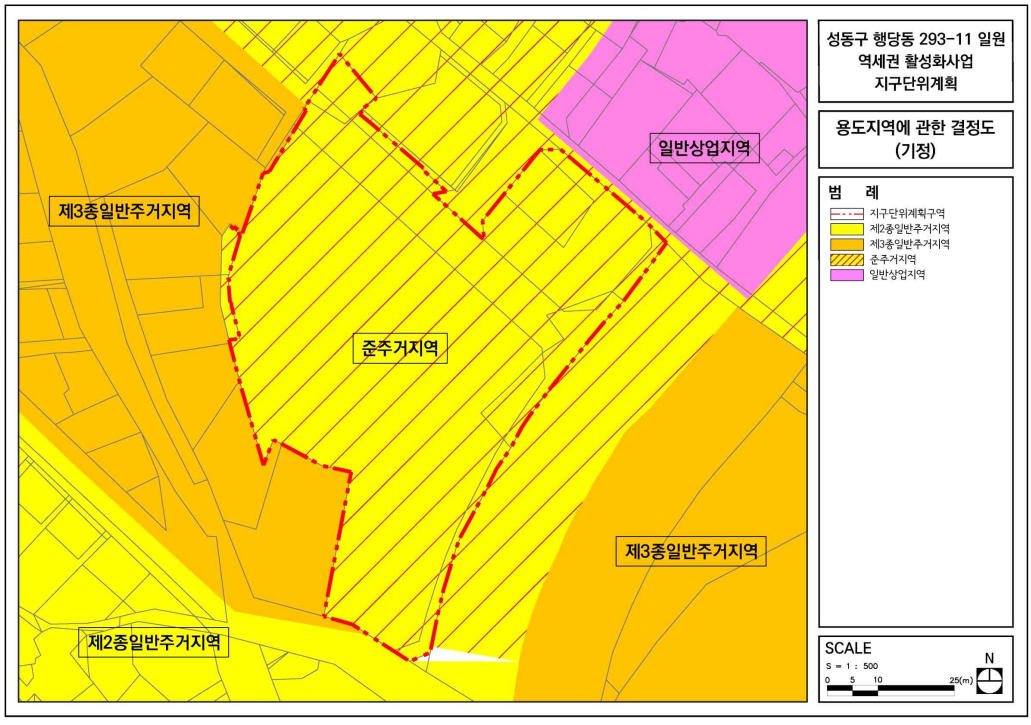
Ⅳ.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5) 및 성동구청 도시계획과(☏02-2286-556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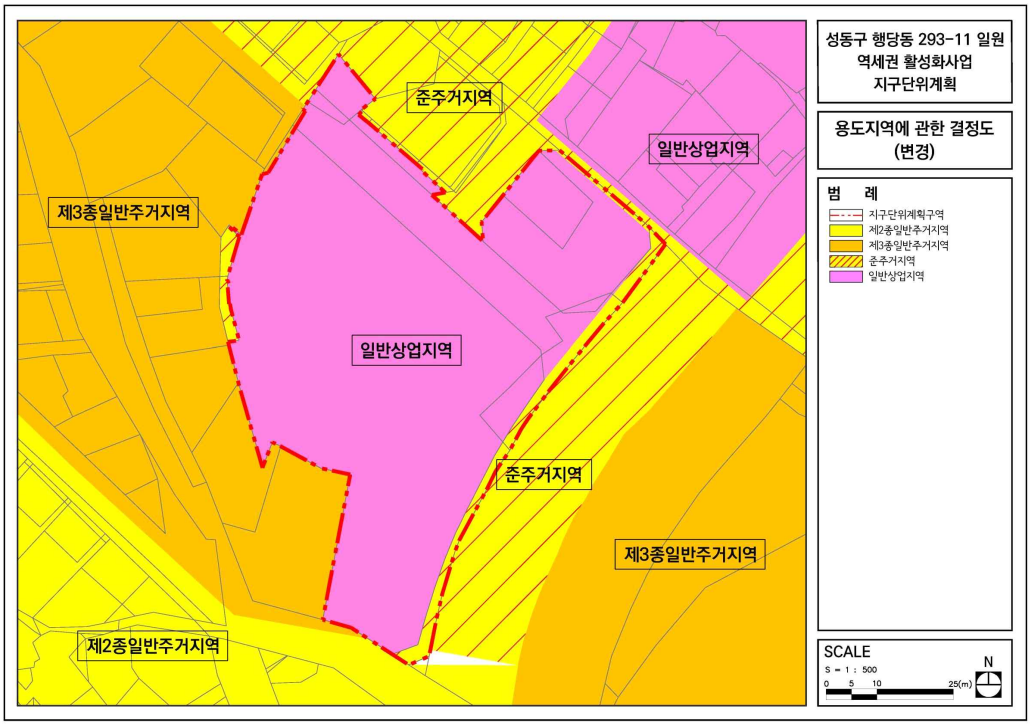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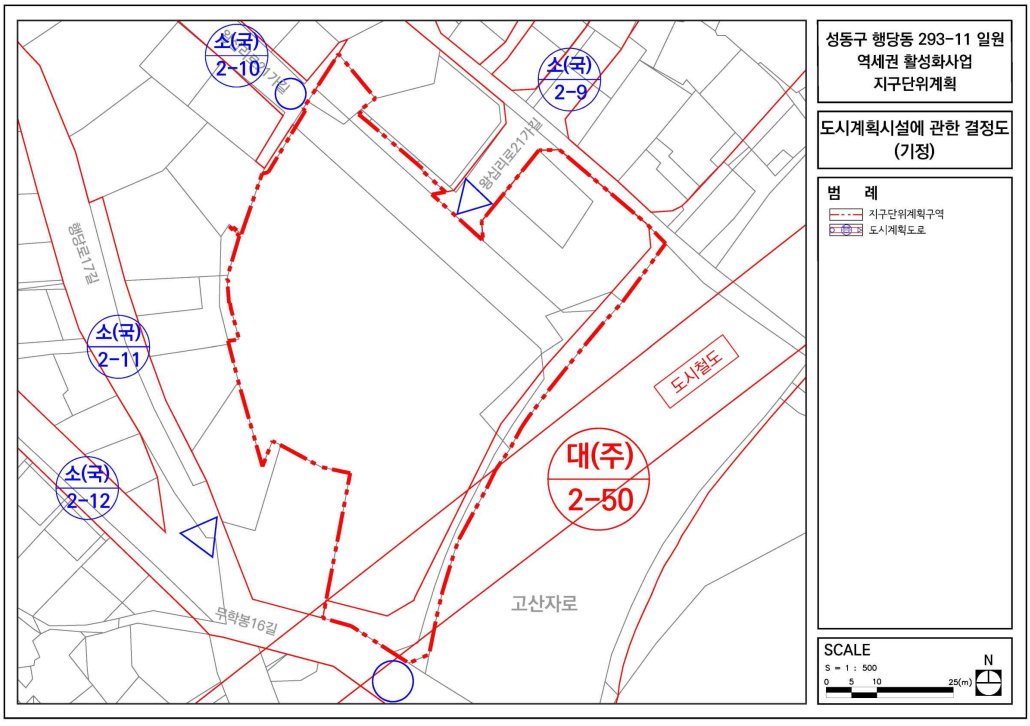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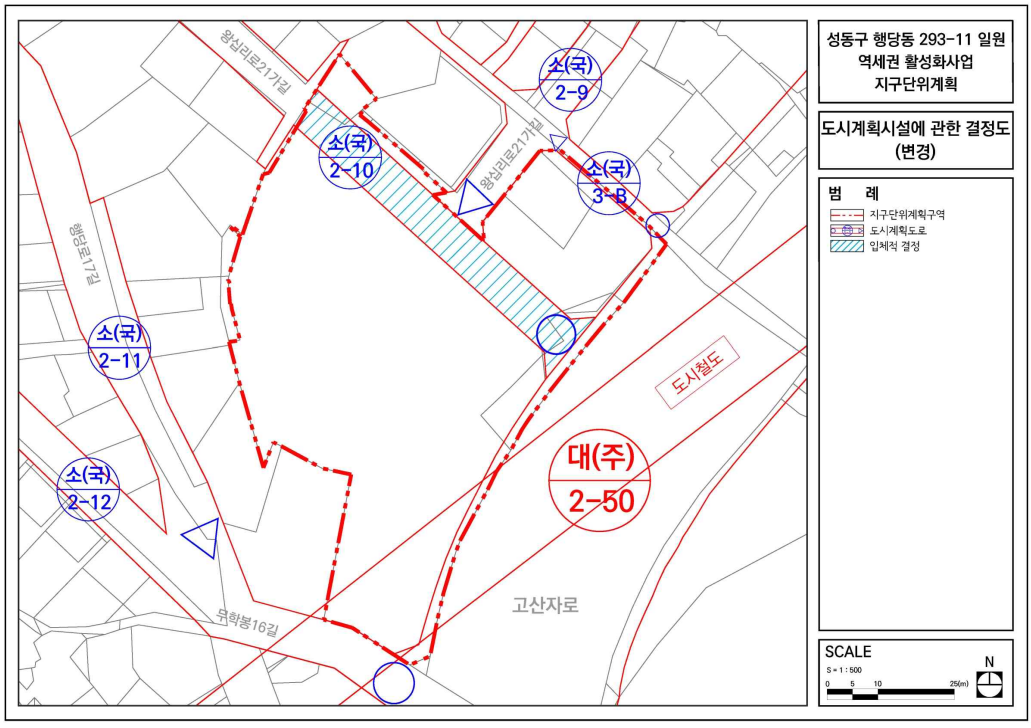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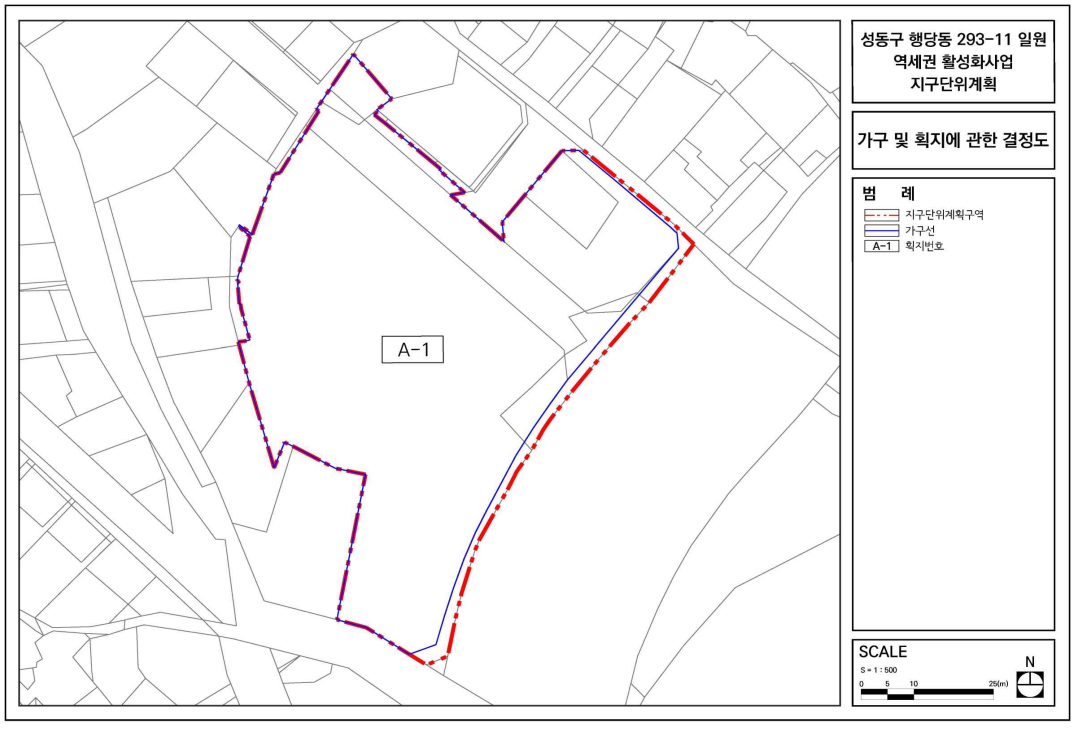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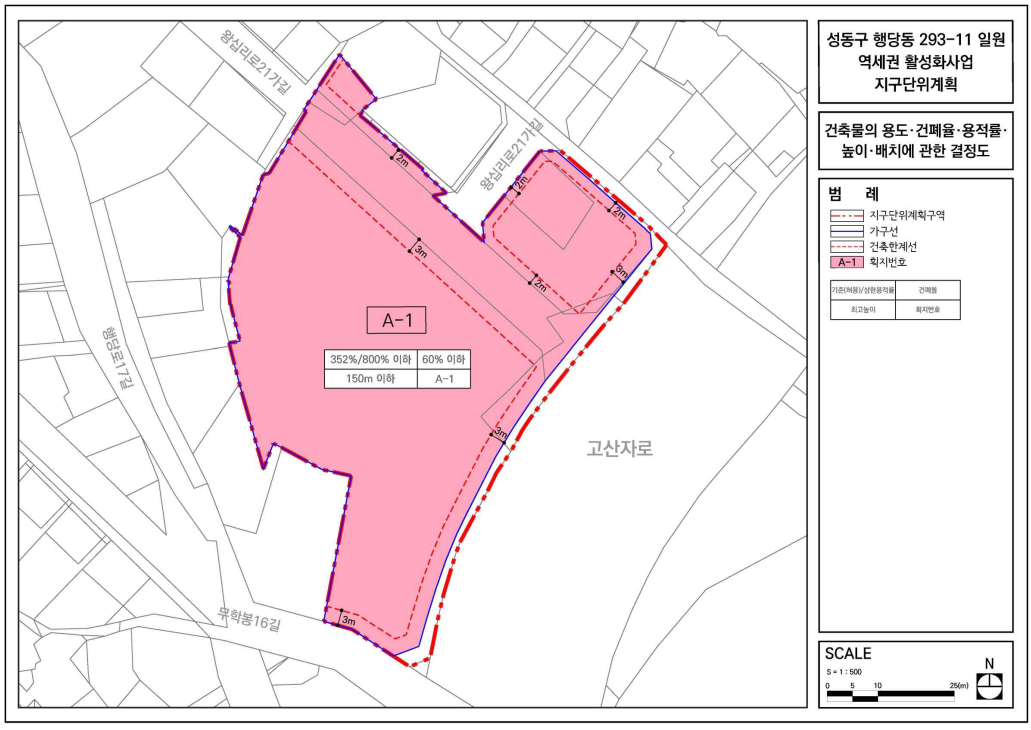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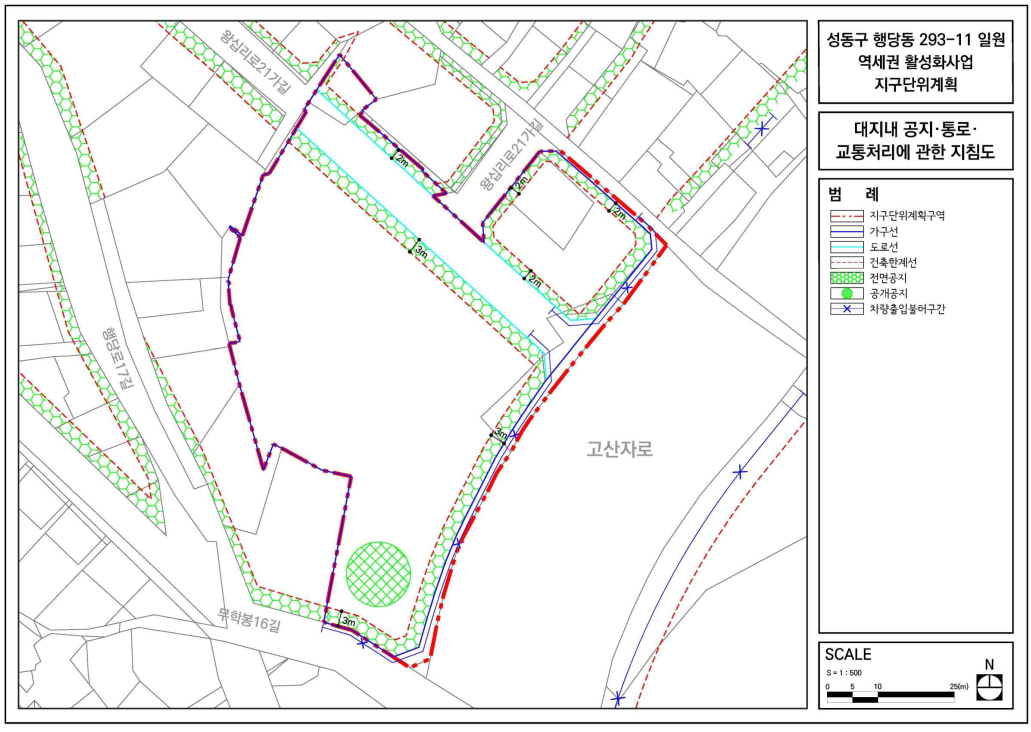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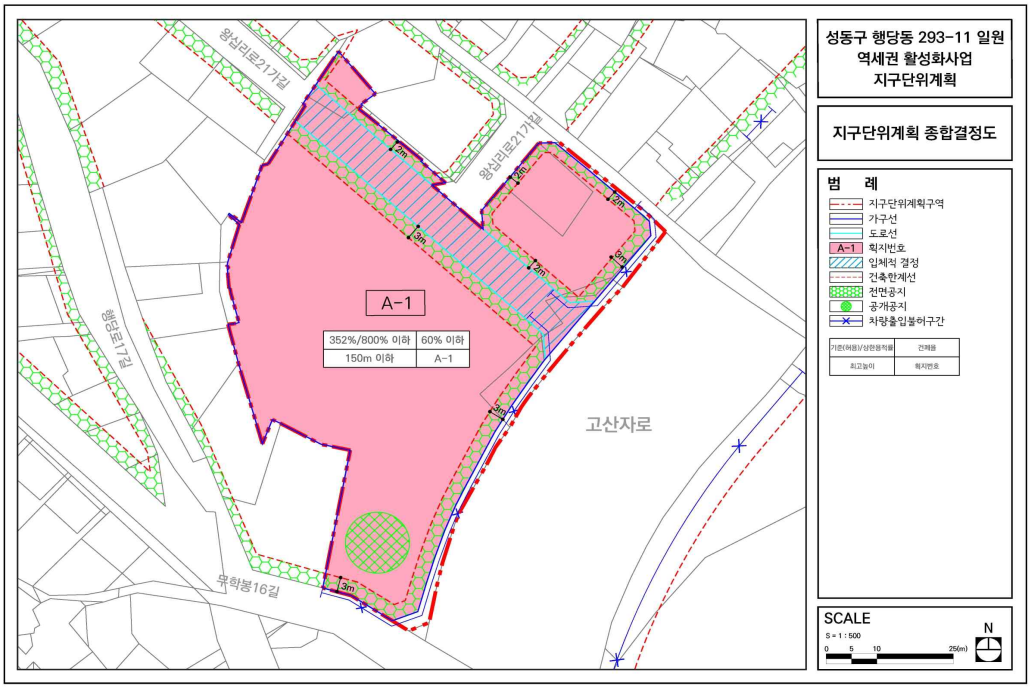
■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에 관한 결정도



■ 대지 내 공지 · 통로 · 교통처리에 관한 지침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진ㅇ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안길 3*, **1호(선부동)	일시 : 2025-08-08 00:15 장소 : 서울시 양재동 서초ic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김ㅇ범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번길 5*, **2동 **5호(인창동	일시 : 2025-08-11 18:40 장소 : 서울시 문정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진ㅇ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안길 3*, **1호(선부동)	일시 : 2025-09-04 23:15 장소 : 서울시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전○찬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2길 *0, **3호(화곡동)	일시 : 2025-11-18 14:58 장소 : 서울시 개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진○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안길 3*, **1호(선부동)	일시 : 2025-11-21 23:05 장소 : 서울시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진○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안길 3*, **1호(선부동)	일시 : 2025-11-26 01:00 장소 : 서울시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6.2.28.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23406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56 705동 602호 (상계동, 주공)	수도요금	2023. 9월 등 13납기	13회	233,67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56 705동 602호 (상계동, 주공)	이*원	610616-2****** (2회송달 부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12, 522동 1206호	233,670원	2026 12. 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박정환(☎02-3146-32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2757959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92 719동 301호 (상계동 주공)	수도요금	2022. 11월 등 18납기	18회	185,05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92 719동 301호 (상계동 주공)	장*읍	751002-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92 719동 301호 (상계동 주공)	185,050원	2026 12. 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박정환(☎02-3146-32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250590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33길 52-3 (상계동, 영업용)	수도요금	2022. 11월 등 18납기	18회	298,55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33길 52-3 (상계동, 영업용)	김*호	900118-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33길 52-3, 301호	298,550원	2026 12. 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박정환(☎02-3146-32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26815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35가길 54-7, 202호(상계동, 송도빌라)	수도요금	2022. 11월 등 18납기	18회	163,89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35가길 54-7, 202호(상계동, 송도빌라)	강*문	750607-1****** (2회송달 부재)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70, 120동 2801호	163,890원	2026 12. 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박정환(☎02-3146-32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6조,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26조에 근거하여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화물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2026. 2. 6.(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독촉 이후에도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명시함.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는 마스킹 처리.

당사자	명칭(성명)	㈜정*로지스
	차량번호	서울86*3805 외 33대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0길 *, 지하 1층 *호
환수금내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 물류정책과-871(2025.9.19.)에 따른 44,978,750원
등기우편송달내역		등기번호 : 1078834823251 반송사유 : 주소불명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6. 2. 6.)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9호

2026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승인일자: 2026. 1. 12.
2. 관리계획 주요내용
   - 대규모시설의 설치계획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면적(㎡, 괄호안은 누계)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천왕차량기지	인천광역시장	서울시 구로구 70-1번지 일원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78번지 일원	197,026 (197,026)	4,032.41 (30,509.91)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02 - 2133 - 2015)
   구로구 공원녹지과(02-860-3097)
4. 열람기간: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8268164	강북구 한천로139나길 25 (수유동)	수도요금	2022년 8월 등 19납기	19회	2,294,23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강북구 한천로139나길 25 (수유동)	박*양	570225-2******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39나길 25(수유동)	2,294,230원	2025 12.1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남경극(☎02-3146-32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1.22. ~ 2026.2.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3030796	강북구 솔매로22길 36 목화빌라 202호 (미아동791-3591)	수도요금	2022년 11월 등 19납기	19회	837,81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강북구 솔매로22길 36 목화빌라 202호 (미아동791-3591)	성*민	900104-2******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22길 36 ,202호 (미아동 목화빌라)	837,810원	2026.2.6.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남경극(02-3146-32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6.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8017499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라길 8	수도요금	2025년 1월 등 5납기	5회	624,03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라길 8 (임*화 지분)	채*선	910215-1****** (등기번호 1102237020206, 11022350026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라길 8		624,030원	2025. 12. 19.
		임*화	620812-2****** (등기번호 1102237020205, 1102235002599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라길 8			

3.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상열(☎ 02-3146-45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예고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6.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table>
<tr><th rowspan="2">고객번호</th><th rowspan="2">급수설비 소재지</th><th colspan="4">체납내역</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과 목</th><th>납 기</th><th>횟 수</th><th>금 액</th></tr>
<tr><td>028332707</td><td>서울시 관악구 난우16길 63-11
(신림동 597-131)</td><td>수도요금</td><td>2024년 4월 등 7납기</td><td>7회</td><td>3,574,220원</td><td>해당 내역은 2026. 1. 1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td></tr>
<tr><th rowspan="2">압류구분</th><th rowspan="2">압류물건</th><th colspan="3">물 건 소 유 자</th><th rowspan="2">압류금액</th><th rowspan="2">압류일</th></tr>
<tr><th>성 명</th><th>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th><th>주 소</th></tr>
<tr><td rowspan="3">부동산</td><td rowspan="3">서울시 관악구 난우16길 63-11
(신림동 597-131)
※백*정 지분 압류</td><td>백*정</td><td>760317-2******
(등기번호 1102236003520, 1102236003931 폐문부재)</td><td>서울시 관악구 난우16길 63-11</td><td rowspan="3">3,574,220원</td><td rowspan="3">2026. 2. 9.
(예정)</td></tr>
<tr><td>백*석</td><td>780204-1******
(등기번호 1102236003519, 1102236003932 폐문부재)</td><td>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39, 1310호</td></tr>
<tr><td>백*준</td><td>800301-1******
(등기번호 1102236003521 등기송달 완료)</td><td>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45, 1008동 1804호</td></tr>
</table>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35288976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45길 19-6, 201호 (신림동 759-38)	수도요금	2024년 10월 등 7납기	7회	563,560원	해당 내역은 2026. 1. 1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45길 19-6, 201호 (신림동 759-38)	박*현	990924-1****** (등기번호 1102236003516, 1102236003933 폐문부재)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45길 19-6, 201호		563,560원	2026. 2. 9. (예정)

3.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상열(☎ 02-3146-45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1호

소송비용액 납부(최고)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3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76850의 소송비용이 확정결정되어 소송비용액 납부(최고)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소송비용액 납부(최고)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 22. ~ 2026. 2. 6.(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에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재교부를 요청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한 내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부과근거: 서울행정법원2010아26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2366 소송비용액확정

6. 공고대상

대상자	주 소	부과금액(원)	비 고
황○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1*-9	505,700	서울행정법원2010아2649
최○은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게리궁아난길 16*	505,700	서울행정법원2010아2649
장○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21-1*	842,4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카확2366
박○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3*	842,4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카확2366

7.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8.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3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36건																
1	20232871	05무0937	레인지로버 4.4D	000047339214201 20251125003531	종묘	0001:18	2025-10-01	17:08	2025-10-01	18:26	6,400	0	6,400	장*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기타	2026-01-30
2	20232877	59조1806	GLK220 CDI 4Matic	000047339214201 20251125003500	개화산역	0003:19	2025-10-01	20:45	2025-10-02	00:04	6,800	0	6,800	문*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8길	수취인불명	2026-01-30
3	20232951	17로3594	말리부 2.0 DOHC	000047339214201 20251125003425	한강진역	0003:35	2025-10-02	17:26	2025-10-02	21:01	17,200	0	17,200	송*우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기타	2026-01-30
4	20233024	21마3268	E300	000047339214201 20251125003349	마포유수지	0001:19	2025-10-01	12:11	2025-10-01	13:30	3,500	0	3,500	서*욱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폐문부재	2026-01-30
5	20233136	11오3867	BMW i3	000047339214201 20251125003203	별우물	0000:43	2025-10-11	00:07	2025-10-11	00:50	500	0	500	이*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수취인불명	2026-01-30
6	20233141	236너6042	S450 4Matic L	000047339214201 20251125003158	종묘	0000:55	2025-10-11	16:47	2025-10-11	17:42	4,400	0	4,400	장*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기타	2026-01-30
7	20233153	168두5695	Mercedes-Benz CLS 300 d	000047339214201 20251125003042	종묘	0006:38	2025-10-12	08:37	2025-10-12	15:15	28,800	0	28,800	이*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폐문부재	2026-01-30
8	20233168	64부3569	로체	000047339214201 20251125002995	사당노외	0000:30	2025-10-14	22:53	2025-10-14	23:23	1,200	0	1,200	석*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1길	기타	2026-01-30
9	20233171	66라5284	스파크 1.0 DOHC LPG	000047339214201 20251125002965	구파발역	0000:18	2025-10-14	17:46	2025-10-14	18:04	300	0	300	박*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2길	폐문부재	2026-01-30
10	20233190	340루2590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 20251125002780	천호역	0001:24	2025-10-16	19:29	2025-10-16	20:53	4,400	0	4,400	고*육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정로15길	이사불명	2026-01-30
11	20233191	82로5443	렉스턴스포츠 칸	000047339214201 20251125002773	사당노외	0008:04	2025-10-16	15:08	2025-10-16	23:12	28,800	0	28,800	오*피*설*주*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수취인부재	2026-01-30
12	20233199	52가0758	쏘렌토	000047339214201 20251125002698	수서역	0012:22	2025-10-17	18:01	2025-10-18	06:23	23,000	0	23,000	김*희	충청남도 서산시 학동3로	기타	2026-01-30
13	20233201	43수7528	CHEVROLET EQUINOX FWD	000047339214201 20251125002674	복정역	0001:12	2025-10-17	17:09	2025-10-17	18:21	2,500	0	2,500	김*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3길	폐문부재	2026-01-30
14	20233219	279두9494	C200 Coupe	000047339214201 20251125002490	서울글로벌센터	0000:28	2025-10-20	14:45	2025-10-20	15:13	4,200	0	4,200	Z*A*G*Z*A*J*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2길	기타	2026-01-30
15	20233240	19서7100	렉서스 RX350	000047339214201 20251125002324	천왕역	0003:21	2025-10-22	18:25	2025-10-22	21:46	6,900	0	6,900	오*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폐문부재	2026-01-30
16	20233250	85우6192	코란도스포츠	000047339214201 20251125002225	구파발역	0002:21	2025-10-23	07:14	2025-10-23	09:35	4,900	0	4,900	김*희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	기타	2026-01-30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7	20233257	37마0377	재규어 F-Type	000047339214201 20251125004297	신대방역	0000:38	2025-10-24	18:59	2025-10-24	19:37	2,000	0	2,000	서*욱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기타	2026-01-30
18	20233269	23수9046	아반떼 (AVANTE)	000047339214201 20251125004237	중곡1동	0009:38	2025-10-25	10:35	2025-10-25	20:13	14,400	0	14,400	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기타	2026-01-30
19	20233287	68도2028	스포티지	000047339214201 20251125004107	마포유수지	0005:39	2025-10-27	14:23	2025-10-27	20:02	14,900	0	14,900	김*숙	경기도 안성시 석정2길	기타	2026-01-30
20	20233293	332부7545	K5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51125002040	천호역	0004:10	2025-10-27	10:03	2025-10-27	14:13	2,600	0	2,600	박*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18길	기타	2026-01-30
21	20233295	120노9386	BMW 523d xDrive	000047339214201 20251125002027	수서역	0003:04	2025-10-27	12:16	2025-10-27	15:20	11,800	0	11,800	조*주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기타	2026-01-30
22	20233300	165로3585	레이	000047339214201 20251125004045	서울글로벌센터	0000:30	2025-10-29	16:32	2025-10-29	17:02	2,100	0	2,100	W*N**E*G*E*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5길	기타	2026-01-30
23	20233302	23수9046	아반떼 (AVANTE)	000047339214201 20251125004039	중곡1동	0010:25	2025-10-29	09:48	2025-10-29	20:13	14,400	0	14,400	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기타	2026-01-30
24	20233305	264머4141	팰리세이드(PALISADE)	000047339214201 20251125004015	용산주차빌딩	0012:09	2025-10-30	06:22	2025-10-30	18:31	21,600	0	21,600	J*N*J*A*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기타	2026-01-30
25	20233324	65라2386	ALTIMA 2.5	000047339214201 20251125003821	구파발역	0010:17	2025-10-30	09:09	2025-10-30	19:26	2,400	0	2,400	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폐문부재	2026-01-30
26	20233335	220소1088	트랙스 1.2 터보	000047339214201 20251125003715	구파발역	0009:17	2025-10-30	10:18	2025-10-30	19:35	2,400	0	2,400	한*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8다길	기타	2026-01-30
27	20233336	238도8796	A8L 60 TDI quattro	000047339214201 20251125003708	구파발역	0000:33	2025-10-30	19:03	2025-10-30	19:36	1,100	0	1,100	이*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폐문부재	2026-01-30
28	20233392	29루3751	모닝	000047339214201 20251125001834	도봉산역	0013:06	2025-10-02	07:44	2025-10-02	20:50	6,100	0	6,100	박*수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63번길	기타	2026-01-30
29	20233396	30구6630	제네시스(GENESIS)	000047339214201 20251125001795	도봉산역	0018:14	2025-10-29	06:07	2025-10-30	00:21	6,100	0	6,100	박*숙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63번길	기타	2026-01-30
30	20233413	43다6740	아반떼(AVANTE)	000047339214201 20251125001636	신방화역	0002:54	2025-10-29	11:40	2025-10-29	14:34	5,900	0	5,900	최*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7가길	기타	2026-01-30
31	20233430	31서5626	K7	000047339214201 20251125001498	개화역	0007:31	2025-10-26	06:52	2025-10-26	14:23	6,100	0	6,100	한*미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폐문부재	2026-01-30
32	20233500	21누7989	K5	000047339214201 20251125000847	한강진역	0003:28	2025-10-27	13:30	2025-10-27	16:58	16,800	0	16,800	강*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폐문부재	2026-01-30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33	20233552	07구9027	MINI Cooper S Roadster	000047339214201 20251125000458	천호역	0000:31	2025-10-17	00:10	2025-10-17	00:41	1,500	0	1,500	신*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50번길	폐문부재	2026-01-30
34	20233554	67누9701	마티즈 1.0 DOHC	000047339214201 20251125000435	천호역	0000:44	2025-10-22	16:26	2025-10-22	17:10	1,100	0	1,100	오*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기타	2026-01-30
35	20233558	102모2393	스포티지	000047339214201 20251125000396	천호역	0000:11	2025-10-23	20:25	2025-10-23	20:36	100	0	100	박*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67길	기타	2026-01-30
36	20233565	290소2405	트레일블레이저 1.35 TURBO FWD	000047339214201 20251125000329	천호역	0001:56	2025-10-10	22:45	2025-10-11	00:41	2,900	0	2,900	이*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7길	기타	2026-01-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5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및 소재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근거
㈜하나이앤피 종합건설 (박쌍옥)	건축공사업 01-48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 402호(신내동)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현장명: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229 노유자 시설 신축공사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준공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법 제22조 제6항	과태료 2,000,000원	법 제99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7

3.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6호

2026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접수마감일(2026. 2. 13.)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2. 지원대상 사업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

사업유형	사업내용 (예시)
복지·건강	· 여성·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다문화·탈북자 등 사회적 복지 증진 · 치매 예방교육 지원, 고령자·느린학습자 학습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
민생경제	· 청년취업·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 · 사회적 약자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문화관광·체육	· 남산, 청계천, 한강 등 서울 관광 명소 알리기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 활동
사회통합	·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해소 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 시민의식 함양,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계층간 갈등해소 등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사업유형	사업내용 (예시)
교통 · 안전	·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 재해 · 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 안전 불감증 해소, 생명존중 확산

3. 지원사업 유형 : 5개 유형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4. 사업신청 및 지원규모
  ○ 사업신청 : 1개 단체당 1개 사업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별 3,000만원 이하(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규모 결정)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 의무 편성 (15% 이상 3점, 20% 이상 5점 가점 부여)
    – (★중요) 사업신청 시 설정한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은 선정 이후 절대 변경 불가함

심사배제 대상 (보조금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요건(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사무실 설치 · 운영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 단체의 정관 · 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에 선정된 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단체
  –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
❍ 공익활동지원사업 수행 중 후원명칭을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단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2024년 지원 단체가 보탬e에 정보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2026년 공익사업 심사에서 배제
❍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반환금을 1년 이상 체납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및 사업비 반납 미이행(이행보증보험 청구 포함)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연속, 5년간 4회 이상 서울시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보조금 대비 10%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10% 미만 부담 단체가 신청한 사업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유사 · 중복사업 지원 배제
  –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시 · 도, 자치구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공익사업 또는 일반 보조사업을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2025년 공익사업 평가결과는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 / 행정 / 기획행정 / 시민협력 / 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에 2026. 3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5.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6. 1. 23.(금) 14:00~
  ○ 방　법 : 서울시 누리집, 유튜브 게시
    - 누리집 : 분야별정보 / 행정 / 기획행정 / 시민협력 / 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
    - 유튜브 : 2026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검색
  ○ 내　용 : 신청자격,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2. 2.(월) ~ 2026. 2.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인터넷 접수 (링크클릭 시 이동)

보탬e 접수방법

①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회원가입 / 로그인
② [단체가입] 사용자지원 / 사용자정보관리 / 단체 가입 or 단체 신규등록
③ [사업신청] 보조사업선정 / 공모사업신청관리 / 공모사업현황 / 공모사업 조회 / 신청
❖ 보조사업 예치유형 : 비예치형, 선택사유 : 서울특별시 공고 사항
❖ 회원가입 후 사용자 정보, 단체정보 입력 등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① 보탬e 교재(비예치형), ② 보탬e 유튜브 영상교육 (링크클릭 시 이동)
※ 보탬e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 1660-1390 (평일 09:00~18:00)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은 접수 불가하며, 접수마감일(2. 13.)은 보탬e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을 권장합니다.

7.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
  ○ 사업기간(약정기간) : 2026. 4. 30. ~ 11. 30. (예정)
  ※ 공직선거법에 따라, 행사 및 사업 일정은 지방선거일(6.3.) 이후 진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신청서류

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 단체소개서 내 전담인력 이메일로 선정 관련 사항 통보 예정
③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서울특별시 발급) 사본 1부
⑤ 가족친화인증서(여성가족부 발급) 사본 1부 (※ 해당하는 단체만 제출)

8. 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방법 : 최근 5년간 지원 여부에 따라 기존, 신규 단체로 구분하여 선정
(비율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정함)

○ 선정기준 : 단체 역량, 사업 공익성 · 독창성 · 파급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분 야	심 사 항 목	100	심 사 내 용
단 체 역 량	전문성·책임성	15	전담인력, 단체실적과 신청사업 유사성·설립목적 부합 등
	공익활동 실적	5	최근 3년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받은 공익사업 실적
사 업 내 용	공익 적합성 등	20	단체 설립목적 및 공익성 적합 여부, 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
	사업의 독창성	20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등
	사업문제 해결 등	15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 추진방법 및 외부자원 연계성 등
	파급효과	15	수혜범위 적절성, 주민욕구 반영 여부, 서울시 전역 파급 가능성 등
예 산	예산 타당성	10	지원요구액 적절성, 인건비와 사업비 적절성 및 건전성 등
가감점 사항			• 전년도 사업 탁월 단체 가점(3점) • 자부담 비율 15% 이상 가점(3점), 20% 이상 가점(5점) • 가족(육아)친화 단체 가점(2점) • (2027년부터 적용예정) 전전년도 평가결과를 단체 SNS를 통해 공개 시 0점, 미공개 시 2점 감점(전전년도 공익사업 미수행 단체는 0점)

선정심사 고려사항

○ 다양한 단체와 사업에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정치적 활동, 영리 활동, 종교활동이 목적이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는 사업 선정 제외
○ 일회성 · 전시성, 단체 홍보나 기념행사 위주 사업, 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장학금, 시상금 등),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선정 제외

○ 결과발표 : 2026. 3. 27.(금) 14:00 (예정) (※ 발표 일시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및 보탬e 공고, 선정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이후 현장확인 결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상실, 보조금 중복지원 사실 등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고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 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 및 전용 체크카드 신규 개설
○ 보조금은 사업기간 동안 두 차례 분할 교부(1차 70%, 2차 30%)
○ 선정된 단체의 수행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
○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에 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 중간평가(서면 · 현장조사) 결과 미흡 단체는 2차 교부를 중단하고 미흡사항 보완 후 교부
○ 사업완료 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0.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가능
○ 부정수급 행위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 공표, 수행 배제, 제재부과금 징수, 벌칙(징역, 벌금) 부과 등의 조치 가능
○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 · 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 · 설비 구매, 건축 · 시설 등) 및 운영비(상근직원의 인건비 등)는 미지원(사업비만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행사 개최 시 서울시 후원을 표시할 경우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절차」 준수(서울시 사전 검토 · 승인 후 사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02-2133-6330, 6331, 6328)로 문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7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3부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	남산3호터널	2025-05-01 07:29:03	152하6051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	남산1호터널	2025-05-01 07:33:29	167오6375	이*용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539번길
3	남산1호터널	2025-05-01 07:57:06	12고7345	곽*훈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26번길
4	남산3호터널	2025-05-01 08:01:17	58소7783	이*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5안길
5	남산3호터널	2025-05-01 08:06:39	239고9796	장*원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116번길
6	남산1호터널	2025-05-01 08:09:25	39누3914	주식회사 코*****틱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2길
7	남산1호터널	2025-05-01 08:12:48	270누6604	(주)옉*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8길
8	남산1호터널	2025-05-01 08:28:41	199하9127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9	남산1호터널	2025-05-01 08:46:09	06소5145	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	남산3호터널	2025-05-01 08:56:59	394주8233	유한회사 에**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11	남산1호터널	2025-05-01 10:01:27	354머2365	로*****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2	남산3호터널	2025-05-01 10:47:54	28조6030	이*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7길
13	남산1호터널	2025-05-01 11:13:41	199하8539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4	남산3호터널	2025-05-01 11:30:23	54다6794	S****N S*****N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5	남산3호터널	2025-05-01 12:30:53	27버0178	임*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6	남산1호터널	2025-05-01 12:42:43	234누3390	우*****탈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	남산3호터널	2025-05-01 12:49:25	22저3485	A********O C****S J**N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8	남산3호터널	2025-05-01 12:56:48	141무3060	정*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7길
19	남산3호터널	2025-05-01 13:10:48	316소7328	김*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420번길
20	남산3호터널	2025-05-01 13:16:26	60부6847	김*균	경기도 평택시 원평2로28번길
21	남산1호터널	2025-05-01 13:49:54	11무6679	엘***온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
22	남산3호터널	2025-05-01 13:58:04	199호5933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	남산1호터널	2025-05-01 14:25:05	07로4886	이*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5길
24	남산1호터널	2025-05-01 14:27:12	180버5595	P**K S**G H**K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25	남산3호터널	2025-05-01 15:31:14	146호1523	세**탈(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남산3호터널	2025-05-01 15:54:07	36버1219	정*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길
27	남산3호터널	2025-05-01 17:02:21	180우2255	L* N**G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301번길
28	남산1호터널	2025-05-01 17:12:11	49두7882	김*경	경기도 하남시 세미로1길
29	남산1호터널	2025-05-01 17:16:56	54소6704	전*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8길
30	남산1호터널	2025-05-01 17:58:55	37구3242	주*태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
31	남산3호터널	2025-05-01 18:38:31	66조4886	이*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상2길
32	남산3호터널	2025-05-01 18:43:36	228고2410	황*중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3	남산3호터널	2025-05-01 18:46:42	237거9055	윤*진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34	남산1호터널	2025-05-01 18:48:23	36가7794	추*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행자골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5	남산1호터널	2025-05-01 19:09:32	51머4259	G*******G U********R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36	남산1호터널	2025-05-01 19:11:08	178수5803	진*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4번길
37	남산1호터널	2025-05-01 19:16:19	241두2975	백*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5길
38	남산1호터널	2025-05-01 19:40:11	53버0942	전*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9	남산1호터널	2025-05-01 20:24:29	140버4607	(주)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9길
40	남산1호터널	2025-05-01 20:36:32	38노8257	M*****D Z***R	서울특별시 중랑구 답십리로77길
41	남산1호터널	2025-05-01 20:49:28	33무9949	황*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5길
42	남산1호터널	2025-05-02 07:02:02	25주2724	주식회사 씨*****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29번길
43	남산1호터널	2025-05-02 07:56:43	140오3952	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44	남산3호터널	2025-05-02 08:01:28	20로1713	황*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
45	남산1호터널	2025-05-02 09:59:59	241모6434	S***C H***M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46	남산1호터널	2025-05-02 10:05:36	132소9849	김*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50번길
47	남산3호터널	2025-05-02 11:20:32	23머1077	방*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아길
48	남산3호터널	2025-05-02 11:30:42	212조2788	D**N T*I T**Y T***G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49	남산1호터널	2025-05-02 12:05:34	11모8031	김*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74번길
50	남산1호터널	2025-05-02 12:23:34	61수6712	이*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51	남산1호터널	2025-05-02 12:51:44	328마4007	L* M****N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45번길
52	남산3호터널	2025-05-02 13:04:18	199하5564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53	남산3호터널	2025-05-02 14:21:52	310고4754	김*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4길
54	남산3호터널	2025-05-02 14:53:05	168구6484	P**O L*****N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55	남산1호터널	2025-05-02 16:07:50	48다1306	주*******탈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6	남산1호터널	2025-05-02 16:28:39	15머5727	장*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57	남산3호터널	2025-05-02 16:39:34	302도7191	한*우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58	남산3호터널	2025-05-02 17:35:43	30고9972	(주)에******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9	남산1호터널	2025-05-02 18:31:22	133하3773	(주)오**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60	남산3호터널	2025-05-02 18:59:54	156러7877	W**G L*I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61	남산1호터널	2025-05-02 19:11:24	36더9763	주식회사 케**션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62	남산3호터널	2025-05-02 20:20:33	330머3104	김*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삼성길
63	남산3호터널	2025-05-02 20:43:28	46너0432	주식회사 이***우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6길
64	남산3호터널	2025-05-02 20:45:40	06조0281	주식회사 솔**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65	남산1호터널	2025-05-02 20:47:52	154호4213	주식회사 쓰******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66	남산1호터널	2025-05-02 20:49:16	142더4971	조*민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8길
67	남산3호터널	2025-05-07 07:52:29	207머4991	L* J**N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1길
68	남산1호터널	2025-05-07 09:40:51	35마9650	L* V*****I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69	남산3호터널	2025-05-07 10:53:37	154구1522	X* M****A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70	남산1호터널	2025-05-07 11:27:19	389구7804	이*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71	남산1호터널	2025-05-07 12:13:41	101허4827	주식회사 토****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72	남산3호터널	2025-05-07 12:50:24	139라7931	L* D*****I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73	남산1호터널	2025-05-07 14:17:25	202마5951	정*나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62번길
74	남산1호터널	2025-05-07 14:30:47	43부1345	이*석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75	남산1호터널	2025-05-07 14:38:49	54어0170	Q**N C*O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76	남산1호터널	2025-05-07 15:08:17	67러0465	주식회사 씨***랩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2길
77	남산1호터널	2025-05-07 15:30:43	47로4289	(주)광**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78	남산3호터널	2025-05-07 15:40:12	190서9249	민*홍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5길
79	남산1호터널	2025-05-07 16:19:01	104마2519	정*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80	남산3호터널	2025-05-07 16:56:17	101하1645	(주)바***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4길
81	남산1호터널	2025-05-07 19:58:54	125호8877	인*****카(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8길
82	남산1호터널	2025-05-07 20:32:45	167너9402	주식회사 아****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49길
83	남산1호터널	2025-05-07 20:47:13	199하7559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84	남산1호터널	2025-05-07 20:56:30	01나1616	(주)한******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85	남산3호터널	2025-05-08 08:33:37	42거9009	F**G Z*****G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4길
86	남산3호터널	2025-05-08 08:51:58	249도2285	최*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87	남산3호터널	2025-05-08 09:20:41	110서7401	케****탈(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88	남산1호터널	2025-05-08 09:47:46	391마4087	주식회사****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동강로
89	남산1호터널	2025-05-08 10:47:09	11조1783	주식회사 넥****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0	남산1호터널	2025-05-08 10:51:00	41로0709	(주)에****텍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사기소길14번길
91	남산1호터널	2025-05-08 11:28:37	126호3027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92	남산1호터널	2025-05-08 11:40:46	293부8365	김*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8길
93	남산3호터널	2025-05-08 12:51:26	34루6204	조*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482번길
94	남산3호터널	2025-05-08 12:52:34	52누0875	정*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95	남산3호터널	2025-05-08 12:52:43	342고5586	L*N H******G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96	남산3호터널	2025-05-08 12:56:18	27버0178	임*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97	남산3호터널	2025-05-08 14:44:23	33모9457	주식회사 윈**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신대길
98	남산1호터널	2025-05-08 17:34:10	24우8069	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가길
99	남산1호터널	2025-05-08 17:52:31	153누8229	손*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100	남산1호터널	2025-05-08 18:27:43	31호2887	주식회사 퍼****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담로
101	남산1호터널	2025-05-08 18:48:12	22수3832	백*숙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7길
102	남산3호터널	2025-05-08 18:54:49	304마7314	김*환	경기도 오산시 원당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03	남산1호터널	2025-05-08 19:31:33	61무9343	서*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104	남산1호터널	2025-05-08 19:39:21	24도1154	정*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4길
105	남산1호터널	2025-05-08 19:47:46	157저7772	정*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06	남산1호터널	2025-05-08 20:07:02	61도6262	한*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107	남산1호터널	2025-05-08 20:46:09	15로4784	황*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9길
108	남산1호터널	2025-05-09 08:27:43	356저3570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15번길
109	남산1호터널	2025-05-09 10:58:14	21거1665	박*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10	남산3호터널	2025-05-09 11:29:57	317수3965	경******발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111	남산3호터널	2025-05-09 12:10:43	122누4290	김*영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112	남산3호터널	2025-05-09 12:27:45	233다7484	C*I L*****E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2길
113	남산1호터널	2025-05-09 12:33:12	114서2647	김*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114	남산1호터널	2025-05-09 12:48:30	367보6010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15	남산3호터널	2025-05-09 13:35:33	110서7401	케****탈(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6	남산1호터널	2025-05-09 13:36:17	133저1359	머**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117	남산3호터널	2025-05-09 13:51:47	37라9001	주식회사 아*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8	남산1호터널	2025-05-09 13:58:26	41무6468	충***산(주)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외동길
119	남산3호터널	2025-05-09 14:15:28	67나1535	황*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남산3호터널	2025-05-09 14:33:10	60수8519	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길
121	남산3호터널	2025-05-09 15:03:36	143가5174	오*재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윌길
122	남산1호터널	2025-05-09 15:26:37	154거9656	(주)인*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23	남산3호터널	2025-05-09 18:32:37	152두5593	현*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4	남산1호터널	2025-05-09 18:33:36	22모0609	화**업(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남산3호터널	2025-05-09 18:55:40	51더2946	주식회사 그*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26	남산3호터널	2025-05-09 19:12:22	45모8268	전*형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96번길
127	남산1호터널	2025-05-09 19:20:54	106호4961	코***트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128	남산3호터널	2025-05-09 19:43:09	64소6010	이*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3길
129	남산3호터널	2025-05-09 20:09:38	169호9841	(주)렉***카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44길
130	남산1호터널	2025-05-09 20:24:50	39러4042	안*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31	남산1호터널	2025-05-12 07:31:36	230두6238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32	남산1호터널	2025-05-12 07:53:06	23두8974	S****A B*****A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두방길
133	남산3호터널	2025-05-12 08:34:16	65부0181	P**O M****N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3길
134	남산1호터널	2025-05-12 08:57:46	01머0533	고*효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번길
135	남산3호터널	2025-05-12 09:20:29	268노7564	N*****Z B******N S***E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36	남산3호터널	2025-05-12 09:30:21	110서7401	케****탈(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37	남산1호터널	2025-05-12 10:49:24	103마3376	강*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138	남산1호터널	2025-05-12 12:26:50	311버6175	최*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139	남산1호터널	2025-05-12 12:30:37	183러6258	K*M G****A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7길
140	남산3호터널	2025-05-12 13:38:23	245러4398	김*림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41	남산1호터널	2025-05-12 13:39:15	109호2470	주식회사 우***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
142	남산1호터널	2025-05-12 14:44:30	43두1881	유*****딩 (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8길
143	남산1호터널	2025-05-12 14:55:22	09러9244	T*********V A*****K A**********H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36번길
144	남산3호터널	2025-05-12 15:42:35	311노1886	D* X****O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45	남산1호터널	2025-05-12 16:49:54	18라5271	푸*****발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4로
146	남산3호터널	2025-05-12 17:51:43	133하8876	카*트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30번길
147	남산1호터널	2025-05-12 17:55:30	243주5883	E*****S A****A L****E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48	남산1호터널	2025-05-12 18:51:58	186루9915	이*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가길
149	남산3호터널	2025-05-12 20:13:43	224주6777	S**N L*N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50	남산1호터널	2025-05-12 20:25:30	08노0592	전*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7길
151	남산3호터널	2025-05-12 20:30:25	111다1759	전*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152	남산3호터널	2025-05-13 08:47:08	199하3771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3	남산1호터널	2025-05-13 08:52:04	344도1494	박*세	경기도 오산시 삼미로
154	남산1호터널	2025-05-13 09:20:55	08우9191	P**A D*****C X*N J***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4길
155	남산3호터널	2025-05-13 09:59:05	110서7401	케****탈(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56	남산1호터널	2025-05-13 10:43:50	199하7210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7	남산1호터널	2025-05-13 10:59:12	17라1438	C*****O-R***S P***O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58	남산3호터널	2025-05-13 11:01:50	226러6257	김*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159	남산3호터널	2025-05-13 11:38:05	11저7540	하*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71길
160	남산3호터널	2025-05-13 11:49:13	261두5490	남*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161	남산3호터널	2025-05-13 11:53:29	326로9155	노*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20길
162	남산3호터널	2025-05-13 12:02:54	27러4696	김*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3길
163	남산3호터널	2025-05-13 13:12:27	148버8644	주식회사 원*스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
164	남산3호터널	2025-05-13 13:29:08	126버8695	이*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65	남산3호터널	2025-05-13 13:35:48	68머7562	이*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66	남산1호터널	2025-05-13 13:42:32	109호1488	초****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7번길
167	남산1호터널	2025-05-13 13:52:21	08우9191	P**A D*****C X*N J***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4길
168	남산3호터널	2025-05-13 14:10:44	22러9409	이*욱	대구광역시 서구 큰장로
169	남산3호터널	2025-05-13 14:25:25	154하9883	(주)제****카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8번길
170	남산1호터널	2025-05-13 15:42:16	399머8730	(주)아*****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71	남산3호터널	2025-05-13 15:48:53	201오1528	C*I Y*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72	남산1호터널	2025-05-13 17:27:03	252마4949	이*숙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73	남산3호터널	2025-05-13 18:19:19	229호1186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74	남산1호터널	2025-05-14 07:08:59	137다3335	J*N J***G	경기도 시흥시 군서마을로
175	남산1호터널	2025-05-14 08:22:19	262너8449	이*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1길
176	남산3호터널	2025-05-14 09:12:24	256더3166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77	남산3호터널	2025-05-14 09:20:28	110서7401	케****탈(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78	남산1호터널	2025-05-14 09:34:54	202구6354	주식회사 아****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마을로
179	남산1호터널	2025-05-14 09:51:06	43무8363	I*****O M***A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봉안길
180	남산1호터널	2025-05-14 10:01:46	34버5851	강*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81	남산3호터널	2025-05-14 10:47:05	354부4284	(주)제***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82	남산3호터널	2025-05-14 10:50:33	13버7540	G********V A*********N A**********R U*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진골4길
183	남산1호터널	2025-05-14 11:19:14	199하3068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84	남산1호터널	2025-05-14 11:56:14	32서0910	G***Z R***S G****S M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85	남산3호터널	2025-05-14 12:56:14	243수8235	주식회사 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6	남산3호터널	2025-05-14 13:31:00	149모3938	엠**********아 주식회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87	남산1호터널	2025-05-14 13:37:10	199하5797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88	남산1호터널	2025-05-14 13:37:57	207주1122	(주)신*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동함평산단길
189	남산1호터널	2025-05-14 13:53:27	30도6808	B*****U G******A B***N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2길
190	남산3호터널	2025-05-14 13:54:35	27나9942	Y**G J*****I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191	남산3호터널	2025-05-14 14:17:33	163허2037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92	남산1호터널	2025-05-14 16:53:57	55구9020	권*주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한제길
193	남산1호터널	2025-05-14 17:11:56	17서0260	주식회사 퍼****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남산1호터널	2025-05-14 17:22:28	242오9405	주식회사로**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95	남산1호터널	2025-05-14 18:10:44	346조9115	아***잇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96	남산1호터널	2025-05-14 18:27:43	157두3035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97	남산1호터널	2025-05-14 18:44:27	168모5717	S*****N M*****D A***D M****D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198	남산1호터널	2025-05-14 19:32:36	361다7305	김*하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199	남산3호터널	2025-05-14 20:21:48	223어2251	현***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00	남산1호터널	2025-05-14 20:48:25	105가8297	주식회사 상***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201	남산1호터널	2025-05-15 07:07:09	326로9155	노*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20길
202	남산3호터널	2025-05-15 08:41:56	07서3868	노**어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203	남산1호터널	2025-05-15 09:24:50	23조7964	이*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4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04	남산1호터널	2025-05-15 09:56:58	62고4414	L* I********Y G*********H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29번길
205	남산1호터널	2025-05-15 10:07:48	340고8778	T**N H******A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206	남산1호터널	2025-05-15 10:09:08	28무9311	김*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522번길
207	남산1호터널	2025-05-15 10:44:51	153누8229	손*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08	남산1호터널	2025-05-15 10:59:40	42주2603	안*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209	남산3호터널	2025-05-15 11:06:32	331우2863	주식회사 플*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10	남산3호터널	2025-05-15 11:27:57	10구4190	홍*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포로463번안길
211	남산3호터널	2025-05-15 12:22:58	225다9746	강*성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212	남산3호터널	2025-05-15 12:33:31	106호6517	(주)리**카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중로305번길
213	남산1호터널	2025-05-15 12:39:38	62마5068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14	남산1호터널	2025-05-15 12:51:27	05고5892	노*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215	남산3호터널	2025-05-15 12:56:16	07어8929	김*수	경기도 파주시 번영로
216	남산3호터널	2025-05-15 13:48:44	175호3455	(자)경***카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16번길
217	남산1호터널	2025-05-15 13:52:40	158우9579	(주)디*****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35번길
218	남산3호터널	2025-05-15 14:20:04	276러4321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19	남산1호터널	2025-05-15 15:35:43	137도2324	전*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220	남산3호터널	2025-05-15 15:38:29	03머3302	주식회사 큐**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21	남산3호터널	2025-05-15 16:04:15	43노4745	(주)원*통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222	남산3호터널	2025-05-15 16:29:29	20보4270	강*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길
223	남산1호터널	2025-05-15 17:12:00	300마5776	이*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여울길
224	남산1호터널	2025-05-15 17:31:29	32고1239	양*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225	남산3호터널	2025-05-15 17:48:38	07어8929	김*수	경기도 파주시 번영로
226	남산3호터널	2025-05-15 18:02:28	59서0573	황*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
227	남산3호터널	2025-05-15 19:56:38	203가3496	B*I D**H P****G T***H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5길
228	남산1호터널	2025-05-15 20:00:47	258나8545	안*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229	남산1호터널	2025-05-15 20:05:10	46모1983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9길
230	남산3호터널	2025-05-15 20:37:55	38우2617	송*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소돌말길
231	남산3호터널	2025-05-15 20:41:08	326무4688	L*U S***O H***G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2	남산3호터널	2025-05-16 07:09:40	152하6051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33	남산1호터널	2025-05-16 08:08:47	107루6685	S*****Y R*****A E********E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34	남산1호터널	2025-05-16 09:04:27	16머9536	조*현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235	남산1호터널	2025-05-16 09:41:48	48모9651	홍*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236	남산3호터널	2025-05-16 10:25:29	32머5128	T*******A M*******R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12길
237	남산1호터널	2025-05-16 10:38:06	152호3368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38	남산3호터널	2025-05-16 10:48:09	167너9402	주식회사 아****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49길
239	남산1호터널	2025-05-16 12:11:22	28오1221	T*N O**G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240	남산1호터널	2025-05-16 12:41:37	104호2799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241	남산3호터널	2025-05-16 12:44:38	107마4176	조*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42	남산3호터널	2025-05-16 13:10:17	394두3769	A*****N, B*****N D****A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43	남산3호터널	2025-05-16 13:27:54	61로4446	주식회사아**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244	남산3호터널	2025-05-16 13:54:11	133하8876	카*트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30번길
245	남산1호터널	2025-05-16 14:20:32	261더2533	C*I X****N	인천광역시 중구 큰우물로20번길
246	남산1호터널	2025-05-16 14:40:24	67주0582	설*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70길
247	남산1호터널	2025-05-16 15:01:30	11조4412	홍*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248	남산3호터널	2025-05-16 15:11:26	24서4777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
249	남산1호터널	2025-05-16 15:16:28	110소8139	주식회사 오**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250	남산3호터널	2025-05-16 15:29:50	16버4321	백*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251	남산3호터널	2025-05-16 15:55:09	206두9669	안*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3가길
252	남산1호터널	2025-05-16 16:14:14	54서2498	C*I M****I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253	남산3호터널	2025-05-16 16:38:18	252모6310	임*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54	남산3호터널	2025-05-16 16:45:57	231저1180	Q*E Y****G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2길
255	남산1호터널	2025-05-16 16:49:16	49두2988	이*석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구슬고개길
256	남산1호터널	2025-05-16 18:16:04	11라0732	주***을(강*식)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1길
257	남산3호터널	2025-05-16 18:24:23	57조5226	차*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58	남산1호터널	2025-05-16 18:28:54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259	남산1호터널	2025-05-16 18:44:59	51루3447	한*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60	남산1호터널	2025-05-16 19:45:13	288루1777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61	남산3호터널	2025-05-16 20:19:26	147하3308	주식회사 더******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262	남산3호터널	2025-05-16 20:38:28	101하7563	주식회사 토****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3	남산3호터널	2025-05-16 20:49:43	351어4790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64	남산1호터널	2025-05-19 07:14:45	31호1688	주식회사 스****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265	남산1호터널	2025-05-19 09:26:54	199하4192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66	남산3호터널	2025-05-19 09:52:49	133하8867	카*트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30번길
267	남산1호터널	2025-05-19 09:59:47	117가9826	S**N X*******N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1길
268	남산1호터널	2025-05-19 10:14:17	153누8229	손*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69	남산1호터널	2025-05-19 11:01:48	320루9806	O****N C***N P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70	남산3호터널	2025-05-19 12:02:56	203고9731	김*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4길
271	남산3호터널	2025-05-19 13:24:43	62서8711	(사)한*****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1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72	남산3호터널	2025-05-19 13:38:57	163버4699	N****N T*I H*I A*H	경상북도 경산시 청운2로11길
273	남산3호터널	2025-05-19 15:51:24	66조4886	이*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상2길
274	남산1호터널	2025-05-19 16:03:39	21머3413	유*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길
275	남산3호터널	2025-05-19 17:11:39	184노3636	J*N H*I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76	남산1호터널	2025-05-19 17:24:23	129도2442	(주)밀*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6길
277	남산1호터널	2025-05-19 17:27:34	59노8469	장*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278	남산1호터널	2025-05-19 19:08:26	101하6843	주식회사 토****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79	남산3호터널	2025-05-19 19:13:55	224주6777	S**N L*N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280	남산1호터널	2025-05-19 19:42:04	50라7479	이*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281	남산3호터널	2025-05-19 19:43:56	15구5859	김*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3길
282	남산1호터널	2025-05-19 19:44:51	152하8828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83	남산1호터널	2025-05-19 20:26:10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284	남산1호터널	2025-05-20 09:06:21	66수9103	S*****V S********N S***K U**I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53번길
285	남산1호터널	2025-05-20 10:33:22	136조6915	김*중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286	남산3호터널	2025-05-20 11:08:38	53노4070	송*******비-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87	남산3호터널	2025-05-20 11:42:06	59너7559	주식회사 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288	남산1호터널	2025-05-20 11:47:03	299머3972	박*환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89	남산1호터널	2025-05-20 13:07:44	124하2114	(주)아*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0	남산3호터널	2025-05-20 14:25:23	198수4058	주식회사 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291	남산3호터널	2025-05-20 14:41:11	155마9114	홍*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292	남산1호터널	2025-05-20 15:55:38	129두9650	김*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290번길
293	남산1호터널	2025-05-20 15:58:44	333고7108	이*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남길
294	남산1호터널	2025-05-20 16:40:29	33무2796	주식회사 해***림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295	남산1호터널	2025-05-20 16:46:28	342두6243	오*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배학2길
296	남산1호터널	2025-05-20 17:47:01	243노3435	신*갑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병목골길
297	남산1호터널	2025-05-20 17:50:59	19저0749	(주)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298	남산1호터널	2025-05-20 18:27:03	10라1824	E***N M****M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3길
299	남산3호터널	2025-05-20 18:43:04	55버9393	이*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3길
300	남산3호터널	2025-05-20 18:50:56	262저3523	주식회사 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01	남산3호터널	2025-05-20 19:31:07	31가7325	김*현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길
302	남산3호터널	2025-05-20 19:59:53	235러4339	강*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다길
303	남산1호터널	2025-05-20 20:04:13	26하3407	(주)바***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4길
304	남산1호터널	2025-05-20 20:32:57	314모7965	강*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28번길
305	남산1호터널	2025-05-20 20:38:56	42도2067	트**브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06	남산1호터널	2025-05-20 20:45:57	49보4358	유*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290번길
307	남산3호터널	2025-05-21 07:39:58	197하6243	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308	남산1호터널	2025-05-21 07:59:37	312더1517	김*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시천길
309	남산3호터널	2025-05-21 09:12:14	243소2572	박*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10	남산3호터널	2025-05-21 10:12:37	62부6704	이*천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45번길
311	남산1호터널	2025-05-21 11:25:10	310조9130	이*경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80번길
312	남산1호터널	2025-05-21 11:49:38	237러4508	L* J*****E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6길
313	남산1호터널	2025-05-21 12:13:22	187주6096	(주)메********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14	남산3호터널	2025-05-21 12:18:59	16고3334	L*U X****U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315	남산1호터널	2025-05-21 12:21:04	106호1082	케***프(주)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316	남산3호터널	2025-05-21 12:37:01	145보3713	비*****탈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17	남산1호터널	2025-05-21 12:57:17	153나7098	하*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176번길
318	남산3호터널	2025-05-21 14:21:19	247마6522	L*U W******G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90번길
319	남산1호터널	2025-05-21 14:25:07	232로1875	배*진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320	남산1호터널	2025-05-21 14:51:00	18버3976	M*I W*I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50번길
321	남산1호터널	2025-05-21 15:22:55	34다8888	(주)블***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322	남산1호터널	2025-05-21 15:27:18	211수3205	염*영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3길
323	남산1호터널	2025-05-21 15:44:04	37로3642	김*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24	남산1호터널	2025-05-21 17:07:29	277누5015	브******터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325	남산1호터널	2025-05-21 17:42:05	140부1217	(주)엠.*.*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326	남산1호터널	2025-05-21 17:53:32	20호9926	주식회사 와***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19길
327	남산1호터널	2025-05-21 18:38:58	29로4041	오*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328	남산3호터널	2025-05-21 18:52:52	58다5740	J*N Y****I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74번길
329	남산3호터널	2025-05-21 19:59:08	235주5224	김*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다길
330	남산3호터널	2025-05-21 20:43:18	199호1838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31	남산1호터널	2025-05-22 07:17:55	01머0533	고*효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번길
332	남산3호터널	2025-05-22 09:55:54	48소8779	권*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9길
333	남산3호터널	2025-05-22 10:14:21	271다6565	주식회사 현****속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166번길
334	남산1호터널	2025-05-22 11:16:18	43루8492	Y*****V D*******K R*****N U**I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천길
335	남산1호터널	2025-05-22 11:20:32	05머1627	백*현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길
336	남산1호터널	2025-05-22 12:18:31	236도9737	주식회사 아******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337	남산1호터널	2025-05-22 12:30:39	28서7268	이*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338	남산3호터널	2025-05-22 12:52:14	17누3221	Y**G S**U J*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48가길
339	남산3호터널	2025-05-22 13:01:19	41루1722	고*현	경기도 광주시 문형새솔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40	남산3호터널	2025-05-22 13:05:32	243보3557	J*N X*****N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1나길
341	남산3호터널	2025-05-22 13:24:27	228너2899	손*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342	남산1호터널	2025-05-22 13:38:53	149러1264	J* I***O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343	남산1호터널	2025-05-22 13:39:23	278주5065	주식회사 지***지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32번길
344	남산3호터널	2025-05-22 14:09:20	220하1080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45	남산3호터널	2025-05-22 14:15:37	29모4345	스**고 유한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159번길
346	남산3호터널	2025-05-22 14:28:24	137너1389	X* Z****N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9가길
347	남산1호터널	2025-05-22 14:42:38	366조2697	J*N X**G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7길
348	남산1호터널	2025-05-22 14:45:54	09버5360	김*국	경기도 광주시 텃골길47번길
349	남산1호터널	2025-05-22 15:04:28	01머0533	고*효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번길
350	남산3호터널	2025-05-22 15:46:59	263부1065	허*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351	남산1호터널	2025-05-22 15:51:29	168주9911	주식회사 제*******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길
352	남산3호터널	2025-05-22 16:13:16	63거4775	주식회사 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53	남산3호터널	2025-05-22 16:16:49	47서2692	엘*****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54	남산1호터널	2025-05-22 17:01:25	168주9911	주식회사 제*******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길
355	남산1호터널	2025-05-22 18:31:53	153누8229	손*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356	남산3호터널	2025-05-22 18:57:20	16머9536	조*현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357	남산1호터널	2025-05-22 19:14:23	146하9594	주식회사 신***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358	남산3호터널	2025-05-22 19:24:26	41가5834	유*청	경기도 의왕시 사나골길
359	남산1호터널	2025-05-22 19:48:46	56라2035	김*재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마길
360	남산3호터널	2025-05-22 20:17:13	53부0255	(주) 아**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4길
361	남산1호터널	2025-05-22 20:21:52	51모5618	권*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362	남산3호터널	2025-05-22 20:24:26	35무5311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1길
363	남산1호터널	2025-05-22 20:35:36	160구2335	(주)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64	남산1호터널	2025-05-22 20:39:01	53루2929	성*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65	남산1호터널	2025-05-22 20:45:53	175조1989	주식회사 현***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2길
366	남산1호터널	2025-05-22 20:46:34	160버6378	주식회사 동***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367	남산3호터널	2025-05-23 07:01:22	199호2337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68	남산1호터널	2025-05-23 07:05:51	43도4467	O*****V E***S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369	남산1호터널	2025-05-23 07:20:54	01머0533	고*효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번길
370	남산3호터널	2025-05-23 08:59:42	63두1578	조*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371	남산3호터널	2025-05-23 12:33:05	57보8113	제***투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57번길
372	남산3호터널	2025-05-23 13:47:00	374머4829	롯****료(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373	남산1호터널	2025-05-23 14:16:24	12버5544	(주)에*션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74	남산1호터널	2025-05-23 15:13:31	245루1798	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75	남산3호터널	2025-05-23 15:51:30	109하7014	주식회사 케***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376	남산3호터널	2025-05-23 15:55:30	54머3466	조*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4길
377	남산1호터널	2025-05-23 16:01:32	11더3379	손*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378	남산3호터널	2025-05-23 16:03:34	01머0533	고*효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번길
379	남산1호터널	2025-05-23 16:22:23	129도8997	신*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380	남산1호터널	2025-05-23 17:05:46	376도3867	주식회사 쿠***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6길
381	남산1호터널	2025-05-23 17:28:46	35버22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382	남산1호터널	2025-05-23 19:02:38	134보9377	이*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5길
383	남산1호터널	2025-05-23 19:08:28	22너7670	주식회사 잘******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384	남산3호터널	2025-05-23 19:38:16	24노8821	A*****I A*******H A******M M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385	남산1호터널	2025-05-23 19:55:48	55누7289	박*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386	남산1호터널	2025-05-23 20:01:37	122하9586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87	남산1호터널	2025-05-23 20:07:45	177라3847	G**K E***I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88	남산1호터널	2025-05-23 20:12:35	307두2958	A*******R J****N S**H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89	남산3호터널	2025-05-23 20:33:52	205하2367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90	남산1호터널	2025-05-23 20:42:30	20러8009	이*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91	남산1호터널	2025-05-23 20:50:42	126호3637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92	남산3호터널	2025-05-26 09:21:04	110서7401	케****탈(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93	남산1호터널	2025-05-26 09:42:07	128두3876	K*M K********N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1길
394	남산3호터널	2025-05-26 09:59:15	35가9886	이*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95	남산1호터널	2025-05-26 10:30:40	175로5352	임*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35번길
396	남산1호터널	2025-05-26 11:20:58	26마2315	한*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답십리로88길
397	남산3호터널	2025-05-26 12:00:11	230로1071	(주)커*********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98	남산3호터널	2025-05-26 12:04:54	154루1177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99	남산3호터널	2025-05-26 12:15:16	229라1498	이*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77번길
400	남산1호터널	2025-05-26 14:26:30	51모5618	권*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401	남산1호터널	2025-05-26 14:28:21	12호2305	주식회사 하***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100번길
402	남산1호터널	2025-05-26 14:48:51	228다6705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403	남산3호터널	2025-05-26 15:24:04	231마2445	T**N N**C A*H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404	남산3호터널	2025-05-26 15:28:31	07마0112	박*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405	남산1호터널	2025-05-26 16:29:44	26더1441	K*M K********N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4번길
406	남산1호터널	2025-05-26 16:29:49	153누8229	손*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407	남산1호터널	2025-05-26 17:27:37	10라8788	이*남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408	남산1호터널	2025-05-26 18:13:29	328러3538	주식회사 유******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09	남산1호터널	2025-05-26 18:25:35	17서7564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종개길
410	남산1호터널	2025-05-26 18:46:48	28두7001	나****설(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411	남산3호터널	2025-05-26 19:20:51	49나8576	장*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길
412	남산1호터널	2025-05-26 19:38:57	14두7606	(주)다*린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413	남산1호터널	2025-05-26 19:59:28	53머2525	채*학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414	남산1호터널	2025-05-26 20:01:19	224주5069	주식회사 미***씨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415	남산3호터널	2025-05-26 20:08:00	26버9379	L* Z*****I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50번길
416	남산1호터널	2025-05-26 20:17:57	57머5695	(주)준***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17	남산1호터널	2025-05-26 20:32:00	148모2397	이*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418	남산3호터널	2025-05-27 08:47:28	319가3247	윤*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19	남산3호터널	2025-05-27 09:08:17	231마2445	T**N N**C A*H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420	남산3호터널	2025-05-27 10:34:22	251마5780	조*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21	남산3호터널	2025-05-27 11:13:50	396도9524	이*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말로7번길
422	남산3호터널	2025-05-27 11:45:32	서울57다3689	김*영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1로
423	남산3호터널	2025-05-27 12:57:15	199하3771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24	남산1호터널	2025-05-27 13:15:22	242누6653	비*****탈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425	남산1호터널	2025-05-27 14:40:31	106호6405	(주)리**카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중로305번길
426	남산1호터널	2025-05-27 14:47:09	150모6596	이*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27	남산1호터널	2025-05-27 15:25:24	64주2772	(주)실*****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428	남산1호터널	2025-05-27 15:47:10	163하3278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429	남산1호터널	2025-05-27 16:13:58	66수2100	E********L R**********A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30	남산1호터널	2025-05-27 16:18:48	06루5815	심*식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31	남산1호터널	2025-05-27 16:36:12	55로0763	P**O Y*****U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184번길
432	남산3호터널	2025-05-27 18:18:22	16고3334	L*U X****U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433	남산3호터널	2025-05-27 18:23:38	268나8552	이*순	경기도 하남시 세미로1길
434	남산3호터널	2025-05-27 19:16:59	28거1457	채*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35	남산3호터널	2025-05-27 20:35:24	178무8802	제****설 주식회사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436	남산1호터널	2025-05-27 20:59:48	187머5738	N****N T***G S**G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마길
437	남산1호터널	2025-05-28 08:16:05	51로0798	C*****D C****S W***E J*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38	남산3호터널	2025-05-28 08:22:31	139수1614	(주)디**********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9	남산3호터널	2025-05-28 09:03:10	177호7831	주식회사 차****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440	남산1호터널	2025-05-28 09:09:19	67머9229	농****인 솔*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41	남산3호터널	2025-05-28 09:27:36	146버2282	주식회사 지*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766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442	남산1호터널	2025-05-28 10:41:16	51구3844	한*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443	남산1호터널	2025-05-28 10:42:50	10라0146	박*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444	남산3호터널	2025-05-28 11:33:14	389루9042	송*리	경기도 평택시 서정남로
445	남산3호터널	2025-05-28 11:36:53	17고4925	(주)에******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88번길
446	남산1호터널	2025-05-28 11:56:43	49너6052	(주)팬*****션 코*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447	남산1호터널	2025-05-28 12:37:37	222거8050	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6길
448	남산1호터널	2025-05-28 13:12:00	258조2629	유*양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길
449	남산3호터널	2025-05-28 13:15:04	214가7531	주식회사 연*****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50	남산1호터널	2025-05-28 13:21:08	133머5724	우*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8길
451	남산3호터널	2025-05-28 13:52:22	106호2559	(주)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452	남산3호터널	2025-05-28 14:25:30	31머6297	이*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982번길
453	남산3호터널	2025-05-28 14:47:00	152두5593	현*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454	남산3호터널	2025-05-28 15:03:14	384다2482	이*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3길
455	남산1호터널	2025-05-28 15:55:48	17도5877	W**G Y* S***G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56	남산3호터널	2025-05-28 16:17:17	58누8525	H****D S*****D A*I M******D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457	남산1호터널	2025-05-28 16:17:34	147하3392	주식회사 파***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인성로
458	남산1호터널	2025-05-28 16:28:16	159어8105	진*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459	남산1호터널	2025-05-28 16:52:37	376도3867	주식회사 쿠***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6길
460	남산3호터널	2025-05-28 17:11:54	125호3493	주식회사 터****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9길
461	남산1호터널	2025-05-28 18:07:55	09어0280	김*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462	남산3호터널	2025-05-28 18:14:27	199호4112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63	남산1호터널	2025-05-28 19:01:07	158저1249	주식회사 델****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23번길
464	남산3호터널	2025-05-28 19:37:18	225우5596	비*****탈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465	남산1호터널	2025-05-28 20:19:38	49호3153	청***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466	남산1호터널	2025-05-28 20:44:24	362누9023	서*수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
467	남산1호터널	2025-05-29 08:38:59	67로5108	오*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468	남산3호터널	2025-05-29 09:44:55	199호4124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69	남산3호터널	2025-05-29 09:50:03	25조0716	한*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32번길
470	남산1호터널	2025-05-29 10:09:37	53더7833	B***S T****E R******H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471	남산3호터널	2025-05-29 10:37:37	199하3771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72	남산1호터널	2025-05-29 11:19:54	101하7062	주식회사 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473	남산1호터널	2025-05-29 12:08:07	220보2915	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8길
474	남산3호터널	2025-05-29 12:24:26	284나9329	배*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0길
475	남산3호터널	2025-05-29 12:47:53	252무2948	정*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향린1로88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476	남산3호터널	2025-05-29 13:37:25	148라6316	주식회사 슈*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477	남산1호터널	2025-05-29 13:51:49	129머7336	박*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78	남산1호터널	2025-05-29 13:52:11	284조9953	주식회사 브***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79	남산3호터널	2025-05-29 14:00:01	61나9646	Y*N Y***I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480	남산1호터널	2025-05-29 14:44:38	159허1548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481	남산1호터널	2025-05-29 14:53:18	11다9687	강*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482	남산1호터널	2025-05-29 14:56:11	12노9490	정*영	경기도 광주시 능평로
483	남산1호터널	2025-05-29 14:56:53	125호8779	케****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484	남산3호터널	2025-05-29 15:09:25	63부1301	주식회사 집*********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485	남산3호터널	2025-05-29 17:23:54	32버5607	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486	남산1호터널	2025-05-29 18:43:53	24조6802	K*M, J****N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487	남산1호터널	2025-05-29 19:14:28	40마7497	김*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488	남산1호터널	2025-05-29 20:10:55	251나3058	C**N B**Y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89	남산1호터널	2025-05-29 20:42:25	236머4830	주식회사 재**사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586번길
490	남산3호터널	2025-05-30 07:08:47	160어9657	L****N J***E A*******A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91	남산1호터널	2025-05-30 07:45:29	154라4611	T*****O J**E V******N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92	남산3호터널	2025-05-30 08:07:56	53머5750	강*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4나길
493	남산3호터널	2025-05-30 08:54:07	62누9481	N****I E******L N*****A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494	남산1호터널	2025-05-30 10:08:40	129루7584	김*셀	경기도 시흥시 장곡로54번길
495	남산1호터널	2025-05-30 11:49:11	161버4731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96	남산3호터널	2025-05-30 14:02:43	49나8576	장*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길
497	남산3호터널	2025-05-30 14:39:07	61주2977	S**G Y*N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498	남산1호터널	2025-05-30 14:58:36	365주9048	유*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499	남산1호터널	2025-05-30 15:49:52	278다8900	주식회사 에****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500	남산1호터널	2025-05-30 16:31:46	202누3479	유*열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6길
501	남산1호터널	2025-05-30 17:14:53	175수7391	김*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502	남산1호터널	2025-05-30 17:24:10	345무8608	P**O C*****I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5길
503	남산1호터널	2025-05-30 18:10:18	55러7685	전*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8길
504	남산1호터널	2025-05-30 18:55:39	252서4301	L* X******G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505	남산1호터널	2025-05-30 20:00:40	102두7923	L****N P. O******I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신장원길
506	남산3호터널	2025-05-30 20:18:11	205하2044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507	남산1호터널	2025-05-30 20:22:04	02주5662	김*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마길
508	남산1호터널	2025-05-30 20:41:06	199하3771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509	남산1호터널	2025-05-30 20:52:05	236너3523	강*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3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5-07-01 08:26:54	19나4512	김*현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합목3길
2	남산3호터널	2025-07-01 08:30:15	319가3247	윤*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	남산3호터널	2025-07-01 09:50:46	49소2626	(주)케****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
4	남산1호터널	2025-07-01 10:24:37	360노9950	한*희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5	남산3호터널	2025-07-01 10:35:15	133하8867	카*트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30번길
6	남산1호터널	2025-07-01 10:39:07	12버5544	(주)에*션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7	남산3호터널	2025-07-01 11:17:30	342고5586	L*N H******G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	남산1호터널	2025-07-01 11:31:43	08라8415	(주)나******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9	남산1호터널	2025-07-01 11:40:22	20무6301	윤*원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10	남산1호터널	2025-07-01 12:19:09	34모5729	주식회사 아**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	남산1호터널	2025-07-01 12:44:47	39가7470	윤*영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2	남산3호터널	2025-07-01 12:53:32	28구4946	이*욱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35번길
13	남산1호터널	2025-07-01 13:10:24	185누1992	양*망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14	남산1호터널	2025-07-01 13:32:10	29두1890	(주)드***텍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5	남산1호터널	2025-07-01 13:36:57	53하8185	(주)뉴******카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16	남산3호터널	2025-07-01 14:08:30	42모0960	변*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가길
17	남산3호터널	2025-07-01 14:12:23	101하8384	(주)포****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18	남산1호터널	2025-07-01 14:20:10	376구8665	(주)신*****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남산1호터널	2025-07-01 14:28:47	63우6440	R*N C******I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0	남산1호터널	2025-07-01 14:32:45	19루6078	김*식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21	남산3호터널	2025-07-01 15:53:02	40부2572	(주)컴***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22	남산1호터널	2025-07-01 16:33:00	157허2591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	남산1호터널	2025-07-01 16:36:59	46저6513	윤*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5길
24	남산3호터널	2025-07-01 16:47:16	01도2681	이*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
25	남산1호터널	2025-07-01 17:58:47	12라0589	최*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길
26	남산1호터널	2025-07-01 18:13:55	45버0229	보****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2가길
27	남산3호터널	2025-07-01 18:39:34	36너8494	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28	남산1호터널	2025-07-01 19:02:34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29	남산1호터널	2025-07-01 20:22:40	24가5098	주식회사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7길
30	남산1호터널	2025-07-01 20:30:09	31마4560	이*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31	남산1호터널	2025-07-02 07:36:41	33보4956	이*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용도로
32	남산3호터널	2025-07-02 07:41:32	174호2474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3	남산1호터널	2025-07-02 11:00:55	360노9950	한*희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34	남산1호터널	2025-07-02 11:57:42	127마2504	신*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5	남산3호터널	2025-07-02 12:20:42	10라4947	윤*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가길
36	남산3호터널	2025-07-02 12:44:48	176소8389	한*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14길
37	남산1호터널	2025-07-02 13:35:34	138무6303	박*열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13길
38	남산3호터널	2025-07-02 13:48:22	154하4283	주식회사 엔***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39	남산3호터널	2025-07-02 13:51:53	199호3665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0	남산3호터널	2025-07-02 14:22:48	101하1635	주식회사 케****아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41	남산3호터널	2025-07-02 14:32:00	199호5933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2	남산1호터널	2025-07-02 14:47:29	14가1421	T**N Q**C T**N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샘골3길
43	남산1호터널	2025-07-02 15:10:01	342고5586	L*N H******G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44	남산3호터널	2025-07-02 15:14:29	166우9498	이*탁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5	남산1호터널	2025-07-02 17:04:27	109하7283	주식회사 한***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6	남산1호터널	2025-07-02 17:39:48	231나7000	주식회사 스****니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7	남산1호터널	2025-07-02 17:43:10	140로6886	G******V I**N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2길
48	남산1호터널	2025-07-02 18:51:55	372거7283	여*관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9	남산1호터널	2025-07-02 19:19:54	61부0847	(주)마**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1길
50	남산1호터널	2025-07-02 19:47:31	116허7237	(주)차****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51	남산3호터널	2025-07-02 20:29:04	205나7058	윤*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2길
52	남산3호터널	2025-07-03 08:34:07	265노3631	박*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707번길
53	남산1호터널	2025-07-03 11:02:42	56루3456	박*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4	남산1호터널	2025-07-03 11:18:46	53루2929	성*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5	남산1호터널	2025-07-03 11:21:48	63고8936	남*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56	남산1호터널	2025-07-03 12:22:21	134루1894	K*M J***G B*N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7	남산1호터널	2025-07-03 14:23:54	124허9147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58	남산1호터널	2025-07-03 15:05:50	154하9931	주식회사 해**어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59	남산3호터널	2025-07-03 16:34:20	122주6811	H* A****Y V*********H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2길
60	남산1호터널	2025-07-03 16:44:25	138모2370	남*민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61	남산3호터널	2025-07-03 16:52:15	144도1544	김*주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
62	남산3호터널	2025-07-03 17:04:36	41어2287	A*****R S****M K****D S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63	남산3호터널	2025-07-03 17:22:30	22구7505	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0길
64	남산3호터널	2025-07-03 17:31:07	49나8576	장*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길
65	남산1호터널	2025-07-03 18:20:48	199서8418	주식회사 미****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6	남산3호터널	2025-07-03 18:30:00	394러1161	김*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산로
67	남산3호터널	2025-07-03 18:43:47	278루3344	최*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9번길
68	남산1호터널	2025-07-03 18:55:50	193수2533	박*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69	남산1호터널	2025-07-03 19:14:25	68하0669	(주)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70	남산1호터널	2025-07-03 19:16:33	22너7670	주식회사 잘******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71	남산1호터널	2025-07-03 19:44:01	40마6858	W* H******N	충청남도 서산시 한마음5로
72	남산3호터널	2025-07-03 20:01:03	101하1635	주식회사 케****아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73	남산1호터널	2025-07-03 20:31:09	255조4251	강*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74	남산1호터널	2025-07-03 20:56:15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75	남산1호터널	2025-07-04 09:57:18	151부2823	임*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88번길
76	남산3호터널	2025-07-04 10:00:35	199호1823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77	남산3호터널	2025-07-04 10:02:34	154너2902	아********룹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8	남산3호터널	2025-07-04 10:22:25	30오0606	박*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79	남산1호터널	2025-07-04 11:06:48	123오3964	전*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80	남산3호터널	2025-07-04 11:14:40	110노6899	정*섭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삼로
81	남산1호터널	2025-07-04 11:47:13	234서5828	김*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1길
82	남산3호터널	2025-07-04 12:27:09	67러7533	전*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29길
83	남산3호터널	2025-07-04 12:34:10	69도9695	임*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6나길
84	남산3호터널	2025-07-04 13:58:07	129너1314	주식회사 웰***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85	남산1호터널	2025-07-04 14:44:39	21가5323	김*옥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127번길
86	남산3호터널	2025-07-04 15:26:16	32보8830	이*후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30번길
87	남산1호터널	2025-07-04 16:40:23	37저0753	S*****W K********T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46번길
88	남산3호터널	2025-07-04 17:01:39	63러2667	이*미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89	남산3호터널	2025-07-04 18:27:17	311로9908	홍*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13길
90	남산3호터널	2025-07-04 18:46:36	146하4466	주식회사 렌**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91	남산1호터널	2025-07-04 18:50:00	59오0218	주식회사 엘***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92	남산3호터널	2025-07-04 18:50:24	101하7476	(주)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3	남산1호터널	2025-07-04 19:05:12	125마5819	주식회사 알***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79길
94	남산1호터널	2025-07-04 19:05:17	34호1649	주식회사 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95	남산1호터널	2025-07-04 19:31:05	60부2962	박*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96	남산1호터널	2025-07-04 19:49:25	41도1565	정*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12나길
97	남산3호터널	2025-07-07 08:27:16	319가3247	윤*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8	남산1호터널	2025-07-07 10:39:10	11보8580	박*나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1길
99	남산1호터널	2025-07-07 11:28:38	352너7653	센**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0	남산3호터널	2025-07-07 11:54:28	20마4700	(주)허**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만리재로
101	남산1호터널	2025-07-07 13:28:07	279조4275	주식회사 양***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탑선길6번길
102	남산3호터널	2025-07-07 13:41:38	174하5350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03	남산3호터널	2025-07-07 13:47:20	27부7419	김*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7길
104	남산3호터널	2025-07-07 14:35:13	60구7288	대**술 주식회사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
105	남산3호터널	2025-07-07 14:37:16	109도2205	이*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106	남산3호터널	2025-07-07 15:24:48	53가1126	한****업(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벌말길
107	남산1호터널	2025-07-07 16:15:11	52루3175	김*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1길
108	남산1호터널	2025-07-07 16:46:22	06다2845	(주)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09	남산3호터널	2025-07-07 17:04:58	373구3758	L* X*****N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20번길
110	남산1호터널	2025-07-07 18:14:06	101모3048	(주)동**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로
111	남산1호터널	2025-07-07 18:16:01	300러9263	경*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2	남산1호터널	2025-07-07 18:56:37	65러6702	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4가길
113	남산1호터널	2025-07-07 19:09:03	121너1242	H*N J**E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114	남산3호터널	2025-07-07 19:37:27	101하7974	주식회사 케****아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15	남산1호터널	2025-07-08 09:06:56	09서1959	고*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4길
116	남산1호터널	2025-07-08 09:27:18	48모9651	홍*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117	남산1호터널	2025-07-08 09:44:06	20무7874	정*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시장로61번길
118	남산3호터널	2025-07-08 10:11:57	293로5158	김*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
119	남산1호터널	2025-07-08 10:25:00	232우1363	김*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120	남산1호터널	2025-07-08 11:19:51	151구8748	재**인원*교 경****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84번길
121	남산3호터널	2025-07-08 12:04:54	47어4023	김*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122	남산3호터널	2025-07-08 12:08:06	54우1799	임*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3	남산3호터널	2025-07-08 12:33:20	299보8452	주식회사 다***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24	남산3호터널	2025-07-08 13:45:20	23주3880	이*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39번길
125	남산3호터널	2025-07-08 14:47:31	133하3781	(주)오**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126	남산3호터널	2025-07-08 15:00:47	27오7812	정*희	경기도 광명시 양달로10번길
127	남산1호터널	2025-07-08 15:32:56	46다3100	김*욱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8	남산1호터널	2025-07-08 16:42:28	332버2057	안*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29	남산1호터널	2025-07-08 16:46:40	34모2098	김*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30	남산3호터널	2025-07-08 17:53:53	47누5095	주식회사 에**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31	남산1호터널	2025-07-08 18:56:13	214노8564	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남산3호터널	2025-07-08 19:40:35	186구8041	임*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춘양로
133	남산1호터널	2025-07-08 20:47:45	368라5345	구*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마길
134	남산3호터널	2025-07-08 20:47:57	49하9999	(주)렌****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35	남산1호터널	2025-07-08 20:48:27	374나1259	김*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9가길
136	남산1호터널	2025-07-08 20:50:09	199호2744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37	남산3호터널	2025-07-09 07:17:17	13보6861	김*혁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2가길
138	남산1호터널	2025-07-09 07:22:21	56거5250	정*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72길
139	남산1호터널	2025-07-09 08:59:23	158소8308	(주)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40	남산3호터널	2025-07-09 09:48:27	342고5586	L*N H******G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141	남산3호터널	2025-07-09 10:03:34	53노4687	T**I D*****I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42	남산1호터널	2025-07-09 11:56:34	260나3675	김*겸	경기도 광주시 태재로
143	남산1호터널	2025-07-09 12:01:13	68도1332	신*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144	남산3호터널	2025-07-09 12:09:52	15누1546	박*덕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27길
145	남산1호터널	2025-07-09 12:16:07	302수1551	주식회사 루*쿡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6	남산1호터널	2025-07-09 12:20:07	54오9058	문*석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391번길
147	남산1호터널	2025-07-09 12:40:25	16가1896	송*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148	남산1호터널	2025-07-09 13:39:09	14더0476	에**********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49	남산1호터널	2025-07-09 13:45:39	319소5724	박*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가길
150	남산1호터널	2025-07-09 14:22:18	232우1363	김*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151	남산3호터널	2025-07-09 14:25:53	15구5601	(주)제***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마유산로
152	남산1호터널	2025-07-09 14:57:20	174어3000	파*********발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울길
153	남산3호터널	2025-07-09 15:28:37	61우8883	K********V B*****Z O**D U**I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9길
154	남산3호터널	2025-07-09 15:46:29	142호5249	차*차(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55	남산1호터널	2025-07-09 18:24:06	54가8087	주식회사 일****기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56	남산1호터널	2025-07-09 18:37:09	261러6886	Z*U X*****G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57	남산1호터널	2025-07-09 19:33:22	259주8295	김*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4길
158	남산1호터널	2025-07-09 19:34:13	199구2329	김*익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159	남산3호터널	2025-07-09 19:43:39	43서7161	이*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60	남산3호터널	2025-07-09 20:15:19	01고3126	(주)코*엠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61	남산3호터널	2025-07-09 20:17:10	06허8385	주식회사 고***카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321번길
162	남산1호터널	2025-07-09 20:24:06	157호5221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63	남산1호터널	2025-07-09 20:30:39	254고9795	정*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164	남산1호터널	2025-07-09 20:38:06	03로3346	함*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우이천로2나길
165	남산3호터널	2025-07-10 07:38:53	378보1949	(주)제******션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21길
166	남산1호터널	2025-07-10 08:04:56	02수6029	정*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236번길
167	남산3호터널	2025-07-10 09:33:58	33노2904	이*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75길
168	남산3호터널	2025-07-10 09:50:57	223도8161	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69	남산1호터널	2025-07-10 11:27:24	03로3346	함*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우이천로2나길
170	남산3호터널	2025-07-10 11:30:50	174하7850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71	남산3호터널	2025-07-10 11:47:13	100버3605	(주)인****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172	남산3호터널	2025-07-10 12:11:56	150가2650	변*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4길
173	남산3호터널	2025-07-10 12:19:19	45라2998	정*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174	남산1호터널	2025-07-10 13:41:45	17모4282	윤*숙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75	남산3호터널	2025-07-10 14:16:56	28두4300	N**********T C*****A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176	남산1호터널	2025-07-10 14:22:33	61모1311	김*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명길
177	남산1호터널	2025-07-10 14:36:10	368고3812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8	남산3호터널	2025-07-10 16:14:00	20모5687	서****발(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179	남산3호터널	2025-07-10 16:21:26	228어6334	김*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80	남산1호터널	2025-07-10 17:05:22	256로2223	김*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81	남산1호터널	2025-07-10 18:01:34	03로1904	진*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82	남산3호터널	2025-07-10 18:16:36	168거9869	오*영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삼봉천길
183	남산1호터널	2025-07-10 18:53:06	45조2191	김*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3길
184	남산1호터널	2025-07-10 19:02:29	36너8494	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85	남산1호터널	2025-07-10 19:32:51	61모7195	C*I R*****E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186	남산1호터널	2025-07-10 19:39:50	303소1687	주식회사 트**이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다락고개길
187	남산1호터널	2025-07-10 19:43:03	350저4361	박*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88	남산1호터널	2025-07-10 20:07:15	60보3030	(주)제**랜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미로
189	남산1호터널	2025-07-10 20:23:29	352소4989	이*숙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2길
190	남산1호터널	2025-07-10 20:24:44	181어9614	S*******S D****L A*****O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191	남산1호터널	2025-07-11 08:22:27	54부7806	안*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192	남산3호터널	2025-07-11 08:25:21	319가3247	윤*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93	남산1호터널	2025-07-11 09:03:14	255노2615	엘***셀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길105번길
194	남산1호터널	2025-07-11 10:18:47	11호5264	대***카(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로
195	남산1호터널	2025-07-11 12:01:03	234수3994	이*우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96	남산3호터널	2025-07-11 12:13:05	28마2167	장*중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7길
197	남산3호터널	2025-07-11 12:15:20	257마4053	김*수	경기도 오산시 삼미로
198	남산1호터널	2025-07-11 13:24:53	280누1796	S******V T*****N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3길
199	남산1호터널	2025-07-11 15:17:52	157호8175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00	남산1호터널	2025-07-11 15:18:04	173다5190	주식회사 에******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산재길
201	남산1호터널	2025-07-11 16:04:05	249러6008	허*********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02	남산3호터널	2025-07-11 18:15:19	62마2278	신*진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28번길
203	남산1호터널	2025-07-11 18:26:42	165모7261	N*********S C****S E*****O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04	남산1호터널	2025-07-11 18:29:04	09조8880	현*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2가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05	남산1호터널	2025-07-11 18:32:54	158소8308	(주)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206	남산3호터널	2025-07-11 18:38:24	233소6536	(주)대**역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번길
207	남산3호터널	2025-07-11 19:26:26	191가1880	안*홍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8	남산1호터널	2025-07-11 20:04:21	131보2907	주식회사 태****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삼봉로
209	남산1호터널	2025-07-11 20:07:01	293거8867	정*환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210	남산1호터널	2025-07-11 20:18:03	47너5679	예*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11	남산1호터널	2025-07-11 20:51:34	64모8934	박*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5길
212	남산1호터널	2025-07-14 07:00:33	244도5525	이*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213	남산1호터널	2025-07-14 07:02:18	242오9405	주식회사로**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14	남산3호터널	2025-07-14 07:56:38	291로5147	이*미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길
215	남산3호터널	2025-07-14 10:44:24	108수4992	전*호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69번길
216	남산1호터널	2025-07-14 10:45:52	293고1451	주식회사 피***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17	남산1호터널	2025-07-14 11:57:14	236머4830	주식회사 재**사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586번길
218	남산1호터널	2025-07-14 12:15:24	156모7335	주식회사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시장로
219	남산1호터널	2025-07-14 12:19:27	12머0842	주식회사 한*********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0	남산1호터널	2025-07-14 13:43:02	137다3335	J*N J***G	경기도 시흥시 군서마을로
221	남산3호터널	2025-07-14 13:56:14	62저7047	임*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222	남산1호터널	2025-07-14 14:17:28	64거3292	권*진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1021번길
223	남산3호터널	2025-07-14 14:40:23	66거4448	주식회사 이*******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5길
224	남산3호터널	2025-07-14 15:05:09	137구3088	손*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8길
225	남산3호터널	2025-07-14 15:47:04	36라9363	김*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60길
226	남산1호터널	2025-07-14 17:32:13	110하7006	주식회사 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7길
227	남산3호터널	2025-07-14 18:00:21	336구7811	방*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28	남산1호터널	2025-07-14 19:04:12	328어5517	박*미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105번안길
229	남산3호터널	2025-07-14 19:42:21	311버6175	최*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30	남산3호터널	2025-07-14 19:56:20	11루4253	M*******V N******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312번길
231	남산1호터널	2025-07-14 20:02:30	54누4821	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32	남산3호터널	2025-07-15 07:01:08	38도3179	천*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6길
233	남산3호터널	2025-07-15 07:09:40	61노5001	주식회사 발*(B***O)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4길
234	남산3호터널	2025-07-15 07:18:14	240나4528	(주)티****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35	남산3호터널	2025-07-15 07:26:20	240마1643	L* P**G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길
236	남산1호터널	2025-07-15 10:06:22	08수0162	박*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237	남산1호터널	2025-07-15 10:37:12	195오2365	O****R D***K E****D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38	남산3호터널	2025-07-15 10:46:04	32모6555	카***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39	남산1호터널	2025-07-15 11:50:58	376구8665	(주)신*****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40	남산1호터널	2025-07-15 11:51:10	56오1333	이*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13번길
241	남산1호터널	2025-07-15 12:24:09	53어0614	이*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실길
242	남산3호터널	2025-07-15 13:08:30	06주8277	김*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243	남산1호터널	2025-07-15 13:09:52	142구3788	서*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44	남산3호터널	2025-07-15 13:10:54	11너0927	주식회사 제****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45	남산1호터널	2025-07-15 14:36:40	259두1369	이*롱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35번길
246	남산1호터널	2025-07-15 14:45:06	301구2144	이*태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42길
247	남산1호터널	2025-07-15 14:55:50	389오8686	한*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248	남산1호터널	2025-07-15 15:06:43	57라6538	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249	남산3호터널	2025-07-15 16:47:10	177호7843	주식회사 차****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250	남산1호터널	2025-07-15 17:35:52	224두9407	박*규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147번길
251	남산3호터널	2025-07-15 18:21:12	199호6599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52	남산1호터널	2025-07-15 19:13:52	28무9802	양*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길
253	남산1호터널	2025-07-15 19:20:18	140로6886	G******V I**N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2길
254	남산1호터널	2025-07-15 19:47:27	35가0152	김*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1길
255	남산1호터널	2025-07-15 19:54:22	199호2070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56	남산3호터널	2025-07-16 07:00:59	12로0259	늘***설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81번길
257	남산3호터널	2025-07-16 08:58:19	15부1545	J*N Z*E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258	남산1호터널	2025-07-16 11:12:56	49어8039	최*혁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길
259	남산3호터널	2025-07-16 11:37:29	160누9253	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14길
260	남산1호터널	2025-07-16 12:24:28	193로8413	대********사(배*수)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61	남산1호터널	2025-07-16 12:46:16	14누3410	김*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8길
262	남산1호터널	2025-07-16 13:37:06	27너2720	최*비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785번길
263	남산1호터널	2025-07-16 13:45:54	103라2905	명*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7길
264	남산3호터널	2025-07-16 14:56:00	188루1022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광덕길
265	남산1호터널	2025-07-16 15:12:14	160조6932	엄*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66	남산1호터널	2025-07-16 17:48:18	52보3197	노*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늘품로
267	남산3호터널	2025-07-16 17:53:46	139두8897	주식회사 탐**피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강빛마을길
268	남산1호터널	2025-07-16 19:07:46	226저9222	알****징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65번길
269	남산1호터널	2025-07-16 19:32:13	139두8897	주식회사 탐**피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강빛마을길
270	남산1호터널	2025-07-16 19:34:01	355부9946	주식회사 양*자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271	남산1호터널	2025-07-17 09:58:10	261보6230	주식회사 에****이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272	남산1호터널	2025-07-17 10:10:30	68고5388	장*식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203번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73	남산1호터널	2025-07-17 10:20:04	392두1398	김*울	경기도 의왕시 위인로
274	남산1호터널	2025-07-17 10:22:48	62조7471	김*자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75	남산1호터널	2025-07-17 10:27:08	319부5160	L* J*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34번길
276	남산3호터널	2025-07-17 10:39:43	174도4915	조*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277	남산1호터널	2025-07-17 11:00:38	146하4466	주식회사 렌**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78	남산3호터널	2025-07-17 11:03:59	257마4099	주식회사 오********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9	남산3호터널	2025-07-17 11:11:25	182루5235	강*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7길
280	남산1호터널	2025-07-17 12:22:38	40누4791	최*숙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281	남산1호터널	2025-07-17 12:51:20	13호2799	주식회사 위*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414번길
282	남산3호터널	2025-07-17 13:45:39	33노1138	정*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84번길
283	남산3호터널	2025-07-17 15:41:27	54우1799	임*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84	남산1호터널	2025-07-17 15:50:34	02버9696	주식회사 더**셋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85	남산1호터널	2025-07-17 15:50:47	28너1179	김*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가동길
286	남산3호터널	2025-07-17 16:03:53	09로5477	H*******S H****R P*****Y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287	남산3호터널	2025-07-17 17:31:54	104두7826	김*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길
288	남산3호터널	2025-07-17 19:20:21	31누8853	천*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289	남산1호터널	2025-07-17 19:20:55	04소0245	S*I L*I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5길
290	남산1호터널	2025-07-17 19:31:25	146하4466	주식회사 렌**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91	남산1호터널	2025-07-17 19:57:16	45오5647	주식회사 라******아(L*****X K***A CO., L*d)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92	남산1호터널	2025-07-17 20:42:27	66조7189	J*N Y***I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6길
293	남산1호터널	2025-07-18 07:03:47	63다7898	대**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번길
294	남산3호터널	2025-07-18 08:09:39	337저3513	이*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3로
295	남산1호터널	2025-07-18 09:09:47	25두9469	(주)엠*****스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296	남산3호터널	2025-07-18 09:43:22	275저1976	이*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97	남산1호터널	2025-07-18 12:53:21	55조6267	아***켓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298	남산3호터널	2025-07-18 13:57:31	216어9704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5길
299	남산1호터널	2025-07-18 15:01:22	391부1809	L*E Y**G H*N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00	남산1호터널	2025-07-18 15:16:04	224어4921	C*O S******G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301	남산1호터널	2025-07-18 15:25:15	58더0300	김*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302	남산1호터널	2025-07-18 15:35:46	28라2272	이*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303	남산1호터널	2025-07-18 15:50:33	34마6770	Z**O P*******G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04	남산3호터널	2025-07-18 16:48:05	124저2938	이*형	경기도 파주시 재두루미길
305	남산3호터널	2025-07-18 17:23:35	310가3249	장*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06	남산1호터널	2025-07-18 18:28:18	58도5758	김*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7	남산1호터널	2025-07-18 18:42:11	59너7235	라****발(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58번길
308	남산1호터널	2025-07-18 18:47:00	291너6833	김*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79번길
309	남산1호터널	2025-07-18 19:03:34	160서1949	J*N Y****I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310	남산3호터널	2025-07-18 20:24:52	196버2256	I* K*N Y*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11	남산1호터널	2025-07-21 08:37:01	278주2511	J*N Y*****I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46번길
312	남산3호터널	2025-07-21 11:20:48	283부1827	박*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13	남산3호터널	2025-07-21 11:28:28	390허8117	권*욱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82번길
314	남산3호터널	2025-07-21 11:33:13	30라0465	이*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117번길
315	남산1호터널	2025-07-21 13:02:31	26고5802	박*미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316	남산1호터널	2025-07-21 13:33:04	49누4518	유*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317	남산1호터널	2025-07-21 13:40:04	59두9597	T**Y V******R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134번길
318	남산3호터널	2025-07-21 14:37:13	170부8440	정*광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319	남산1호터널	2025-07-21 15:56:10	34모2098	김*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320	남산1호터널	2025-07-21 16:08:45	47머9892	E**H A*****N J**********S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45길
321	남산1호터널	2025-07-21 16:39:05	290가8921	주식회사 에***이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22	남산1호터널	2025-07-21 19:40:16	39누3630	황*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23	남산1호터널	2025-07-21 20:26:06	185러6126	조*유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324	남산1호터널	2025-07-22 07:12:55	278무2968	송*연	경기도 광주시 신현로
325	남산1호터널	2025-07-22 07:20:55	63나8845	조*철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326	남산1호터널	2025-07-22 07:39:39	57러4780	조*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27	남산3호터널	2025-07-22 07:45:41	219도2325	황*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3길
328	남산1호터널	2025-07-22 08:34:23	380더5637	윤*규	대구광역시 북구 동화천로
329	남산3호터널	2025-07-22 09:25:25	216라1365	X* X******N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157번길
330	남산3호터널	2025-07-22 09:56:58	333루4021	K******V A*****K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
331	남산1호터널	2025-07-22 11:12:50	236머4830	주식회사 재**사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586번길
332	남산1호터널	2025-07-22 12:00:51	376구8665	(주)신*****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3	남산3호터널	2025-07-22 12:05:01	300루9058	Q*N W*N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334	남산3호터널	2025-07-22 12:07:51	59마8486	정*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3길
335	남산3호터널	2025-07-22 12:45:15	36두3355	주식회사 지***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336	남산3호터널	2025-07-22 12:54:59	207머4991	L* J**N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1길
337	남산3호터널	2025-07-22 13:04:09	262우1243	T**N T*****G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77번길
338	남산1호터널	2025-07-22 13:05:44	23구0305	박*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417번길
339	남산1호터널	2025-07-22 13:55:59	36주3212	홍*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40	남산1호터널	2025-07-22 14:23:38	34모2098	김*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341	남산1호터널	2025-07-22 15:00:20	24버4485	이*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332번길
342	남산3호터널	2025-07-22 15:04:20	50나0806	최*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7길
343	남산3호터널	2025-07-22 15:35:33	50모0249	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344	남산1호터널	2025-07-22 16:01:49	333두8657	주식회사 아******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345	남산1호터널	2025-07-22 16:29:32	48보1213	주식회사 디****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346	남산3호터널	2025-07-22 18:02:12	45보2350	(주)진**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47	남산1호터널	2025-07-22 18:24:38	326모2238	안*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이로
348	남산1호터널	2025-07-22 18:40:31	245소4100	김*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151번길
349	남산1호터널	2025-07-22 18:47:54	222노6959	김*숙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1길
350	남산3호터널	2025-07-22 19:45:06	164두6393	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351	남산1호터널	2025-07-22 20:20:27	42어7566	김*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352	남산3호터널	2025-07-23 09:38:34	52소2510	하*****날(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353	남산3호터널	2025-07-23 11:41:46	26고7452	지*****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54	남산1호터널	2025-07-23 14:11:25	172두1471	(주)케****니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355	남산1호터널	2025-07-23 14:22:46	185누1967	B*******R S******H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56	남산1호터널	2025-07-23 14:25:23	37거2178	주식회사엘**이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357	남산1호터널	2025-07-23 15:50:58	133서2773	박*훈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9번길
358	남산1호터널	2025-07-23 15:57:57	57소4075	정*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103번길
359	남산3호터널	2025-07-23 15:58:29	373조1000	박*혜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길
360	남산3호터널	2025-07-23 16:08:59	333오5308	박*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61	남산1호터널	2025-07-23 17:15:12	393마6923	J*N B**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91번길
362	남산3호터널	2025-07-23 17:28:51	267로1847	한*수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363	남산3호터널	2025-07-23 18:14:38	50모0249	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364	남산3호터널	2025-07-23 18:29:47	353나2857	이*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2002번길
365	남산1호터널	2025-07-23 18:40:23	48가3344	Z**********R A*********N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366	남산1호터널	2025-07-23 18:48:11	286더8886	박*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367	남산1호터널	2025-07-23 19:23:30	53루2929	성*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68	남산3호터널	2025-07-23 20:00:40	61두7449	J***G X*****N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8길
369	남산1호터널	2025-07-23 20:03:05	160가6765	E*******V S*****I A***********H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370	남산3호터널	2025-07-24 07:05:42	199나2134	이*벽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371	남산1호터널	2025-07-24 07:22:38	08거3620	김*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372	남산1호터널	2025-07-24 07:38:42	01구0349	주식회사 올***어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373	남산3호터널	2025-07-24 09:56:03	10오6903	권*훈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달계하석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74	남산1호터널	2025-07-24 10:29:51	310가3249	장*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375	남산3호터널	2025-07-24 11:03:52	177호7843	주식회사 차****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376	남산1호터널	2025-07-24 11:42:46	35도4107	주식회사 푸***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377	남산3호터널	2025-07-24 12:11:26	21부7228	홍*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42번길
378	남산1호터널	2025-07-24 13:13:51	25서6494	조*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46번길
379	남산1호터널	2025-07-24 13:49:31	03로3346	함*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우이천로2나길
380	남산3호터널	2025-07-24 13:51:27	16러9293	전*복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47번길
381	남산3호터널	2025-07-24 15:12:49	68오6504	Z******K U**U O*****K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87번길
382	남산3호터널	2025-07-24 19:10:39	146하9677	주식회사 신***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383	남산1호터널	2025-07-24 19:44:16	22오6511	김*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384	남산1호터널	2025-07-24 20:44:23	348더3933	주식회사 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5	남산3호터널	2025-07-25 08:11:09	39러1144	(주)메*******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963번길
386	남산1호터널	2025-07-25 08:37:14	45누1556	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로
387	남산3호터널	2025-07-25 09:19:47	58누4963	케*카 주식회사(상*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길
388	남산1호터널	2025-07-25 09:46:11	32누6336	주식회사 에**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맥도길545번길
389	남산1호터널	2025-07-25 10:03:19	55서5397	배*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390	남산3호터널	2025-07-25 10:50:44	125호8457	타***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91	남산1호터널	2025-07-25 11:48:24	16우6827	안*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48번길
392	남산1호터널	2025-07-25 11:48:28	23거0789	임*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56길
393	남산1호터널	2025-07-25 12:31:49	06소5145	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394	남산3호터널	2025-07-25 12:44:14	63루6025	허*열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395	남산1호터널	2025-07-25 13:04:00	291거2391	홍*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96	남산3호터널	2025-07-25 14:45:28	156다6600	P**O L*****N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397	남산3호터널	2025-07-25 14:50:10	15구5601	(주)제***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마유산로
398	남산1호터널	2025-07-25 16:25:32	49무9545	이*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399	남산3호터널	2025-07-25 16:37:29	43누8134	B***A E*********G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7길
400	남산1호터널	2025-07-25 16:40:53	368무8669	P**N R****E C***G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01	남산1호터널	2025-07-25 17:58:07	53무0505	청**건(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402	남산3호터널	2025-07-25 18:17:40	10오2296	주식회사 아**********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403	남산1호터널	2025-07-25 18:32:17	156모7335	주식회사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시장로
404	남산1호터널	2025-07-25 19:28:50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405	남산1호터널	2025-07-25 20:27:16	04마6855	남**훈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49번길
406	남산1호터널	2025-07-28 08:55:24	01머0533	고*효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번길
407	남산1호터널	2025-07-28 10:08:15	07다2632	김*동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408	남산3호터널	2025-07-28 10:08:18	345더5668	(주)와*****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409	남산3호터널	2025-07-28 11:11:39	59더0163	한*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3길
410	남산1호터널	2025-07-28 11:20:49	103어7974	윤*연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411	남산1호터널	2025-07-28 12:16:59	64나1959	제***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412	남산1호터널	2025-07-28 13:24:23	30마4589	성*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413	남산1호터널	2025-07-28 13:56:50	12소9057	이*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414	남산1호터널	2025-07-28 14:26:58	48오1821	Z**O H****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26길
415	남산3호터널	2025-07-28 14:40:50	231보2968	경*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16	남산3호터널	2025-07-28 14:54:50	188구7955	이*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17	남산1호터널	2025-07-28 15:08:49	177호7843	주식회사 차****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418	남산1호터널	2025-07-28 15:25:58	11무6470	유*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419	남산1호터널	2025-07-28 15:29:51	156모7335	주식회사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시장로
420	남산1호터널	2025-07-28 16:49:45	222구9501	드*****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421	남산3호터널	2025-07-28 17:16:20	233루5801	안*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53번길
422	남산3호터널	2025-07-28 17:27:27	21러5650	권*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23	남산3호터널	2025-07-28 17:57:14	35조6961	신*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14나길
424	남산1호터널	2025-07-28 19:06:07	33구3821	M******R M********R	경기도 광주시 옥토골길
425	남산3호터널	2025-07-28 19:23:56	175모2478	신*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426	남산3호터널	2025-07-28 19:26:13	52조0497	W**G S*****G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2길
427	남산3호터널	2025-07-28 19:35:24	197아0604	(주)큐**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428	남산1호터널	2025-07-28 20:23:27	03로5664	최*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변산로
429	남산3호터널	2025-07-29 07:07:50	199나2134	이*벽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430	남산3호터널	2025-07-29 07:49:54	34누5252	이*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북로9길
431	남산3호터널	2025-07-29 09:46:47	17수6866	엄*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3길
432	남산1호터널	2025-07-29 09:51:06	56너9428	주식회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33	남산3호터널	2025-07-29 10:03:16	327부3434	김*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3길
434	남산3호터널	2025-07-29 10:06:34	172수6531	편*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길
435	남산1호터널	2025-07-29 10:40:15	267소9710	A*********V R*******N R**********H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21길
436	남산1호터널	2025-07-29 10:49:54	142호3821	주식회사 유***카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37	남산1호터널	2025-07-29 11:30:40	03노8859	우*********조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438	남산1호터널	2025-07-29 11:55:56	186부8427	D**E Y**S I*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439	남산1호터널	2025-07-29 12:17:02	161호2082	그***카(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440	남산3호터널	2025-07-29 12:51:42	130라5516	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7가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441	남산1호터널	2025-07-29 13:24:36	55보0595	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4길
442	남산3호터널	2025-07-29 13:34:32	203다1850	E******B M**D S M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443	남산1호터널	2025-07-29 13:50:21	257우3650	주식회사 시******인 (S*****x M******e I*c.)	경기도 화성시 반월남길62번길
444	남산1호터널	2025-07-29 14:10:53	04구9490	이*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445	남산3호터널	2025-07-29 16:36:38	38두6510	정*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446	남산3호터널	2025-07-29 17:07:10	320부1848	폴* 파**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447	남산1호터널	2025-07-29 17:11:17	251러6298	(주)가**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8길
448	남산1호터널	2025-07-29 19:25:29	39더0705	이*화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449	남산1호터널	2025-07-29 19:57:36	100마8292	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6길
450	남산3호터널	2025-07-29 20:00:05	142호2126	(주)에*****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451	남산3호터널	2025-07-30 07:00:28	48마0728	김*겸	세종특별자치시 바른4길
452	남산1호터널	2025-07-30 08:07:40	177호7843	주식회사 차****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453	남산3호터널	2025-07-30 09:33:40	224주6777	S**N L*N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454	남산1호터널	2025-07-30 10:03:19	137머1772	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55	남산1호터널	2025-07-30 10:16:28	202로2001	D* K*N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456	남산1호터널	2025-07-30 10:47:01	21주4773	정*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9길
457	남산1호터널	2025-07-30 12:42:37	52무2300	이*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458	남산3호터널	2025-07-30 12:54:52	123두7940	T***R J**N H***Y J*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59	남산1호터널	2025-07-30 14:03:47	238주6664	R*******Z, Y****R J**E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60	남산3호터널	2025-07-30 14:06:04	145저7038	(주)에***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461	남산3호터널	2025-07-30 14:06:14	174러5388	P*K V******R R*********H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3길
462	남산3호터널	2025-07-30 14:18:48	56더5183	소*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1길
463	남산1호터널	2025-07-30 14:28:40	139마9185	이*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464	남산1호터널	2025-07-30 14:55:39	146하9539	주식회사 신***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465	남산3호터널	2025-07-30 20:17:41	08구6457	D**G D**H L*M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52번길
466	남산3호터널	2025-07-30 20:24:57	329저3555	(주)나*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7길
467	남산3호터널	2025-07-30 20:54:35	130가2635	이*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468	남산1호터널	2025-07-31 07:06:42	22마7553	주식회사 온**팅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37길
469	남산1호터널	2025-07-31 07:28:41	213로5210	G*******Z J***N L****T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470	남산3호터널	2025-07-31 08:00:24	69너4362	김*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길
471	남산1호터널	2025-07-31 08:36:54	393주5896	J*****N C***B I***C S*****Y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72	남산1호터널	2025-07-31 09:34:09	43로5349	(주)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73	남산1호터널	2025-07-31 10:28:34	56보2873	M*******V K******N D******D U**I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10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474	남산1호터널	2025-07-31 11:29:28	64부7680	문*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2길
475	남산3호터널	2025-07-31 13:19:18	108호1175	주식회사 케*****카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76	남산1호터널	2025-07-31 14:03:21	49도3049	주식회사 브**********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477	남산1호터널	2025-07-31 14:43:18	291무1351	롯****스(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478	남산1호터널	2025-07-31 14:53:21	32버6362	박*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479	남산3호터널	2025-07-31 15:26:50	38도3598	정***티(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1길
480	남산3호터널	2025-07-31 15:49:36	117버5416	정*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20길
481	남산1호터널	2025-07-31 15:53:37	276서2728	Z*U C******I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22번길
482	남산1호터널	2025-07-31 16:30:47	109라1311	이*민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483	남산1호터널	2025-07-31 16:43:23	381루9083	여*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1길
484	남산1호터널	2025-07-31 16:49:48	17주9828	(주)제*****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3길
485	남산1호터널	2025-07-31 17:18:18	54도4707	K*M D****L S*E C**N(김*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486	남산3호터널	2025-07-31 19:10:18	196어6544	(주)빌*****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87	남산1호터널	2025-07-31 20:08:03	14주9772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488	남산1호터널	2025-07-31 20:13:35	168보1281	주식회사 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89	남산3호터널	2025-07-31 20:17:54	33어7926	박*혁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90	남산1호터널	2025-07-31 20:23:35	58더0379	박*옥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12길
491	남산1호터널	2025-07-31 20:43:38	69누4057	유*****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5-01-24 16:39:36	172허5763	10,300	정*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	남산3호터널	2025-02-11 11:48:24	142호6420	10,300	AL O***** ******M	서울시 용산구
3	남산3호터널	2025-02-13 18:10:05	03호5967	10,300	황*하	강원도 원주시
4	남산3호터널	2025-02-14 18:31:05	101하1748	10,300	이*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5	남산1호터널	2025-03-25 19:04:55	101하6485	10,300	박*현	서울시 송파구
6	남산1호터널	2025-04-01 19:47:00	171하4751	10,300	김*희	서울시 용산구
7	남산1호터널	2025-04-02 11:53:46	155하9885	10,300	차*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8	남산1호터널	2025-04-03 14:06:12	01하0462	5,150	박*철	경기도 양주시
9	남산3호터널	2025-04-08 17:12:38	134호2429	10,300	JIN Z*****G	서울시 강서구
10	남산1호터널	2025-04-11 10:36:27	125호3912	10,300	윤*준	서울시 종로구
11	남산3호터널	2025-04-14 10:53:57	142호2437	10,300	김*석	서울시 중구
12	남산1호터널	2025-04-16 08:18:13	186노8425	10,300	웰*******날	서울시 강남구
13	남산1호터널	2025-04-16 09:28:22	195호9947	10,300	권*수	서울시 강남구
14	남산1호터널	2025-04-17 10:16:21	142호3433	10,300	김*남	경기도 파주시
15	남산1호터널	2025-04-17 17:44:20	156하6251	10,300	양*휘	인천광역시 중구
16	남산3호터널	2025-04-17 19:27:37	152하7906	10,300	치**스㈜	서울시 강남구
17	남산3호터널	2025-04-17 20:48:25	158소2621	10,300	고*석	서울시 마포구
18	남산3호터널	2025-04-18 16:03:51	152하7906	10,300	치**스㈜	서울시 강남구
19	남산3호터널	2025-04-18 16:52:35	336조1010	10,300	주식회사 나**터	경기도 안성시
20	남산1호터널	2025-04-21 13:42:49	106두9567	10,300	㈜웰******스	서울시 강남구
21	남산1호터널	2025-04-22 10:25:01	195호9947	10,300	권*수	서울시 강남구
22	남산3호터널	2025-04-22 17:06:12	254나7703	10,300	김*기	충청남도 홍성군
23	남산1호터널	2025-04-23 11:31:02	177호1782	10,300	서**업㈜	인천광역시 서구
24	남산1호터널	2025-04-23 19:16:50	192하1224	10,300	주식회사 광***김	충청남도 홍성군
25	남산3호터널	2025-04-24 12:44:45	195하7269	10,300	전***티㈜	서울시 서초구
26	남산3호터널	2025-04-24 15:21:35	134호2435	10,300	JIN Z*****G	서울시 중구
27	남산1호터널	2025-04-25 12:46:12	172허9134	10,300	주식회사 데****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8	남산3호터널	2025-04-25 14:13:50	159하6194	10,300	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29	남산3호터널	2025-04-25 16:22:04	31하8634	10,300	㈜제***븐	서울시 마포구
30	남산3호터널	2025-04-25 17:55:34	197하5711	10,300	김*희	서울시 은평구
31	남산3호터널	2025-04-28 07:20:15	194하6073	10,300	조*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2	남산1호터널	2025-04-29 07:54:00	154하9311	10,300	이*민	경기도 광주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33	남산1호터널	2025-04-29 11:33:35	104호8821	5,150	더 퍼***아㈜	경기도 화성시
34	남산1호터널	2025-04-30 11:14:17	156호1175	10,300	양*주	경기도 광주시
35	남산1호터널	2025-04-30 14:18:18	222호7973	5,150	㈜엘****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36	남산1호터널	2025-04-30 16:48:04	168루3538	10,300	주식회사 제********션	서울시 종로구
37	남산3호터널	2025-04-30 18:05:20	140하7902	10,300	김*숙	서울시 강서구
38	남산1호터널	2025-04-30 19:37:57	245너7775	10,300	박*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9	남산1호터널	2025-04-30 20:02:45	140하6178	10,300	인*숙	경기도 이천시
40	남산1호터널	2025-05-14 18:28:12	172하2907	10,300	제******발㈜	경기도 평택시
41	남산1호터널	2025-06-02 11:01:29	101호7052	10,300	김*년	서울시 성동구
42	남산3호터널	2025-06-02 12:01:39	179호6281	10,300	주식회사 윈***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43	남산3호터널	2025-06-02 12:24:07	196호9394	10,300	문*경	경상북도 구미시
44	남산3호터널	2025-06-02 15:04:26	192호1289	10,300	T*** Y* P**	서울시 서초구
45	남산1호터널	2025-06-02 20:47:38	106호8732	10,300	신*균	대전광역시 중구
46	남산1호터널	2025-06-04 12:34:28	181보7868	10,300	주식회사 헤****털	서울시 강남구
47	남산1호터널	2025-06-04 17:26:11	109하7612	10,300	Jin D*****o	서울시 강동구
48	남산1호터널	2025-06-04 18:30:09	220하1080	10,300	김*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49	남산1호터널	2025-06-04 19:09:12	106호8732	10,300	신*균	대전광역시 중구
50	남산1호터널	2025-06-05 08:09:30	105모7129	10,300	주식회사 아***인	서울시 성동구
51	남산3호터널	2025-06-05 10:55:34	174하7627	10,300	김*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52	남산1호터널	2025-06-05 13:22:11	167허5811	10,300	지*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53	남산3호터널	2025-06-05 14:06:39	179호6281	10,300	주식회사 윈***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54	남산1호터널	2025-06-05 16:39:48	157하8714	10,300	김*선	서울시 강남구
55	남산3호터널	2025-06-05 18:14:06	209구1459	10,300	주식회사 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56	남산1호터널	2025-06-09 09:06:03	167하4875	10,300	주식회사 플***븐	서울시 서초구
57	남산1호터널	2025-06-09 10:55:33	125호9933	10,300	이*섭	서울시 송파구
58	남산1호터널	2025-06-09 11:20:03	149호2797	10,300	박*형	서울시 강서구
59	남산3호터널	2025-06-09 13:56:06	161하6443	10,300	김*중	경기도 포천시
60	남산3호터널	2025-06-09 18:19:05	288루1777	10,300	허*우	서울시 강남구
61	남산1호터널	2025-06-10 15:01:32	133하1172	10,300	이*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62	남산1호터널	2025-06-10 19:17:39	149호7998	5,150	주식회사 네**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63	남산1호터널	2025-06-11 13:24:28	374라1206	10,300	차*재	충청북도 충주시
64	남산1호터널	2025-06-12 10:24:15	101하6661	10,300	이*준	경기도 화성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65	남산1호터널	2025-06-12 11:01:33	181허1141	10,300	홍*숙	서울시 강남구
66	남산1호터널	2025-06-12 13:03:24	147도5733	10,300	이*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7	남산1호터널	2025-06-12 14:14:19	21나8068	10,300	김*영	서울시 강남구
68	남산3호터널	2025-06-13 10:40:23	222허4015	5,150	㈜삼**처	서울시 서초구
69	남산1호터널	2025-06-13 13:09:13	126하3503	10,300	대****니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1호

도시공원(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최초)을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부지사용계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계약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외 4필지(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
나. 계약면적: 747㎡
다. 계약목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따로붙임[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3783-5920)

붙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주)을 “토지소유자”라 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임	3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9	임	4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22	임	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12	임	23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17	임	59

※ 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지 및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완료 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한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9번지는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므로 토지사용동의로 간주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일부터 2029년 2월 ○○일까지로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장충단고개 녹지연결로 조성관련 시설(산책로 및 녹지연결로)
2. 의자·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3. 위 시설 도입에 따른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차폐식재,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계약 상의 토지소재지 주변부까지 확장 될 수 있으며, 제9조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설치한다.)
4.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지방세법」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 장충단고개 녹지연결로 조성관련 시설은 최초 조성 후 10년 이상 존치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2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주) (인)

공원관리청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장 (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2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03791	주식회사 우진티앤에스 (최*익)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 테라타워 에이동 605호, 606호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6.1.22.~2026.02.05.)
2	112667	웰킵스네트웍스 주식회사 (장*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54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026.1.22.~2026.02.05.)
3	202404	어울림영상(주) (구*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908호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6.1.22.~2026.02.20.)
4	202605	㈜넥스트코어테크놀로지 (서*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 에이610호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6.1.22.~2026.02.20.)
5	202430	주식회사 아이티에스노아 (양*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1810~1815호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개월 (2026.1.22.~2026.02.20.)
6	201829	㈜테스콤엔지니어링 (박*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50길 1, 2층	하도급 규정 위반	영업정지 45일 (2026.1.15.~2026.02.28.)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및 본점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1. 22. ~ 2026. 02. 06.(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00602098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14길 23 (남가좌동)	수도요금	2021.02.28. 외 23 납기	24회	4,788,650원	등기번호 : 11050-0600-3163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거주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14길 23 (남가좌동)	최**	9204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14길 23 (남가좌동)		4,788,650원	2025.12.23.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한동수 주무관(☎02-3146-35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5호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에 품격 높고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모 내용]

○ 공 모 명 :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미술작품 제작 · 설치 공모
○ 공모 기간 : 2026.1.19.(월)~ 2.19.(목)
○ 응모 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 · 설치할 수 있는 자
(1개 작품에 대해 단독 또는 공동 응모 가능하며 공동 응모 시 대표자가 명기함)
○ 건축물 개요
- 건축물명 :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 대지위치 : 서울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4BL
- 건축용도 :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준공예정 : 2028.06.
○ 미술작품 개요
- 작품 유형 및 개수 : 조각, 1개
- 설치 금액 : 62,000,000원
- 작품 크기 : 설치 면적(15㎡) 내에서 작가에게 일임
- 설치 위치 : 단지 중앙 103동과 107동 사이 중앙 물빛 정원 내 소나무(장송) 군식 앞 잔디 녹지
- 설치 예정일 : 2028.06.
○ 작품 제출
- 제출 기한 : 2026.1.19.(월)~ 2.19.(목) 16 :00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유선 연락 필수
[design_industry@seoul.go.kr, ☎ 02-2133-9335 (10 :00 ~ 17 :00)]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작성 유의 사항
응모신청서 [서식1]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응모신청서
작품설명서 [서식2]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작품설명서_설치금액사용계획서_작가경력서 개인정보는 ‘○○’ 등으로 표시할 것
설치금액사용계획서 [서식3]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작품설명서_설치금액사용계획서_작가경력서 개인정보는 ‘○○’ 등으로 표시할 것
작가경력서[서식4]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작품설명서_설치금액사용계획서_작가경력서 개인정보는 ‘○○’ 등으로 표시할 것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서식5]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서약서[서식6]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서약서
위임장[서식7]	위임 시 제출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위임장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 선임계[서식 8-9]	공동응모 시 제출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공동응모협정서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대표자 선임계
기타류[스캔본 첨부]	응모 자격 증빙 서류 (수상 실적, 공모경력확인서 등)

○ 계약방법 :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와 작가 간의 계약 (당선작 공고 후 시기 협의)

○ 심사발표 : 2026년 3월 예정 市 누리집 공고 및 당선 작가 개별 통보

○ 문 의 처 : ☎ 02-2133-933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7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주)이엔건설 (김성훈)	건축공사업 01-468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4-5, 3층(송파동, 에스아이팰리스레이크잠실)	사업자 국세청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 429-81-01835 - 폐업일: 2025. 10. 20.	등록말소 (2026. 2. 27.)	법 제83조 제1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8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주)해마루21 건설 (대표 최영)	건축공사업 01-3177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이동 904호(성수동2가 성수역 현대테라스타워)	○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 실효 (2025.12.12.)	영업정지	2026.2.6.(금) 10: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주무관 남은주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90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법적근거
가. 사전통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나. 연 체 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다.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대상자	무단점유사실 및 사전통지 내역	송달주소	비고
정○자, 권○민	- 무단점유재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45-232 - 점유기간: 2022. 12. 22.~2024. 12. 31. - 점유면적 및 요율: 2.0㎡, 5% - 변상금액: 3,293,710원	서울시 성○구 종○로3○ 2○-1○	폐문부재로 인한 고지서 미도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시송달 기간: 2026. 1. 22. ~ 2026. 2. 5.(게시일로부터 15일 간)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91호

마곡지구 16단지 아파트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마곡지구 16단지 아파트에 품격 높고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모 내 용]

○ 공 모 명 : 마곡지구 16단지 아파트 미술작품 제작 · 설치 공모
○ 공모 기간 : 2026.1.19.(월)~ 2.19.(목)
○ 응모 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 · 설치할 수 있는 자
(1개 작품에 대해 단독 또는 공동 응모 가능하며 공동 응모 시 대표자가 명기함)
○ 건축물 개요
- 건축물명 : 마곡지구 16단지 아파트
- 대지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3번지 일원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 건축용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형SOC시설
- 준공예정 : 2027.11.
○ 미술작품 개요
- 작품 유형 및 개수 : 조각 , 1개
- 설치 금액 : 63,000,000원
- 작품 크기 : 설치 면적(11.25㎡) 내에서 작가에게 일임
- 설치 위치 : 1603동 1604동 사이 그러너리 스퀘어 조형폰드 주변 잔디면
- 설치 예정일 : 2027.11.
○ 작품 제출
- 제출 기한 : 2026.1.19.(월)~ 2.19.(목) 16 :00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유선 연락 필수
[design_industry@seoul.go.kr, ☎ 02-2133-9335 (10 :00 ~ 17 :00)]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작성 유의 사항
응모신청서 [서식1]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응모신청서
작품설명서 [서식2]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작품설명서_설치금액사용계획서_작가경력서 개인정보는 ‘○○’ 등으로 표시할 것
설치금액사용계획서 [서식3]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작품설명서_설치금액사용계획서_작가경력서 개인정보는 ‘○○’ 등으로 표시할 것
작가경력서[서식4]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작품설명서_설치금액사용계획서_작가경력서 개인정보는 ‘○○’ 등으로 표시할 것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서식5]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서약서[서식6]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서약서
위임장[서식7]	위임 시 제출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위임장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 선임계[서식 8-9]	공동응모 시 제출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공동응모협정서 파일명 : 마곡지구_작가명_대표자 선임계
기타류[스캔본 첨부]	응모 자격 증빙 서류 (수상 실적, 공모경력확인서 등)

○ 계약방법 :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와 작가 간의 계약 (당선작 공고 후 시기 협의)

○ 심사발표 : 2026년 3월 예정 市 누리집 공고 및 당선 작가 개별 통보

○ 문의처 : ☎ 02-2133-933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94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엘지 생활건강	서울 후 제753호	이선주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 (남대문로5가)	소재지 ('26.01.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신문로2가)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 (남대문로5가)
					연락처 ('26.01.01.)	02-6924-4707	02-6980-07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95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전*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2길 30 화곡동, 애플하우스 203호	일시 : 2025-09-13 05 : 31 위반장소 : 성동구 뚝섬로 411(망원동~성수동) 내용 : 경기98자7571, 트레일러 5축, 차량의 길이 초과(실측값: 19m, 초과값: 2.3m, 적재물:천공기)	처분일 : 2025-10-27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25-12-31 독촉일 : 2026-01-03
민*기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성로77번길 15 대소면, 한진신세대아파트 102동 5층 517호	일시: 2025-08-21 06:52 위반장소: 경북99아2857, 트레일러 6축, 차량의 길이 초과(실측값: 18.8m, 초과값: 2.1m, 적재물:H빔)	처분일: 2025. 09. 19.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5.11.30. 독촉일: 2025.12.03.
배*호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57길 20-5 신서동 302동 302호	일시: 2025-08-25 06:01 위반장소: 동대문로 홍릉로 60(포항~청량리) 내용: 경북98아4662, 트레일러 6축, 차량의 길이 초과(실측값: 19.5m, 초과값: 2.8m,적재물:H빔)	처분일: 2025. 09. 19.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5.11.30. 독촉일: 2025.12.03.
이*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읍학동길 20-43 해남읍	일시: 2025-08-30 05:42 위반장소: 성동구 뚝섬로 377 이마트공사장 앞(화성~성수동) 내용: 부산92아8712, 카고 3축,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8m, 초과값: 0.28m, 적재물:컨테이너)	처분일: 2025. 10. 14.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5.12.31. 독촉일: 2026.01.03.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5. 12. 31.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02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수시분 부과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6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	01모1993	㈜*엔에스씨오알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10-02 13:10	강서02_개화역 1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2	11더7210	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10-09 21:17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3	18너3409	주식회사 *통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10-31 10:27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4	22루4936	우*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10-24 15:53	금천05_금천교(범안로)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5	70소2893	안*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10-24 12:35	동작01_노량진역(노량진로)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6	92나2379	㈜*추럴하모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10-19 11:32	마포03_성산로(연희IC) 1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나. 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붙임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이의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서의 제출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 제출 :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
  (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김석근 (Tel 02-2133-3659)

붙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
(차량번호)</td><td colspan="2">(　　)</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　　)</td></tr>
<tr><td rowspan="3">과 태 료
처분내역</td><td>부과기관</td><td>서울특별시</td><td>부과번호</td><td colspan="2"></td></tr>
<tr><td>부과일자</td><td></td><td>과 태 료
금 액</td><td colspan="2"></td></tr>
<tr><td>위반내용</td><td colspan="4">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운행제한 위반</td></tr>
<tr><td>과 태 료

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td><td colspan="5"></td></tr>
</table>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0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2. ~ 2025. 2. 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예고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4591495	금천구 벚꽃로 31*	수도 요금	2025. 1 외 5납기	6회	7,226,280원	압류예고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31*(가산동 77*)	주식회사 씨엔**파크	110111-******* (등기번호 1126815007842 폐문부재)	영등포구 여의서로 16*	7,226,280원	2026. 2.6.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현혜지(☎02-3146-11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1호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공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현황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 명	영업장 소재지	업체 연락처	수리 등록일 (신고일)
서강나무병원 주식회사	식물보호업 (05-01-0010)	110111- 6342739	한혜진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304-1, 4층	02-404- 0696	'26.01.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20) 또는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2호

여의도 한강공원 내 국가하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여의도 한강공원 내 국가하천구역에서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인 하천을 점유하고, 이동식 가판대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하천법 제69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직접 송달하려 하였으니 의무 위반자의 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 여의도 한강공원 내 국가하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국유재산법 제74조, 하천법 제69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3.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1. 26.(5일)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하천법 제69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서울특별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대상

의무 위반자	무단 점용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정성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원효대교 아래	이동식 가판대 (별지 목록 사진)	1개	취거(다른 장소로 이동)

7. 송달내용

귀하는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여의도 한강공원 내 국가하천구역에서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인 하천을 점유하고, 이동식 가판대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의 상황이 지속되고, 한강 하천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 1. 25.까지 반드시 별지 목록 기재 적치물이 취거되어 하천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 하천법 제69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성민지 3780-0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목록	행정대집행 대상 목록 (사진)





정성순 (1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3호

여의도 한강공원 내 국가하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여의도 한강공원 내 국가하천구역에서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인 하천을 점유하고, 이동식 가판대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하천법 제69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직접 송달하려 하였으니 의무 위반자의 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 여의도 한강공원 내 국가하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국유재산법 제74조, 하천법 제69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3.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1. 26.(5일)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하천법 제69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서울특별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대상

의무 위반자	무단 점용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최우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원효대교 아래	이동식 가판대 (별지 목록 사진)	1개	취거(다른 장소로 이동)

7. 송달내용

귀하는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여의도 한강공원 내 국가하천구역에서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인 하천을 점유하고, 이동식 가판대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의 상황이 지속되고, 한강 하천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 1. 26.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적치물이 취거되어 하천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 하천법 제69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성민지 3780-0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목록	행정대집행 대상 목록 (사진)





최우택 (1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589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법적근거
가.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대상자	무단점유사실 및 사전통지 내역	송달주소	비고
안○옥	– 무단점유재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53-19 및 253-20 – 점유기간: 2020. 12. 23. ~ 2024. 12. 31. – 점유면적 및 요율: ·시흥동 253-19 : 14.0㎡, 5% ·시흥동 253-20 : 1.0㎡, 5% – 변상금액: 21,205,920원	경기도 군○시 오○로 10 (금○동 800-10)	폐문부재로 인한 고지서 미도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시송달 기간: 2026. 1. 22. ~ 2026. 2. 5.(게시일로부터 15일 간)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87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인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조례화한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가 ’ 26.1.5.字 제정 및 시행됨
 ○ 이에 필요성이 상실된 기존 예규를 폐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26-1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식매각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시의원	의회의원	소영철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하이브	50	매각	8,695	2024-08-08	미래에셋증권
본인	하이브	100	매각	18,640	2024-09-03	미래에셋증권
본인	하이브	39	매각	7,347	2024-09-03	미래에셋증권
본인	하이브	111	매각	17,538	2024-09-26	미래에셋증권
본인	하이브	300	매각	47,430	2024-09-26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6-59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판결 공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사건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 건	2023추513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공시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		
판결선고	2026. 1.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6-6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청사이전추진단 폐지 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총무과 분장사무에 신청사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나.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및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 소관 업무 명칭 현행화(서울미래교육지구→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다. 학생교육원 및 교육시설관리본부의 분장사무 조정 · 신설 등을 위한 사무 정비 추진

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국 내 ‘청사이전추진단’을 삭제하고, 청사이전추진단 분장사무 삭제(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7항)

나. 총무과 분장사무에 ‘청사이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신청사 사무공간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 시설·공사 집행·관리’, ‘스마트오피스 시스템 및 신청사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그 밖의 청사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2항)

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및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장 분장사무 중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으로 수정(안 제8조제6항 및 안 제58조제6항)

라. 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 분장사무 중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 관리, 전산 보안업무)’ 신설(안 제35조제3항)

마. 학생교육원 운영지원과 분장사무 중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 관리, 전산 보안업무)’ 삭제(안 제35조제5항)

바. 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 분장사무 중 ‘학교 수영장 관리 ·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학교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 ·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 제50조제4항)

사.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용어 변경(안 제11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7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 (우 03178)

○ 이메일: dreamscome35@sen.go.kr (※ 문의: 전화 02-2282-8643)

4.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6호를 제3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청사이전 계획 수립 및 실행
27. 신청사 사무공간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8. 신청사 건립 시설·공사 집행·관리
29. 스마트오피스 시스템 및 신청사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0. 그 밖의 청사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3호 중 “서울미래교육지구”를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미래학교추진단 및 청사이전추진단”을 “미래학교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사이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관리, 전산 보안업무)

제40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4항제8호 중 “수영장”을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의”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58조제6항제5호 중 “서울미래교육지구”를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총무과) ① (생 략)	제6조(총무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조한다.	②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청사이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신 설>	27. 신청사 사무공간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8. 신청사 건립 시설·공사 집행·관리
<신 설>	29. 스마트오피스 시스템 및 신청사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신 설>	30. 그 밖의 청사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26. (생 략)	31. (현행 제26호와 같음)
제8조(기획조정실) ① ~ ⑤ (생략)	제8조(기획조정실) ①~⑤(현행과 같음)
⑥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3.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4. ~ 31. (생 략)	4. ~ 31.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및 청사이전추진단을 둔다.	제11조(교육행정국) ① ---------- 미래학교추진단 ----------.

현 행	개 정 안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안전과장 및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사이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청사이전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이전 계획 수립** **2. 신청사 사무공간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신청사 건립 시설·공사 집행·관리** **5. 스마트오피스 및 청사출입 보안시스템 구축** **6. 그 밖의 청사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35조(총무부) ①·② (생 략)	**제35조(총무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8.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9.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관리, 전산 보안업무)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5.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관리, 전산 보안업무)	<삭 제>
제40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0조(원장)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제41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41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환경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급식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제49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49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총무부) ① ~ ③ (생 략)	제50조(총무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학교 수영장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④ ----------. 1. ~ 7. (현행과 같음) 8. 학교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의 ----------
제57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57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제58조(교육지원국) ① ~ ⑤ (생 략)	제58조(교육지원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생맞춤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6. ~ 19. (생 략)	⑥ ----------.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6. ~ 19.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6년 월 일

구 고 시

◈ 동대문구고시 제2026-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467호(1978.09.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90호(1978.12.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0-75호(2020.07.16.)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고시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616	장안동 138-8	장안동 153-10	일반도로	1978.09.11. (서고 467)	-
변경	소로	1	5	6~10	국지도로	616	장안동 138-8	장안동 153-10	일반도로		

※ 사업 미집행 구간(답십리동 1-581 ~ 1-585번지) 선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국) 1-5	소(국) 1-5	폭 10m → 6m ~ 10m	· 1차 공사 후 도로 폭 확보로 양방향 교행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도로개설 불필요하여 변경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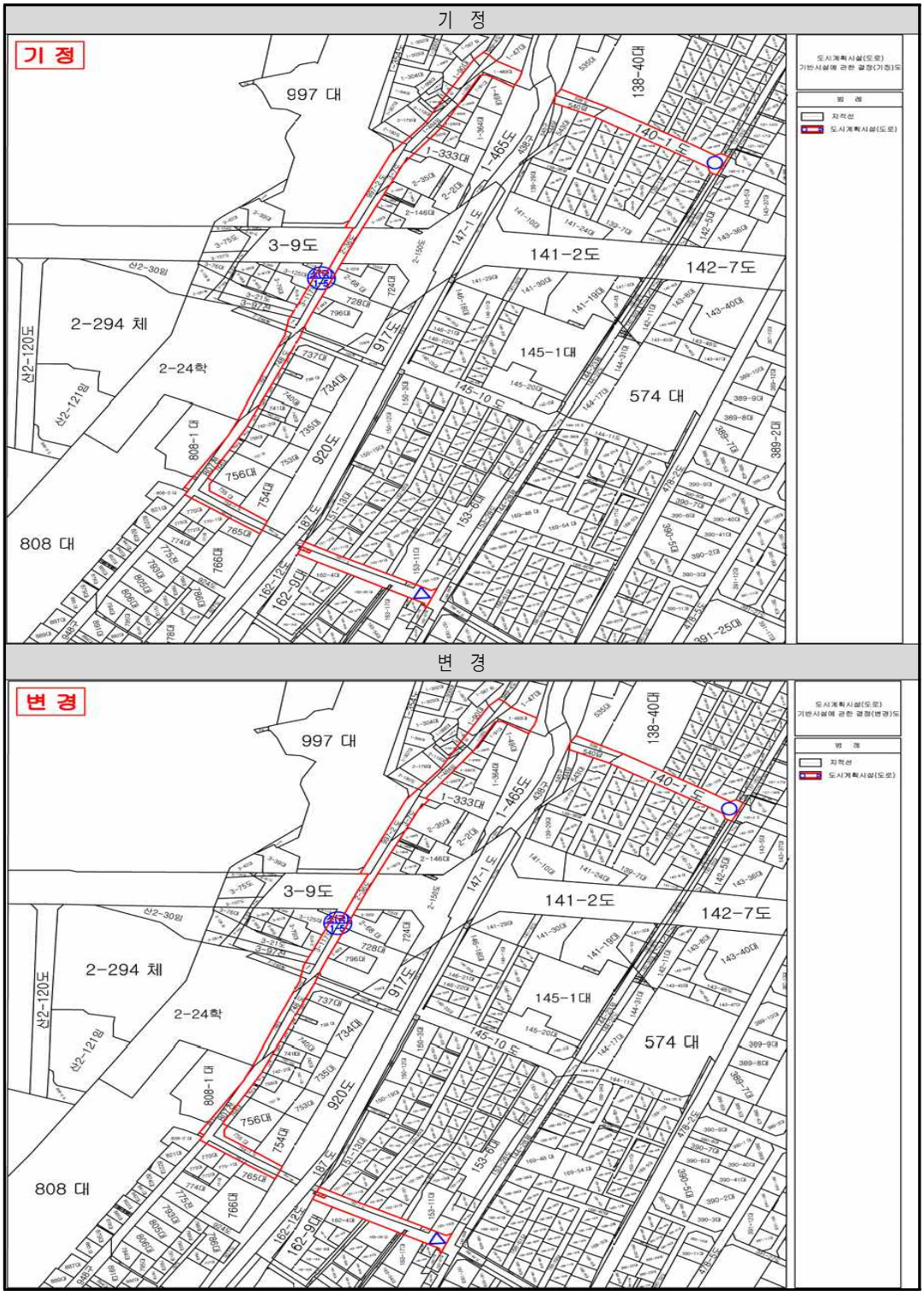
다. 지형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4582) 및 도로과(☎ 2127-481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홈페이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도 열람가능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동대문구고시 제2026-10호

도시관리계획(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4호(2022.4.14.)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취지 : 전농동 295-410외 1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전면공지에 관한 계획)을 현황도로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공지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 교차가각부 : 3~5m, 간선변 : 3~6m, 이면부 : 1~2m · 차도형 전면공지 - 이면부 : 2m 이하 · 조성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기 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 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 주체가 조성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조성 · 개방형 구조로서 조경, 벤치 등 인근 이용자를 위한 다중이용 편의시설 설치 · 가각부 등 보행결절점에 조성 · 전구역 : 3개소	결정도 참조
	대지안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의 규정 준용	

■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면공지	○ 전농동 295-410, 411번지 전면공지 조성방법 변경 차도형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 차도형 전면공지는 현황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형 전면공지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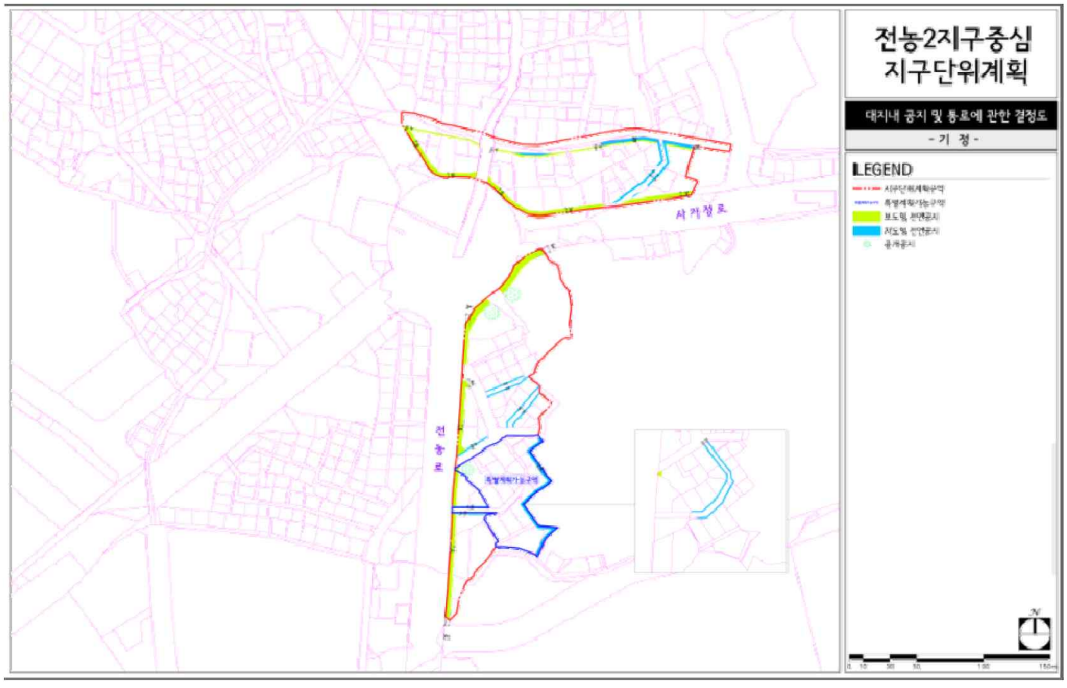
※ 금회 변경사항 외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변경은 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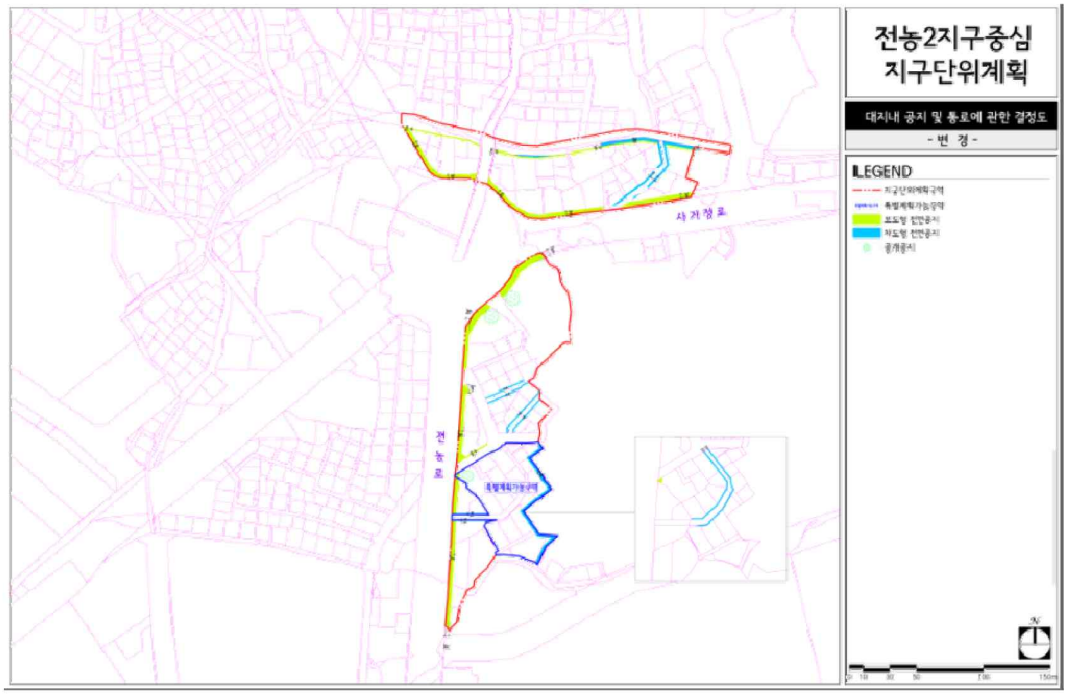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4946)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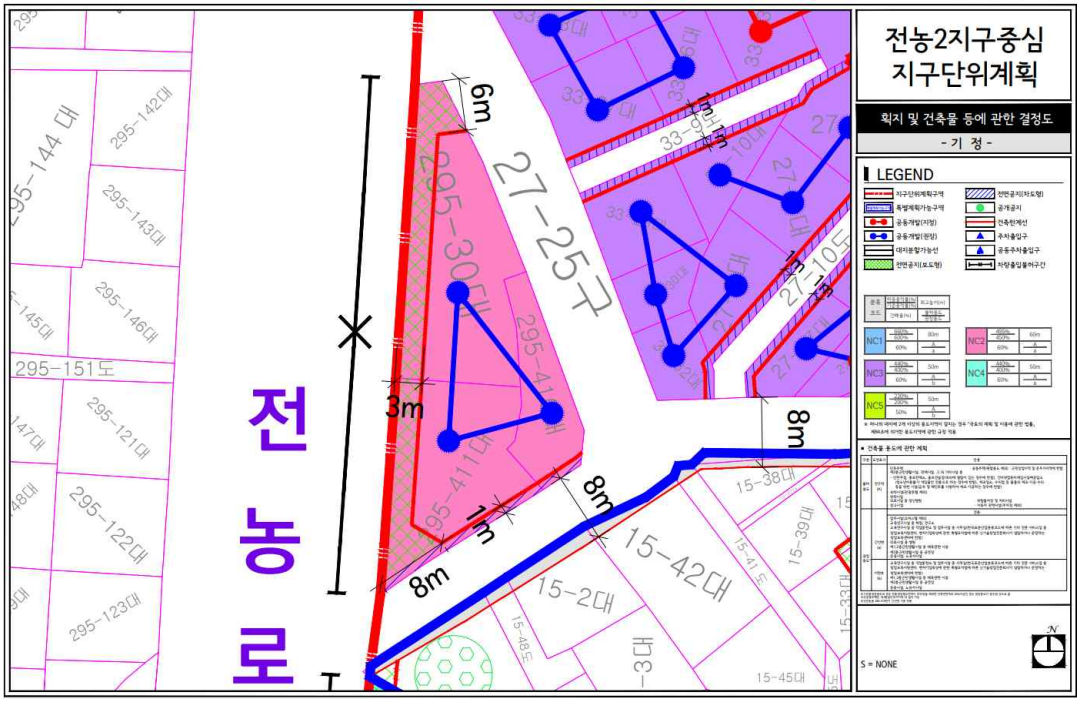
■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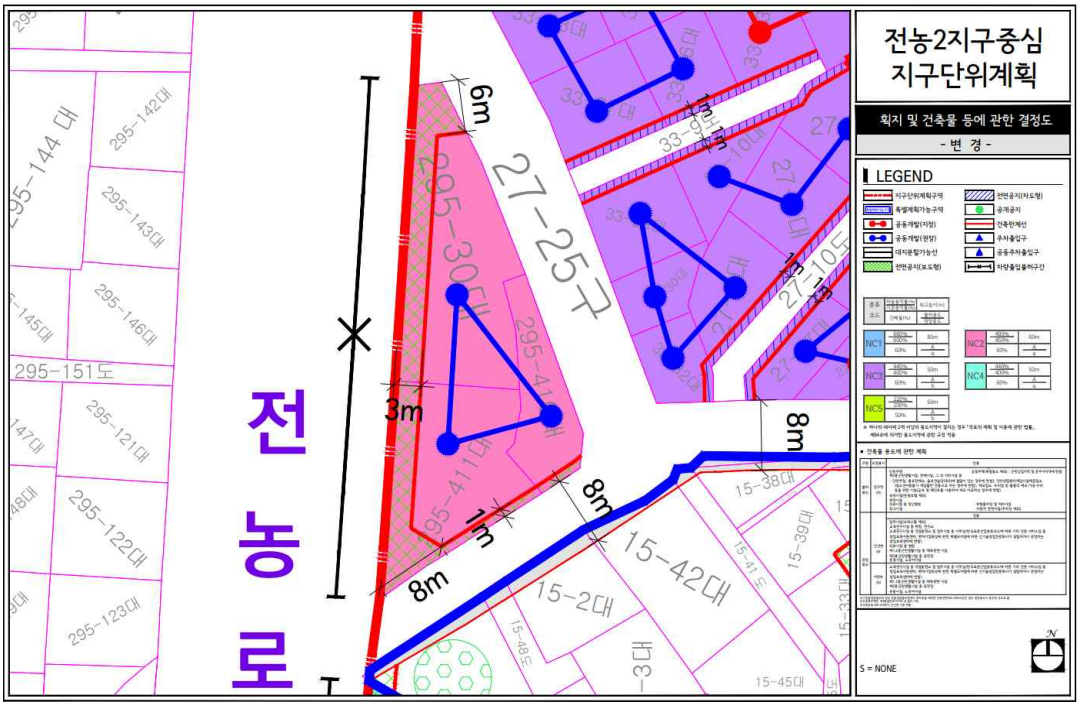
■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중랑구고시 제2026-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526호(1978.10.6.)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06)로 건축범위 일괄 결정된 중랑구 망우동 519번지 혜원여중·고등학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신설(학교 중복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중 랑 구 청 장

1. 결정취지 : 학교 주차공간 확보 및 인근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혜원여중·고 내 학교복합공간(생활문화센터, 주차장)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중·고교	중랑구 망우동 519번지	27,593.7	-	27,593.7	서울시고시 제526호 (1978.10.6.)	주차장 중복결정 (2,906㎡)

2)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30% 이하	35%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학교	건축범위(건폐율) 변경 [30%이하 → 35%이하 (증 5%)]	· 기존 건폐율로는 교육시설과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복합공간(생활문화센터, 주차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사업의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519번지	-	증)2,906	2,906	-	학교 중복결정 (2,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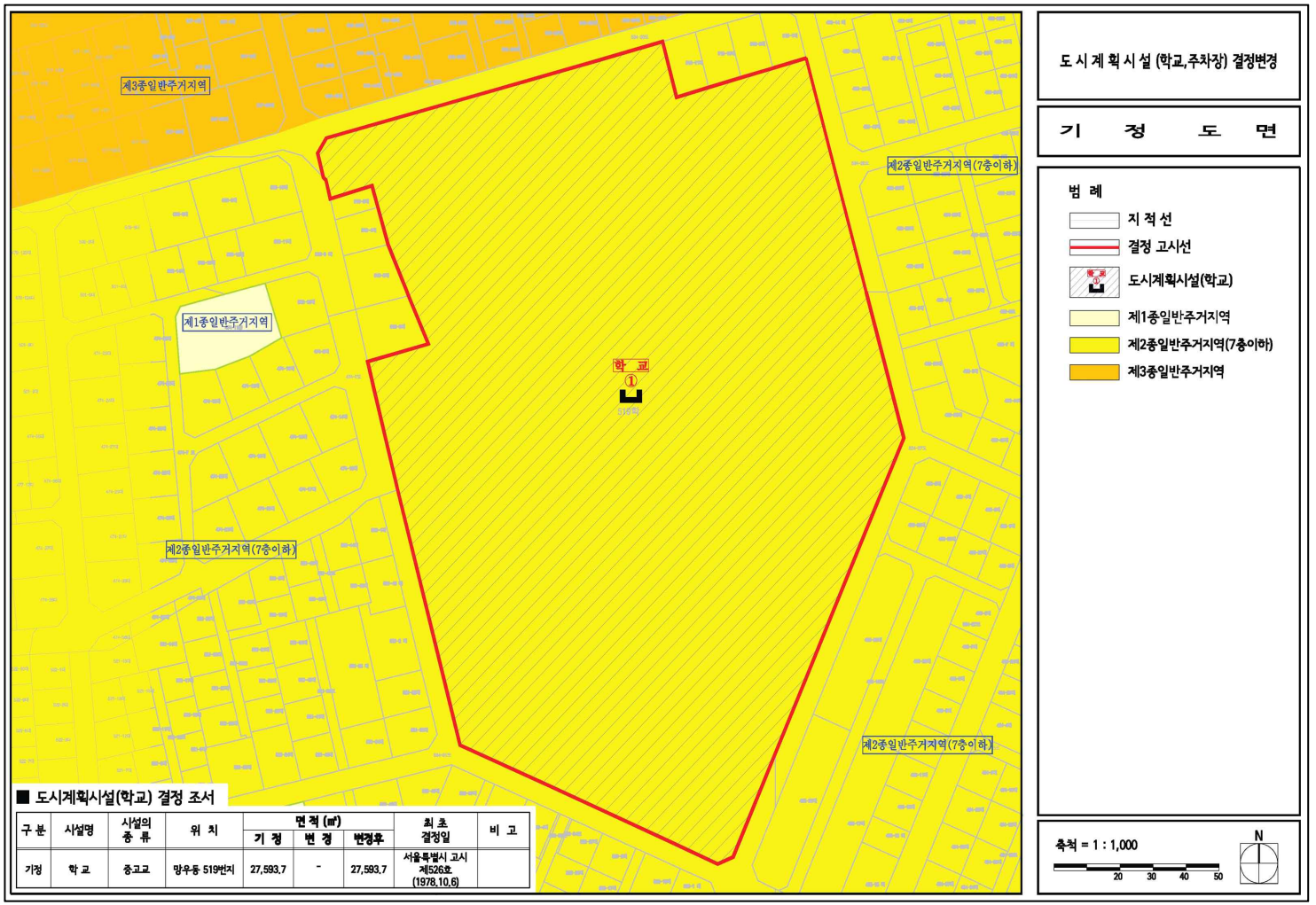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설	주차장	주차장 신설	· 학교 주차공간 확보 및 인근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 교육 환경과 지역 생활 환경,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신설(학교 중복결정) 하고자 함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74) 및 주차관리과(☎02-2094-265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 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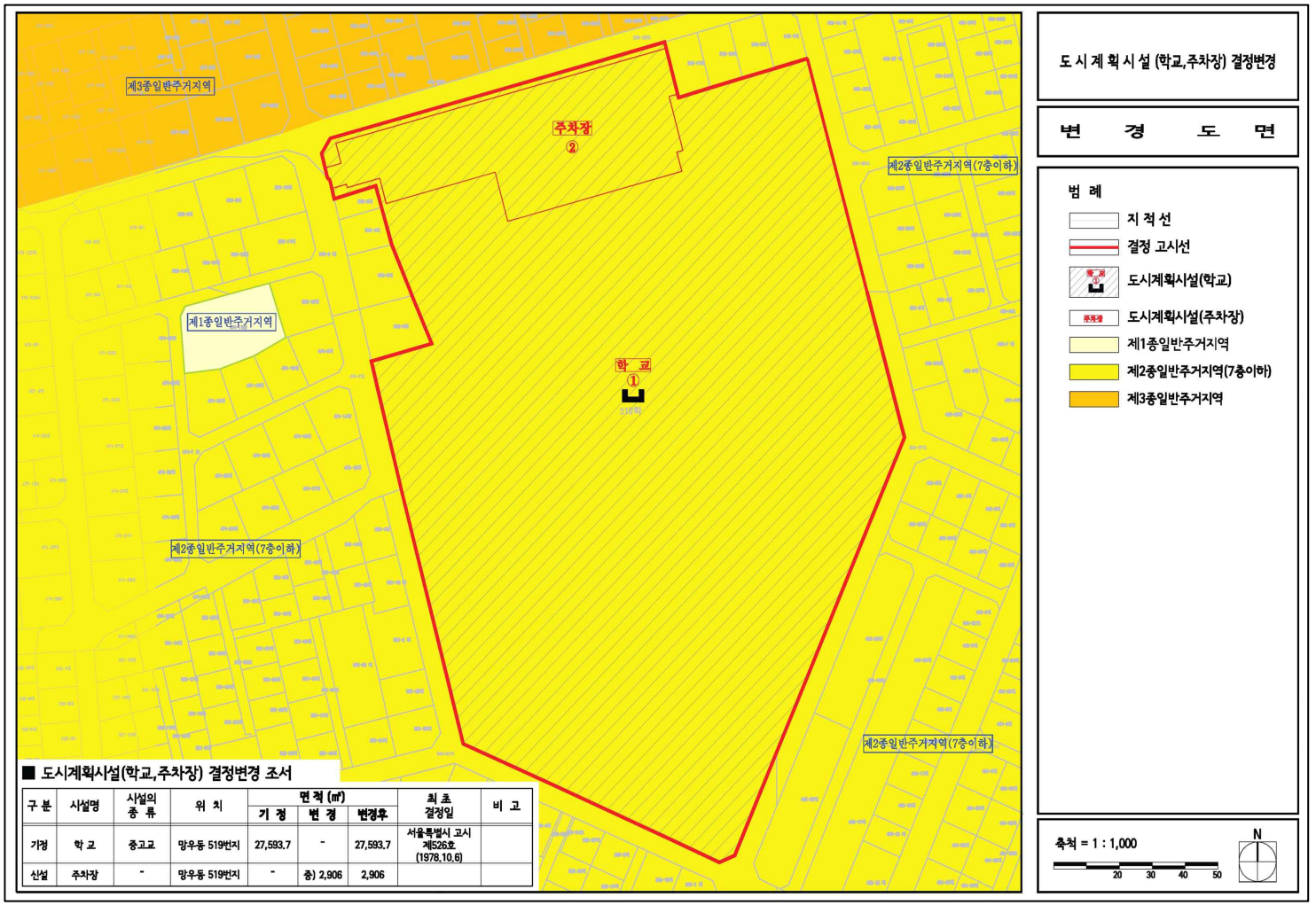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학 교	중고교	망우동 519번지	27,593.7	-	27,593.7	서울특별시 고시 제526호 (1978.10.6)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 -



■ 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 교	중고교	망우동 519번지	27,593.7	-	27,593.7	서울특별시 고시 제526호 (1978.10.6)	
신설	주차장	-	망우동 519번지	-	중) 2,906	2,906		

◈ 은평구고시 제202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77호(2024.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5-25호(2025.3.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고양지축 지구 외 진입도로 건설공사(대로1-A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0-5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칭: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진입도로 건설공사(대로1-A호선)

다. 사업시행 규모(변경)
- (기정) 도로 신설(왕복 6차로, L=115.9m, B=35m, A=4,013.8㎡)
- (변경) 도로 신설(왕복 6차로, L=115.9m, B=35m, A=10,853.3㎡)
※ 변경사유 : 대로1-A 개설을 위해 대로1-A와 연결되는 도로(5개소)의 정비계획 변경 (재포장, 지장물 이설 등)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2)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용현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1) 착 수 일 : 2025년 3월 27일
2)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조서 참조(변경)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로과(☏351-7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기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2	하천	3,954.7	357.5	공	서울특별시				
2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3	공원	569.6	16.6	공	은평구 (서울특별시)				
3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5	하천	1,349.3	1,349.3	공	서울특별시				
4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4	도로	3,527.0	196.4	공	서울특별시				
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10	전	253.0	37.0	국	국토교통부				
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11	전	189.0	136.0	국	국토교통부				
7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35	하천	76,230.0	1,877.0	국	환경부				
8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37	하천	953.0	44.0	국	건설부				
합계				87,025.6	4,013.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45	도로	2,445.5	303.9	공	고양시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	도로	8,272.7	2,619.9	공	고양시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83	도로	3,047.6	401.5	공	고양시				
4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2	하천	3,954.7	357.5	공	서울특별시				
5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3	공원	569.6	16.6	공	은평구 (서울특별시)				
6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5	하천	1,349.3	1,349.3	공	서울특별시				
7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4	도로	3,527.0	196.4	공	서울특별시				
8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10	전	253.0	37.0	국	국토교통부				
9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11	전	189.0	136.0	국	국토교통부				
10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35	하천	76,230.0	1,877.0	국	환경부				
1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37	하천	953.0	44.0	국	건설부				
12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6	도로	3,330.6	1,363.3	공	서울특별시				
13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26-1	도로	6,735.9	1,338.1	공	서울특별시				
14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1	도로	2,706.7	765.6	공	은평구 (서울특별시)				
15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4	공원	553.0	47.2	공	은평구 (서울특별시)				
합계				114,117.6	10,853.3						

◈ 서대문구고시 제2026-87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1978.8.26.)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80호(1980.5.26.)로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1418호(2023. 11. 9.)로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145호(2023. 12. 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4-135호(2024.11.2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 사업 완료(사용)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5 등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사업의 명칭 : 경의제2녹지 조성사업
다.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완료 공고 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인가	사업기간		비고
				토지 등 보상	녹지조성	
경의제2녹지 조성사업	충정로3가 143-5 등 4필지	165.6㎡	서대문구 공고 제2023-145호 (2023.12.7.), 서대문구 공고 제2024-135호 (2024.11.20.)	2019.1.11. ~ 2020.2.3.	2023.12.7. ~ 2025.12.29.	

라.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조성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4필지	165.6	165.6						
충정로3가 155-5	대	9.9	9.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없음 -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조성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충정로3가 143-5	대	28.8	28.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충정로3가 143-11	도로	69.4	69.4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연희로 248				
충정로3가 129-29	도로	57.5	57.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

◈ 동작구고시 제2026-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근린공원, 공공공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114호(2014.11.27.)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 및 동작구고시 제2019-52호(2019.7.4.), 동작구고시 제2022-11호(2022.01.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1764호(2025.10.0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근린공원, 공공공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한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재건축지원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820-1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원(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근린공원, 공공공지)사업
- 사업명칭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근린공원, 공공공지)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비고
		기 정	변 경	
소로 1-1호선	연장 : 122m 폭원 : 9.3~11.1m	연장 : 122m 폭원 : 9.3~11.1m	연장 : 122m 폭원 : 9.3~11.1m	국지도로
소로 3-1호선	연장 : 55.6m 폭원 : 6~7m	연장 : 55.6m 폭원 : 6~7m	연장 : 55.6m 폭원 : 6~7m	국지도로
도로 면적	소로 1-1호선 : 1,196.4 ㎡ 소로 3-1호선 : 522.9 ㎡	소로 1-1호선 : 1,200 ㎡ 소로 3-1호선 : 505 ㎡	소로 1-1호선 : 1,196.4 ㎡ 소로 3-1호선 : 522.9 ㎡	
근린공원 면적	현충근린공원 : 1,106,408.9㎡ 중 (2,207.5㎡)	현충근린공원 : 1,106,402.2㎡ 중 (2,200.8㎡)	현충근린공원 : 1,106,408.9㎡ 중 (2,207.5㎡)	
공공공지	면적 : 103.0㎡	면적 : 103.0㎡	면적 : 103.0㎡	

라.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기정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병례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 변경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윤희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시행인가(변경)일로부터 60개월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 근린공원, 공공공지에 대해 관리청(동작구청)에 기부채납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참조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건축지원과(☎02-820-1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도시계획시설 (소로1-1호선)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시·구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기정	102	대	1,875	8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102-18	대	416	18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102-19	대	370	1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102-90	대	14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	8	도	1,196.4	1,196.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계		기정	4필지		2,675	1,200						
		변경	1필지		1,196.4	1,196.4						

도시계획시설 (소로3-1호선)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시·구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기정	98-1	도	415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기정	100-36	도	14	5		서울특별시				
		기정	102	대	1,875	6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103-5	대	181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103-6	대	181	94.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103-8	도	139	37.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104-1	대	288	23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104-5	구	258	13		동작구				
		기정	104-12	대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332-4	도	95.5	25.7		동작구				
		변경	7	도	522.9	522.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계		기정	10필지		3,449.5	505						
		변경	1필지		522.9	522.9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시·구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기정	93-7	대	111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89-6	천	563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1인				
								서울특별시				
		기정	89-9	대	183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1인				
		기정	89-8	도	44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89-7	도	59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89-1	도	14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정	90-1	대	764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11인				
		변경	4	잡	103	1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11인				
계		기정	7필지		103	103						
		변경	1필지		103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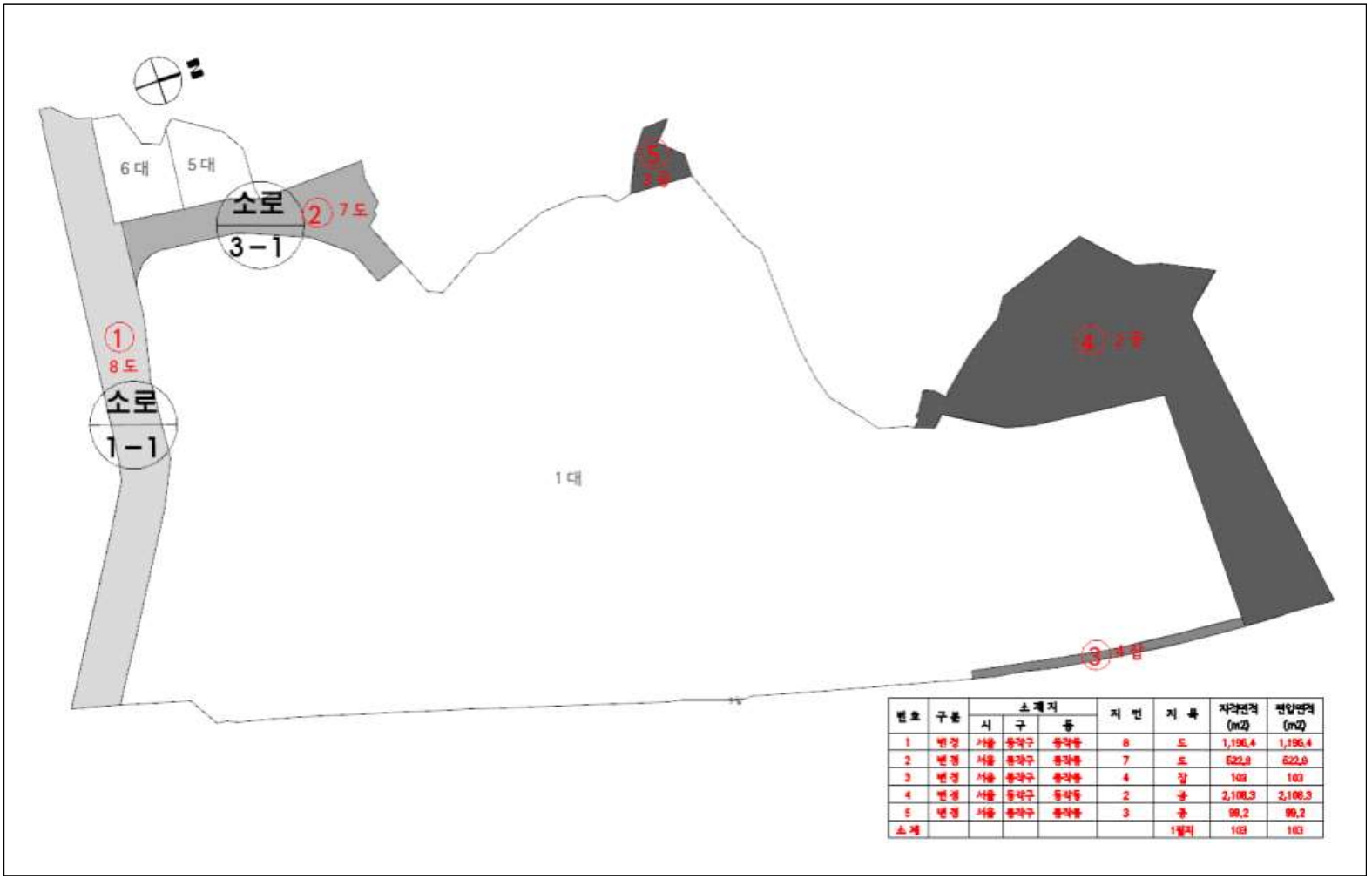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현충근린공원1)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시·구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기정	90-1	대	764	121	서울	천○이 외 11인				
		기정	90-5	대	51	51	서울	라○환				
		기정	90-6	대	29	29	서울	서울메트로				
		기정	90-7	대	99	99	서울	라○환				
		기정	90-9	대	278	237	서울	김○선				
		기정	90-10	대	116	107	서울	이○곤				
		기정	90-12	대	162	123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본동교회 외 1인				
		기정	90-13	대	60	60	파주시	김○향 외 1인				
		기정	90-14	대	76	76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본동교회				
		기정	90-15	대	175	175	서울	최○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신사동지점)	(주)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 설정	
		기정	90-16	대	83	83	서울	하○식				
		기정	90-17	대	99	99	과천시	이○형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신사동지점)	(주)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 설정	
		기정	90-18	대	139	121	서울	안○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신사동지점)	(주)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 설정	
		기정	90-21	대	86	85	서울	최○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신사동지점)	(주)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 설정	
		기정	90-22	대	109	109	서울	형○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신사동지점)	(주)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 설정	
		기정	91-1	대	155	5	서울	배○순				
		기정	27	산	16,860	525		재무부				
		변경	2	공	2,108.3	2,108.3						
계		기정	17필지		19,341	2,105						
		변경	1필지		2,108.3	2,108.3						

도시계획시설 (현충근린공원2)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시·구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기정	99-7	대	76	38	대전	박○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	(주)케이씨씨건설	근저당권설정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신사동지점)	(주)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설정	
		기정	100-8	대	30	12	의왕시	김○신				
		기정	98-1	도	415	27		서울특별시				
		기정	332-3	도	124.4	18.8		동작구				
		변경	3	공	99.2	99.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11인				
계		기정	4필지		645.4	95.8						
		변경	1필지		99.2	99.2						

도시계획시설 (참고도면)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시	구	동				
1	변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8	도	1,196.4	1,196.4
2	변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7	도	522.9	522.9
3	변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4	잡	103	103
4	변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2	공	2,108.3	2,108.3
5	변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3	공	99.2	99.2
소계						1필지	103	103

◈ 동작구고시 제2026-2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하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0호(2002.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2009.4.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3호(2020.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27호(2021.8.5.), 동작구고시 제2022-29호(2022.2.10.), 동작구고시 제2022-89호(2022.5.26.), 동작구고시 제2022-108호(2022.7.07.), 동작구고시 제2024-139호(2024.11.21.), 동작구고시 제2025-82호(2025.6.19.)로 변경 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상도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명 및 주소

기정	장승배기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황병우(서울시 동작구 상도로114) ※ 공동사업주체 : 상록건설(주) 김창환(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9)
변경	장승배기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황병우(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6) ※ 공동사업주체 : 동문건설(주) 이상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25)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지상/지하)	동	세대수					
기정	아파트	29/8	5	301 (공공임대주택 35세대포함)	5,074	53,069.522	40.215	499.527	2030.07
변경	아파트	29/8	5	301 (공공임대주택 35세대포함)	5,074	52,413.490	36.46	499.33	2030.07

4. 사업시행기간 : 2021.09.01. ~ 2030.07.31.

5.「주택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 기타「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

※ 의제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참조

[붙임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74,079.9	서울시고시 1997-14호 (1997.2.14)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74,079.9	100.0	
일반주거지역		23,566.1	31.8	
	제1종일반주거지역	1.0	0.0	도로 및 광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22,514.0	30.4	도로 및 광장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1,051.1	1.4	
준주거지역		38,199.8	51.6	
근린상업지역		12,314.0	16.6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류	-	4~6	국지 도로	35	상도동 363-193	상도동 363-292	일반 도로	-	-	

※ 특별계획구역 외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2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변경	②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5,245.9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5,245.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1.9	3.3	도로
준주거지역	5,074	96.7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류	-	4~6	국지 도로	35	상도동 363-193	상도동 363-292	일반 도로	-	-	

다.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계획

가) 친환경계획 (변경)

■ 환경성검토 총괄표

– 기정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1.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한강의 수질측정망 검토 •동작구 내 수자원보호시설 없음	•공사시 수질저감계획 수립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
2.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적용 생태면적률 30.34%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계획
3.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이용중	•주상복합용지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4.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공사시 토양오염 최소화계획 수립
5.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평탄지이며, 토양포장도 큼	•녹지계획 수립. 지형변화 최소화
6.생태네트 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Ⅱ,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Ⅰ, 외부연결성 Ⅰ	•단지내 조경녹지 확보 · 주변 녹지와 연결성 확보
7.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현재 생태자연도 3등급. 노후된 기존 주거지 입지	•녹지 및 식재계획 수립
8.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전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9.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4,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등급	•녹지공간 확보(단지내 조경녹지)로 도시생태기능 강화
10.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현재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불투수포장지역	•계획지구내 오픈스페이스, 녹지 조성. 외부녹지와의 연결성 확보
11.대기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동작구 측정망 결과 PM-2.5 서울시 환경기준 초과 •공사/운영 시 대기오염 영향	•공사시 비산방진망, 세륜세차 시설, 살수 등 저감방안 수립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12.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공사시 장비,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공사시 장비규제, 운영시 녹지계획 등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13.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건설폐기물 11,507.6톤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지장물 적정 처리 •동작구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
14.소음· 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주변에 공동주택 등 정온시설 위치. 운영시 단지내 소음영향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이동식방음벽 설치. 운영시 주택건설기준 만족하도록 이중창 등 설치
15.경관	Skyline보전	○	•주변으로 다수의 공동주택 위치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록 계획
	조망권 확보	○	•조망점 선정에 따른 경관예측	•경관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입면차폐도 35m 이하	–	•입면차폐도 56.27m	•건물배치 등 입면차폐도 최소화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16.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현재 일조권 수인한도 미확보 지역 일부 위치 함	•일조권 수인한도 미확보 지역 일부 발생. 일조 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축계획 수립
17.인구 및 주거	인구/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노후화된 주거지역 위치	•주상복합용지 조성(공동주택 301세대)

- 변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1.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한강의 수질측정망 검토 •동작구 내 수자원보호시설 없음	•공사시 수질저감계획 수립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
2.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적용 생태면적률 30.2%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계획
3.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이용중	•주상복합용지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
4.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공사시 토양오염 최소화계획 수립
5.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평탄지이며, 토양포장도 큼	•녹지계획 수립. 지형변화 최소화
6.생태네트 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Ⅱ,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Ⅰ, 외부연결성 Ⅰ	•단지내 조경녹지 확보 · 주변 녹지와 연결성 확보
7.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현재 생태자연도 3등급. 노후된 기존 주거지 입지	•녹지 및 식재계획 수립
8.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전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9.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4,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등급	•녹지공간 확보(단지내 조경녹지)로 도시생태 기능 강화
10.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현재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불투수포장지역	•계획지구내 오픈스페이스, 녹지 조성. 외부녹지와의 연결성 확보
11.대기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동작구 측정망 결과 PM-2.5 서울시 환경기준 초과 •공사/운영 시 대기오염 영향	•공사시 비산방진망, 세륜세차 시설, 살수 등 저감방안 수립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12.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공사시 장비,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공사시 장비규제, 운영시 녹지계획 등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13.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건설폐기물 11,507.6톤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지장물 적정 처리 •동작구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
14.소음· 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주변에 공동주택 등 정온시설 위치. 운영시 단지내 소음영향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이동식방음벽 설치. 운영시 주택건설기준 만족하도록 이중창 등 설치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15.경관	Skyline보전	○	•주변으로 다수의 공동주택 위치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록 계획
	조망권 확보	○	•조망점 선정에 따른 경관예측	•경관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입면차폐도 35m 이하	-	•입면차폐도 52.09m	•건물배치 등 입면차폐도 최소화
16.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현재 일조권 수인한도 미확보 지역 일부 위치함	•일조권 수인한도 미확보 지역 일부 발생. 일조 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축계획 수립
17.인구 및 주거	인구/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노후화된 주거지역 위치	•주상복합용지 조성(공동주택 301세대)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사항 - 주거 나군 (변경없음)
■ 친환경 개발 계획 중 녹색건축인증 설계기준 적용사항 (변경없음)
■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우수) 획득을 위한 주요 적용 계획 (변경없음)

나) 방재안전계획 (변경없음)
▪ 재해 취약 지역 해당여부 : 해당없음
▪ 방재안전계획

라.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공공기여 확보 기준
-역세권활성화사업 공공기여

용도지역		공공기여율
변경 전	변경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6.2% 이상
준주거지역		

※ 공공기여율은 부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되 증가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 사유지(제3종일반주거지역)와 근린공원(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동일면적 토지교환 후 용도지역도 교환된 것으로 전제하여 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임대주택 추가확보 용적률 완화

•추가 확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 50%(증가용적률의 1/2해당 용적률), 연면적 2,537.0㎡ 이상
-부지면적 5,074㎡ X 50% = 연면적 2,537.0㎡

▌공공기여 계획

– 기정

구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0%	400%	부지면적의 16.2% 이상	문화체육시설	16.39%	831.60㎡	262.14㎡	569.46㎡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400% → 500%	증가용적률의 1/2해당 용적률 50%이상	공공임대 주택	9.38%	475.94㎡	475.94㎡	–	

※ 기준(허용)용적률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적용
※ 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 후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400% 적용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2항(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에 따른 500% 적용
※ 공공임대주택은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로 매입하며, 그 외 공공기여시설(기반시설 포함)은 토지, 건물 모두 기부채납(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
※ 공공기여 규모 산정은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공공기여총량 변경을 고려 산출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감정가액 결정과 반영범위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
※ 시설 기부채납은 추후 사업계획승인(변경) 등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전체 연면적 조정, 설치비용 등)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

구분	총공공기여 면적	부지제공 면적	환산부지 면적	비율	지상연면적	지하연면적	연면적 계	비고
합계	1,307.54㎡	738.08㎡	569.46㎡	25.77%	2,912.52㎡	4,807.14㎡	7,719.65㎡	
문화체육시설	831.60㎡	262.14㎡	569.46㎡	16.39%	373.01㎡	2,368.75㎡	2,741.76㎡	지상1층, 지하1층
공공임대주택	475.94㎡	475.94㎡	–	9.38%	2,539.51㎡	2,438.39㎡	4,977.89㎡	35세대

– 변경

구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0%	400%	부지면적의 16.2% 이상	문화체육시설	16.63%	843.78㎡	268.25㎡	575.53㎡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400% → 500%	증가용적률의 1/2해당 용적률 50%이상	공공임대주택	9.53%	483.36㎡	483.36㎡	–	

※ 기준(허용)용적률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적용
※ 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 후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400% 적용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2항(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에 따른 500% 적용
※ 공공임대주택은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로 매입하며, 그 외 공공기여시설(기반시설 포함)은 토지, 건물 모두 기부채납(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
※ 공공기여 규모 산정은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공공기여총량 변경을 고려 산출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감정가액 결정과 반영범위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
※ 시설 기부채납은 추후 사업계획승인(변경) 등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전체 연면적 조정, 설치비용 등)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

구분	총공공기여 면적	부지제공 면적	환산부지 면적	비율	지상연면적	지하연면적	연면적 계	비고
합계	1,327.14㎡	751.61㎡	575.53㎡	26.16%	2,993.42㎡	4,770.55㎡	7,763.98㎡	
문화체육시설	843.78㎡	268.25㎡	575.53㎡	16.63%	391.88㎡	2,379.07㎡	2,770.95㎡	지상1층, 지하1층
공공임대주택	483.36㎡	483.36㎡	–	9.53%	2,601.54㎡	2,391.49㎡	4,993.02㎡	35세대

▌공공기여 확보 기준 변경 사유서

변경사항	결정(변경)사유
•공공기여 면적 및 비율 변경 – 1,307.54㎡ → 1,327.14㎡ (증 19.60㎡) – 25.77% → 26.16% (증 0.39%)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의한 면적 변경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	5,245.9	•상도동 363-116, 363-180	156.1	획지면적 5,074㎡	특별계획구역 5,245.9㎡ 중 토지로 제공되는 기반시설 (도로 171.9㎡) 제외 면적임
			•상도동 363-273	240.0		
			•상도동 363	86.0		
			•상도동 363-143	235.0		
			•상도동 363-94	222.0		
			•상도동 363-5	387.0		
			•상도동 363-10	328.0		
			•상도동 363-268	120.0		
			•상도동 363-135	310.0		
			•상도동 363-117, 363-235	479.0		
			•상도동 363-92, 363-152, 363-231	183.0		
			•상도동 363-9	152.0		
			•상도동 363-125	152.0		
			•상도동 364-1	299.0		
			•상도동 363-168, 363-169	193.0		
			•상도동 363-243	676.0		
			•상도동 363-292, 363-30, 363-62, 363-63	268.9		
			•상도동 363-221	315.0		
			•상도동 900-5	272.0		

나.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지 침	세 부 개 발 계 획
-	동작구 상도동 363-117 번지 일대	지정용도 주1) (①)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좌동
		불허용도 (b)	전층	•제2호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좌동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지 침	세 부 개 발 계 획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제28호 장례식장	
			1층	•제2호 공동주택	•좌동

주1) 지정용도는 지상1층 및 지하1층 바닥면적 합계의 50% 이상 확보(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분 및 공공기여시설 면적 제외)

다.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지 침	세 부 개 발 계 획
-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건폐율		•60% 이하	•좌동
		용적률	기준(허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준주거지역 360% 이하	•좌동
			상한	•500% 이하	•좌동
		높이		•최고층수 34층 이하 •100m이하	•좌동

라.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공공기여	비율	•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주1) -제3종일반주거지역 25% 이상, 준주거지역 10% 이상	•지역필요시설(문화체육시설) 16.39%주2)	총 25.77%
	시설 종류	•공공임대주택/상가/오피스, 지역필요시설(생활서비스시설, 문화시설 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적용기준'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용적률 : 50% (증가하는 용적률의 ½에 해당하는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9.38% 용적률 50.05% 확보 (지상 연면적 2,539.51㎡)	
비주거 용도 비율		•용적률 10% 이상 (준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제외)	•용적률 10.67%	
주택건설기준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 46㎡, 49㎡, 53㎡, 59㎡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주3)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친환경 건축물(에너지 성능부문, 에너지 관리부문)	
주민공동시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따라 세대당 2.5㎡ X 1.25	•301세대X2.5㎡/세대X1.25 =940.6㎡ •주민공동시설 1,226.9㎡계획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휘트니스센터, 입주자회의실, 작은도서관 등	

주1) 사유지(제3종일반주거지역)와 근린공원(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동일면적 토지교환 후 용도지역도 교환된 것으로 전제하여 산정
주2) 시설 기부채납은 추후 사업계획승인(변경) 등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전체 연면적 조정, 설치비용 등)
주3)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에서 규정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공공기여	비율	•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주1) –제3종일반주거지역 25% 이상, 준주거지역 10% 이상	• 지 역 필 요 시 설 (문 화 체 육 시 설) 16.63%주2)	총 26.16%
	시설 종류	•공공임대주택/상가/오피스, 지역필요시설(생활서비스시설, 문화시설 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적용기준'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용적률 : 50% (증가하는 용적률의 ½에 해당하는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9.53% 용적률 50.01% 확보 (지상 연면적 2,537.26㎡)	
비주거 용도 비율		•용적률 10% 이상 (준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제외)	•용적률 10.58%	
주택건설기준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 46㎡, 51㎡, 53㎡, 59㎡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주3)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친환경 건축물(에너지 성능부문, 에너지 관리부문)	
주민공동시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따라 세대당 2.5㎡ X 1.25	•301세대X2.5㎡/세대X1.25 =940.6㎡ •주민공동시설 1,301.9㎡계획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휘트니스센터, 입주자회의실, 작은도서관 등	

주1) 사유지(제3종일반주거지역)와 근린공원(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동일면적 토지교환 후 용도지역도 교환된 것으로 전제하여 산정
주2) 시설 기부채납은 추후 사업계획승인(변경) 등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전체 연면적 조정, 설치비용 등)
주3)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에서 규정

마.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건축선	건축한계선	•등용로변 3m, 그 외 도로변 1~1.5m -그 외 도로변 중 상도로15길은 반대편 경계에서 10m 이격하여 확보	•좌동
		대지 안의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내 전면공지 조성 -등용로변 : 보도부속형(3m) -상도로15길변 : 보도부속형(1~1.5m) -신설도로변 : 보도부속형(1~1.5m)	•좌동
		건축물 형태 및 색채	건축물 입면	•통일적 요소와 특징적 요소로 구분하여 디자인 -건축물 외벽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소재 추구 -주요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도로로부터 전면으로 인식되도록 계획 -저층부(2층 이하), 중층부(저층부와 상층부를 제외한 구간), 상층부(최상층 2개 이내)로 분절하여 디자인 -저층부 입면은 수직분절요소, 개방형 벽면 등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 유도	•좌동
			건축물 저층부 (2층 이하)	•주요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2층 이하)는 다채로운 파사드 조성을 위하여 윈도우존, 차양존, 사인존으로 분할되는 수평분할요소 적용 -윈도우존 : 출입문 및 투시형 벽면(벽면적 50% 이상) 설치 -차양존 : 어닝 등 차양시설 설치 -사인존 : 옥외광고물 설치	•좌동
			차양막	•설치시 저층부에 한해 설치. 동일층에서는 같은 형태 및 높이, 동일 건축물 내 같은 색채로 하고 너비는 단위 창문폭 미만으로 설치	•좌동
		옥외광고물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채 및 소재 사용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의 업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폭은 해당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제한	•좌동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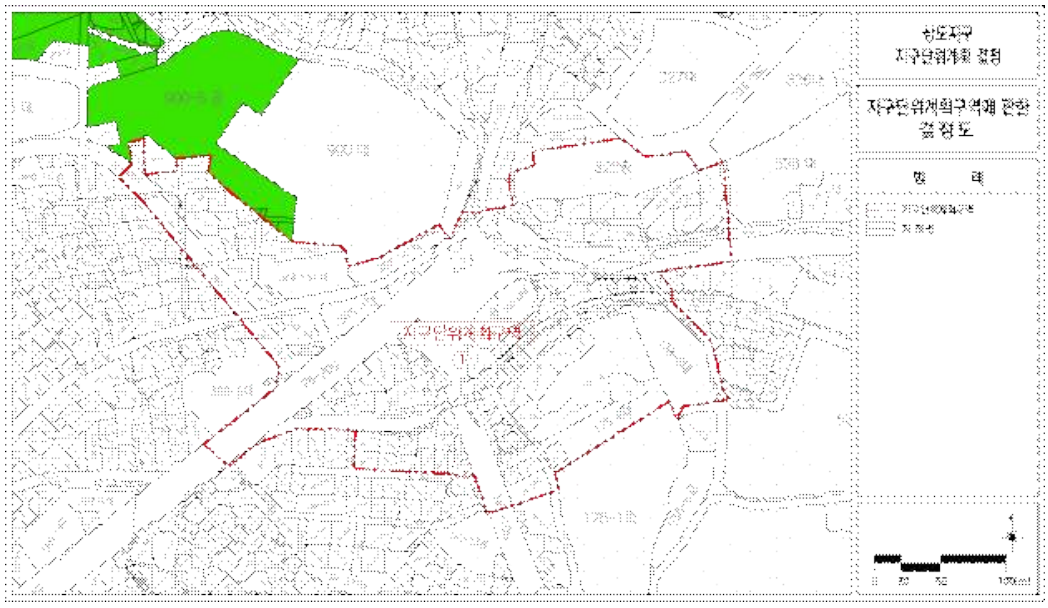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지 침	세 부 개 발 계 획
-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	•등용로 및 상도로15길변 일부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결정도 참조)	•좌동
		공공보행통로	•등용로~노량진근린공원간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2개소, 폭원 3m 이상	•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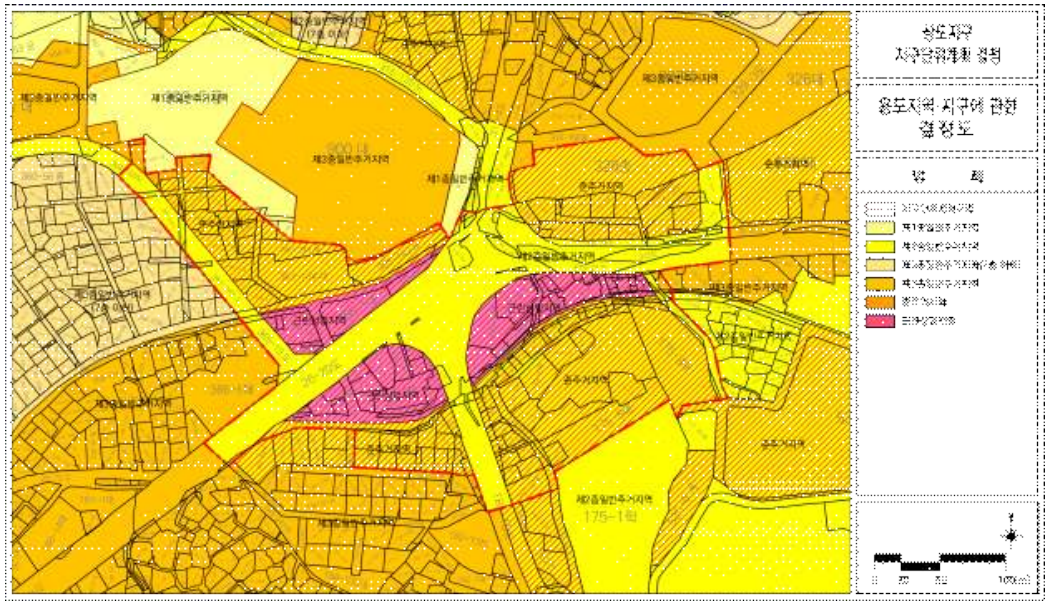
주1)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방향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위치 및 선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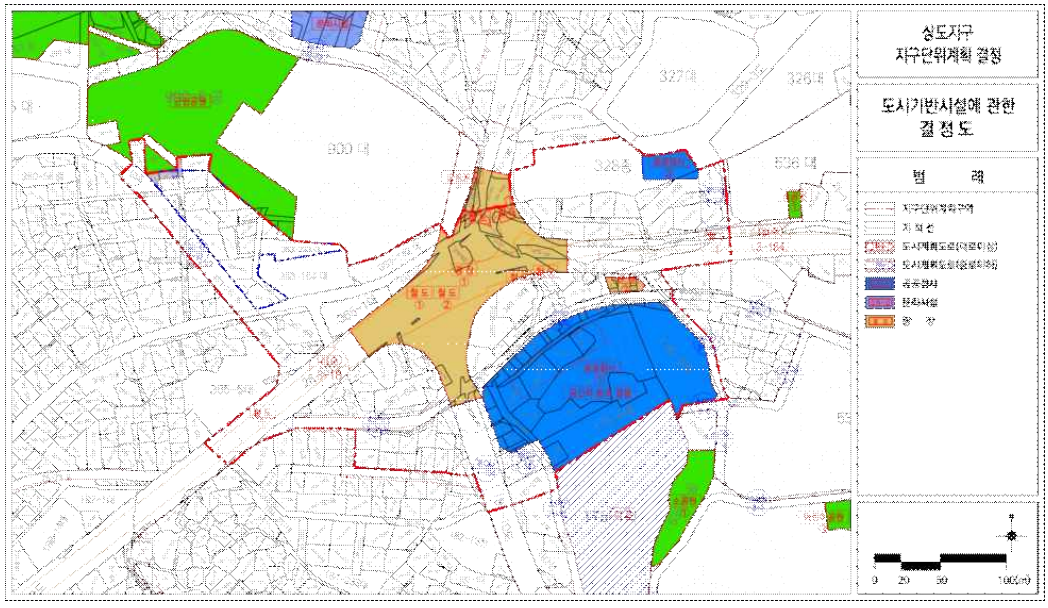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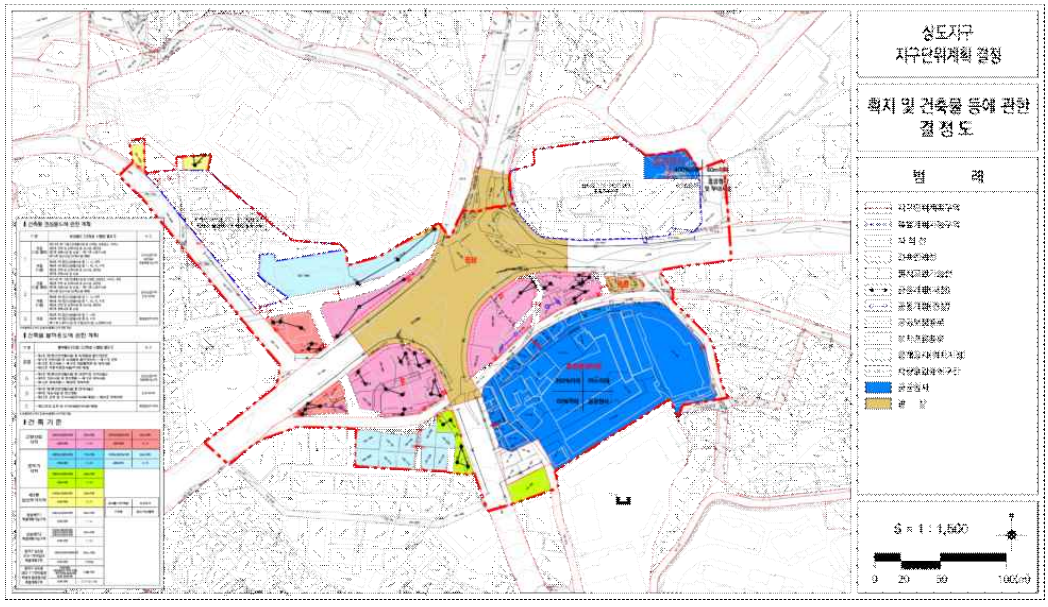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송파구고시 제2026-20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1978.2.1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제132호(2019.11.28.), 송파구고시 제47호(2021.3.11.), 송파구고시 제61호(2025.6.5.)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하여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 388-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 명칭: 서울아산병원 증축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138,845.3㎡ (변경없음)
- 건축면적: 61,802.33㎡ → 60,549.89㎡ (감 1,252.44㎡)
- 연 면 적: 648,894.73㎡ → 604,655.69㎡ (감 44,239.04㎡)
- 지상층연면적: 346,978.1㎡ → 343,207.12㎡ (감 3,770.98㎡)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정몽준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 388-1번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28. 1. 31. → 인가일 ~ 2031.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송파구 풍납동 388-1	대	138,845.3	138,845.3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아.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강동구고시 제2026-18호

염주골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2차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82호(1972.1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강동구 명일동 326-10 염주골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염주골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2차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의 접근성 확보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 동선을 조정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26-10
다. 면 적 : 991.3㎡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붙임파일 참조
마. 열람장소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882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염주골 어린이공원) 조성계획(2차 변경)결정 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동구 명일동 326-10 일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991.3	532.0	-	-	-	26	991.3	552.0	-	-	-	25	
기반시설	소계	179.0	179.0	-	-	-	-	190.0	190.0	-	-	-	-	
	도로	-	-	-	-	-	-	-	-	-	-	-	-	
	광장	179.0	179.0	-	-	-	-	190.0	190.0	-	-	-	-	
조경시설		-	-	-	-	-	1	-	-	-	-	-	1	
유희시설		289.0	289.0	-	-	-	7	302.0	302.0	-	-	-	7	
휴양시설		11.0	11.0	-	-	-	10	7.0	7.0	-	-	-	9	
교양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53.0	53.0	-	-	-	4	53.0	53.0	-	-	-	4	
편익시설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4	-	-	-	-	-	4	
녹지 및 기타		459.3	-	-	-	-	-	439.3	-	-	-	-	-	
시설율 (법정 60%)		(532.0 / 991.3) × 100 = 53.7%						(552.0 / 991.3) × 100 = 55.7%						
건폐율 (법정 5%)		-						-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91.3	532.0	-	-	-	-	26			991.3	552.0	-	-	-	-	25	
기반시설	소 계			179.0	179.0	-	-	-	-	-			190.0	190.0	-	-	-	-	-	증)11.0㎡
	진입광장1	가-1		26.0	26.0	-	-	-	-	-	가-1		26.0	26.0	-	-	-	-	-	
	진입광장2	가-2		25.0	25.0	-	-	-	-	-	가-2		25.0	25.0	-	-	-	-	-	
	진입광장3	가-3		128.0	128.0	-	-	-	-	-	가-3		139.0	139.0	-	-	-	-	-	증)11.0㎡
조경시설	소 계	-	-	-	-	-	-	-	-	-	-	-	-	-	-	-	-	-	1	-
	음수대	①		-	-	-	-	-	-	1	①		-	-	-	-	-	-	1	-
휴양시설	소 계			11.0	11.0	-	-	-	-	10			7.0	7.0	-	-	-	-	9	감)3.0㎡
	등의자	②								3	②								3	
	평의자	③								3	③								3	
	앉음벽	④		11.0	11.0	-	-	-	-	4	④		7.0	7.0	-	-	-	-	3	감)3.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소 계			289.0	289.0	-	-	-	-	7			302.0	302.0	-	-	-	-	7	증)13.0㎡
	어린이놀이터	나		289.0	289.0	-	-	-	-	-	나		302.0	302.0	-	-	-	-	-	증)13.0㎡
	조합놀이대	⑤		-	-	-	-	-	-	1	⑤		-	-	-	-	-	-	1	
	그네	⑥		-	-	-	-	-	-	1	⑥		-	-	-	-	-	-	1	
	미운당미끄럼틀	⑦		-	-	-	-	-	-	1	⑦		-	-	-	-	-	-	1	
	시소	⑧		-	-	-	-	-	-	1	⑧		-	-	-	-	-	-	1	
	흔들말	⑨		-	-	-	-	-	-	2	⑨		-	-	-	-	-	-	2	
	네트오르기	⑩								1	⑩								1	
교양시설				-	-	-	-	-	-	-			-	-	-	-	-	-	-	
운동시설	소 계			53.0	53.0	-	-	-	-	4			53.0	53.0	-	-	-	-	4	
	체력단련장	다		53.0	53.0	-	-	-	-	-	다		53.0	53.0	-	-	-	-	-	
	운동시설물	⑪		-	-	-	-	-	-	4	⑪		-	-	-	-	-	-	4	
편익시설				-	-	-	-	-	-	-			-	-	-	-	-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 계			-	-	-	-	-	-	4			-	-	-	-	-	-	4	
	공원안내판	⑫		-	-	-	-	-	-	1	⑫		-	-	-	-	-	-	1	
	금연안내판	⑬		-	-	-	-	-	-	1	⑬		-	-	-	-	-	-	1	
	공원이용안내판	⑭		-	-	-	-	-	-	1	⑭		-	-	-	-	-	-	1	
	어린이보호휀스	⑮		-	-	-	-	-	-	1	⑮		-	-	-	-	-	-	1	
녹지및기타	소 계			459.3	-	-	-	-	-	-			439.3	-	-	-	-	-	-	감)20.0㎡
	녹지및기타			459.3	-	-	-	-	-	-			439.3	-	-	-	-	-	-	감)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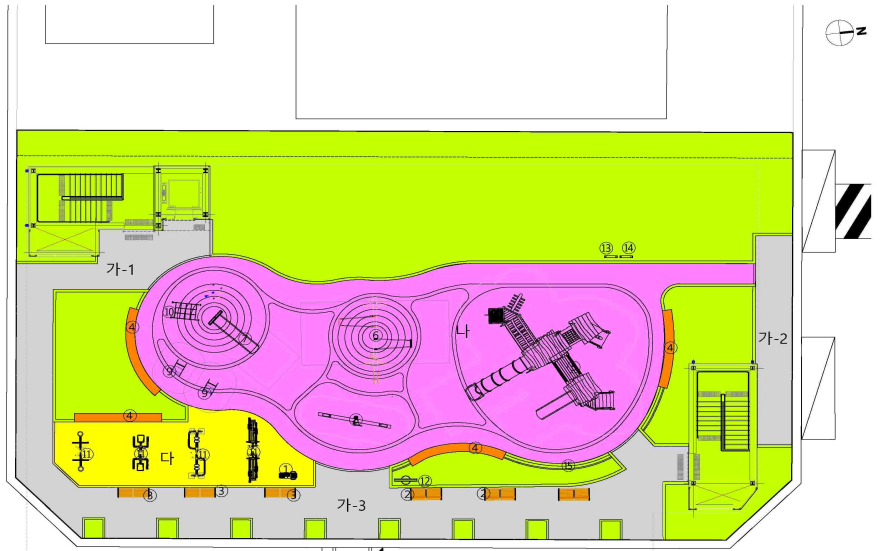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	-	-	-	-	
변경					-	-	-	-	-	
당초	소로	소 계			-	-	-	-	-	
변경					-	-	-	-	-	
당초		-	-	-	-	-	-	-	-	
변경		-	-	-	-	-	-	-	-	

조성계획도(당초)

염주골 어린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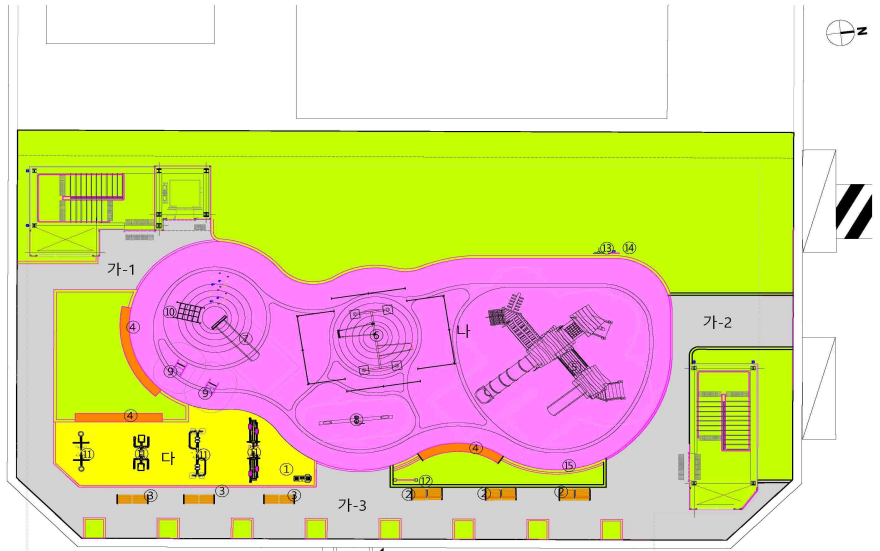


■ 시설물 총괄표

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면적(m2) 바닥면적	건축물면적(m2) 연면적	개소/본	비고
총 계			991.3	532.0	-	-	26	시설율 53.7%
시설면적 계			532.0	532.0	-	-	26	
도로 및 광장	소 계		179.0	179.0	-	-	-	
	가-1	진입광장	26.0	26.0	-	-	-	
	가-2		25.0	25.0	-	-	-	
	가-3		128.0	128.0	-	-	-	
조경시설	소 계		-	-	-	-	1	
	①	음수대	-	-	-	-	1	
휴양시설	소 계		11.0	11.0	*	-	22	
	②	등의자	-	-	-	-	3	
	③	맹의자	-	-	-	-	3	
	④	앙음벽	11.0	11.0	-	-	4	
유희시설	소 계		289.0	289.0	-	-	7	
	나	어린이놀이터	289.0	289.0	-	-	-	
	⑤	조합놀이대	-	-	-	-	1	
	⑥	그네	-	-	-	-	1	
	⑦	마운딩미끄럼틀	-	-	-	-	1	
	⑧	시소	-	-	-	-	1	
	⑨	혼합말	-	-	-	-	2	
	⑩	네트오르기	-	-	-	-	1	
운동시설	소 계		53.0	53.0	-	-	4	
	다	체력단련장	53.0	53.0	-	-	-	
	⑪	운동시설물	-	-	-	-	4	
관리시설	소 계		-	-	-	-	4	
	⑫	공원안내판	-	-	-	-	1	
	⑬	금연안내판	-	-	-	-	1	
	⑭	공원이용안내판	-	-	-	-	1	
	⑮	어린이보호휀스	-	-	-	-	1	
녹지 및 기타	녹지면적 계		459.3	-	-	-	-	
		녹 지	459.3	-	-	-	-	

조성계획도(변경)

염주골 어린이공원



■ 시설물 총괄표

구 분	기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면적(m2) 바닥면적	건축물면적(m2) 연면적	주차	비고
총 계			991.3	552.0	-	-	25	시설률 55.7%
시설면적 계			552.0	552.0	-	-	25	
도로 및 광장	소 계		190.0	190.0	-	-	-	
	가-1	진입광장	26.0	26.0	-	-	-	
	가-2		25.0	25.0	-	-	-	
	가-3		139.0	139.0	-	-	-	
조경시설	소 계		-	-	-	-	1	
	①	음수대	-	-	-	-	1	
휴양시설	소 계		7.0	7.0	*	-	9	
	②	등의자	-	-	-	-	3	
	③	맹의자	-	-	-	-	3	
	④	앉음벽	7.0	7.0	-	-	3	
유희시설	소 계		302.0	302.0	-	-	7	
	나	어린이놀이터	302.0	302.0	-	-	-	
	⑤	조합놀이대	-	-	-	-	1	
	⑥	그네	-	-	-	-	1	
	⑦	마운딩미끄럼틀	-	-	-	-	1	
	⑧	시소	-	-	-	-	1	
	⑨	흔들말	-	-	-	-	2	
	⑩	네트오르기	-	-	-	-	1	
운동시설	소 계		53.0	53.0	-	-	4	
	다	체력단련장	53.0	53.0	-	-	-	
	⑪	운동시설물	-	-	-	-	4	
관리시설	소 계		-	-	-	-	4	
	⑫	공원안내판	-	-	-	-	1	
	⑬	금연안내판	-	-	-	-	1	
	⑭	공원이용안내판	-	-	-	-	1	
	⑮	어린이보호펜스	-	-	-	-	1	
녹 지 및 기 타	녹지면적 계		439.3	-	-	-	-	
		녹 지	439.3	-	-	-	-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6-8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27호(1994.1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95호(2025.11.2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기부채납 대상 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동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7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기부채납 공원 조성사업
  3) 사업내용: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2,82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이노디앤씨(대표자 황세훈)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2층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 ~ 2030. 4.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붙임참조
사.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4층 공원녹지과(☎02-3396-5852)
아. 열람기간: 2026. 1. 22. ~ 2. 4.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기부채납 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71 일대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구	동					성명	주소	지분	
1	서울시 중구	중림동	149-57	도	8,259.9	1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
2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2	대	30.7	30.7	국(기획재정부)			-
3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5	대	90.6	75.5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4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30	대	66.1	26.6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32	대	19.8	17.4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6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33	대	43.0	31.2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7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43	대	72.7	37.6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8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44	대	52.9	52.6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9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45	대	36.4	36.4	윤*득	서울특별시 중구 ***로*길 **-*		-
10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46	대	33.1	33.1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11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47	대	16.5	12.9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12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48	대	39.7	39.7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13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49	대	49.6	49.6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14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50	대	39.7	39.7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1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51	대	33.1	29.7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16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52	대	49.6	5.2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17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57	대	33.1	3.1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18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69	대	185.5	97.2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19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70	대	98.4	81.2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20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71	대	105.8	105.8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21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72	대	114.3	84.6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22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73	대	60.4	36.4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23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74	대	346.1	305.2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구	동					성명	주소	지분	
24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79	대	64.8	64.8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80	대	105.8	105.8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26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81	대	90.9	90.9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27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82	대	113.1	107.3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28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83	대	61.5	61.5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29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84	대	49.3	49.3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30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85	대	53.9	53.9	황*란	서울특별시 중구 **동 ***, ***호	1/2	-
							황*진	서울특별시 중구 **동 ***, ***호	1/2	
31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97	대	42.0	42.0	김*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읍 **길 **-*		-
32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131	대	33.1	22.7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33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137	대	9.9	9.9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34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170	대	11.5	3.8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
3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6-177	대	63.8	63.8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36	서울시 중구	중림동	171	대	181.8	6.5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37	서울시 중구	중림동	172	대	122.3	2.8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38	서울시 중구	중림동	179	대	93.2	55.7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39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0	대	159.7	158.8	박*덕	서울특별시 중구 **로 *-*	3/10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7/10	
40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0-3	대	2.3	2.3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41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1	대	495.9	454.5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42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1-1	대	61.5	56.7	국(기획재정부)			-
43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2	대	15.5	14.5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44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3-1	대	79.3	77.5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4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4-1	대	27.1	25.0	박*덕	서울특별시 중구 **로 *-*	4.956/27.1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44.288/54.2	
46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5-1	대	5.0	4.2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47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6-1	대	43.0	42.3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구	동					성명	주소	지분	
48	서울시 중구	중림동	187-1	대	98.5	6.4	장*옥	서울특별시 중구 **동 ***	1/5	-
							장*수	서울특별시 중구 **로 *-*	1/5	
							장*은	경기도 광명시 ***로**번길 **	15/60	
							장*열	경기도 수원시 **구 **로 **, ***동 ****호	15/60	
							장*수	서울특별시 중구 **로 *-*	3/60	
							장*옥	서울특별시 중구 **로 *-*	3/60	
합계					11,961.7	2,828				

□ 사업 위치도



□ 공원조성계획도



◈ 성동구공고 제2026-9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 대상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성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 대상지 열람공고
2. 대 상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36-9 등 2개소(붙임1,2)
3. 지정사유: 안전관리 및 대피체계 등의 비구조물적 대책이 필요한 지역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
4. 공고기간: 2026.1.22. ~ 2026.2.23.
5. 이의신청기간: 2026년 2월 23일까지
6. 지정예정일자: 2026년 2월 25일
7.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1과 같음
8. 지정대상지 구역도면 : 붙임2와 같음
9.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3과 같음
10. 의견제출: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붙임4)를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과조치: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 경우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12.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02-2286-5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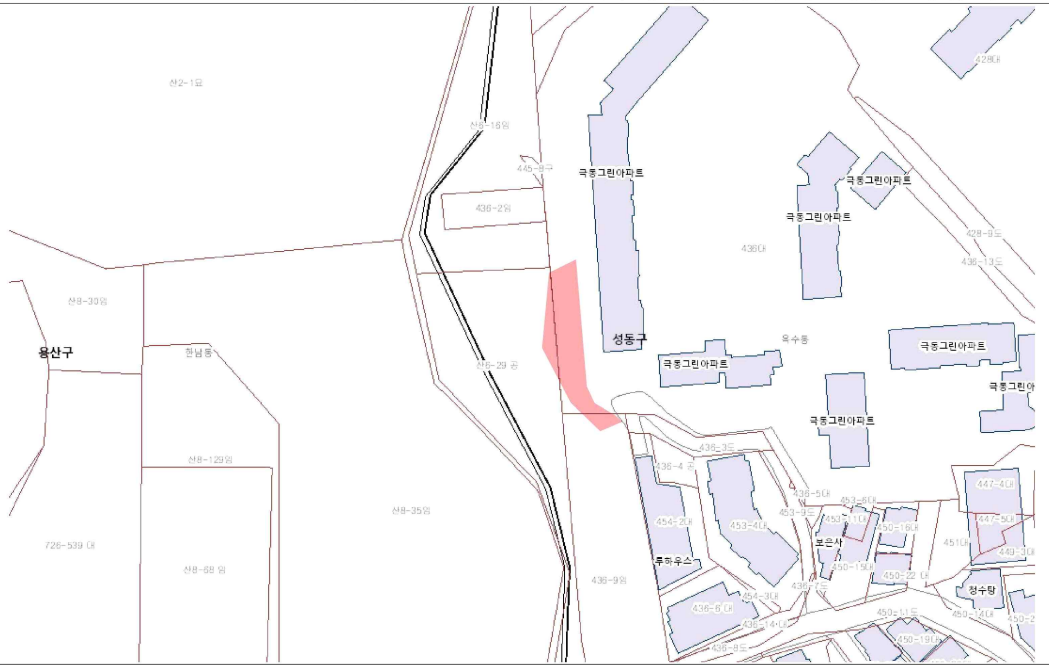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소유자	
							성명	주소
합계	총 2건, 5필지		60,059.8	652.26				
계	3필지		32,935.2	496.94	산사태	대피체계 구축		
제 2026-1호	옥수동 436-9	임야	7,881.1	41.47			구유지 (성동구)	-
	옥수동 산6-29	공원	6,039	83.32			시유지 (서울시)	-
	옥수동 436	대지	19015.1	372.15			사유지	극동그린아파트 제101동~제105동, 상가동
계	2필지		27,124.6	155.32	산사태	산지사방		
제 2026-2호	옥수동 436-1	공원	5,277.6	22.22			시유지 (서울시)	-
	옥수동 산5-164	공원	21,847	133.1			시유지 (서울시)	-

[붙임 2]

번호: 성동구 제2026-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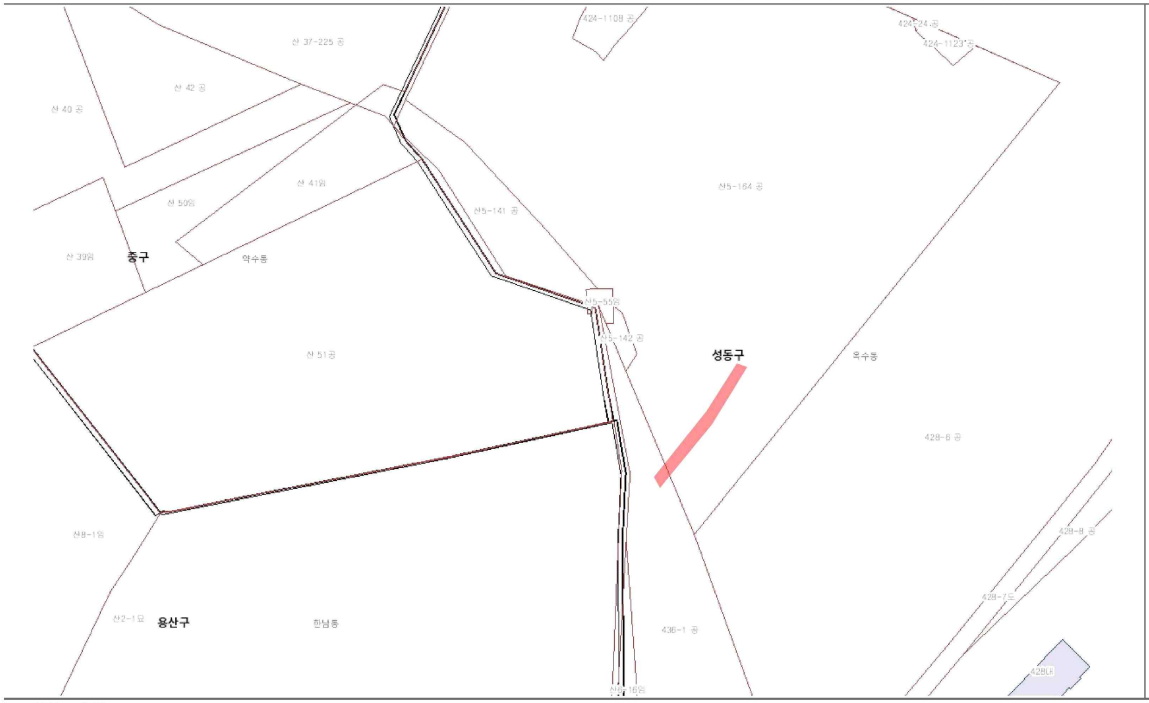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36-9	임야	7,881.1	41.4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산6-29	공원	6,039	83.3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36	대	19,015.1	372.15	
계			32,935.2	496.94	

400㎜×500㎜[백상지 80g/㎡(재활용품)]

번호: 성동구 제2026-2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도면



: 산사태취약지역

축척 → 1/1,100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36-1	공원	5,277.6	22.2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산5-164	공원	21,847	133.1	
계			27,124.6	155.32	

400㎜×500㎜[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ㆍ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ㆍ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 금지하거나 보수ㆍ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14., 2014. 6. 3., 2016. 12. 27., 2019. 1. 8.>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붙임 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
이의신청 면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심 의	→ 결정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광진구공고 제2026-104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호(2015.5.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53호(2017.7.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2호(2017.9.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202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0호(2021.11.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1호(2022.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41호(2022.12.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82호(2024.6.7.)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45호로 주민 공람·공고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025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3. 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공람 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2일
광 진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6. 01. 22. ~ 2026. 02. 05.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88)
다. 공람내용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24.6	-	385,324.6	•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 2033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85,324.6	-	385,324.6	100.0	
개발용지	소 계	244,015.6	증)2,970.0	246,985.6	64.1	-
	첨단업무복합	73,049.1 [5,684.0]	-	73,049.1 [5,684.0]	19.0	광진구 통합청사(복합화)
	첨단업무지원	38,591.0	감)38,591.0	-	-	-
	상업업무복합	94,995.0	-	94,995.0	24.7	-
	주 거 복 합	37,380.5	증)41,561.0	78,941.5	20.4	-
공공용지	소 계	141,309.0	감)2,970.0	138,339.0	35.9	-
	도 로	107,334.8	-	107,334.8	27.9	-
	주 차 장	1,037.0 (2,820)	- (감 2,820)	1,037.0	0.3	-
	공 원	13,435.7	감)2,820.0	10,615.7	2.8	-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광 장	1,897.1	-	1,897.1	0.5	-
	공공공지	1,293.4	감)750.0	543.4	0.1	-
	입체공공시설	1,900.0 (5,900.0)	감)1,900.0 (감 5,900.0)	-	-	-
	공공문화복합	14,411.0	-	14,411.0	3.7	舊 광진구청사 이전적지
	공공지원시설	-	증)2,500.0 (증 10,400.0)	2,500.0 (10,400.0)	0.6	의료시설 (어린이병원)

※ [ ]는 용지 내 공공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 )는 건축물 연면적임 (중복결정 포함)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구 분	현황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27	증) 1,699	6,026	11,422	증) 4,503	15,925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	2,664	증) 925	3,589	7,032	증) 2,452	9,484	
	60㎡ 이하	1,153	증) 392	1,545	3,044	증) 1,039	4,083	
	85㎡ 이하	1,160	증) 347	1,507	3,062	증) 920	3,982	
	85㎡ 초과	351	증) 186	537	926	증) 493	1,419	
존치 정비구역	소계	-	-	-	-	-	-	세대당 2.65인 적용
	60㎡ 이하	-	-	-	-	-	-	
	85㎡ 이하	-	-	-	-	-	-	
	85㎡ 초과	-	-	-	-	-	-	
존치 관리구역	-	1,663	증) 774	2,437	4,390	증) 2,051	6,441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1,309.0	감) 2,970.0	138,339.0	35.9	-
교통시설	소 계	108,371.8 (2,820.0)	- (감 2,820.0)	108,371.8	28.1	-
	도 로	107,334.8	-	107,334.8	27.8	-
	주차장	1,037.0	-	1,037.0	0.3	-
	(공원지하주차장)	(2,820.0)	(감 2,820.0)	-	-	-
	(철 도)	(4,495.0)	-	(4,495.0)	(1.2)	-
공간시설	소 계	16,626.2	감) 3,570.0	13,056.2	3.4	-
	공 원	13,435.7	감) 2,820.0	10,615.7	2.8	-
	광 장	1,897.1	-	1,897.1	0.5	-
	공공공지	1,293.4	감) 750.0	543.4	0.1	-
공공문화·체육시설	소 계	16,311.0 (5,684.0)	감) 1,900.0 -	14,411.0 (5,684.0)	3.7	-
	입체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1,900.0	감) 1,900	-	-	-
	입체적 공공시설	(5,684.0)	-	(5,684.0)	-	現 광진구청
	공공청사	14,411.0	-	14,411.0	3.7	舊 광진구청사 이전적지
공공시설	공공지원시설 (의료시설)	-	증) 2,500.0	2,500.0	0.6	어린이병원

※( )면적은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지하철 중복결정 및 입체적 결정, 공공청사(광진구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이며, [ ]면적은 계획시설의 연면적임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

구 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0	감)2	8	16,626.2	감)3,570.0	13,056.2	-
공원	소계	5	감)1	4	13,435.7	감)2,820.0	10,615.7	-
	소공원	2	-	2	1,117.0	-	1,117.0	-
	주제공원	3	감)1	2	12,318.7	감)2,820.0	9,498.7	-
광장		2	-	2	1,897.1	-	1,897.1	-
공공공지		3	감)1	2	1,293.4	감)750.0	543.4	-

5) 교통계획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공람도서(Ⅰ. 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공람도서(Ⅰ. 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구명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 수법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	기정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78,119.1	-	78,119.1	전면개발	-
	기정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대	10,816.4	-	10,816.4	전면개발	-
	기정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대	9,871.6	-	9,871.6	전면개발	-
	변경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7번지 일대	55,151.0	감)29,133.8	26,017.2	전면개발	-

○ 구역별 계획 (기정)

□구역명	위 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최고높이 (m)	주용도	사업방식
				기준	최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78,119.0	60이하	173	493.6	150	업무, 주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대	10,812.2	60이하	321	500 (444)	100	주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7번지 일대	55,151.0	60이하	164	399	100	업무, 주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대	9,871.6	60이하	250	400	100	주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미적용 시 최대용적률

○ 구역별 계획 (변경)

□구역명	위 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최고높이 (m)	주용도	사업방식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7번지 일대	26,017.2	60이하	168.5	255.0	380.5	500.0	150	주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용적률체계 일원화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외 타 구역은 변경사항 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			사업방식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85,324.6	-	385,324.6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	169,219.9	감)29,133.8	140,086.1	-	-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78,119.1	-	78,119.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7번지 일대	15,266.0	-	15,266.0	도시계획시설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대	10,812.2	-	10,812.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7번지 일대	55,151.0	감)29,133.8	26,017.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대	9,871.6	-	9,871.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존치관리구역	소 계	-	151,091.0	증)30,338.8	181,429.8	-	-
	자양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69-10번지 일대	1,133.0	-	1,133.0	지구단위 계획	-
	자양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11번지 일대	1,805.0	-	1,805.0		-
	자양3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5번지 일대	9,506.0	-	9,506.0		-
	자양4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35번지 일대	5,823.0	-	5,823.0		-
	자양5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번지 일대	1,098.0	-	1,098.0		-
	자양6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6-4번지 일대	2,024.0	-	2,024.0		-
	자양7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7-3번지 일대	6,100.0	-	6,100.0		-
	자양8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8번지 일대	3,491.0	-	3,491.0		-
	자양9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47,824.7	감)1,453.8	46,370.9		변경
	자양10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8번지 일대	2,649.0	-	2,649.0		-
	자양1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6-11번지 일대	7,821.9	-	7,821.9		-
	자양1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88번지 일대	7,331.4	-	7,331.4		-
	자양13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	증)31,792.6	31,792.6		신규
	구의1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4번지 일대	7,718.0	-	7,718.0		-

구 분		위 치	면 적 (㎡)			사업방식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85,324.6	-	385,324.6		
	구의2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6번지 일대	7,593.0	-	7,593.0		-
	구의3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14번지 일대	10,611.0	-	10,611.0		-
	구의4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36번지 일대	8,379.0	-	8,379.0		-
	구의5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3-4번지 일대	17,706.0	-	17,706.0		-
	구의6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15번지 일대	2,068.0	-	2,068.0		-
	구의7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6번지 일대	409.0	-	409.0		-
기타 존치구역(도로)		-	65,013.7	감)1,205.0	63,808.7	-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385,324.6	-	385,324.6	100.0
주거지역	소 계	314,101.6	-	314,101.6	81.5
	제1종일반주거지역	50,284.0	-	50,284.0	13.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953.0	-	2,953.0	0.8
	제2종일반주거지역	7,230.0	-	7,230.0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53,359.2	-	53,359.2	13.8
	준 주 거 지 역	200,275.4	-	200,275.4	52.0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71,223.0	-	71,223.0	18.5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 (기정)

구 분	구역명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기준	최대	평균층수/최고층수	최고높이(m)
재정비 촉진구역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업무,주거	60이하	173	493.6	- / -	150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공공업무	60이하	400이하		- / -	100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321	500 (444)	- / -	100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업무, 주거	60이하	164	399	- / -	100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250	400	- / -	100

※( )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미 적용시 최대용적률

○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 (변경)

구 분	구역명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평균층수/최고층수	최고높이(m)
재정비 촉진구역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168.5	255.0	380.5	500.0	- / -	150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외 타 구역은 변경사항 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기정)

구역명		구역면적(㎡)	획지면적(㎡)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합 계	도 로	공 원 및 광 장	공공공지	공공청사	입체공공시설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기반시설내		
촉진구역	합계	169,219.9	113,215.9	61,688.0	30,105.5	8,294.1	1,293.4	20,095 [5,646]	1,900 [5,900]	972.6 (18,550.6)	14,482.4 (57,291.4)	46,233.0 (-14,153)	27.3 (-8.4)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19.1	58,416.1	25,387.0 {26,754}	15,609.0	4,094.0	-	5,684.0 [5,646] {7,051}	-	- (4,112)	- (12,394)	25,387.0 (8,882.0) {26,755.0}	32.5 (11.4) {34.2}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	-	15,266	855	-		14,411	-	948	14,318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2.2	8,315.4	2,496.8	1,561.8	862.0	73.0	-	-	24.6	164.4	2,307.8	21.3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55,151.0	38,591.0	16,560.0 {20,406.0}	11,090.0	2,820.0 [5,640.0] {4,327.0}	750.0		1,900 [5,900] {4,239}	- (13,466)	- (30,415)	16,560 (-27,321) {20,406.0}	30.0 (-49.5) {37.0}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	1,978.2	20.04
존치관리구역	자양9 존치관리구역	47,824.7	35,507.0	12,317.7	5,279.0	7,038.7	-	-	-	-	-	-	-

주1) [ ]:입체공공시설, 공공청사, 지하주차장의 건축 연면적

주2) (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주3) { }:자양1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1,367㎡), 자양5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2,339㎡) 및 지하주차장(1,507㎡) 건립비용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환산 면적을 포함한 면적임(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2014.8)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변경)

구역명		구역 면적 (㎡)	획지 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 계	도 로	공 원 및 광 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공공 지원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촉진 구역	합계	140,086.1	95,689.9	50,080.2 {35,976.4}	21,467.7	5,474.1	543.4	20,095 [5,646] {7,051}	-	2,500.0 [10,400.0] {4,270.2}	972.6 (4,112)	14,482.4 (12,394)	34,625.2 (28,005.6)	26.3 (16.5)
	자양1 재정비촉진 구역	78,119.1	58,416.1	25,387.0 {26,754}	15,609.0	4,094.0	-	5,684.0 [5,646] {7,051}	-	-	- (4,112)	- (12,394)	25,387.0 (8,882.0) {26,755.0}	32.5 (11.4) {34.2}
	자양3 재정비촉진 구역	15,266	-	15,266	855	-	-	14,411	-	-	948	14,318	-	-
	자양4 재정비촉진 구역	10,812.2	8,315.4	2,496.8	1,561.8	862.0	73.0	-	-	-	24.6	164.4	2,307.8	21.3
	자양5 재정비촉진 구역	26,017.2	21,065.0	4,952.2 {9,222.4}	2,452.2	-	-	-	-	2,500.0 [10,400.0] {4,270.2}	-	-	4,952.2 {9,222.4}	23.5 {35.5}
	구의3 재정비촉진 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	-	1,978.2	20.04
존치 관리 구역	자양9 존치관리 구역	46,370.9	35,507.0	10,863.9	3,825.2	7,038.7	-	-	-	-	-	-	-	
	자양13 존치관리 구역	31,792.6	20,496.0	11,296.6	11,296.6	-	-	-	- [250.0]	-	-	-	11,296.6	35.5

주1) [ ]:입체공공시설 및 지하주차장 연면적
주2) (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주3) {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환산 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 구역별 기반시설분담계획 : 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시설은 해당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설치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 기 정

구분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장기 전세주택 (세대)
				소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합계		2,664	1,561	803	562	241	-	300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64	1,561	803	562	241	-	300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363	631	432	289	143	-	300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64	215	49	40	9	-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840	538	302	233	69	-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97	177	20	-	20	-	-

○ 변 경

구분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장기 전세주택 (세대)
				소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합계		3,523	2,296	927	598	329	-	300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749	1,639	810	504	306	-	300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363	631	432	289	143	-	300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64	215	49	40	9	-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925	616	309	175	134	-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97	177	20	-	20	-	-
존치 관리구역	자양13존치관리구역	774	657	117	94	23	-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

○ 기 정

구 분	사업기간			대 상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9년	2011년	2017년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10년	2013년	2018년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8년	2019년	2024년	자양1,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3단계	2019년	2020년	2025년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 경

구 분	사업기간			대 상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9년	2011년	2017년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10년	2013년	2018년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8년	2019년	2024년	자양1,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3단계	2024년	2028년	2033년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4) 광고물 관리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17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6) 방재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19 방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20 정보화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Ⅰ. 21 에너지 순환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7일대	55,151.0	감)29,133.8	26,017.2	-

(2)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5,151.0	감)29,133.8	26,017.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6,560	감)11,607.8	4,952.2	19.0	-
	도 로	11,090	감)8,637.8	2,452.2	9.4	-
	공 원	2,820	감)2,820	-	-	-
	주차장	(2,820)	감) (2,820)	-	-	-
	입체공공시설	1,900	감)1,900	-	-	-
	공공지원시설	-	증)2,500	2,500	9.6	어린이병원
	공공공지	750	감)750	-	-	-
택 지 (획 지)	소 계	38,591	감)17,526	21,065.0	81.0	-
	획 지	38,591	감)17,526	21,065.0	81.0	-

※ ( )는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포함 시 면적임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i) 교통시설
■ 도 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1	16	35~38	주간선 도로	5,910 (220)	자양동 219-18	자양동 680-72	건설부고시 제738호 1963.12.24.	아차산로 자양로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간선도 로	575 (128)	자양동 680-72	구의동 593-20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뚝섬로 (동서울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2009.6.4.	
기정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434 (133)	자양동 716	구의동 591-29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 ( )는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을 의미함

■ 주차장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자양동 680-25 일대	2,820	감)2,820	-	서울시고시 제2018-15호 2018.1.18	-

ii) 공간시설

■ 공 원 (변경)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④	-	문화공원	자양동 680-25 일대	2,820	감)2,820	-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 공공공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⑦	공공공지	자양동 680-81 일대	750	감)750	-	서울시고시 제2018-15호 2018.1.18	-

iii)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②	입체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자양동 680-81 일대	1,900	감)1,900	-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 공공시설 설치계획

ⅰ) 공공지원시설

■ 의료시설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	의료시설	어린이 병원	자양동 680-67 일대	-	증)2,500	2,500	-	-

※ 부지 내 설치 연면적은 약 10,400㎡으로 향후 계획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 기 정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5 재정비 촉진구역	55,151	-	38,591	자양동 680-81 번지 일대	57	-	-	57	-	-

■ 변 경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5 재정비 촉진구역	26,017.2	A-1	21,065	자양동 680-62 번지 일대	29	-	-	29	-	복합개발용지
		A-2	2,500	자양동 680-67 번지 일대						공공지원시설

○ 건축시설계획

■ 기 정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연면적
(㎡)</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
(m)</th></tr>
<tr><th>명칭</th><th>면적
(㎡)</th><th>명칭</th><th>면적
(㎡)</th></tr>
<tr><td>기정</td><td>자양5
재정비
촉진구역</td><td>55.151</td><td>-</td><td>38,591</td><td>자양동
680-81
번지 일대</td><td>153,843
이하</td><td>주거</td><td>60
이하</td><td>399
이하</td><td>100
이하</td></tr>
<tr><td colspan="3" rowspan="2">건축물
용도별 지상연면적</td><td colspan="2">주거</td><td>상업</td><td colspan="3">업무</td><td colspan="2" rowspan="2">직장
보육시설</td></tr>
<tr><td colspan="2">50.0%</td><td>8.1%</td><td>합계
41.4%</td><td colspan="2">일반업무
25.0%
오피스텔
16.4%</td><td>0.5%</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 건립규모
· 일반주택 : 538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56세대
- 전용면적 60㎡ ~ 85㎡ : 152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330세대
· 임대주택 : 302세대
- 전용면적 60㎡ ~ 85㎡ : 23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69세대
○ 건설비율
· 일반주택 : 64%
· 임대주택 : 36%
○ 건립예정세대수 : 840세대</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td></tr>
</table>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용도 중 임대주택의 연면적은 24,165㎡이상 확보(2017년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17.12.12) 조치내용 반영

■ 변 경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연면적
(㎡)</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
(m)</th></tr>
<tr><th>명칭</th><th>면적
(㎡)</th><th>명칭</th><th>면적
(㎡)</th></tr>
<tr><td>변경</td><td>자양5
재정비
촉진구역</td><td>26,017.2</td><td>A-1</td><td>21,065</td><td>자양동
680-81
번지 일대</td><td>166,162.8</td><td>주거</td><td>60
이하</td><td>500
이하</td><td>150
이하</td></tr>
<tr><td colspan="3" rowspan="2">건축물
용도별 지상연면적</td><td colspan="2">주거</td><td>상업</td><td colspan="4">업무</td><td>기타</td></tr>
<tr><td colspan="2">95.96%</td><td>1.18%</td><td colspan="4">2.39%</td><td>0.47%</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 건립규모
· 일반주택 : 616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186세대
- 전용면적 60㎡ ~ 85㎡ : 21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217세대
· 임대주택 : 309세대</td></tr>
</table>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 전용면적 60㎡ ~ 85㎡ : 134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175세대 ○ 건설비율 · 일반주택 : 66.5% · 임대주택 : 33.5% ○ 건립예정세대수 : 925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 기 정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2019년	토지등소유자, 조합등	계획 : 840세대 증)602세대	이상없음	현황세대 (238세대)

■ 변 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계획 : 925세대 증)849세대	이상없음	현황세대 (76세대)

마)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20) 존치구역의 정비 및 정비계획 (변경)

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1)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일대	47,824.7	감)1,453.8	46,370.9	-

■ 결정(변경) 사유서

구 역 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감 1,453.8㎡)	• 도로부담계획 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

■ 자양9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일대	47,824.7	감)1,453.8	46,370.9	-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결정사유
변경	자양9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일대	46,370.9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3)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일대	-	증)31,792.6	31,792.6	-

■ 결정 사유서

구 역 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증 31,792.6㎡)	•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존치지역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31,792.6	-	31,792.6	100.0
주거지역	소계	31,767.1	-	31,767.1	99.9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8.0	-	1,438.0	4.5
	제2종일반주거지역	15.8	-	15.8	0.05
	제3종일반주거지역	1,179.5	-	1,179.5	3.7
	준주거지역	29,133.8	-	29,133.8	91.6
일반상업지역		25.5	-	25.5	0.1

■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8)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반영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16	35~38	주간선도로	5,910 (39)	자양동 219-18 (자양동 716)	자양동 680-70 (자양동 716)	건설부고시 제738호 1963.12.24.	-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 간선도로	575 (150)	자양동680-72 (자양동680-40)	구의동592-20 (자양동680-81)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기정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434 (137)	자양동 716 (자양동680-81)	구의동 591-29 (자양동680-63)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408 (393)	자양동683-6 (자양동683-6)	자양동 781-4 (자양동680-65)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 ( ) 안의 연장은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신설	-	31,792.6	1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20,496.0	-

– 결정 사유서

위 치	결정내용	결정(변경)사유	비고
광진구 자양동 680-81 일대	• 획지 1 - 면적 : 20,496.0㎡	•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가구 및 획지계획 수립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변경)

■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 조서

–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용도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더목, 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	–

–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용도	불허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 18호의 공장 및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 건폐율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비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0% 이하	–

■ 용적률 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신설	획지1	155.7% 이하	266.4%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름

※ 용도지역별 용적률계획 기준 적용(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25.1.))

–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적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1조2항3호)

■ 결정 사유서

구 분	결정 사유
용적률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른 용적률계획 수립 - 촉진지구 지정 전 용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적용 - 서울시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상한용적률 추가 완화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구분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탄소 중립	저영향개발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에 따른 기준시설 별 빗물분담량 기준의 1.5배 이상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준 충족 시 정량 제공	10%	-
	신재생에너지		• 서울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준용적률×α	α=0.05	-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 건축설계		• 주민제안으로 창의적 디자인을 제안 (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준 충족 시 정량 제공	15%	-
	유니버설디자인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BF인증)을 인증하는 경우	기준 충족 시 정량 제공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
녹지 생태 도시	개방형 공간 조성	쌈지형 공지	• 대지 내 조성 기준 및 면적에 따른 완화 적용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 α=2.0 피로티형 α=1.0	-
		공공 보행통로	• 대지 내 조성 기준 및 면적에 따른 완화 적용			-
		건축 한계선	• 대지 내 조성 기준 및 면적에 따른 완화 적용			-
지역 맞춤형	전선지중화		• 가로 지장물 · 지상 전주 ·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기준용적률×α	α=0.1	-
생활 환경 개선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α=0.1	-
	고령서비스시설		•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α=0.1	-
	층간소음해소		• 바닥(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기준 충족 시 정량 제공	1등급 5% 2등급 3%	-
건축물 개방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 -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기준 충족 시 정량 제공	5%	-

구분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친환경	물환경	빗물 이용시설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기준용적률ⅹα	α=0.05	-
		중수도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기준용적률ⅹα	α=0.05	-
	대기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거 : 300세대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의무설치 대상 제외	기준용적률ⅹα	α=0.05	-
		미세먼지 저감장치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시 :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기준용적률ⅹα	α=0.05	-
기반시설 등 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 (도로, 공원, 통학로 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기준용적률x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xα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	α=1.0	-
방재안전			•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기준 충족 시 정량 제공	5%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적용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결정

■ 건축물의 높이 결정 조서

구 분		결정 내용	비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최고높이 150m 이하	-

■ 결정 사유서

구 분	결정 사유
높이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높이계획을 반영하고 인근 사업지들의 높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획지의 북측(중로 2-479)변 : 7m • 획지의 동측(중로 2-480)변 : 7m • 획지의 남측(중로 1-450)변 : 5m • 획지의 서측변 : 4m	-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
	쌈지형공지	• 대상지 동측 도로(중로2-480)변 2개소 위치 지정	-

※ 쌈지형공지는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이 아닌 경우 설치를 권장하는 공지로서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고 연속하여 조성

■ 경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통경축	• 인접 단지의 한강변 등을 향한 개방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지 북측 도로(중로 2-479)에서 남측 도로(뚝섬로)로 열린 통경축 확보	-

■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뚝섬로 및 중로 2-479, 중로 2-480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변경)

■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공공시설계획	• 순부담률 : 35.5% 이상 • 공공시설 설치계획 - 대상지 북측 (중로2-479) 및 동측 (중로2-480) 도로 신설, 남측 뚝섬로(중로1-450) 폭원10m → 25m 확폭 - 촉진지구 내 미집행기반시설 부지 확보 (관리주체 : 서울시 및 광진구) ※ 대상지 내 문화시설(작은도서관) 기부채납 (공공기여량 산정 제외)	-

■ 공공기여 설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1,296.6㎡	35.5%	-
도로		11,296.6㎡	35.5%	• 대상지 북측(중로2-479) 및 동측(중로2-480) 도로 신설, 남측 뚝섬로(중로1-450) 폭원 10m→25m 확폭 • 촉진지구 내 미집행기반시설 부지 확보 (관리주체 : 서울시 및 광진구)
공공시설	문화시설 (작은 도서관)	63.1㎡	-	• 건축 연면적 : 약 250.0㎡ - 환산부지면적 : 약 29.6㎡ ※ 공공시설 설치단가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中 도서관 1,500㎡미만 신축단가 적용 (부가가치세 면세) ※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 적용 (부가가치세 면세) • 대지지분면적 : 약 33.5㎡ • 위치 : 지하1층 ~ 지상1층 (지하주차장, 기전실 등 제외)

※ 시설의 종류, 면적, 위치, 형태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문화시설(작은도서관)은 기부채납시설이나 공공기여량 산정에서는 제외(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성 확보)

○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

■ 자양13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일대	-	증)31,792.6	31,792.6	-

■ 결정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결정사유
신설	자양13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일대	31,792.6	• 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 자양13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
면 적			• 31,792.6㎡	-
용도지역			•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 ※ 신규 편입 미집행기반시설 부지 용도지역 유지	-
공공시설계획			• 순부담률 : 35.5% 이상 • 공공시설 설치계획 - 대상지 북측 (중로2-479) 및 동측 (중로2-480) 도로 신설, 남측 뚝섬로(중로1-450) 폭원10m → 25m 확폭 - 촉진지구 내 미집행기반시설 부지 확보 (관리주체 : 서울시 및 광진구) ※ 대상지 내 문화시설(작은도서관) 기부채납 (공공기여량 산정 제외)	-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더목, 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	-
		불허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 18호의 공장 및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155.7% 이하 • 허용용적률: 266.4% 이하 • 상한용적률: 400.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500.0% 이하 -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적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1조2항3호)	-
	최고높이	• 150m 이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획지의 북측(중로 2-479)변 : 7m • 획지의 동측(중로 2-480)변 : 7m • 획지의 남측(중로 1-450)변 : 5m • 획지의 서측변 : 4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
	쌈지형공지	• 대상지 동측 도로(중로2-480)변 2개소 위치 지정	-
	통경축	• 인접 단지의 한강변 등을 향한 개방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지 북측 도로(중로 2-479)에서 남측 도로(뚝섬로)로 열린 통경축 확보	-
	교통처리계획	• 뚝섬로 및 중로 2-479, 중로 2-480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2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 일대	181,187.9	-	181,187.9	서울시고시 제1996-154호 1996.6.7
기정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 일대	47,824.7	감)1,453.8	46,370.9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변경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7 일대	55,151.0	감)29,133.8	26,017.2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신설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 일대	-	증)31,792.6	31,792.6	-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 로 (변경없음)

(2)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자양동 680-28 일대	2,820	감)2,820	-	서울시고시 제2018-15호 2018.1.18	-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주차장	• 폐지 2,820㎡ ⇒ -㎡ 감) A= 2,820㎡	• 미집행기반시설(도로) 및 작은도서관 신설에 따른 계획기반시설 조정을 위해 주차장 폐지

(3) 철도 (변경없음)

(4) 광장 (변경없음)

(5)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④	-	문화공원	자양동 680-28 일대	2,820	감)2,820	-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	• 폐지 2,820㎡ ⇒ -㎡ 감) A= 2,820㎡	• 미집행기반시설(도로) 및 작은도서관 신설에 따른 계획기반 시설 조정을 위해 공원 폐지

(6)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⑦	공공공지	자양동 680-81 일대	750	감)750	-	서울시고시 제2018-15호 2018.1.18	-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⑦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750㎡)	•촉진구역의 일부 해제에 따라 계획여건 변화 및 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공지 폐지

(7) 공공청사 (변경없음)

(8) 문화시설 (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②	문화시설	자양동 680-81일대	1,900	감)1,900	-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 문화시설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문화시설	•문화시설 폐지(1,900㎡)	• 촉진구역의 일부 해제에 따라 기결정된 문화시설을 폐지

바)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자양5재정비촉진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7일대	55,151.0	감)29,133.8	26,017.2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55,151.0	감)29,133.8	26,017.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55,151.0	감)29,133.8	26,017.2	100.0

(나) 기반시설 등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1	16	35~38	주간선 도로	5,910 (220)	자양동 219-18	자양동 680-72	1972.9.1	아차산로 자양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 간선도로	575 (128)	자양동 680-72	구의동 593-20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뚝섬로 (동서울길)
기정	중로	2	479	14	집산 도로	434 (133)	자양동 716	구의동 591-29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 ( )는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을 의미함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자양동 680-25 일대	2,820	감)2,820	-	서울시고시 제2018-15호 2018.1.18	중복결정 지상 : 소공원 지하 : 주차장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④	-	소공원	자양동 680-25 일대	2,820	감)2,820	-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중복결정 지상 : 소공원 지하 : 주차장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⑦	공공공지	자양동 680-81 일대	750	감)750	-	서울시고시 제2018-15호 2018.1.18	-

○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②	입체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자양동 680-81 일대	1,900	감)1,900	-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 공공지원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	의료시설	어린이 병원	자양동 680-67 일대	-	증)2,500	2,500	-	-

※ 부지 내 설치 연면적은 약 10,400㎡으로 향후 계획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5 재정비 촉진구역	26,017.2	A-1	21,065	자양동 680-62 번지 일대	29	-	-	29	-	복합개발용지
		A-2	2,500	자양동 680-67 번지 일대						공공지원시설

(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권장용도	비고
신설	획지 A-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더목, 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의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지침' 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획지 A-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더목, 러목 제외)	-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불허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건폐율 계획

구 분	위 치	건폐율(%)	비고
변경	획지 A-1, A-2	60% 이하	-

– 용적률 계획

구 분	위 치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신설	A-1	168.5% 이하	255% 이하	380.5% 이하	500.0% 이하	-

※ A-2(공공지원시설(어린이병원)의 용적률 계획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 높이 계획

구 분		결정 내용	비고
기정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100m 이하	공공지원시설(어린이병원) 최고높이 100m 이하 적용
변경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150m 이하	복합개발용지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획지의 북측(중로 2-479)변 : 7m • 획지의 남측(중로 1-450)변 : 5m • 획지의 서측(대로 1-16)변 : 5m • 획지의 동측변 : 4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획지의 서측(대로 1-16)건축한계선으로부터 10m	-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공지	쌈지형공지	• 대상지 서측(대로 1-16)변 2개소 위치지정 • 대상지 북측(중로 2-479)변 1개소 위치 지정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

○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뚝섬로 및 대로 1-16변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결정도 참조

(마)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자양5 재정비 촉진구역	21,065	5	159,741.93 (166,162.8)	739	40㎡ 이하 : 103 40㎡ 초과 60㎡ 이하 : 289 60㎡ 초과 85㎡ 이하 : 347 85㎡ 초과 : -	총 세대수: 925세대

※ ( )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임

라.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참조 : 생략(비치 도서로 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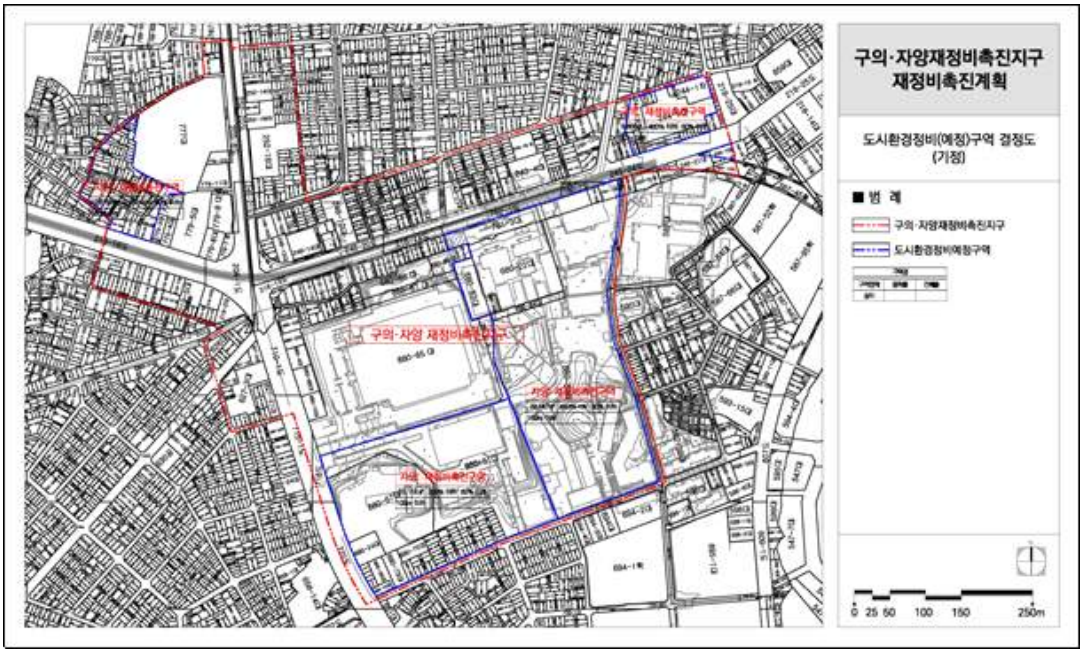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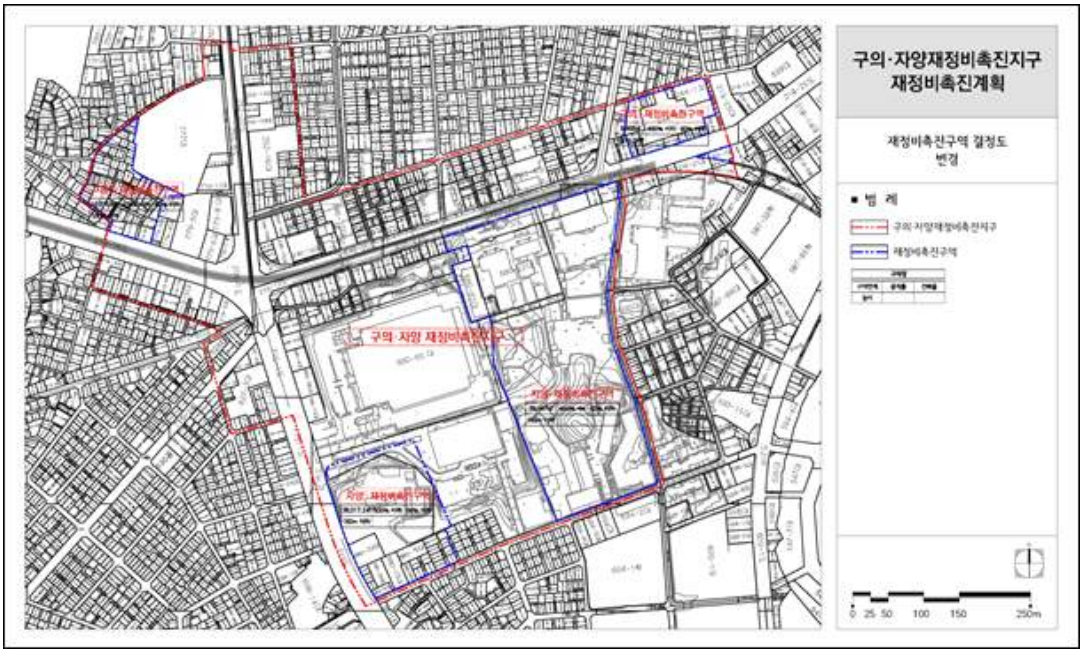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도 확인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비치된 열람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은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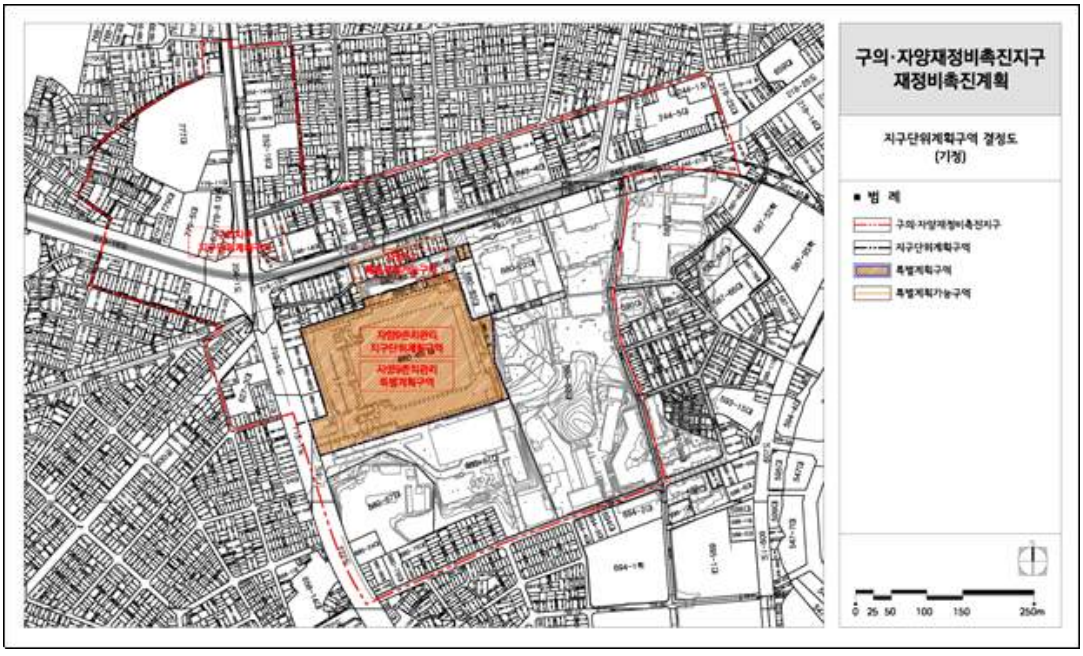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 지구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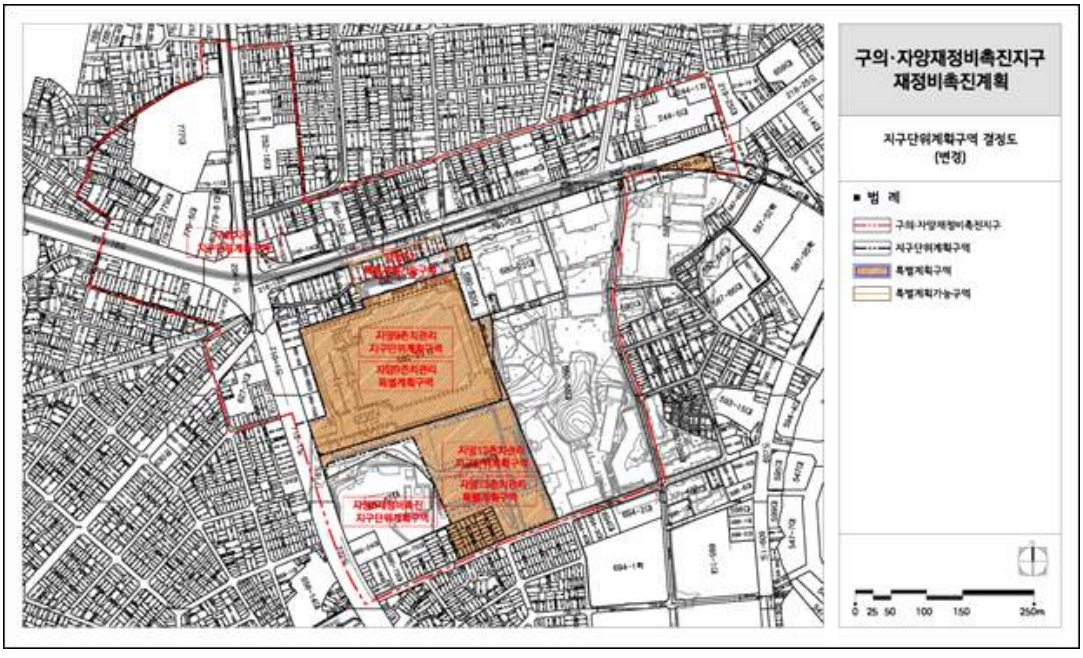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 지구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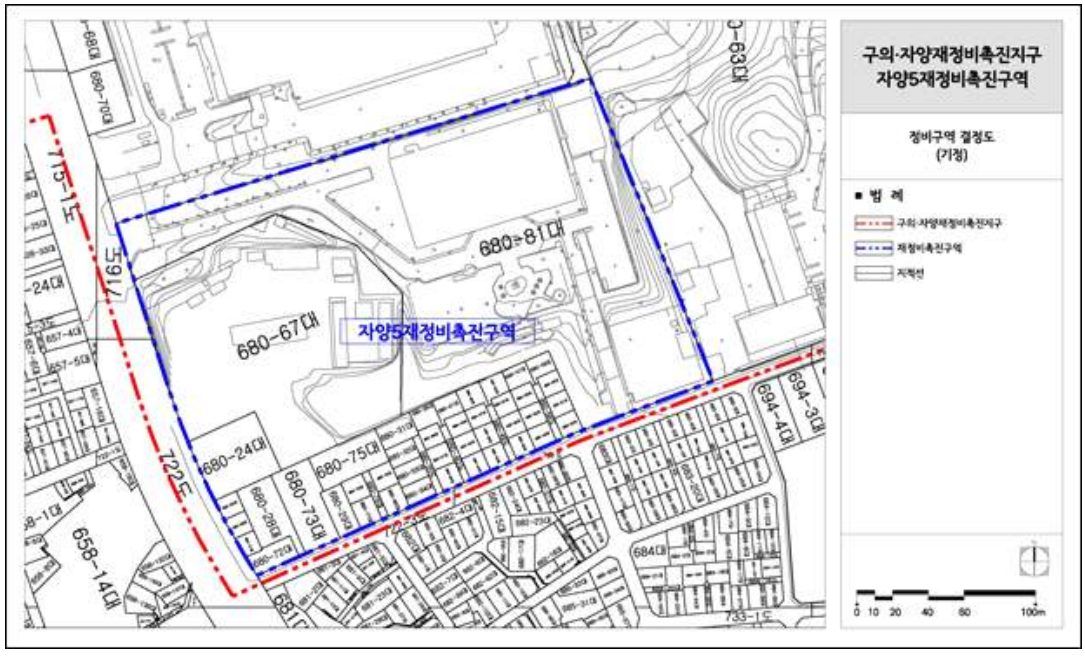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 지구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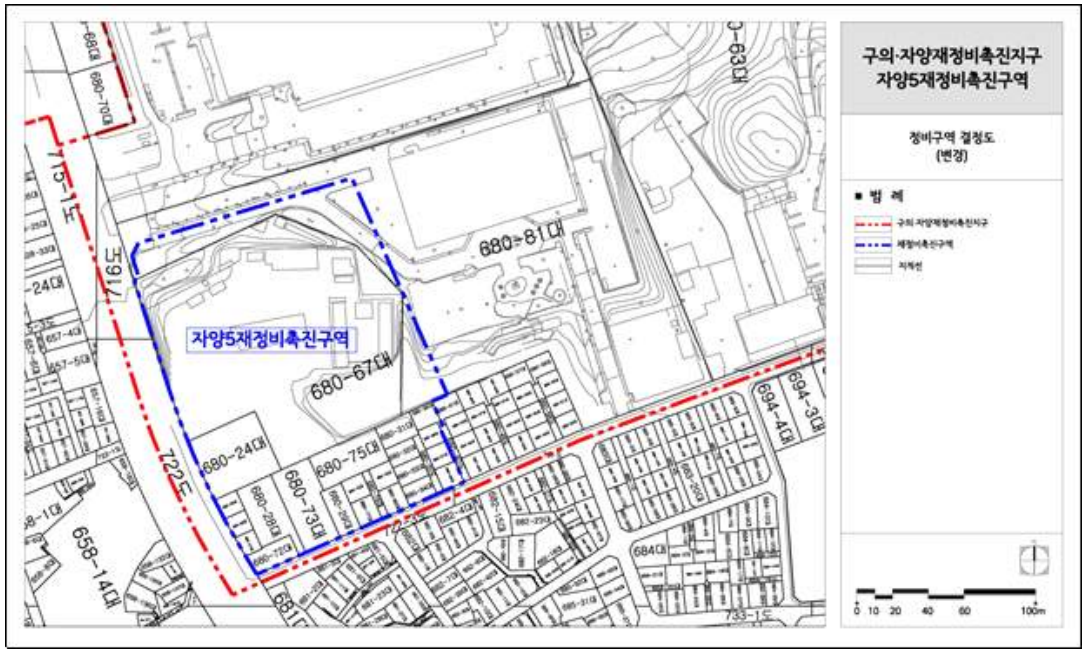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지구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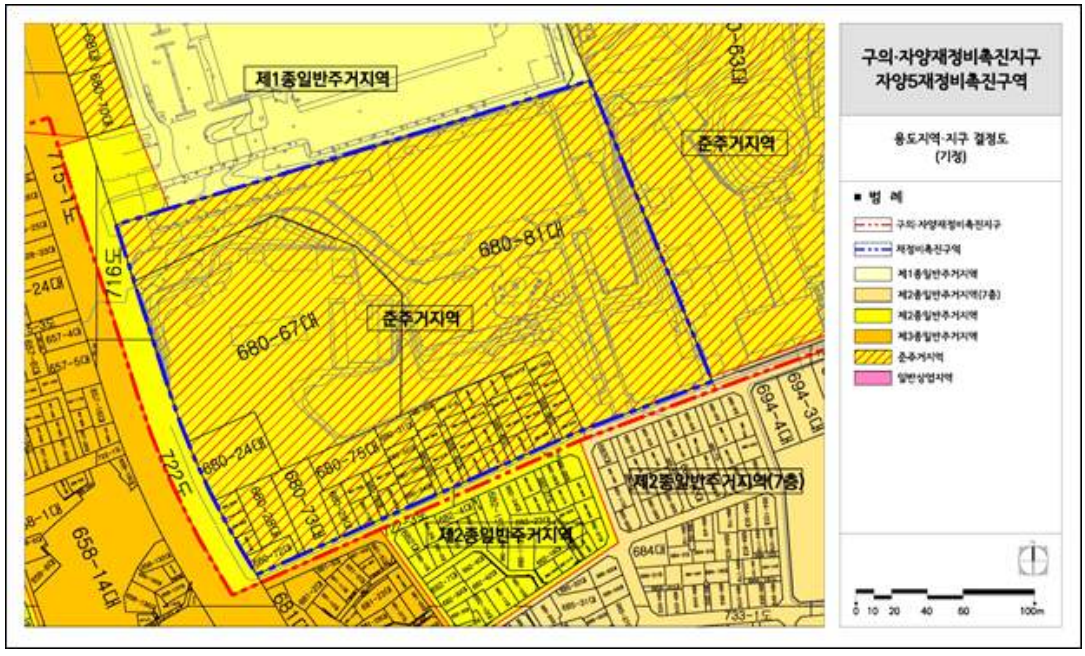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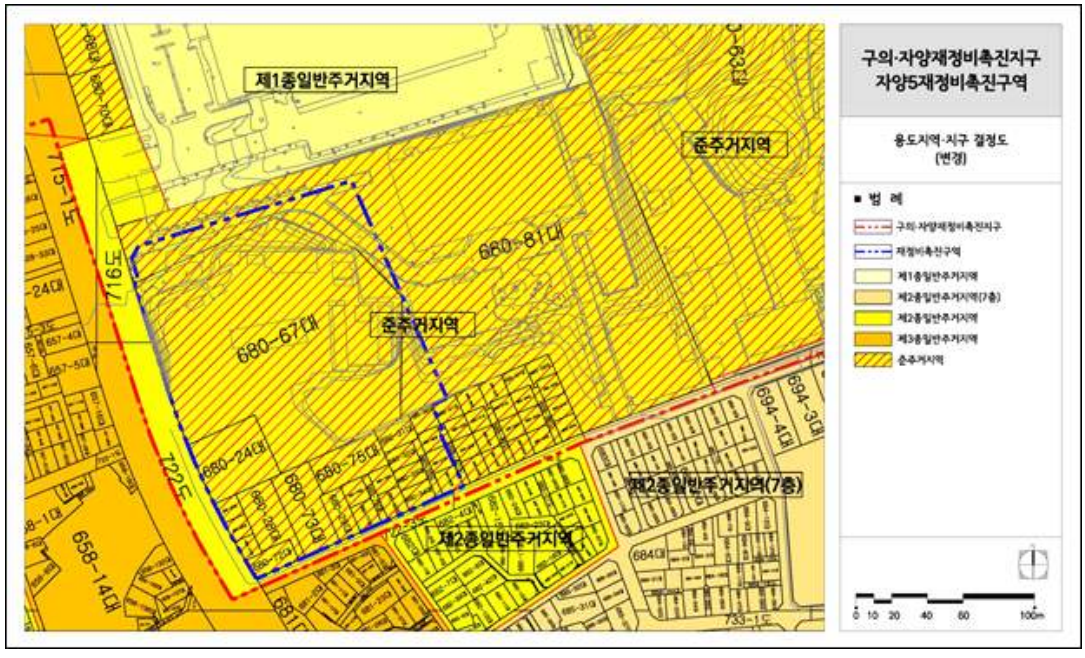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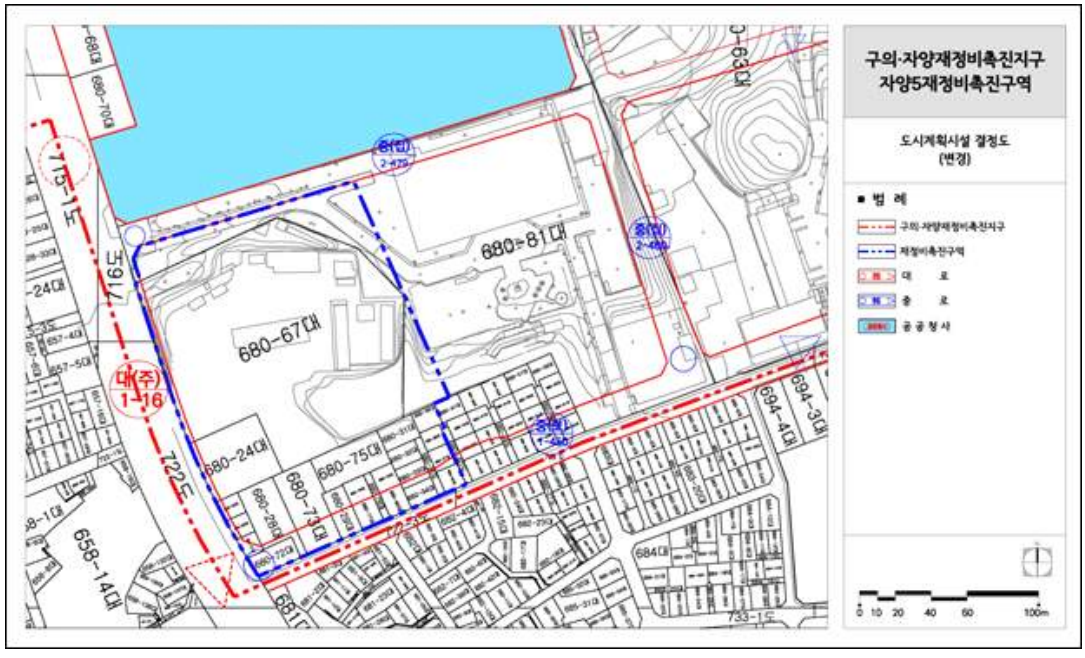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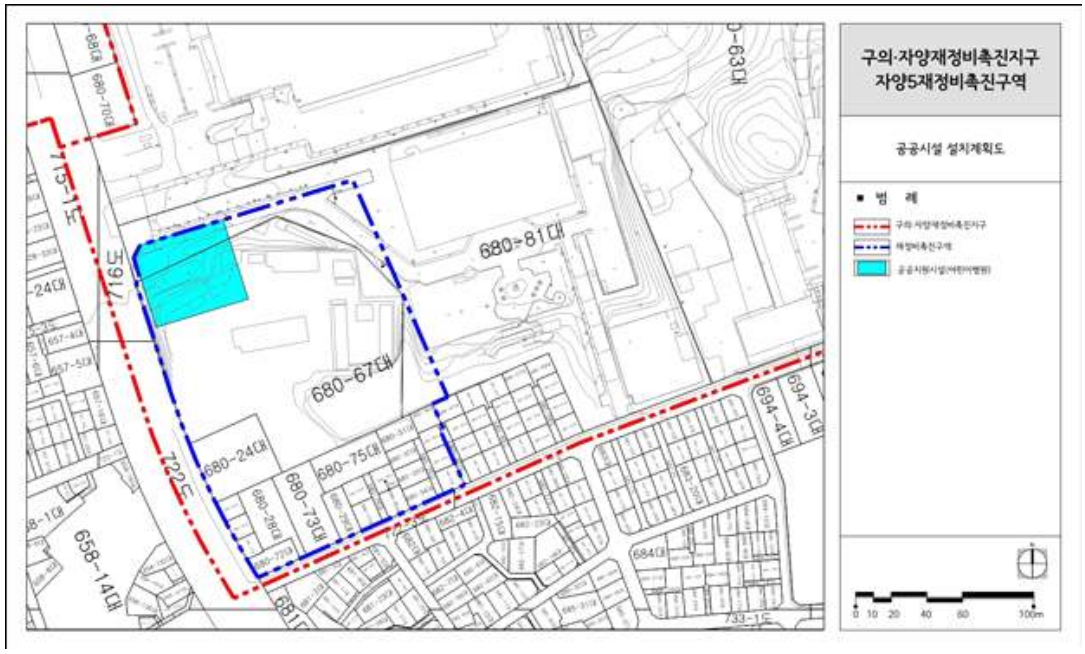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공공시설 설치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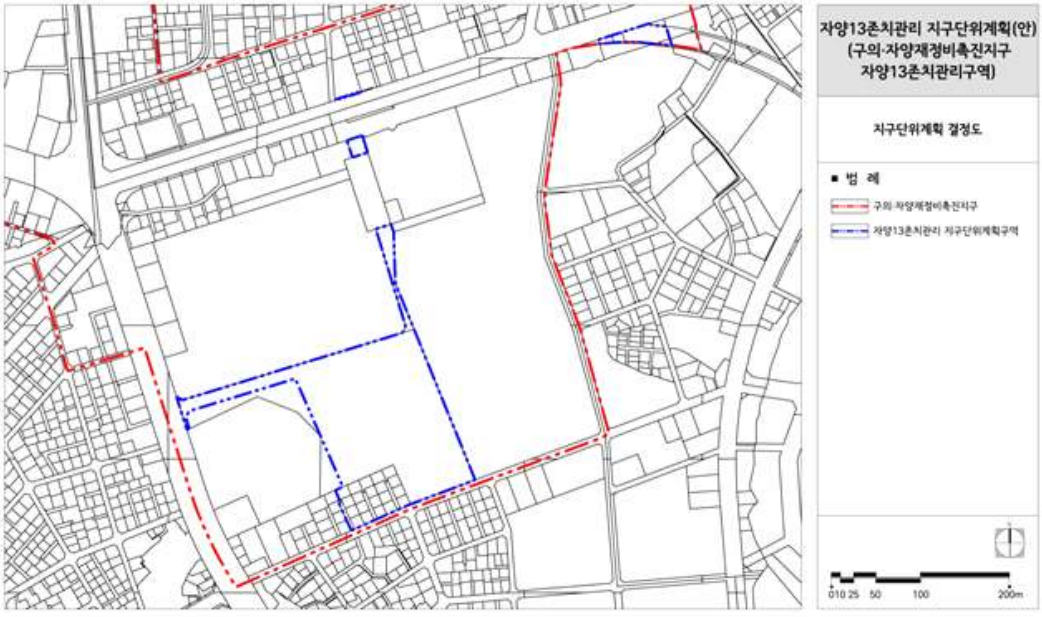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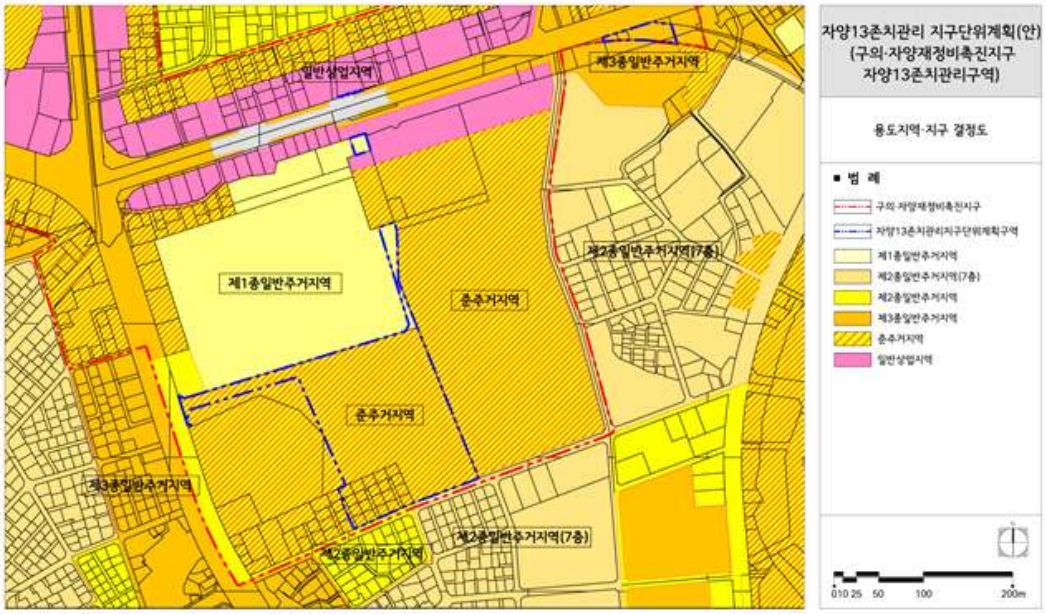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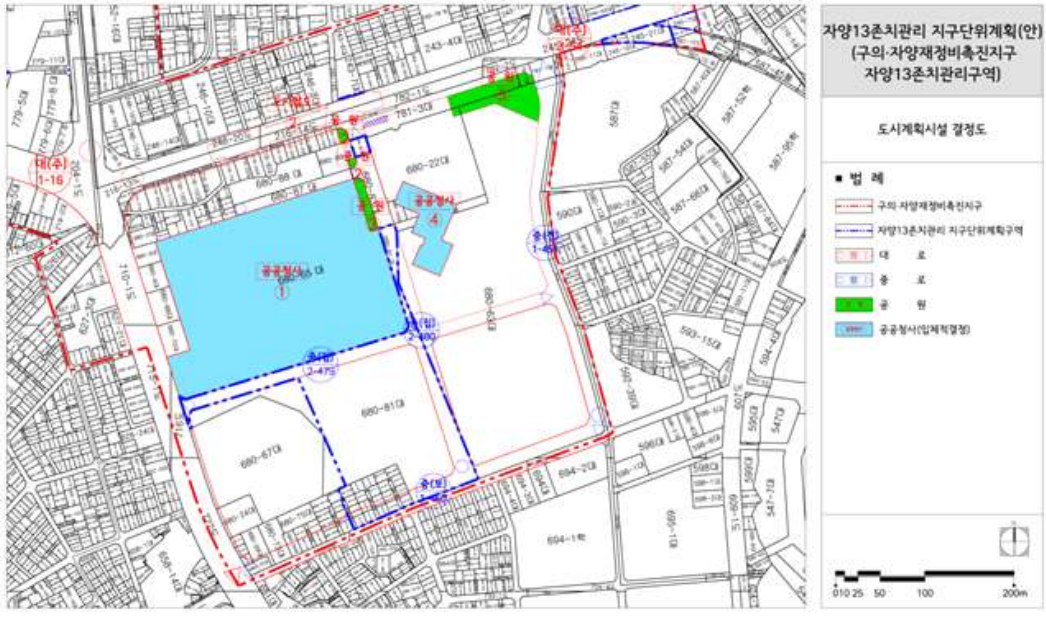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자양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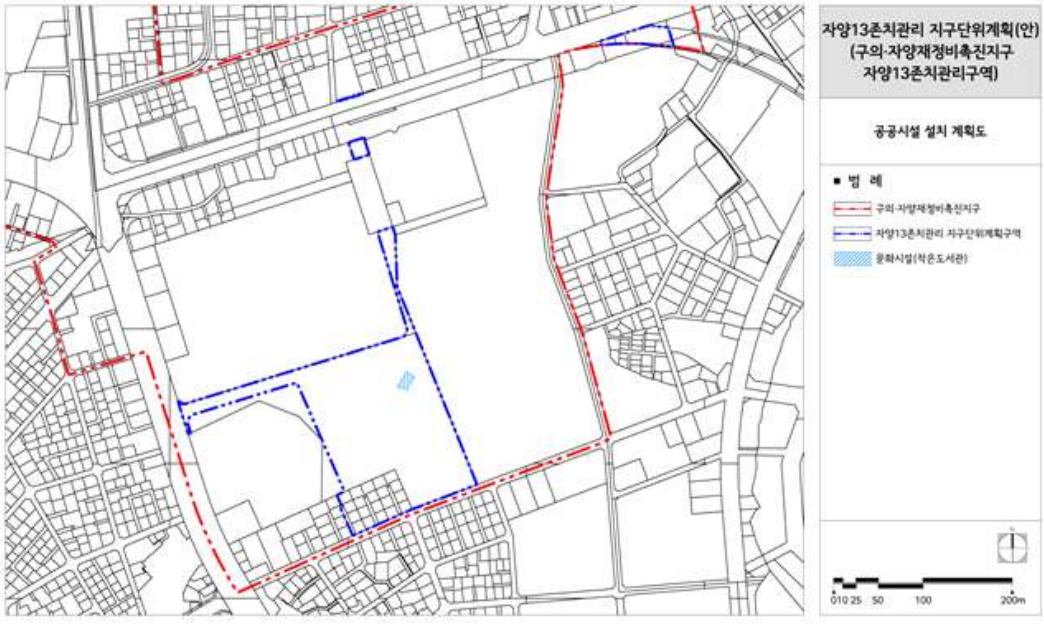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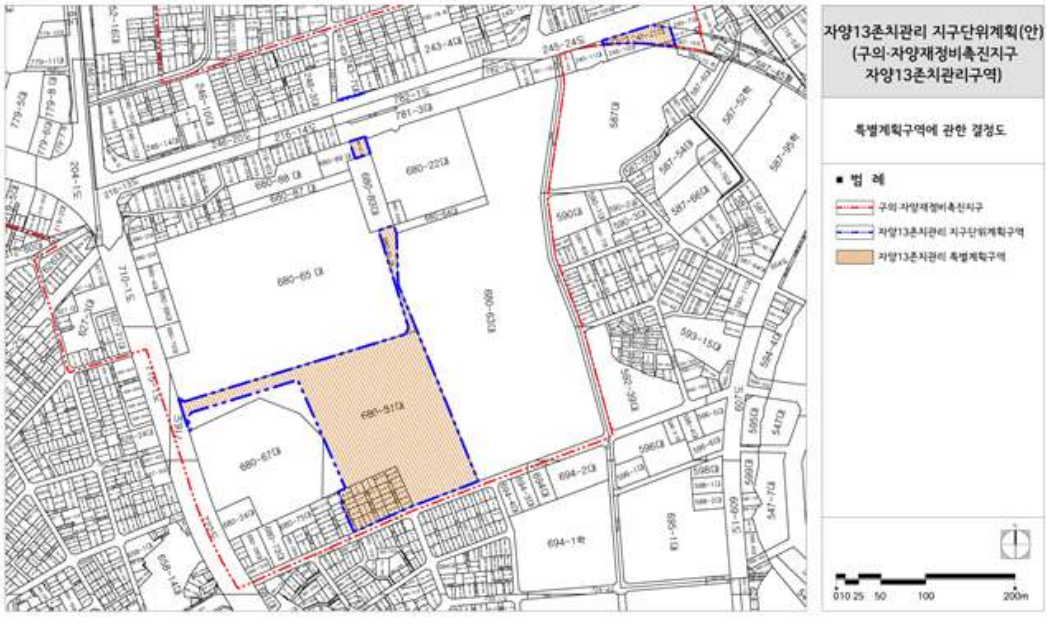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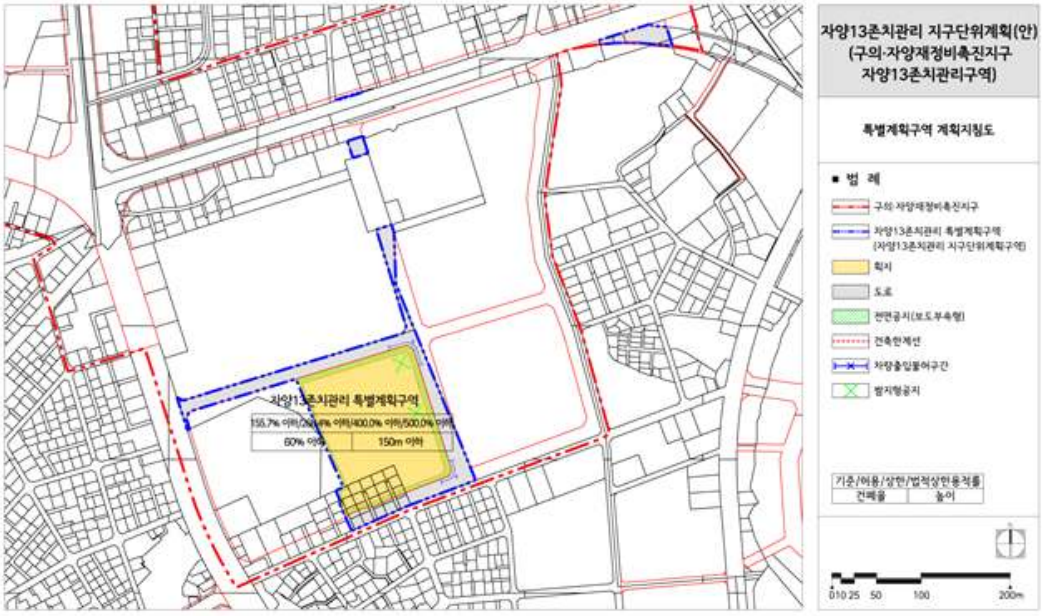
■ 공공시설 설치 계획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자양13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도



– 이 하 여 백 –

◈ 성북구공고 제2026-9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성신여자대학교)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2호(1977.4.1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으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66호(2025.8.2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1-79호(2011.10.27.)로 인가(변경)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14-430호(2014.5.1.)로 공사완료 공고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11층 ☎02-2241-2763)

다.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주요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명 칭 : 성신여자대학교 야외정원 조성공사

2) 사업대상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73-1번지 외 31필지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김 향 기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면적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캠퍼스 (수정캠퍼스)	61,562.0	67,565.0	61,562.0 (61,222.1)	67,565.0 (67,507.2)	
제2캠퍼스	12,885.2	-	12,885.2	-	대학→초·중학교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초·중학교)			(12,260.6)	-	
합 계	74,447.2	67,565.0	74,447.2 (73,482.7)	67,565.0 (67,507.2)	

※ 사업시행면적 중 ( )는 사유지 및 도로후퇴 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 기정 시설결정면적 근거 : 서고시 제2013-345호(2013.10.17.)
※ 변경 시설결정면적 근거 : 서고시 제2025-466호(2025.08.28.)

◦ 건축면적 및 연면적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캠퍼스 (수정캠퍼스)	21,424.01	21,424.01	124,548.20	124,548.20	106,673.86	106,673.86	
제2캠퍼스 (초·중학교)	3,070.227	-	10,474.618	-	9,621.618	-	대학→초·중학교
합 계	24,494.237	21,424.01	135,022.818	124,548.20	116,295.478	106,673.86	
증·감	감) 3,070.227		감) 10,474.618		감) 9,621.618		

◦ 건폐율 및 용적률

구 분	밀도산정기준면적(㎡)		건폐율(%)		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캠퍼스 (수정캠퍼스)	61,222.1	67,507.2	34.99	31.74	174.24	158.02	
제2캠퍼스 (초·중학교)	12,260.6	-	25.04	-	78.48	-	대학→초·중학교
합 계	73,482.7	67,507.2	33.33	31.74	158.26	158.02	
증·감	감) 5,975.50		감) 1.59		감) 0.24		

※ 제1캠퍼스(수정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67,507.2㎡) : 총면적(67,565.0㎡) - 도로후퇴면적(57.8㎡)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 08. 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생략)

7)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노원구공고 제2026-9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노원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과(☎02-2116-38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총 계	7	28,970		7	28,970								
도 로	5	20,144		5	20,144								
공 원	1	6,500		1	6,500								
공공공지	1	2,326		1	2,326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사업·시설 부문	우선순위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비고
		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26	'27	'28	'29	'30	'31 이후			
							계	시비	구비											
도로	1	상계동 72-2일원~남양주시계 (상계동 산 159-1)		L: 2,408(410)m, B: 25~43m						민간사업									2028	
	2	자력 6-53-35일원~자력 6-35-39일원		L: 164m, B: 20m						민간사업									2028	
	3	상계동 99-2일원~상계동 140-34일원		L: 156m, B: 15m						민간사업									2028	
	4	상계동 109-38일원~자력 6-53-39일원		L: 147m, B: 8m						민간사업									2028	
	5	자력 6-44-1일원~자력 6-44-1일원		L: 95m, B: 8m						민간사업									2028	
공원	6	상계동 1398 일원		A: 6,500.0㎡						민간사업									2028	
공공공지	7	상계동 1404 일원		A: 2,326.0㎡						민간사업									2028	

※ 사업규모 연장항목의 ( )내용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구간을 의미

◈ 노원구공고 제2026-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근린공원 조성)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6호(2023. 11. 2.)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영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95호(2021. 7. 1.)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125-1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125-1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영축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시행면적 및 내용
1) 면 적 : 28,098㎡ 중 28,098㎡ 완료(10필지 중 10필지)
2) 내 용 : 토지보상

라. 사업기간 : 2019. 3. 28. ~ 2024. 3. 28.

마. 사업시행자
1) 성 명 : 노원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바. 관계도서 비치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3)

사. 토지조서

연번	사용할 토지	지목	사용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노원구 월계동 산125-11	임야	6,36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	노원구 월계동 361	임야	34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3	노원구 월계동 산120-5	임야	4,92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4	노원구 월계동 산108-24	임야	2,06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5	노원구 월계동 산114-2	임야	6,879.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6	노원구 월계동 산117-5	임야	69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7	노원구 월계동 산116-2	임야	677.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8	노원구 월계동 산114-4	임야	1,567.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9	노원구 월계동 산117-6	임야	1,19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0	노원구 월계동 산127-7	임야	1,121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0	노원구 월계동 산127-6	임야	1,08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0	노원구 월계동 산138-1	임야	1,10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 노원구공고 제2026-9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근린공원 조성)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9호(2018. 7. 1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96호(2021. 7. 1.)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43-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43-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시행면적 및 내용
1) 면 적 : 17,413㎡ 중 17,413㎡ 완료(10필지 중 10필지)
2) 내 용 : 토지보상

라. 사업기간 : 2019. 3. 28. ~ 2024. 3. 28.

마. 사업시행자
1) 성 명 : 노원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바. 관계도서 비치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3)

사. 토지조서

연번	사용할 토지	지목	사용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노원구 월계동 산43-1	임야	2,777.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	노원구 월계동 산46-3	임야	9,946.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3	노원구 월계동 산45-15	임야	3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4	노원구 월계동 산45-14	임야	3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5	노원구 월계동 산34	임야	298.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6	노원구 월계동 산33-8	임야	455.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7	노원구 월계동 산33-6	임야	41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8	노원구 월계동 산37-18	임야	608.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9	노원구 월계동 산44-8	임야	1,028.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0	노원구 월계동 산41-9	임야	1,556.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 노원구공고 제2026-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조성)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9호(2018. 7. 1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96호(2022. 6. 23.)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시행면적 및 내용
1) 면 적 : 5,902㎡ 중 5,902㎡ 완료(7필지 중 7필지)
2) 내 용 : 토지보상

라. 사업기간 : 2020. 6. 11. ~ 2025. 6. 10.

마. 사업시행자
1) 성 명 : 노원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바. 관계도서 비치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3)

사. 토지조서

연번	사용할 토지	지목	사용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노원구 월계동 산24-16	임야	2,24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	노원구 월계동 914-1	전	12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3	노원구 월계동 산7	임야	298.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4	노원구 월계동 751	답	96.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5	노원구 월계동 산4-25	임야	868.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6	노원구 월계동 산4-5	임야	2,028.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7	노원구 월계동 799-1	전	25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 은평구공고 제2026-1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신사근린공원) 사업 완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7호(1993.3.2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28호(1996.5.15.)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1-323호(2021.7.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101호(2019.8.8.)로 최초 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5-49호(2025.5.29.)로 변경 인가된

3. 도시계획시설(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98-54 등 5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보상 8,028.3㎡(신사동 98-54 등 5필지)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02-351-8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신사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신사동 98-54	잡종지	448	448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2	신사동 98-52	잡종지	270	270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3	신사동 98-65	잡종지	5,647	5,647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4	신사동 산80-69	임야	992	992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5	신사동 산80-68	임야	1,007	671.3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 은평구공고 제2026-1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신사근린공원) 사업 완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7호(1993.3.2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28호(1996.5.15.)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1-323호(2021.7.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05호(2020.6.29.)로 최초 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5-135호(2025.12. 31.)로 변경 인가된

3. 도시계획시설(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80-26(1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보상 780㎡(신사동 산80-26) 및 조성사업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02-351-8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신사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신사동	산80-26	임야	780	780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 은평구공고 제2026-153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사업 완료 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465호(1971.8.7.)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09호(1994.4.4.)호로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83(2022.6.30.)호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2020.6.2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북한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2020-759(2020.5.21.)로 최초 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5-142(2025.12.31.)로 변경 인가된

3.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108 등 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토지보상 2,847㎡(불광동 23-108 등 8필지)및 공원조성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12.31.까지
바.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불광동 23-108	전	304	304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2	불광동 23-110	임	102	102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3	불광동 8-313	전	437	437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4	불광동 8-314	대	754	754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5	불광동 산35-25	임	491	491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6	불광동 산43-108	임	364	364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7	진관동 산40-6	임	351	351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8	불광동 산37-4	임	44	44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물 건 조 서

○사업명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표시	면적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1	불광동 산35-25	건물1동	연립주택 (연와조, 스라브기와)	나동 5호	78.28	서울특별시	
				나동 6호	78.28		
				나동 7호	78.28		
				나동 8호	78.28		
				나동 9호	78.28		
2	진관동 산40-6	건물1동	일반주택 (세멘블럭조, 1층)	1식	-	서울특별시	

◈ 구로구공고 제2026-1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고시 제1969-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구로구 고시 제2006-78호(2006.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1-171호(2011.06.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 구로구 고시 제2025-74호(2025.4.1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개봉동 68-18~73-5간 도로개설」 구간에 대하여 사업구간 추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열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8)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68-18~73-5번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명 칭 : 개봉동 68-18~73-5간 도로개설
다. 사업 규모 : 총 도로개설 폭 10m, 연장 210m(변경)
 ·당 초 : 폭 10m, 연장 10m
 ·변 경 : 폭 10m, 연장 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3년간(변경)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당초)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개봉동 68-18~73-5번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개봉동 68-392	대	123	123	김○○, 홍○○, 양○○	서울특별시 ○동 ○-○				모지번 68-28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개봉동 68-18~73-5번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개봉동 68-392	대	123	123	김○○, 홍○○, 양○○	서울특별시 ○동 ○-○				모지번 68-28
2	개봉동 68-201	대	172	172	김○○, 김○○	서울특별시 ○동 ○-○				

※ 상기 지번 및 면적은 측량 및 토지분할 이후 변경 될 수 있음.

◈ 동작구공고 제2026-126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542호(2025.08.28.)로 공람·공고한 우리 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11.19.)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본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우리 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2026. 1. 22. ~ 2026. 2. 21.)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동작구청 8층 도시계획과(☎ 02-820-1944)

○ 공람내용: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1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당동 318-99 일대	-	증)10,677.7	10,677.7	-

■ 지정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남성역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구역 신설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2.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0,677.7	100.0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3,109.1	29.1	
획지		7,568.6	70.9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677.7	-	10.677.7	100.0	
주거지역	소 계	10,677.7	감) 7,568.6	3,109.1	29.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7,035.9	감) 3,926.8	3,109.1	29.1	
	제3종일반주거지역	3,641.8	감) 3,641.8	-	-	
상업지역	소 계	-	증) 7,568.6	7,568.6	70.9	
	근린상업지역	-	증) 7,568.6	7,568.6	70.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근린상업지역	4,979.4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합리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2,589.2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52.6	

4.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8-9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6길
변경	중로	2	12	8~16	국지 도로	730 (111)	사당동 266-7	사당동 308-9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길
기정	소로	3	71	6	국지 도로	105	사당동 708-1143	사당동 708-52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20가길
변경	소로	3	71	6~10	국지 도로	105 (70)	사당동 708-1143	사당동 708-52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20가길
기정	소로	3	74	6	국지도로	146	사당동 321-109	사당동 318-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20가길
변경	소로	3	74	6~10	국지도로	146 (56)	사당동 321-109	사당동 318-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20가길
신설	소로	3	가	4	국지 도로	93 (93)	사당동 318-122	사당동 318-10	일반 도로	-	사당로 18길

※ ( )는 정비계획구역 내 연장이며, 정비계획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2	중로 2-12	• 구역내 도로 확폭 : 폭원 8m → 8~16m	• 본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확폭
소로 3-71	소로 3-71	• 구역내 도로 확폭 : 폭원 6m → 6~10m	• 본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확폭
소로 3-74	소로 3-74	• 구역내 도로 확폭 : 폭원 6m → 6~10m	• 본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확폭
-	소로 3-가	• 노선 신설 : 폭원 4m	• 사당시장으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신설

2)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공영 주차장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감) 1,274	1,295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3.3.9.)	•기정) 중복결정 - 지상1~7층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 주차장 •변경) 입체적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1,295㎡은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 1층	지하 1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295	1,295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주차장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이며, 향후 건축허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차장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허가 시 확정하며, 주차장은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됨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공영주차장)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1,295㎡ - 수평투영면적 : 1,295㎡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공공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입체적 결정

3)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제2청사 민원센터, 보건지소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감) 1,082	1,487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3.3.9.)	•기정) 중복결정 - 지상1~7층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 주차장 •변경) 입체적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1,487㎡은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 1층, 지상1~2층	지하 1층, 지상1~2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487	1,487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이며, 향후 건축허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허가 시 확정하며, 공공청사는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됨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제2청사 민원센터, 보건지소)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지상1~2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2,091㎡ - 수평투영면적 : 1,487㎡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공공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입체적 결정

4)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치매안심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어르신 종합복지관	실버케어센터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감) 1,268	1,301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3.3.9.)	•기정) 중복결정 - 지상1~7층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 주차장 •변경) 입체적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1,301㎡은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1층, 지상3~4층	지하1층, 지상3~4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301	1,301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이며, 향후 건축허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허가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 (대지지분 포함) 됨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실버케어센터)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지상3~4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1,446㎡ - 수평투영면적: 1,301㎡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공공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입체적 결정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계획면적(㎡)	비고
신설	주민공동시설	휘트니스센터	사당동 318-99번지 일원	192.8	지상3층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10,677.7㎡	획지	7,568.6㎡	동작구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6	-	-	26	-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상한		
신설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10,677.7	획지	7,568.6	사당동 318-99 일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 등	60 이하	217.1	500.0	125m이하 (37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271세대(임대주택 포함)

- 공동주택 건립규모 및 비율(전용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합계		271	100.0	-
85㎡ 이하	소계	238	87.8	-
	60㎡ 미만	88	32.5	임대주택 28세대 포함
	60~85㎡ 이하	150	55.3	임대주택 18세대 포함
85㎡ 초과		33	12.2	-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7.8%
- 공동주택 내 임대주택 건설계획(전용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합계		46	100.0	-
85㎡ 이하	40㎡ 미만	12	26.1	재개발의무임대주택 12세대
	40~60㎡ 미만	16	34.8	재개발의무임대주택 2세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임대주택 14세대
	60~85㎡ 이하	18	39.1	역세권활성화사업 임대주택 18세대

완화사항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도로 제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도로변 : 3m

• 저층부 벽면 한계선

- 공공보행통로변 양측 1m(지상 1~3층에 한하여 적용하되, 브릿지는 제외)
- 사당로16길변 내측 1m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상한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사당로18길에 접한 변 일부 구간을 차량 교행을 위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 폭 6m 이상(단,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8m 이상) • 공개공지 - 위치지정 : 대상지 북측, 서측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위치 지정)										
기타	• 주변 건축물 높이를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및 세부개발계획 참고

2) 공공기여(순부담) 검토

○ 현 용도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상한용적률 500% 적용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근린상업지역(30%),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25%)로 총량 설정

○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에 따라 부지 면적 3천㎡ 미만의 경우 5% 적용하여 1.70% 확보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순부담 계획 : 현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 종상향에 대한 공공기여량을 가중평균 적용하여 28.29% 이상 확보

3)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적률 기준 및 증가 용적률 산정

구분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증가용적률(%)
	종전	변경		용도지역별	가중평균	
기준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근린상업지역	4,979.4	200.0	217.10	282.9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89.2	250.0		
상한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근린상업지역	4,979.4	5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89.2			

4) 공공기여율

구분		용도지역 상향면적		획지면적(㎡)	증가용적률 50%	공공기여 면적		공공기여율
		종전	변경					
획지	기준	제2종	근린상업	4,979.4	150%(300X50%)	1,493.82㎡(150%÷500%×4,979.4㎡)	2,269.57㎡	29.99%(2,269.57÷7,568.6㎡)
		제3종		2,589.2	125%(250X50%)	647.30㎡(120%÷500%×2,589.2㎡)		
		시설 폐지		-		128.45㎡(2,569.0㎡x5%)		
	계획	-		-		2,312.51㎡		30.55%(2,312.51÷7,568.6㎡)

※ 공공기여 면적은 용도지역 상향 면적(획지)에 대한 공공기여량 + 기존 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량의 합을 말함

5) 공공기여율 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사업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A)	공공시설면적(㎡)(B=나+다)	현금 기부채납(㎡)	무상양도 국·공유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C)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D)
		10,677.7	7,568.6	3,109.1	1,932.89	-	2,033.4	182.3
순부담		• 공공기여면적 : (가)정비기반시설 379.62㎡ + (나)공공임대주택 698.37㎡ + (다)지역필요시설 1,234.52㎡ = 2,312.51㎡ • 공공기여율 : 공공기여면적/대지면적 = 2,312.51㎡ / 7,568.6㎡ = 30.55% ≥ 29.99%						
정비기반시설	(가) 도로	• 계획 순부담 면적 : (A)3,109.1㎡ - (C)2,033.4㎡ - (D)182.3㎡ = 893.40㎡ • 가중치 적용 순부담면적 : 893.4㎡ × 0.4249 = 379.62㎡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12.46% / 500% = 0.4249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 = (670.8㎡ × 200% + 222.6㎡ × 250%) / 893.4㎡ = 212.46%						

구분			산정내용	
공공시설(B)	(나) 공공임대주택		• 대지지분 = 698.37㎡ 공공주택 연면적 / 전체연면적 × 대지면적 = 5,367.00㎡ / 58,164.32㎡ × 7,568.6㎡ = 698.37㎡	
	(다) 지역필요시설	공공청사(보건지소, 제2청사 민원센터)	① 대지지분 = 272.06㎡ - 시설연면적/전체연면적×대지면적 = 2,090.80㎡/58,164.32㎡×7,568.6㎡	② 건축물 환산부지 = 322.91㎡ = a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b : 탁상감정평가액주2)(원/㎡) = 6,942,466,415 / 21,500,000 a = [시설연면적(지상)×설치비용기준주1]+감리비+설계비] + [시설연면적(지하)×설치비용기준주1]+감리비+설계비]
		사회복지시설(실버케어센터)	① 대지지분 = 188.21㎡ - 시설연면적/전체연면적×대지면적 = 1,446.40㎡/58,164.32㎡×7,568.6㎡	② 건축물 환산부지 = 223.99㎡ = a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b : 탁상감정평가액주2)(원/㎡) = 4,815,816,889 / 21,500,000 a = [시설연면적(지상)×설치비용기준주1]+감리비+설계비] + [시설연면적(지하)×설치비용기준주1]+감리비+설계비]
		주차장(공영주차장)	① 대지지분 = 168.55㎡ - 시설연면적/전체연면적×대지면적 = 1,295.32㎡/58,164.32㎡×7,568.6㎡	② 건축물 환산부지 = 58.80㎡ = a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b : 탁상감정평가액주2)(원/㎡) = 1,264,104,089 / 21,500,000 a = [시설연면적(지상)×설치비용기준주1]+감리비+설계비] + [시설연면적(지하)×설치비용기준주1]+감리비+설계비]
		소계	1,234.51㎡	

※ 지상층 : 2024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준용(면세 적용 별도), 지하층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024,000원/㎡(면세 적용 별도)
※ 탁상감정평가금액(24.12.)(근린상업 21,500,000원/㎡)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공사시 사업부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 설치토록 유도 • 폐기물의 수거는 동작구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 사업시행시 건축물 내 피난시설(피난계단, 방화구획 등)의 확보 및 화재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간 확보 • 사업시행시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소화전 설치 • 수해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 • 사업시행시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반경 200m 이내 대상지 북동측 남성초등학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함 •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협의 후 반영하겠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10.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	7,568.6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7,568.6	-

11.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공공임대주택(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규모		세대수	비고
				전용	공급		
신규	획지	7,568.6	-	합계		32세대	-
				59.98㎡	88.54㎡	14세대	-
				84.98㎡	124.43㎡	6세대	84A
				84.99㎡	124.69㎡	6세대	84B
				84.99㎡	123.53㎡	6세대	84C

2) 공공임대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의무임대주택)

구분		확보기준		확보내용
세대수 기준		근린상업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 주택 건설	• 271세대 × 5% = 13.6세대(기준) ≦ 14세대(확보)
규모 기준	1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 14세대 × 30% = 4.2세대(기준) ≦ 12세대(확보)
	2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 271세대 × 5% = 13.6세대(기준) ≦12세대(미확보)

12.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	현황)112세대 증)159세대 계획)271세대	-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26	20	6	26	26	-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112	112	15	97	170	25	145	
단독주택	112	112	15	97	170	25	145	
공동주택	-	-	-	-	-	-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 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20	20	20	-	-	-	-	-	-	-
60㎡ 이하	소계	17	17	17	-	-	-	-	-	-	-
	30㎡ 이하	0	0	0	-	-	-	-	-	-	-
	30㎡ 초과 50㎡ 이하	6	6	6	-	-	-	-	-	-	-
	50㎡ 초과 60㎡ 이하	11	11	11	-	-	-	-	-	-	-
60㎡ 초과 85㎡ 이하		2	2	2	-	-	-	-	-	-	-
85㎡ 초과	소계	1	1	1	-	-	-	-	-	-	-
	85㎡ 초과 135㎡ 이하	1	1	1	-	-	-	-	-	-	-
	135㎡ 초과	0	0	-	-	-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으로 작성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일반분양 (조합원등)	공공주택			비고
				소계	재개발 의무	역세권 활성화사업	
합 계		271	225	46	14	32	-
60㎡ 이하	소 계	88	60	28	14	14	-
	40㎡ 이하	60	48	12	12	-	-
	40㎡~50㎡ 이하	-	-	-	-	-	-
	50㎡~60㎡ 이하	28	12	16	2	14	-
60㎡~85㎡ 이하		150	132	18	-	18	-

구분		계	일반분양(조합원등)	공공주택			비고
				소계	재개발 의무	역세권 활성화사업	
85㎡ 초과	소 계	33	33	-	-	-	-
	85㎡~115㎡ 이하	33	33	-	-	-	-
	115㎡ 초과	-	-	-	-	-	-

2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사당동 223-1번지 일대	110,966.8	증) 1,187.6	112,154.4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023.03.0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사당동 223-1번지 일대	면적 : 110,966.8㎡ → 112,154.4㎡ 증) 1,187.6㎡	남성역세권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0,966.8	증) 1,187.6	112,154.4	100.0	
주거지역	소 계	110,966.8	감) 6,381.0	104.585.8	93.3	
	제2종일반주거지역	7,976.2	감) 2,754.8	5,221.4	4.7	
	제3종일반주거지역	102,990.6	감) 3,626.2	99,364.4	88.6	
상업지역	소계	-	증) 7,568.6	7,568.6	6.7	
	근린상업지역	-	증) 7,568.6	7,568.6	6.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동작구 사당동 223-1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면적 감소 : 7,976.2㎡ → 5,551.4㎡ 감)2,754.8㎡ ※ 용도지역 변경 : 감)3,926.8㎡ ※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 증)1,172.0㎡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면적 증가) 반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감소 : 102,990.6㎡ →99,364.4㎡ 감)3,626.2㎡ ※ 용도지역 변경 : 감)3,641.8㎡ ※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 증)15.6㎡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면적 증가 : 0㎡ → 7,568.6㎡ 증)7,568.6㎡	

2)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1) 도로(변경)(안)

■ 도로 총괄표(기정)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1	6,936 (1,443)	139,432 (6,695)	-	-	-	7	3,822 (525)	45,176 (4,453)	4	3,114 (956)	94,156 (3,066)
대로	1	2,470 (725)	89,923 (1,794)	-	-	-	-	-	-	1	2,470 (725)	89,923 (1,794)
중로	2	1,430 (23)	25,905 (536)	-	-	-	2	2,160 (134)	32,605 (2,013)	-	-	-
소로	8	3,036 (695)	23,504 (4,365))	-	-	-	5	1,662 (391)	12,571 (2,440)	3	644 (231)	4,233 (1,272)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4	7,280 (1,700)	141,898 (8,710)	-			7	3,822 (525)	45,176 (4,453)	7	3,458 (1,175)	96,722 (4,257)
대로	1	2,470 (725)	89,923 (1,794)	-			-	-	-	1	2,470 (725)	89,923 (1,794)
중로	3	2,160 (134)	32,605 (2,013)	-			3	2,160 (134)	32,605 (2,013)	-	-	-
소로	10	2,650 (841)	19,370 (4,903)	-			4	1,662 (391)	12,571 (2,440)	6	988 (450)	6,799 (2,463)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구분)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81	24~41.5	보조간선도로	2,470	상도동 (숭실대)	사당동 1001-31	일반 도로	-	건고시 제1971-198 (71.4.7.)	사당로
기정	중로	2	ㄱ	8~25	집산도로	1,040	사당동 323-1	사당동 산22-21	일반 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사당로23길
기정	중로	2	1	18	국지도로	390	사당동 708	사당동 263-6앞	일반 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사당로17길
기정	소로	3	61	6	국지도로	150	사당동 250-3	사당동 산32-4	일반 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사당로12길

구분	규 모				기능 (구분)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2	6	국지도로	460	사당동 254-3	사당동 292-43	보행자 우선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사당로14길
기정	소로	3	-	6~8	국지도로	34	사당동 324	사당동 324	일반 도로	-	서울시제171호 (79.4.25.)	-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16	사당동 267-28	사당동 250-4	보행자 우선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사당로14가길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760	사당동 266	사당동 204	보행자 우선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사당로16가길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46	사당동 246	사당동 232	일반 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사당로10길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8-99	일반 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사당로16길
변경	중로	2	12	8~16	국지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8-9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640	사당동 318-1	사당동 43-5	일반 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사당로20길
기정	소로	3	71	6	국지도로	105	사당동 708-1143	사당동 708-529	일반 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사당로20가길
변경	소로	3	71	6~10	국지도로	105	사당동 708-1143	사당동 708-52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74	6	국지도로	146	사당동 321-109	사당동 318-3	일반 도로	-	서울시 제54호 (73.4.25.)	
변경	소로	3	74	6~10	국지도로	146	사당동 321-109	사당동 318-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가	4	국지도로	93	사당동 318-122	사당동 318-10	일반 도로	-	-	사당로18길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2	중로 2-12	구역내 도로 확폭 : 폭원 8m → 8~16m	본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확폭
소로 3-71	소로 3-71	구역내 도로 확폭 : 폭원 6m → 6~10m	본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확폭
소로 3-74	소로 3-74	구역내 도로 확폭 : 폭원 6m → 6~10m	본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확폭
-	소로 3-가	노선 신설 : 폭원 4m	사당 시장으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신설

2) 철도 : 변경 없음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남성정거장 (7호선)]	동작구 사당동 250번지 일대	6,432 (6,055)	-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도봉구 도봉동 16 일대~ 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광명시 구간 제외)	B=10~30m L=43.76㎞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3)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공영 주차장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감) 1,274	1,295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3.3.9.)	•기정) 중복결정 - 지상1~7층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 주차장 •변경) 입체적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1,295㎡은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 1층	지하 1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295	1,295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주차장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이며, 향후 건축허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차장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허가 시 확정하며, 주차장은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됨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공영주차장)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 면면적 : 1,295㎡ - 수평투영면적 : 1,295㎡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공공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입체적 결정

4)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제2청사 민원센터, 보건지소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감) 1,082	1,487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3.3.9.)	•기정) 중복결정 - 지상1~7층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 주차장 •변경) 입체적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1,487㎡은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의 규모 결정조서(공공청사)

구분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폐지	공공청사	60%이하	400%이하	40m이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폐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 1층, 지상1~2층	지하 1층, 지상1~2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487	1,487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이며, 향후 건축허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허가 시 확정하며, 공공청사는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됨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제2청사 민원센터, 보건지소)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지상1~2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2,091㎡ - 수평투영면적 : 1,487㎡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공공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입체적 결정

5)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치매안심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어르신 종합복지관	실버케어센터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감)1,268	1,301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3.3.9.)	•기정) 중복결정 - 지상1~7층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 주차장 •변경) 입체적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1,301㎡은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의 규모 결정조서(사회복지시설)

구분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폐지	사회복지시설	60%이하	400%이하	40m이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폐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 복지 시설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1층, 지상3~4층	지하1층, 지상3~4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301	1,301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이며, 향후 건축허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허가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 (대지지분 포함) 됨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실버케어센터)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지상3~4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1,446㎡ - 수평투영면적: 1,301㎡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공공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입체적 결정

6) 시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시장	사당동 318-8, 318-18, 318-17	998	-	-	서고 제1972-65호 (' 72. 5. 26.)	시장시설 용지

■ 건축물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m)	최초 결정일	비고
-	50	250	25	서고 제1972-65호 (' 72. 5. 26.)	시장시설 용지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최대개발규모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최대 개발 규모	간선부	1,000㎡ 이하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 ※ 기존 필지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및 공동개발 지정·권장이 지정된 경우는 적용 제외	평균 필지 규모 약 5배 이하
	이면부	500㎡ 이하		평균 필지 규모 약 3배 이하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공동개발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도면표기	기 개발된 동일소유자 필지 및 맹지	17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23개소)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간선부적정규모 개발 유도(과소필지, 부정형 필지 등 단독 개발 불가 필지)	27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30개소)
자율적 공동개발	전체구역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대지와 연접한 대지의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자율적 공동개발은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	-

※ 단, 맹지로 인한 공동개발(지정)의 경우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 도서」 참조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건축물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대지 안의 공지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사당로변	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한계선에 의해 대지 전면에 형성되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주차장, 담장, 화단 등 통행 방해물 설치 금지)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보행자 통행이 원활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접하는 보도와 유사한 재료 사용)	규제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0	증) 8,108.7	10,677.7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 구역명 변경 - 기정 :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 변경 :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면적 : 2,569.0㎡ → 10,677.7㎡ 증) 8,108.7㎡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대상지 일대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구역명 및 구역계 변경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안)

구분		기정	변경(안)	
구역명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구역면적		2,569.0㎡	10,677.7㎡	
용도지역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준주거지역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근린상업지역	
공공시설	기반시설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 시설, 주차장) 신설 및 중복결정(2,569㎡) -지상 : 공공청사(신설), 사회복지시설(신설) 지상 1~7층 -지하 : 주차장 지하 1~2층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상 : 공공청사 지상1~2층, 사회복지시설 지상 3~4층 -지하 : 주차장 지하 1층	
	도로	-	대상지 일대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구역 동측, 서측 및 남측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	지상1층 (연면적의 50%이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동물 병원, 부동산중개 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

구분		기정	변경(안)	
			지상2층 (연면적의 50%이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체육도장, 보건소, 금융업소, 동물병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체력단련장, 놀이형시설, 금융업소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

구분		기정	변경(안)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 -제8호 운수시설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락시설 -제17호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8호 장례시설 -제29호 야영장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이하	60%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	기준(허용) : 217.10% 이하
	상한용적률	400%이하	500% 이하
	최고높이	40m이하	125m 이하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변 3m	도로변 3m
	저층부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변 양측 1m (지상1~3층에 한하여 적용하되, 브릿지는제외) 사당로16길에 접한 변 1m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위치권장 : 대상지 북측(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위치 권장) 공공보행통로 : 폭 4m이상(사당동318-102, 318-105) (단,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이상)	공개공지 -위치지정 : 대상지 북측, 서측(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위치 지정) 공공보행통로: 폭 6m이상 (단,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8m이상)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부속형 전면 공지로

			조성 -사당로18길에 접한 변 일부 구간을 차량 교행을 위해 차도부속형 전면 공지로 조성
	기타	주변건축물 높이를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보건지소는 별도의 출입이 가능한 보행동선계획 수립할 것(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주변건축물 높이를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최소 55대 이상 등 생활지원서비스시설 확보 차량 진·출입구 설치시 동일 도로면에 2개소 이상 설치 불가 (단, 진·출입구 분리 설치시 허용) 사당로 및 사당로16길 일부 구간 차량출입불허 구간 결정	차량 진·출입구 설치시 동일 도로면에 2개소 이상 설치 불가 (단, 진·출입구 분리 설치시 허용) 사당로 일부 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 사당로18길 일부 구간 보행자우선도로 계획
공공시설 제공비율		-	획지면적의 29.99% 이상 - 역세권활성화사업운영기준 의무 공공기여율 : 28.29% 이상 - 시설폐지·복합화 시 공공기여율 : 1.70% 이상 (당초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5%)

2)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 변경 없음

3 사당로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0	증) 8,108.7	10,677.7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 구역명 변경 - 기정 :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 변경 :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면적 : 2,569.0㎡ → 10,677.7㎡ 증) 8,108.7㎡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대상지 일대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구역명 및 구역계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0,677.7	100.0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3,109.1	29.1	
획지		7,568.6	70.9	

2)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677.7	-	10.677.7	100.0	
주거지역	소 계	10,677.7	감) 7,568.6	3,109.1	29.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7,035.9	감) 3,926.8	3,109.1	29.1	
	제3종일반주거지역	3,641.8	감) 3,641.8	-	-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소 계	-	증) 7,568.6	7,568.6	70.9	
	근린상업지역	-	증) 7,568.6	7,568.6	70.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근린상업지역	4,979.4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합리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2,589.2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52.6	

나)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8-9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6길
변경	중로	2	12	8~16	국지 도로	730 (111)	사당동 266-7	사당동 308-9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길
기정	소로	3	71	6	국지 도로	105	사당동 708-1143	사당동 708-52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20가길
변경	소로	3	71	6~10	국지 도로	105 (70)	사당동 708-1143	사당동 708-52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20가길
기정	소로	3	74	6	국지도로	146	사당동 321-109	사당동 318-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20가길
변경	소로	3	74	6~10	국지도로	146 (56)	사당동 321-109	사당동 318-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20가길
신설	소로	3	가	4	국지 도로	93 (93)	사당동 318-122	사당동 318-10	일반 도로	-	사당로 18길

※ ( )는 정비계획구역 내 연장이며, 정비계획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2	중로 2-12	• 구역내 도로 확폭 : 폭원 8m → 8~16m	• 본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확폭
소로 3-71	소로 3-71	• 구역내 도로 확폭 : 폭원 6m → 6~10m	• 본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확폭
소로 3-74	소로 3-74	• 구역내 도로 확폭 : 폭원 6m → 6~10m	• 본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확폭
-	소로 3-가	• 노선 신설 : 폭원 4m	• 사당시장으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신설

나)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공영 주차장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감) 1,274	1,295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3.3.9.)	•기정) 중복결정 - 지상1~7층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 주차장 •변경) 입체적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1,295㎡은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 1층	지하 1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295	1,295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주차장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이며, 향후 건축허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차장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허가 시 확정하며, 주차장은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됨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공영주차장)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1,295㎡ - 수평투영면적 : 1,295㎡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공공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입체적 결정

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제2청사 민원센터, 보건지소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감) 1,082	1,487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3.3.9.)	•기정) 중복결정 - 지상1~7층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 주차장 •변경) 입체적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1,487㎡은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 1층, 지상1~2층	지하 1층, 지상1~2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487	1,487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이며, 향후 건축허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허가 시 확정하며, 공공청사는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됨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제2청사 민원센터, 보건지소)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지상1~2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2,091㎡ - 수평투영면적 : 1,487㎡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공공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입체적 결정

라)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치매안심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어르신 종합복지관	실버케어센터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감) 1,268	1,301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3.3.9.)	•기정) 중복결정 - 지상1~7층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 주차장 •변경) 입체적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1,301㎡은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1층, 지상3~4층	지하1층, 지상3~4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301	1,301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이며, 향후 건축허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허가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동작구에 기부채납 (대지지분 포함) 됨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실버케어센터)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지상3~4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1,446㎡ - 수평투영면적: 1,301㎡	•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공공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입체적 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	7,568.6	사당동 318-99번지 일원	7,568.6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불허용도

구분	세부용도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 -제8호 운수시설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락시설 -제17호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8호 장례시설 -제29호 야영장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 지정용도

구분	위치	용도	세부용도
지정용도	지상1층 (연면적의 50%이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동물병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구분	위치	용도	세부용도
지정용도	지상2층 (연면적의 50%이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체육도장, 보건소, 금융업소, 동물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체력단련장, 놀이형시설, 금융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

■ 건폐율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60% 이하	좌동	

■ 용적률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기준(허용) / 상한 용적률 : 217.0% 이하 / 500% 이하	좌동	

■ 용적률 산정

구분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증가용적률(%)
	종전	변경		용도지역별	가중평균	
기준(허용)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근린상업지역	4,979.4	200.0	217.10	282.9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89.2	250.0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근린상업지역	4,979.4	5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89.2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기준 적용

■ 높이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최고높이	125m 이하	좌동	

다) 건축물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한계선 · 벽면한계선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좌동	
저층부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변 양측 1m (지상 1~3층에 한하여 적용하되, 브릿지는 제외) • 사당로 16길에 접한 변 1m	좌동	

■ 대지 안의 공지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개공지	• 위치지정 : 대상지 북측, 서측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위치 지정)	좌동	
공공보행통로	• 폭 6m 이상 ※ 단,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8m 이상	좌동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사당로18길에 접한 변 일부 구간을 차량 교행을 위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좌동	

※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의 지상 · 지하부에 대해 준공시 건축물 대장에 유지관리 동의서를 기재한다.
※ 공공보행통로 관련 지상권 또는 지역권 설정에 동의토록한다

■ 기타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물 등에 관한사항	• 주변건축물 높이를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좌동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타사항	• 차량 진 · 출입구 설치시 동일 도로면에 2개소 이상 설치 불가 (단, 진 · 출입구 분리 설치시 허용) • 사당로 일부 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 • 사당로18길 일부 구간 보행자우선도로 계획	좌동	

○ 관련도서: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 기타사항

가. 기타 관련사항은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도서」에 따름

나. 관련 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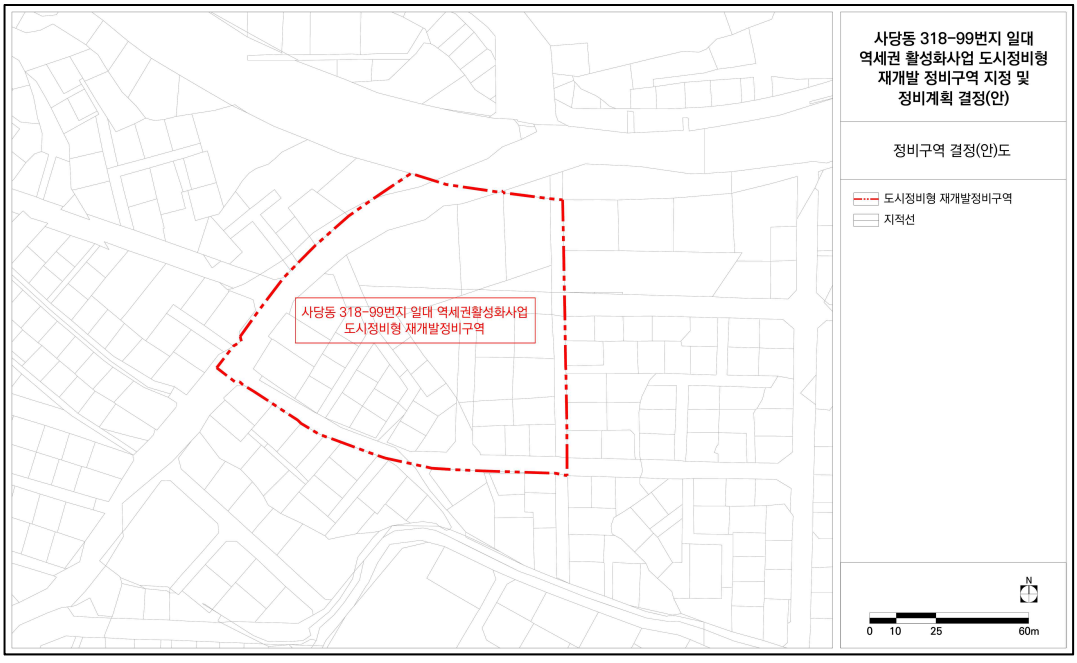
: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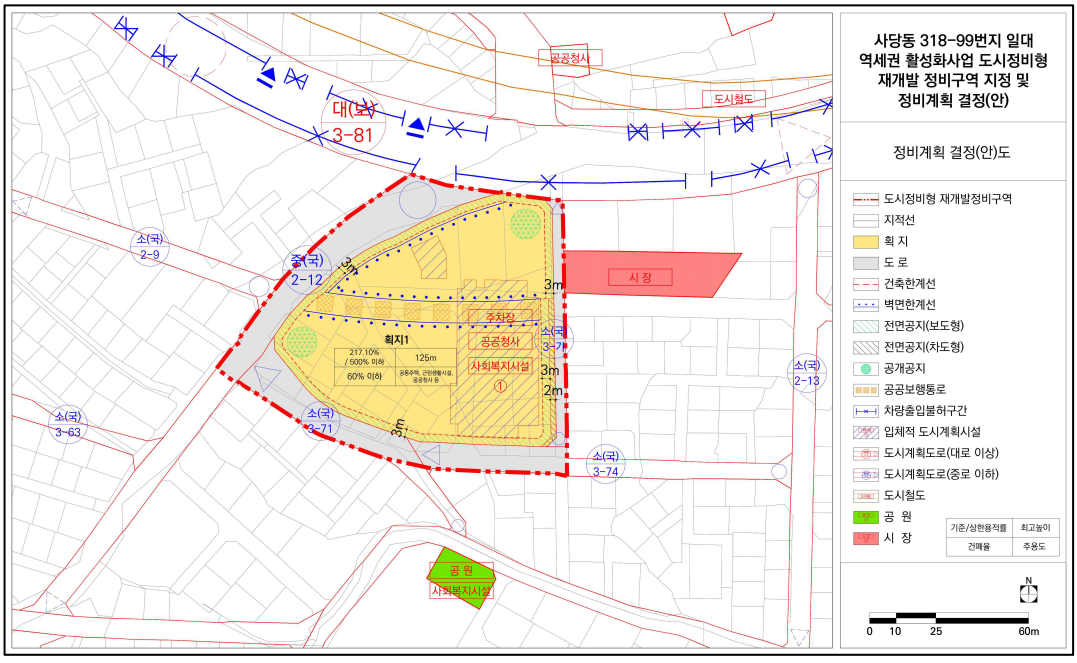
다.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도서는 향후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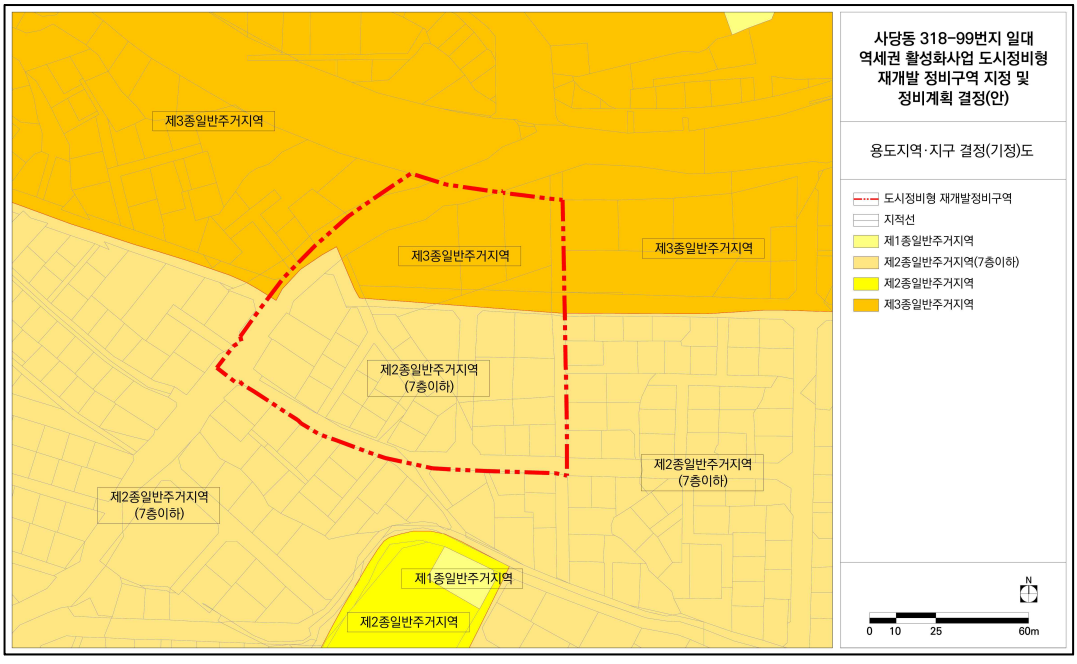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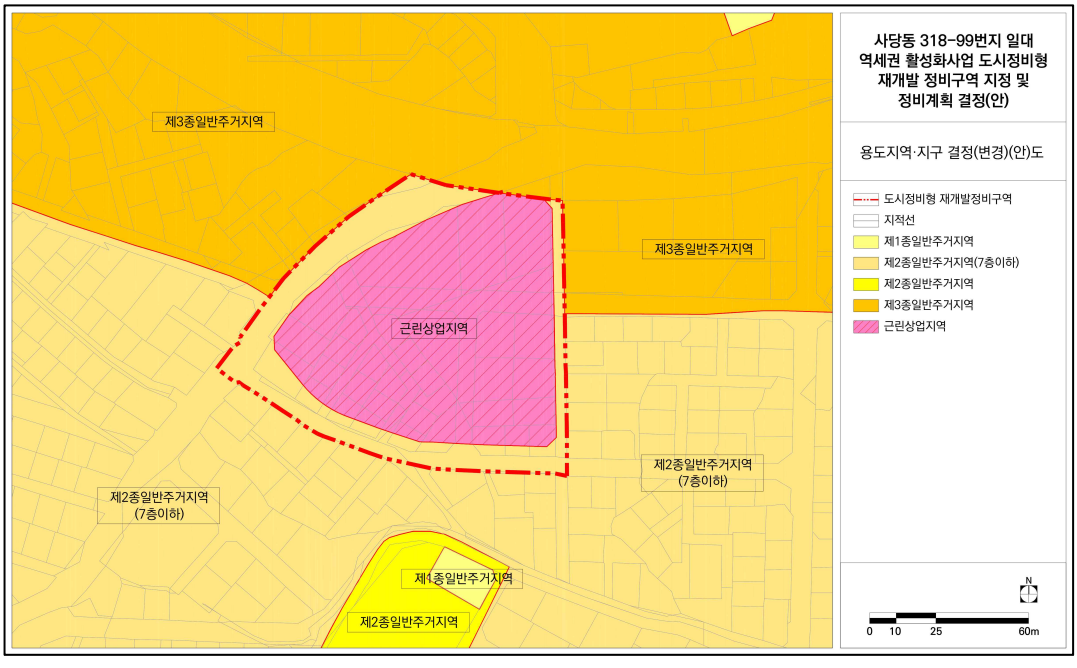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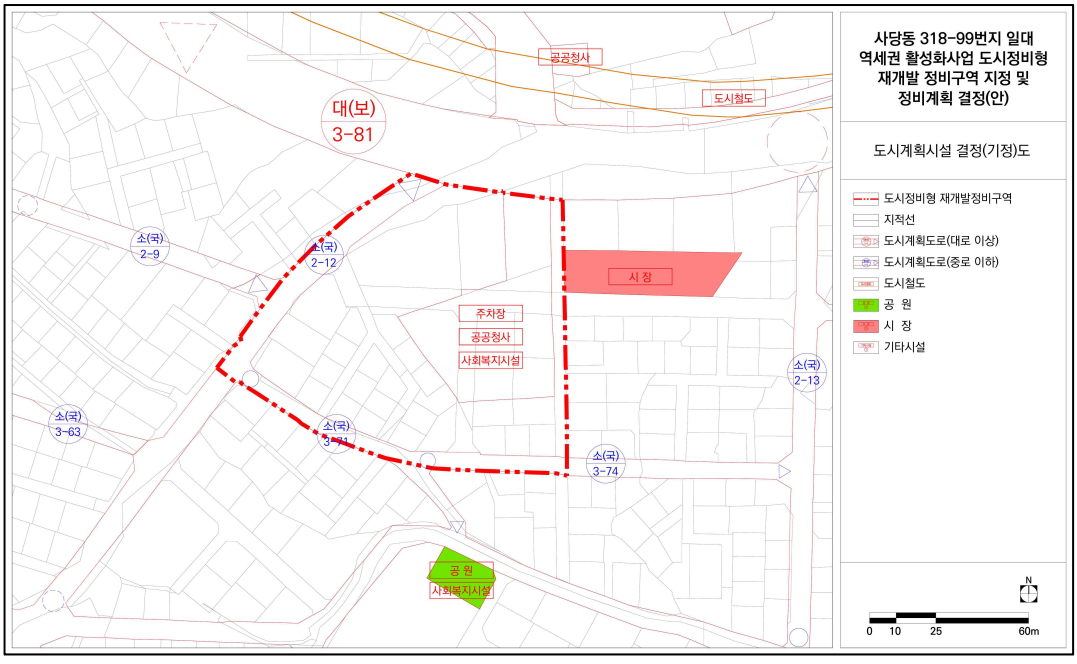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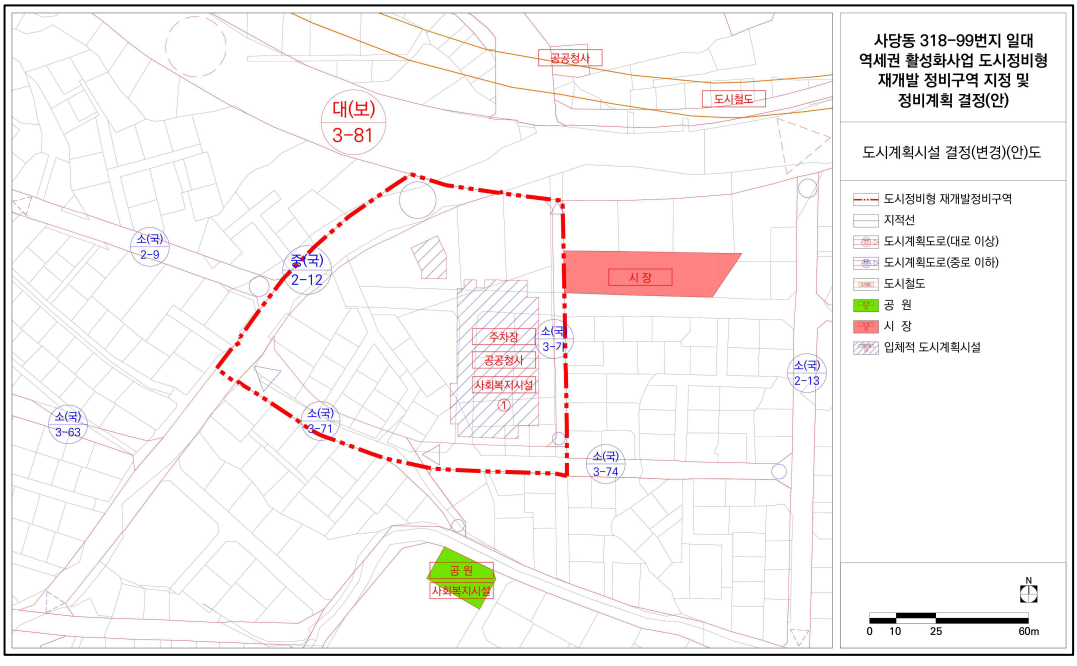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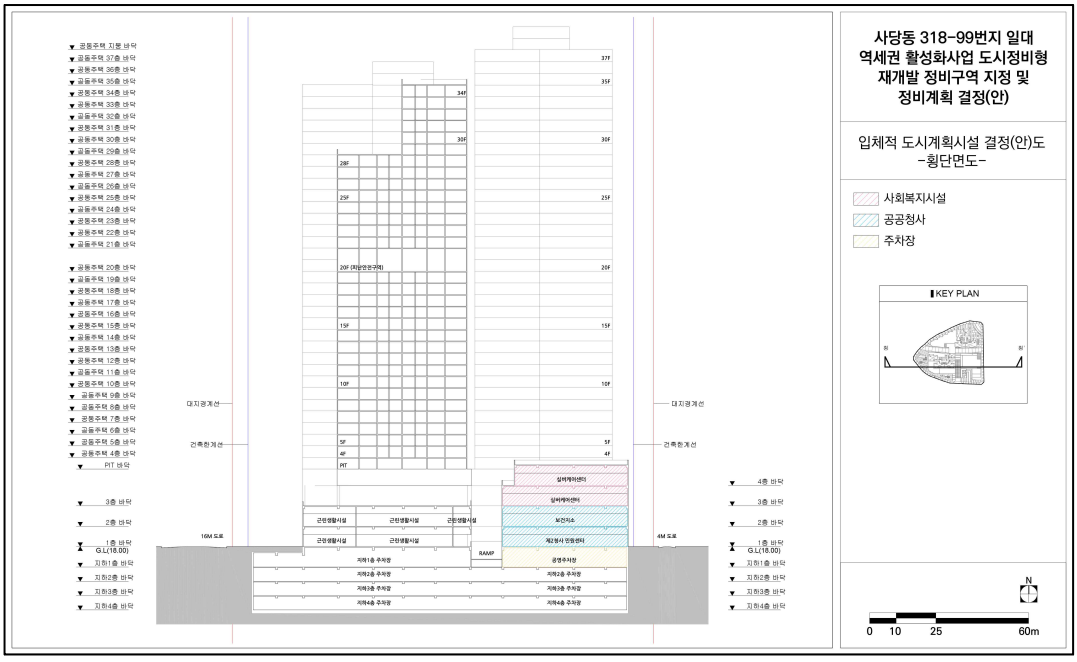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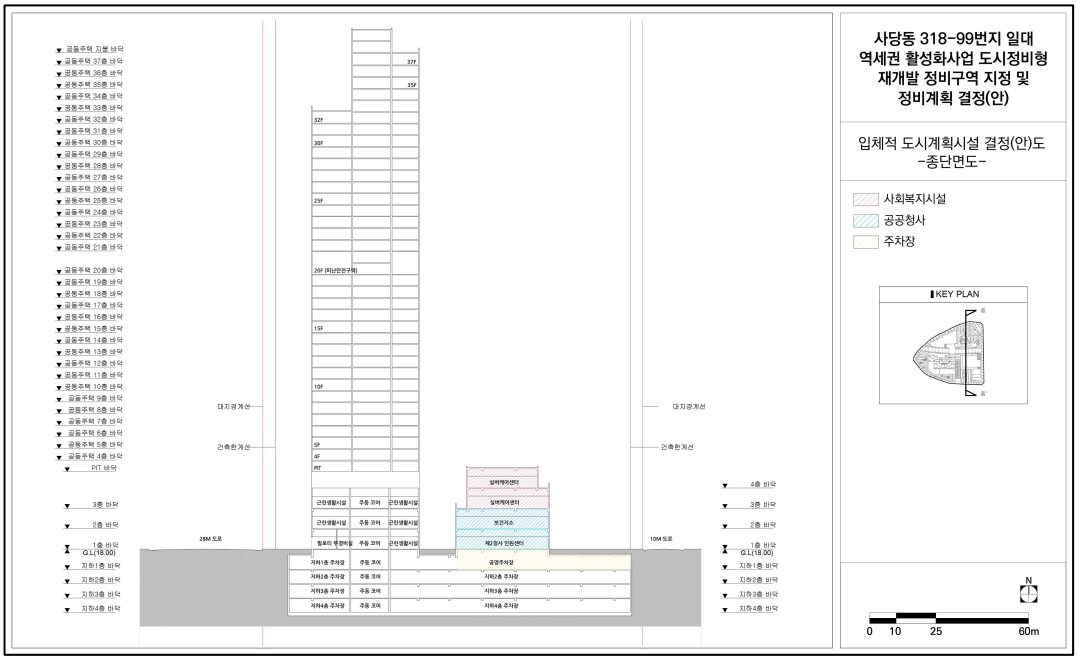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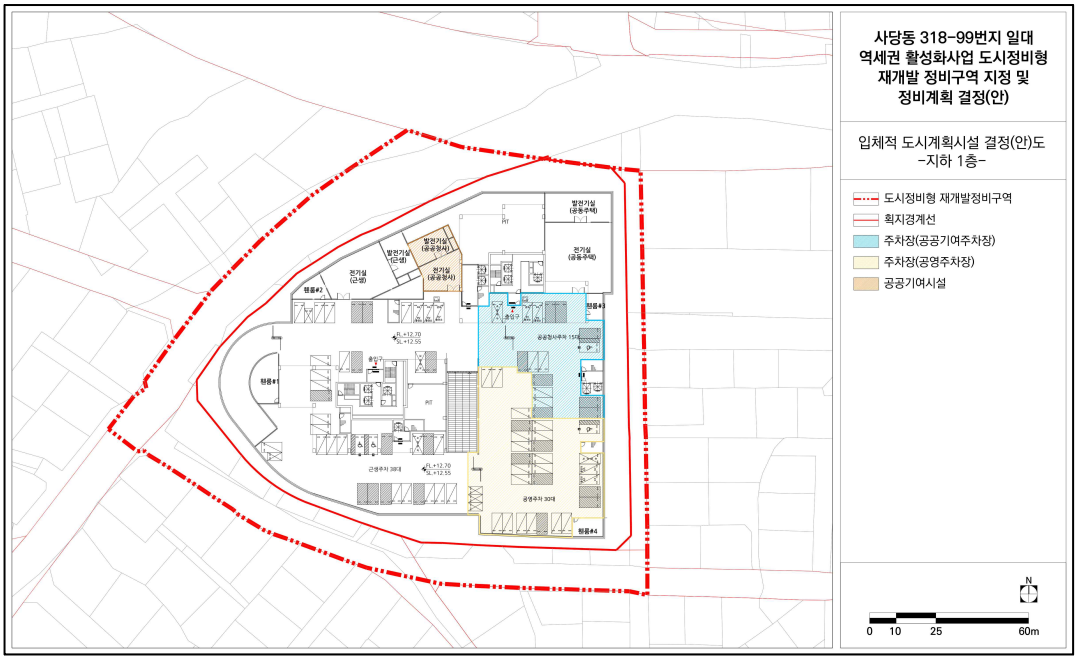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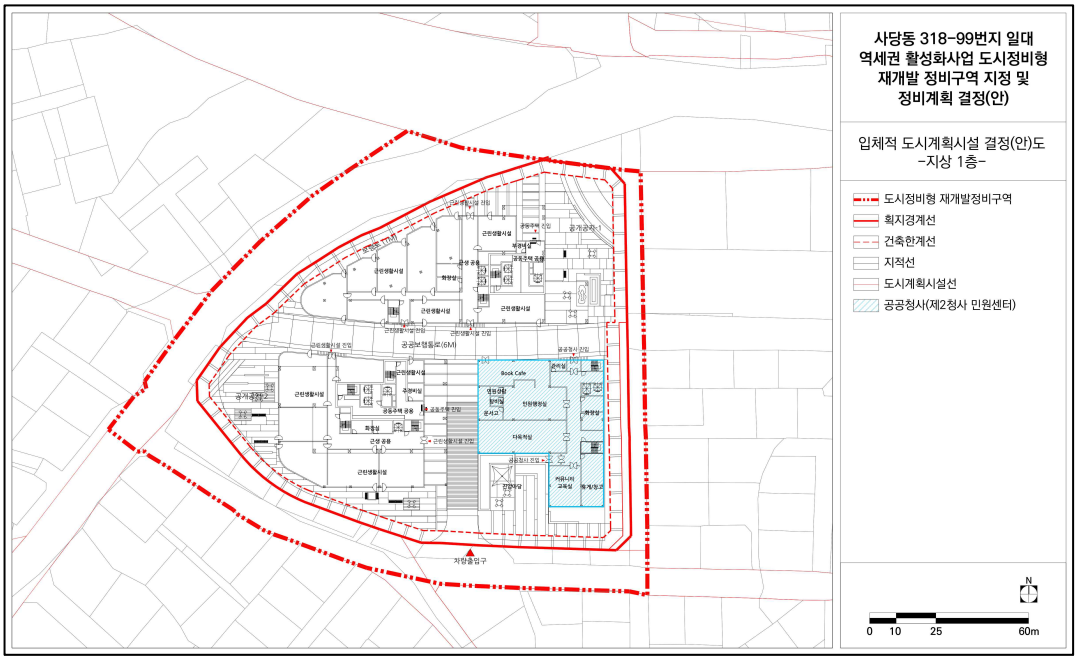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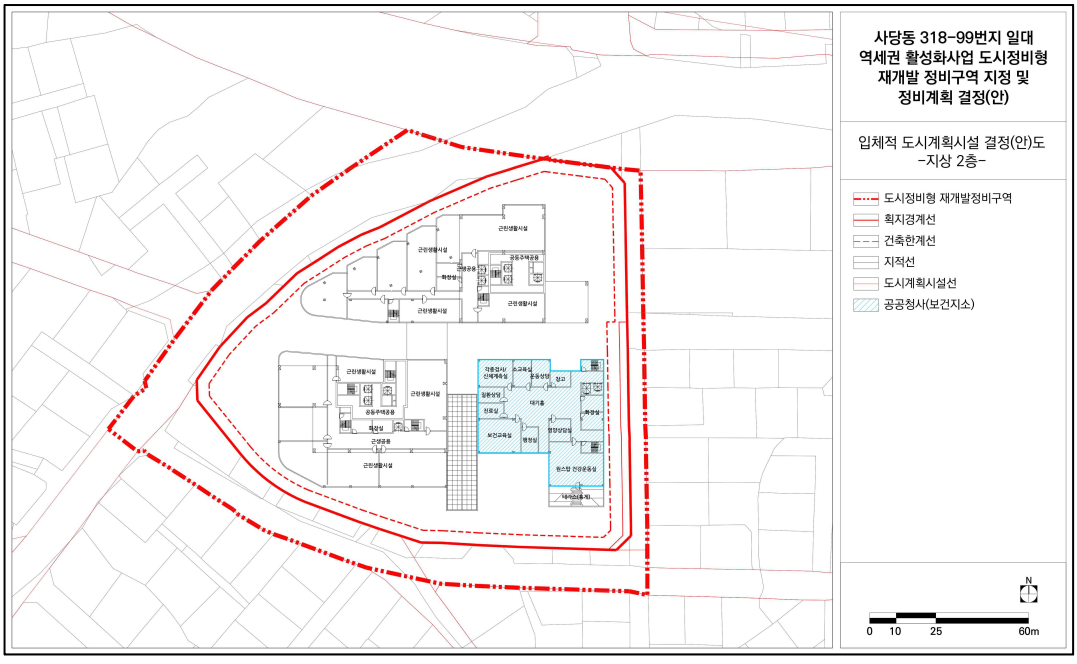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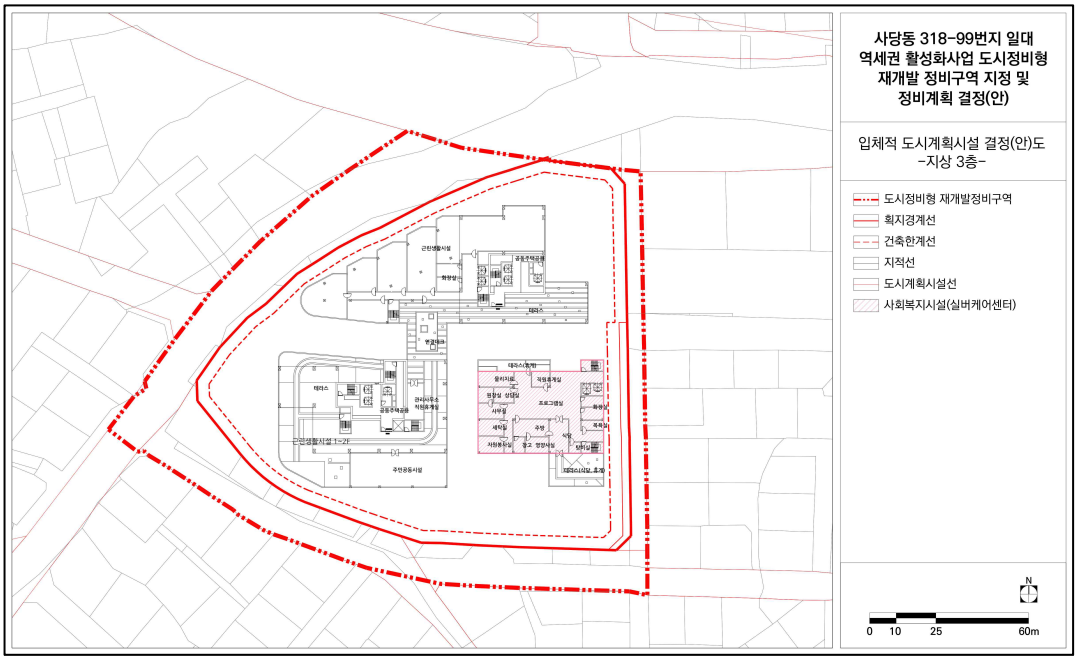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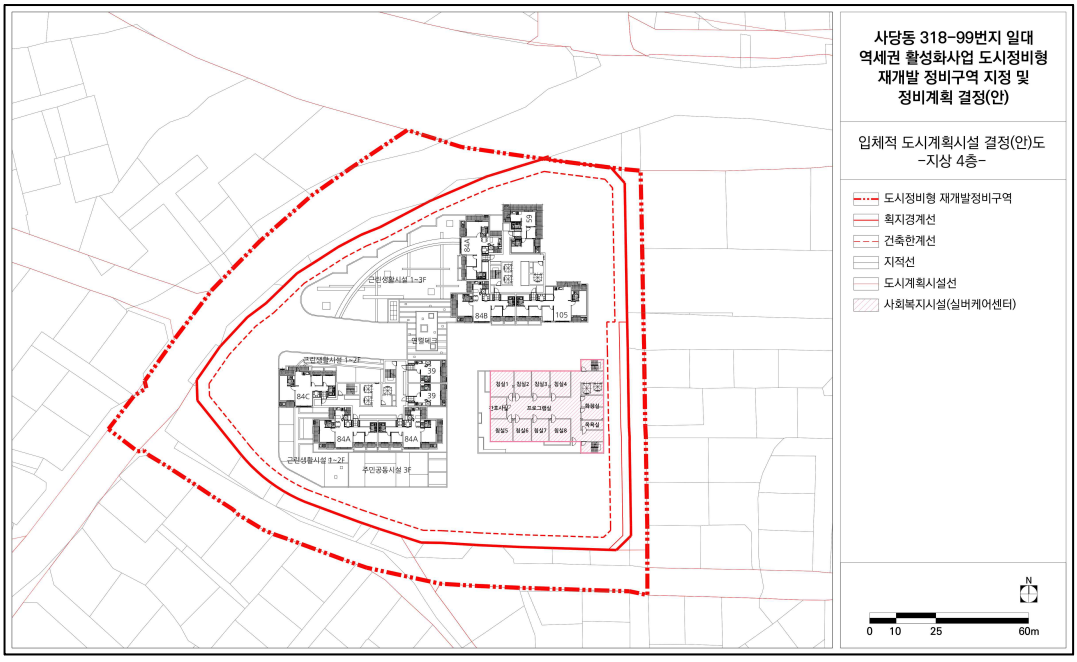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2층 평면도]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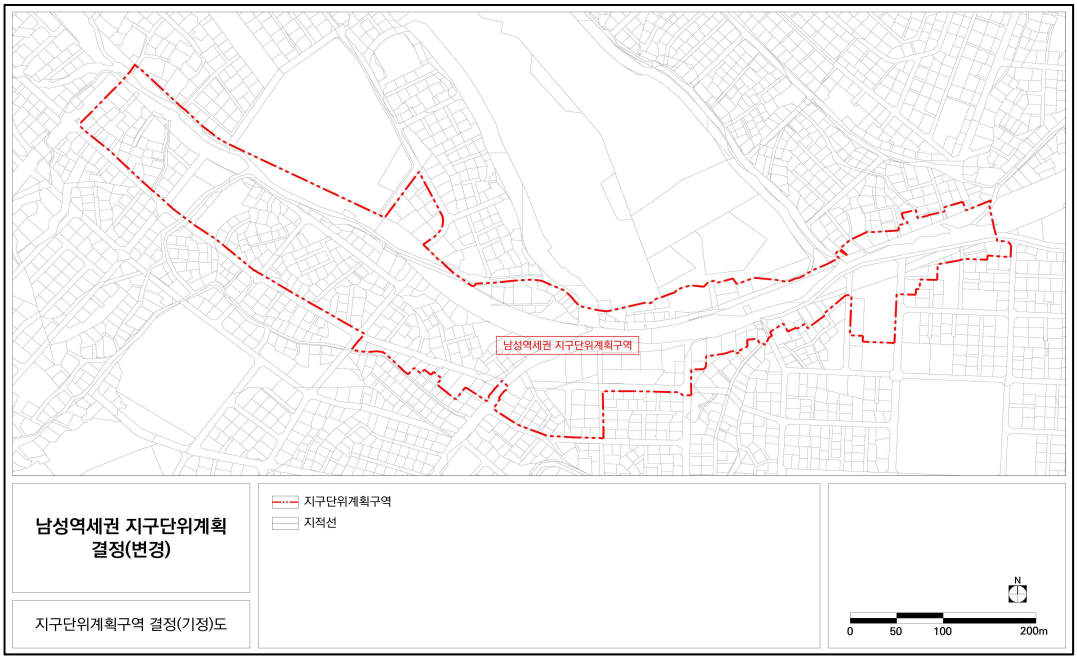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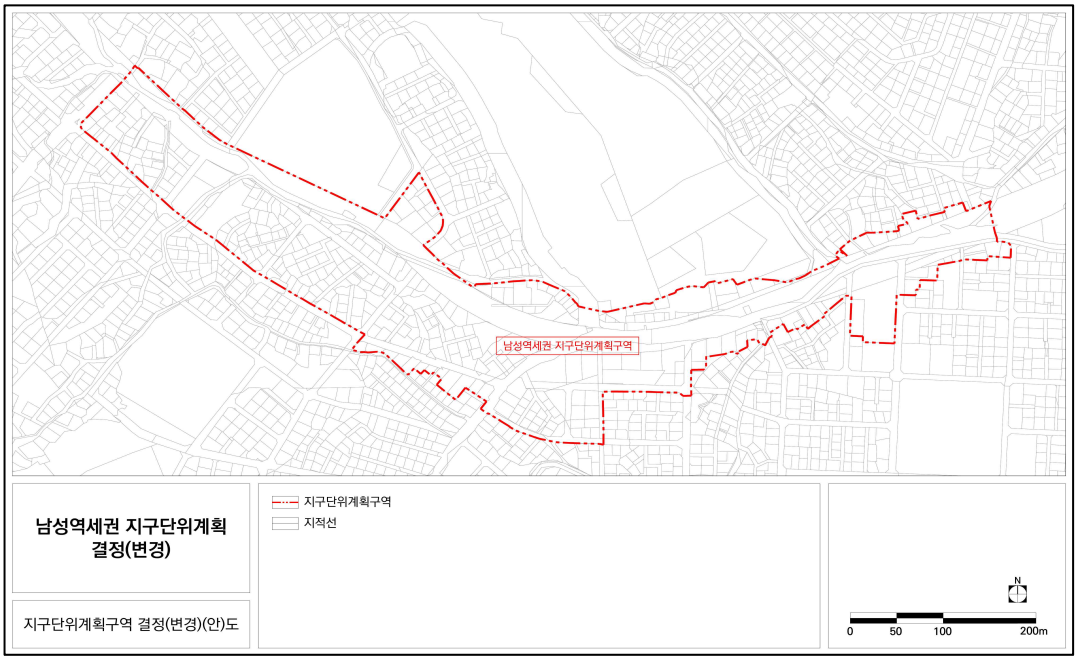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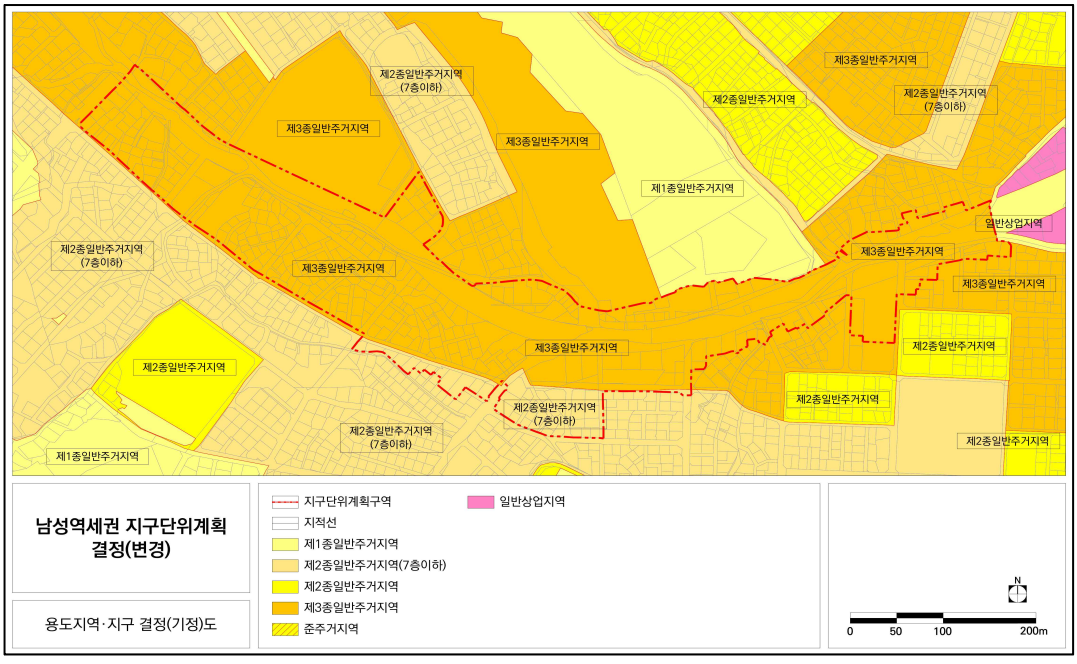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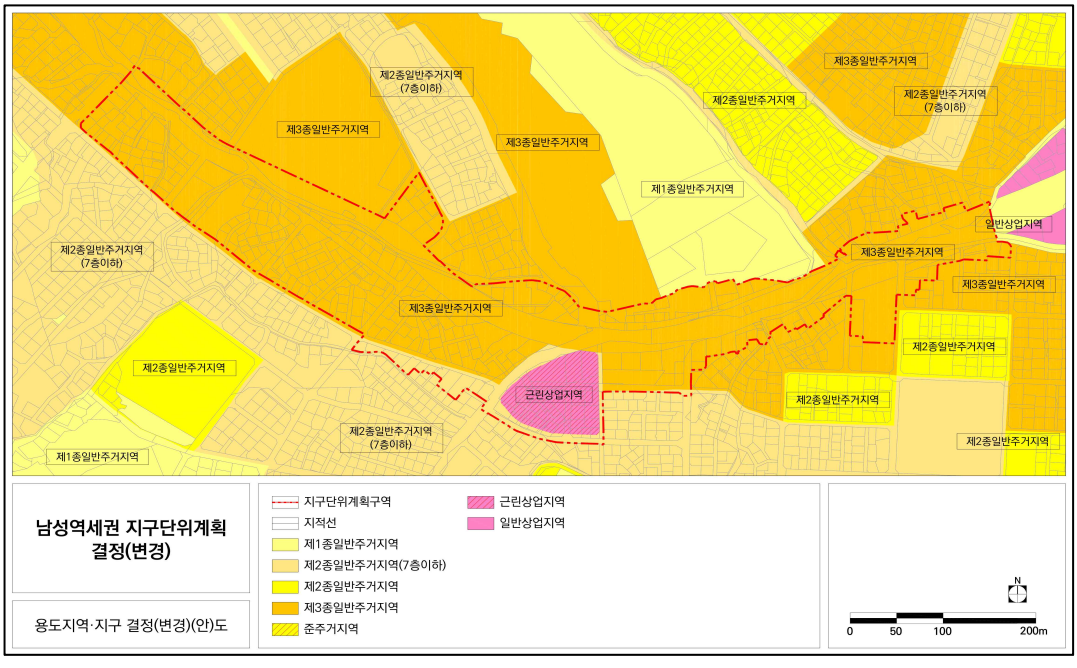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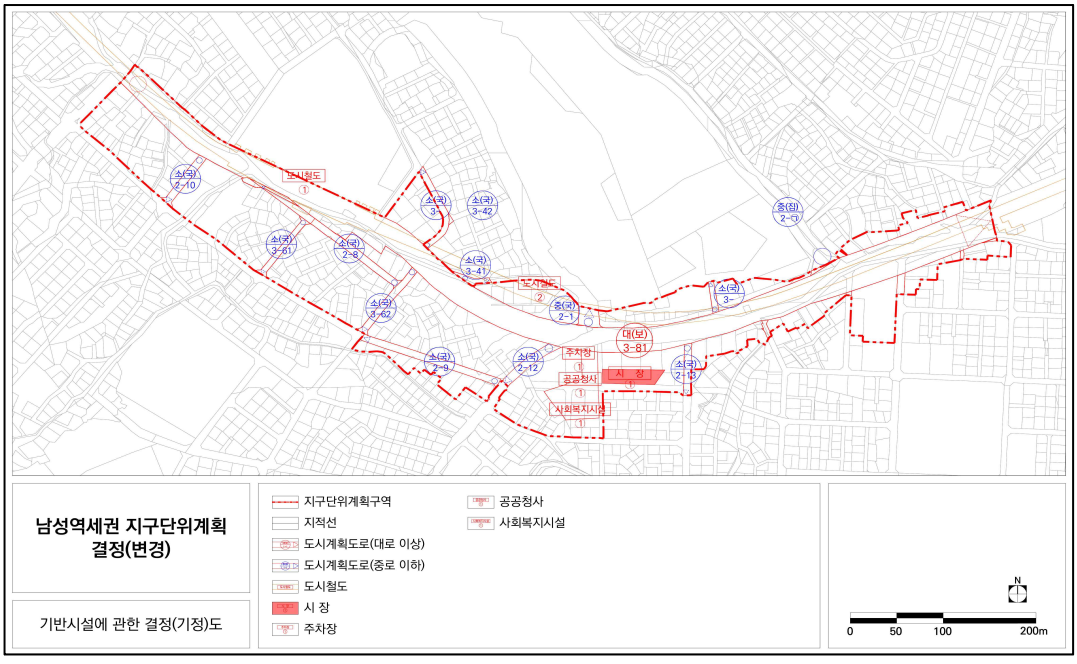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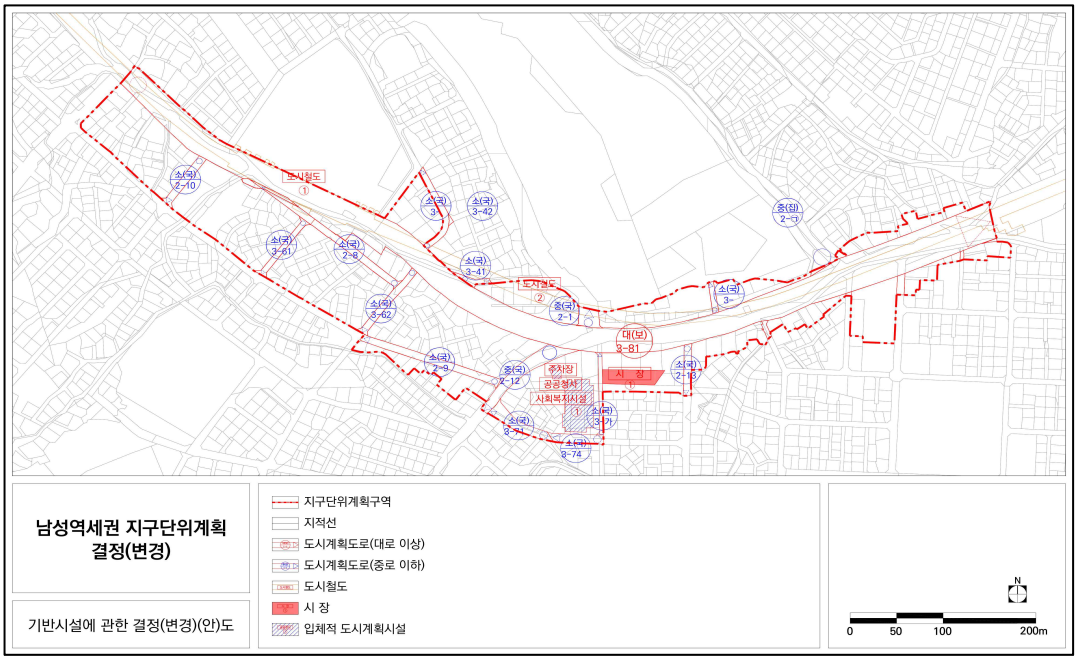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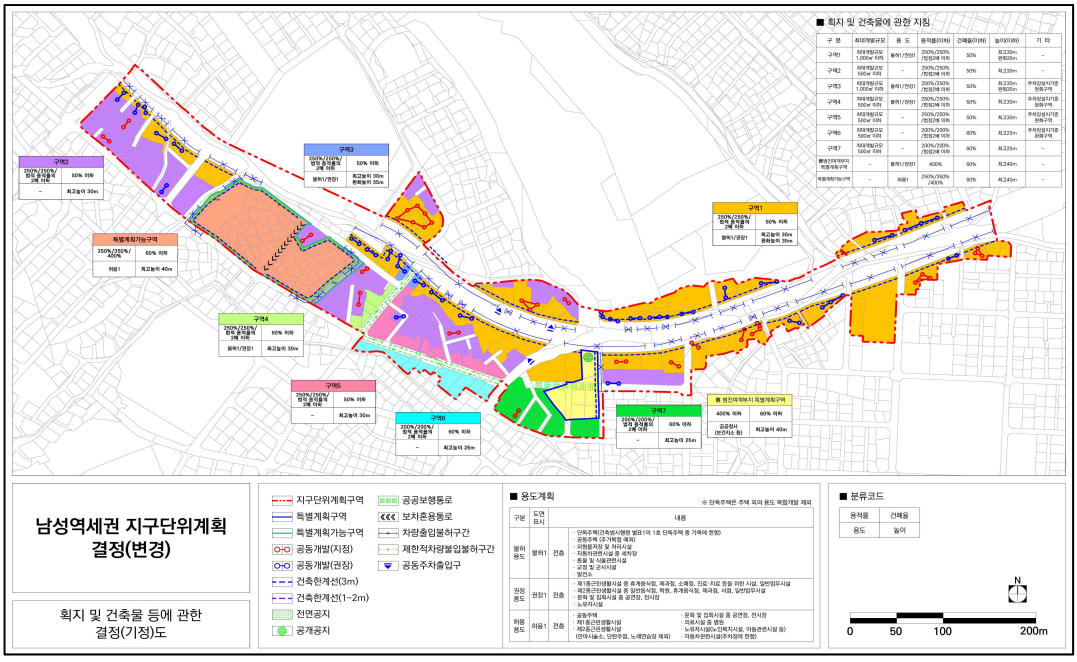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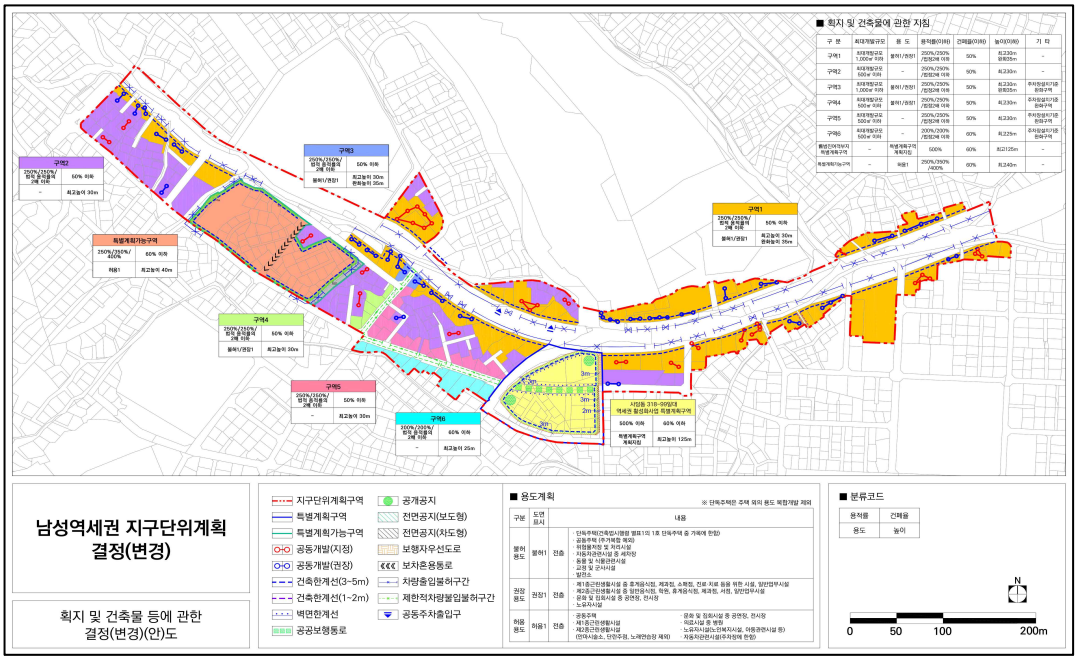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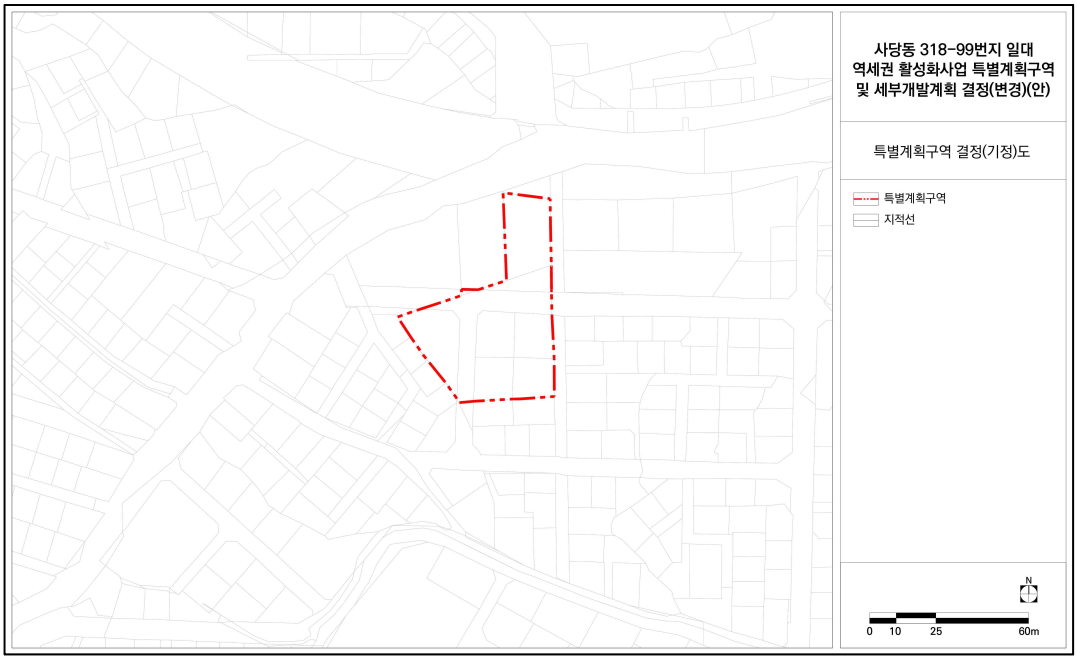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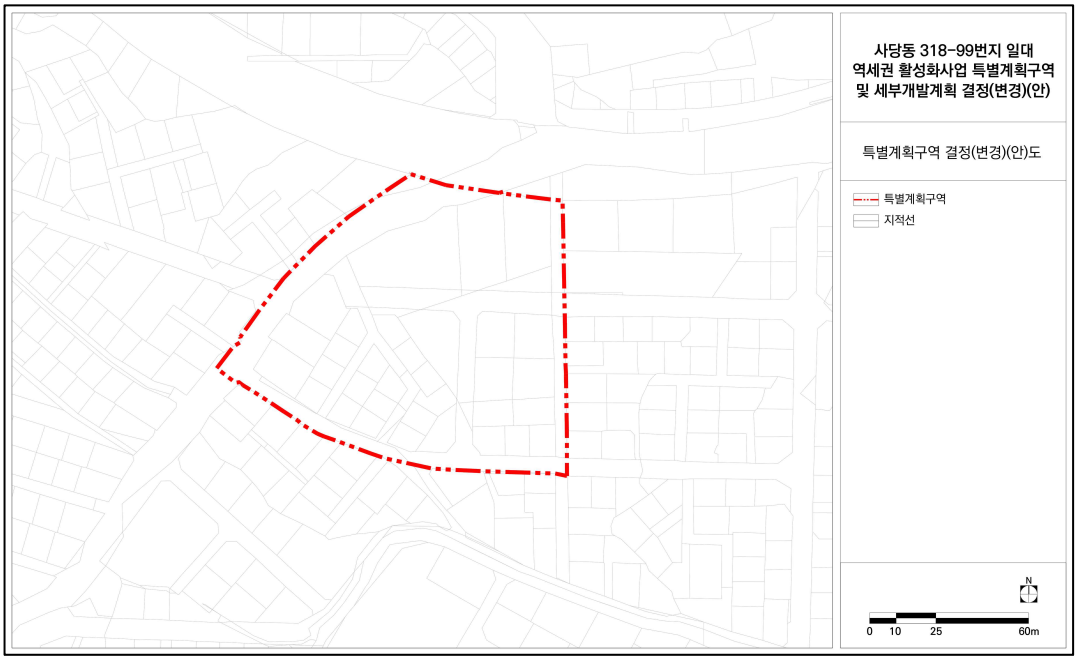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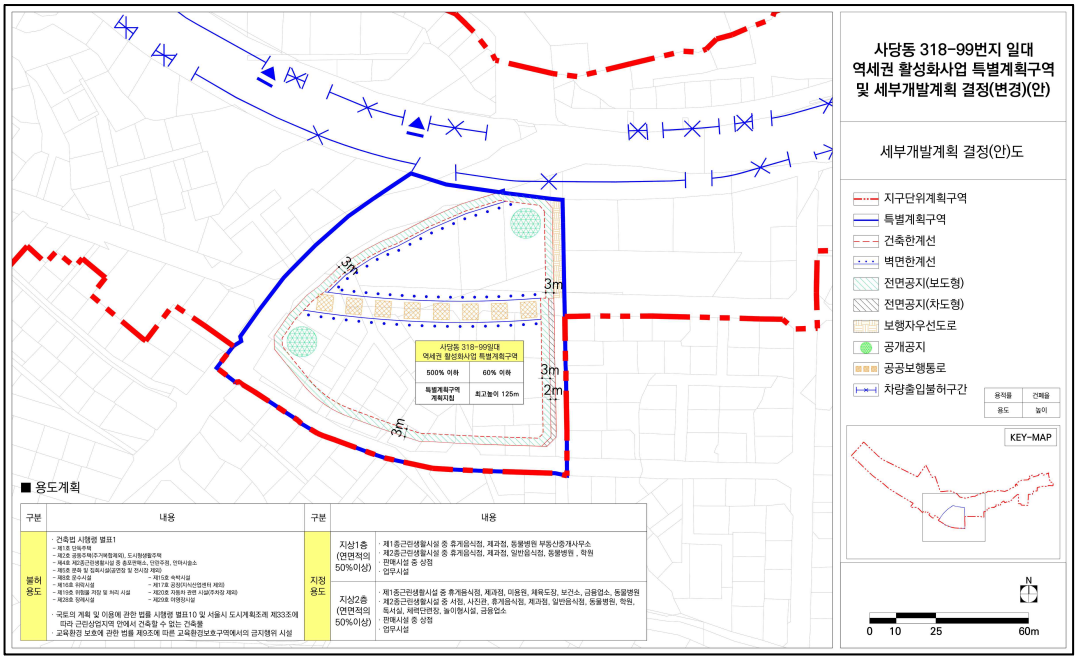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도]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보도형)
전면공지(차도형)
보행자우선도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차량출입불허구간
KEY-MAP
N
0 10 25 60m
3m
3m
2m
3m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500% 이하
60% 이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최고높이 125m
■ 용도계획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불허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주거형격제외), 도시형생활주택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안마주점, 안마시술소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
- 제8호 묘수시설
- 제10호 숙박시설
- 제11호 위락시설
- 제12호 공장
- 제13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제15호 장례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지정 용도
지상1층 (연면적의 50%이상)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동물병원 부동산중개사무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 학원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
지상2층 (연면적의 50%이상)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동원, 체육도장, 보건소, 금융업소, 동물병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하이디텐장, 놀이장시설, 금융업소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

◈ 서초구공고 제2026-139호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명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956호 (1983.9.7.)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552호(1986.12.8.)호로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22호(1999.5.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명달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명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5번지 일대
   다. 공원면적: 5,898.3㎡
2. 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목 적 :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공원을 현 명달근린공원을 재정비하여 조성함으로써 주변과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공원을 재조성하여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조성내역
   <신설>
   - 조경시설 : 바닥분수(증) (0.0㎡→138.0㎡)
   - 유희시설 : 놀이터(증) (0.0㎡→284.0㎡)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증) (0.0㎡→119.0㎡)

   <변경>
   - 기반시설 : 광장 및 도로(감) (1,904.57㎡→1,122.0㎡)
   - 휴양시설 : 경로당, 휴게쉼터, 포켓쉼터(증) (252.60㎡→590.0㎡)
   - 관리시설 : 분전함(증) (2.4㎡→3㎡)
   - 녹지 및 기타: 녹지(증) (3,306.8㎡→3,642.3㎡)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5. 열람장소 : 서초구청 푸른도시과(☎02-2155-6861)
6.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조성계획도 각 1부. 끝.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지구 내 명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서초동 1313-17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466.4	2,159.57	1	135	135	36	5,898.3	2,256.0	1	135.0	135.0	66	시설면적 증 96.43㎡ (증 30기)
기반시설	소 계	1,904.57	1,904.57	-	-	-	-	1,122.0	1,122.0	-	-	-	-	감 782.57㎡
	도 로	505.90	505.90	-	-	-	-	982.0	982.0	-	-	-	-	증 476.1㎡
	광 장	1,398.67	1,398.67	-	-	-	-	140.0	140.0	-	-	-	-	감1,258.67㎡
조경시설		-	-	-	-	-	-	138.0	138.0	-	-	-	12	신설 138.0㎡ (증 12기)
휴양시설		252.60	252.60	1	135	135	21	590.0	590.0	1	135	135	12	증 337.4㎡ (감 9기)
유희시설		-	-	-	-	-	-	284.0	284.0	-	-	-	9	신설 284㎡ (증 9기)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	-	-	-	-	-	119.0	119.0	-	-	-	6	신설 즊 119㎡ (즊 6기)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
관리시설	2.4	2.4	-	-	-	15	3.0	3.0	-	-	-	27	즊 0.6㎡ (즊즊 12기)
녹지 및 기타	3,306.83	-	-	-	-	-	3,642.3	-	-	-	-	-	즊 335.47㎡
시설율 (법정 40%)	(2,159.57/5,466,4) x 100 = 39.51%						(2,256.0/5,898.3) x 100 = 38.25%						감 1.26%
건폐율 (법정 20%)	(135.0/5,466.4) x 100 = 2.47%						(135.0/5,466.4) x 100 = 2.47%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5,466.4	2,159.57	-	-	135	135	36	-	-	5,898.3	2,256.0	-	-	135	135	66	시설면적 증 96.43㎡ (증 30기)
기반시설	소계	-	-	1,904.57	1,904.57	-	-	-	-	-	-	-	1,122.0	1,122.0	-	-	-	-	-	감 782.57㎡
	도로	-	서초동 1313-17	505.90	505.90	-	-	-	-	-	-	서초동 1313-17	982.0	982.0	-	-	-	-	-	증 476.1㎡
	광장	-		1,398.67	1,398.67	-	-	-	-	-	-		140.0	140.0	-	-	-	-	-	감1,258.67㎡
조경시설	소계	-	-	-	-	-	-	-	-	-	-	-	138.0	138.0	-	-	-	-	12	신설 증 138.0㎡ (증 12기)
	바닥분수	-	-	-	-	-	-	-	-	-	나	서초동 1313-17	138.0	138.0	-	-	-	-	1	신설 증 138.0㎡ (증 1기)
	앉음벽	-	-	-	-	-	-	-	-	-	①		-	-	-	-	-	-	3	신설 (증 3기)
	등벤치	-	-	-	-	-	-	-	-	-	②		-	-	-	-	-	-	4	신설 (증 4기)
	평벤치	-	-	-	-	-	-	-	-	-	③		-	-	-	-	-	-	3	신설 (증 3기)
	파고라	-	-	-	-	-	-	-	-	-	④		-	-	-	-	-	-	1	신설 (증 1기)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소계	-	-	252.6	252.6	-	-	135	135	21	-	-	590.0	590.0	-	-	135	135	12	증 337.4㎡ (감 97기)
	경로당		서초동 1313-17	252.6	252.6	-	-	135	135	-	다-1	-	540.0	540.0	-	-	135	135	-	증 287.4㎡
	파고라	①		(72.0)	(72.0)	-	-	-	-	2	-		-	-	-	-	-	-	-	폐지 2기
	장의자	②		(8.55)	(8.55)	-	-	-	-	19	-		-	-	-	-	-	-	-	폐지 19기
	휴게쉼터-2	-	-	-	-	-	-	-	-	-	다-2	서초동 1313-17	30.0	30.0	-	-	-	-	-	신설 (증 30㎡)
	휴게쉼터-3	-		-	-	-	-	-	-	-	다-3		16.0	16.0	-	-	-	-	-	신설 (증 16㎡)
	포켓쉼터-1	-		-	-	-	-	-	-	-	다-4		2.0	2.0	-	-	-	-	-	신설 (증 2㎡)
	포켓쉼터-2	-		-	-	-	-	-	-	-	다-5		2.0	2.0	-	-	-	-	-	신설 (증 2㎡)
	등벤치	-		-	-	-	-	-	-	-	②		-	-	-	-	-	-	4	신설 (증 4기)
	평벤치	-		-	-	-	-	-	-	-	③		-	-	-	-	-	-	6	신설 (증 6기)
	파고라	-		-	-	-	-	-	-	-	④		-	-	-	-	-	-	2	신설 (증 2기)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유희시설	소계	-	-	-	-	-	-	-	-	-	-	-	284.0	284.0	-	-	-	-	9	신설 284.0㎡ (증 9기)
	놀이터	-	-	-	-	-	-	-	-	-	라	서초동 1313-17	284.0	284.0	-	-	-	-	-	신설 284.0㎡
	등벤치	-	-	-	-	-	-	-	-	-	④		-	-	-	-	-	-	4	신설 (증 4기)
	숲속놀이시설A	-	-	-	-	-	-	-	-	-	⑤		-	-	-	-	-	-	1	신설 (증 1기)
	숲속놀이시설B	-	-	-	-	-	-	-	-	-	⑥		-	-	-	-	-	-	1	신설 (증 1기)
	숲속놀이시설C	-	-	-	-	-	-	-	-	-	⑦		-	-	-	-	-	-	1	신설 (증 1기)
	숲속놀이시설D	-	-	-	-	-	-	-	-	-	⑧		-	-	-	-	-	-	1	신설 (증 1기)
	숲속놀이시설E	-	-	-	-	-	-	-	-	-	⑨		-	-	-	-	-	-	1	신설 (증 1기)
운동시설	소계	-	-	-	-	-	-	-	-	-	-	-	119.0	119.0	-	-	-	-	6	신설 증 119.0㎡ (증 6기)
	체력단련장-1	-	-	-	-	-	-	-	-	-	마-1	서초동 1313-17	41.0	41.0	-	-	-	-	-	신설 증 41.0㎡
	체력단련장-2	-	-	-	-	-	-	-	-	-	마-2		78.0	78.0	-	-	-	-	-	신설 증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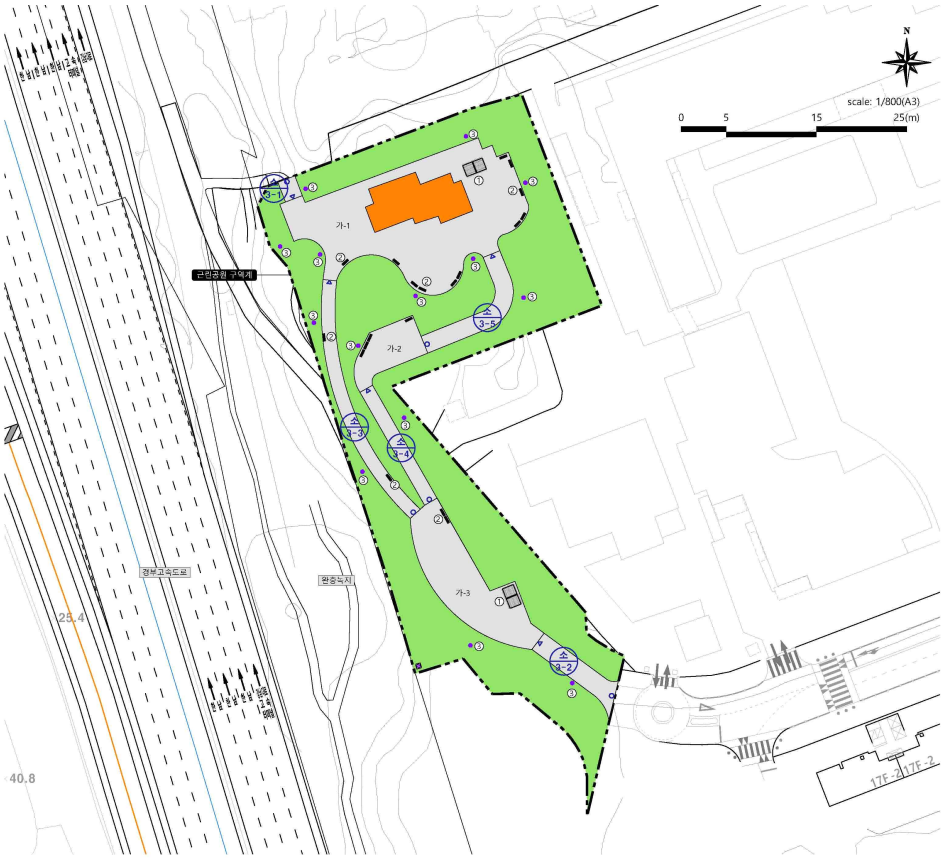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시설	-		-	-	-	-	-	-	-	⑩		-	-	-	-	-	-	3	신설(즙 3기)
	체력단련시설(시니어)	-		-	-	-	-	-	-	-	⑪		-	-	-	-	-	-	3	신설(즙 3기)
관리시설	소계	-	-	2.40	2.40	-	-	-	-	15	-	-	3.0	3.0	-	-	-	-	27	즙 0.6㎡(즙 12기)
	가로등	③	서초동 1313-17	1.4	1.4	-	-	-	-	14	⑬	서초동 1313-17	2.0	2.0	-	-	-	-	22	즙 0.6㎡(즙 8기)
	분전함	④		1.0	1.0	-	-	-	-	1	⑭		1.0	1.0	-	-	-	-	1	-
	안내판	-	-	-	-	-	-	-	-	-	⑫		-	-	-	-	-	-	4	신설(즙 4기)
녹지 및 기타	소계	-	-	3,306.83	-	-	-	-	-	-	-	-	3,642.3	-	-	-	-	-	-	즙 335.47㎡
	녹지		서초동 1313-17	3,306.83	-	-	-	-	-	-	-	서초동 1313-17	3,642.3	-	-	-	-	-	-	즙 335.47㎡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43.74	505.90				
변경					478.4	982.0				
당초	소로	3류	1	4.0	4.5	18.0	주진입로	진입로	광장(가-1)	폐지
		3류	2	4.5	22.02	99.09	주진입로	진입로	광장(가-3)	폐지
		3류	3	3.0	56.87	170.61	관리도로	광장(가-3)	광장(가-1)	폐지
		3류	4	3.2	29.0	92.80	관리도로	광장(가-3)	광장(가-2)	폐지
		3류	5	4.0	31.35	125.40	관리도로	광장(가-2)	광장(가-1)	폐지
변경	소로	3류	소-1	3.0	106.6	319.8	연결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3류	소-2	3.0~2.0	95.5	201.5	연결로	소-1	진입광장	
		3류	소-3	2.0	8.4	16.8	진입로	공원진입부5	소-12	
		3류	소-4	2.0	13.7	27.5	연결로	소-12	소-2	
		3류	소-5	2.0	7.6	15.3	진입로	공원진입부4	소-2	
		3류	소-6	3.0	21.3	64.1	연결로	경로당	소-15	
		3류	소-7	1.5	10.1	15.5	진입로	공원진입부3	진입광장	
		3류	소-8	1.5	25.9	39.0	연결로	소-13	진입광장	
		3류	소-9	1.5	42.4	63.2	연결로	소-11	공원진입부6	
		3류	소-10	1.5	6.1	9.3	연결로	소-9	경로당	
		3류	소-11	1.5	9.9	14.9	진입로	공원진입부6	경로당	
		3류	소-12	1.5	44.9	66.2	연결로	소-1	소-2	
		3류	소-13	1.5	26.5	39.8	연결로	소-2	소-6	
		3류	소-14	1.5	24.9	37.3	연결로	소-6	소-9	
		3류	소-15	1.5	34.6	51.8	연결로	대상지경계	소-9	

조 성 계 획 도 (변 경 전)

명달근린공원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시 설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구성비%)
	계	5,466.40	2,159.57	39.51 %
	기반시설	1,904.57	1,904.57	34.84 %
	휴양시설	252.6	252.6	4.63 %
	관리시설	2.4	2.4	0.04 %
	녹지 및 기타	3,306.83	-	60.49 %

■시설배치계획표

구 분	시 설 명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구성비%)
	합 계			5,466.40	2,159.57	36	39.51%
기반시설	소 계			1,904.57	1,904.57	-	34.84%
	도로		-	505.9	505.9	-	
	진입광장-1	가-1	-	867.62	867.62	-	
	진입광장-2	가-2	-	140.59	140.59	-	
	진입광장-3	가-3	-	390.46	390.46	-	
휴양시설	소 계			252.6	252.6	21	4.63%
	경로당	-	-	252.6	252.6	-	
	파고라	①	-	-	-	2	
	장의자	②	-	-	-	19	
관리시설	소 계			2.4	2.4	15	0.04%
	가로등	⑲	-	1.4	1.4	14	
	분전함	⑱	-	1.0	1.0	1	
녹지 및 기타	소 계			3,306.83	-	-	60.49%
	녹지		전지역	3,306.83	-	-	

조 성 계 획 도 (변 경 후)

명달근린공원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시 설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구성비%)
	계	5,898.3	2,256.0	38.25 %
	기반시설	1,122.0	1,122.0	19.02 %
	조경시설	138.0	138.0	2.34 %
	휴양시설	590.0	590.0	10.00 %
	유희시설	284.0	284.0	4.82 %
	운동시설	119.0	119.0	2.02 %
	관리시설	3.0	3.0	0.05 %
	녹지 및 기타	3,642.3	-	61.75 %

■시설배치계획표

구 분	시 설 명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구성비%)
	합 계			5,898.3	2,256.0	66	38.25%
기반시설	소 계			1,122.0	1,122.0	-	19.02%
	도로		-	982.0	982.0	-	
	진입광장-1	가-1	-	90.0	90.0	-	
	진입광장-2	가-2	-	50.0	50.0	-	
조경시설	소 계			138.0	138.0	12	2.34%
	바닥분수	나	-	138.0	138.0	1	
	화음벽	①	-	-	-	3	
	등벤치	②	-	-	-	4	
	평벤치	③	-	-	-	3	
	파고라	④	-	-	-	1	
휴양시설	소 계			590.0	590.0	12	10.00%
	휴게쉼터-1(경로당)	다-1	-	540.0	540.0	-	
	휴게쉼터-2	다-2	-	30.0	30.0	-	
	휴게쉼터-3	다-3	-	16.0	16.0	-	
	포켓쉼터-1	다-4	-	2.0	2.0	-	
	포켓쉼터-2	다-5	-	2.0	2.0	-	
	등벤치	②	-	-	-	4	
	평벤치	③	-	-	-	6	
	파고라	④	-	-	-	2	
유희시설	소 계			284.0	284.0	9	4.82%
	놀이터	라	-	284.0	284.0	-	
	등벤치	②	-	-	-	4	
	숲속놀이시설A	⑤	-	-	-	1	
	숲속놀이시설B	⑤	-	-	-	1	
	숲속놀이시설C	⑦	-	-	-	1	
	숲속놀이시설D	⑧	-	-	-	1	
	숲속놀이시설E	⑨	-	-	-	1	
운동시설	소 계			119.0	119.0	6	2.02%
	체력단련장-1	마-1	-	41.0	41.0	-	
	체력단련장-2	마-2	-	78.0	78.0	-	
	체력단련시설	⑨	-	-	-	3	
	체력단련시설(시니어)	⑪	-	-	-	3	
관리시설	소 계			3.0	3.0	27	0.05%
	공원안내판	⑫	-	-	-	4	
	가로등	⑩	-	2.0	2.0	22	
	분전함	⑬	-	1.0	1.0	1	
녹지 및 기타	소 계			3,642.3	-	-	61.75%
	녹지		전지역	3,642.3	-	-	

◈ 서초구공고 제2026-153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9.24.)로 결정 고시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배동 936-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 방배1동 주민센터(☎02-2155-7761), 서울도시공간포털(urban.seoul.go.kr)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Ⅰ.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874-5번지 일원	212,856.4	감) 1,792.8	211,063.6	-

※ 세부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 :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기재 생략

5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기준 : 변경 없음, 기재 생략

6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기재 생략
7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기재 생략

Ⅱ.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설	-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	증)1,792.8	1,792.8	-

※ 세부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 :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5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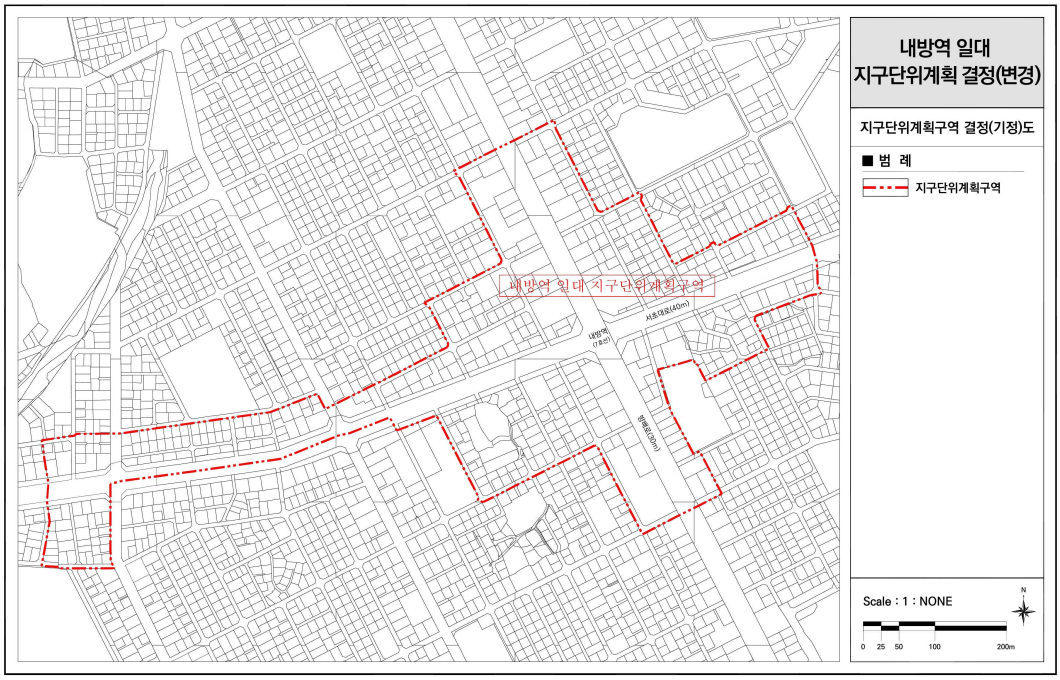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02-2155-6819, 이메일 sb0038@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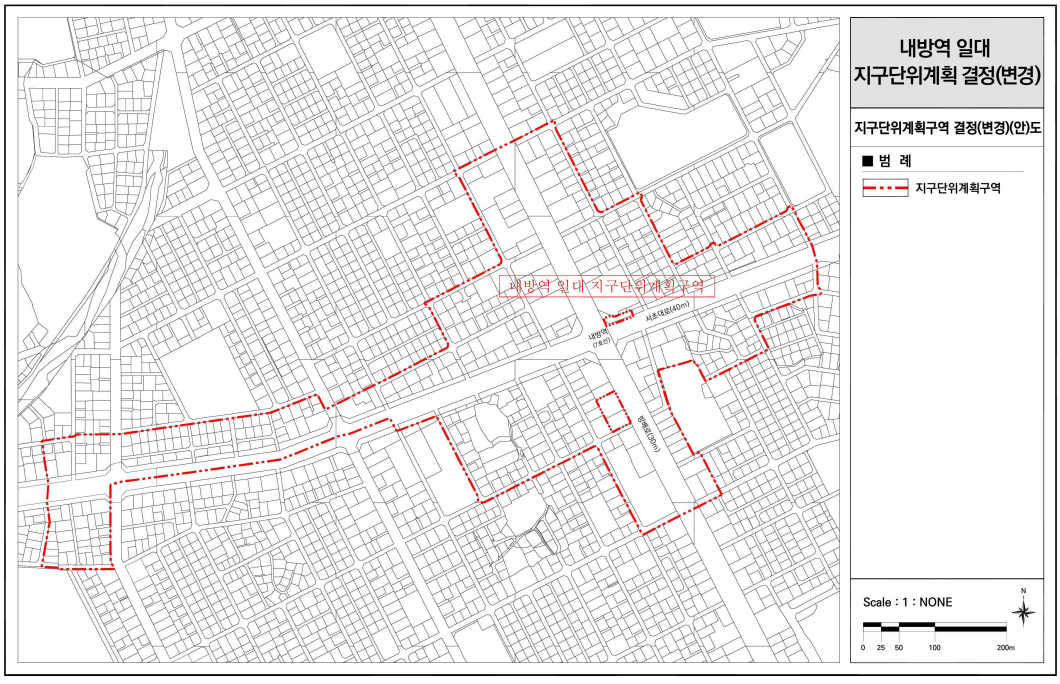
바. 관련 도면

Ⅰ.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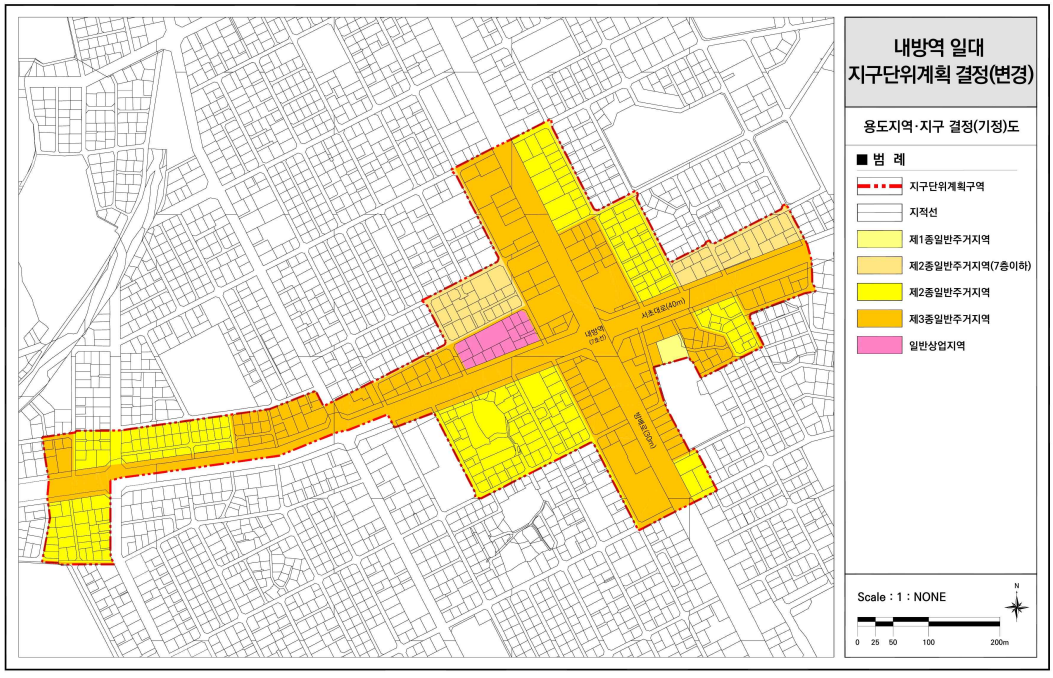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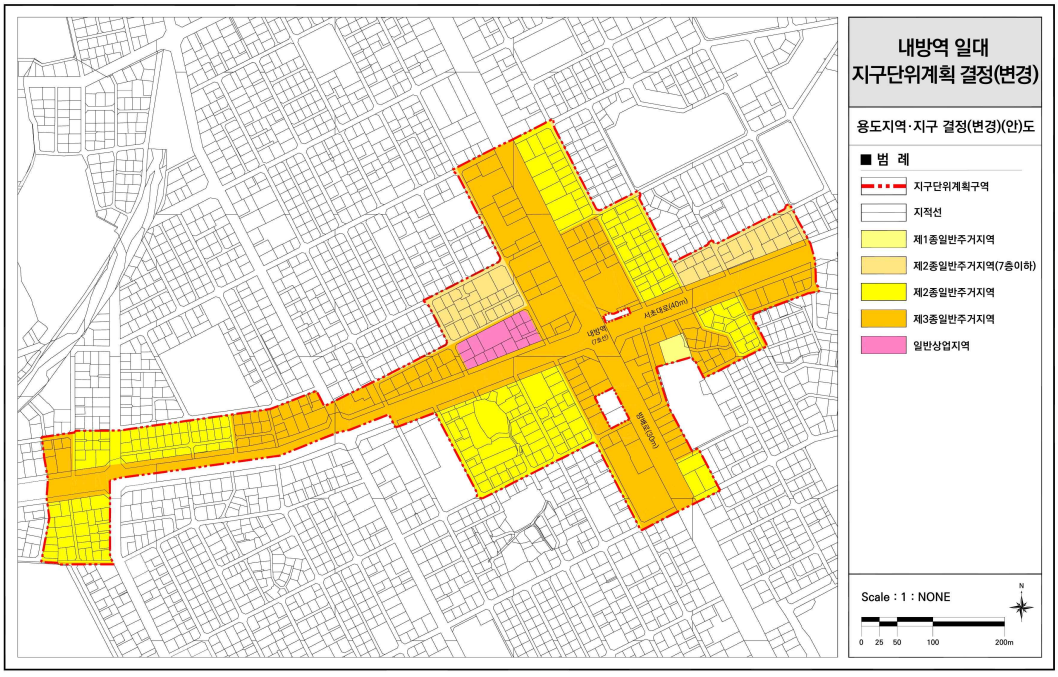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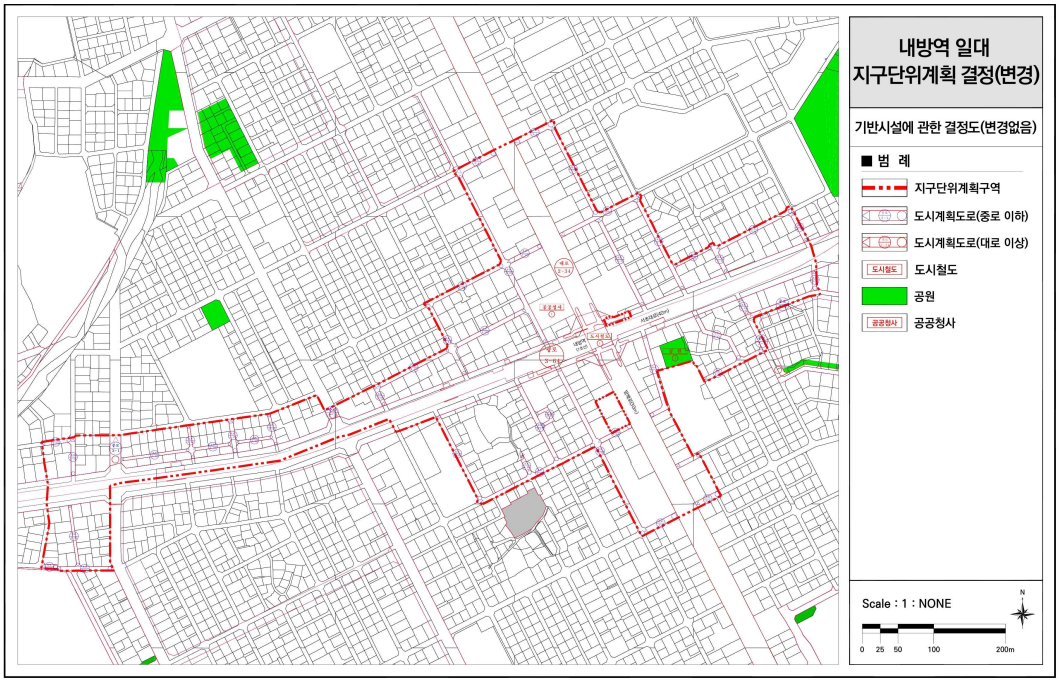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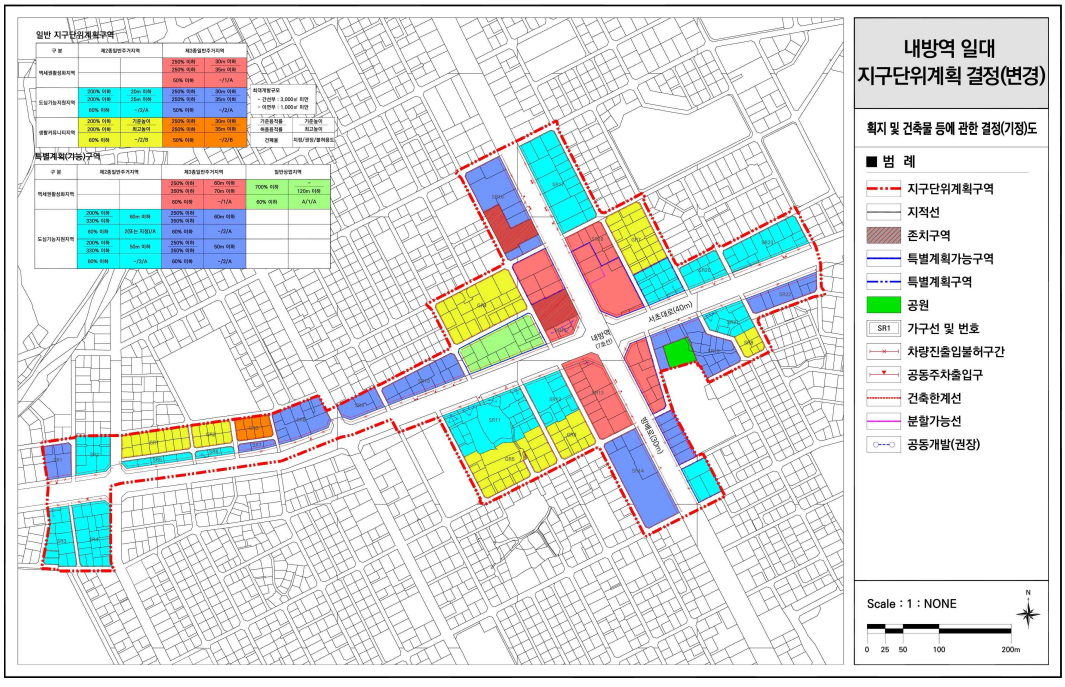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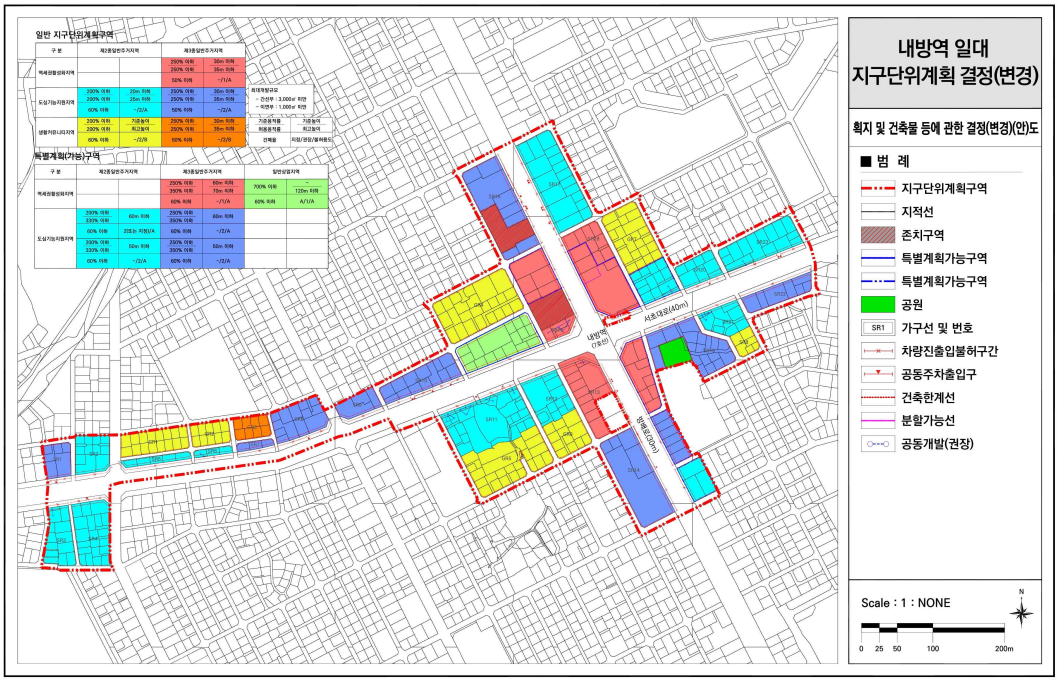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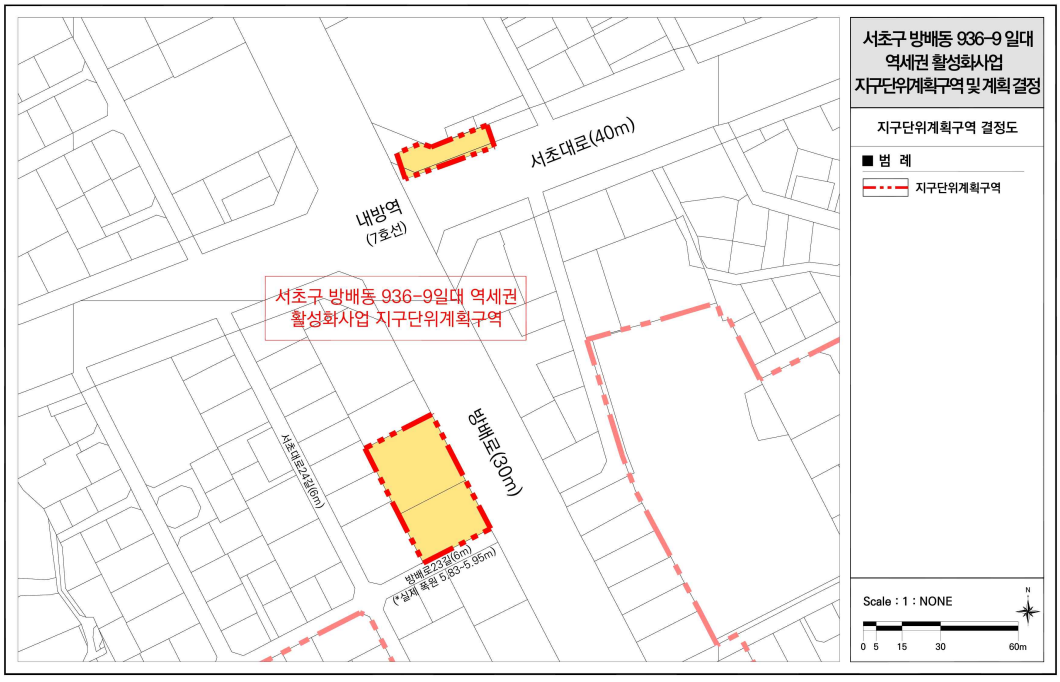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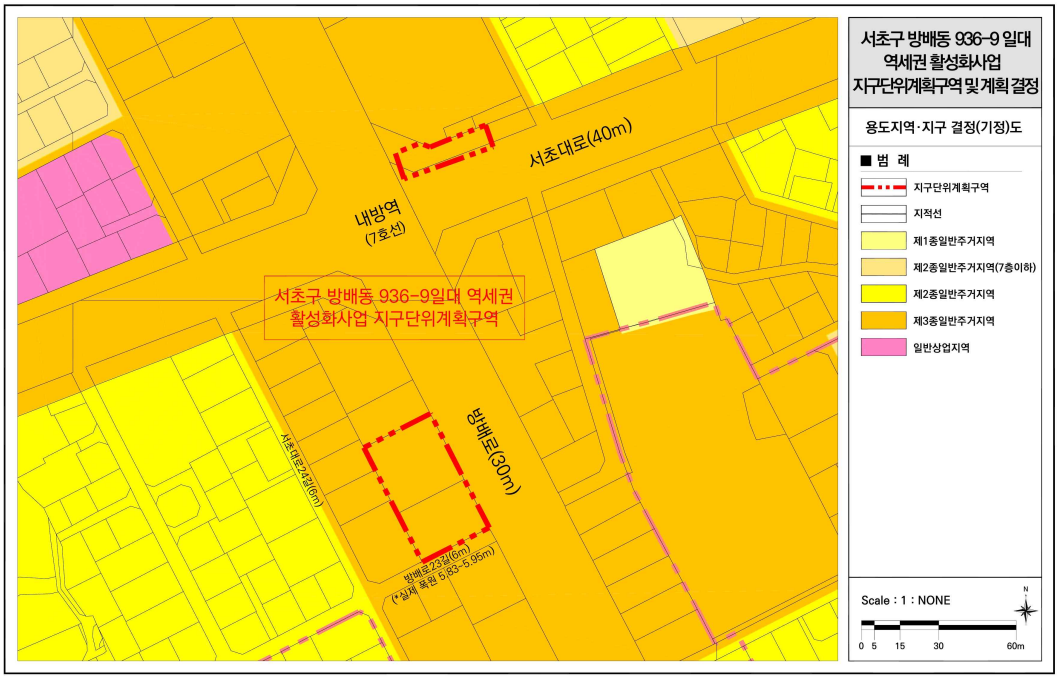


Ⅱ.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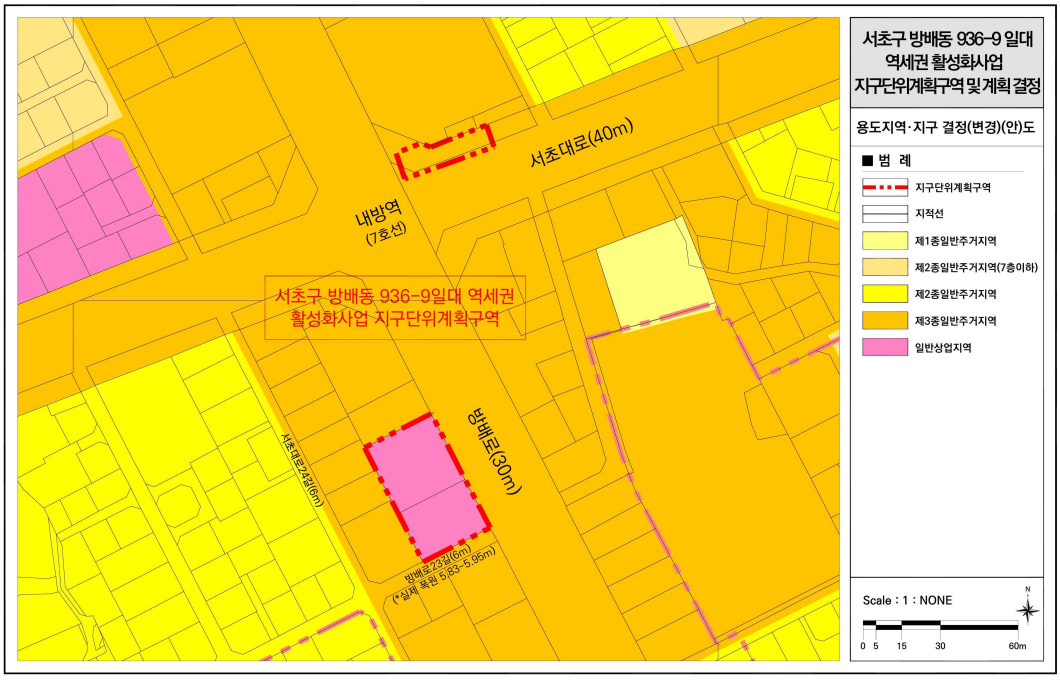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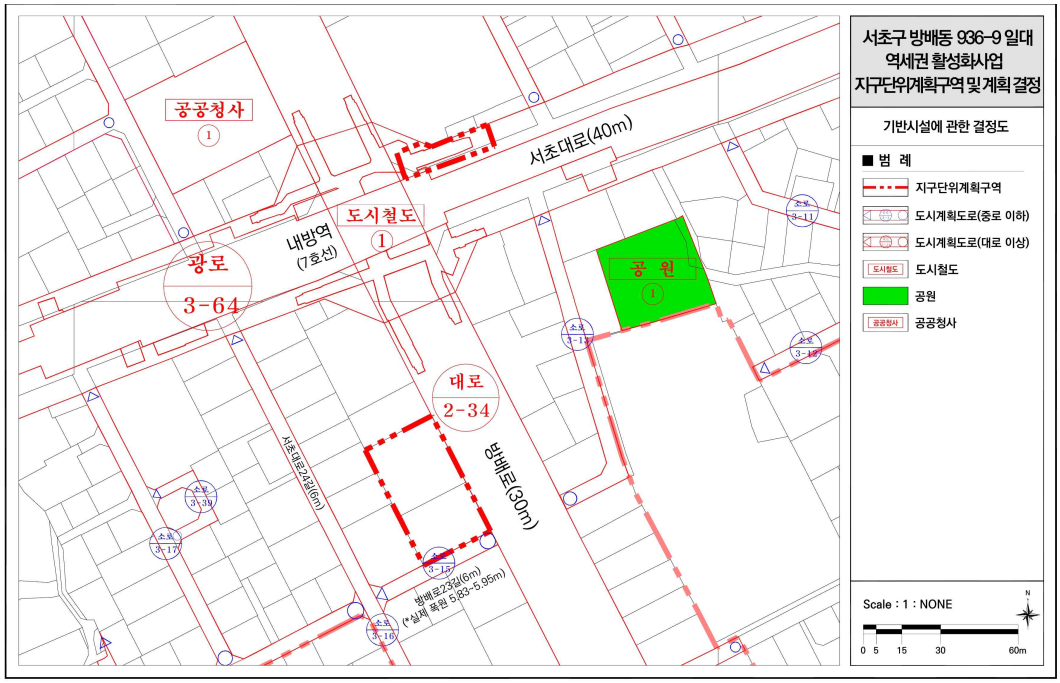
■ 용도지역 지구 ·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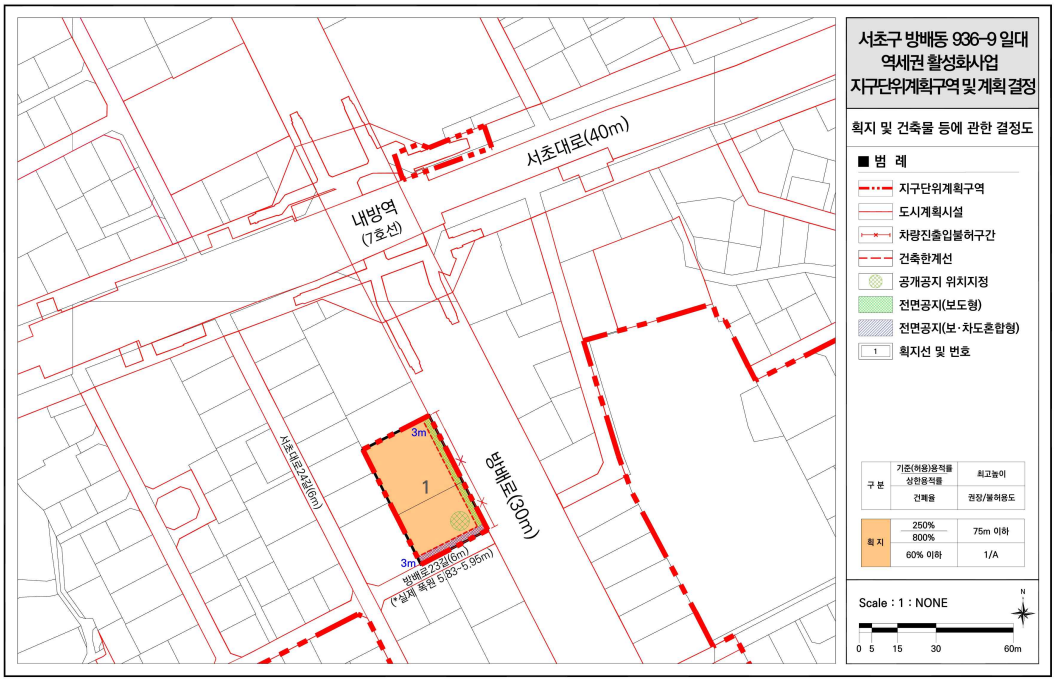
■ 용도지역 지구 · 결정(변경)(안)도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감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34	유선 50척 (동력 3, 무동력 47)	유선사업 운영	2026. 1. 1. ~ 2026. 12. 31.	2025. 12. 3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뚝섬, 여의도한강공원 배달존	125㎡	제로서울을 위한 한강공원 다회용기존 운영	2026.1.1. ~ 2026.12.31.	2026. 1.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624-3 일대	60㎡	광나루한강공원 피클볼장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3동 설치	2025.12.10. ~ 2026.12.9.	2025. 12.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김군자	강서구 개화10가길 5	강서구 개화동 1-16,1-26,1-27,1-28,1-29, 656	8,634㎡	농작물 경작	2026.1.1. ~ 2026.12.31.	2026.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더스텔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05길48 5층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4-20	2,502㎡	뚝섬 유선장 계류장 시설 제작 및 선착장 수리	2026.1.1. ~ 2026.12.31.	2026. 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기반시설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4-1 일대	1,200㎡	한강수상갤러리 조성 목적에 따른 월드컵분수 및 컨테이너 1동 설치	2026.1.1. ~ 2026.12.31.	2026. 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메가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5길46, 메가존빌딩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8-2	875㎡	메가존 승선대 수리를 위한 토지 점용	(기존) 2025.10.17. ~ 2025.12.31. (연장) 2026.1.1. ~ 2026.2.28.	2026. 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4-1	100㎡	수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사무실 1동 설치	2026.1.1. ~ 2026.6.30.	2026. 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31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05-5번지 일대	600㎡	한강경찰대 순찰정 수리 및 점검 장소	2026.1.1. ~ 2026.12.31.	2025. 12.3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시민활동 지원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강동구 천호동 483-8 일대 (광나루)	27㎡	자원봉사자 물품보관 및 쉼터	2026.1.1. ~ 2026.12.31.	2026. 1.8.
		송파구 잠실동 1-1 일대 (잠실)	18㎡			
		광진구 자양동 427-13 일대 (뚝섬)	22㎡			
		영등포구 여의도동 8 일대 (여의도)	1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 외 11개소	4,689㎡	한강 자전거대여소 운영		
		강동구 천호동 483-8	18㎡	자전거 교육용 기자재 보관 및 사무실 용도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8-20 ②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170-1 ③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27	① 30㎡ ② 35㎡ ③ 52.5㎡	지역난방 지열발생구간 긴급 보수공사	① 2025.12.24. ~ 2026.1.31. ② 2026.1.9. ~ 2026.2.13. ③ 2026.1.9. ~ 2026.2.13.	2026. 1.8.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해원산업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로 51-5	서울시 마포구 신정동 149 일원	35㎡	지역난방 열수송관 하자보수	(기존) 2025.12.8. ~ 2025.12.27. (연장) 2025.12.28. ~ 2026.1.31.	

사업소공고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20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신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공원녹지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82-37 일원
 - 면 적 : 1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제방 스탠드데크(L=20m, B=9m)
 - 내 역 : 점용면적 900㎡

5. 점용기간 : 2026.1.14. ~ 2031.1.13.

6.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177일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21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 ☎02-6438-2116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11층(무교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94번지 외 4필지 ※변동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65-4번지 외 34필지
 - 면 적: (당초) 총 33,696.5㎡ → (변경) 총 34,956.3㎡
  • 영구 11,237㎡(강남구 3,462㎡, 마포구 7,775 ㎡) ※변동없음
  • (당초) 일시 22,459.5㎡(강남구 48㎡, 마포구 22,411.5㎡)
  (변경) 일시 23,719.3㎡(강남구 48㎡, 마포구 23,671.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 금회 변경 : 사업 공법 변경
 - 내 역: ▲한남대교 남단 연결로 확장 및 개선(B=5.25~8.75m, L=380m)
 ▲양화대교 북단 연결로 신설(B=5m, L=400m)

5. 점용기간: 2025.03.10. ~ 영구
 - 바지선→지오튜브 설치 및 토사매립 : 허가일~ 2026.05.14.
 - 공사용차량 진출입로 : 허가일 ~ 2028.03.26.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2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공원시설과) ☎02-3780-0844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 1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1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 서울 광진구 자양동 112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 : 서울 강동구 천호동 321
 - 면 적: 55,0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한강공원 수영장(잠실, 뚝섬, 광나루)

5. 점용기간: (당초) 2020.11.18.~2025.12.31.
 (변경) 2026.01.01. ~ 2030.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2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에스케이텔레콤(주)(치국설계팀) ☎02-829-4756
 -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5길1, 보라매사옥1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①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16-2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7번지
 ③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170-2
 ④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29
 ⑤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5-83
 ⑥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87-2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2-3
 ⑧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96-6
 - 면 적: 각 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통신주 설치

5. 점용기간: (당초) 2020.07.10. ~ 2025.12.31.
 (변경) 2026.01.01. ~ 2030.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27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신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공원여가과) ☎02-3780-0838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 광진구 자양동 422, 410-1, 410-3, 558.3(뚝섬한강공원 내 축구장)
 - 면 적: 5,880.1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뚝섬한강공원 내 축구장 ※금회 변경사항 : 인조잔디 포장 등
 - 내 역: 포장 : 마사토 → 인조잔디(5,798㎡)
 시설 : 휀스교체(고정식→가동식), 우배수시설, 축구골대 등 정비

5. 점용기간: 2026.01.01. ~ 2030.12.31.

6. 공사기간: 2026.01.01. ~ 2025.05.1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2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중랑구청장(치수과)
 -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727-24번지 일원(727-24, 727-640, 1049-12, 1031-469, 1031-470, 1031-24, 1338-12, 727-640)
 - 면 적: 6,65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중랑천 둔치 물놀이장 설치
 - 개 요: 물놀이장 등

5. 점용기간: 당초 2020.7.3. ~ 2025.12.31. / 변경 2026.1.1. ~ 2030.12.31.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